# Contents


## Ⅰ. 축산물이력제 개요 ····· 1

1. 축산물이력제 정의(정의, 기대효과) 3
2.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4
3. 사업추진 체계 6
4. 해외 사례 10

## Ⅱ. 사육단계 매뉴얼 ····· 11

1. 농장식별번호 부여 13
2. 출생 등 신고 30
3.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관리 51
4. 각종서식 작성예시 81

## Ⅲ. 유통단계 매뉴얼 ····· 95

1. 도축단계 97
2. 포장처리단계 102
3. 판매단계 114
4. 묶음번호 관리 요령 120
5. 일반·휴게음식점(700㎡이상), 학교급식소(초·중·고), 통신판매업 123
6. DNA동일성검사 125
7. 단계별 전산매뉴얼 129

# Contents


## Ⅳ. 단계별 질의응답 ····· 231

1. 사육단계 233
2. 도축단계 297
3. 포장처리단계 307
4. 판매단계 317
5. DNA동일성검사 323
6. 위반자 처분 328
7. 기타 사례 329

## Ⅴ. 참고자료 ····· 331

- 축산물이력제 관련 기관·단체 연락처 333
- 모바일앱 매뉴얼(농장경영자, 식육판매장) 341
- 축산물이력제 데이터랩 이용방법 349

## Ⅵ.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355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57
- 시행령 별표 433
-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441
-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489
-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509
- 한우판별 요령(한국종축개량협회) 521

I

# 축산물이력제 개요

1. 축산물이력제 정의 (정의, 기대효과)
2.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3. 사업추진 체계
4. 해외 사례

# 1 축산물이력제 정의(정의, 기대효과)

## 1. 축산물이력제 정의

▢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

* 사업근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시행주체 : 시도,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경제지주, 한국종축개량협회

## 2. 축산물이력제 기대효과

▢ 위생과 안전의 파수꾼

○ 질병 및 위생·안전에 문제 발생 시, 이력을 추적 회수, 폐기 등 신속하게 조치

* 구제역 백신접종, 브루셀라 검사, 질병발생 이력추적 등

▢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축산물이력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각종 축산관련 정책사업에 활용

* 가축개량, 축산물 수급예측, 가축동향조사 대체 활용 등

▢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 원산지, 농장정보(농장경영자, 사육시설의 소재지 등), 가축의 종류, 등급 등의 정보를 제공

○ 수입산과 차별화하고 유통의 투명성 제고

- 축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원산지 허위 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되고, 판매되는 고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음

## 2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1. 쇠고기이력제 도입배경

▢ 유럽과 일본, 미국의 BSE 발생 등으로 국민들의 축산물안전성에 대한 불안 증가

- 소비자 단체와 축산 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 요구

▢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

- EU, 일본, 호주 등에서 육류 이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가축개체 식별체계(NAIS)를 통해 질병 등에 대처

### 2. 쇠고기이력제 추진경과

▢ 추진경과

- (2004.10.) 브랜드 및 시·군 중심으로 소 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 (2007.12.)「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공포
- (2008.12.) 쇠고기이력제 사육 및 유통단계(2009.6.) 전면 시행
- (2010.12.)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 (2012.10.)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실시
- (2014.12.) 돼지고기이력제 전면 시행,「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전면 개정
- (2015.06.)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포장처리·거래내역 등 전산신고 의무화
- (2018.11.)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 (2020.01.) 닭·오리·계란 이력제 전면 시행, 일반·휴게음식점(700㎡이상), 학교급식소(초·중·고), 통신판매업까지 확대
- (2021.01.) 유치원급식소까지 확대

## ▢ 단계별 주요 추진내역

○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각 단계별로 신고 및 기록·관리 하고 해당 개체(소·돼지 등) 또는 축산물(포장 최소단위)에 표시

| 이행단계 | 주요내용 |
|---|---|
| 사육단계 | 출생 등 신고, 귀표관리(94,119호) |
| 도축단계 | 도축 등 신고, 이력번호 표시, DNA시료 채취(도축장 74개소) |
| 포장처리업체 | 식육포장처리 및 거래실적 관리·신고, 부분육 또는 포장지 이력번호 표시(전산 1,595개소, 일반 8,154개소) |
| 판매업체 | 거래내역 관리·신고,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 표지판 등 이력번호 표시·게시(전산 2,290개소, 일반 47,245개소) |
| 일반·휴게음식점 700㎡이상, 학교·유치원 급식소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표시·게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보관 |
| 통신판매업 | 통신판매 수단을 통하여 「이력번호 표시제품임」을 고지하고 배송상품에 해당이력번호를 표시 |

* 단계별 호, 개소는 '21년 1월 기준으로 산출된 실적임

## 3 사업추진 체계

〈 단계별 추진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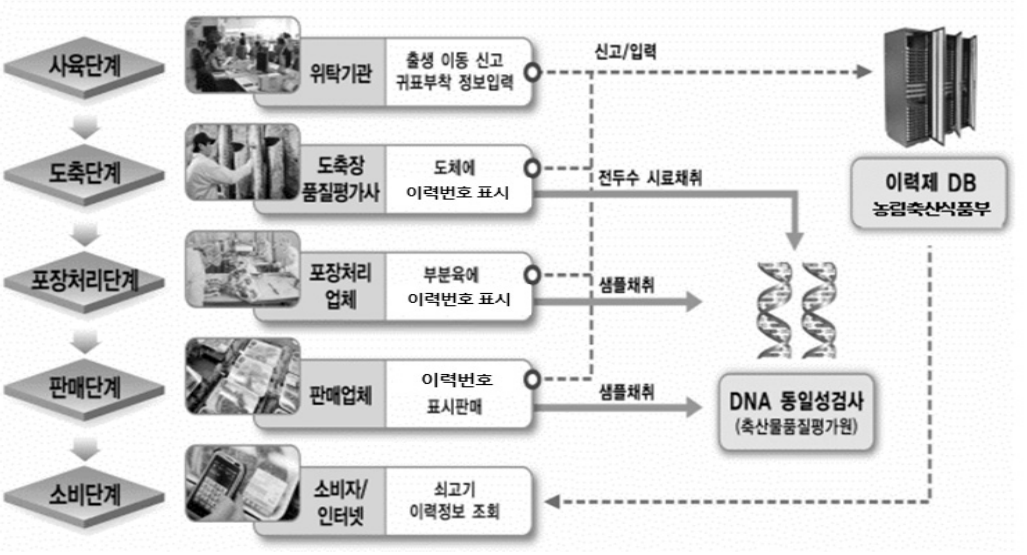


### ① 사육단계

○ 출생 등 신고 및 귀표부착

- 농장경영자는 소가 출생하거나 거래(양도·양수·폐사·수출입 등)한 경우 지역의 위탁기관에 5일 이내 신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위탁기관*은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및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30일 이내 귀표부착(육우의 경우 7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전국 시·군별로 지역축협, 한우협회 등 축산관련 법인 중에서 지정

- 사육규모에 따른 귀표 자가부착농장은 소 출생에 따른 귀표 부착은 농장에서 스스로 부착하며 “탈락 귀표 재부착”은 위탁기관에서 부착

○ 가축시장 개설자는 가축시장 내 소 거래내역을 거래가 완료된 다음 날까지 신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② 도축단계

- 도축장 경영자는 귀표 부착여부와 전산시스템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도축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도축금지(귀표 미부착 등 개체식별이 곤란할 경우 검사관에게 미리 신고)
- 이력관리시스템에 도축처리 결과 신고
- 도축장에서 소의 이력번호를 도체에 표시
-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의 경매내역을 신고

### ③ 포장처리단계

- 거래실적 및 포장처리실적 신고(장부관리)
  - 거래·포장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일정규모 이상,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거나 장부에 기록·보관
- 부분육·정육 최소포장지에 해당 쇠고기의 이력번호(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 부착

### ④ 판매단계

- 식육판매업소에서 해당 쇠고기에 이력번호(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내역 신고·관리
  - 판매업자는 정육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해당 쇠고기의 이력번호(개체식별번호)를 표시·판매
  - 거래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일정규모 이상,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거나 장부에 기록·보관(거래내역서 매입 1년, 매출 2년 보관)
- 일반·휴게음식점 700㎡이상, 학교급식소, 유치원급식소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표시·게시하고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거래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

○ 통신판매업

- 소의종류 및 성별, 출생일자, 농장식별번호, 가축사육시설 소재지, 도축장 및 소재지, 도축연월일, 도체중, 도축검사결과, 육질등급, 식육포장처리업소 명칭 및 소재지, 가축질병정보 등 정보 공개

  * 근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과한 법률」시행령 제8조

  * 조회방법 : 어플리케이션(축산물 이력정보), 홈페이지(www.mtrace.go.kr)

〈사업시행 주체별 역할과 기능〉

| 기 관 | 역할 및 기능 |
|---|---|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총괄)** | ■ 사업총괄 및 지도·감독<br>■ 사업계획 수립·운영관리, 시스템 구축<br>■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 감독, 관련 법령 개정 등 |
| **지자체 (업무위임)** | ■ 감독기관의 업무를 위임받아 관할지역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br>■ 법 제23조에 의한 시정명령 및 제24조에 의한 사육에서 판매단계까지 보고 및 출입·검사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업무위임)** | ■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출입·검사 및 수거, 과태료 부과·징수(국내산이력축산물) |
| **농림축산검역본부 (업무위임)** | ■ 수입산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 운영<br>■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출입·검사 및 수거, 과태료 부과·징수(수입산이력축산물) |
| **축산물품질평가원 (업무위탁)** | ■ 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 운영<br>- 농장식별번호 발급, 출생 등 신고 관리, 이력번호 발급, 가축 및 축산물 식별대장 기록·관리, 도축·유통단계 신고접수 등<br>■ 사육-유통단계 보고 및 출입·검사 및 수거(국내산이력축산물)<br>■ 소 보관용 DNA 시료 채취 및 보관, 모니터링 시료 채취 등 |
| **농협중앙회 (업무위탁)** | ■ 귀표의 구매·공급관리, 위탁기관 지도·감독 |
| **사육단계 위탁기관 (지역 농·축협 등)** | ■ 관할지역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변경신고의 접수, 소의 출생 등 신고 접수 및 변경신고 접수<br>■ 소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귀표의 부착 지원 및 관리)·통보 |

## 4 해외 사례

**〈주요국 쇠고기이력제 추현황 비교표〉**

| 국가 | 이력제도 명칭 | 도입 시기 | 의무화 | 개체 식별 | 출생지 추적 | 이동 추적 | 연령 검증 | 사료 검증 | 건강 기록 |
|---|---|---|---|---|---|---|---|---|---|
| 주요 축산물 수입국 | | | | | | | | | |
| 한국 | 축산물이력제도 | 2004, 2008 (본사업) | O | O | O | O | O | X | X |
| 일본 | 쇠고기 이력제 "소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03 | O | O | O | O | O | X | X |
| 유럽연합 | 국가별 상이 | 1997, 2000 | O | O | O | O | O | X | X |
| 멕시코 | 가축동물개체식별 시스템 (SINIGA) | 2003 | X | O | O | O | O | X | 일부 |
| 주요 축산물 수출국 | | | | | | | | | |
| 브라질 | ERAS, SISBOV, GTA | 2002 | 수출 품목 | O | O | O | O | O | O |
| 호주 | 가축식별이력제도 (NLIS) | 1999, 2005 (의무화) | O | O | O | O | 태그 발행일 | O (LPA) | O (LPA) |
| 미국 | 없음 | 2012 | 주경계 넘는 이동 | 자발적 | 자발적 | 자발적 | 자발적 | 자발적 | 자발적 |
| 뉴질랜드 | 동물식별이력제 (NAIT) | 2006 | O (2011) | O | O | O (2012) | O | 자발적 | 자발적 |
| 캐나다 | 캐나다가축식별제 (CCIA) | 2002 | O | O | O | O (2011) | X | X | X |
|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 동물건강정보 (SGS) | 2007 | 어린가축 | O | O | O | O | X | O (FMD 백신) |
| 우루과이 | DICOSE, SNIG | 2006 (의무화) | O | O | O | O | O | 일부 | 일부 |

Ⅱ

# 사육단계 매뉴얼

1. 농장식별번호 부여
2. 출생 등 신고
3.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관리
4. 각종서식 작성예시

# 1 농장식별번호 부여

## 1. 농장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

### ▢ 목적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력관리대상 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관리 요령을 규정하여 시행

### ▢ 용어의 정의

○ “농장식별번호”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이하 “가축 사육시설”이라 한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 “이력관리대상가축”이란 소, 돼지, 닭, 오리를 말한다.

○ “이력관리시스템”이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출생, 이동, 폐사 등의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농장경영자”란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 “개체식별번호” 란 소, 돼지(종돈에 한함)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 “현장 확인”이란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위해 축산농장 기본정보에 대한 가축사육시설, 위치 등 유효성을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 ▢ 농장식별번호 체계

○ 농장식별번호에는 권역코드(1자리), 일련번호(5자리)로 구성된 6자리의 고유번호로 구성

- 권역코드 : 서울·인천·경기(1), 강원(2), 충북(3), 세종·대전·충남(4), 전북(5), 광주·전남(6), 대구·경북(7), 부산·울산·경남(8), 제주(9)

## 농장식별번호 부여

### 부여 대상

-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사육하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지번단위의 가축사육시설
-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사육, 휴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축사육시설에 농장식별번호 부여, 단 폐업의 경우 부여대상에서 제외

### 부여 기준

- 축종에 관계없이 가축사육시설을 기반 '땅(지번) 중심'으로 1개의 농장식별번호 부여
- 부여된 농장식별번호는 농장경영주, 관리자 등의 정보의 변동이 있어도 땅(지번) 중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변하지 않음
- 동일 지번의 가축사육시설에서 농장경영자가 물리적으로 분할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신청을 받아 다른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 농장식별번호 추가 발급은 사육시설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확인된 경우 가능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신청서」 사본은 지자체 접수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이력관리대상 가축을 함께 사육하는 시설은 단일 농장식별번호 사용

### 부여 방법

- 농장식별번호는 권역코드(1자리), 일련번호(5자리)로 구성된 6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
- 6자리 고유번호는 첫 번째 자리를 권역코드, 두 번째 자리를 축종별 구분하여 안전행정부의 법정동순으로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됨

| 1 | 0 | 0 | 0 | 5 | 6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권역코드 | 일련번호 | | | | |

○ 부여 절차

- 신규농장 개설자 또는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사육시설의 농장경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
-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사육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육시작일 5일 전까지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위탁기관에 제출

* ①확인사항: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신청서 사본 ②제출서류: 접수번호가 기재된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신청서 사본

** 관련 :「축산물이력법」시행규칙 제5조(농장식별번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 소를 사육하고자 하는 농장경영자는 해당지역 위탁기관장에게 발급신청서를 제출
- 다만,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으로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같은 신청서의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의 기입사항은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따름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접수된 발급신청서의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을 통해 농장식별번호 부여

- 소의 경우 부여된 농장식별번호가 소 사육시설에 정확히 부여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위탁기관 등의 관계기관에 현장 확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된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됨과 동시 농장식별번호 발급 및 등록대장의 내용을 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

- 농장식별번호 발급 및 등록대장 내용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름

○ 최종 확정된 농장식별번호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농장식별번호 발급증([별지 제 16호 서식], 이력관리시스템으로 통지를 포함)을 교부

## 농장식별번호의 폐업 및 승계

〈상속 및 증여 시〉

○ 폐업

- 가축사육시설의 폐업 등으로 농장식별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번에 부여된 농장식별번호가 회수(중지)되며, 동일 지번의 사육시설을 재개할 경우 해당 농장식별번호를 재사용
- 위탁기관에서 관리농장의 신고된 폐업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

○ 승계

-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을 승계한 농장경영자는 해당 지번의 농장식별번호를 그대로 사용
- 농장경영자는 가축사육시설의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관에 제출

## 농장경영자 사망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고사항 변경(승계)

〈허가·등록 농장〉

○ 가축사육업 승계 희망 시

| | |
|---|---|
| 제출서류 | 1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변경신고서<br>-「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br>2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

○ 가축사육업 승계 포기 시

| | |
|---|---|
| 제출서류 | 1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변경신고서<br>-「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br>〈유의사항〉<br>- 변경사항에 사육→폐업으로 신고사항 작성하고 폐업예정일자 기입 |
| | 2 가축사육업 폐업신고서<br>-「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4서식]<br>〈유의사항〉<br>- 폐업신고서 지자체 접수번호 표시, 폐업예정일 다음날 농장식별번호 회수(사용정지) |

〈무허가 농장〉

○ 가축사육업 승계 희망 시

- 가축사육업 허가를 신규로 받아 업무처리

| | |
|---|---|
| 제출서류 | 1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변경신고서<br>-「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br>2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

○ 가축사육업 승계 포기 시

| | |
|---|---|
| 제출서류 | 1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변경신고서<br>-「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br>〈유의사항〉<br>- 변경사항에 사육→폐업으로 신고사항 작성하고 폐업예정일자 기입<br>- 변경신고서에 기재한 폐업예정일 다음날 농장식별번호 회수(사용정지)<br>- 사육두수 및 상황을 고려하여 농장경영자 사망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br>- 가축사육업 승계 포기 농장정보는 관할 지자체 공유를 통하여 관리(협조)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 25.〉

#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소·돼지)

※ 뒷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5일 |
|---|---|---|

| 신청인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 ③ 주소(거주지) | ④ 전화번호 |

| ⑤ 사육가축의 종류 및 사육방식 | | |
|---|---|---|
| | [ ] 소 | [ ] 자가사육 [ ] 위탁사육 [ ] 자가사육+위탁사육 [ ] 방목지 [ ] 종축장 |
| | [ ] 돼지 | [ ] 자가사육 [ ] 위탁사육 [ ] 자가사육+위탁사육 [ ] 종돈장 [ ] 기타 |

| ⑥ 가축사육시설 | |
|---|---|
| | 농장 명칭: |
| | 사육시설 주소: |
| | 관리자 성명: 관리자 주민번호: |
| |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GPS좌표: |
| | 사육개시 연월일: . . . |

| ⑦ 허가등록사항 | [ ] 허가 [ ] 등록 [ ] 기타 | ⑧ 고유번호 | | ⑨ 사육여부 | [ ] 사육 [ ] 휴업 [ ] 폐업 |
|---|---|---|---|---|---|

| ⑩ 사육규모 | 소 | | 돼지 | | | | | | | |
|---|---|---|---|---|---|---|---|---|---|---|
| | 종류 | 마릿수 | 종류 | 세부 명세(마릿수) | | | | | | |
| | 소 계 | | | 소계 | 모돈 | 후보돈 | 웅돈 | 자돈 | 육성돈 | 비육돈 |
| | 한 우 | | 일반종 | | | | | | | |
| | 육 우 | | 재래종 | | | | | | | |
| | 젖 소 | | 멧돼지 | | | | |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전화번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축산업 허가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진행중인 농장의 경우 축산업 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서 사본(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을 접수한 지자체에서 원본대조를 마쳐야 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직원 확인사항 | 축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육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이력관리, 축산물수급관리, 축산물안전관리, 가축방역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가축이력관리, 축산물안전관리, 방역 효율성 등 축산업 및 관련 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위탁된 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장식별번호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등록 말소 후에도 가축이력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사육·이동, 도축 등 가축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가축질병 및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유 의 사 항

1. ①~④란은 신청인에 대한 기초정보를 기재하되, 위탁사육인 경우 위탁자의 기초정보도 기재해야 합니다.
2. ⑤란에는 사육가축의 종류 및 신청인이 자가·위탁사육을 분명히 하고, 종축장 또는 종돈장일 경우에 [ ]에 √표를 합니다.
3. ⑥란에는 신청인이 소유 및 관리하는 가축사육시설에 기초정보를 기재하고 관리자는 농장경영자와 계약 또는 가족관계 등의 의해 실질적으로 농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4. ⑦허가등록사항 확인을 위해 축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첨부
5. ⑧고유번호 : 축산업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에 있는 고유번호 5자리 기재
6. 사육규모는 ⑩란에 소 또는 돼지의 사육마릿수를 기재합니다. 돼지의 경우 항목별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일반종: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종을 제외한 서양종 및 모든 교잡종
     - * 서양종: 대요크셔(Large Yorkshire), 랜드레이스(Landrace), 두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Welsh), 피어트레인(Pietrain), 스포티드(Spotted), 버크셔(Berkshire)
   - 나. 재래종(Korean native pig):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래종 고유의 외모기준을 유지하는 돼지이어야 하고, 실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 멧돼지: 가축화되어 집에서 사육하는 멧돼지
   - 라. 모돈: 자돈을 생산하고 있는 번식용씨돼지 마릿수
   - 마. 후보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후보돈 마릿수
   - 바. 웅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종모돈 마릿수
   - 사. 자돈(2개월 미만), 육성돈(2~4개월 미만), 비육돈(4~6개월 이상)

## 처 리 절 차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 | 농장식별번호 및 발급증 교부 |
|---|---|---|---|---|---|---|
| 신청인 | | 처 리 기 관<br>(축산물품질평가원, 소 위탁기관) | | 처 리 기 관<br>(축산물품질평가원) | | 발 급 기 관<br>(축산물품질평가원)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 [ ] 소, 종돈의 출생
# [ ] 소, 종돈의 폐사
# [ ] 양도·양수·이동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 수입·수출
# [ ]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 [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 |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농장식별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
|---|---|---|
|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 | | |
|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 | | |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변경사항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 | | |

변경 사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3항,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제6조제5항에 따라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종축등수출입 신고기관의 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및 담당직원 확인사항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육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이력관리, 축산물수급관리, 축산물안전관리, 가축방역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가축이력관리, 축산물안전관리, 방역 효율성 등 축산업 및 관련 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위탁된 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장식별번호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등록 말소 후에도 가축이력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사육·이동, 도축 등 가축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가축질병 및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 의 사 항

1. 공통사항
   가. 축산농장의 경우 농장식별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
   나. 변경되는 변경 전 등록내용을 왼쪽에 기록하고 변경 후 등록내용을 오른쪽에 기록합니다.
2. 농장식별번호 변경신고 시
   가. 축산농장을 경영하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1)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중인 경우는 허가 신청 서류 사본 또는 등록 신청 서류 사본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처 리 절 차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 결과 반영 및 발급증 교부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br>(축산물품질평가원, 위탁기관, 종축등록기관,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 | 처 리 기 관<br>(축산물품질평가원, 위탁기관, 종축등록기관,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 | 처 리 기 관<br>(축산물품질평가원, 위탁기관, 종축등록기관,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소의 [ ]출생·수입·수출 [ ]양도·양수·이동 [ ]폐사 신고서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 | | |
|---|---|---|---|
| 공통 신고 사항 | 농장 경영자 등 정보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 ③ 법인 명칭 |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
| | | ④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가축 사육시설 정보 | ⑤ 농장식별번호 | ⑥ 위탁기관명 |
| | | ⑦ 사육시설 주소 | |
| | | ⑧ 사육 개시 연월일 | |
| | | ⑨ 관리자 성명 | ⑩ 관리자 생년월일 |
| | | ⑪ 관리자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 | |
|---|---|---|---|
| 출생 수입 수출 신고 | ⑫ 출생·수입·수출 연월일 | | ⑬ 소의 종류<br>1. 한우 2. 젖소 3. 육우 4. 수입소 5. 기타 |
| | ⑭ 암수 구분 | 1. 암 2. 수<br>3. 거세 4. 프리마틴 | ⑮ 부 개체식별번호 |
| | | | ⑯ 모 개체 식별번호 자가 생산 / 대리모 생산 |
| |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 | | ※ 원산지 |

| | | |
|---|---|---|
| 양도·양수 이동 (입고·출고) 신고 | ⑰ 양도(출고)·양수(입고) 구분<br>1. 양도(출고)<br>2. 양수(입고) | ⑱ 개체식별번호 |
| | ⑲ 양도(출고)·양수(입고) 연월일 및 장소 | ⑳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
| | ㉑ 양도자(출고자)·양수자(입고자) 성명(상호) | ㉒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㉓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 |
|---|---|---|
| 폐사 신고 | ㉔ 개체식별번호 | ㉕ 폐사일 |
| | ㉖ 폐사 원인 | 1.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2. 일반질병 3. 사고 4. 기타 |
| | ㉗ 폐사처리방법 | 1. 매몰(장소: ) 2. 폐기처리(업체명: , 전화번호: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전화번호

**○○축산업협동조합장**
**○○농업협동조합장**
**○○협동조합**
**○○법인(축산 관련 법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유의사항

1. 출생·수입·수출신고는 ①~⑯란을 적습니다. ①~④란에는 농장경영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⑤~⑪란은 가축사육시설의 정보인 농장식별번호, 관리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⑬란의 소의 종류 및 ⑭란의 암수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⑮란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적고,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원산지란은 수입소만 해당합니다. ⑯ 모 개체식별번호는 "자가 생산란"에는 송아지의 모(母)의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자가 생산이 아닌 대리모를 통해 생산한 경우, 자가생산란에는 난소를 제공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적고, "대리모 생산"란에는 실제 출산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2. 양도·양수 및 이동(반입·반출) 신고는 ①~⑪란과 ⑰~㉓란을 적습니다. 또한, ⑰란의 양도(반입)·양수(반출)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⑳란의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는 양도·양수·이동되는 상대 가축사육시설의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3. 폐사신고는 ①~⑪란과 ㉔란을 적고, ㉖란의 폐사 원인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하며, ㉗란의 폐사처리방법은 매몰인 경우 장소를 적고, 폐기(소각, 재활용)인 경우 업체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4. 이 신고서는 경영자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5.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
6. 여러 마리의 출생 등 신고(기존 소의 신고를 포함합니다)를 할 경우 해당 신고 항목을 표시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작성 참고사항

   가. 개체식별번호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KOR 002 123 456 785 ⇒ 002 123 456 785

   나. 소의 종류: 해당하는 숫자에 ○표 표시(1.한우, 2.젖소, 3.육우, 4.수입소)

   - 한우: 종축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한우기준에 부합하는 소
   - 젖소: 착유하고 있거나 착유를 위하여 사육중인 소, 젖소 암소 중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소
   - 육우: 젖소 중 착유한 경험이 없는 암소, 젖소 암소 중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소, 젖소수소, 그 밖의 식용 소
   - 수입소(수입국명): 동물검역관이 수입소로 인정하는 소

   다. 부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의 아비 소의 개체식별번호(정액번호를 포함한다)

   라. 모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를 분만한 어미 소의 개체식별번호(수정란 이식의 경우 난소를 제공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농장식별번호:

가축사육시설 명칭:

가축사육시설 소재지:

가축의 종류:

농장경영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직인날인

**※ 농장식별번호를 통보받은 농장경영자는 사육 가축의 출생, 양수·양도·이동, 폐사, 변경신고,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농장식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1종 120g/㎡]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농장식별번호 발급 및 등록대장

| 발급 (등록) 연월일 | 발급 (등록) 번호 | 농장 식별 번호 | 사육 가축의 종류 | 신청자 성명 | 농장 명칭 | 사육 개시 연월일 | 사육 두수 | | | | 비고 |
|---|---|---|---|---|---|---|---|---|---|---|---|
| | | | |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사육시설 주소 (GPS좌표) | | 소 | 돼지 | 닭 | 오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농장식별번호 부여 대상

###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구분

- (개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법인사업자) 법인등록번호 입력
  - 법인명 및 대표자를 정확히 기재하고 대표자 변경 시 변경 신고

* 농·축협 생축장, 공공·연구기관 및 학교 생축장 등이 해당됨

## 3. 농장식별번호 신청 및 부여절차

### ▢ 부여 절차

- 농장식별번호 부여 체계

| | |
|---|---|
| 신청·접수<br>(위탁기관→이력지원실) | ■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위한 신청서 접수<br>- 확인서류 : 축산업 허가·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br>- 제출서류 : 축산업 허가·등록증 신청서 사본(접수번호 기재 필수) |
| ⇓ | |
| 농장정보 등록<br>(위탁기관) | ■ 증빙자료 주소와 농장 위치정보를 확인 후 농장식별번호 신청 |
| ⇓ | |
| SMS 안내 | ■ 신규·변경 농장식별번호 신청 건에 대해 해당지원 이력업무 담당자로 안내 |
| ⇓ | |
| 농장정보 확인 및 검증<br>(축산물품질평가원) | ■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위해 증빙자료와 등록정보 일치 확인 등 신규개설 농가 현장실사 등 검증<br>-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농장경영자, 주소 등 일치여부, 지도 검색을 통해 농장위치 및 연락처 확인<br>※ 명확한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현장확인 생략 가능 |
| ⇓ | |
| 농장식별번호 확정 및 발급<br>(축산물품질평가원) | ■ 확인된 농가에 대해 농장식별번호 부여<br>※ 해당지원이력업무 담당자 확인 및 검증 완료 후 이력지원실에서 최종 확인을 통해 농장식별번호 부여 및 승인 |

## 4. 농장등록 방법

### 농가 등록

- 농가등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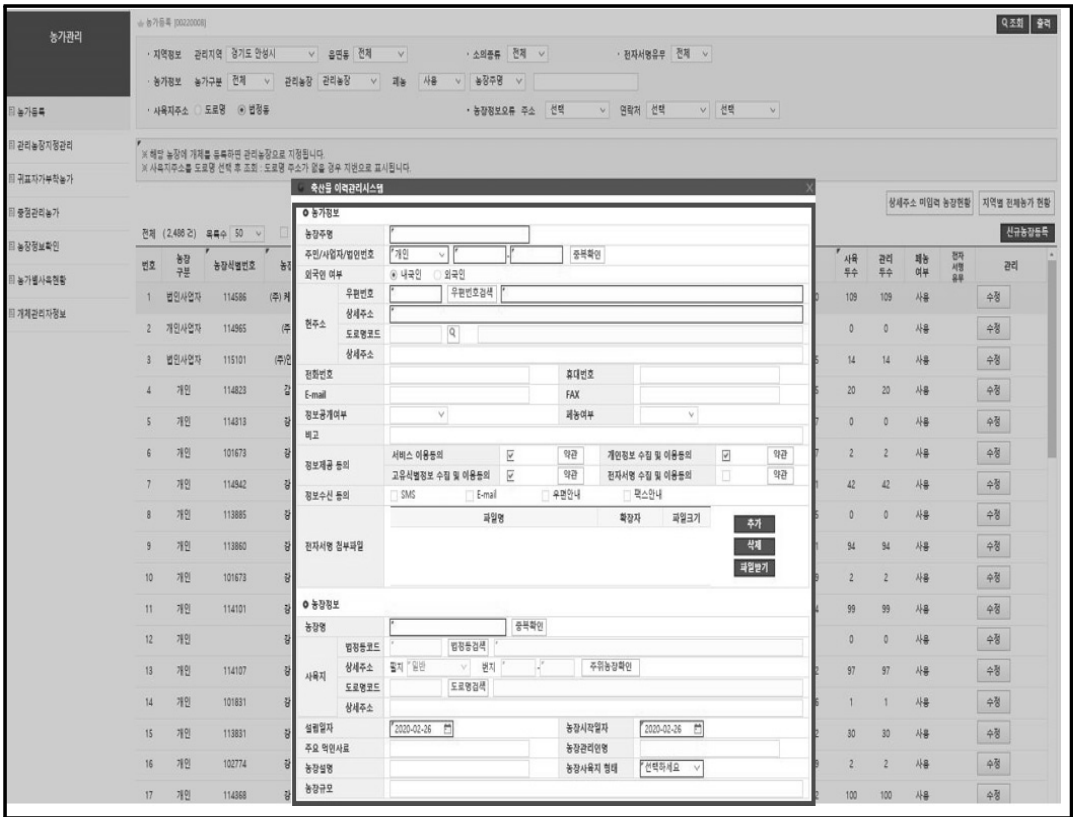


**※ 메뉴위치 : 이력관리시스템 / 농가관리 / 농가등록**

* 농가 등록신청 시 위탁기관에서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 및 등록

## ▢ 이력관리시스템 공동명의 농장관리 체계

○ 공동명의 농장경영자 농장기초정보 관리

| 구분 | 농장정보 관리 방법 | 비고 |
|---|---|---|
| 기승인 농장 | **정보변경 신청으로 관리** | |
| | - (농장경영자) 관할 위탁기관에 정보변경 신고(축산업 등록·허가증 첨부 필수)<br>- (위탁기관) 업무담당자가 이력관리시스템에 정보변경신고 등록·허가증 증빙자료 첨부<br>* 기존 농장경영자가 2인 이상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에 한함<br>- (이력지원실) 증빙자료 확인 후 추가 농장경영자 및 주소 등록 | |
| 신규신청 농장 | **신규농장 등록시 신청** | |
| | - (신청 및 등록) 위탁기관에서 농장식별번호 신청시에 추가농장경영자 및 해당 주소정보 모두 입력<br>* 2인이상 농장경영자 등록시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증 첨부<br>- (검증 및 승인) 축평원 지원에서 승인→ 이력지원실에서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증 확인 후 승인 | |

* 자세한 등록방법은 이력관리시스템 공지사항6 농장기초정보 관리 매뉴얼 참조

## ▢ 농장정보 확인

○ 위탁기관에서 농장등록의 적정성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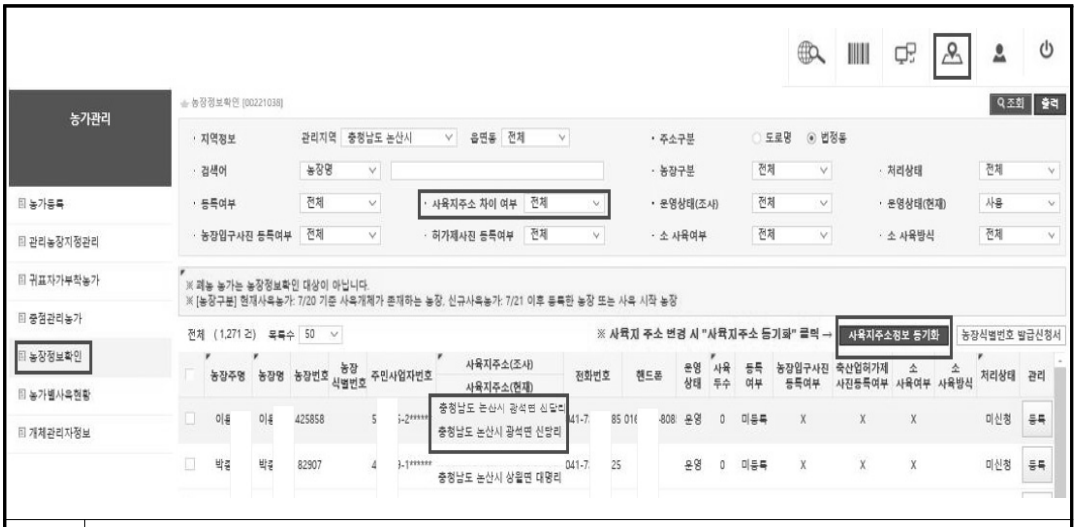


| | |
|---|---|
| **확인 절차** | ① 농장관리/농장정보확인 선택<br>② 확인여부 선택<br>- 전체 |

## 5. 가축사육시설 확인 방법

### ▢ 신청 및 변경 요청된 농장 소재지 확인 이력관리시스템 등록

| 조치 및 확인 방법 |
| --- |
| ①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소재지 일치 여부 확인<br>② 확인 및 주소변경 저장 클릭<br>※ 필요시 일치여부를 신청자와 유선확인 또는 농장 방문을 통한 현장확인 |

## 2 출생 등 신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제5호 또는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7.〉

1. 법 제5조(출생 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6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통보
3.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
4. 법 제22조제3항·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 1. 출생 등 신고 업무 흐름

## 2. 출생 등 신고 업무처리 방법

### ▢ 출생신고

- 신고대상
  -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 신고방법
  - 서면신고 : 농장에서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위탁기관에 제출

<table>
<tr><td rowspan="8">공통 신고 사항</td><td rowspan="3">농장 경영자 등 정보</td><td colspan="2">① 성명</td><td colspan="3">②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td></tr>
<tr><td colspan="2">③ 법인 명칭</td><td colspan="3">(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td></tr>
<tr><td colspan="5">④ 주소<br>(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td></tr>
<tr><td rowspan="5">가축 사육시설 정보</td><td colspan="2">⑤ 농장식별번호</td><td colspan="3">⑥ 위탁기관명</td></tr>
<tr><td colspan="5">⑦ 사육시설 주소</td></tr>
<tr><td colspan="5">⑧ 사육 개시 연월일</td></tr>
<tr><td colspan="2">⑨ 관리자 성명</td><td colspan="3">⑩ 관리자 생년월일</td></tr>
<tr><td colspan="5">⑪ 관리자 주소<br>(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td></tr>
<tr><td rowspan="4">출생 수입 수출 신고</td><td colspan="3">⑫ 출생·수입·수출 연월일</td><td colspan="2">⑬ 소의 종류<br>1. 한우 2. 젖소 3. 육우 4. 수입소 5. 기타</td></tr>
<tr><td>⑭ 암수 구분</td><td>1. 암 2. 수<br>3. 거세 4. 프리마틴</td><td colspan="2">⑮ 부 개체식별번호</td></tr>
<tr><td colspan="3" rowspan="2">※ 송아지 개체식별번호</td><td>⑯ 모 개체 식별번호</td><td>자가 생산<br>대리모 생산</td></tr>
<tr><td colspan="2">※ 원산지</td></tr>
</table>

- 전화 신고 :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신고가 곤란한 경우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

  * 신고서를 제출받은 위탁기관의 장은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 여부와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받은 위탁기관의 장은 관할 구역 내 농장경영자(신고 대리인을 포함한다), 가축거래상인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신고 접수자로 하여금 대리 날인하게 할 수 있고, 위탁기관의 장은 신고자, 신고 일시, 신고 내용 등을 기록·보관(전자적 자료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 신고기한 : 출생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 위탁기관 : 출생신고 접수 즉시 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

## 귀표부착

### 귀표 배부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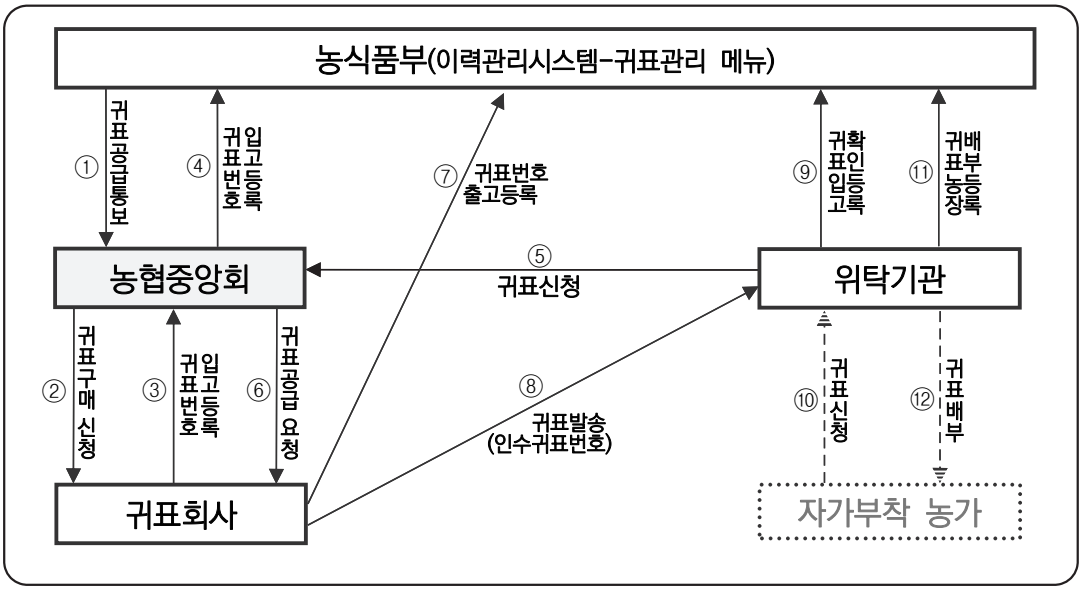


### 귀표 부착 방법

- 위탁기관은 고령 등의 농가가 요청한 경우 해당 농가를 방문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제주도 본도를 제외한 도서지역과 소를 방목하여 사육하는 소 방목 사육지는 90일)이내에 귀표를 아래 그림과 같이 부착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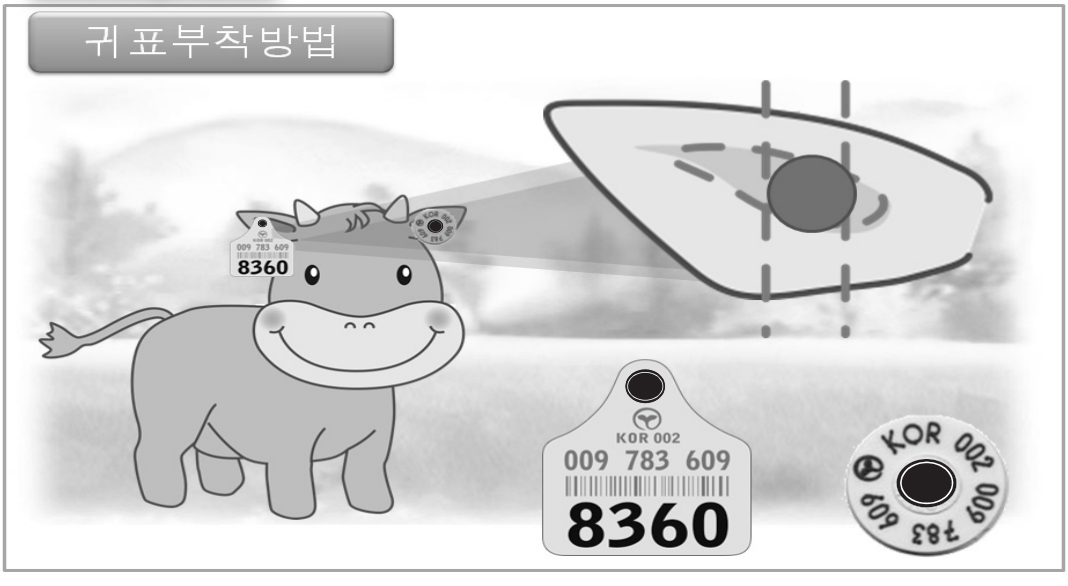


※ 귀표는 오른쪽 귀에 일반형을, 왼쪽 귀에 단추형을 각각 부착(시행규칙 제8조, 별표4)

○ 귀표 부착 과정

귀 앞쪽에 암 귀표, 귀 뒤쪽에 수 기표를 귀 중앙부의 혈관을 피해 부착기를 이용하여 부착

## 전산등록

○ 업무처리 절차

| 업무흐름 | | 처리 절차 |
|---|---|---|
| ①<br>출생(수입· 수출)<br>신고 | | ▸ 송아지 출생 시 위탁기관에 출생신고서를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하고, 귀표 부착<br>▸ 위탁기관은 소 귀표부착 증거자료 기록·보관<br>▸ 귀표부착 후 이력시스템에 정보 입력 |
| ②<br>양도·양수, 폐사 | | ▸ 소의 양도·양수, 폐사 시 위탁기관에 신고<br>▸ 소의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의 정보 확인 후 거래<br>▸ 폐사 신고 시 폐사 사진 등 증거자료 제출 |
| ③<br>가축 및 축산물<br>식별대장 변경신고 | | ▸ 기신고 된 사항 중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내용을 변경, 누락오류의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신고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이력지원실)에 제출 |
| ④<br>귀표부착<br>예외사항 | | ▸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br>▸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된 경우 |

○ 개체현황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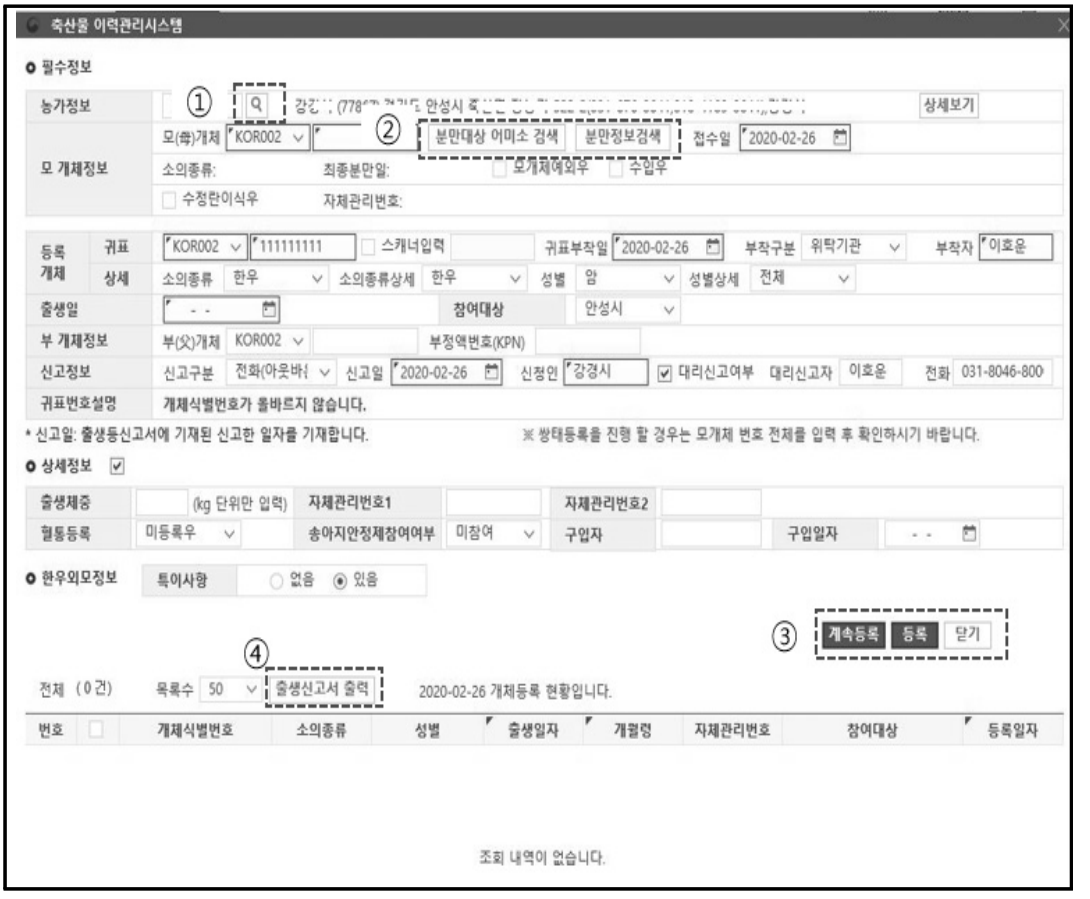


| 번호 | 설명 |
|---|---|
| 1 |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개체 등록할 농장을 선택한다. |
| 2 | 분만대상 어미소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분만대상 어미소를 선택한다.<br>분만정보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분만정보 보기 팝업이 뜬다. |
| 3 | 계속등록,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한다. |
| 4 | 출생신고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레포트로 출력할 수 있다. |

※ 상세내역은 사육단계 프로그램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양수·양도(도축출하 포함), 수입·수출, 폐사신고

### ○ 신고대상

- 국내에서 사육중인 소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 등을 한 경우
- 도축을 위해 출하하는 경우
- 국내에서 사육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생우를 수입한 경우
- 소가 폐사된 경우

### ○ 신고방법

- 소를 양도·양수, 수입·수출, 폐사한 경우 별지3호 서식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작성 후 위탁기관에 제출
-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34조, 지자체 등록된 가축거래상인) 이동(양도·양수)신고 의무화 시행('20.1.1.)
- 폐사 신고 시 사체처분방법(소각, 매몰, 해체, 기타), 사체처리장소(농장부지, 국·공유지, 기타)로 추가로 신고
- 폐사 신고 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등록 필수

* 증빙서류(1가지 이상) : ①귀표포함 폐사사진, ②폐사진단서, ③검안서, ④렌더링 처리확인서, ⑤소각(매몰)증명서

- 폐사의 원인 등록은 반드시 입력(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일반질병, 사고, 기타항목 선택 시)

* 귀표 미부착 또는 이력제 미등록 소는 양도·양수, 수출 불가

| | | |
|---|---|---|
| 양도·양수 이동 (반출·반입) 신고 | ⑰ 양도(반출)·양수(반입) 구분<br>1. 양도(반출)<br>2. 양수(반입) | ⑱ 개체식별번호 |
| | ⑲ 양도(반출)·양수(반입) 연월일 및 장소 | ⑳ 농장식별번호 |
| | ㉑ 양도자(반출자)·양수자(반입자) 성명(상호) | ㉒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㉓ 주소<br>(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폐사 신고 | ㉔ 개체식별번호 | ㉕ 폐사일 |
| | ㉖ 폐사 원인 1.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2. 일반질병 3. 사고 4. 기타 | |
| | ㉗ 폐사처리방법 1. 매몰(장소: ) 2. 폐기처리(업체명: , 전화번호: ) | |

- 도축을 위한 출하의 경우「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도축업자가 도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신고기한 :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3. 귀표 자가부착농가 신청 및 관리 방법

### ▢ 목적

- 구제역 등 질병 발생관련 법정신고 및 귀표부착 기한 단축에 대비한 위탁기관의 효율적 업무추진 도모
- 농가의 자발적 참여 및 책임의식 고취로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 관련근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귀표등의 부착 등)

### ▢ 자가부착 의무(지정) 농장

- 당해연도 자가부착농장 지정 기준

- 전년도 12월1일 기준 사육두수 150두 이상인 경우 자가부착지정농장으로 지정됨

* 지정 기준은 정책방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자가부착농장 시스템 반영 시기 및 방법

- 3월 1일 기준 추출된 농장식별번호의 전년도 12월 1일 기준 사육두수 150두 이상인 농장을 자가부착지정농장으로 시스템에 반영함

* 시스템 반영시기는 전년 12월, 익년 1, 2월 집행예산이 3월에 지급됨과 관련함

- 자가부착농장 지정 해제의 경우

- 농장경영자의 농장식별번호 발급 변경사항 미신고 사항을 발견(요청)에 따라 농장식별번호가 추가 발급 또는 통합될 경우, 해당 농장식별번호별 전년 12월 1일 사육두수 기준 적용으로 기존 농장과 새로운 농장의 자가부착농장 지정여부를 결정

* 농장식별번호 발급 사항 변경 발생시 농장경영자의 신고 미준수로 농장 추가 발급 또는 통합되는 경우 발생

- 자가부착농장 지정

| 구분 | 지정 해제 경우 | 비고 |
|---|---|---|
| 해제 | ▯ 추가 발급 등 변경된 농장식별번호 기준 150두 미만 사육 | |
| 지정 | ▯ 통합 등으로 변경된 농장식별번호 기준 150두 이상 사육 | |

1) 사육두수 추출은 12월 1일 기준

2) 1개의 농장식별번호에 다수의 농장경영자가 있을 경우 농장식별번호 기준으로 사육두수 산정(A 50두, B 50두, C 50두 일 경우 150두로 A,B,C모두 자가부착농장으로 지정)

## 자가부착 희망 농장 신청·지정 방법

- 귀표 자가부착농가 지정 신청
  - 귀표 자가부착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지역 위탁기관에 귀표 자가부착농장 지정·신청
- 사육규모 및 관리능력 검토기준
  - 소(한·육우, 젖소) 50두 이상 사육농가

    * 소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농장에서 사육하는 모든 소의 마릿수
  - 각종 신고 이행상황 및 사업 참여도 등을 위탁기관에서 종합평가
- 시·도에 귀표 자가부착농가 지정신청
  - 위탁기관에서 사육규모 및 관리능력 검토결과와 농가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에 지정 신청
  - 기 지정된 자가부착농가는 그 내역을 반드시 시·도에 보고
- 귀표 자가부착농가 선정결과 통보
  - 관할 시·도에서 위탁기관의 신청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농가 선정 통보
  - 위탁기관에서는 해당 지정내역을 농가에 통보

## 귀표 자가부착농가 관리 방법

- 위탁기관은 자가부착농가로 지정한 사육농가로부터 ① 송아지 출생 등 신고를 받은 후 ② 출생 두수만큼 귀표를 농가에 배부하여 귀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③ 위탁기관에서는 농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가를 방문하여 귀표부착 여부, 개체식별번호 등 이력관리시스템 입력정보 6개 항목을 확인(특히 여러 마리의 소가 한꺼번에 출생 시 개체식별 정보가 뒤바뀌지 않도록 주의) ④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여 기록·관리

- 위탁기관은 귀표수불대장에 지정된 자가 부착 농가별로 귀표 수불내역을 기록·관리

- 위탁기관은 출생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소 귀표 부착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거자료를 농장경영자 등에 요청하여 기록·보관

- 귀표는 위탁기관에서 보관·관리하고 농가로부터 출생 등 신고를 받은 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육농가에 미리 귀표를 배부한 경우에는 귀표 배부 및 회수 내역을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귀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귀표 자가부착농가 승인·해제 업무 처리절차

- 자가 부착 농가 승인/거부

| 자가부착농가 지정 신청 **(이력관리시스템)** | 해당농가 적격여부검토 | 자가부착지정 승인/거부 **(이력관리시스템)** | 승인된 자가부착 농가관리 |
|---|---|---|---|
| 위탁기관 | 지자체 | 지자체 | 위탁기관 |

○ 자가 부착 농가 해제

| 귀표 자가부착 농가운영 실태점검 | 부적절 농가 지정해제 신청 **(이력관리시스템)** | 해당농가 검토 | 부적절 농가 지정해제 승인/거부 **(이력관리시스템)** | 농가관리 |
|---|---|---|---|---|
| 위탁기관 | 위탁기관 | 지자체 | 지자체 | 위탁기관 |

※ 위탁기관은 현재 운영중인 자가부착농가를 방문,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농가에 대해서는 자가부착농가 해제 신청

## 4. 귀표부착의 예외 조치

### 귀표부착 예외사항

-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된 경우

### 위탁기관 조치사항

- 해당개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한 후 '귀표부착예외확인서'를 발급 받아 귀표 미부착 조치

  ※ 단, 귀표는 발급해야 하며 해당하는 소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여 개체가 섞이거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당해 소가 귀표부착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용도가 변경되는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급된 귀표를 다시 부착

## 5. 탈락귀표 회수 및 처리 방법

### 귀표 회수대상

- 폐사된 개체의 귀표 (단, 법정 질병에 의한 귀표는 제외)
- 자연 탈락되어 발견된 귀표

### 귀표 회수방법 및 보관방법

- 회수방법 : 귀표 재장착 신고접수 시 탈락귀표 소지 여부 확인 후 재장착 방문 시 탈락귀표 회수 및 장착
- 보관방법
  - 실물보관 : 회수된 귀표는 소독한 후 밀봉하여 보관 (단, 회수된 귀표는 사람 이동이 적고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
  - 사진보관 : 이력관리시스템에 사진 등록

### 귀표 파쇄방법

- 회수된 귀표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도록 가위나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하거나 소각처리
- 파쇄 전 귀표사진과 작업내용(개체식별번호, 파쇄자, 파쇄일자 등)을 기록하여 책임자에게 결재받아 파쇄

### 질병방지를 위한 귀표 처리방법

- 법정 질병으로 폐사한 개체의 귀표는 회수금지
- 회수된 귀표를 실물로 보관 시 세척, 소독 후 밀봉하여 보관

### 귀표의 탈락 유형별 재부착 요령

- 인쇄형 1개 탈락 : 단추형 귀표에 인쇄되어 있는 개체식별번호를 수기로 재부착용 귀표에 표기하여 부착
- 단추형 1개 탈락 : 인쇄형 귀표에 인쇄되어 있는 개체식별번호를 수기로 재부착용 귀표에 표기하여 부착
- 2개 모두 탈락 :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농가가 사육중인 소에 부여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여 재부착용 귀표에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표기하여 양쪽 귀에 부착
-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귀표번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새로운 귀표를 소의 양쪽 귀에 부착하고 전산 등록(모개체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모개체 식별번호 등록허용 신청」 제출 후 등록)

## 참 고

# 개체식별번호 체계 및 귀표 관리요령

## 1. 목 적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 신고를 받은 소 또는 기존 소에 부착하는 귀표에 표시하는 개체식별번호의 체계를 정하고 귀표의 수급관리를 위해 개체식별번호 체계 및 귀표 관리요령에 대해 규정하여 시행한다.

## 2. 용어의 정의

가.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함

나. “개체식별번호”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

다. “귀표 등”이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 등으로 기재하여 귀나 그 밖의 곳에 부착 또는 표시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 등을 말함

라. “재부착용 귀표”란 개체식별번호가 인쇄되어 있지 않은 귀표로, 귀표 탈락 시 당해 가축의 개체식별번호를 수기로 기재하여 재부착하는 귀표

마. “위탁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소 사육농가의 출생 등 신고의 접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귀표 부착 지원, 신고정보에 대한 현황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바. 용어 정의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 제2조에 따른 정의에 의함.

## 3. 개체식별번호 체계 및 표시

### ❑ 개체식별번호의 체계

○ 국제가축기록위원회(ICAR)의 권고안에 따르고, 국가코드는 ISO 3166에 따라 3자리 문자를 사용한다.

○ 개체식별번호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소 사육농가 및 전산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순서에 의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표시한다.

○ 개체식별번호는 국가코드(KOR)를 포함하여 15자리로 구성하고, 국가 내에서 고유의 번호를 사용하며, 12자리는 숫자로 표시한다.

### ❑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 이 법 시행 전의 부여된 개체식별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은 그대로 적용하고, 이력제 시범사업 이후 부착하는 귀표에 표시하는 개체식별번호는 처음부터 다시 일련번호 부여한다.

- 이력관리제 시범사업 이후 부착하는 귀표에 표시하는 개체식별번호는 KOR에 이어 002를 표시하고 일련번호 8자리를 표시하고 마지막 숫자는 체크번호로 구성한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당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축검정사업, 가축개량사업, 가축공제사업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브루셀라병 검사용 등으로 귀표가 부착되어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해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한다.

○ 수입 신고된 소는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개체식별번호를 사용하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체식별번호와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

| 국가코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KOR | 0 | 0 | 0 | 8자리(종전 식별코드) | | | | | | | | ck |
| | 0 | 0 | 1 | 8자리(등록번호) | | | | | | | | ck |
| | 0 | 0 | 2 | 8자리(신규 식별코드) | | | | | | | | ck |
| 국가코드 | 확장코드 | | 코드 구분 | 일련번호 | | | | | | | | 체크 번호 |

※ 예시
- 종전 식별코드(123456784) 적용 소 : KOR 00 0 123456784
- 등록번호(123456784) 적용 소 : KOR 00 1 123456784
  * 등록번호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혈통등록을 위해 부여
- 신규 식별코드(000012348) 적용 소 : KOR 00 2 000012348
- 호주에서 수입한 소(123456789012) : AUS 123456789012

## 4. 귀표 구매 및 배부

### ❑ 귀표의 구매

○ 귀표는 귀표관리기관인 농협경제지주가 구매 공급한다.

○ 각 시·도는 관내 사육규모 및 귀표 부착두수, 재고량 등을 파악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규모 및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시·도별 귀표 소요량을 확정하고 이를 공급하도록 농협경제지주에 통보한다.

○ 구매절차

- 농협경제지주에서는 구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구매수량, 구매일정, 구매규격, 품질평가기준 등

- 귀표 규격, 품질 평가 등을 협의하기 위한 귀표품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귀표의 배부

○ 농협경제지주는 각 시·도가 신청한 내역에 따라 위탁기관에 배부하고, 배부 내역은 이력관리시스템 “귀표관리 메뉴”에 전산 등록한다.

○ 귀표를 수령한 위탁기관은 귀표수량 및 귀표번호를 확인,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농협경제지주(또는 귀표 공급업체)에 제출하고 이력관리시스템 “귀표관리 메뉴”에 ‘수령확인’ 전산등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귀표 수령·배부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귀표 배부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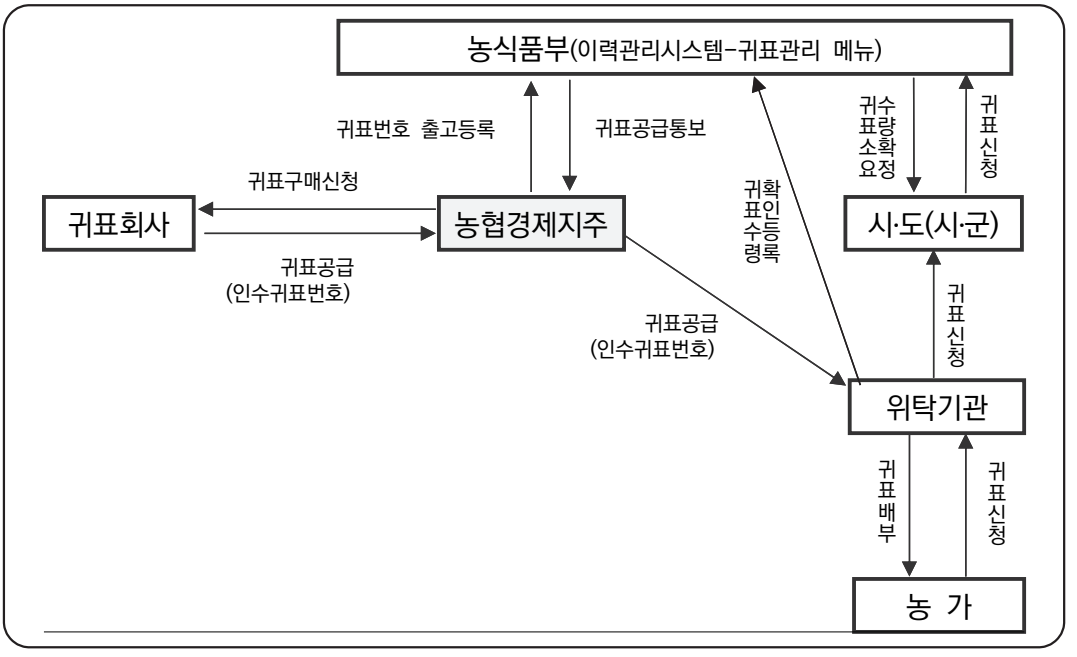


## 5. 귀표의 관리

❑ 귀표 재고관리

○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수령한 귀표는 위탁기관의 일정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관리자 지정

- 위탁기관의 장은 귀표관리업무를 총괄, 책임진다.
- 위탁기관의 장은 귀표관리업무 담당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 귀표의 폐기 사유(구제역 등)가 발생한 경우 사진첨부 및 책임자 결재 후 소각 처리 원칙

- 폐사 또는 탈락된 개체의 귀표는 위변조 되어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 위탁기관에서 반드시 회수하여 소각처리

  * 전염병으로 폐사한 경우에는 회수조치 예외

### ❑ 귀표 수불관리 및 재고조사

○ 귀표 수불관리는 귀표번호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귀표를 인수하거나 출고할 경우는 반드시 「귀표 수령·배부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재고조사

- 매월 말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귀표관리 책임자의 결재를 받고, 매분기 최종월 재고조사 결과는 귀표관리 책임자의 차 상위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전산시스템에 의한 수불관리 출력물과 대사하여 불일치하는 경우 원인을 규명하여 시정조치 한다.

## 6. 귀표의 부착

### ❑ 귀표 부착대상

○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소(한우, 육우, 젖소 등)가 해당되며, 다만, 관련 법 시행일 현재 소 관련 정책사업에 참여하여 전산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소는 본 사업에 의한 귀표를 부착한 것으로 인정한다.

※ 소의 종류 구분 기준

- 한우 : 종축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한우기준에 부합하는 소
- 젖소 : 착유하고 있거나 착유를 위하여 사육중인 소, 젖소 암소 중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소
- 육우 : 젖소 중 착유한 경험이 없는 암소, 젖소 암소 중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소, 젖소 수소, 그 밖의 식용 소
- 수입소 : 검역관이 수입소로 인정하는 소

### ❑ 귀표의 부착방법

○ 귀표의 부당사용 방지 및 통일을 기하고, 탈락에 대비하여 양쪽에 부착한다.

- 소를 기준으로 우측에 일반 인쇄형 귀표, 좌측에 단추형 귀표를 부착한다.
- 귀 앞쪽에 암(♀)귀표, 귀 뒤쪽에 수(♂)귀표를 부착한다.
- 귀 중앙부의 혈관을 피해서 부착기를 이용하여 부착한다.

○ 귀표 탈락시는 동일 귀표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농업C.I 엠블렘과 국가코드 KOR이 인쇄되어 있는 재부착용 귀표에 수기로 동일한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여 부착한다.(항상 2조 유지, 단추형 탈락 후는 모두 인쇄형을 부착)

**〈 귀표부착 오류사례 〉**

- 좌측 귀(인쇄형), 우측 귀(단추형)를 좌 - 우를 바꾸어 부착
- 인쇄형과 단추형의 암수를 서로 교차하여 부착
- 1두 2조를 부착하지 않고, 인쇄형 귀표만 부착(단추형 미부착)

### ❑ 귀표부착 의무자

○ 농장경영자 등은 송아지 출생 또는 기존 소 신고에 의하여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본인이 직접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에 기한 내에 신고하여 귀표를 부착하도록 한다.

○ 위탁기관은 농가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그 소에 대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동 개체식별번호가 표기된 귀표를 가지고 해당 농장을 방문하여 귀표를 부착 후 신고된 소 및 사육자 관련 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 전산등록사항 : 농가명, 주민등록번호, 사육지 주소, 전화번호, 소의 개체식별번호, 출생일, 성별, 축종 등

○ 귀표부착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기관은 동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 있는 다른 단체, 인공수정사, 사료회사 대리점 등에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귀표의 위·변조 및 훼손 등의 금지

○ 소의 귀에 부착된 귀표는 위·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귀표의 재부착

○ 귀표 재부착 요령

- 인쇄형 1개 탈락 : 단추형 귀표에 인쇄되어 있는 개체식별번호를 수기로 재부착용 귀표에 표기하여 부착한다.
- 단추형 1개 탈락 : 인쇄형 귀표에 인쇄되어 있는 개체식별번호를 수기로 재부착용 귀표에 표기하여 부착한다.
- 2개 모두 탈락 : 해당 농가의 개체식별번호 대장 조회를 통해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여 재부착용 귀표에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표기하여 양쪽 귀에 부착한다.

○ 귀표 재부착 사유 발생 시 위탁기관에 신고한다.

- 귀표 재부착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지체없이 해당 지역의 위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귀표의 재부착 및 전산등록

- 재부착 신고를 받은 위탁기관은 신고 접수 후 2주일 이내 재부착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의 「귀표 훼손·탈락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 탈락된 귀표를 반드시 회수하여 탈락된 귀표가 위·변조되어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다.
- 재부착용 귀표 부착 후 재부착된 귀표의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관리번호에 의해 전산 입력한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귀표 수령·배부 관리대장

(단위: 조)

| 연월일 | 수령 | | | 배부 | | | | 재고량 |
|---|---|---|---|---|---|---|---|---|
| | 귀표번호(개체식별번호) | | 수량 | 귀표번호(개체식별번호) | | 수량 | 수령자 (경영자명) | |
| | 시작 | 끝 | | 시작 | 끝 | | | |
| 전면 이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누계(월계) | | | | | | | | |

## 유의사항

1. 연월일: 귀표를 수령(인수) 또는 배부(출고)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2. 귀표번호(개체식별번호)
   가. 소: 인수받은 귀표번호의 처음과 끝 번호를 적습니다.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KOR 002 123456785 ⇒ 002 123456785

   나. 종돈: 농장식별번호 6자리 + 농장별 개체관리번호 6자리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100001000001
3. 수령자(경영자명): 위탁기관 또는 사육농가에서 귀표를 부착한 가축의 농장경영자 등을 적습니다.
4. 재고량: 현 재고량(직전 재고량 + 인수량 − 출고수량)을 적습니다.
5. 월계, 누계를 산출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재부착용 귀표 관리요령

### 1. 목 적

❑ '08.12.22.부터 시행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역별 위탁기관을 통해 부착하고 있는 귀표의 관리요령을 명확하게 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개체관리의 정확도 제고

### 2. 재부착용 귀표 부착 및 관리요령

❑ 1마리 소에 1조(일반형, 단추형)의 귀표 부착이 원칙, 즉 1마리의 소에는 반드시 1개의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되어야 함

❑ 1마리의 소에 부착된 일반형과 단추형 귀표의 탈락 시 조치요령

○ 일반형 귀표만 탈락된 경우

- 단추형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12자리)를 재부착용 귀표에 유성펜을 이용, 기입하여 소에 부착하고 위탁기관은 재부착용 귀표에 표시된 관리번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 단추형 귀표만 탈락된 경우

- 일반형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12자리)를 재부착용 귀표에 유성펜을 이용, 기입하여 소에 부착하고 위탁기관은 재부착용 귀표에 표시된 관리번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 일반형 귀표와 단추형 귀표가 모두 탈락된 경우

- 위탁기관을 통해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확인 가능한 경우
  - 재부착용 귀표에 유성펜을 이용, 기입하여 소의 귀에 각각 재부착용 귀표를 모두 부착하고 관리번호는 위탁기관에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 위탁기관이 아닌 방역사 등이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하는 경우 반드시 재부착용 귀표에 표시된 관리번호(6~7자리)를 지역 위탁기관에 통보
- 농가를 통해 개체식별번호는 확인이 되나 이력관리시스템에 해당 개체식별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농가와 위탁기관을 통해 소의 개체식별번호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 귀표를 부착한 위탁기관 등에서 이력지원실(1577-2633)로 해당 사실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하고, 새로운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소의 양쪽 귀에 부착하고,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조치

❑ 귀표부착을 위해 농가 방문 시 귀표가 탈락되는 경우 위탁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여 사육단계 개체식별번호 관리의 정확도 제고

❑ 귀표가 위·변조되어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탈락된 귀표는 지역 위탁기관에서 반드시 회수·소각

## 3. 재부착용 귀표의 이력관리시스템 등록 방법

❑ 재부착용 귀표에 표시된 관리번호

## 3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관리

### 1.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관리요령

#### 가.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작성

❍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 소 한 마리마다 개체식별번호, 출생일, 암수구분, 소재지, 사육개시일, 농장경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사항을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한다.

❍ 개체식별대장은 그 전부를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처리방식(**이력관리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한다.

**소의 출생 등 신고서 작성 방법**

- 출생 · 수입 · 수출신고는 ①~⑯란을 적습니다. ①~④란에는 농장경영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⑤~⑪란은 가축사육시설의 정보인 농장식별번호, 관리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⑬란의 소의 종류 및 ⑭란의 암수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⑮란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적고,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원산지란은 수입소만 해당합니다. ⑯ 모 개체식별번호는 “자가 생산란”에는 송아지의 모(母)의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자가 생산이 아닌 대리모를 통해 생산한 경우, 자가생산란에는 난소를 제공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적고, “대리모 생산”란에는 실제 출산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 양도·양수 및 이동(반입·반출) 신고는 ①~⑪란과 ⑰~㉓란을 적습니다. 또한, ⑰란의 양도(반입)·양수(반출)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⑳란의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는 양도·양수·이동되는 상대 가축사육시설의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 폐사신고는 ①~⑪란과 ㉔란을 적고, ㉖란의 폐사 원인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하며, ㉗란의 폐사처리방법은 매몰인 경우 장소를 적고, 폐기(소각, 재활용)인 경우 업체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 이 신고서는 경영자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마리의 출생 등 신고(기존 소의 신고를 포함합니다)를 할 경우 해당 신고 항목을 표시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작성 참고사항

  - 개체식별번호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KOR 002 123 456 785 ⇒ 002 123 456 785
  - 소의 종류 : 해당하는 숫자에 ○표 표시(1.한우, 2.젖소, 3.육우, 4.수입소)
    - 한우 : 종축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한우기준에 부합하는 소
    - 젖소 : 착유하고 있거나 착유를 위하여 사육중인 소, 젖소 암소 중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소
    - 육우 : 젖소 중 착유한 경험이 없는 암소, 젖소 암소 중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소, 젖소수소, 그 밖의 식용 소
    - 수입소(수입국명) : 동물검역관이 수입소로 인정하는 소
  - 부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의 아비 소의 개체식별번호(정액번호를 포함한다)
  - 모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를 분만한 어미 소의 개체식별번호(수정란 이식의 경우 난소를 제공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포함한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2. 31.〉

# [ ] 출생·수입·수출
# 소의 [ ] 양도·양수·이동 신고서
# [ ] 폐사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 | | |
|---|---|---|---|
| 공통신고사항 | 농장 경영자 등 정보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 ③ 법인 명칭 |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
| | | ④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가축 사육시설 정보 | ⑤ 농장식별번호 | ⑥ 위탁기관명 |
| | | ⑦ 사육시설 주소 | |
| | | ⑧ 사육 개시 연월일 | |
| | | ⑨ 관리자 성명 | ⑩ 관리자 생년월일 |
| | | ⑪ 관리자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 | |
|---|---|---|---|
| 출생 수입 수출 신고 | ⑫ 출생·수입·수출 연월일 | | ⑬ 소의 종류<br>1. 한우 2. 젖소 3. 육우 4. 수입소 5. 기타 |
| | ⑭ 암수 구분 | 1. 암 2. 수<br>3. 거세 4. 프리마틴 | ⑮ 부 개체식별번호 |
| | | | ⑯ 모 개체 식별번호 / 자가 생산 / 대리모 생산 |
| |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 | | ※ 원산지 |

| | | |
|---|---|---|
| 양도·양수 이동 (입고·출고) 신고 | ⑰ 양도(출고)·양수(입고) 구분<br>1. 양도(출고)<br>2. 양수(입고) | ⑱ 개체식별번호 |
| | ⑲ 양도(출고)·양수(입고) 연월일 및 장소 | ⑳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
| | ㉑ 양도자(출고자)·양수자(입고자) 성명(상호) | ㉒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㉓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 |
|---|---|---|
| 폐사 신고 | ㉔ 개체식별번호 | ㉕ 폐사일 |
| | ㉖ 폐사 원인 | 1.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2. 일반질병 3. 사고 4. 기타 |
| | ㉗ 폐사처리방법 | 1. 매몰(장소: ) 2. 폐기처리(업체명: , 전화번호: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전화번호

**○○축산업협동조합장**
**○○농업협동조합장**
**○○협동조합**
**○○법인(축산 관련 법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나.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변경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 제5조(출생 등의 신고)**

법 제4조, 제5조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을 거쳐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력지원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신고 사유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농장경영자는 출생·폐사, 양도·양수·이동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위탁기관을 거쳐 이력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신고대상

- 농장식별번호의 부여에 따라 신청한 내용 중 가축사육시설, 사육시설 등 변경된 사항이 있는 자
- 출생 등 신고에 따라 소의 출생, 폐사, 양도·양수·이동 신고내용과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 및 수출 내역, 가축시장 거래 내역에 대해 변경 및 누락·오류가 있어 수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

### ▢ 신고방법

- 변경신고를 하려고 자는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T.1577-2633)로 신고
- 변경된 사항 및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력지원실)에 제출

### ▢ 신고내용

- 변경신고
  - 식별대장에 기록된 내용 중 시행규칙 별지 '소의 출생 등 신고서'의 공통신고사항(성명, 위탁기관명, 법인명칭, 주민번호, 주소, 사육소재지, 사육개시일)중 일부가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서'에 의한 변경신고사유서(변경 사유란에 기재가능),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력지원실)에게 제출
- 기록·누락 오류 수정 신고
  - 기록·누락 오류 수정의 경우 농장경영자등의 성명, 주소, 연락처, 개체식별번호,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사항 및 새롭게 기록해야 하는 사항 등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 25.〉

# [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 [ ]소, 종돈의 출생
# [ ]소, 종돈의 폐사
# [ ]양도·양수·이동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수입·수출
# [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 [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 | | |

| | | |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 농장식별번호 | 전화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 |
|---|---|---|
|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 | | |
|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 | | |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변경사항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 | | |

변경 사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3항,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제6조제5항에 따라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종축등수출입 신고기관의 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및 담당직원 확인사항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

법 제21조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농장경영자, 도축경영자 등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을 거쳐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신고 사유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식별대장의 기록 누락이나 오류의 수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기록 누락이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식별대장의 기록을 수정하여야 한다.

### ▢ 신고대상

- 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소 및 쇠고기를 소유하는 농장경영자 및 도축업자 등

### ▢ 신고방법 및 조치사항

- 변경신고를 하려고 자는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소의 경우 위탁기관을 거쳐 제출하여야 함)
-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사항에 기초하여 식별대장의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관리할 수 있음

### ▢ 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의 조치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별대장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관련된 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영 12조 4항 제9호에 따라 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음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6. 28.〉

#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 ]수입유통식별대장 기록사항 [ ]변경신고서 [ ]수정요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 |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br>* 수입유통식별대장은 생년월일로 기재 |
| | 농장식별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
|---|---|---|
|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 | | |
|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 | | |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변경(수정)사항

| 구 분 | 변경(수정) 전 | 변경(수정) 후 |
|---|---|---|
| | | |
| | | |
| | | |
| | | |

변경(수정) 사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 따라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1.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사항 중 돼지의 사육현황에 관한 기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 서식을 사용하여도 됩니다.

| | | |
|---|---|---|
| 구비서류 | 1. 변경신고: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2. 수정요구: 기록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br>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다.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보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을 소의 도축일, 가공일, 폐사일부터 5년 동안 보존
  - 사육농가파일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5년(안전행정부 개인정보파일 목록/축산물 이력제 사육농가 파일)
- 위탁기관은 농가의 소의 출생 등 신고서 및 대리 신고서를 접수하여 선임자의 결재 후 5년간 보관

### 라. 이력정보 공개

- 대내·외 기관에서 이력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위탁기관에서 이력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단,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력정보를 요청하는 민사사건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이력지원실로 문의 후 정보 제공) → 판사의 명령(결정문) 또는 농가의 동의서 제출시 제공가능
- 농가에서 직접 본인의 자료를 조회 및 출력을 요청하는 경우 신원확인 후 제공 가능(단, 해당 농가의 정보만 제공 가능)
  - 근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 내부 조직 간에도 농가의 동의 없이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에 각별히 유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력정보의 공개 등)**

법 제25조 ③이 법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방역의 효율성이나 축산산업 발전 등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이력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제30조에 따라 이력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

**○○위탁기관**은 사육현황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안전행정부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제16조에 따라 아래 내용을 알리고 서명·날인한 동의서를 징구하고자 하오니 정보주체가 되시는 농장경영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위탁기관**은 사육현황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농장경영자 개인의 정보 이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위탁기관명, 법인명, 주민번호(사업자번호 포함), 주소, 전화번호(핸드폰번호 포함), 사육소재지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업무 처리 후 5년간 보관(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 농장경영자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필수항목의 수집·동의에 관하여 거부하실 경우 농장경영자께 **사육현황 등의 정보 제공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된 개인의 정보는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자필로 체크)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번호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번호의 종류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자필로 체크)  동의하지 않음 ☐

**[제3 자 제공에 대한 동의여부]** 본인의 고유식별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법원 또는 수사기관 | 농장주명, 농장명, 농장번호, 주민(사업자번호)번호, 우편번호, 사육지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출생 등의 신고에 기초하여 메일문자우편 발송,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력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보존기간 5년), 제공기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유기간 준용 |

※ 귀하께서는 상기사항에 대하여 제3자 제공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하실 경우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자필로 체크)  동의하지 않음 ☐

2020 년 ○월 ○일

동의인 :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위탁기관 장 귀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없는 위탁기관은 본 양식의 밑줄부분을 현장업무에 맞게 변경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방역의 효율성이나 축산업 발전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이력지원실과 협의 후 제공**

### 마.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파기

#### ▢ 전자문서

- ○ 파기절차
  -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 ○ 파기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 ○ 파기방법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한다.

#### ▢ 종이문서

- ○ 소의 출생 등 신고서(종이문서)는 내부문서관리 준칙에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 2.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변경신고 유의사항

### 가. 소의 사진 첨부 시 유의사항

현재 정보변경신고 업무 중 **폐사에서 사육으로 변경** 시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와 “소의 사진”을 함께 제출받고 있습니다.

소의 사진을 받는 이유는 해당 소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사진 첨부 시 소의 귀표번호와 살아있는 소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을 보내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 나. 수정란이식 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한우로 소의 종류 변경 시 제출서류**

- **한우기초(혈통)등록 증명서** 또는 **한우혈통정보확인서** 또는 **수정란이식 증명서**

※ 단, 수정란이식 증명서에는 송아지번호가 아닌 모개체(대리모)번호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모개체번호는 변경이 불가하며, 수정란을 이식한 대리모를 이력시스템에 모개체번호로 등록하고 변경신고서에도 꼭!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모개체 000 000000000번의 수정란 이식증명서 첨부.

## 다. 변경신고서 작성관련 유의사항

변경신고 접수 시 변경사유서나 변경하려는 사유를 필히 기재하고 해당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유 기재 시 변경이나 수정해야하는 사유를 꼭!!! 명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1〉 성별 변경 시 변경사유

- X : 성별변경/ 오류/ 개체변경
- O : 농가의 오신고/ 위탁기관의 오등록/ 해당 소를 거세함/ 양수한 개체로 최초등록 시 오등록됨 등.

예2〉 소의 종류(젖소→육우 3년 이상 사육) 변경 시 변경사유

- X : 농가에서 육우로 변경 요청함/ 교잡우/ 출하로 인해 변경요청.
- O : 분만경험이 없는 미경산우로 농가에서 육우로 변경 요청함/ 육우이나 농가의 오 신고로 젖소로 등록되었음. 분만이력이 있으나 해당 소는 교잡우이므로 육우로 변경 요청함 등.

예3〉 개체상태(폐사→사육) 변경 시 변경사유

■ 결재 접수를 위해 기재해야 되는 필수사항

1. 폐사 오신고(오등록) 주체 + 오신고(오등록) 된 구체적 사유
2. 해당 개체 사육으로 발견된 계기
3. 해당 개체 포함 총 사육두수 4.소 사진
   (사육중임이 확인되고 귀표번호까지 확인 가능)

- X : 폐사신고 오류/ 농가에 사육중인 개체임/ 출하로 인해 변경요청.
- O : 00농가에서 00.00.00일에 000(폐사사유)로 000 0000 0000 1번을 폐사신고 했으나 담당자 등록 시 00농가의 000 0000 0000 2번으로 오등록함. 00농가의 백신접종 중 사육 중인 개체로 확인되어 사육으로 변경 요청함. 폐사개체 000 0000 0000 1번 폐사등록완료. 등

**[참고]**

1. 변경사유를 미기재하거나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정보변경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부 결재건 등 특이 건에 대해서는 변경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해주셔야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정보변경신고 접수 후 변경사유나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거나 처리 불가 되지 않도록 참고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결제 대상〉**

- 소의 종류(젖소·육우→한우, 젖소→육우 3년 이상 사육) 변경
- 출생일자(암소 1년 이상, 동일농장 내 3건 이상) 변경
- 개체상태(폐사→사육) 변경 등

2. 도축장 출하 후 긴급으로 개체 정보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도축 전이 아닌, 변경사유 발생 즉시 정보변경신고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변경신고 첨부서류 및 견본

### 가. 홈페이지를 통한 변경업무

| 신고서 항목 | 변경 내역 | 첨부 서류 | 비 고 |
|---|---|---|---|
| ① 성명 | 농장주명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사본) 중 1부 | |
| ②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사본) 중 1부 | |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 |
| |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록증 | |
| ③ 법인명칭 | 법인명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록증 | |
| ④ 주소 | 주거지 주소/연락처 |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수정가능 | |
| ⑤ 농장식별번호 | 농장식별번호 변경 | 축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 | 새로운 농장 식별번호 부여 |
| ⑥ 위탁기관명 | 관리조합 이동/ 전산오류 등 | 변경 전 위탁기관장 사실 확인증명서 | |
| ⑦ 사육 소재지 | 사육지 주소 | 축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 | 변경신고서를 통해 변경가능 |
| ⑧ 사육 개시일 | 사육 개시일자 |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수정가능 | 위탁기관에서 지역에 상관 없이 변경 |
| ⑨~⑪ 관리자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 별도처리 안함 |
| ⑫ 출생(수입·수출) 연월일 | 출생일자 | 최초 신고자의 출생등신고서 | |
| ⑬ 소의종류변경 | 한우→젖소/육우 | 출생등신고서 또는 위탁기관장 사실 확인증명서 | 변경 전 소의 종류가 한우이고, 송아지도 한우인 경우 확인증명서 추가 첨부 |
| | 한우→육우(교잡) | 출생등신고서 또는 위탁기관장 사실 확인증명서와 소사진 | |
| | 젖소·→육우 (3년 미만) | 출생등신고서 또는 위탁기관장 사실 확인증명서 | 분만이력이 없는 미 경산우 |
| | 육우→젖소 | 출생등신고서 또는 위탁기관장 사실 확인증명서 | |
| ⑭ 암수구분 | 암↔수, 암/수↔거세 수·암↔기타 (프리마틴 등) | 출생등신고서 또는 위탁기관장 사실 확인증명서 | 위탁기관에서 [거세 등록]시 수 → 거세로 변경됨. |
| ⑮ 부 개체식별번호 | 등록 또는 수정 | 최초신고자의 출생등신고서 또는 위탁기관장 사실 확인증명서 | |
| ⑯ 모 개체식별번호 | 등록 또는 수정 | | |
| ⑰~㉓ 양도·양수 | 양도·양수 삭제 | 위탁기관장 사실 확인증명서 | |
| | 양도·양수 연월일 및 장소 등록/수정 | 출생등신고서(양도, 양수신고) 또는 위탁기관장 사실 확인증명서 | 필요시 가축시장 거래명세서 첨부 |
| ㉔~㉕ 폐사신고 | 폐사일자 수정 | 폐사증명서 또는 검안서 | |
| ㉖~㉗ 폐사일 | 폐사원인 수정 | | |
| 신고일자 | 신고일자 수정 | **※ 변경불가 출생 등 신고서(오류건)** | 전산오류 건에 한해 수정가능 |

## 나. 내부결재를 통한 변경업무

| 구 분 | 변경 내역 | 첨부 서류 | 비 고 |
|---|---|---|---|
| **소의 종류변경** | 젖소·육우→한우 | 한우기초(혈통)등록증명서, 한우혈통 정보확인서 또는 수정란이식증명서 등 | 단, 수정란이식증명서는 변경사유란에 모개체번호(12자리) 기재 필수 |
| | 3년이상 젖소→ 육우 | 수의사진단서 | 분만이력 없는 미 경산우의 경우**(브루셀라 : 밀크링 반응법 처리불가)** |
| | 젖소→육우(교잡) | - 36개월 미만 : 소 전체사진 (귀표포함)<br>- 36개월 이상 : 수의사진단서+ 소 전체사진 (귀표포함) | |
| **출생일자 변경** | 출생일자 변경기간이 1년 이상인 암소 | 수의사진단서 + 소의 출생등신고서 | |
| | 동일농장 다수 변경 | 소의 출생등신고서 | 동일농장 3두 이상 변경 시 |
| | 신고일자이후 변경 | **위탁기관장 공문(또는 수의사진단서)** + 출생등신고서 | |
| **개체상태 변경** | 폐사→사육 | 위탁기관장의 사실 확인증명서 + 소 사진 | **1년 이상 폐사 또는 재부착 귀표(전산 미등록) : 친자확인 또는 수의사의 진단서 및 위탁기관장 공문 등 추가 첨부 필요** |
| | 폐사→사육 | 시도 공문 +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 + 소 사진 | 구제역 관련 폐사개체 (법정전염병, 백신접종후유증 등) |
| **폐사정보 변경** | 폐사일자 및 폐사사유 등 | 시도 공문 + 폐사 진단(검안)서**(또는 랜더링 처리 확인서)** | |
| | 폐사개체의 모개체 | 위탁기관장 공문 +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 | * 별도서류 추가 될 수 있음 |
| **농장경영자 변경** | 농장경영자 인적사항 변경 | 위탁기관장공문 + 소의 출생등신고서 + 농장경영자변경사유서 | 사유서에 농장경영자의 서명날인+주민번호(13자리) 필수 |
| **이동제한예외우** | 이동제한 예외 처리 | **시도(시군구)공문 + 위탁기관장 공문** | * 별도서류 추가 될 수 있음 |

다. 첨부서류 견본

| 구 분 | 소의 종류 변경 | 변경 내역 | 젖소·육우 → 한우 |
|---|---|---|---|
| 첨부 서류 | 한우기초(혈통)등록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증명서<br>※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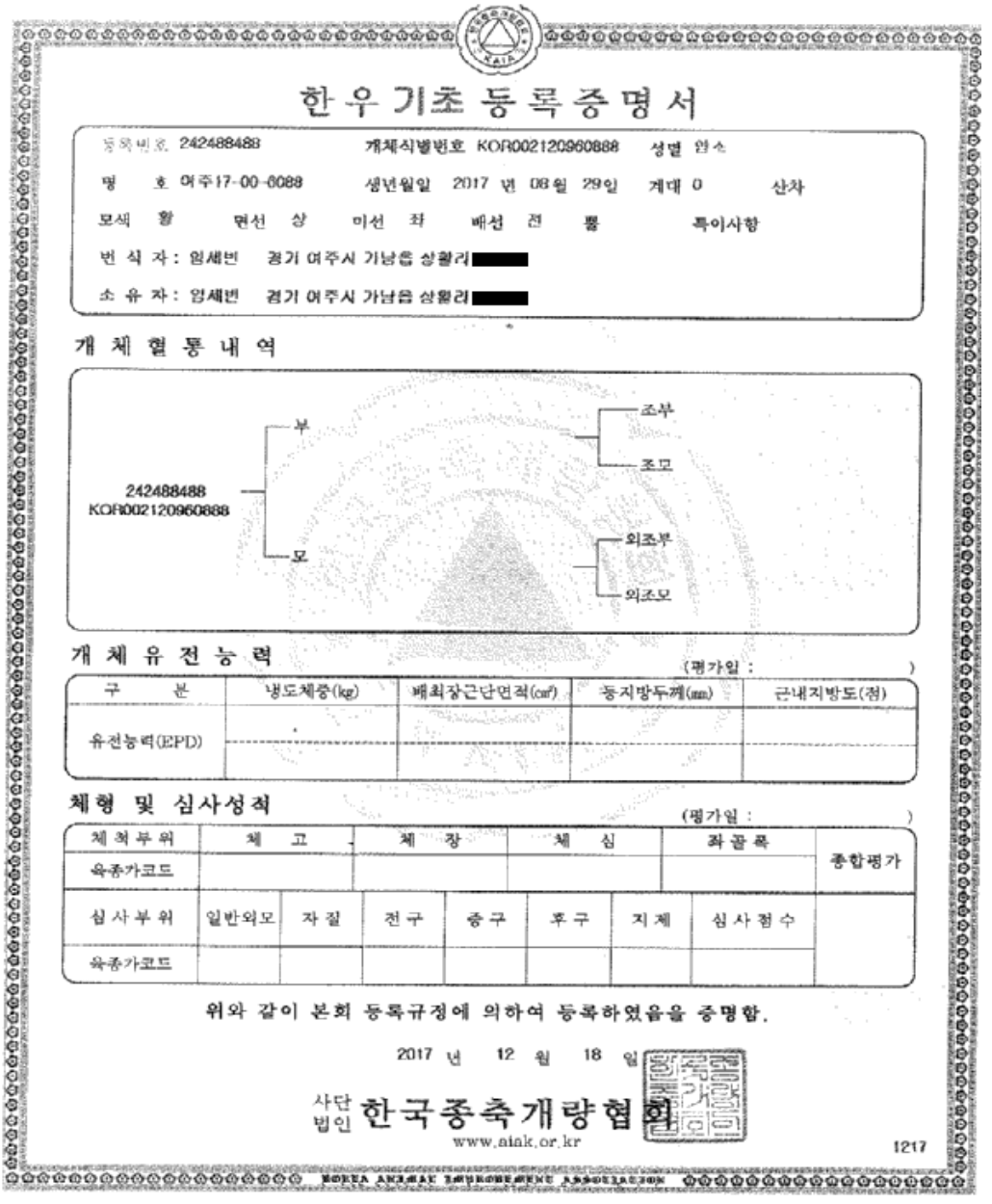

한우기초등록증명서

등록번호 242488488 개체식별번호 KOR002120960888 성별 암소

명 호 여주17-00-6088 생년월일 2017 년 08월 29일 계대 0 산차

모색 황 면선 상 미선 좌 배선 전 통 특이사항

번 식 자 : 임세빈 경기 여주시 가남읍 상활리 [redacted]

소 유 자 : 임세빈 경기 여주시 가남읍 상활리 [redacted]

개체혈통내역

242488488
KOR002120960888
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개체유전능력

(평가일 : )

| 구 분 | 냉도체중(kg) | 배최장근단면적(㎠) | 등지방두께(mm) | 근내지방도(점) |
|---|---|---|---|---|
| 유전능력(EPD) | | | | |

체형 및 심사성적

(평가일 : )

| 체척부위 | 체 고 | 체 장 | 체 심 | 좌골폭 | 종합평가 |
|---|---|---|---|---|---|
| 육종가코드 | | | | | |

| 심사부위 | 일반외모 | 자질 | 전구 | 중구 | 후구 | 지체 | 심사점수 |
|---|---|---|---|---|---|---|---|
| 육종가코드 | | | | | | | |

위와 같이 본회 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2017 년 12 월 18 일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www.aink.or.kr

1217

| 구 분 | 소의 종류 변경 | 변경 내역 | 젖소·육우 → 한우 |
|---|---|---|---|
| 첨부 서류 | 한우기초(혈통)등록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증명서<br>※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 | |

## 한우 혈통정보 확인서

| 등록번호 | 등록구분 | 생년월일 | 명호(이름) | 계대 | 개체식별번호 | 성별 | 등록일 |
|---|---|---|---|---|---|---|---|
| 229758659 | 혈통 | 2018-04-25 | 이천18-03-8428ET | 3 | 002125284283 | 암 | 2018-05-25 |

| 구분 | 정액번호 / 명호 | 생년월일 | 개체식별번호 | 등록구분 | 등록번호 |
|---|---|---|---|---|---|
| ┌ 조부 | KPN938 | 2009-09-06 | 002052884783 | 혈통 | 224517972 |
| 부 | KPN1060 | 2012-02-20 | 002076221372 | 고등 | 225876464 |
| └ 조모 | 순천08-05-5175 | 2008-03-25 | 002001951754 | 고등 | 223919160 |
| ┌ 외조부 | KPN730 | 2005-08-25 | 000189402169 | 고등 | 223106319 |
| 모 | 거창14-02-2006 | 2014-08-15 | 002094620060 | 혈통 | 227438060 |
| └ 외조모 | 거창09-01-1877 | 2009-05-29 | 002044318774 | 고등 | 224463179 |

| 번식자 성명 | 서동* | 번식자 주소 | 경기 이천시 장호원*** |
|---|---|---|---|
| 소유자 성명 | 서동* | 소유자 주소 | 경기 이천시 장호원*** |

상기 개체정보는 본회에 등록된 혈통정보임을 확인함.

2018년 10월 29일

(사) 한국종축개량협회

※ 본 확인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정보확인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구 분 | 소의 종류 변경 | 변경 내역 | 젖소·육우 → 한우 |
|---|---|---|---|
| 첨부 서류 | **한우기초(혈통)등록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증명서**<br>※ 단, 수정란이식증명서는 변경사유에 모개체번호 기재<br>(쌍태 : 수정란증명서 발급번호 중복불가)<br>※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 | |

(양축농가 보관용) 발급번호 : 183100123

## 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증명서

수정란증명

수정란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 미래축산영농조합법인

품 종 : 한우 원 산 지 : 한국 용도구분 : □ 자가, □ 학술

종모우 이름 : KPN1049 정액번호 : KPN1049 등록번호 : (고)225592891 개체식별번호 : 002069971098

| | | | | |
|---|---|---|---|---|
| 혈통 | 부 | KPN676 | 등록번호 | (고등)221895578 |
| | 조 부 | KPN369 | 등록번호 | (고등)221328326 |
| | 모 | 해남08-02-9109 | 등록번호 | (혈통)223798534 |
| | 외조부 | KPN538 | 등록번호 | (고등)221980275 |

공란우 이름 : 이천한우15-05-9112 등록번호 : (혈통)227645024 개체식별번호 : 002096791129

| | | | | |
|---|---|---|---|---|
| 혈통 | 부 | KPN920 | 등록번호 | (고등)224671582 |
| | 조 부 | KPN631 | 등록번호 | (고등)221712866 |
| | 모 | 이천한우12-04-3118 | 등록번호 | (혈통)225786273 |
| | 외조부 | KPN656 | 등록번호 | (혈통)224620457 |

공급하는 수정란의 혈통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확인 | 종 축 등 록 기 관 | 사단법인 | 한 국 종 축 개 량 협 회 |
|---|---|---|---|

수정란 이식증명

| | | | | |
|---|---|---|---|---|
| 대리모 및 사육자정보 | 성 명 | 최관영 | 주 소 (목장명) |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redacted] |
| | 등록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 | | | 002114357579 |
| 시술정보 | 시술일자 | 2017-12-05 | 시술횟수 | 1회 |
| | 상태 및 특기사항 | | | |

위와 같이 시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가축인공수정사·수의사 최 관 영 (인)

2018-10-09 2018-09-26

### 유전능력 참고자료

| | | | | |
|---|---|---|---|---|
| 수정란 예상 유전능력 | 일당증체량 | 배장근단면적 0.50 ㎠ | 근내지방도 0.09 | 도체율 |
| 등지방두께 1.00㎜ 신뢰도 | 외모점수 | 신뢰도 | | |
| 수정란 종모우 예상유전능력 | 일당증체량 | 배장근단면적 1.01 ㎠ | 근내지방도 0.18 | 도체율 |
| 등지방두께 1.99㎜ 신뢰도 | 외모점수 | 신뢰도 | | |
| 수정란 공란우 예상유전능력 | 일당증체량 | 배장근단면적 | 근내지방도 | 도체율 |
| | 등지방두께 | 신뢰도 | 외모점수 | 신뢰도 |

(주) 1. 이 증명서는 태어나는 송아지의 혈통을 등록하거나 자라서 수정시에 근친 번식을 피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기록된 증명서이니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구 분 | 소의 종류 변경 | 변경 내역 | 36개월령 이상 젖소 → 육우 |
|---|---|---|---|
| 첨부 서류 | **수의사 진단서**<br>※ 단, 분만이력이 없는 미경산우의 경우<br>(브루셀라 : 밀크링반응법은 육우 변경 불가) | | |

[별지 제4호의2] 〈개정 2019. 11. 8.〉

# 진 단 서

| | | |
|---|---|---|
| 동물 농장경영자<br>(관리인) | 성명 | |
| | 주소 | |
| 사육 장소 | | |
| 동물의 표시 | 종류 | 품종 |
| | 동물명(동물등록번호) | 성별 |
| | 연령 | 털색 |
| | 특징 | |
| 병명<br>임상적 추정[ ]<br>최종 진단[ ] | | |
| 발병 연월일<br>(임신 연월일) | | |
| 진단 연월일 | | |
| 주요 증상 | | |
| 치료명칭 | | |
| 입원·퇴원일 | | |
| 예후 소견 | | |
| 그 밖의 사항 | | |

「수의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물병원 명칭:

동물병원 주소: (전화번호 )

수의사 면허번호: 제 호 수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참 고 사 항

1. "병명"란에는 "임상적 추정"과 "최종진단" 중 택일하여 [ ]에 √ 표시를 하고, 병명은 한글로 적되 영어로 적을 경우에는 한글을 함께 적습니다.
2. 동물의 진단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로 촬영한 영상기록은 동물 농장경영자 또는 관리자가 다른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해당 동물병원의 개설자(수의사)에게만 직접 제공할 목적으로 동물병원 사이에 정보통신매체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구 분 | 소의 종류 변경 | 변경 내역 | 분만 이력 있는 젖소 → 육우(교잡우)<br>(※ 36개월령 이상) |
|---|---|---|---|
| 첨부 서류 | 수의사 진단서 + 소 전체사진(귀표포함) | | |

[별지 제4호의2] <개정 2019. 11. 8.>

진 단 서

| | | |
|---|---|---|
| 동물 소유자<br>(관리인) | 성명 | |
| | 주소 | |
| 사육 장소 | | |
| 동물의 표시 | 종류 | 품종 |
| | 동물명(동물등록번호) | 성별 |
| | 연령 | 털색 |
| | 특징 | |
| 병명<br>임상적 추정[ ]<br>최종 진단[ ] | | |
| 발병 연월일<br>(임신 연월일) | | |
| 진단 연월일 | | |
| 주요 증상 | | |
| 치료명칭 | | |
| 입원·퇴원일 | | |
| 예후 소견 | | |
| 그 밖의 사항 | | |

「수의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물병원 명칭:

동물병원 주소: (전화번호 )

수의사 면허번호: 제 호 수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참 고 사 항

1. "병명"란에는 "임상적 추정"과 "최종진단" 중 택일하여 [ ]에 √ 표시를 하고, 병명은 한글로 적되 영어로 적을 경우에는 한글을 함께 적습니다.
2. 동물의 진단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로 촬영한 영상기록은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른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해당 동물병원의 개설자(수의사)에게만 직접 제공할 목적으로 동물병원 사이에 정보통신망체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구 분 | 소의 종류 변경 | 변경 내역 | 분만이력 있는 젖소 → 육우(교잡우)<br>(※ 36개월령 미만) |
|---|---|---|---|
| 첨부 서류 |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 + 소 전체사진(귀표포함) | | |

변경신고 접수 번호 0 1 0 8 7 3 2 4

위 탁 기 관 장 의 사 실 확 인 증 명 서

☐ 위탁기관명 : 경주축산업협동조합

☐ 위탁기관 담당자 : 김미경( Tel. 054- )

☐ 사육농가 인적사항

| 소 유 주 | 농 장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사 육 지 |
|---|---|---|---|
| 방영희 | 방영희 | 530310-1******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물천리 ( 054- ) |

☐ 사실확인 내역

| 개체식별번호 | 변경항목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002 0965 6245 9 | 소의종류 변경 | 젖소 | 육우 |

상 기 내 용 이 이 상 없 음 을 확 인 합 니 다 .

2 0 1 8 년 0 7 월 0 5 일

경 주 축 산 업 협 동 조 합 위 탁 기 관 장

| 구 분 | 출생일자 변경 | 변경 내역 | 출생일자 변경기간이 1년 이상인 암소 |
|---|---|---|---|
| 첨부 서류 | 수의사 진단서 + 소의 출생등신고서<br>※ 농장 경영자의 주민번호 : 13자리 모두 기재(소의 출생 등 신고서) | | |

[별지 제4호의2] <개정 2019. 11. 8.>

## 진 단 서

| | | |
|---|---|---|
| 동물 소유자 (관리인) | 성명 | |
| | 주소 | |
| 사육 장소 | | |
| 동물의 표시 | 종류 | 품종 |
| | 동물명(동물등록번호) | 성별 |
| | 연령 | 털색 |
| | 특징 | |
| 병명<br>임상적 추정[ ]<br>최종 진단[ ] | | |
| 발병 연월일<br>(임신 연월일) | | |
| 진단 연월일 | | |
| 주요 증상 | | |
| 치료명칭 | | |
| 입원·퇴원일 | | |
| 예후 소견 | | |
| 그 밖의 사항 | | |

「수의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물병원 명칭:

동물병원 주소: (전화번호 )

수의사 면허번호: 제 호 수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참 고 사 항

1. "병명"란에는 "임상적 추정"과 "최종진단" 중 택일하여 [ ]에 √ 표시를 하고, 병명은 한글로 적되 영어로 적을 경우에는 한글을 함께 적습니다.
2. 동물의 진단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로 촬영한 영상기록은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른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해당 동물병원의 개설자(수의사)에게만 직접 제공할 목적으로 동물병원 사이에 정보통신망체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V ] 출생·수입·수출
[ ] 양도·양수·이동
[ ] 폐사

## 소의 신고서

(앞 쪽)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2018-03-00644 | 접수일 | 2018-03-19 | 발급일 | 2018-03-19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
|---|---|---|---|---|
| 공통 신고 사항 | 농장 경영자 정보 | (1) 성 명 | 정옥현 | (2)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610525-2[redacted] |
| | | (3) 법인명칭 | 정옥현 | |
| | | (4) 주소 | (도로명)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화계봉산길 [redacted](달산리)<br>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달산리 [redacted]번지<br>(전화번호:054-[redacted], 휴대전화번호:010-[redacted]) | |
| | 가축 사육시설 정보 | (5) 농장식별번호 | 735180 | (6) 위탁기관명 군위축산업협동조합 |
| | | (7) 사육시설소재지 | (도로명)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화계봉산길 [redacted]<br>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달산리 [redacted] | |
| | | (8) 사육 개시 연월일 | 2008-08-12 | |
| | | (9) 관리자 성명 | 정옥현 | (10) 관리자 주민등록번호 610525-2[redacted] |
| | | (11) 관리자 주소 | (도로명)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화계봉산길 [redacted]<br>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달산리 [redacted]<br>(전화번호:054-[redacted], 휴대전화번호:010-[redacted]) | |

| | | | | |
|---|---|---|---|---|
| 출생·수입·수출 신고 | (12) 출생·수입·수출 연월일 | 2018-03-17 | (13) 소의종류 | ☑ 1. 한우 ☐ 2. 젖소 ☐ 3. 육우 ☐ 4. 수입소 ☐ 5. 기타 |
| | (14) 암수 구분 | ☑ 1. 암<br>☐ 2. 수<br>☐ 3. 거세<br>☐ 4. 프리마틴 | (15) 부 개체식별번호 | |
| | | | (16) 모 개체식별번호 | 자가 생산 002 0989 4741 9<br>웹리모 생산 |
| |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 | 002 1278 1950 1 | ※ 원산지 | |

| | | | |
|---|---|---|---|
| 양도·양수 이동 (반출·반입) 신고 | (17) 양도(반출)·양수(반입)구분 | ☐ 1. 양도(반출)<br>☐ 2. 양수(반입) | (18) 개체 식별번호 |
| | (19) 양도(반출)·양수(반입) 연월일 및 장소 | | (20) 농장식별번호 |
| | (21) 양도자(반출자)·양수자(반입자) 성명(상호) | | (22)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법인등록번호) |
| | (23)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 | | | |
|---|---|---|---|---|
| 폐사신고 | (24) 개체식별번호 | | (25) 폐사일 | |
| | (26) 폐사원인 | ☐ 1. 법정전염병 살처분 ☐ 2. 일반질병 ☐ 3. 사고 ☐ 4. 기타 | | |
| | (27) 폐사처리방법 | ☐ 1. 매몰(장소 : ) ☐ 2. 폐기처리(업체명 : , 전화번호 : )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8년 03월 19일

신고인 정옥현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한미순

대리 신고인 연락처 054-[redacted]

군위축산업협동조합 귀하

| 구 분 | 출생일자 변경 | 변경 내역 | 동일농장(3두 이상)의 다수 개체 변경 |
|---|---|---|---|
| 첨부 서류 | 소의 출생등신고서<br>※ 농장 경영자의 주민번호 : 13자리 모두 기재 | | |

[ V ] 출생·수입·수출
소의 [ ] 양도·양수·이동 신고서
[ ] 폐사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2018-08-02563 | 2018-08-01 | 2018-10-02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 |
|---|---|---|---|---|---|
| 공통 신고 사항 | 농장 경영자 정보 | (1) 성 명 | 이승준 | (2)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820607-1[redacted] |
| | | (3) 법인명칭 | 이승준 | | |
| | | (4) 주소 | (도로명)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소음방로 [redacted](황산리)<br>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redacted]번지<br>(전화번호:063-[redacted], 휴대전화번호:010-[redacted]) | | |
| | 가축 사육시설 정보 | (5) 농장식별번호 | 515081 | (6) 위탁기관명 |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 |
| | | (7) 사육시설소재지 | (도로명)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소음방로 [redacted]<br>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redacted] | | |
| | | (8) 사육 개시 연월일 | 2008-12-17 | | |
| | | (9) 관리자 성명 | 이승준 | (10) 관리자 주민등록번호 | 820607-1[redacted] |
| | | (11) 관리자 주소 | (도로명)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소음방로 [redacted]<br>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황산리 [redacted]<br>(전화번호:010-[redacted], 휴대전화번호:010-[redacted]) | | |

| | | | | |
|---|---|---|---|---|
| 출생 수입 수출 신고 | (12) 출생 · 수입 · 수출 연월일 | 2018-06-27 | (13) 소의종류 | ☑ 1. 한우 ☐ 2. 젖소 ☐ 3. 육우 ☐ 4. 수입소 ☐ 5. 기타 |
| | (14) 암수 구분 | ☑ 1. 암 ☐ 2. 수 ☐ 3. 거세 ☐ 4. 프리마틴 | (15) 부 개체식별번호 | |
| | | | (16) 모 개체식별번호 | 자가 생산 002 1053 8273 3<br>대리모 생산 |
| |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 | 002 1330 5512 3 | ※ 원산지 | |

| | | |
|---|---|---|
| 양도 · 양수 이동 (반출 · 반입) 신고 | (17) 양도(반출) · 양수(반입)구분<br>☐ 1. 양도(반출)<br>☐ 2. 양수(반입) | (18) 개체 식별번호 |
| | (19) 양도(반출) · 양수(반입) 연월일 및 장소 | (20) 농장식별번호 |
| | (21) 양도자(반출자) · 양수자(반입자) 성명(상호) | (22)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법인등록번호) |
| | (23) 주소<br>(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 | | | |
|---|---|---|---|---|
| 폐사신고 | (24) 개체식별번호 | | (25) 폐사일 | |
| | (26) 폐사원인 | ☐ 1.법정전염병 살처분 ☐ 2.일반질병 ☐ 3.사고 ☐ 4.기타 | | |
| | (27) 폐사처리방법 | ☐ 1.매몰(장소 : ) ☐ 2. 폐기처리(업체명 : , 전화번호 : )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8년 08월 01일

신고인 이승준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김형훈
대리 신고인 연락처 063-[redacted]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 귀하

| 구 분 | 출생일자 변경 | 변경 내역 | 신고일자 이후 변경 |
|---|---|---|---|
| 첨부 서류 | **위탁기관장 공문(또는 수의사 진단서) + 소의 출생등 신고서**<br>※ 농장 경영자의 주민번호 : 13자리 모두 기재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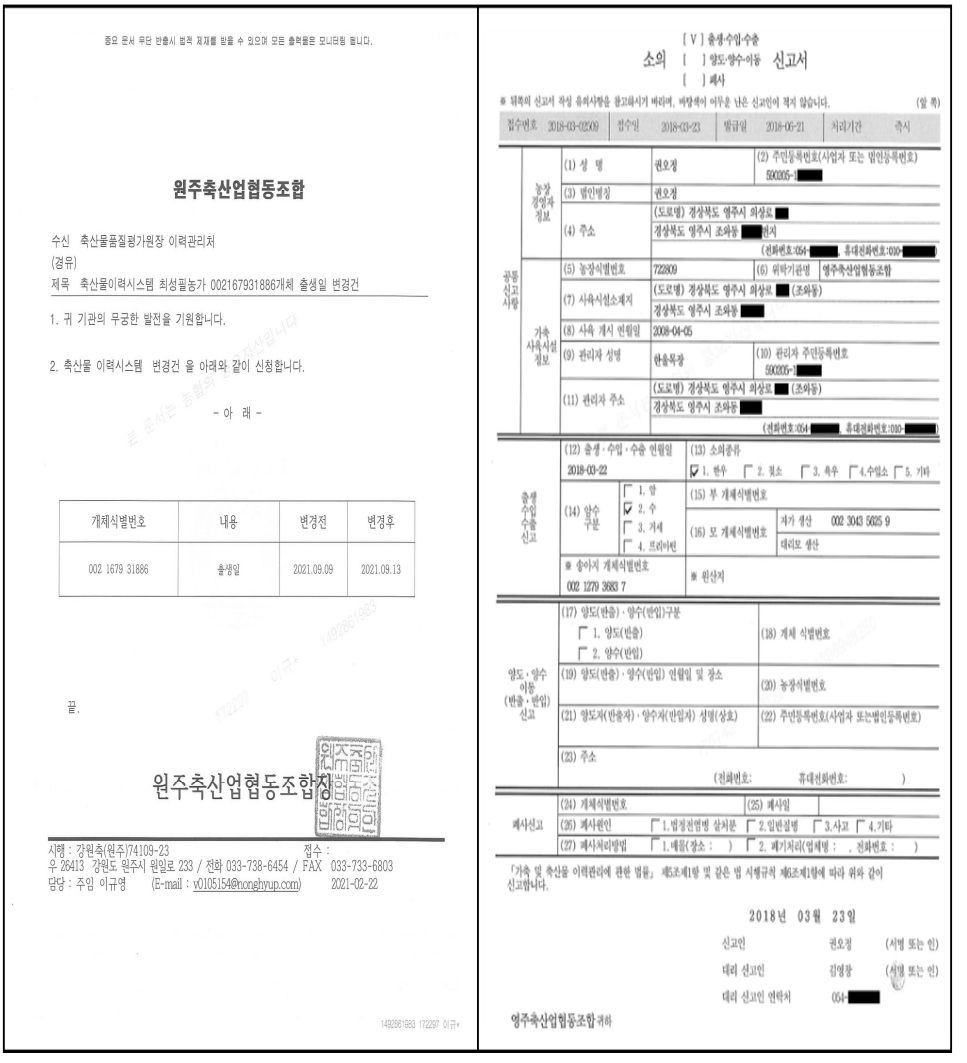

중요 문서 무단 반출시 법적 재재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출력물은 모니터링 됩니다.

**원주축산업협동조합**

수신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이력관리처
(경유)
제목 축산물이력시스템 최성필농가 002167931886개체 출생일 변경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축산물 이력시스템 변경건 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아 래 -

| 개체식별번호 | 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 002 1679 31886 | 출생일 | 2021.09.09 | 2021.09.13 |

끝.

원주축산업협동조합장

시행 : 강원축(원주)74109-23 접수 :
우 26413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233 / 전화 033-738-6454 / FAX 033-733-6803
담당 : 주임 이규영 (E-mail : y0105154@nonghyup.com) 2021-02-22

[ V ] 출생·수입·수출
소의 [ ] 양도·양수·이동 신고서
[ ] 폐사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 2018-03-02509 | 접수일 | 2018-03-23 | 발급일 | 2018-05-21 | 처리기간 | 즉시 |
|---|---|---|---|---|---|---|---|

농장 경영자 정보
(1) 성 명: 권오정 / (2)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590205-1[redacted]
(3) 법인명칭: 권오정
(4) 주소: (도로명) 경상북도 영주시 화상로 [redacted] / 경상북도 영주시 조와동 [redacted]길
(전화번호:054-[redacted], 휴대전화번호:010-[redacted])

공통 신고 사항
(5) 농장식별번호: 722809 / (6) 위탁기관명: 영주축산업협동조합
가축 사육시설 정보
(7) 사육시설소재지: (도로명) 경상북도 영주시 화상로 [redacted] (조와동) / 경상북도 영주시 조와동 [redacted]
(8) 사육 개시 연월일: 2008-04-05
(9) 관리자 성명: 한을목장 / (10) 관리자 주민등록번호: 590205-1[redacted]
(11) 관리자 주소: (도로명) 경상북도 영주시 화상로 [redacted] (조와동) / 경상북도 영주시 조와동 [redacted]
(전화번호:054-[redacted], 휴대전화번호:010-[redacted])

출생·수입·수출 신고
(12) 출생·수입·수출 연월일: 2018-03-22
(13) 소의종류: ☑ 1. 한우 ☐ 2. 젖소 ☐ 3. 육우 ☐ 4. 수입소 ☐ 5. 기타
(14) 암수 구분: ☐ 1. 암 ☑ 2. 수 ☐ 3. 거세 ☐ 4. 프리마틴
(15) 부 개체식별번호
(16) 모 개체식별번호: 자가 생산 002 3043 5625 9 / 대리모 생산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 002 1279 3883 7
※ 원산지

양도·양수 이동 (반출·반입) 신고
(17) 양도(반출)·양수(반입)구분: ☐ 1. 양도(반출) ☐ 2. 양수(반입)
(18) 개체 식별번호
(19) 양도(반출)·양수(반입) 연월일 및 장소
(20) 농장식별번호
(21) 양도자(반출자)·양수자(반입자) 성명(상호)
(22)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법인등록번호)
(23)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폐사신고
(24) 개체식별번호 / (25) 폐사일
(26) 폐사원인: ☐ 1.법정전염병 살처분 ☐ 2.일반질병 ☐ 3.사고 ☐ 4.기타
(27) 폐사처리방법: ☐ 1.매몰(장소 : ) ☐ 2. 폐기처리(업체명 : , 전화번호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8년 03월 23일

신고인 권오정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김영창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연락처 054-[redacted]

영주축산업협동조합 귀하

| 구 분 | 개체상태 변경 | 변경 내역 | 폐사 → 사육 |
|---|---|---|---|
| 첨부 서류 |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 + 소 사진**<br>※ 단, 구제역 관련(법정전염병, 백신접종 후유증 등) 폐사의 경우 [시도(시군구)공문] 추가 첨부 필요 | | |

변경신고 접수번호 0 1 0 7 1 1 0 1

위 탁 기 관 장 의 사 실 확 인 증 명 서

□ 위탁기관명 :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위탁기관 담당자 : 고경희( Tel. 064 )

□ 사육농가 인적사항

| 소유주 | 농장명 | 주민등록번호 | 사육지 |
|---|---|---|---|
| 남경우 | 남경우 | 481107-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 064 ) |

□ 사실확인 내역

| 개체식별번호 | 변경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 개체상태변경(002086733736) | 폐사 | 사육 |

상 기 내 용 이 이 상 없 음 을 확 인 합 니 다 .

2 0 1 8 년 0 4 월 1 7 일

제 주 축 산 업 협 동 조 합 위 탁 기 관 장

| 구 분 | 개체상태 변경 | 변경 내역 | 폐사 → 사육 |
|---|---|---|---|
| 첨부 서류 | 위탁기관장의 사실 확인증명서 + 소 사진 + 추가서류(친자확인 또는 수의사의 진단서 및 위탁기관장 공문 등) 첨부 필요<br>※ 폐사일로부터 1년 이상 또는 재부착 귀표(전산 미등록)의 경우 등 | | |

"Eco-Green 2020 Only One 대한민국 협동조합 리더"

##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수신 :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

(경유)

제목 : 소 폐사신고변경 요청의 건.

1.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우리조합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변경사항

| 개체번호 | 소유자주소 | 소유자 | 변경(수정) 전 | 변경(수정) 후 | 비고 |
|---|---|---|---|---|---|
| 002 3089 2776 0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청초리 515 | 홍은수 (481103-1******) | 폐사 | 사육중 | |

나.변경(수정)사유

- 위 개체는 농가에서 개체확인중 개체가 보이지 않아 폐사로 오인신고 하였으나 백신접종시 발견되어 신청 함.
- 농장에서 관리하는 장부로 확인함.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장

시행 : 경기축(수원)71101- ■ (`18.09.03)
우 16488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89 / 전화 031-230-4159/ FAX 031-238-7821
담당 : 대리 장현상 (E-mail : nh1707f5-3@nonghyup.com)

| 구 분 | 개체상태 변경 | 변경 내역 | 구제역 관련 폐사 → 사육 |
|---|---|---|---|
| 첨부 서류 | 시도(시군구)공문 + 위탁기관장 사실확인 증명서 + 소 사진<br>※ 공문(붙임)에 사육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체가 있으면 처리불가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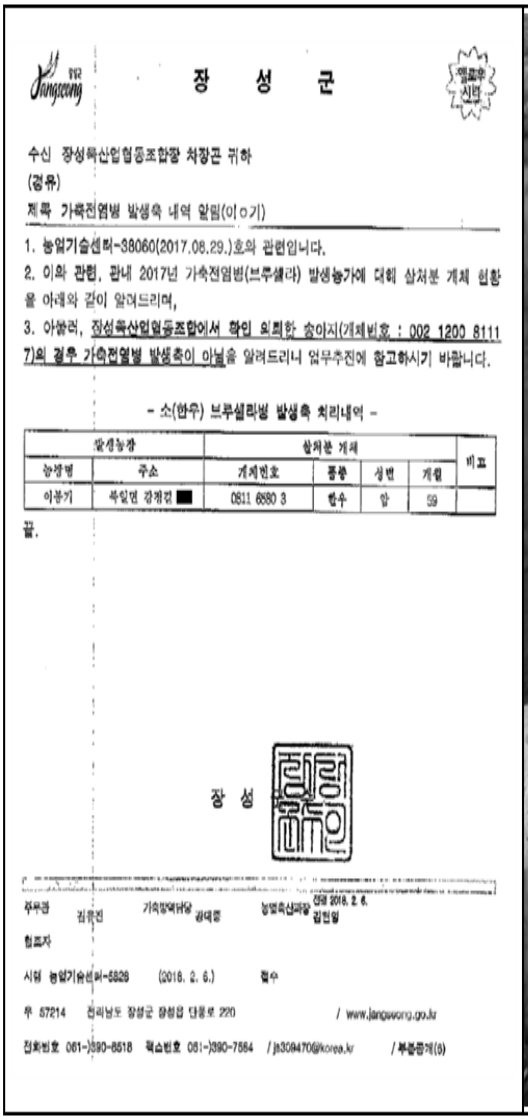

Jangseong 장 성 군

수신 장성축산업협동조합장 차장곤 귀하
(경유)
제목 가축전염병 발생축 내역 알림(이ㅇ기)

1. 농업기술센터-38060(2017.08.29.)호와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 관내 2017년 가축전염병(브루셀라) 발생농가에 대해 살처분 개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3. 아울러, 장성축산업협동조합에서 확인 의뢰한 송아지(개체번호 : 002 1200 8111 7)의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축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한우) 브루셀라병 발생축 처리내역 -

| 발생농장 | | 살처분 개체 | | | | 비고 |
|---|---|---|---|---|---|---|
| 농장명 | 주소 | 개체번호 | 품종 | 성별 | 개월 | |
| 이봉기 | 북일면 강정길 [redacted] | 0811 6880 3 | 한우 | 암 | 59 | |

끝.

장 성 군

주무관 김유진 가축방역담당 강대중 농업축산과장 전결 2018. 2. 6. 김현일

협조자

시행 농업기술센터-5828 (2018. 2. 6.) 접수

우 57214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0 / www.jangseong.go.kr

전화번호 061-)390-6518 팩스번호 061-)390-7584 / js309470@korea.kr / 부분공개(6)

| 구 분 | 폐사정보 변경 | 변경 내역 | 폐사일자 및 폐사사유 등 |
|---|---|---|---|
| 첨부 서류 | 시도(시군구)공문 + 폐사진단(검안)서(랜더링 처리 확인서 등)<br>※ 구제역 관련(법정 전염병, 백신접종 후유증 등)폐사 일 경우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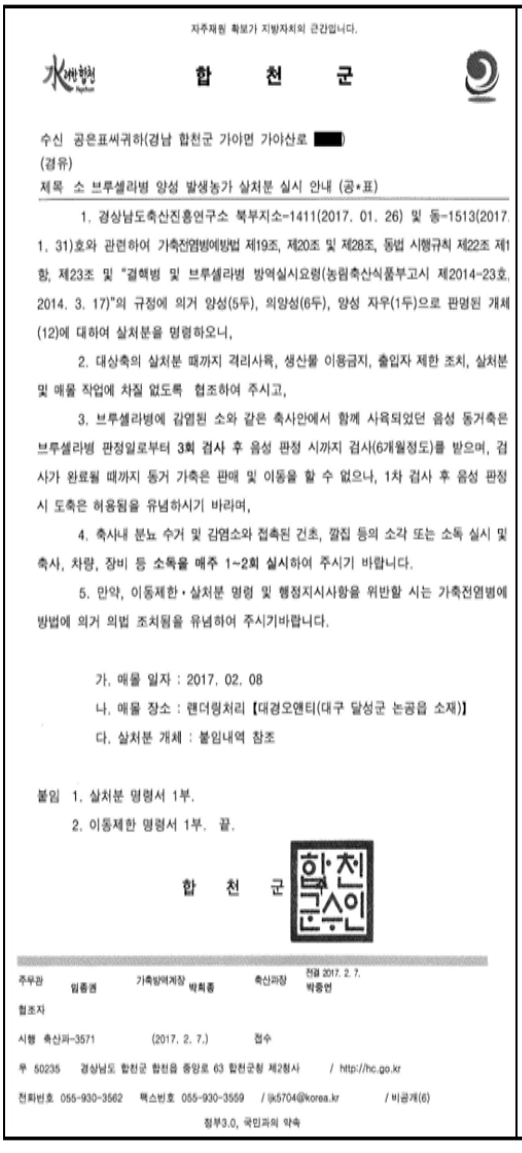

지주재원 확보가 지방자치의 근간입니다.

水생행 **합 천 군**

수신 공은표씨귀하(경남 합천군 가아면 가아산로 [redacted]
(경유)
제목 소 브루셀라병 양성 발생농가 살처분 실시 안내 (공*표)

1.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1411(2017. 01. 26) 및 동-1513(2017. 1. 31)호와 관련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20조 및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23조 및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3호, 2014. 3. 17)"의 규정에 의거 양성(5두), 의양성(6두), 양성 자우(1두)으로 판명된 개체(12)에 대하여 살처분을 명령하오니,

2. 대상축의 살처분 때까지 격리사육, 생산물 이용금지, 출입자 제한 조치, 살처분 및 매몰 작업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3.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와 같은 축사안에서 함께 사육되었던 음성 동거축은 브루셀라병 판정일로부터 **3회 검사 후** 음성 판정 시까지 검사(6개월정도)를 받으며,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동거 가축은 판매 및 이동을 할 수 없으나, 1차 검사 후 음성 판정 시 도축은 허용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4. 축사내 분뇨 수거 및 감염소와 접촉된 긴초, 깔집 등의 소각 또는 소독 실시 및 축사, 차량, 장비 등 **소독을 매주 1~2회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약, 이동제한·살처분 명령 및 행정지시사항을 위반할 시는 가축전염병에 방법에 의거 의법 조치됨을 유념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매몰 일자 : 2017. 02. 08
나. 매몰 장소 : 랜더링처리 【대경오앤티(대구 달성군 논공읍 소재)】
다. 살처분 개체 : 붙임내역 참조

붙임 1. 살처분 명령서 1부.
2. 이동제한 명령서 1부. 끝.

합 천 군 합천군수인

주무관 임종권 가축방역계장 박희종 축산과장 전결 2017. 2. 7. 박종번
협조자
시행 축산과-3571 (2017. 2. 7.) 접수
우 50235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63 합천군청 제2청사 / http://hc.go.kr
전화번호 055-930-3562 팩스번호 055-930-3559 / ijk5704@korea.kr / 비공개(6)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호

## 살처분 가축 랜더링 처리 확인서

| | |
|---|---|
| ○ 업체명 : (주) 대경오앤티 (대구지점) | ○ 대 표 자 : 김 창 윤 |
| ○ 소재지 : 대구 달성 논공 본리 [redacted] | ○ 전화번호 : 053[redacted] |
| ○ 폐기 사유 : 브루셀라병 | ○ 처리 장소(랜더링 처리업체)<br>합천군청 ⇒ (주)대경오앤티 |
| ○ 처리 일자 : 2017.02.08. | |

| 축 종 | 품 종 | 성 별 | 처리 두수 | 생체중량 | 비 고 |
|---|---|---|---|---|---|
| 소 | 한우 | 암 | 1(25개월) | 530kg | 002 0965 9741 8 |
| | | 거세 | 1(24개월) | 2,430kg | 002 0973 5410 8 |
| | | | 1(21개월) | | 002 1001 1565 5 |
| | | | 1(24개월) | | 002 3108 0931 0 |
| | | | 1(24개월) | | 002 3108 0935 2 |
| | | 수 | 1(2개월) | | 002 1129 7999 1 |
| 계 | | | 6 | 2,960kg | |

상기의 살처분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랜더링 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2월 8일

확인자 : 관 리 부 담 당 자 최 인 실 (인)

(주)대경오앤티 대 표 자 김 창 윤 (인)

| 구 분 | 폐사정보 변경 | 변경 내역 | 폐사개체의 모개체 |
|---|---|---|---|
| 첨부 서류 | 위탁기관장 공문 + 위탁기관장 사실 확인증명서<br>※ 그 외, 별도 서류 추가될 수 있음 | | |

"농심(農心)을 가슴에 안고 농민(農民) 곁으로!"

또하나의 마을

세종공주축산농협

수신 :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처
(경유)
제목 : 쇠고기 이력제 모개체 오신고 오류 수정 보고의 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폐사된 개체 (002 1271 1817 1)출생등록 하는 과정에 모개체를 002 1082 9130 0 개체번호로 잘못 등록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요청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농장명 : 이종서
나. 변경 내용

| 농가명 | 송아지 개체번호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비고 |
|---|---|---|---|---|---|
| | | 모개체 | 모개체 | | |
| 이종서 | 002 1271 1817 1 | 002 1082 9130 0 | 002 1082 9132 6 | 최초 농가의 오신고로 인한 모개체변경 | 폐사된 개체 |
| 이종서 | 002 1271 2295 6 | 002 1082 9132 6 | 002 1082 9130 0 | | |

세종공주축산업협동조합장

시행 : 충남축(세종공주)74103 - [redacted] 접수 :
우 32584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42 / 전화 041-850-4801 / FAX 041-852-4997
담당 : 일반행직 이수명 (E-mail : overthesun7@nonghyup.com) / 공개구분 : 부서공유

변경신고 접수 번호 0 1 0 8 4 5 7 0

위 탁 기 관 장 의 사 실 확 인 증 명 서

□ 위탁기관명 : 세종공주축산업협동조합

□ 위탁기관 담당자 : 이상훈( Tel. 041 )

□ 사육농가 인적사항

| 소 유 주 | 농 장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사 육 지 |
|---|---|---|---|
| 이종서 | 이종서 | 620717-1******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 041 ) |

□ 사실확인 내역

| 개체식별번호 | 변경항목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002 1271 2295 6 | 모개체 변경 | [002] 1082 9132 6 | [002]1082 9130 0 |
| | 모개체 변경 [002] 1271 1817 1 | [002] 1082 9130 0 | [002] 1082 9132 6 |

상 기 내 용 이 이 상 없 음 을 확 인 합 니 다 .

2 0 1 8 년 0 6 월 2 2 일

세 종 공 주 축 산 업 협 동 조 합 위 탁 기

| 구 분 | 농장경영자 변경 | 변경 내역 | 농장경영자 인적사항 변경 |
|---|---|---|---|
| 첨부 서류 | **위탁기관장 공문 + 소의 출생등신고서 + 농장경영자 변경사유서**<br>※ 농장경영자 변경사유서에 농장경영자의 주민번호13자리 기재 + 서명날인 필수(대리서명 불가) | | |

## 양 평 축 산 농 협

수신 :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처
(경유)
제목 : 농장 경영자 인적사항 변경 요청의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002 1265 6580 9)번 개체에 대해 농장 경영자 인적사항을 변경하려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의 개체에 대한 현소유주(김영희)와 변경후 소유주(허남기)는 가족관계(부부)이고, 해당 개체를 개체등록하기 전에 모개체를 허남기로 이동 후 개체등록 하여야 했으나 위탁기관의 오등록으로 현소유주에 등록했습니다.

4. 2018년도 이력제 위탁기관 자체점검 및 농장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여 해당 개체 및 모개체를 실제소유주(허남기)로 이동하기 위해 변경요청 드립니다.

◇ 변 경 사 항 ◇

| 구분 | 002 1265 6580 9 개체 | |
|---|---|---|
| | 변경전 | 변경후 |
| 변경내역 | 소유주 김영희 | 소유주 허남기 |

양평축산업협동조합장

수신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처

시행 : 양평축74103-[redacted](2018.08.31.) 접수 :
우 12551 경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71 / 전화 031-771-2202 / FAX 031-771-2872
담당 : 대리 김성원 ( E-mail : qmarkman@hanamil.net ) / 공개구분 :

## 농장 경영자 변경 사유서

위탁기관명 : 양평축산업협동조합
직 책 : 과장대리
성 명 : 김성원
생 년 월 일 : 850218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2-4

상기인은 법률 제12813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양평축협 위탁기관에서 이력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체식별번호 002 126 565 809번에 대해서 허남기농가에 전산등록 하는 과정에서, * 전산 입력 오류로 김영희농가로 잘못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체식별번호 002 126 565 809번에 대하여 김영희농가에서 허남기농가로 농장 경영자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장 경영자 확인 사항>

상기의 농장 경영자 변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조항에 의거 해당 농가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 구분 | 농가명 | 주민번호 | 주 소 | 서명 |
|---|---|---|---|---|
| 기존 | 김영희 | 520508-2[redacted] |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redacted] | 김영희 |
| 변경 | 허남기 | 520520-1[redacted] |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redacted] | 허남기 |

2018 . 8 . 31 .

위탁기관 직원명 : 김성원

양평축산업협동조합

* 표시된 부분은 실제 오신고 사유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 구 분 | 이동제한예외우 | 변경 내역 | 이동제한 예외 처리 |
|---|---|---|---|
| 첨부 서류 | 시도(시군구)공문 + 위탁기관장 공문<br>※ 그 외, 별도서류 첨부될 수 있음 | | |

「시민 삶의 전 세계 100대 도시 '천안'」

# 천안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결핵병 발생농가 이동제한 해제 알림

1. 아산지소-5325(2014.3.26.)호와 관련됩니다.

2. 소 결핵병 발생농장의 재검사 결과 연속 2회 음성판정으로 해당 농가에 조치한 이동제한 명령사항을 해제하고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생 및 종식내역

| 축주명 | 주소 | 사육두수 | 검사두수 | 검사결과 양성 | 검사결과 음성 | 검사결과 양성누계 | 판정일자 | 비고 |
|---|---|---|---|---|---|---|---|---|
| 류병길 | 천안시 동남구 북면 전곡리2 | - | 1 | 1 | - | 1 | 2013.11.14 | 신규발생(도축장후이력) |
| | | 41 | 41 | 1 | 40 | 2 | 2013.11.20 | 동거축 확대검사 |
| | | 40 | 40 | 0 | 40 | 2 | 2014.1.22 | 재검사(1차) |
| | | 41 | 41 | 0 | 41 | 2 | 2014.3.26 | 재검사(2차) |

나. 종식방법 : 양성축 폐기 및 동거축 최종검사(2회연속) 결과 음성

다. 조치사항 : 이동제한사항 해제

라. 종식일자 : 2014.3.26. 끝.

천안시장인

수신자 천안축산업협동조합(쇠고기이력제 담당)

★담당자 강창희 가축위생팀장 김종형 축산식품과장 전결 04/08 안동욱

협조자 주무관 임미령

시행 축산식품과-7120 ( 2014.04.08. ) 접수 ( )

우 331-701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601(불당동 234-1) / http://www.cheonan.go.kr

전화 (041)521-5728 /전송 (041)521-2399 / namic35@korea.kr / 공개

본 문서는 농협의 중요 자산이므로 무단으로 수정 및 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천안축산업협동조합

우 330-19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4로 8번지/ 전화 041-520-6005/FAX 041-562-0526

담당 김대섭

문서번호 : 천축 2014 - [redacted]

시행일자 : 2014. 04. 09.

경 유 :

수 신 : 축산물품질평가원

참 조 : 이력관리팀

| 선결 | | | 지시 | | |
|---|---|---|---|---|---|
| 접수 | 일자 시간 | | 결재·공람 | | |
| | 번호 | | | | |
| 처리과 | | | | | |
| 담당자 | | | | | |

제 목 : 소 결핵병 발생농가 이동제한 해제 전산등록 신청의 건

1.귀 소의 발전을 기원 합니다.

2.관내 농장에서 아래와 같이 가축전염병인 소 결핵 양성판정으로 이동제한 명령하였던 농가에 대하여 천안시청의 요청에 의해 이동제한 해지를 신청합니다.

가.대상농가 : 천안시 동남구 북면전곡리[redacted]

나.농 가 명 : 류 병 길

다.종식방법 : 양성축 폐기 및 동거축 최종검사(2회연속)결과 음성

라.조치사항 : 이동제한사항 해제

마.종식일자 : 2014년 03월 26일

붙 임 : 소 결핵병 발생농장 이동 제한 명령해제 알림 공문서 1부 -끝-

천안축산업협동조합장

# 4 각종서식 작성예시

## 소 출생신고서 작성예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2. 31.〉

### 소의 [ ] 출생·수입·수출 [ ] 양도·양수·이동 [ ] 폐사 신고서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공통 신고 사항**

| | | |
|---|---|---|
| 농장 경영자 등 정보 | ① 성명 **홍길동** | ②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550613-0000000** |
| | ③ 법인 명칭 **○○한우** |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
| | ④ 주소 **○○도 ○○군 ○○읍 ○○리 12-12** (전화번호: **031-123-4567**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 |
| 가축 사육시설 정보 | ⑤ 농장식별번호 **000000** | ⑥ 위탁기관명 **○○축산업협동조합** |
| | ⑦ 사육시설 주소 **○○도 ○○군 ○○읍 ○○리 1-2** | |
| | ⑧ 사육 개시 연월일 **2007. 1. 9** | |
| | ⑨ 관리자 성명 **김 관 리** | ⑩ 관리자 생년월일 **701212-0000000** |
| | ⑪ 관리자 주소 **○○도 ○○군 ○○읍 ○○리 5-9** (전화번호: **031-123-4567**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 |

**출생 수입 수출 신고**

| | | |
|---|---|---|
| ⑫ 출생·수입·수출 연월일 **2015.04.10** | | ⑬ 소의 종류 1. 한우 2. 젖소 3. 육우 4. 수입소 5. 기타 |
| ⑭ 암수 구분 | 1. 암 2. 수 3. 거세 4. 프리마틴 | ⑮ 부 개체식별번호 **002 123 456 789** |
| | | ⑯ 모 개체 식별번호: 자가 생산 **002 123 456 123** / 대리모 생산 **002 123 456 456** **(대리모생산인 경우만 기재)** |
|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 | | ※ 원산지 |

**양도·양수 이동 (입고·출고) 신고**

| | |
|---|---|
| ⑰ 양도(출고)·양수(입고) 구분 1. 양도(출고) 2. 양수(입고) | ⑱ 개체식별번호 |
| ⑲ 양도(출고)·양수(입고) 연월일 및 장소 | ⑳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
| ㉑ 양도자(출고자)·양수자(입고자) 성명(상호) | ㉒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㉓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폐사 신고**

| | |
|---|---|
| ㉔ 개체식별번호 | ㉕ 폐사일 |
| ㉖ 폐사 원인 1.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2. 일반질병 3. 사고 4. 기타 | |
| ㉗ 폐사처리방법 1. 매몰(장소: ) 2. 폐기처리(업체명: , 전화번호: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 월 ○○ 일

신고인 **홍 길 동** (**홍길동**)

대리 신고인 **김 위 탁** (**김위탁**)

대리 신고인 전화번호 **010-2222-3333**

**○○축산업협동조합장**
**○○농업협동조합장**
**○○협동조합**
**○○법인(축산 관련 법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위탁기관에서는 매월 소의 출생 등 신고서에 대하여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관리

# 소 양도·양수 신고서 작성예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2. 31.〉

## 소의 [ ] 출생·수입·수출 [ ] 양도·양수·이동 [ ] 폐사 신고서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공통 신고사항**

**농장 경영자 등 정보**

① 성명 **홍길동** ②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550613-0000000**

③ 법인 명칭 **○○한우**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④ 주소 **○○도 ○○군 ○○읍 ○○리 12-12**
(전화번호: **031-123-4567**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

**가축 사육시설 정보**

⑤ 농장식별번호 **000000** ⑥ 위탁기관명 **○○축산업협동조합**

⑦ 사육시설 주소 **○○도 ○○군 ○○읍 ○○리 1-2**

⑧ 사육 개시 연월일 **2007. 1. 9**

⑨ 관리자 성명 **김 관 리** ⑩ 관리자 생년월일 **701212-0000000**

⑪ 관리자 주소 **○○도 ○○군 ○○읍 ○○리 5-9**
(전화번호: **031-123-4567**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

**출생 수입 수출 신고**

⑫ 출생·수입·수출 연월일

⑬ 소의 종류
1. 한우 2. 젖소 3. 육우 4. 수입소 5. 기타

⑭ 암수 구분
1. 암 2. 수
3. 거세 4. 프리마틴

⑮ 부 개체식별번호

⑯ 모 개체 식별번호
자가 생산
대리모 생산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

※ 원산지

**양도·양수 이동 (입고·출고) 신고**

⑰ 양도(출고)·양수(입고) 구분
1. 양도(출고)
2. 양수(입고)

⑱ 개체식별번호
**002 123 456 789**

⑲ 양도(출고)·양수(입고) 연월일 및 장소
**2021.12.01.**

⑳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123456**

㉑ 양도자(출고자)·양수자(입고자) 성명(상호)
**홍 길 동**

㉒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1999.01.01.**

㉓ 주소 **○○도 ○○군 ○○읍 ○○리 1-2**
((전화번호: **031-123-4567**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

**폐사 신고**

㉔ 개체식별번호

㉕ 폐사일

㉖ 폐사 원인 1.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2. 일반질병 3. 사고 4. 기타

㉗ 폐사처리방법 1. 매몰(장소: ) 2. 폐기처리(업체명: , 전화번호: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 월 ○○ 일

신고인 **홍 길 동** (**홍길동**)

대리 신고인 **김 위 탁** (**김위탁**)

대리 신고인 전화번호 **010-2222-3333**

**○○축산업협동조합장**
**○○농업협동조합장**
**○○협동조합**
**○○법인(축산 관련 법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위탁기관에서는 매월 소의 출생 등 신고서에 대하여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관리

# 소 폐사 신고서 작성예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2. 31.〉

## 소의 [ ] 출생·수입·수출 [ ] 양도·양수·이동 [ ] 폐사 신고서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 | | |
|---|---|---|---|
| 공통 신고 사항 | 농장 경영자 등 정보 | ① 성명 **홍길동** | ②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550613-0000000** |
| | | ③ 법인 명칭 **○○한우** |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
| | | ④ 주소 **○○도 ○○군 ○○읍 ○○리 12-12** (전화번호: **031-123-4567**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 | |
| | 가축 사육시설 정보 | ⑤ 농장식별번호 **000000** | ⑥ 위탁기관명 **○○축산업협동조합** |
| | | ⑦ 사육시설 주소 **○○도 ○○군 ○○읍 ○○리 1-2** | |
| | | ⑧ 사육 개시 연월일 **2007. 1. 9** | |
| | | ⑨ 관리자 성명 **김 관 리** | ⑩ 관리자 생년월일 **701212-0000000** |
| | | ⑪ 관리자 주소 **○○도 ○○군 ○○읍 ○○리 5-9** (전화번호: **031-123-4567**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 | |

| | | | |
|---|---|---|---|
| 출생 수입 수출 신고 | ⑫ 출생·수입·수출 연월일 | | ⑬ 소의 종류 1. 한우 2. 젖소 3. 육우 4. 수입소 5. 기타 |
| | ⑭ 암수 구분 | 1. 암 2. 수 3. 거세 4. 프리마틴 | ⑮ 부 개체식별번호 |
| | | | ⑯ 모 개체 식별번호: 자가 생산 / 대리모 생산 |
| |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 | | ※ 원산지 |

| | | |
|---|---|---|
| 양도·양수 이동 (입고·출고) 신고 | ⑰ 양도(출고)·양수(입고) 구분 1. 양도(출고) 2. 양수(입고) | ⑱ 개체식별번호 |
| | ⑲ 양도(출고)·양수(입고) 연월일 및 장소 | ⑳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
| | ㉑ 양도자(출고자)·양수자(입고자) 성명(상호) | ㉒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㉓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 | |
|---|---|---|
| 폐사 신고 | ㉔ 개체식별번호 **002 123 456 789** | ㉕ 폐사일 **2016.04.10** |
| | ㉖ 폐사 원인 1.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2. 일반질병 3. 사고 4. 기타 | |
| | ㉗ 폐사처리방법 1. 매몰(장소: ) 2. 폐기처리(업체명: **우한산업** , 전화번호: **010-2323-3232**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 월 ○○ 일

신고인 **홍 길 동** (*홍길동*)

대리 신고인 **김 위 탁** (*김위탁*)

대리 신고인 전화번호 **010-2222-3333**

**○○축산업협동조합장**
**○○농업협동조합장**
**○○협동조합**
**○○법인(축산 관련 법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위탁기관에서는 매월 소의 출생 등 신고서에 대하여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관리

## 모개체 식별번호 누락 사유서 제출

(농가 제출용)

### 1. 인적 사항

| 성 명 | **문 농가** | 주민번호 | 520101 -OOOOOO | 연락처 | 자 택 | 031-***-**** |
|---|---|---|---|---|---|---|
| | | | | | 핸드폰 | 010-****-**** |
| 농 장 명 | **문 농장**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구 ○○면 **-* | | | |

### 2. 모개체 식별번호 누락사유

| 개체식별번호 | 신 고 항 목 | | | | 사 유 |
|---|---|---|---|---|---|
| | 출생 신고 | 양수 양도신고 | 기존소 신고 | 기 타 | |
| 002 1234 5678 9 | ○ | | | | 모개체 확인 불가 사유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체가 많을 경우 별지를 활용하여 내역을 추가 작성

향후 각종 신고 시 모개체 식별번호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 하겠으며, 이후 동일한 문제가 1회 이상 추가 발생 시 관련 법에 의거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19 년 00 월 00 일

*농가 서명*

신청인 : **문 농 가** (서명 또는 인)

| 신청서접수 연락처 | 담당자 상시 변동 될수 있음 |
|---|---|

## 모개체 식별번호 등록허용 신청

(위탁기관 제출용)

수신 :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장　　발신 : ◎◎**축협**위탁기관장

| 연번 | 지 역 | 농가명 | 개체식별번호 | 신 고 항 목 | | | | 미신고 횟수 |
|---|---|---|---|---|---|---|---|---|
| | | | | 출생 신고 | 양수·양도신고 | 기존소 신고 | 기 타 | |
| 2013 | 수원 | 문농가 | 002 1234 5678 9 | O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가별 모개체식별번호 누락 사유서 : 붙임 참조

상기와 같이 농가별 모개체 식별번호 누락신고 접수현황을 제출하니 전산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년 00 월 00 일

*담당자 서명*

담당자 : **김 담 당** (서명 또는 인)

**위 탁 기 관 명**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 25.〉

# [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 [ ]소, 종돈의 출생
# [ ]소, 종돈의 폐사
# [ ]양도·양수·이동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수입·수출
# [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 [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 | | |

| | |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홍 길 동** |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750625-○○○○○○○ |
| | 농장식별번호 123456 | 전화번호 031-123-○○○○ |
| | 주소 ○○도 ○○군 ○○읍 ○○길 123 (전화번호) 031-123-○○○○ | |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 002 123 456 789

| | | |
|---|---|---|
| 담당자 | 성명 **김 위 탁** | 전화번호 031-456-○○○○ |

변경사항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의 출생일자 변경** | 2021.12.1. | 2021.12.31. |
| | | |

변경 사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3항,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제6조제5항에 따라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2021 년 12 월 31 일

신고인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종축등수출입 신고기관의 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및 담당직원 확인사항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6. 28.〉

#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 [ ]수입유통식별대장 기록사항 [○]변경신고서 / [ ]수정요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 |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홍 길 동** |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br>* 수입유통식별대장은 생년월일로 기재<br>**750625-○○○○○○○** |
| | 농장식별번호 **123456** | 전화번호 **031-123-○○○○** |
| | 주소 **○○도 ○○군 ○○읍 ○○길 123**<br>(전화번호) **031-123-○○○○** | |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 **002 123 456 789**

| | | |
|---|---|---|
| 담당자 | 성명 **김 위 탁** | 전화번호 **031-456-○○○○** |

변경(수정)사항

| 구 분 | 변경(수정) 전 | 변경(수정) 후 |
|---|---|---|
| **위탁기관 변경** | **○○축산업협동조합** | **△△축산업협동조합** |
| | | |
| | | |
| | | |

변경(수정) 사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 따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합니다.

**2015** 년 **4** 월 **10** 일

신고인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 |
|---|---|---|
| 1.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사항 중 돼지의 사육현황에 관한 기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 서식을 사용하여도 됩니다. | | |
| 구비서류 | 1. 변경신고: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2. 수정요구: 기록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br>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Sample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귀표 수령·배부 관리대장

(단위: 조)

| 연월일 | 수령 | | | 배부 | | | | 재고량 |
|---|---|---|---|---|---|---|---|---|
| | 귀표번호(개체식별번호) | | 수량 | 귀표번호(개체식별번호) | | 수량 | 수령자 (경영자명) | |
| | 시작 | 끝 | | 시작 | 끝 | | | |
| 2009-01-03 | 002 004 000 014 | 002 004 001 008 | 100 | 002 004 000 014 | 002 004 000 105 | 10 | **홍길동** | 90 |
| 2009-01-15 | | | | 002 004 000 113 | 002 004 000 257 | 15 | **김한우** | 75 |
| 2009-01-21 | | | | 002 004 000 265 | 002 004 000 409 | 15 | **이순신**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누계(월계) | | | | | | | | |

## 유의사항

1. 연월일: 귀표를 수령(인수) 또는 배부(출고)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2. 귀표번호(개체식별번호)
   가. 소: 인수받은 귀표번호의 처음과 끝 번호를 적습니다.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KOR 002 123456785 ⇒ 002 123456785

   나. 종돈: 농장식별번호 6자리 + 농장별 개체관리번호 6자리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100001000001
3. 수령자(경영자명): 위탁기관 또는 사육농가에서 귀표를 부착한 가축의 농장경영자 등을 적습니다.
4. 재고량: 현 재고량(직전 재고량 + 인수량 - 출고수량)을 적습니다.
5. 월계, 누계를 산출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위탁기관에서는 매월 귀표재고량에 대하여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관리**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귀표 훼손·탈락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 신고 접수 | | | | 처리 결과 | | | |
|---|---|---|---|---|---|---|---|
| ① 접수일 | ② 경영자명 | ③ 개체식별번호 | ④ 접수자 | ⑤ 재부착일 | ⑥ 재부착용 귀표 관리번호 | ⑦ 부착자 | ⑧ 탈락귀표 회수 여부 |
| 2015-04-03 | 홍길동 | 002 001 000 001 | 김위탁 | 2009-02-03 | 123456 | 홍위탁 | ○ |
| 2015-04-05 | 김한우 | 002 001 000 063 | 김위탁 | 2009-02-05 | 123457 | 자가부착 | ○ |
| 2015-04-08 | 이순신 | 002 001 000 175 | 김위탁 | 2009-02-08 | 123458 | 홍위탁 | ×(분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① 접수일: 농장경영자 등으로부터 귀표 훼손·탈락 신고를 접수한 날짜를 적습니다.
② 경영자명: 소를 기르는 농장경영자 등의 성명을 적습니다.
③ 개체식별번호: 훼손·탈락된 귀표에 인쇄된 귀표번호를 적습니다.
- 12자리 기재[국가코드(KOR)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④ 접수자: 농장경영자 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직원명을 적습니다.
⑤ 재부착일: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한 날짜를 적습니다.
- 자가부착 농장경영자 등의 경우 재부착용 귀표를 경영자 등에게 내준 날짜를 적습니다.
⑥ 재부착용 귀표 관리번호: 재부착용 귀표의 뒷면에 인쇄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⑦ 부착자: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한 직원명을 적습니다.
- 자가부착 농장경영자 등에게 재부착용 귀표를 내준 경우는 "자가부착"이라고 적습니다.
⑧ 탈락 귀표 회수 여부: 훼손·탈락 귀표의 회수 여부를 ○, ×로 표시합니다.
- 미회수 시에는 그 사유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545000020090005410001 호

# 브루셀라병 검사 증명서

| | | | | | | | | |
|---|---|---|---|---|---|---|---|---|
| 가축 사육시설 | 농장명 | 송 | | 소 재 지 | 경상남도 산청군 | | | |
| 소유자 (관리자) | 성 명 | 송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 |
| | 주 소 | 경남 산청군 | | | (전화: 05 53, HP: 01 3) | | | |
| 검사실시 내 역 | 채혈의뢰 연월일 | 2009-02-20 | 채 혈 연월일 | 2009-02-18 | 검 사 연월일 | 2009-02-23 | 검사 두수 | 1두 |
| | 검사방법 | 로즈벵갈응집반응법 | | | | | | |
| 구 매 자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 주 소 | (전화: ) | | | | | | |

| 검사가축 | 축종 | 품종 | 성별 | 연령 | 귀표(개체)번호 | 특징 | 검사결과 |
|---|---|---|---|---|---|---|---|
| | 소 | 한우 | 암 | 2년 | KOR000 19967778 6(성축)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개체) | 중결전육 | 음성 |

| 검사자 | 소 속 | 당진지소 055-771-6621 | 직 | | 성 명 | 경기도시험소 |
|---|---|---|---|---|---|---|

비고 1. 위 검사결과는 가축의 소유자가 검사를 신청한 시료에 대한 것으로 브루셀라병의 특성상 감염 초기에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농장 입식후 재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함

2. 유효기간 : 검사일부터 2월 ( 2009년02월23일 - 2009년04월22일 )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09년 02월 26일

충청남도가축위생연구소당진지소장

※ 브루셀라병 검사 증명서에 개체식별번호와 바코드가 표시되어 발행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12. 31.〉

#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및 농장식별번호 발급 확인대장

( **국내산** ) 도축장

| 연월일 | 가축의 종류 (소, 돼지, 닭, 오리) | 암수 구분 (돼지, 닭,오리는 마릿수) | 신청인 | | |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 | | 재발급 사유 | 검사관 성명 |
|---|---|---|---|---|---|---|---|---|---|
| | | | 농장 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성명 | 기존 | 재발급 | | |
| 2015.04.20 | 한우 | 암 | ○○정육점 | 111-22-33333 | ○○○ | - | 002 123 456 789 | 천재지변으로 탈락 | 홍검사관 |
| 2015.04.20 | 한우 | 거세 | ☆☆정육점 | 111-33-22222 | ☆☆☆ | - | 002 123 498 765 | 천재지변으로 탈락 | 홍검사관 |
| 2015.04.21 | 한우 | 수 | △△정육점 | 222-11-33333 | △△△ | - | 002 123 425 805 | 천재지변으로 탈락 | 홍검사관 |
| 2015.04.22 | 한우 | 암 | ○○정육점 | 111-22-33333 | ○○○ | - | 002 123 412 340 | 교통사고로귀표탈락 | 홍검사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

**○○축산업협동조합**은 사육현황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안전행정부「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제16조에 따라 아래 내용을 알리고 서명·날인한 동의서를 징구하고자 하오니 정보주체가 되시는 소의 소유주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축산업협동조합** 은 사육현황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소의 소유주 개인의 정보 이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위탁기관명, 법인명, 주민번호(사업자번호 포함), 주소, 전화번호(핸드폰번호 포함), 사육소재지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업무 처리 후 5년간 보관(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 소의 소유주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필수항목의 수집·동의에 관하여 거부하실 경우 소의 소유주께 **사육현황 등의 정보 제공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된 개인의 정보는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자필로 체크)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번호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번호의 종류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자필로 체크)  동의하지 않음 ☐

**[제3 자 제공에 대한 동의여부]** 본인의 고유식별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법원 또는 수사기관 | 농장주명, 농장명, 농장번호, 주민(사업자번호)번호, 우편번호, 사육지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출생 등의 신고에 기초하여 메일·문자·우편 발송,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력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보존기간 5년), 제공기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유기간 준용 |

※ 귀하께서는 상기사항에 대하여 제3자 제공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하실 경우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자필로 체크)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 월 ○ 일

동의인 :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귀하**

III

# 유통단계 매뉴얼

1. 도축단계
2. 포장처리단계
3. 판매단계
4. 묶음번호 관리 요령
5. 일반·휴게음식점, 학교·유치원 급식소, 통신판매업
6. DNA동일성 검사
7. 단계별 전산매뉴얼

## 1 도축단계

### 1. 도축 신고(도축 출하신고 포함)

- 농장경영자 등이 소를 도축하기 위해 도축장에 출하한 경우 도축업자가 작성하는 도축검사신청서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등을 신고
  - 도축업자는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도축검사신청서와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검사관과 축산물품질평가사에게 각각 제출
  - 농장경영자 등(도축의뢰자 포함)은 도축 의뢰 시, 생년월일, 소의 개체식별번호 등을 도축업자에게 통보
  - 도축업자는 도축하고자 하는 소의 귀표 부착,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등록여부, 농장경영자정보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한 후 도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이 도축업자로부터 도축검사신청을 받은 때에 확인한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도축검사 결과의 합격여부를 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에 전산입력
- 「축산법」 제37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가 확인한 해당 도체의 개체식별번호와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
- 도축업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도축처리 결과를 신고
  - 도축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귀표 등의 부착,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이력관리시스템의 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
  - 도축 또는 경매가 완료된 날까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도축처리 내역을 신고
  - 도축 또는 경매가 완료된 날. 다만,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

○ 도축단계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 | |
|---|---|
| 1. 소, 돼지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 가.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경우에는 그 소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해당 도체에 동일하게 이력번호로 표시해야 한다.<br>나. 도축업자는 돼지를 도축한 경우에는 해당 돼지의 농장식별번호가 포함된 이력번호를 해당 도체에 표시해야 한다.<br>다. 도체에 표시하는 이력번호는 이동 또는 환경의 변화로 훼손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용되는 표시라벨 등은 위생상 위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br>라. 돼지의 경우 이력번호 표시라벨을 대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잉크 등은 식품위생상 위해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인쇄용 색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따른다.<br>마. 라목에 따른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도축장은 이력번호가 정확히 표시되는지를 정기적(가급적 매일)으로 확인·관리해야 한다.<br>바. 도체를 2분체 또는 4분체로 분할하여 이동하는 경우 분할된 도체마다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br>사. 도축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등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가축의 도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도 소속 검사관에 신고하고, 검사관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20호서식의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및 농장식별번호 발급 확인대장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가 포함된 이력번호를 도체에 표시해야 한다. |
| 2. 이력번호 관리 등 | 가. 소와 돼지의 경우에는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소의 시설이 직접 연결되어 도축 후 곧바로 식육포장처리업소로 도체가 이동되는 경우에는 그 이동 시 이력번호 대신 임의의 도축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포장처리를 마치고 시설 밖으로 도체를 반출할 때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br>나. 소 또는 돼지 도축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다시 표시해야 한다.<br>다. 소 도축업자는 지체 없이 귀표를 수거하여 소각, 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해야 하며, 귀표가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br>라. 가금 도축업자는 최소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다시 표시해야 한다. |
| 3. 그 밖에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 2.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등의 처리

○ 대상

-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가축 및 축산물 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가 떨어지거나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처리방법

- 도축업자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등을 축산물품질평가사에게 신고
- 축산물품질평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로 연락하여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를 확인 후 재부여 등의 조치사항을 도축업자에게 통보
- 관할위탁기관에서는 해당개체에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
- 도축업자는 도체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 3. 장부의 기록관리·증명서교부 등

○ 도축업자는 도축신고에 따른 도축처리결과를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에 날짜별로 기재하고 관리

- 도축업자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www.lpsms.go.kr) 또는 자체 전산망에 도축처리결과를 입력하여 연계시스템에 의해 이력관리시스템에 연동처리 된 경우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한 것으로 갈음

○ 「축산법」 제35조에 따라 쇠고기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품질평가사는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쇠고기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

〈표1〉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및 농장식별번호 발급 확인대장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12. 31.〉

#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및 농장식별번호 발급 확인대장

(　　) 도축장

| 연월일 | 가축의 종류 (소, 돼지, 닭, 오리) | 암수 구분 (돼지, 닭, 오리는 마릿수) | 신청인 | | |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 | | 재발급 사유 | 검사관 성명 |
|---|---|---|---|---|---|---|---|---|---|
| | | | 농장 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성명 | 기존 | 재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 축산물품질평가사는 도축이 완료되고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된 후 해당 소 도체의 시료를 수거하여 건조 후, 시료 봉투에 넣은 다음 개체식별번호 등이 기재된 라벨을 시료봉투에 부착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유전자분석처로 이송

〈표2〉 도축단계업무 흐름

**〈도축단계업무 흐름〉**

| 업무 절차 | | 조치 사항 |
|---|---|---|
| ① 도축신청 접수 | | • '도축검사신청서' 접수 |
| ② 개체식별 번호 확인 | | • 도축검사신청서와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의 일치 여부 확인<br>• 이력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
| ③ 위생검사 및 도축 | | • 출하된 소의 귀표와 신청서상의 개체식별번호 일치 여부 확인 후 도축<br>• 검사관은 위생검사결과 전산입력(합격/불합격) |
| ④ 라벨출력 및 부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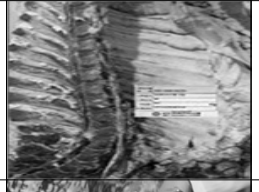 | • 소와 도체에 표시된 이력번호의 일치 여부 확인<br>• 이력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출력하여 도체의 갈비 내부 등에 부착 |
| ⑤ DNA검사 시료 채취 | | •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도체에서 시료 채취 후 이력번호를 기록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에 발송 |
| ⑥ 등급 판정 | | ○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력번호 확인 후 등급판정내역 입력 |

## 2 포장처리단계

### 1. 포장처리·거래실적 전산신고

가. 신고 대상(국내산 쇠고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 영업장의 시설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連接)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평균(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상 평균으로 산정한다)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

나. 신고 기한

○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 쇠고기를 포장처리 또는 거래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용어의 정의〉**

- 판매(販賣) : 포장처리업소에서 다른 식육판매업소 등에 판매하는 경우
- 반출(搬出) : 도축장이나 포장처리업소 등에서 지육 혹은 부분육을 다른 포장처리업소나 식육판매업소 등으로 이동시키는 것
- 매입(買入) : 도축장 혹은 다른 포장처리업소에서 지육 혹은 부분육을 구입 등의 방법으로 사들이는 경우
- 반입(搬入) : 다른 포장처리업소에 가공을 의뢰한 후 해당 지육이나 부분육이 가공되어 다시 들어오는 경우

### 다. 이력관리시스템 이용신청 및 취소

-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의무자 등은 〈표3〉의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
-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국내산이력축산물 포장처리업소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의 전산처리능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
- 업체의 종업원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전신신고 의무대상에 대한 조건을 상실하여 이력관리시스템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표4〉의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취소 신청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

### 라. 신고내용

- 포장처리업소 중 전산신고대상인 업소가 쇠고기를 포장처리 하는 경우〈표5〉 서식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를 제출
- 포장처리업소 간 거래 혹은 식육판매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쇠고기를 판매 및 반출 혹은 도축장으로 부터의 매입 및 반입(가공 후 다시 들여오는 경우)을 하는 경우 〈표6〉의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 포장처리업소 중 전산신고대상이 아닌 포장처리업소에서 쇠고기를 포장처리 할 때에는 〈표5〉서식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로 기록·관리하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표7〉서식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반출 실적으로 기록·관리(단,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음)
- 포장처리업소에서 지육가공을 다른 포장처리업소 등에 의뢰하는 경우, 즉 반입의 경우 〈표5〉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의 의뢰업체명에 의뢰받은 업체의 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등을 신고

### 마. 포장처리 방법

-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대상자가 쇠고기를 가공하는 경우에는 이력번호가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않도록 포장처리
- 재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입고되는 이력번호가 재포장하면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포장처리

### 바. 포장처리업소에서 다른 포장처리업소에 가공을 의뢰하는 경우

○ 포장처리업소에서 지육 가공을 다른 포장처리업소 등에 의뢰하는 경우 의뢰받은 업체의 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등을 신고

**〈포장처리를 의뢰한 업체〉**

① 입고신고 → ② 출고신고 → ③ 입고신고 → ④ 출고신고
③ (생략가능)

**〈포장처리를 의뢰받은 업체〉**

① 입고신고 → ② 포장처리실적신고 (의뢰업체명 신고) → ③ 출고신고
① (생략가능) ③ (생략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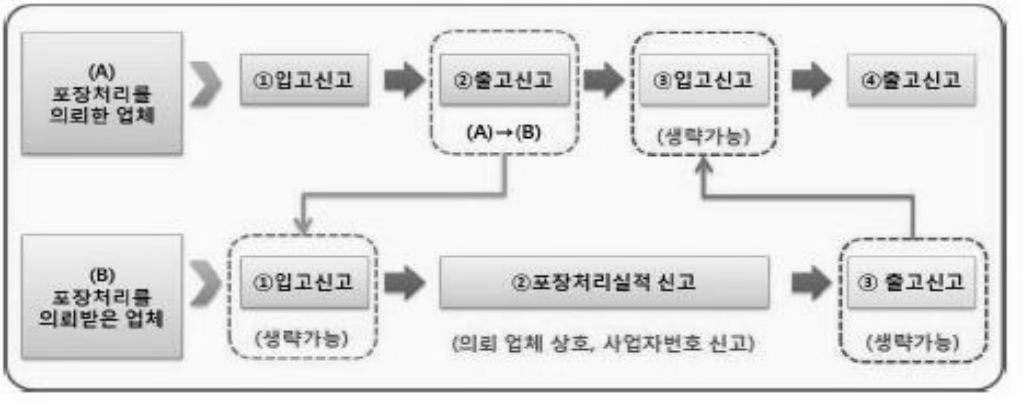


※ 포장처리 의뢰업체, 의뢰받은 업체 모두 전산신고 업체인 경우 해당됨.

〈표3〉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

#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 | | | |
|---|---|---|---|---|
| 사업장 정보 | 사업장명 | | 사업자번호 | |
| | 대표자명 | | 연락처 (휴대전화) | |
| | | | 팩스(FAX) | |
| | 소재지 주소 | (도로명) | (우 : ) | |
| | 이메일 | | | |
| | 영업장 면적 | ㎡ | 종업원수 | 명 |
| | 이력관리품목 | 【 】소 【 】돼지 【 】닭 【 】오리 【 】계란 | | |
| | 영업의 종류 ※ 해당업0종 모두 체크 | 【 】계열화사업자(닭·오리) | 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 | |
| | | 【 】농장경영자 | 농장식별번호 : | |
| | | 【 】도축업 | 허가번호 : | |
| | | 【 】식육포장처리업 | 허가번호 : | |
| | | 【 】식육판매업 등 | 신고필증번호 : | |
| | | 【 】식용란선별포장업<br>【 】농장내부 【 】농장외부 | 허가번호 :<br>농장식별번호 : | |
| | | 【 】식용란수집판매업 | 신고필증번호 :<br>HACCP인증번호 : | |

| | | | | |
|---|---|---|---|---|
| 이력시스템 사용자 정보 | 사용자 성명 | | 생년월일 | |
| | 휴대전화번호 | | 유선전화 | |
| | 이메일 | | 팩스번호 | |

위와 같이 이력관리시스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 | |
|---|---|
| 첨부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1부.<br>2. 허가증(축산업,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선별포장업) 1부.<br>3. 신고필증(식육판매업 등, 식용란수집판매업) 1부.<br>4. HACCP-식용란수집판매업 인증서 1부. |

**이력지원실 문의 : 전화 1577-2633 / 팩스 044-410-7178 / mtrace@ekape.or.kr**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이력관리시스템 업무 담당자

〈대표자〉

| 성명 | 직책 | 휴대전화번호 | 직장전화번호 | 팩스번호 | e-mail |
|---|---|---|---|---|---|
| | | | | | |

〈담당자〉

| 성명 | 직책 | 휴대전화번호 | 직장전화번호 | 팩스번호 | e-mail |
|---|---|---|---|---|---|
| | | | | | |
| | | | | | |
| | | | | | |

문의 : 1577-2633
팩스 : 044-410-7178

〈표4〉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취소 신청서

<table>
<tr><td colspan="6">「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취소 신청서</td><td>처리기간<br>30일</td></tr>
<tr><td rowspan="6">신청인</td><td>①업체명</td><td colspan="2"></td><td>②점포명</td><td colspan="2"></td></tr>
<tr><td>③사업자<br>등록번호</td><td colspan="2"></td><td>④허가·신고필증 번호</td><td colspan="2"></td></tr>
<tr><td>⑤소재지</td><td colspan="5">(우편번호: )</td></tr>
<tr><td>⑥대표자<br>성 명</td><td colspan="2">(인)</td><td>⑦생년월일<br>또는 법인번호</td><td colspan="2"></td></tr>
<tr><td>⑧영업장<br>면적</td><td>㎡</td><td>⑨종업<br>원수</td><td>명</td><td>⑩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7">취소 사유 :</td></tr>
<tr><td colspan="7">‘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br>이용신청을 취소합니다.<br><br>년 월 일<br><br>신청인(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br><br>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td></tr>
</table>

## 〈표5〉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12. 31.〉

#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

※ 작성 시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① 포장 처리일 | ② 이력 (묶음)번호 | ③ 원료 또는 부위명 | ④ 무게 (kg, t) | ⑤ 매입·반입처 | | | ⑥ 의뢰업체명 | | |
|---|---|---|---|---|---|---|---|---|---|
| | | | | 상호 |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 | 상호 |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 유의사항

① 포장 처리일은 매입 또는 반입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 처리한 날짜를 적습니다.

② 이력번호는 매입 당시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 12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은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이력관리시스템 전산신고 포함)해야 합니다.

③ 원료 또는 부위명은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매입한 도체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

④ 무게는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무게(kg 또는 t)를 적습니다.

⑤ 매입·반입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구입한 업체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도축장에서 직접 매입·반입한 경우에는 도축장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⑥ 의뢰업체명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등에 의하여 의뢰되어 포장처리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의뢰업체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전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6〉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2. 31.〉

#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 신고서(소·돼지·닭·오리 고기)

※ 아래 및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대표자 |
|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연락처 |
| | 영업허가(신고)번호 | |
| | 주소 | |

| | | |
|---|---|---|
| (출고·입고)처 | 영업장의 명칭(상호) | 영업허가(신고)번호 |
| | |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 |
|---|---|---|
| 거래처 | 성명(법인명) | 대표자 |
|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연락처 |
| | 영업허가(신고)번호 | |
| | 주소 | |

| | | | |
|---|---|---|---|
| 거래내역 | 거래일 | 도축일 | 가공일 |
| | 이력번호 | 도축번호 | 원료 또는 부위명 |
| | 수량(BOX, 마리) | | 무게(㎏, t)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유의사항

1. (출고·입고)처란은 판매·반출신고의 경우에는 "출고"에, 매입·반입신고의 경우에는 "입고"에 "O"표를 하고, 국내산이력축산물이 포장처리 또는 보관되어 있는 창고의 영업장 명칭(상호) 및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국내산이력축산물 거래내역 신고서는 거래처별로 작성합니다.
3. 거래내역이 다수인 경우에는 뒤쪽의 거래내역 목록을 작성합니다.
4. 이력번호는 거래 당시 국내산이력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첨부합니다.
5. 원료 또는 부위명은 거래한 국내산이력축산물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부위별(예: 갈비, 목살, 제4위, 목뼈 등)로 최대한 세부적으로 적습니다.
6. 수량 및 무게는 거래한 물량을 박스 수량과 무게[㎏ 또는 t(톤)] 단위로 적습니다. 다만, 도체 지육으로 거래하는 경우 도축일, 가공일, 도축번호를 적고, 수량에 두수(마리)와 무게(Kg)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7〉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반출실적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12. 31.〉

#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출고 실적

※ 작성 시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명 | 전화번호 |
|---|---|
| 주소 | 허가(등록)번호 |

| ①판매일·반출일 | ② 이력(묶음)번호 | ③ 원료 또는 부위명 | ④ 판매량 (kg, t, 두) | ⑤ 판매처·출고처 | | |
|---|---|---|---|---|---|---|
| | | | | 상호 | 허가(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① 판매일·반출일은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판매하거나 반출한 날짜를 적습니다.

② 이력번호는 판매·반출 당시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은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③ 원료 또는 부위명은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서 판매하거나 반출한 원료(도체)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

④ 판매량은 판매한 물량의 수량(박스)과 무게(㎏ 또는 t) 단위로 적습니다.

⑤ 판매처·반출처는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한 업체의 상호, 허가(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

| 구분 |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
| 1.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 가. 도체, 포장처리된 부분육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축산물을 재포장하거나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로 판매 등 이동을 할 경우 동일한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br>나.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할 경우 농장 간 혼입이 없도록 이력번호 단위로 구분·가공해야 하며, 등외등급은 별도로 구분하여 포장처리해야 한다.<br>다. 닭고기, 오리고기를 포장처리할 경우 이력번호 단위로 구분·가공해야 한다.<br>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포장육의 이력번호 표시는 최소 단위의 용기·포장에 대하여 동일한 이력번호로 표시해야 한다.<br>마.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국내산이력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포장육 등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식육판매 표시판 등에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br>바. 이력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국내산이력축산물을 하나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br>사. 닭고기, 오리고기의 경우 도축일자가 동일한 이력번호를 하나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부분육 생산을 위해서는 전일 도축일자(1일 이내)까지 포장 원료육을 묶음번호로 구성할 수 있다.<br>아. 이력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로 표시한다. |
| 2. 이력번호의 관리 | 가. 표시된 이력번호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며,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시 표시해야 한다.<br>나. 거래·판매 후 남은 국내산이력축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해야 한다. |
| 3. 그 밖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방법과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육판매 표지판 또는 라벨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 2. 장부의 기록 방법

○ 대상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취급하는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 기록내용

- 시행령으로 지정 된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쇠고기를 포장처리한 경우 〈표5〉에 의한 포장처리실적을 날짜별로 구분하여 관리

- 포장처리 된 쇠고기를 판매 또는 반출한 경우에는 〈표7〉에 의한 판매·반출실적을 날짜별로 기재하여 보관

○ 장부의 비치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쇠고기의 포장처리 또는 거래·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하고, 기록일 부터 2년간 보관

○ 영수증·거래명세서 교부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이력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
- 시행령으로 지정되지 않은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에도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처리하거나 판매·반출한 경우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처리 판매·반출실적을 각각 자체 장부에 기재(전자적 처리를 포함한다)하고 날짜별로 구분하여 관리

## 3.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개체의 동일성검사를 위한 관계자의 시료채취에 협조

〈표8〉 포장처리단계 업무 흐름

**포장처리단계 업무 흐름**

| 업무 절차 | | 조치 사항 |
|---|---|---|
| ① 포장처리업소 입고 | | • 입고된 도체와 거래명세서상의 이력번호 일치 여부 확인 |
| ② 발골·정형 | | • 포장처리업소에 입고된 도체의 이력번호 확인 후 개체가 섞이지 않도록 부위별로 발골·정형 |
| ③ 부위별 포장 | | • 부위별로 포장된 부분육에 이력번호가 표시된 라벨지를 포장지에 부착<br>- 최소 포장단위마다 해당 이력번호 표시 |
| ④ BOX 포장 | | • 부위별로 포장된 부분육의 이력번호와 일치된 라벨지를 겉 포장지에 부착 |
| ⑤ 출 고 | | • 거래명세서와 이력번호의 일치 여부 확인 후 판매장으로 출고 |

## 3 판매단계

### 1. 이력번호 표시 및 방법

#### 가. 표시대상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판매하는 모든 업소

#### 나. 표시방법 및 관리

-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으로부터 매입한 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 쇠고기 또는 포장육 등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쇠고기 또는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다만, 이력번호를 스티커 등에 인쇄하여 식육의 포장표면에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이력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이력번호를 한 개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음 단, 묶음번호를 표시할 경우 해당 이력번호를 기록·관리하여 구매자 등이 요청하면 즉시 알려주어야 함
-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력번호가 훼손 된 경우 다시 표시
- 거래·판매 후 남은 쇠고기를 보관하는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력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를 표시
- 비닐 등으로 포장된 식육에 스티커 등에 이력번호를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비닐에 그대로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음

### 2. 거래(전산)신고 대상 및 절차

#### 가. 전신신고(의무) 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기타식품판매업자)로서 종업원이 5인 또는 영업장 면적이 50㎡이상인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6)에 의한 기타식품판매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

| |
|---|
|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도축장연접 및 종업원 5인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소로써 국내산 이력관리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에 해당함 |

- 전산신고대상자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을 관리하고자 하는 식육판매업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표3〉의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음

나. **신고절차** : 거래신고 대상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아래의 신고내용을 전자적으로 신고

- 신고 내용 : 국내산 축산물의 거래실적(매입, 매출) 등
  - 신고인(성명, 대표자, 법인번호, 영업허가번호), 출·입고처(영업장 명칭,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영업허가번호), 거래처, 거래내역(거래일, 이력(묶음)번호, 제품명(부위명), 수량, 무게, 도체번호 등)

다. **신고기한** : 거래한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3. 거래명세서 관리

-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 법 제1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 별표 12 및 별표13에 따른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말함

## 4. 이력번호에 따른 정보 제공

- 이력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가축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이력관리대상가축·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 공개

1. 농장식별번호 2. 소·종돈의 개체식별번호 3. 이력번호 4. 소의 출생연월일 및 종돈의 등록연월일 또는 소·종돈의 수입연월일 5. 가축의 종류 6. 소·종돈의 암수 구분 7.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이하 "가축사육시설"이라 한다)의 소재지 8.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의 이름 또는 명칭 9. 도축장의 명칭 및 소재지 10. 도축연월일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도축 검사 결과 10의2. 계란의 산란일자 11. 「축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돼지고기는 개체별 및 등급별로,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1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12의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명칭 및 소재지 12의3. 법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칭 및 소재지 13. 소의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 중량 14. 소·종돈의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 15. 소의 브루셀라병·결핵병 검사 결과 1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력관리대상가축이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된 날부터 도축·폐사·수출된 후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

## 5. 장부의 기록방법

○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묶음번호)의 추적이 용이하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거래내역서〈표9〉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날짜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전산신고업체는 전산신고 입력내용을 거래내역서로 갈음

○ 식육판매업자가 이력관리 쇠고기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해당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축산법 제40조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사본을 교부

-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 등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로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 다만, 이력관리시스템 전산망으로 신고한 경우 장부기록을 갈음할 수 있음

〈표9〉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거 래 내 역 서

판매업소명(　　)

| 거 래 연월일 | 식육·포장육의 종 류 | 물량 (kg) | 원산지 (　) | 부위 명칭 | 등급 | 도축장명 | 이력번호 (묶음번호) | 매입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의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관계자의 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함

〈표10〉 판매단계 업무흐름

| 업무 절차 | | 조치 사항 |
|---|---|---|
| ① 판매장 입고 | | • 입고된 부분육과 거래명세서상의 이력번호 일치여부 확인<br>•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 등 기록관리 |
| ② 부분육의 소분할 | | • 이력번호 확인 후 단위별 소분할 작업<br>• 소분할 포장정육은 쇠고기의 이력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포장지 등에 표시 |
| ③ 이력번호 게시 후 판매 | | • 쇠고기 또는 진열대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게시하여 판매<br>• 소포장단위 판매 시 이력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포장지마다 부착 후 판매<br>• 이력번호를 라벨 등에 인쇄하여 식육의 포장표면에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 ④ 이력정보 조회 | | •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축산물 이력정보) 등을 통해 이력번호 조회 |

## 4 묶음번호 관리 요령

### 1. 묶음번호 표시 방법

-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판매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처리·판매할 경우 이력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음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등급표시 의무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설도, 앞다리 등은 같은 등급으로 포장한 경우에만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음
- 묶음번호 구성 후 여러 개의 다른 이력번호를 소포장지마다 구성 이력번호를 모두 표시해야 함
-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소의 종류가 같은 경우에만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음
- 묶음번호를 구성한 이력번호는 다시 묶음번호로 사용할 수 없음(전산신고한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재묶음이 가능함)
- 묶음번호는 L을 포함한 15자리 문자·숫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부여받은 영업장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영업자코드를 사업자등록번호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 2. 묶음번호 구성범위 및 관리

-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쇠고기의 개체는 20마리 이하로 함. 다만, 여러 마리의 쇠고기를 혼합하여 포장하는 갈비, 세절육, 분쇄육 등은 50마리 이하로 구성할 수 있음
-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는 구매자 등이 요청한 경우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공
- 영 제4조에 따른 전산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는 소비자가 묶음번호를 인터넷 등으로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전산신고 해야 함

## 3. 묶음번호 구성체계

| | 묶음고정코드 | 구분코드 | 묶음날짜코드 | 영업자코드 | 일련번호 |
|---|---|---|---|---|---|
| **길이** | 1 | 1 | 6 | 4 | 3 |
| **타입** | 영문자(L) |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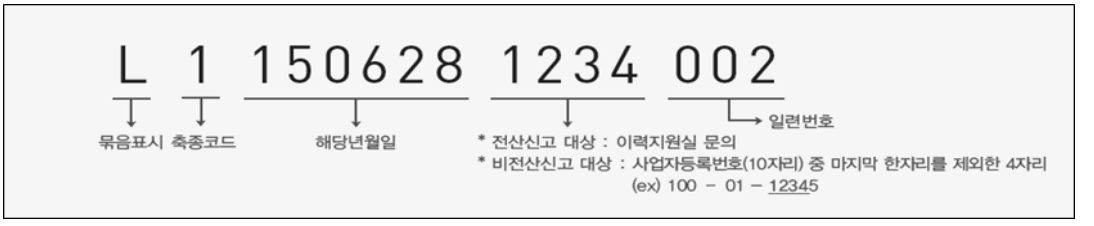


- 묶음고정코드는 영문자'L'을 표기한다.
- 구분코드는 쇠고기는 '0'으로 하고, 돼지고기는 '1'로 표기한다.
- 묶음날짜는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로 표기한다.
- 영업자코드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포장처리실적 전산신고 대상 영업자의 경우 : 이력관리시스템으로 부여 받은 영업장의 고유번호를 사용한다.
  - 포장처리실적 전산신고 대상 영업자가 아닌 경우 : 영업자코드는 세무서에서 부여 받은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숫자 중 끝에서 마지막 한 자리 숫자를 제외한 4자리 숫자를 사용한다.
- 일련번호는 묶음상품의 일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한다.

## 〈표11〉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서식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12. 31.〉

#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 ① 연월일 | ② 구분 | ③ 묶음번호 | ④ 부위명 | ⑤ 이력번호 | ⑥ 구성개체수<br>(구성이력번호수) | ⑦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① 연월일은 묶음번호를 구성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② 구분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종류인 국내산쇠고기, 국내산돼지고기, 국내산닭고기, 국내산오리고기, 수입산쇠고기, 수입산돼지고기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③ 묶음번호는 별표 14에 따라 조합한 숫자를 적습니다.

④ 부위명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모든 부위를 적습니다. 다만, 국내산돼지고기 또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⑤ 이력번호는 묶음을 구성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해당되는 모든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⑥ 구성개체수는 묶음을 구성하는 해당 쇠고기의 마릿수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쇠고기의 이력번호의 수가 5마리인 경우에는 "5"로 적습니다. 국내산이력축산물 중 돼지고기 또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이력번호의 수를 적습니다.

⑦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등급별 구성인 경우에 해당 이력번호별 등급을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5 일반·휴게음식점(700㎡이상), 학교급식소(초·중·고), 통신판매업

### 1. 표시대상

가. 영업장 면적 70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나.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및 유치원
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 2. 표시방법

■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

**1. 영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

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부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조리·판매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게시해야 한다.

1) 메뉴판 또는 메뉴게시판
2) 거래명세서 또는 거래영수증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른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4)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출력물
5) 별도 게시판 또는 푯말
6) 인터넷 홈페이지(해당 영업장 정보가 포함된 홈페이지)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품 표시사항을 포함한 스티커 또는 라벨

나. 제1호가목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이력번호 표시를 메뉴판, 메뉴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외의 방법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 중 한 곳 이상에 비치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계산대
2) 출입문 주변
3)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다. 이력번호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공급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모두 게시하고,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소진한 시점까지 게시하도록 한다. 다만, 영업자가 공급받은 이력관리대상축산물 모두를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음식으로 판매·제공할 때 게시할 수 있다.

라.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2. 영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탁급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급식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제1호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급식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표시하고 게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학교 홈페이지 등 학교명이 포함된 곳만 해당한다)을 통하여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력번호 게시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3. 영 제5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가.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통하여 이력번호 표시제품임을 표시·고지하고 배송 상품에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나. 인터넷, TV, 잡지 등 통신판매 수단의 특성상 문자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정보 주위에 자막, 별도의 칸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 표시 제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1) 표시 시기: 전자매체의 경우 상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

2) 표시 문구(예시): 이력번호 표시제품임. 이력번호는 배송된 상품에 표시됨.

다. 전화 등 통신판매 수단의 특성상 문자로 정보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력번호 표시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반복적으로 말로 설명해야 한다.

1) 설명 방법: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상품 설명과 동일하게 하고, 반복적(1회당 2번 이상)으로 설명

2) 설명 문구(예시): 본 상품은 이력번호가 표시된 제품이며, 이력번호는 배송되는 상품에 표시됩니다.

**4. 그 밖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게시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6 DNA동일성검사

## 1. 검사추진체계

### 가. DNA동일성검사의 실시목적

- 축산물이력제의 유효성을 확인·감시함으로써 소비자 등으로부터 신뢰 확보
- 위생·안전성, 원산지 표시 등의 문제 발생에 대비한 추적검사 시스템 확립으로 문제 발생시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 폐기 등을 신속하게 조치

### 나. 시행기관

-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 다. 지도·단속 권한

- 지도·단속(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
  - 시·도 : 사육농가,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식육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축산물품질평가원 : 사육농가,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모니터링 : 축산물품질평가원(이력정보 검증, 단속기관 정보제공)
- 시료채취 및 검사기관(모니터링 포함)
  - 사육단계 : 시·도, 축산물품질평가원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또는 민간검사기관에서 검사(표본검사)
  - 도축단계 : 축산물품질평가원(도축 전두수 시료채취 및 보관)
  - 포장처리단계 : 시·도, 축산물품질평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판매단계 :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 라. DNA동일성검사 체계

**시료채취현장**

포장처리업소 판매업소 방문 → 이력번호 확인 → 시료채취확인서 작성 → 사업장 담당자 확인 → 유전자분석처 의뢰

**유전자분석처**

검사용·보관용 시료 확인 → 이력번호 확인 → 관리대장 작성 → DNA 추출 → DNA동일성검사 → 동일성 판정 → 결과 통보

## 마. DNA동일성검사 방법

| DNA추출 | DNA증폭 | DNA전기영동 | DNA분석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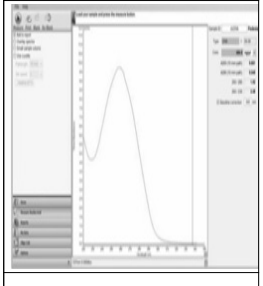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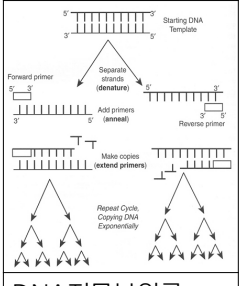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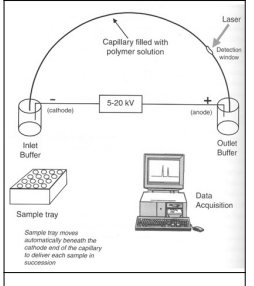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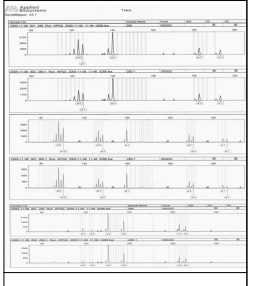 |
| 세포로 부터 유전정보 물질인 순수한 DNA를 분리 | DNA지문부위를 35회 증폭 (1개의 DNA가 10억 배로 증폭) | 음전하 DNA에 전류를 가하여 DNA크기별로 분류 | 염기의 길이 차이로 DNA동일성 또는 친자관계 확인 |

## 2. DNA동일성검사의 시료채취 및 관리

### 가. 검사용 시료의 채취

○ DNA동일성검사 검사용 시료채취방법

| 업무흐름 | | 추진요령 |
|---|---|---|
| ① 시료채취 후 지퍼백에 밀봉 | | 칼, 가위 등 도구를 이용하여 살코기 부분을 약 20g 채취, 이를 약 10g정도로 이등분, 작은 크기의 지퍼백(5㎝×10㎝)에 밀봉 |
| ②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과 채취시료 봉투 밀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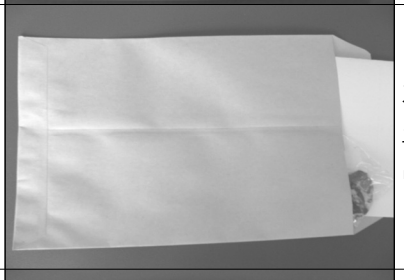 | 지퍼백에 넣은 시료는 발송대장에 기록한 후,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과 함께 시료봉투에 밀봉 |
| ③ 담당자 간 서명날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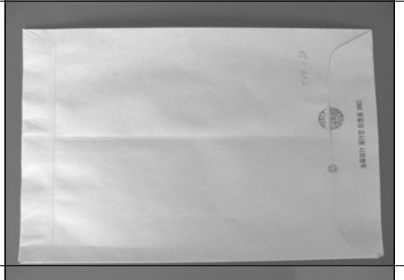 | 지정판매장 담당자와 시료채취자 쌍방이 밀봉한 부분에 서명 날인 |
| ④ 검사용 지정봉투 추가봉인 | | 밀봉한 검사용 시료채취 지정봉투를 큰 크기의 지퍼백(25㎝×30㎝)에 넣음 |
| ⑤ 유전자분석처 송부 | | 지퍼백에 넣은 검사용 시료채취 지정봉투를 얼음 및 냉매와 함께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밀봉한 후, 축산물품질평가원(유전자분석처)에 택배 등을 이용하여 이송 |

## 나. 검사용 시료채취 및 운송 방법

- 포장처리업소·판매업소에서 이력번호가 표시된 상태로 판매(포장 또는 대면)되는 경우에만 시료를 채취
- 채취방법은 날카로운 도구(칼, 가위 등)를 사용하여 살코기 부분을 약 20g 채취하고 이를 약 10g 정도로 2등분하여 각각 지퍼백에 밀봉
- 채취한 시료는 지정된 봉투에 넣어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과 함께 밀봉하고, 판매자와 시료 채취자 쌍방이 밀봉한 부분에 서명 날인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유전자분석처)에 택배 등을 이용하여 이송

## 다. 시료채취 및 운송시 주의사항

- 세척 후 채취기구(핀셋)에 이물질이나 혈흔이 없도록 할 것
  - 동일성검사에서 다른 개체의 조직 및 혈흔이 묻어 있으면 오염이 일어나 다른 개체로 판명이 나거나 판정불능으로 날 수 있음
  - 사용 시 물기 없이 완전히 건조 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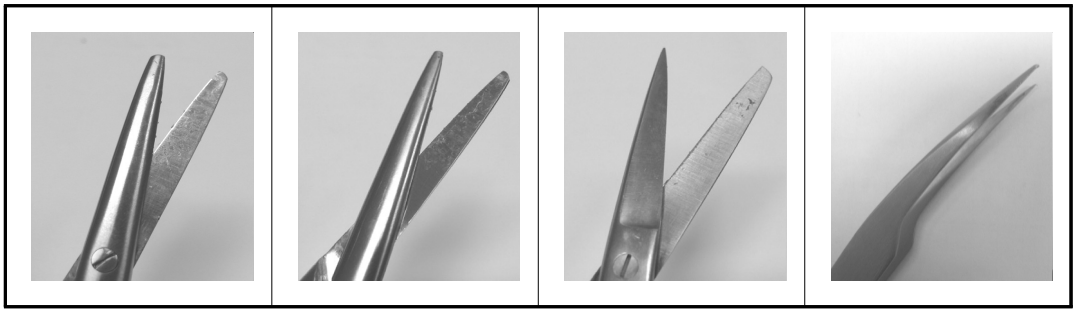

- 여름철(5월~10월)시료는 얼음과 냉매 등을 이용하여 우송
  - 온도 상승 시 부패 등으로 DNA가 손상될 우려가 있음
- DNA 시료채취 확인서 및 시료봉투 작성은 볼펜 등을 이용할 것
  - 얼음과 냉매 등이 있을 경우 번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7 단계별 전산매뉴얼

## 1. 회원가입 및 로그인(공통)

☐ 회원가입없이 자료실 서류첨부

※ 가공, 판매장에서 직접 회원 가입한 경우가 많음

[그림 1.1]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①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이력제 홈페이지 주소 입력

→ http://www.mtrace.go.kr

② '국민참여공간' 클릭 → ③ '자료실'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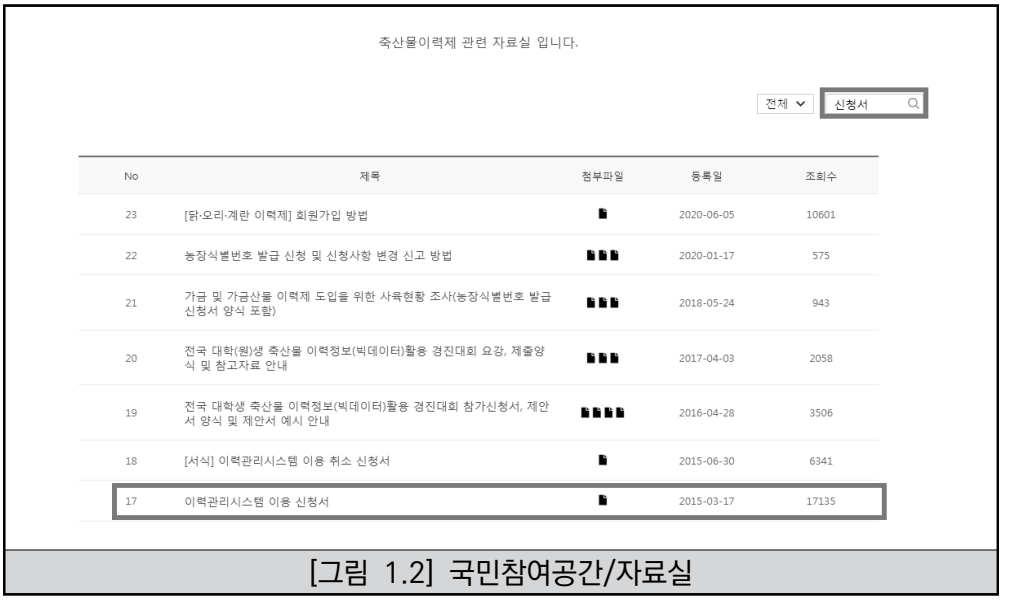


[그림 1.2] 국민참여공간/자료실

① 신청서로 검색 후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 클릭

#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 | | | |
|---|---|---|---|---|
| 사업장 정보 | 사업장명 | | 사업자번호 | |
| | 대표자명 | | 연락처 (휴대전화) | |
| | | | 팩스(FAX) | |
| | 소재지 주소 | (도로명) | | (우 : ) |
| | 이메일 | | | |
| | 업업장 면적 | ㎡ | 종업원수 | 명 |
| | 이력관리품목 | 【 】소 【 】돼지 【 】닭 【 】오리 【 】계란 | | |
| | 업업의 종류 ※ 해당업종 모두 체크 | 【 】계열화사업자(닭오리) | 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 | |
| | | 【 】농장경영자 | 농장식별번호 : | |
| | | 【 】도축업 | 허가번호 : | |
| | | 【 】식육포장처리업 | 허가번호 : | |
| | | 【 】식육판매업 등 | 신고필증번호 : | |
| | | 【 】식용란선별포장업<br>【 】농장내부 【 】농장외부 | 허가번호 :<br>농장식별번호 : | |
| | | 【 】식용란수집판매업 | 신고필증번호 :<br>HACCP인증번호 : | |
| 이력시스템 사용자 정보 | 사용자 성명 | | 생년월일 | |
| | 휴대전화번호 | | 유선전화 | |
| | 이메일 | | 팩스번호 | |

위와 같이 이력관리시스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 첨부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1부.<br>2. 허가증(축산업,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선별포장업) 1부.<br>3. 신고필증(식육판매업 등, 식용란수집판매업) 1부.<br>4. HACCP-식용란수집판매업 인증서 1부. |
|---|---|

**이력지원실 문의 : 전화 1577-2633 / 팩스 044-410-7178 / mtrace@ekape.or.kr**

[그림 1.3] 국민참여공간/자료실

① ‘첨부파일’ 클릭

② ‘저장’ 클릭

③ 첨부파일 중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 서류를 작성

①-❶

#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
| 사업장 정보 | 사업장명 | | 사업자번호 | |
| | 대표자명 | | 연락처(휴대전화) | |
| | | | 팩스(FAX) | |
| | 소재지 주소 | (도로명) (우 : ) | | |
| | 이메일 | | | |
| | 영업장 면적 | ㎡ | 종업원수 | 명 |
| | 이력관리품목 | [ ] 소 [ ] 돼지 [ ] 닭 [ ] 오리 [ ] 계란 | | |
| | 영업의 종류 ※ 해당업종 모두 체크 | [ ] 계열화사업자(닭·오리) | 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 | |
| | | [ ] 농장경영자 | 농장식별번호 : | |
| | | [ ] 도축업 | 허가번호 : | |
| | | [ ] 식육포장처리업 | 허가번호 : | |
| | | [ ] 식육판매업 등 | 신고필증번호 : | |
| | | [ ] 식용란선별포장업 [ ] 농장내부 [ ] 농장외부 | 허가번호 : 농장식별번호 : | |
| | | [ ] 식용란수집판매업 | 신고필증번호 : HACCP인증번호 : | |
| 이력시스템 사용자 정보 | 사용자 성명 | | 생년월일 | |
| | 휴대전화번호 | | 유선전화 | |
| | 이메일 | | 팩스번호 | |

위와 같이 이력관리시스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 첨부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1부.<br>2. 허가증(축산업,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선별포장업) 1부.<br>3. 신고필증(식육판매업 등, 식용란수집판매업) 1부.<br>4. HACCP-식용란수집판매업 인증서 1부. |
|---|---|

**이력지원실 문의 : 전화 1577-2633 / 팩스 044-410-7178 / mtrace@ekape.or.kr**

①-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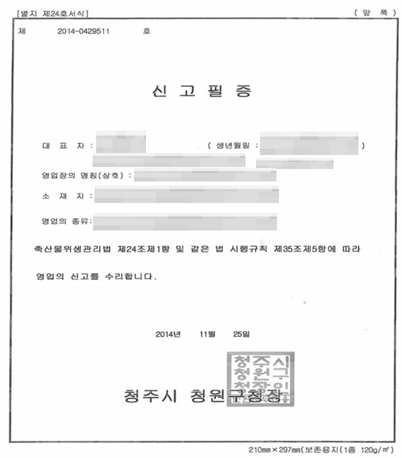

[별지 제24호서식] ( 앞 쪽 )

제 2014-0429511 호

신 고 필 증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영업장의 명칭(상호) :

소 재 지 :

영업의 종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청주시 청원구청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①-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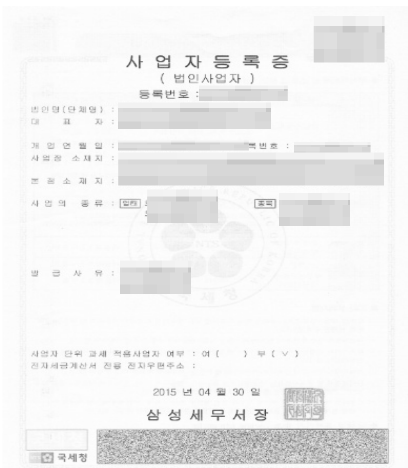

사 업 자 등 록 증

( 법인사업자 )

등록번호 :

법인명(단체명) :

대 표 자 :

2015 년 04 월 30 일

삼 성 세 무 서 장

국세청

①-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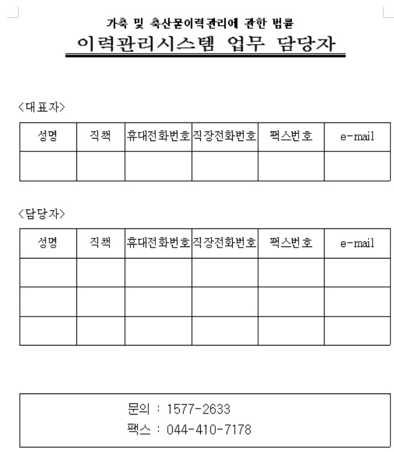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이력관리시스템 업무 담당자**

<대표자>

| 성명 | 직책 | 휴대전화번호 | 직장전화번호 | 팩스번호 | e-mail |
|---|---|---|---|---|---|
| | | | | | |

<담당자>

| 성명 | 직책 | 휴대전화번호 | 직장전화번호 | 팩스번호 | e-mail |
|---|---|---|---|---|---|
| | | | | | |
| | | | | | |
| | | | | | |

문의 : 1577-2633

팩스 : 044-410-7178

[그림 1.4] 신청서 및 서류

① - ❶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첨부 : hwp파일)

❷ 신고필증(판매장), 허가증(포장처리업소)

❸ 사업자등록증

❹ 신청서 및 3장의 첨부 서류를 이력지원실 팩스 044-410-7178 또는 메일 (mtrace@ekape.or.kr) 전송

② 이력지원실에서 담당자 휴대전화로 전화 또는 SMS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그림 1.5]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①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이력제 홈페이지 주소 입력

→ http://www.mtrace.go.kr/ 또는 www.://pub.mtrace.go.kr

② [이력관리시스템 로그인]버튼 클릭

[그림 1.6] 로그인 화면

① 이력지원실에서 발급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② 로그인 버튼 클릭

# 2. 포장처리단계

## 2.1 매입신고관리

### 2.1.1 도축장 반출개체현황

#### (1) 도축장 반출기준

- 개요 : 도축장 반출을 기준으로 도축장 반출 개체현황을 조회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매입신고관리 > 도축장반출개체현황 > 도축장 반출기준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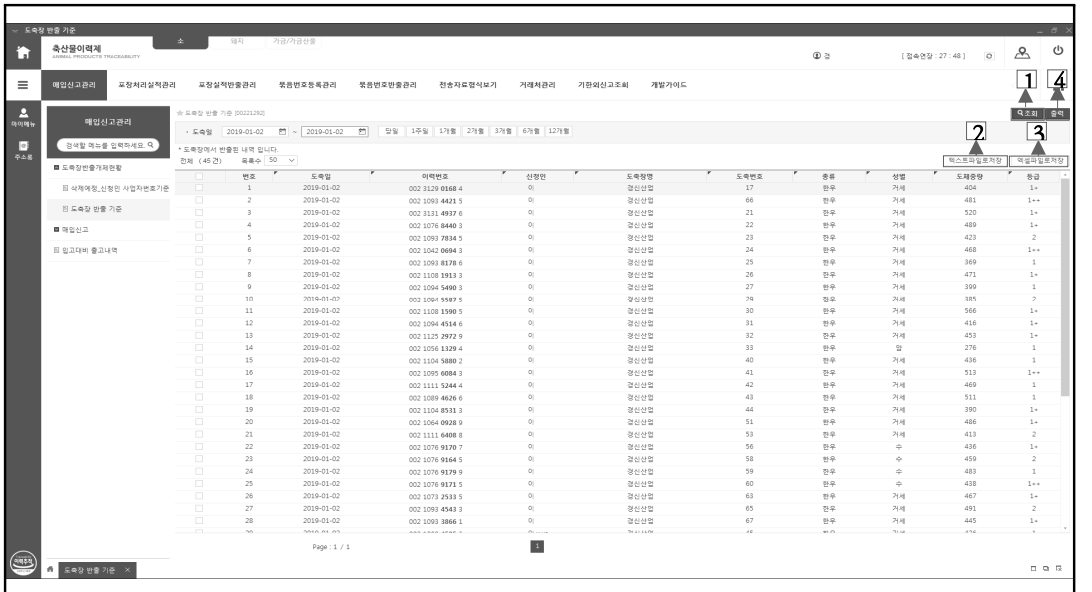


[그림 2.1.1-5] 도축장 반출 기준 조회 화면

① 정보 검색에 필요한 값을 입력 후 조회합니다.

② 조회 결과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림 2.1.1-6]

③ 조회 결과를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림 2.1.1-7]

④ 도축장 반출 개체현황(도축장 반출기준)을 보고서로 출력합니다.
[그림 2.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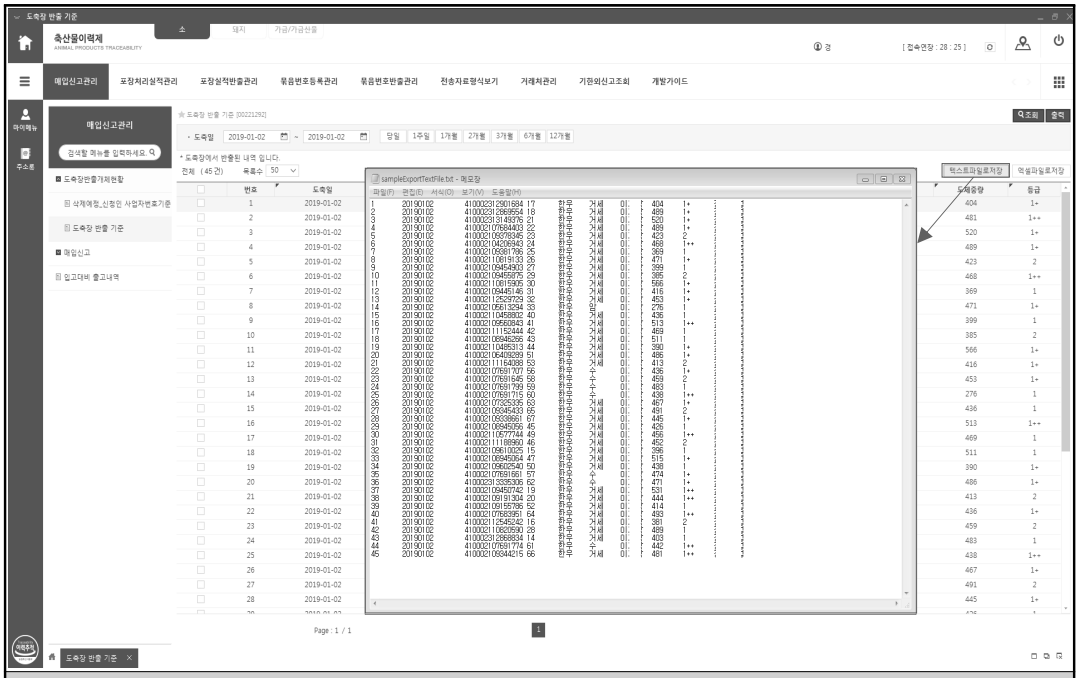

[그림 2.1.1-6] 텍스트파일로 저장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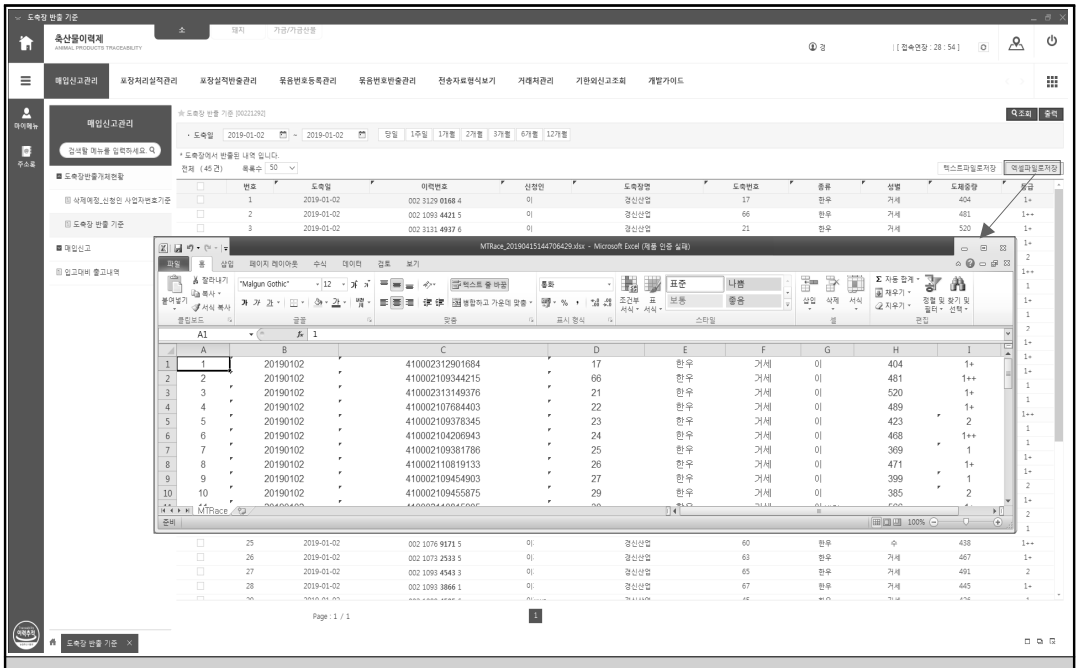

[그림 2.1.1-7] 엑셀파일로 저장화면

# 도축장반출개체현황

(도축장 반출 기준) 도축일 : 2019-01-02~2019-01-02/ 전체(45)

| 번호 | 도축일 | 이력번호 | 신청인 | 도축장명 | 반출일자 | 도축번호 | 종류 | 성별 | 도체중량 | 등급 |
|---|---|---|---|---|---|---|---|---|---|---|
| 1 | 2019/01/02 | 002312901684 | 이 | 경신산업 | 20190103 | 17 | 한우 | 거세 | 404 | 1+ |
| 2 | 2019/01/02 | 002109344215 | 이 | 경신산업 | 20190103 | 66 | 한우 | 거세 | 481 | 1++ |
| 3 | 2019/01/02 | 002313149376 | 이 | 경신산업 | 20190103 | 21 | 한우 | 거세 | 520 | 1+ |
| 4 | 2019/01/02 | 002107684403 | 이 | 경신산업 | 20190103 | 22 | 한우 | 거세 | 489 | 1+ |
| 5 | 2019/01/02 | 002109378345 | 이 | 경신산업 | 20190103 | 23 | 한우 | 거세 | 423 | 2 |
| 6 | 2019/01/02 | 002104206943 | 이 | 경신산업 | 20190103 | 24 | 한우 | 거세 | 468 | 1++ |
| 7 | 2019/01/02 | 002109381786 | 이 | 경신산업 | 20190103 | 25 | 한우 | 거세 | 369 | 1 |
| 8 | 2019/01/02 | 002110819133 | 이 | 경신산업 | 20190103 | 26 | 한우 | 거세 | 471 | 1+ |
| 9 | 2019/01/02 | 002109454903 | 이 | 경신산업 | 20190103 | 27 | 한우 | 거세 | 399 | 1 |
| 10 | 2019/01/02 | 002109455875 | 이 | 경신산업 | 20190103 | 29 | 한우 | 거세 | 385 | 2 |
| 11 | 2019/01/02 | 002110815905 | 이 | 경신산업 | 20190103 | 30 | 한우 | 거세 | 566 | 1+ |
| 12 | 2019/01/02 | 002109445146 | 이 | 경신산업 | 20190103 | 31 | 한우 | 거세 | 416 | 1+ |
| 13 | 2019/01/02 | 002112529729 | 이 | 경신산업 | 20190103 | 32 | 한우 | 거세 | 453 | 1+ |
| 14 | 2019/01/02 | 002105613294 | 이 | 경신산업 | 20190103 | 33 | 한우 | 암 | 276 | 1 |
| 15 | 2019/01/02 | 002110458802 | 이 | 경신산업 | 20190103 | 40 | 한우 | 거세 | 436 | 1 |
| 16 | 2019/01/02 | 002109560843 | 이 | 경신산업 | 20190103 | 41 | 한우 | 거세 | 513 | 1++ |
| 17 | 2019/01/02 | 002111152444 | 이 | 경신산업 | 20190103 | 42 | 한우 | 거세 | 469 | 1 |
| 18 | 2019/01/02 | 002108946266 | 이 | 경신산업 | 20190103 | 43 | 한우 | 거세 | 511 | 1 |
| 19 | 2019/01/02 | 002110485313 | 이 | 경신산업 | 20190103 | 44 | 한우 | 거세 | 390 | 1+ |
| 20 | 2019/01/02 | 002106409289 | 이 | 경신산업 | 20190103 | 51 | 한우 | 거세 | 486 | 1+ |
| 21 | 2019/01/02 | 002111164088 | 이 | 경신산업 | 20190103 | 53 | 한우 | 거세 | 413 | 2 |
| 22 | 2019/01/02 | 002107691707 | 이 | 경신산업 | 20190103 | 56 | 한우 | 수 | 436 | 1+ |
| 23 | 2019/01/02 | 002107691645 | 이 | 경신산업 | 20190103 | 58 | 한우 | 수 | 459 | 2 |
| 24 | 2019/01/02 | 002107691799 | 이 | 경신산업 | 20190103 | 59 | 한우 | 수 | 483 | 1 |
| 25 | 2019/01/02 | 002107691715 | 이 | 경신산업 | 20190103 | 60 | 한우 | 수 | 438 | 1++ |
| 26 | 2019/01/02 | 002107325335 | 이 | 경신산업 | 20190103 | 63 | 한우 | 거세 | 467 | 1+ |
| 27 | 2019/01/02 | 002109345433 | 이 | 경신산업 | 20190103 | 65 | 한우 | 거세 | 491 | 2 |
| 28 | 2019/01/02 | 002109338661 | 이 | 경신산업 | 20190103 | 67 | 한우 | 거세 | 445 | 1+ |
| 29 | 2019/01/02 | 002108945056 | 이 | 경신산업 | 20190103 | 45 | 한우 | 거세 | 426 | 1 |

[그림 2.1.1-8] 도축장 반출기준 출력화면

## 2.1.2 매입신고

### 2.1.2.1 매입신고 조회

#### (1) 매입신고 현황 조회 및 매입신고 처리

- 개요 : 매입실적신고를 조회하거나 등록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매입신고관리 〉 매입신고 〉 매입신고조회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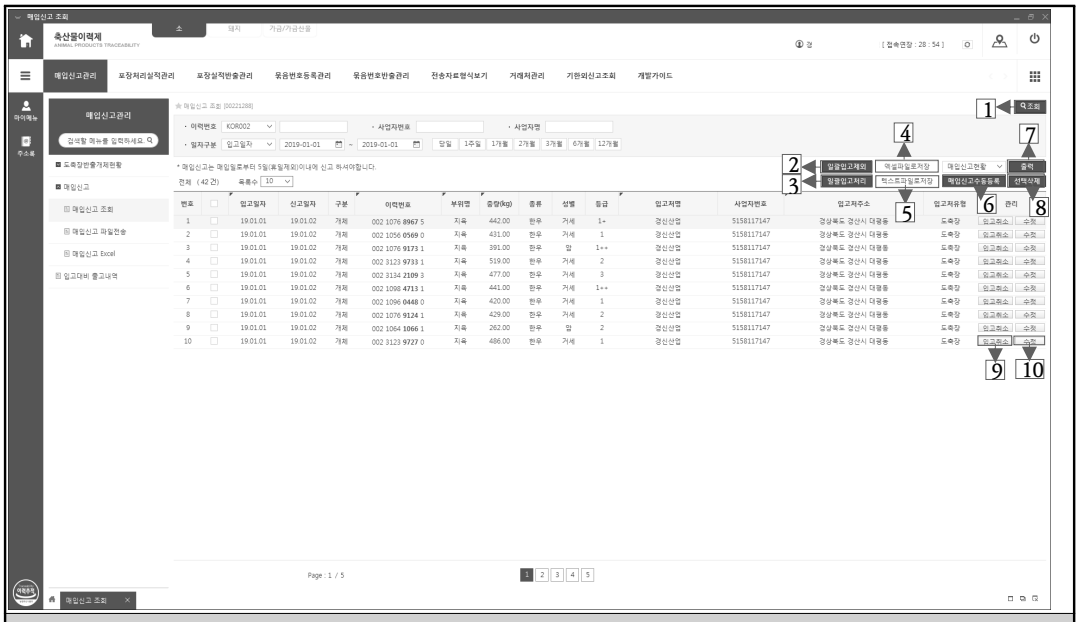


[그림 2.1.2.1-1] 매입신고 조회 화면

① 매입신고를 조회합니다.

② 해당 건을 선택 후 일괄입고제외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선택 건이 모두 입고제외 처리됩니다.

③ 해당 건을 선택 후 일괄입고처리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선택 건을 모두 입고처리 합니다.

④ 매입현황에서 엑셀파일로 저장 버튼을 누르면 해당 목록을 엑셀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림 2.1.2-2]

⑤ 매입현황에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 버튼을 누르면 해당 목록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림 2.1.2-3]

⑥ 매입신고 수동등록을 합니다. [그림 2.1.2-7]

⑦ 매입신고현황과 거래내역신고서를 출력합니다. [그림 2.1.2-4] [그림 2.1.2-5]

⑧ 체크박스에 체크된 항목을 삭제합니다.

⑨ 해당 입고완료된 내역을 입고취소 처리합니다.

⑩ 해당 입고내역을 수정합니다. [그림 2.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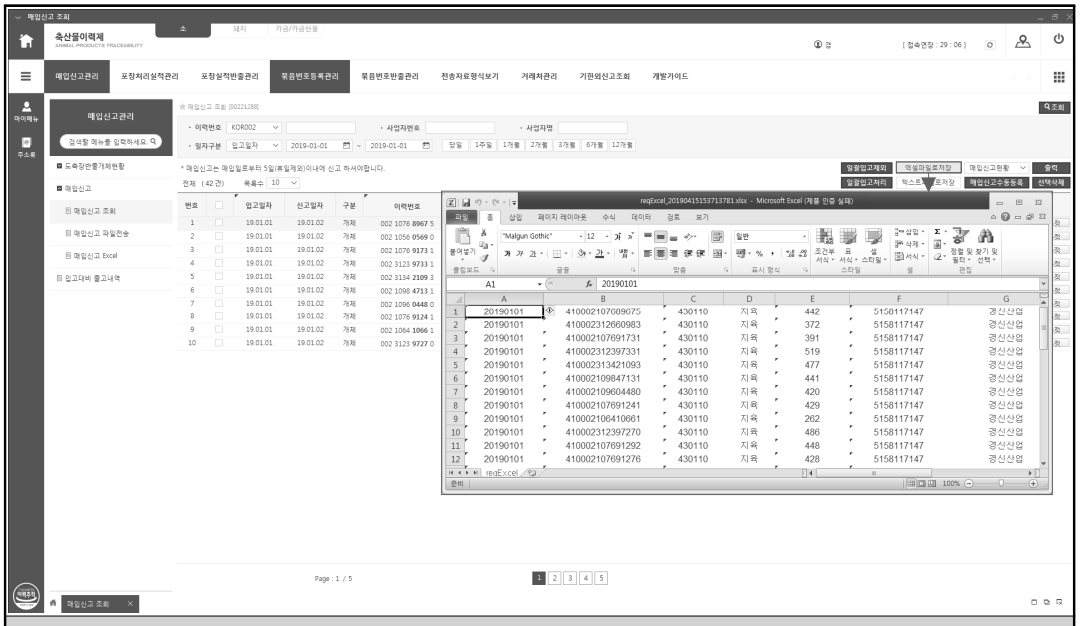

[그림 2.1.2.1-2] 엑셀파일로 저장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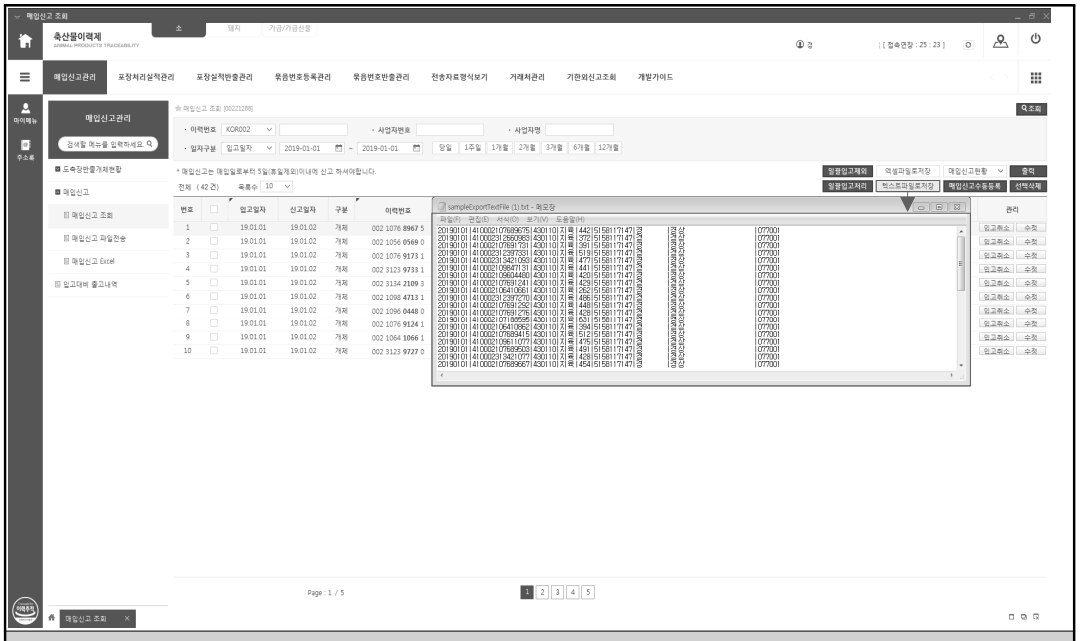

[그림 2.1.2.1-3] 텍스트 파일로 저장화면

# 매입신고 현황

입고일자 : 2019-01-01~2019-01-01 / 전체(42)

| 번호 | 입고일자 | 신고일자 | 이력번호 | 부위명 | 중량(kg) | 입고처명 | 입고처주소 | 입고처유형 |
|---|---|---|---|---|---|---|---|---|
| 1 | 19.01.01 | 19.01.02 | 002 1076 8967 5 | 지육 | 442 | 경 | 경상북도 | 도축장 |
| 2 | 19.01.01 | 19.01.02 | 002 3126 6098 3 | 지육 | 372 | 경 | 경상북도 | 도축장 |
| 3 | 19.01.01 | 19.01.02 | 002 1076 9173 1 | 지육 | 391 | 경 | 경상북도 | 도축장 |
| 4 | 19.01.01 | 19.01.02 | 002 3123 9733 1 | 지육 | 519 | 경 | 경상북도 | 도축장 |
| 5 | 19.01.01 | 19.01.02 | 002 3134 2109 3 | 지육 | 477 | 경 | 경상북도 | 도축장 |
| 6 | 19.01.01 | 19.01.02 | 002 1098 4713 1 | 지육 | 441 | 경 | 경상북도 | 도축장 |
| 7 | 19.01.01 | 19.01.02 | 002 1096 0448 0 | 지육 | 420 | 경 | 경상북도 | 도축장 |
| 8 | 19.01.01 | 19.01.02 | 002 1076 9124 1 | 지육 | 429 | 경 | 경상북도 | 도축장 |
| 9 | 19.01.01 | 19.01.02 | 002 1064 1066 1 | 지육 | 262 | 경 | 경상북도 | 도축장 |
| 10 | 19.01.01 | 19.01.02 | 002 3123 9727 0 | 지육 | 486 | 경 | 경상북도 | 도축장 |
| 11 | 19.01.01 | 19.01.02 | 002 1076 9129 2 | 지육 | 448 | 경 | 경상북도 | 도축장 |
| 12 | 19.01.01 | 19.01.02 | 002 1076 9127 6 | 지육 | 428 | 경 | 경상북도 | 도축장 |
| 13 | 19.01.01 | 19.01.02 | 002 1071 8859 5 | 지육 | 631 | 경 | 경상북도 | 도축장 |
| 14 | 19.01.01 | 19.01.02 | 002 1064 1086 2 | 지육 | 394 | 경 | 경상북도 | 도축장 |
| 15 | 19.01.01 | 19.01.02 | 002 1076 8941 5 | 지육 | 512 | 경 | 경상북도 | 도축장 |
| 16 | 19.01.01 | 19.01.02 | 002 1096 1107 7 | 지육 | 475 | 경 | 경상북도 | 도축장 |
| 17 | 19.01.01 | 19.01.02 | 002 1076 8950 3 | 지육 | 491 | 경 | 경상북도 | 도축장 |
| 18 | 19.01.01 | 19.01.02 | 002 3134 2107 7 | 지육 | 428 | 경 | 경상북도 | 도축장 |

[그림 2.1.2.1-4] 매입신고 현황출력 화면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내역 신고서

※ 아래 및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19.01.02 | 발급일 | 19.04.15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
|---|---|---|---|---|
| 신고인 | 성 명(법인명) | 경 | 대표자 | 이 |
| | 생년월일<br>(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515- | 연락처 | 053- |
| | 영업허가(신고)번호 | | | |
| | 주소 | 경상북도<br>경상북도 | | |

| | | | | |
|---|---|---|---|---|
| 입고처 | 영업장의 명칭<br>(상호) | 경 | 영업허가(신고)번호 | |
| | | |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515- |

| | | | | |
|---|---|---|---|---|
| 거래처 | 성 명(법인명) | 경 | 대표자 | |
| |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515- | 연락처 | |
| | 영업허가(신고)번호 | | | |
| | 주소 | 경상북도 | | |

| | | | | | | |
|---|---|---|---|---|---|---|
| 거래내역 | 거래일 | 19.01.01 | 도축일 | 20181231 | 가공일 | |
| | 이력번호 | | 도축번호 | | 원료 또는 부위명 | |
| | 수량(BOX, 마리) | | | | 무게(kg, t)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신고합니다.

[그림 2.1.2.1-5] 거래내역 신고서출력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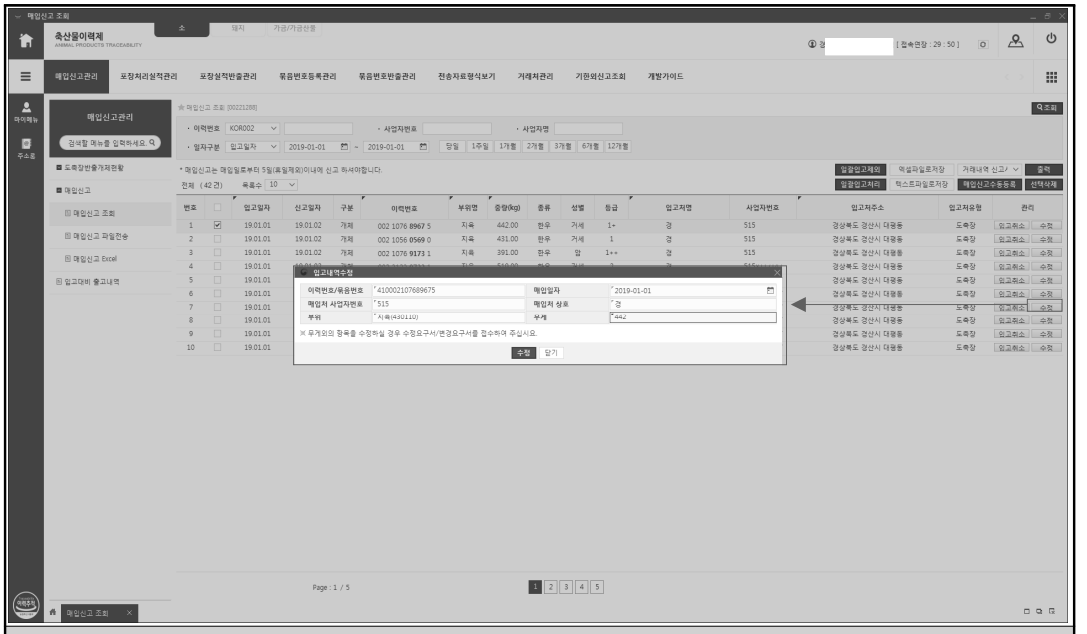


[그림 2.1.2.1-6] 매입신고 수정 화면

## (2) 매입신고 수동등록

- 개요 : 매입신고 수동등록을 합니다.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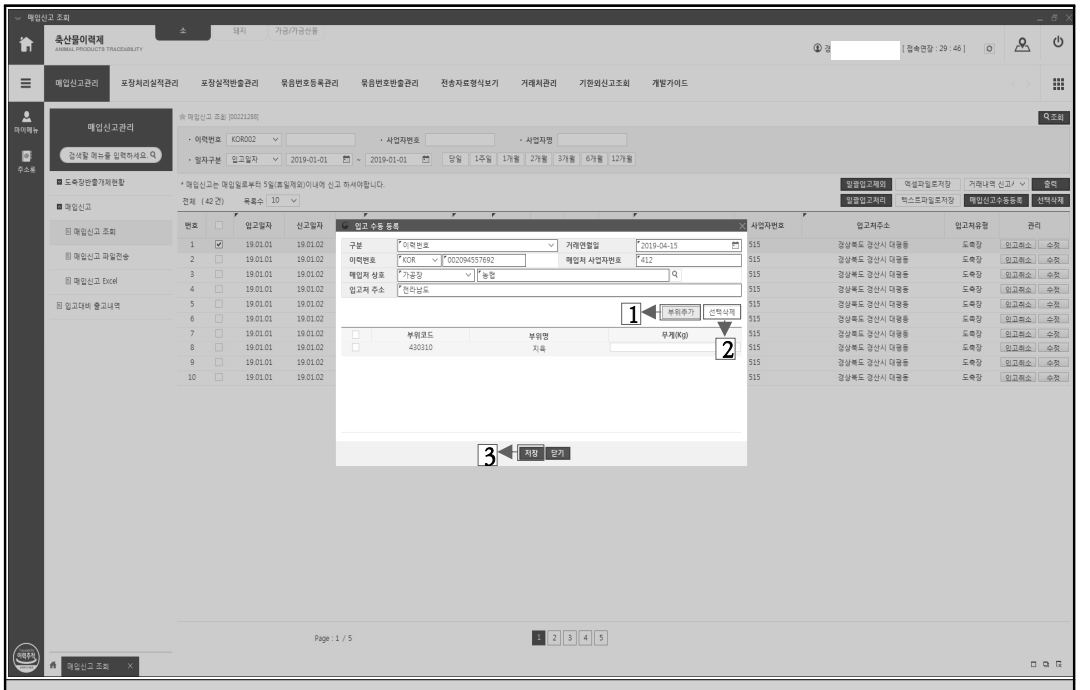


[그림 2.1.2.1-7] 매입신고 수동등록 화면

① 부위코드 팝업으로 부위를 찾아 추가합니다. [그림 2.1.2-8]

② 체크박스에 체크된 항목을 삭제합니다.

③ 개체식별번호, 거래연월일, 매입처 상호, 매입처 사업자번호, 부위, 중량 등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매입신고 수동등록이 됩니다.

※ 기존 한 부위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을 개체식별번호별 여러 부위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 신고한 부위 개수만큼 매입건이 생성됨.

[그림 2.1.2.1-8] 표준부위 조회 화면

### 2.1.2.2 매입신고 파일전송

- 개요 : 가공단계 사용자는 매입신고 처리를 통해 직접 처리를 할 수도 있고, 파일을 업로드 하여 매입신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매입신고관리 〉 매입신고 〉 매입신고 파일전송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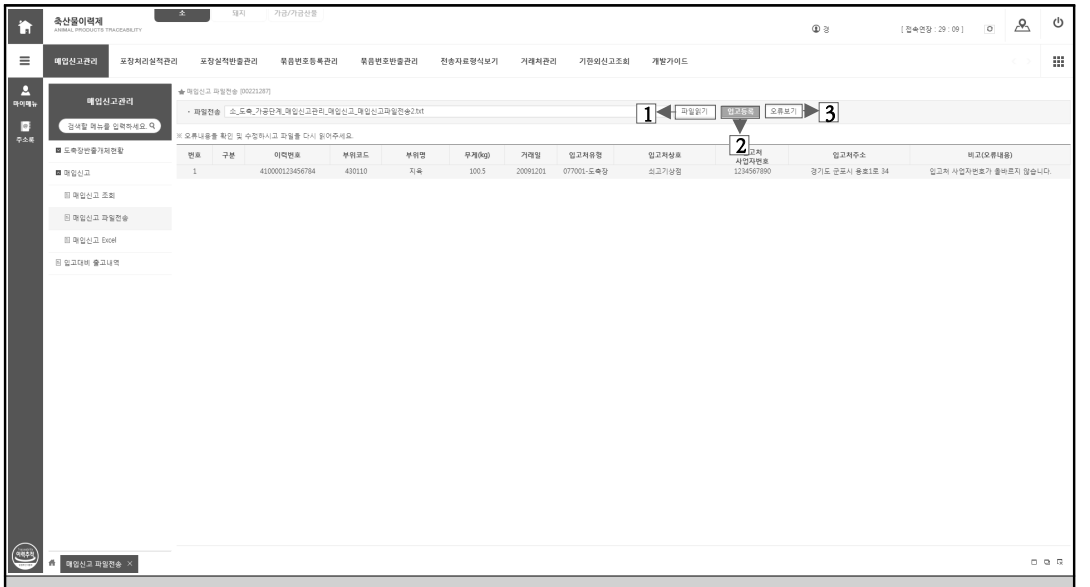


[그림 2.1.2.2-1] 매입신고 파일처리 화면

① 파일읽기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신고 처리할 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건수가 0건이면 입고등록버튼이 활성화됩니다.

② 입고등록을 눌러 매입신고를 합니다.

③ 등록할 파일의 파일정보를 분석하여 오류목록, 전체목록이 조회됩니다.

### 2.1.2.3 매입신고 Excel

- 개요 : 가공단계 사용자는 매입신고 처리를 통해 직접 처리를 할 수도 있고, Excel파일을 업로드 하여 매입신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매입신고관리 〉 매입신고 〉 매입신고 Excel
- 화면 설명

[그림 2.1.2.3-1] 매입신고 Excel처리 화면

① 파일읽기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신고 처리할 Excel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건수가 0건이면 저장버튼이 활성화됩니다.

② 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내용이 비고에 표시됩니다.

③ 저장을 눌러 매입신고를 처리합니다.

④ 선택된 내역을 삭제합니다.

⑤ 항목선택란을 클릭하면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콤보박스가 나타납니다.

⑥ 각각의 셀을 더블클릭하면 수동입력할 수 있도록 화면이 변경됩니다.

### 2.1.2.4 입고대비 출고내역

- 개요 : 입고대비 출고내역을 조회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매입신고관리 〉 매입신고 〉 입고대비 출고내역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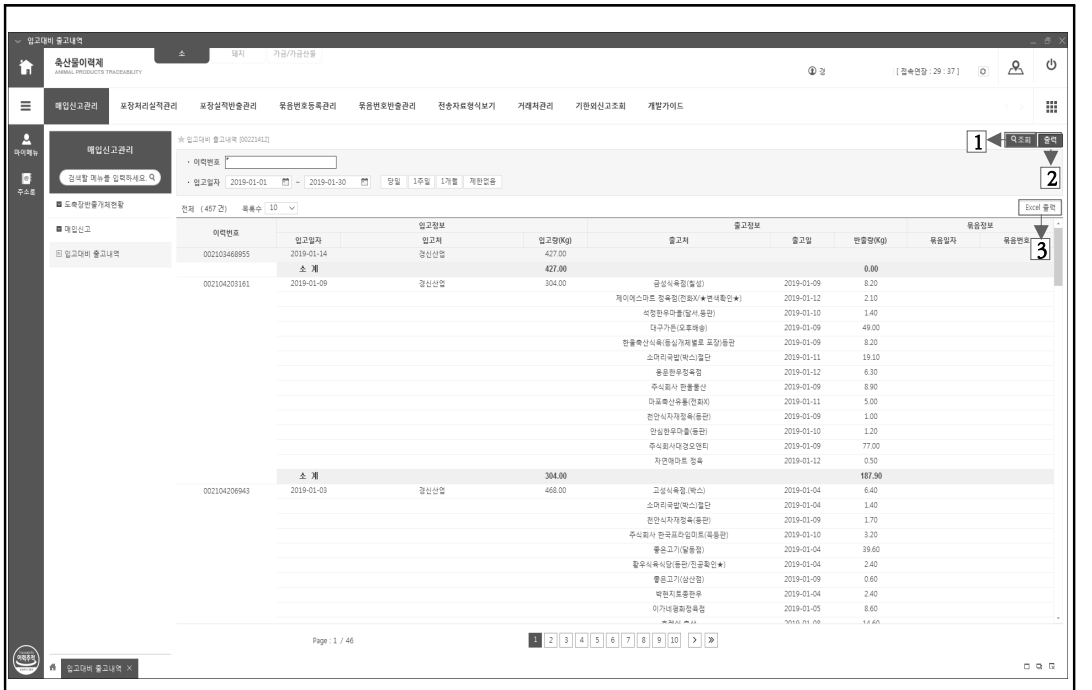


[그림 2.1.2.4-1] 입고대비 출고내역 화면

① 입고대비 출고내역을 조회합니다.

② 조회조건에 의한 입고대비 출고내역이 출력됩니다. [그림 2.1.2.4-2]

③ 조회조건에 의한 입고대비 출고내역이 Excel로 출력됩니다. [그림 2.1.2.4-3]

## 이력번호별 입고대비 출고내역

매입처 : 경　　조회기간 : 2019-01-01~2019-01-30

| 이력번호 | 매입일자 | 매입처 | 매입량 | 출고일자 | 출고처 | 출고량 | 묶음일자 | 묶음번호 |
|---|---|---|---|---|---|---|---|---|
| 002103468955 | 2019-01-14 | 경 | 427.00 | | | | | |
| | 소 계 | | 427.00 | | | 0.00 | | |
| 002104203161 | 2019-01-09 | 경 | 304.00 | 2019-01-09 | 주 | 77.00 | | |
| | | | | 2019-01-09 | 한 | 8.20 | | |
| | | | | 2019-01-12 | 용 | 6.30 | | |
| | | | | 2019-01-10 | 안 | 1.20 | | |
| | | | | 2019-01-09 | 금 | 8.20 | | |
| | | | | 2019-01-10 | 석 | 1.40 | | |
| | | | | 2019-01-11 | 마 | 5.00 | | |
| | | | | 2019-01-11 | 소 | 19.10 | | |
| | | | | 2019-01-09 | 천 | 1.00 | | |
| | | | | 2019-01-12 | 제 | 2.10 | | |
| | | | | 2019-01-09 | 주 | 8.90 | | |
| | | | | 2019-01-12 | 자 | 0.50 | | |
| | | | | 2019-01-09 | 대 | 49.00 | | |
| | 소 계 | | 304.00 | | | 187.90 | | |
| 002104206943 | 2019-01-03 | 경 | 468.00 | 2019-01-04 | 소 | 1.40 | | |
| | | | | 2019-01-11 | 호 | 13.90 | | |
| | | | | 2019-01-08 | 후 | 14.60 | | |
| | | | | 2019-01-03 | 함 | 14.50 | | |
| | | | | 2019-01-04 | 박 | 2.40 | | |
| | | | | 2019-01-04 | 황 | 2.40 | | |
| | | | | 2019-01-09 | 좋 | 0.60 | | |
| | | | | 2019-01-08 | 농 | 2.00 | | |
| | | | | 2019-01-04 | 고 | 6.40 | | |
| | | | | 2019-01-10 | 탑 | 6.30 | | |

1/258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인쇄일자 : 2019-04-15 18:03:21

[그림 2.1.2.4-2] 입고대비 출고내역 출력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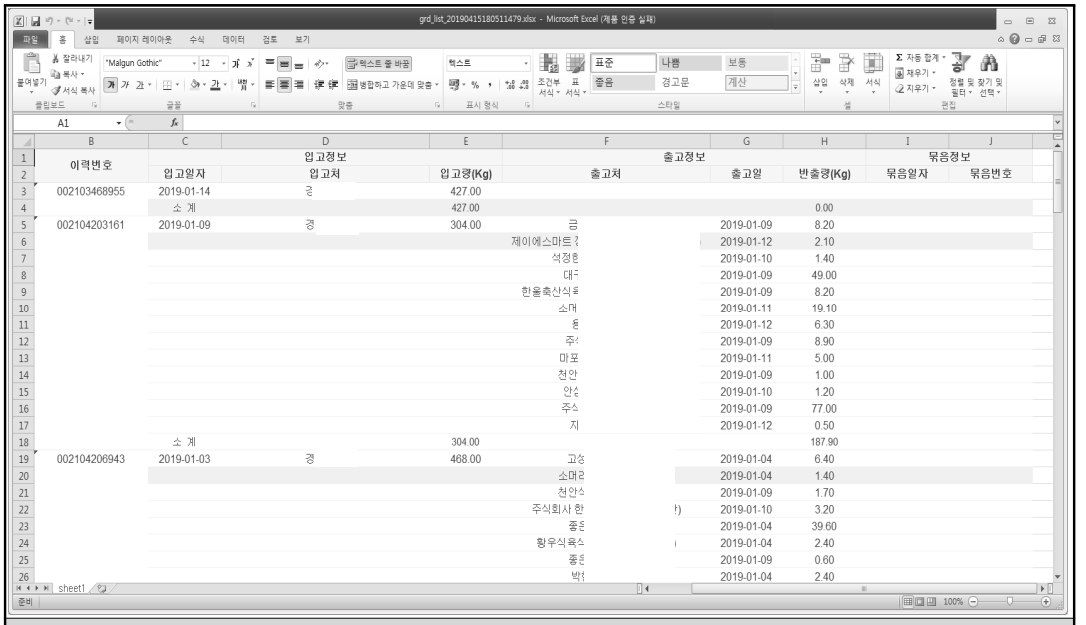

| 이력번호 | 입고정보 | | | 출고정보 | | | 묶음정보 | |
|---|---|---|---|---|---|---|---|---|
| | 입고일자 | 입고처 | 입고량(Kg) | 출고처 | 출고일 | 반출량(Kg) | 묶음일자 | 묶음번호 |
| 002103468955 | 2019-01-14 | 경 | 427.00 | | | | | |
| | 소 계 | | 427.00 | | | 0.00 | | |
| 002104203161 | 2019-01-09 | 경 | 304.00 | 금 | 2019-01-09 | 8.20 | | |
| | | | | 제이에스마트경 | 2019-01-12 | 2.10 | | |
| | | | | 석정한 | 2019-01-10 | 1.40 | | |
| | | | | 대 | 2019-01-09 | 49.00 | | |
| | | | | 한울축산식 | 2019-01-09 | 8.20 | | |
| | | | | 소대 | 2019-01-11 | 19.10 | | |
| | | | | 용 | 2019-01-12 | 6.30 | | |
| | | | | 주 | 2019-01-09 | 8.90 | | |
| | | | | 마포 | 2019-01-11 | 5.00 | | |
| | | | | 천안 | 2019-01-09 | 1.00 | | |
| | | | | 안성 | 2019-01-10 | 1.20 | | |
| | | | | 주식 | 2019-01-09 | 77.00 | | |
| | | | | 지 | 2019-01-12 | 0.50 | | |
| | 소 계 | | 304.00 | | | 187.90 | | |
| 002104206943 | 2019-01-03 | 경 | 468.00 | 고성 | 2019-01-04 | 6.40 | | |
| | | | | 소대곤 | 2019-01-04 | 1.40 | | |
| | | | | 천안식 | 2019-01-09 | 1.70 | | |
| | | | | 주식회사 한 | 2019-01-10 | 3.20 | | |
| | | | | 좋은 | 2019-01-04 | 39.60 | | |
| | | | | 황우식육식 | 2019-01-04 | 2.40 | | |
| | | | | 좋은 | 2019-01-09 | 0.60 | | |
| | | | | 박 | 2019-01-04 | 2.40 | | |

[그림 2.1.2.4-3] 입고대비 출고내역 Excel출력화면

## 2.2 포장처리 실적관리

### 2.2.1 포장처리실적 수동등록

- 개요 : 포장처리실적을 수동등록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포장처리실적신고 〉 포장처리실적 수동등록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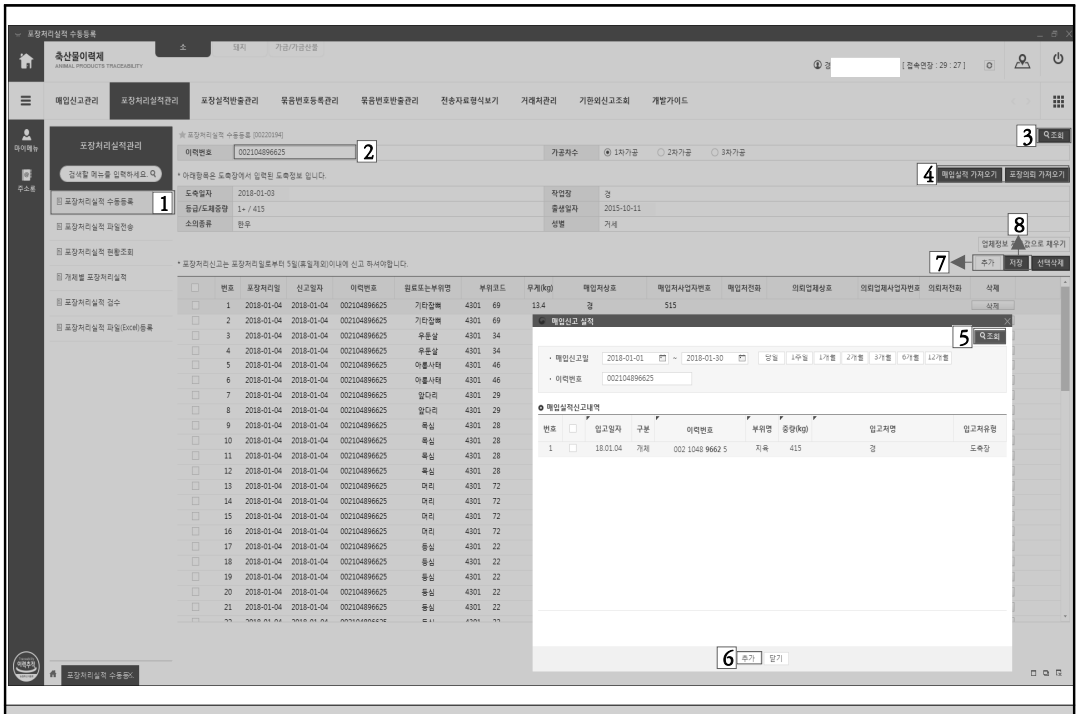


[그림 2.2.1-1] 포장처리 실적신고 조회 및 등록 화면

① 포장처리실적 수동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화면에 접근합니다.

② 포장처리신고 할 개체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도축여부 및 해당 개체의 기존 포장처리실적을 조회합니다.

④ 매입한 개체에 대한 포장은 매입실적 가져오기 버튼을, 가공의뢰를 받은 개체에 대한 포장은 포장의뢰 가져오기 버튼을 통해 해당 개체를 조회합니다. [그림 2.2.1-2]

⑤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내역 또는 포장의뢰내역을 조회합니다.

⑥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포장할 개체정보를 추가합니다.

⑦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포장할 개체정보의 행을 추가합니다.

⑧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입력한 포장실적을 저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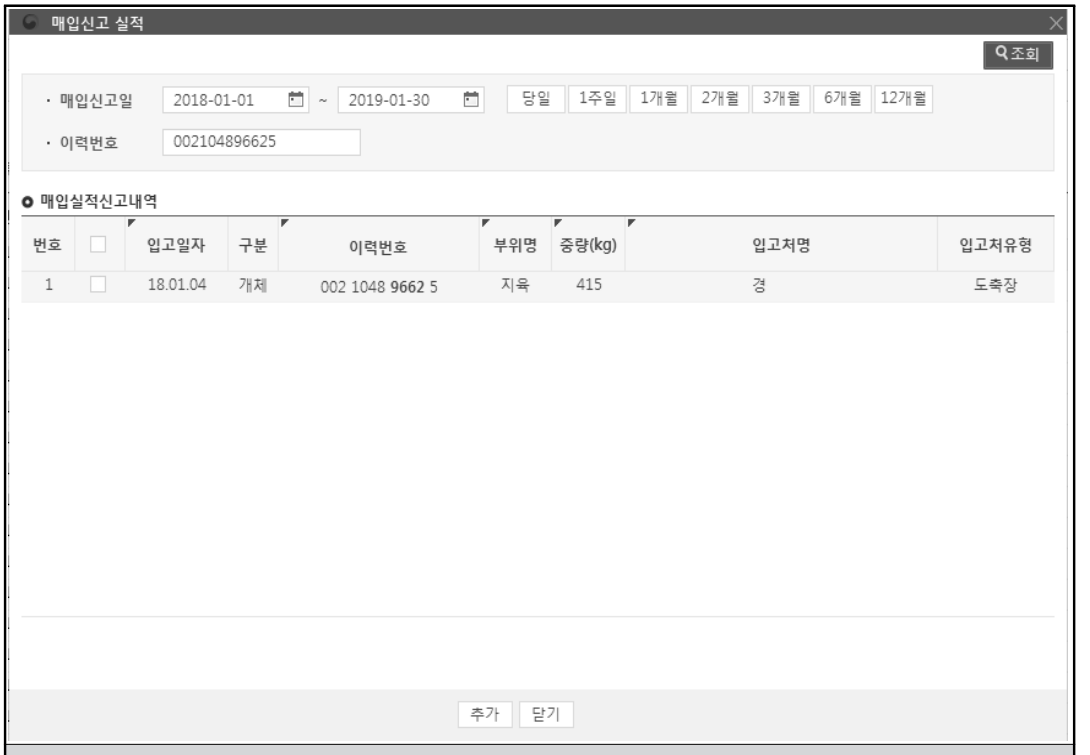


[그림 2.2.1-2] 매입실적 가져오기 팝업

### 2.2.2 포장처리실적 파일전송

- 개요 : 포장처리실적신고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업체 업무시스템(ERP 등)의 포장처리 정보를 일정한 형식의 파일로 만들어, 이 파일을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신고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포장처리실적신고 〉 포장처리실적 파일전송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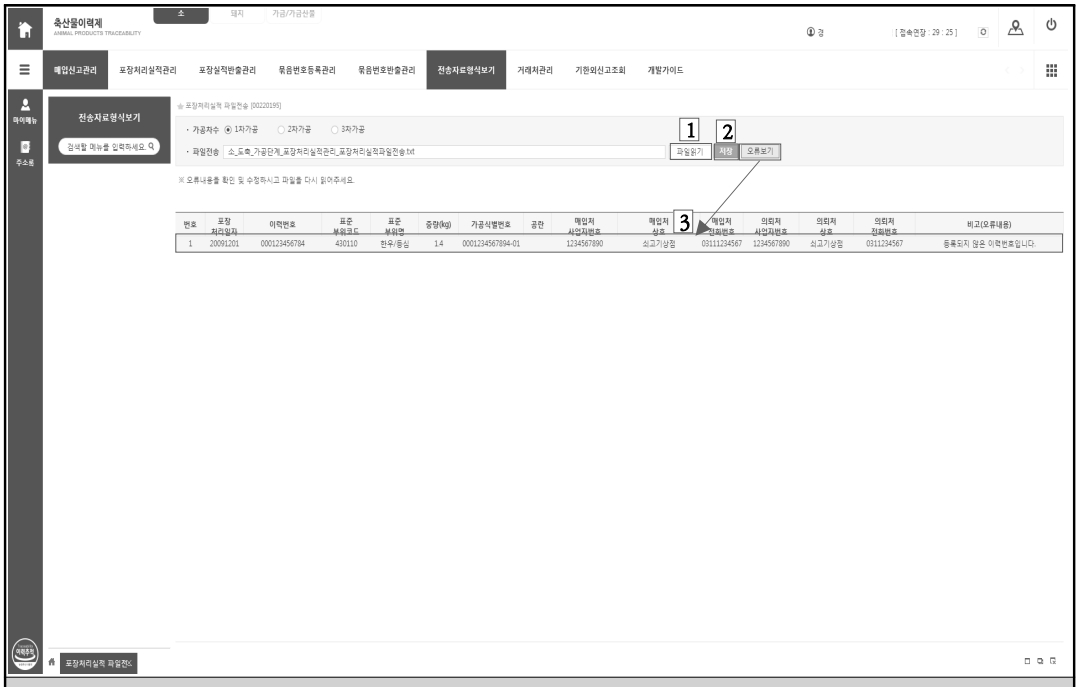


[그림 2.2.2-1] 포장처리실적 파일전송 화면

① 파일읽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선택합니다.

② 오류내역이 없을 경우 저장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③ 오류내역이 있을 경우 오류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오류내역들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2.3 포장처리실적 현황조회

- 개요 : 포장처리실적의 현황을 조회한 후 출력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포장처리실적관리 〉 포장처리실적 현황조회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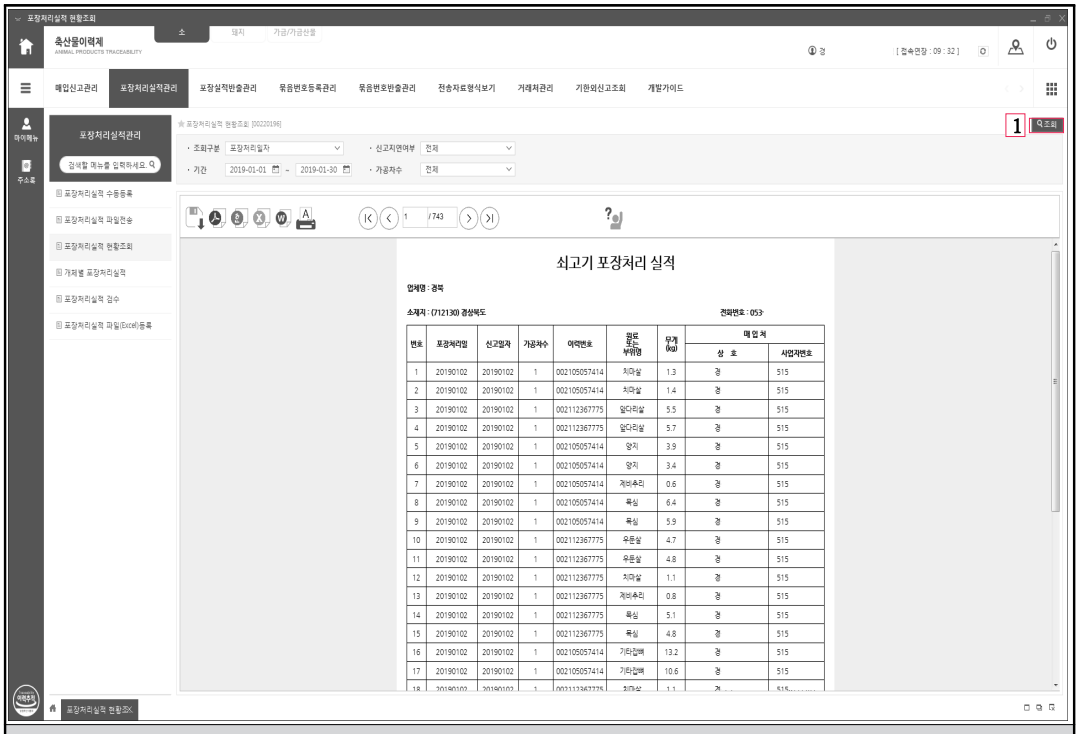


[그림 2.2.3-1] 포장처리실적 현황조회 화면

① 조회 기간을 입력한 후 조회조건을 클릭하면 포장처리실적 정보가 조회되어 레포트로 출력됩니다.

## 2.2.4 개체별 포장처리실적

### (1) 개체별 포장처리실적

- 개요 : 개체별 포장처리실적을 조회하고 출력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포장처리실적관리〉 개체별 포장처리실적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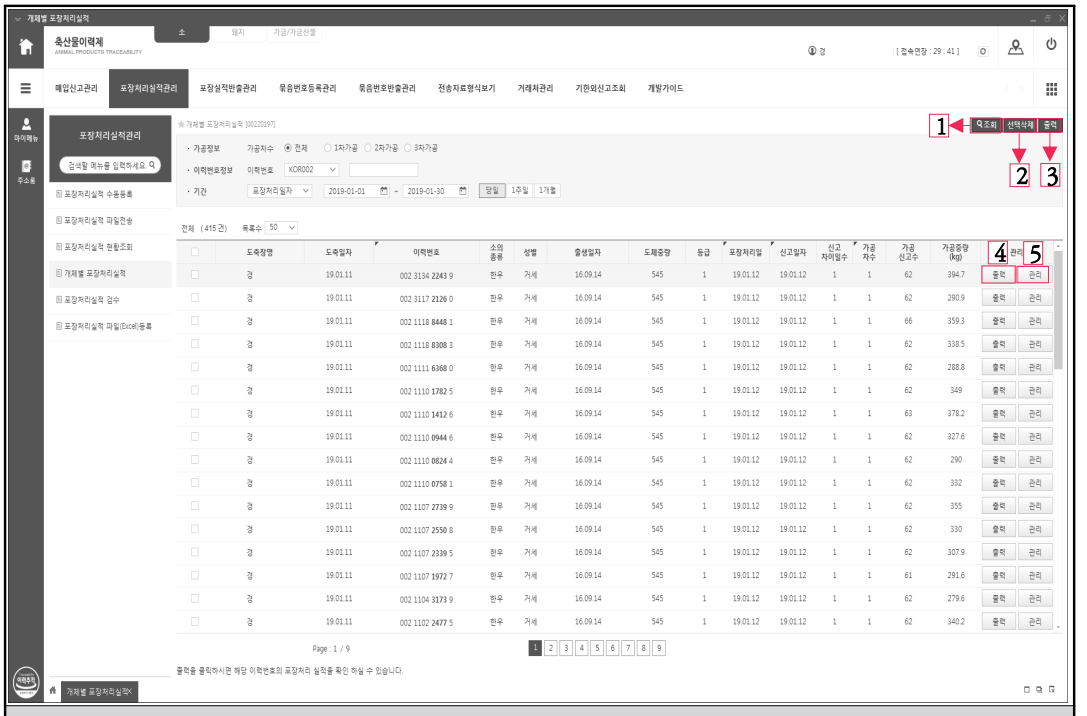


[그림 2.2.4-1] 개체별 포장처리 실적 화면

① 개체별 포장처리 실적 정보를 조회합니다.

② 조회된 정보 중에서 삭제할 정보를 선택한 후 선택삭제 버튼을 눌러 정보를 삭제합니다.

③ 각 현황을 레포트로 출력합니다. [그림 2.2.4-2]

④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실적 레포트가 출력됩니다. [그림 2.2.4-3]

⑤ 포장처리실적 상세조회 화면이 뜹니다. [그림 2.2.4-4]

# 개체별 포장처리실적 현황

조회기간 : 2019년01월01일~2019년01월30일

| 번호 | 도축장명 | 도축일자 | 이력번호 | 소의 종류 | 성별 | 출생일자 | 도체중량 | 등급 | 포장처리 일자 | 신고일자 | 가공 차수 | 가공 신고수 | 가공중량 (kg) |
|---|---|---|---|---|---|---|---|---|---|---|---|---|---|
| 1 | 경· | 19.01.11 | 002 3134 2243 9 | 한우 | 거세 | 16.09.14 | 545 | 1 | 19.01.12 | 19.01.12 | 1 | 62 | 394.7 |
| 2 | 경· | 19.01.11 | 002 3117 2126 0 | 한우 | 거세 | 16.06.02 | 420 | 1 | 19.01.12 | 19.01.12 | 1 | 62 | 290.9 |
| 3 | 경· | 19.01.11 | 002 1118 8448 1 | 한우 | 거세 | 16.10.10 | 447 | 1+ | 19.01.12 | 19.01.12 | 1 | 66 | 359.3 |
| 4 | 경· | 19.01.11 | 002 1118 8308 3 | 한우 | 거세 | 16.09.24 | 467 | 1+ | 19.01.12 | 19.01.12 | 1 | 62 | 338.5 |
| 5 | 경· | 19.01.11 | 002 1111 6368 0 | 한우 | 거세 | 16.08.01 | 409 | 1+ | 19.01.12 | 19.01.12 | 1 | 62 | 288.8 |
| 6 | 경· | 19.01.11 | 002 1110 1782 5 | 한우 | 거세 | 16.08.17 | 502 | 1 | 19.01.12 | 19.01.12 | 1 | 62 | 349 |
| 7 | 경· | 19.01.11 | 002 1110 1412 6 | 한우 | 거세 | 16.07.23 | 520 | 1+ | 19.01.12 | 19.01.12 | 1 | 63 | 378.2 |
| 8 | 경· | 19.01.11 | 002 1110 0944 6 | 한우 | 거세 | 16.08.11 | 483 | 1+ | 19.01.12 | 19.01.12 | 1 | 62 | 327.6 |
| 9 | 경· | 19.01.11 | 002 1110 0824 4 | 한우 | 거세 | 16.08.10 | 408 | 2 | 19.01.12 | 19.01.12 | 1 | 62 | 290 |
| 10 | 경· | 19.01.11 | 002 1110 0758 1 | 한우 | 거세 | 16.07.21 | 454 | 1+ | 19.01.12 | 19.01.12 | 1 | 62 | 332 |
| 11 | 경· | 19.01.11 | 002 1107 2739 9 | 한우 | 거세 | 16.07.11 | 506 | 1+ | 19.01.12 | 19.01.12 | 1 | 62 | 355 |
| 12 | 경· | 19.01.11 | 002 1107 2550 8 | 한우 | 거세 | 16.07.13 | 476 | 1 | 19.01.12 | 19.01.12 | 1 | 62 | 330 |
| 13 | 경· | 19.01.11 | 002 1107 2339 5 | 한우 | 거세 | 16.06.17 | 458 | 1+ | 19.01.12 | 19.01.12 | 1 | 62 | 307.9 |
| 14 | 경· | 19.01.11 | 002 1107 1972 7 | 한우 | 거세 | 16.07.21 | 407 | 1++ | 19.01.12 | 19.01.12 | 1 | 61 | 291.6 |
| 15 | 경· | 19.01.11 | 002 1104 3173 9 | 한우 | 거세 | 16.06.23 | 410 | 1+ | 19.01.12 | 19.01.12 | 1 | 62 | 279.6 |
| 16 | 경· | 19.01.11 | 002 1102 2477 5 | 한우 | 거세 | 16.06.12 | 442 | 1++ | 19.01.12 | 19.01.12 | 1 | 62 | 340.2 |
| 17 | 경· | 19.01.11 | 002 1096 0694 6 | 한우 | 거세 | 16.08.11 | 376 | 1 | 19.01.12 | 19.01.12 | 1 | 62 | 283 |
| 18 | 경· | 19.01.11 | 002 1096 0572 8 | 한우 | 거세 | 16.08.03 | 412 | 1 | 19.01.12 | 19.01.12 | 1 | 62 | 317.3 |
| 19 | 경· | 19.01.11 | 002 1096 0319 0 | 한우 | 거세 | 16.07.16 | 474 | 1 | 19.01.12 | 19.01.12 | 1 | 62 | 357.9 |

[그림 2.2.4-2] 개체별 포장처리 현황 출력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실적

**※ 작성 시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명 | 경북 | 전화번호 | 053- |
|---|---|---|---|
| 소재지 | 경상북도 | | |

| ① 포장처리일 | ② 이력(묶음)번호 | ③ 원료 또는 부위명 | ④ 무게(kg, t) | ⑤ 매입·반입처 | | | ⑥ 의뢰업체명 | | |
|---|---|---|---|---|---|---|---|---|---|
| | | | | 상호 |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상호 |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19.01.12 | 002 3134 2243 9 | 안심 | 3.20 | 경 | 515-87 | | | | |
| 19.01.12 | 002 3134 2243 9 | 안심 | 3.30 | 경 | 515-87 | | | | |
| 19.01.12 | 002 3134 2243 9 | 등심 | 9.90 | 경 | 515-87 | | | | |
| 19.01.12 | 002 3134 2243 9 | 등심 | 9.60 | 경 | 515-87 | | | | |
| 19.01.12 | 002 3134 2243 9 | 등심 | 3.30 | 경 | 515-87 | | | | |
| 19.01.12 | 002 3134 2243 9 | 등심 | 3.00 | 경 | 515-87 | | | | |
| 19.01.12 | 002 3134 2243 9 | 등심 | 6.40 | 경 | 515-87 | | | | |
| 19.01.12 | 002 3134 2243 9 | 등심 | 6.90 | 경 | 515-87 | | | | |
| 19.01.12 | 002 3134 2243 9 | 채끝 | 5.20 | 경 | 515-87 | | | | |
| 19.01.12 | 002 3134 2243 9 | 채끝 | 5.40 | 경 | 515-87 | | | | |
| 19.01.12 | 002 3134 2243 9 | 목심 | 4.40 | 경 | 515-87 | | | | |
| 19.01.12 | 002 3134 2243 9 | 목심 | 4.50 | 경 | 515-87 | | | | |
| 19.01.12 | 002 3134 2243 9 | 목심 | 8.60 | 경 | 515-87 | | | | |

[그림 2.2.4-3]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실적 출력 화면

### (2) 포장처리실적 상세조회

- 개요 : 포장처리실적 상세조회 및 삭제합니다.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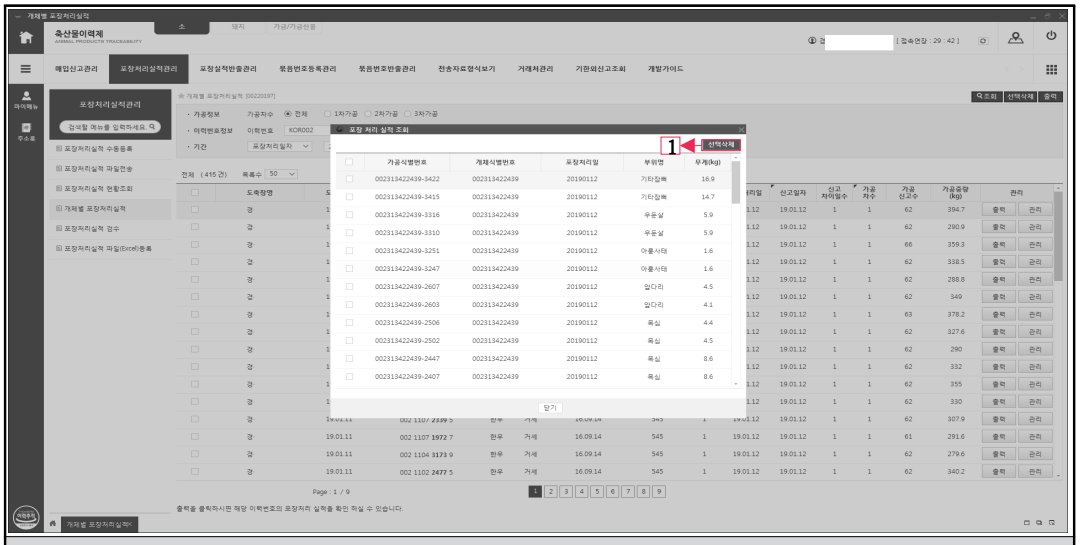


[그림 2.2.4-4] 포장처리실적 상세조회 화면

① 삭제할 포장처리실적을 선택한 후 삭제합니다.

## 2.2.5 포장처리실적 검수

- 개요 : 포장처리실적 검수 현황을 출력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포장처리실적관리 〉 포장처리실적 검수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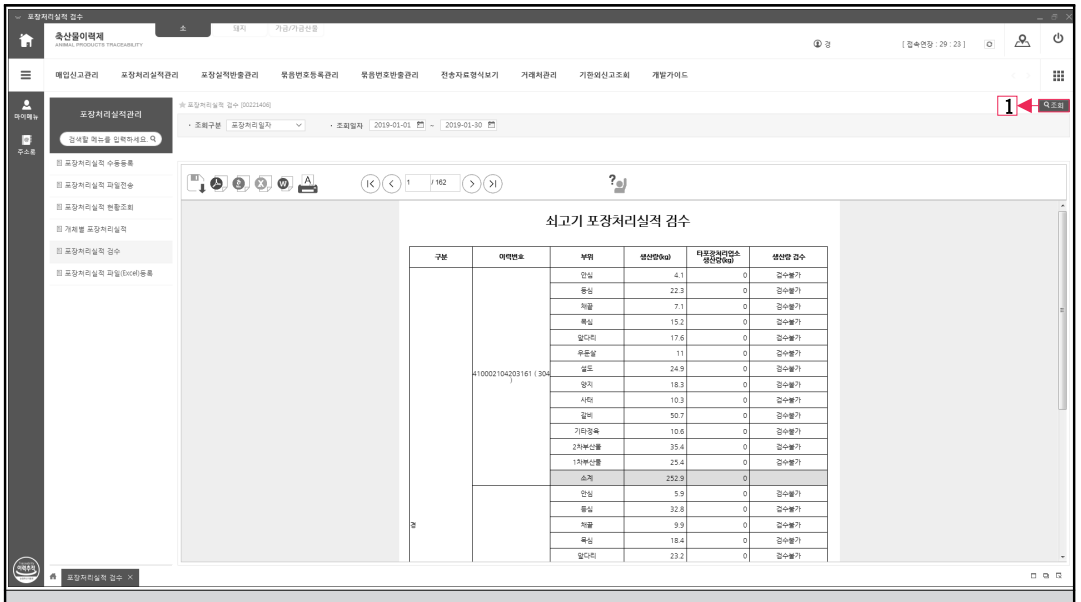


[그림 2.2.5-1] 포장처리실적 현황조회 화면

① 조회 기간을 입력한 후 조회조건을 클릭하면 포장처리실적 검수 정보가 조회되어 레포트로 출력됩니다.

## 2.2.6 포장처리실적 파일(Excel)등록

- 개요: 포장처리실적신고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업체 업무시스템(ERP 등)의 포장처리 정보를 일정한 형식의 파일로 만들어, 이 파일을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신고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포장처리실적신고 〉 포장처리실적 파일(Excel)등록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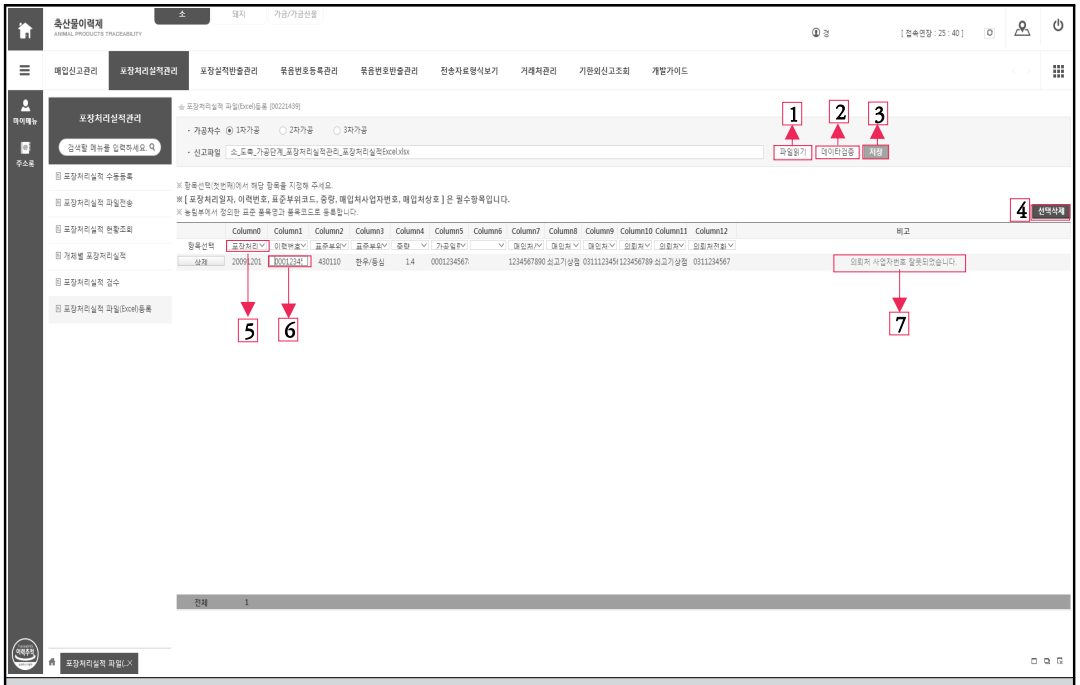


[그림 2.2.6-1] 포장처리실적 현황조회 화면

① 포장처리 실적신고할 Excel 파일을 찾습니다.

② 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건수가 0건이면 저장버튼이 활성화됩니다.

③ 저장을 눌러 포장처리실적을 신고합니다.

④ 선택된 ROW를 삭제합니다.

⑤ 각각의 셀을 더블클릭하면 수동입력 할 수 있도록 화면이 변경됩니다.

⑥ 항목선택란을 클릭하면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콤보박스가 나타납니다.

⑦ 데이터검증을 한 후 오류사항이 있을 때 비고란에 표시해 줍니다.

## 2.3 포장실적 반출관리

### 2.3.1 판매/반출실적 수동등록

- 개요 : 판매/반출실적을 건별로 수동등록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포장실적반출관리 〉 판매/반출실적 수동등록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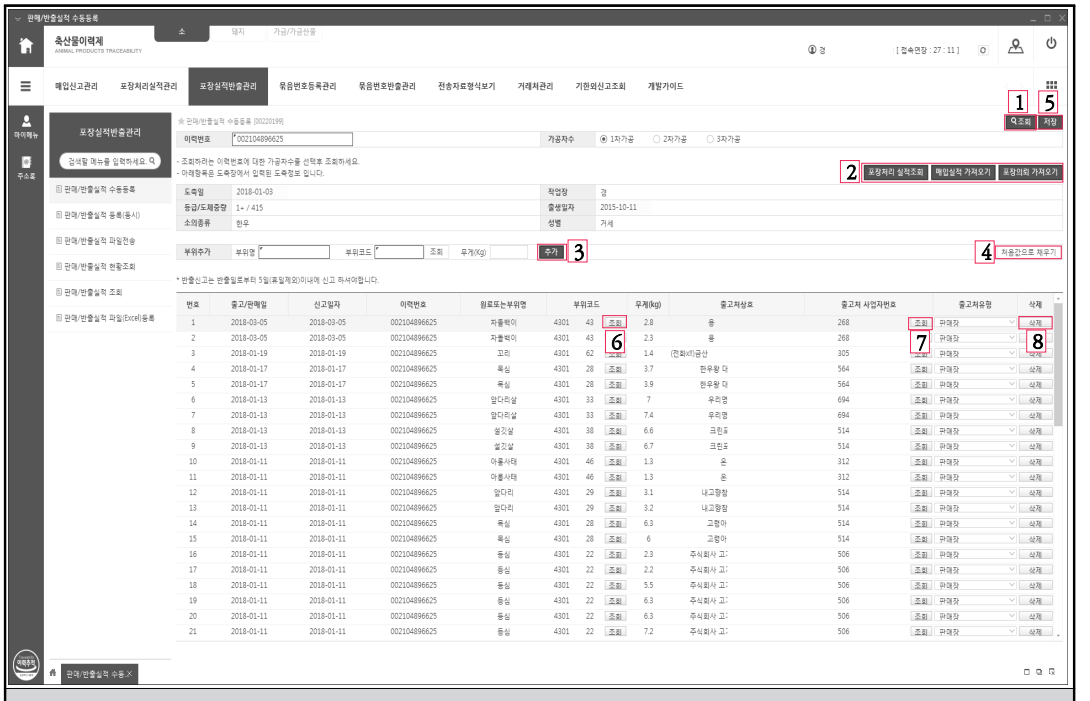


[그림 2.3.1-1] 판매/반출실적 수동등록 화면

①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한 후 도축장에서 입력된 도축정보와 판매실적정보를 조회합니다.

② 포장처리실적조회, 매입실적 가져오기, 포장의뢰 가져오기 팝업을 이용하여 포장처리실적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림 2.3.1-2]

③ 부위정보 팝업을 이용하여 부위정보를 입력합니다.

④ 처음 입력된 반출처상호, 반출처사업자번호 모든 내역에 채워집니다.

⑤ 판매/반출 실적 정보를 저장합니다.

⑥ 부위정보 팝업을 이용하여 부위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림 2.3.1-3]

⑦ 반출자 조회 팝업을 이용하여 출고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림 2.3.1-4]

⑧ 판매/반출 실적 정보를 삭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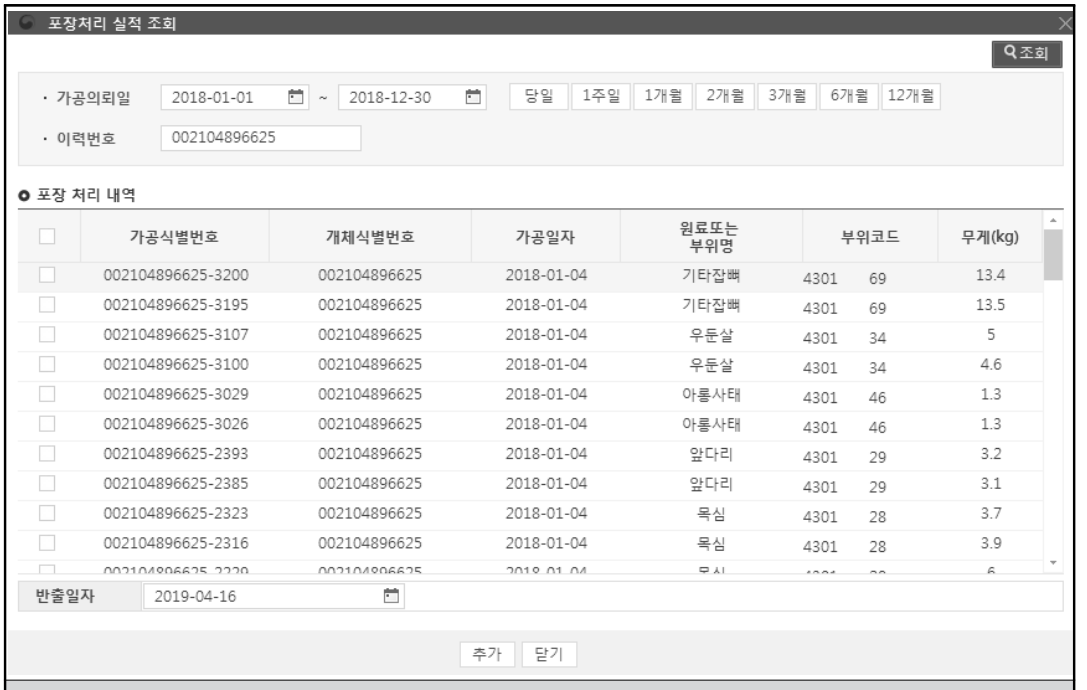


[그림 2.3.1-2] 포장처리실적 조회 팝업 화면

[그림 2.3.1-3] 표준부위찾기 팝업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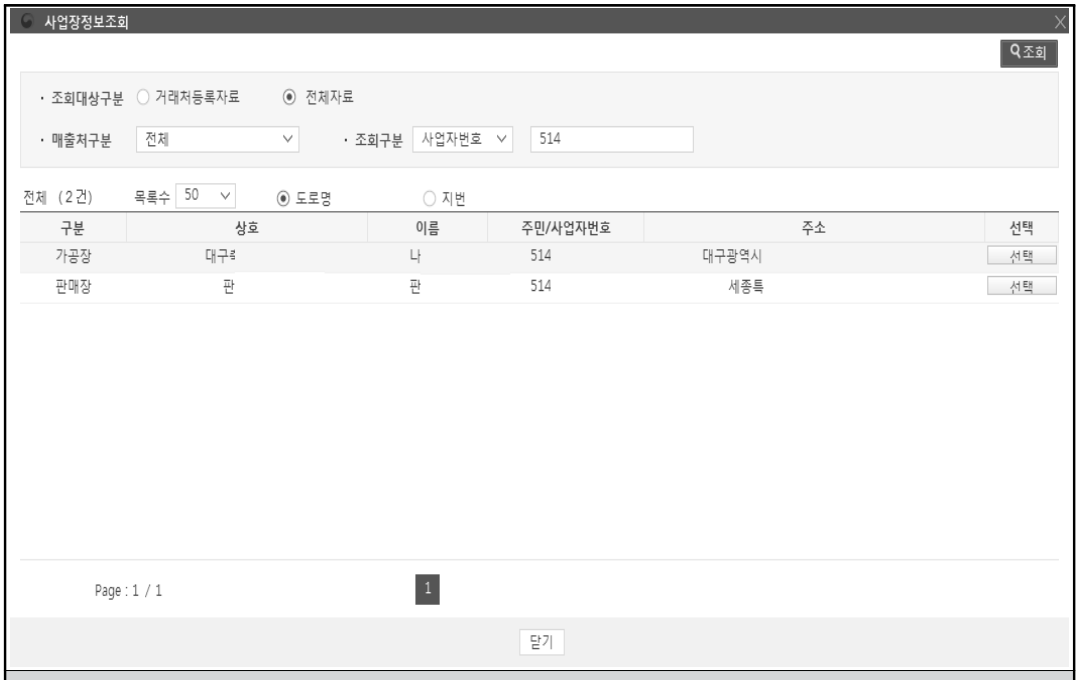


[그림 2.3.1-4] 반출자 조회 팝업 화면

## 2.3.2 판매/반출실적 등록(동시)

- 개요 : 판매/반출실적을 동시에 여러 건 등록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포장실적반출관리 〉 판매/반출실적 등록(동시)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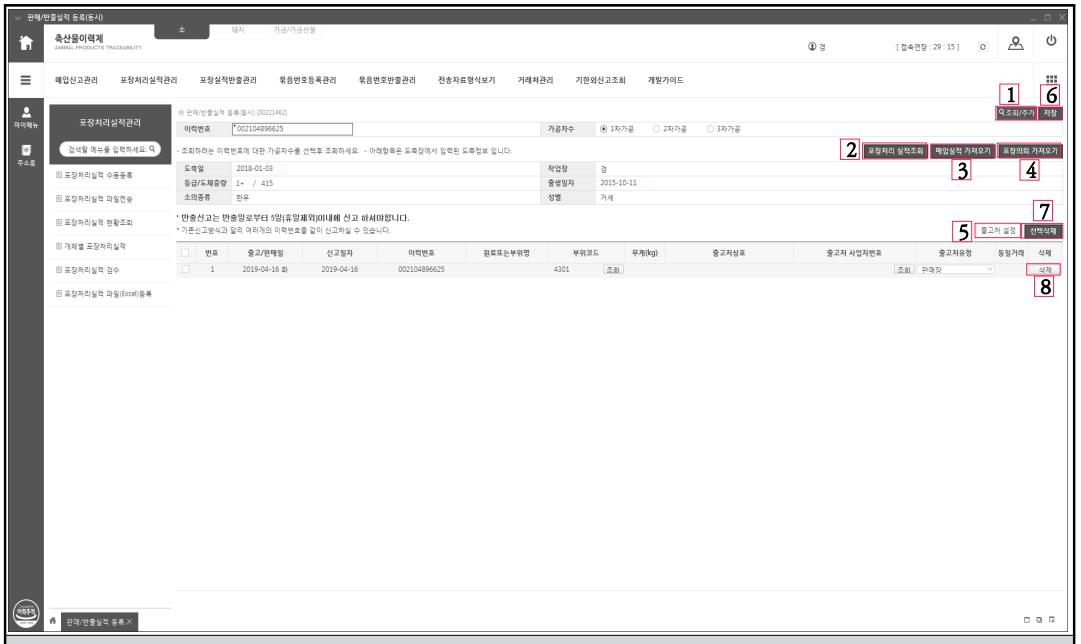


[그림 2.3.2-1] 판매/반출실적 등록(동시) 화면

① 이력번호를 입력한 후 도축장에서 입력된 도축정보와 판매실적정보를 조회합니다. 여러 개의 이력번호를 조회 후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② 포장처리실적 조회팝업을 이용하여 포장처리실적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림 2.3.2-2]

③ 매입실적 가져오기 팝업을 이용하여 포장처리실적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림 2.3.2-3]

④ 포장의뢰 가져오기 팝업을 이용하여 포장처리실적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림 2.3.2-4]

⑤ 출고처 일괄적용 팝업을 이용하여 출고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림 2.3.2-5]

⑥ 판매/반출 실적 정보를 저장합니다.

⑦ 선택된 판매/반출 실적 내역을 삭제합니다.

⑧ 판매/반출 실적 정보를 삭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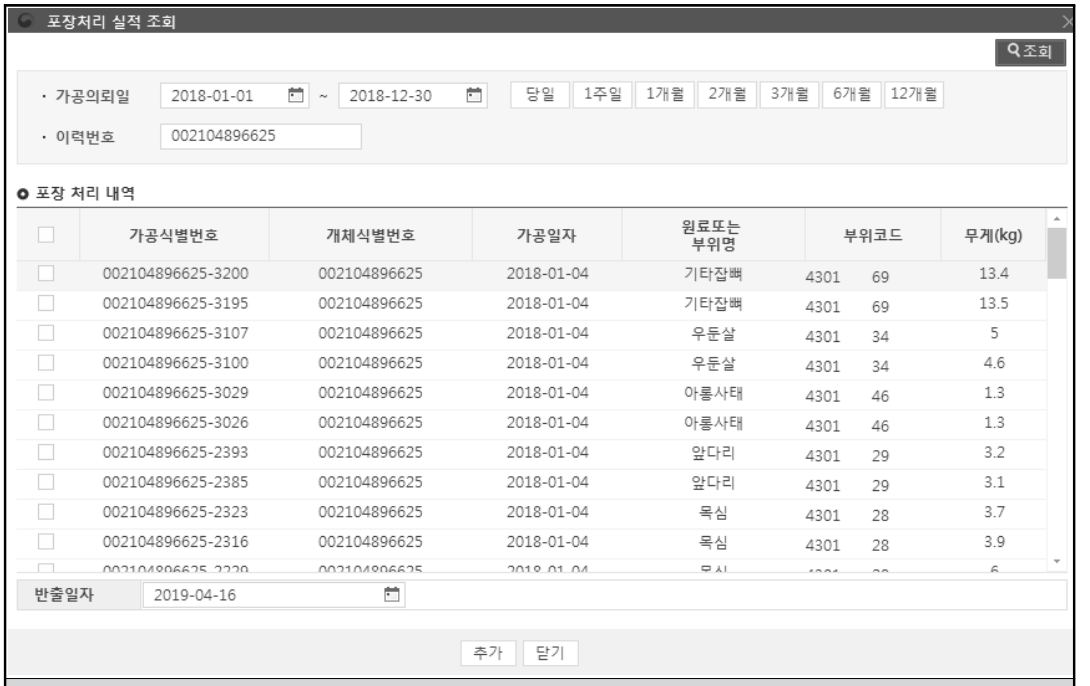


[그림 2.3.2-2] 포장처리실적 조회 팝업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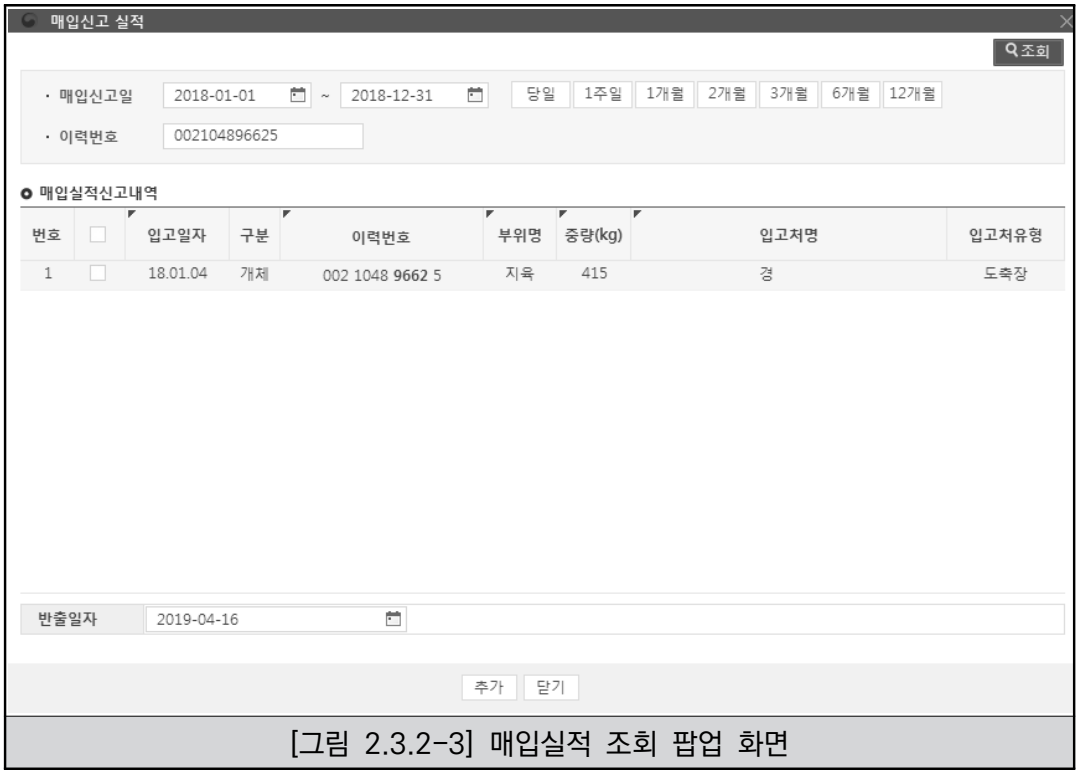


[그림 2.3.2-3] 매입실적 조회 팝업 화면

[그림 2.3.2-4] 포장의뢰 조회 팝업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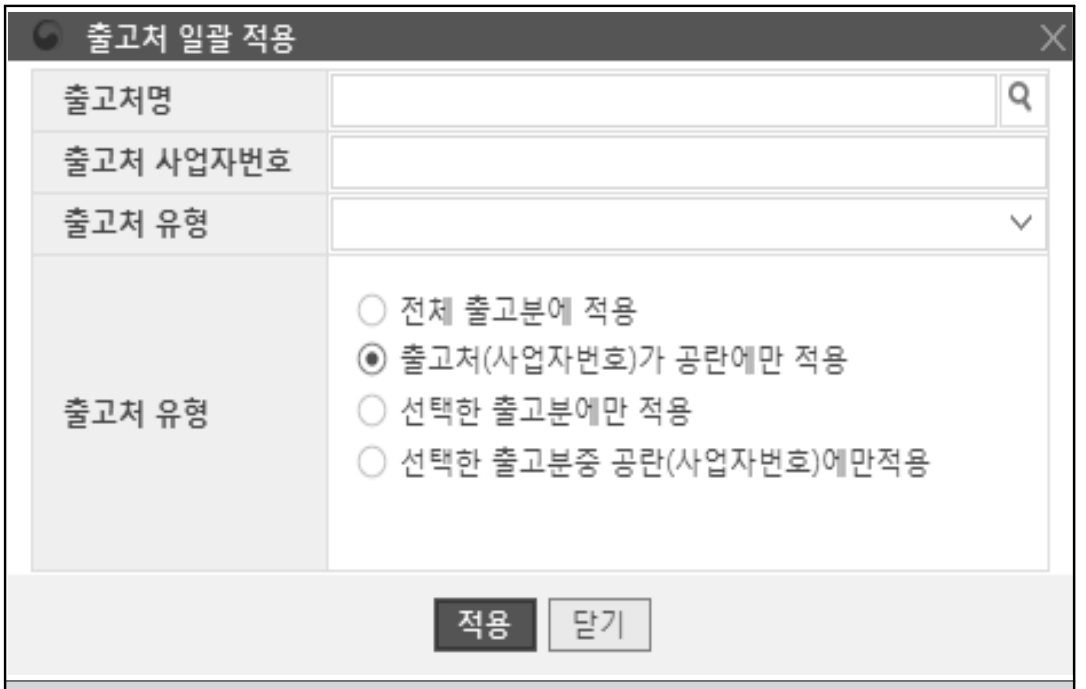


[그림 2.3.2-5] 출고처 설정 팝업 화면

### 2.3.3 판매/반출실적 파일전송

- 개요 : 판매/반출실적을 파일로 일괄 등록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포장실적반출관리 〉 판매/반출실적 파일전송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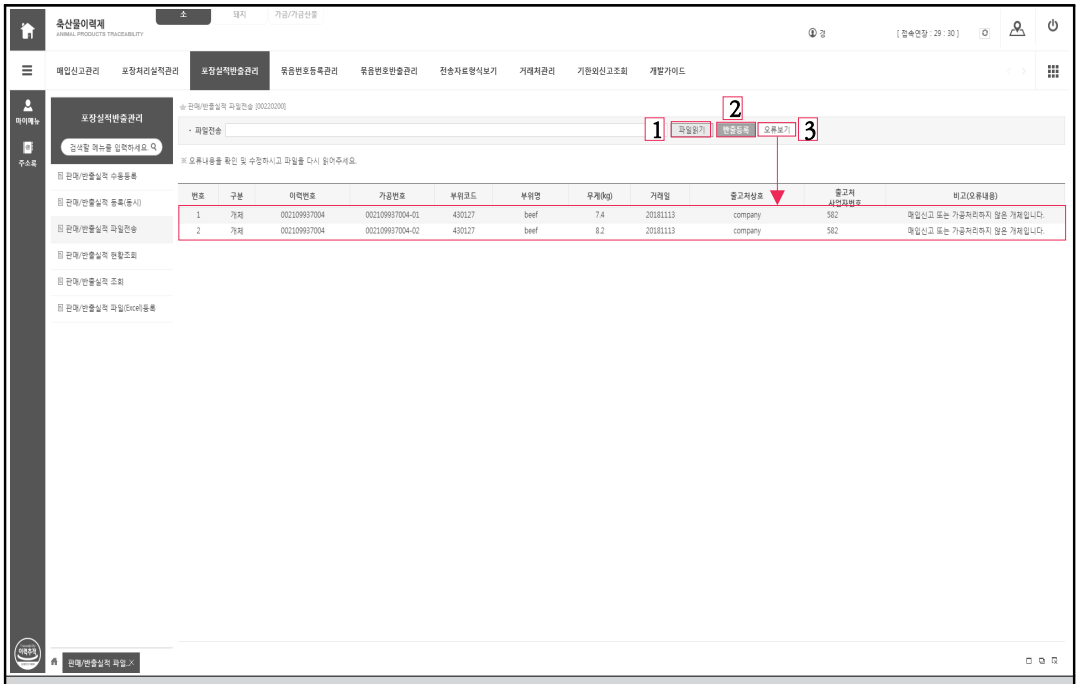


[그림 2.3.3-1] 판매/반출실적 파일전송 화면

① 파일읽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선택합니다.

② 오류내역이 없는 경우 반출등록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③ 오류내역이 있는 경우 오류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오류내역들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3.4 판매/반출실적 현황조회

- 개요 : 판매/반출 실적을 조회하고 출력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포장실적반출관리 〉 판매/반출실적 현황조회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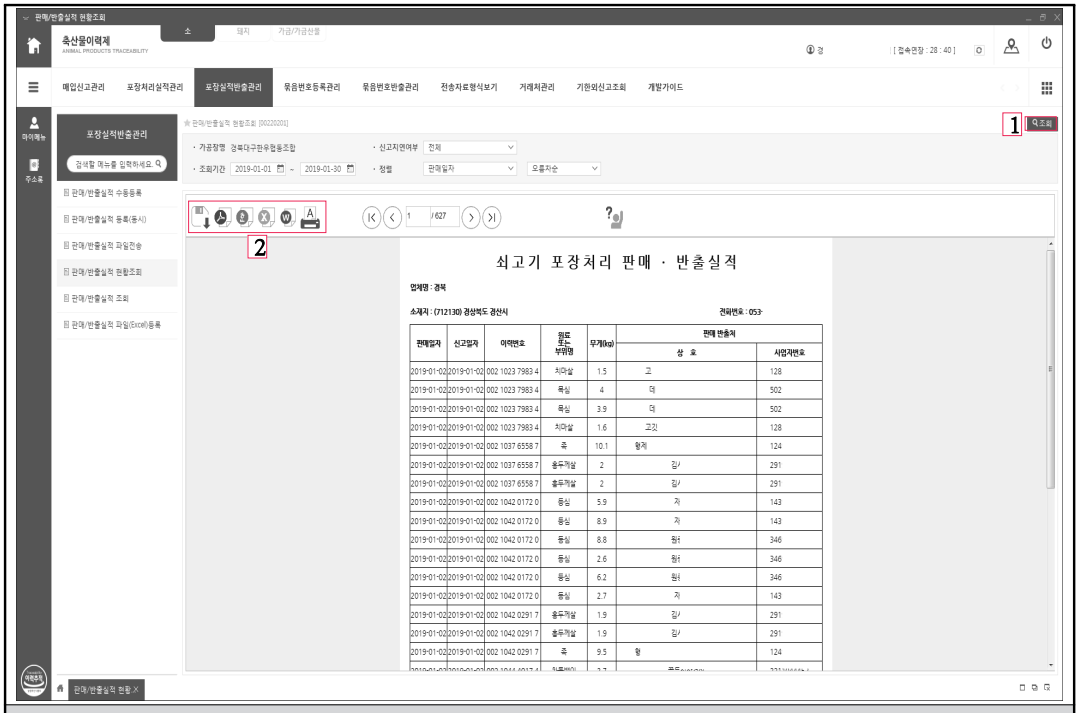


[그림 2.3.4-1] 판매/반출실적 현황조회 화면

① 조회 조건을 입력한 후 쇠고기 포장처리 판매/반출실적 정보를 조회하여 레포트로 출력합니다.

② 출력된 정보는 엑셀, PDF, 한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2.3.5 판매/반출실적 조회

- 개요 : 판매/반출실적을 조회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포장실적반출관리 〉 판매/반출실적 조회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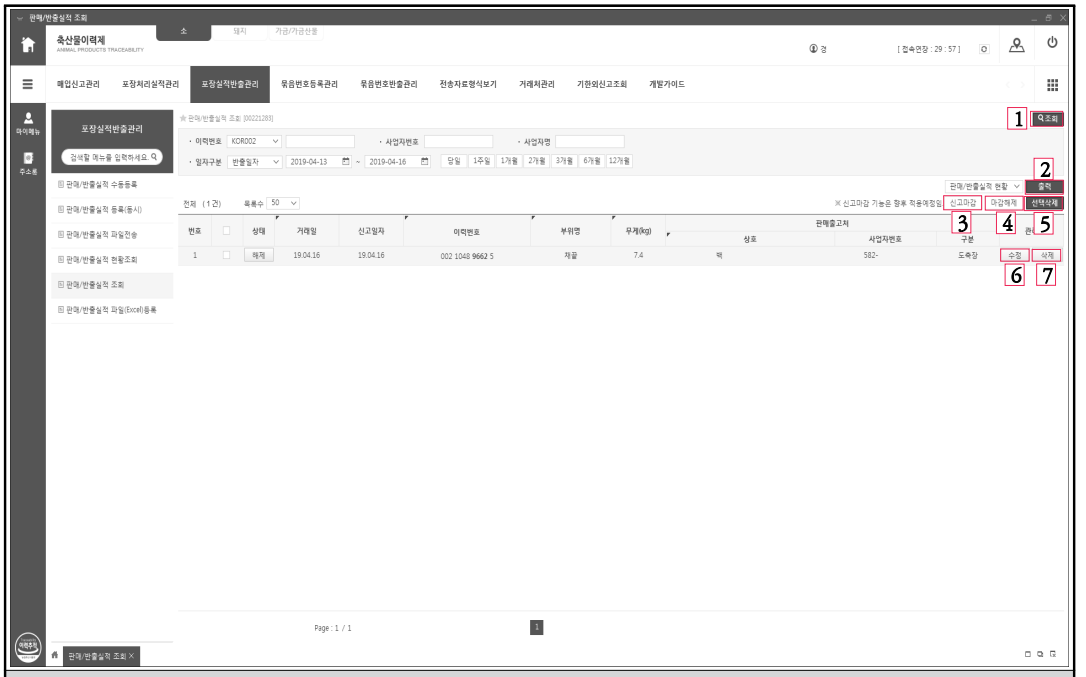


[그림 2.3.5-1] 판매/반출실적 조회 화면

① 개체식별번호와 거래일 등을 입력한 후 쇠고기 포장처리 판매/반출실적 정보를 조회합니다.

② 조회된 정보에 대하여 판매/반출 실적 현황과 거래내역 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림 2.3.4-3, 2.3.4-4]

③ 조회된 정보 중에서 마감할 정보들을 선택한 후 신고마감 버튼을 눌러 마감처리 합니다.

④ 조회된 정보 중에서 마감해제 할 정보들을 선택한 후 마감해제 버튼을 눌러 마감해제 합니다.

⑤ 조회된 정보 중에서 삭제할 정보를 선택한 후 선택삭제 버튼을 눌러 정보를 삭제합니다.

⑥ 반출내역수정 팝업창이 뜹니다. [그림 2.3.4-2]

⑦ 삭제버튼을 누르면 해당 정보가 삭제됩니다.

[그림 2.3.5-2] 반출내역수정 팝업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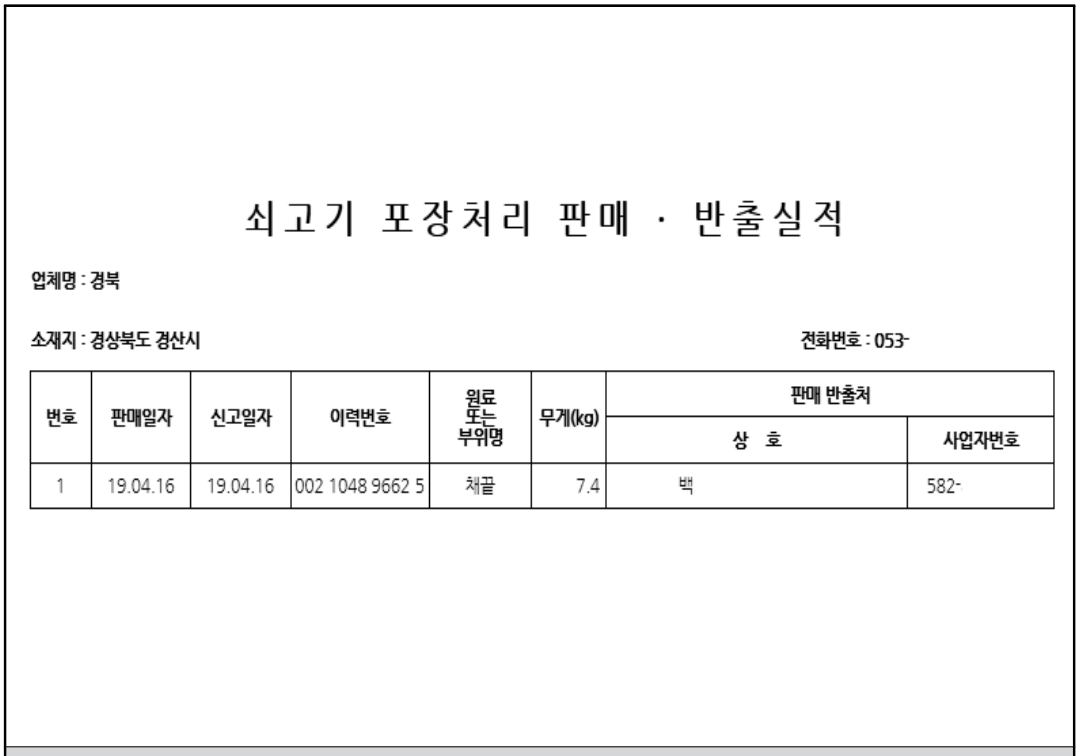

쇠고기 포장처리 판매 · 반출실적

업체명 : 경북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전화번호 : 053-

| 번호 | 판매일자 | 신고일자 | 이력번호 | 원료 또는 부위명 | 무게(kg) | 판매 반출처 | |
|---|---|---|---|---|---|---|---|
| | | | | | | 상 호 | 사업자번호 |
| 1 | 19.04.16 | 19.04.16 | 002 1048 9662 5 | 채끝 | 7.4 | 백 | 582- |

[그림 2.3.5-3] 판매/반출실적 현황 레포트 화면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내역 신고서

※ 아래 및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 접수일 19.04.16 | 발급일 19.04.16 | 처리기간 즉시 |
|---|---|---|---|

| | | | | |
|---|---|---|---|---|
| 신고인 | 성 명(법인명) | 경북 | 대표자 | 이 |
| | 생년월일<br>(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515- | 연락처 | 053- |
| | 영업허가(신고)번호 | | | |
| | 주소 | 경상북도<br>경상북도 | | |

| | | | | |
|---|---|---|---|---|
| 입고처 | 영업장의 명칭<br>(상호) | 백 | 영업허가(신고)번호 | |
| | | |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582- |

| | | | | |
|---|---|---|---|---|
| 거래처 | 성 명(법인명) | 백 | 대표자 | 김 |
| |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582- | 연락처 | (041)852- |
| | 영업허가(신고)번호 | | | |
| | 주소 | 충청남도<br>충청남도 | | |

| | | | | | | |
|---|---|---|---|---|---|---|
| 거래내역 | 거래일 | 19.04.16 | 도축일 | 18.01.03 | 가공일 | |
| | 이력번호 | | 도축번호 | | 원료 또는 부위명 | |
| | 수량(BOX, 마리) | | | | 무게(kg, t)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신고합니다.

[그림 2.3.5-4] 거래내역 신고서 레포트 화면

## 2.3.6 판매/반출실적 파일(Excel)등록

- 개요 : 판매/반출실적 Excel 파일을 업로드 하여 판매/반출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포장실적반출관리 〉 판매/반출실적 파일(Excel)등록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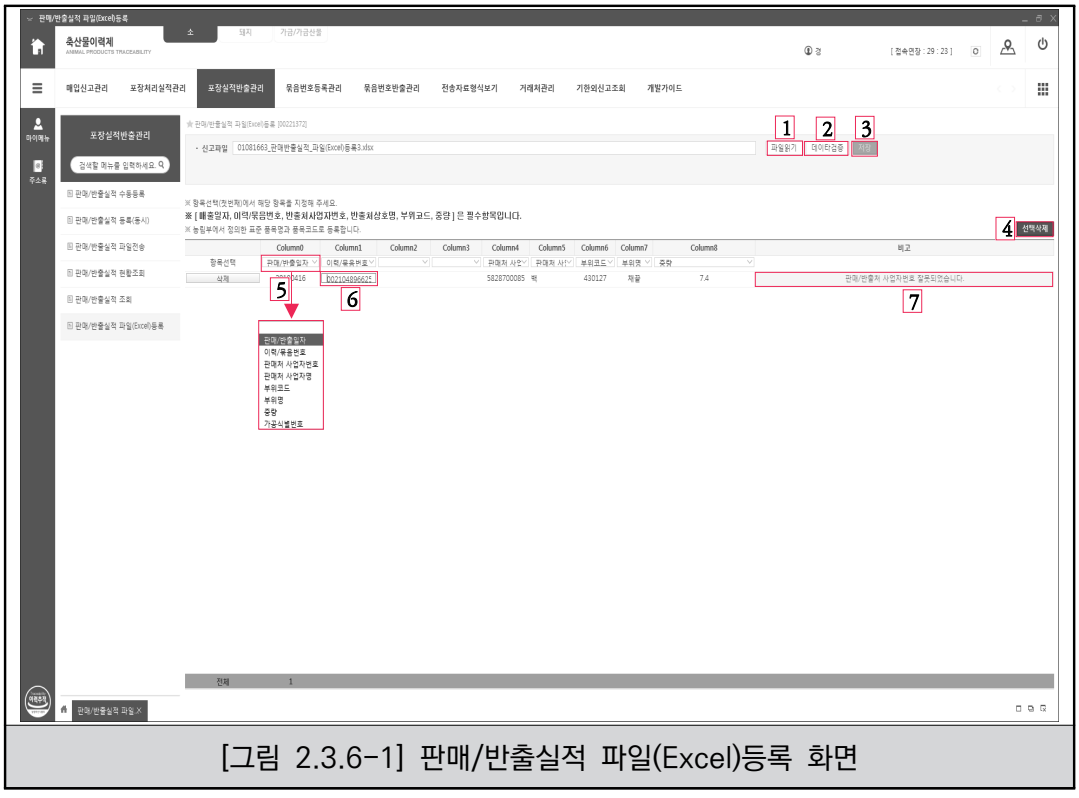


[그림 2.3.6-1] 판매/반출실적 파일(Excel)등록 화면

① 판매/반출실적 신고할 Excel 파일을 찾습니다.

② 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건수가 0건이면 저장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③ 저장을 눌러 판매/반출실적을 등록합니다.

④ 선택된 ROW를 삭제합니다.

⑤ 각각의 셀을 더블클릭하면 수동입력 할 수 있도록 화면이 변경됩니다.

⑥ 항목선택란을 클릭하면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콤보박스가 나타납니다.

⑦ 데이터검증을 한 후 오류사항이 있을 때 비고란에 표시해 줍니다.

## 2.4 묶음번호 등록관리

### 2.4.1 묶음번호 등록내역 조회

#### (1) 묶음번호 등록내역 조회

- 개요 : 묶음번호 등록한 내역을 조회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 등록관리 〉 묶음번호 등록내역 조회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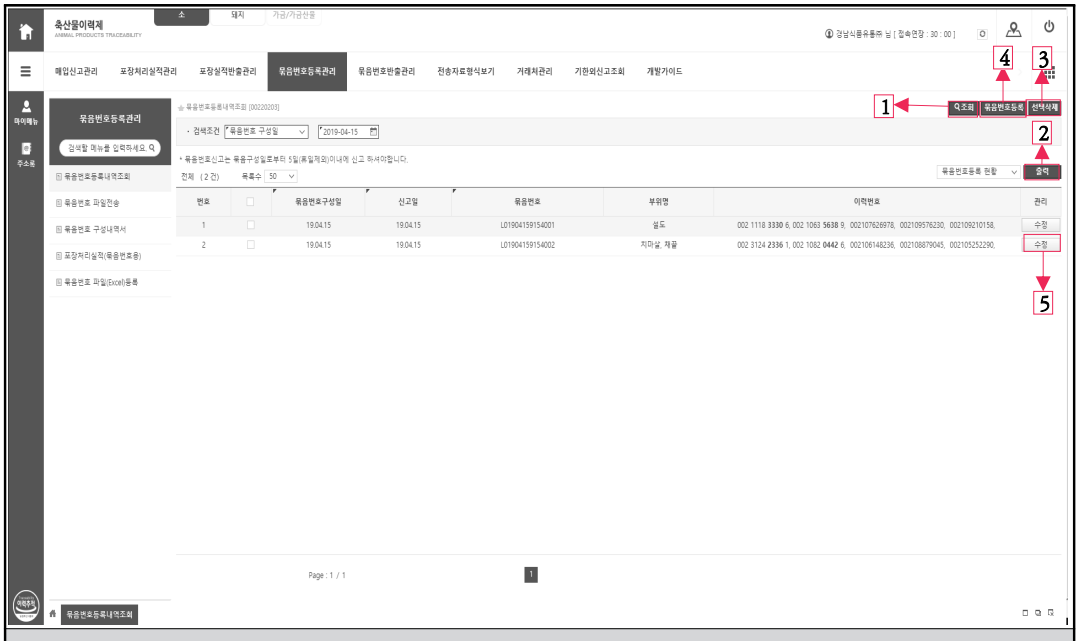


[그림 2.4.1-1] 묶음번호등록내역 조회 화면

① 검색조건을 입력한 후 쇠고기 묶음번호 등록내역을 조회합니다.

② 조회된 정보에 대하여 묶음번호 등록현황과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림 2.4.1-2, 2.4.1-3]

③ 조회된 정보 중에서 삭제할 정보를 선택한 후 선택삭제 버튼을 눌러 정보를 삭제합니다.

④ 묶음번호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묶음번호 등록화면을 띄웁니다. [그림 2.4.1-4]

⑤ 반출내역수정 팝업창이 뜹니다. [그림 2.4.1-7]

## 묶음번호 등록현황

2019-04-15 / 전체(2)

| 번호 | 묶음번호 구성일 | 신고일 | 묶음번호 | 부위명 | 이력번호 |
|---|---|---|---|---|---|
| 1 | 19.04.15 | 19.04.15 | L01904159154002 | 치마살, 채끝 | 002312423361, 002108204426, 002106148236, 002108879045, 002105252290 |
| 2 | 19.04.15 | 19.04.15 | L01904159154001 | 설도 | 002111833306, 002106356389, 002107626978, 002109576230, 002109210158 |

[그림 2.4.1-2] 묶음번호등록 현황 레포트 화면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 ① 연월일 | ② 구분 | ③ 묶음번호 | ④ 부위명 | ⑤ 이력번호 | ⑥ 구성개체수 (구성번호수) | ⑦ 등급 |
|---|---|---|---|---|---|---|
| 2019-04-15 | 국내산쇠고기 | L01904159154001 | 설도 | 002 1063 5638 9 | 5 | 1 |
| | | | | 002 1076 2697 8 | | 2 |
| | | | | 002 1092 1015 8 | | 2 |
| | | | | 002 1095 7623 0 | | 2 |
| | | | | 002 1118 3330 6 | | 3 |

[그림 2.4.1-3]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레포트 화면

### (2) 묶음번호 등록

- 개요 : 매입신고 실적 또는 가공의뢰내역을 이용하여 묶음번호 내역을 등록합니다.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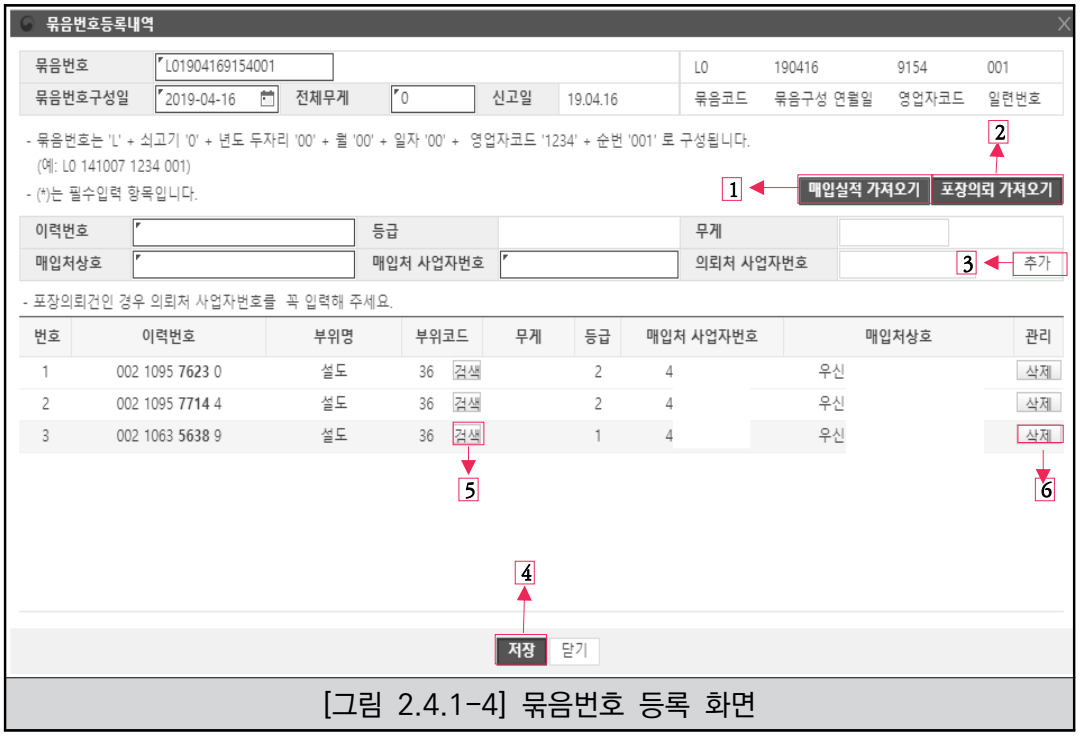


[그림 2.4.1-4] 묶음번호 등록 화면

① 매입신고 실적 조회 팝업창이 뜹니다. [그림 2.4.1-5]

② 가공의뢰내역 조회 팝업창이 뜹니다. [그림 2.4.1-6]

③ 이력번호, 매입처 상호, 매입처 사업자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묶음번호 내역을 추가합니다.

④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된 개체들의 내역으로 묶음번호를 구성하여 등록합니다.

⑤ 부위코드 조회 팝업을 띄웁니다. [그림 2.3.1-3]

⑥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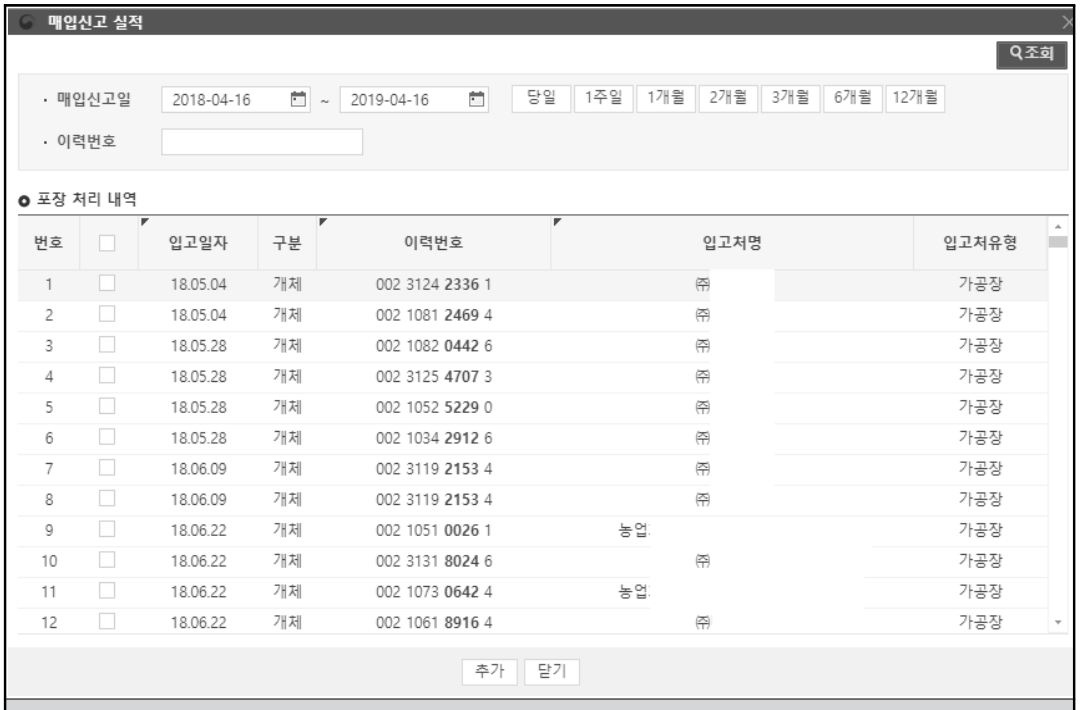


[그림 2.4.1-5] 매입신고 실적 조회 팝업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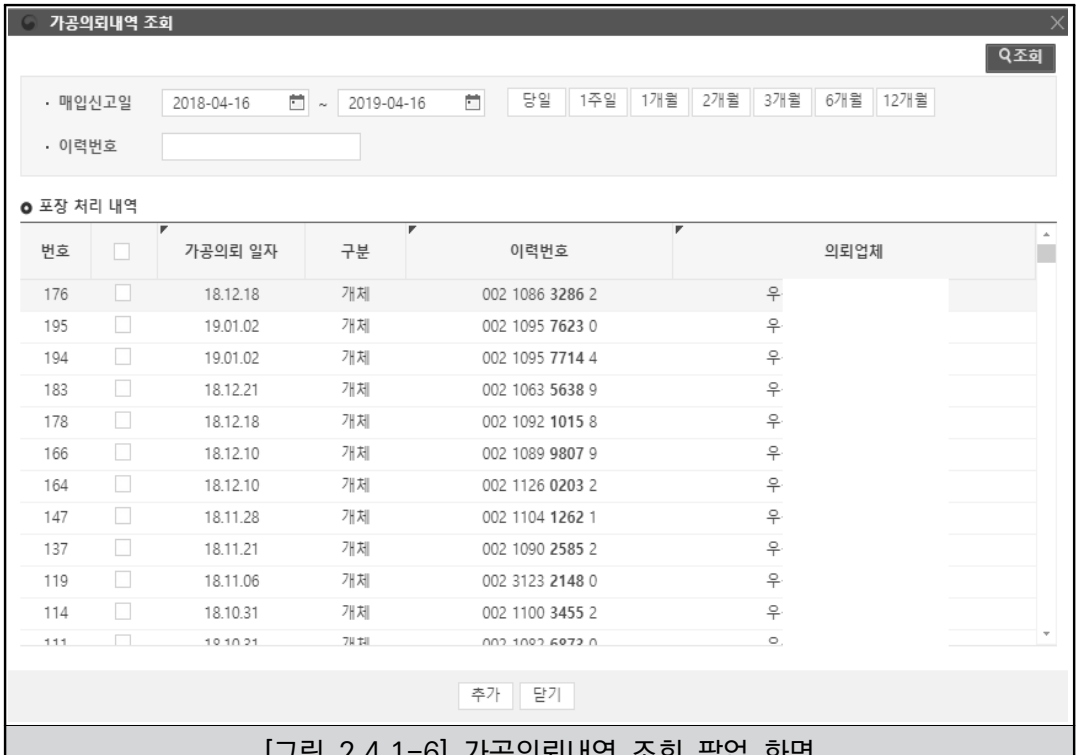


[그림 2.4.1-6] 가공의뢰내역 조회 팝업 화면

### (3) 묶음번호 수정

- 개요 : 매입신고 실적 또는 가공의뢰내역을 이용하여 묶음번호 내역을 수정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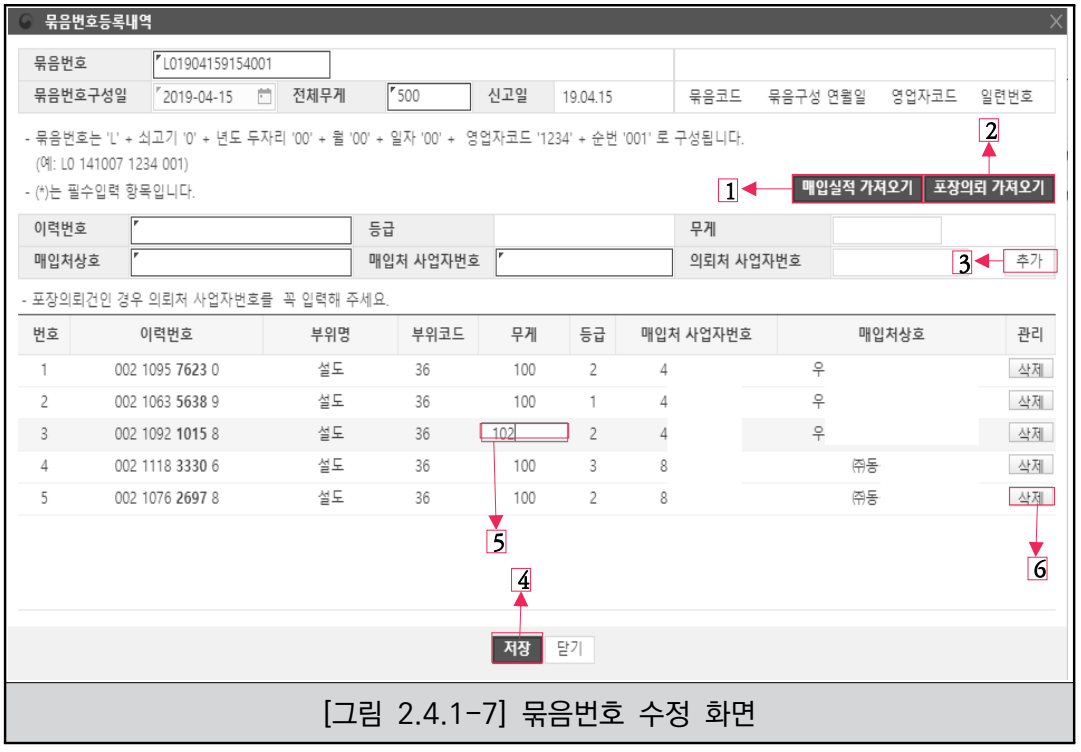


[그림 2.4.1-7] 묶음번호 수정 화면

① 매입신고 실적 조회 팝업창이 뜹니다. [그림 2.4.1-5]

② 가공의뢰내역 조회 팝업창이 뜹니다. [그림 2.4.1-6]

③ 이력번호, 매입처 상호, 매입처 사업자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묶음번호 내역을 추가합니다.

④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된 개체들의 내역으로 묶음번호를 구성하여 수정합니다.

⑤ 무게만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⑥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2.4.2 묶음번호 파일전송

- 개요 : 묶음번호 신고를 파일로 일괄 등록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등록관리〉 묶음번호 파일전송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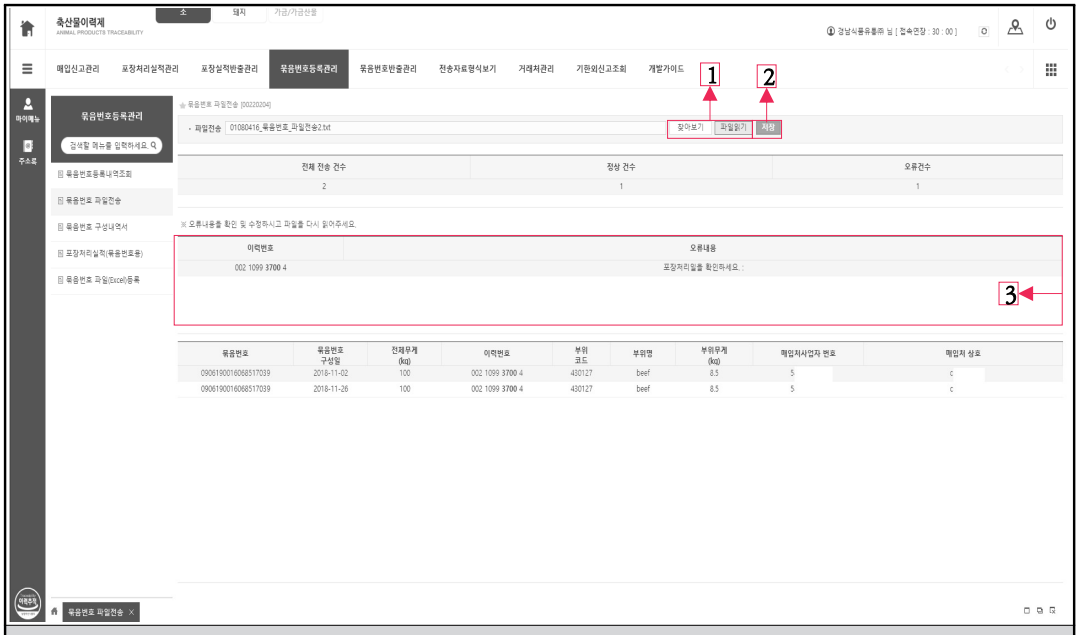


[그림 2.4.2-1] 묶음번호 파일전송 화면

①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선택한 후 파일 읽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파일정보를 분석하여 전체 전송건수, 정상건수, 오류건수, 개체식별번호별 오류내용과 파일정보를 조회하여 저장합니다.

③ 오류내용을 확인하여 파일을 다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 2.4.3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 개요 : 신고한 묶음번호의 구성 내역을 레포트로 출력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등록관리〉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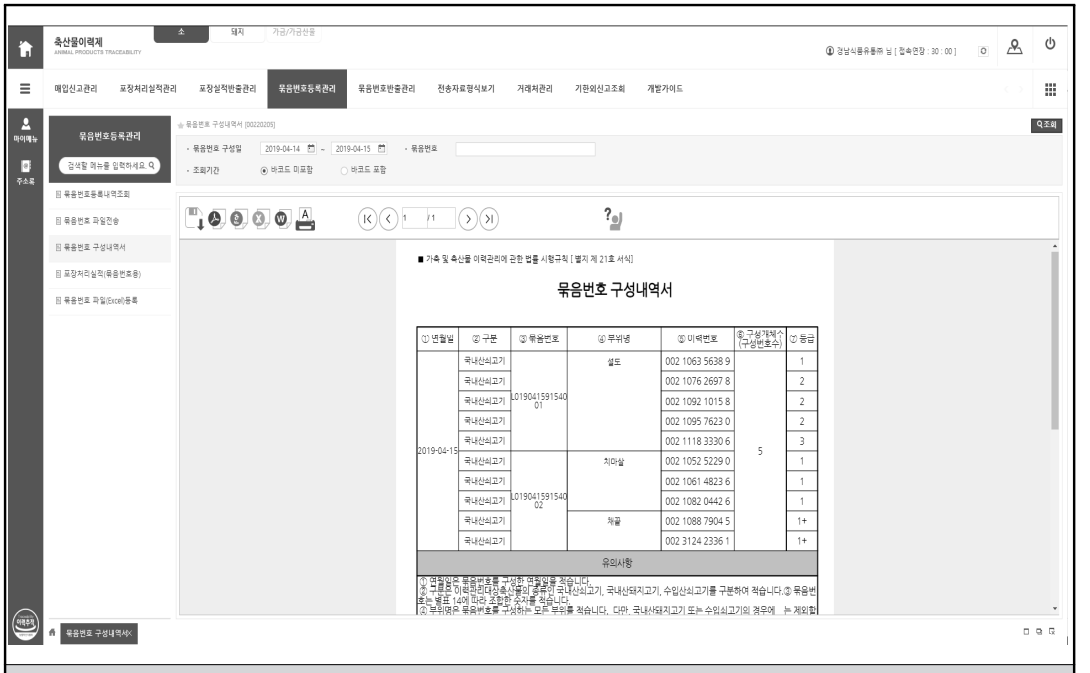


[그림 2.4.3-1]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화면

① 묶음번호, 구성일을 입력한 후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레포트로 출력합니다.

### 2.4.4 포장처리실적(묶음번호용)

- 개요 : 묶음번호용 포장처리실적을 레포트로 출력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 등록관리〉 포장처리실적(묶음번호용)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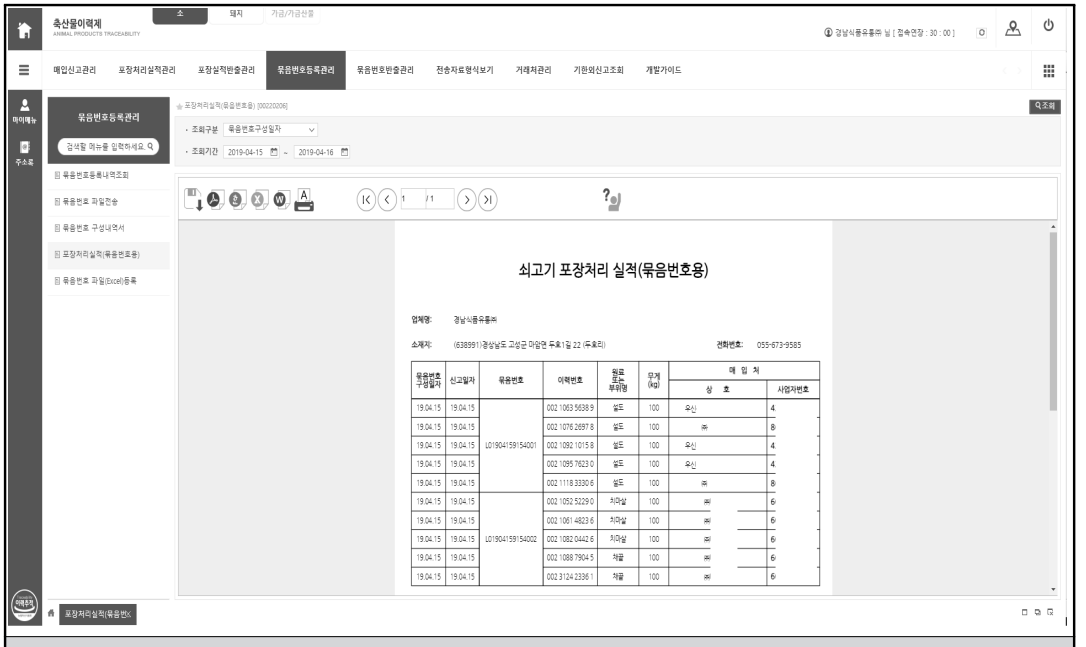


[그림 2.4.4-1] 포장처리실적(묶음번호용) 화면

① 조회 일자를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포장처리실적(묶음번호) 레포트가 출력됩니다.

### 2.4.5 묶음번호 파일(Excel)등록

- 개요 : 묶음번호 실적파일을 업로드하여 묶음번호 실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 등록관리 〉 묶음번호 파일(Excel)등록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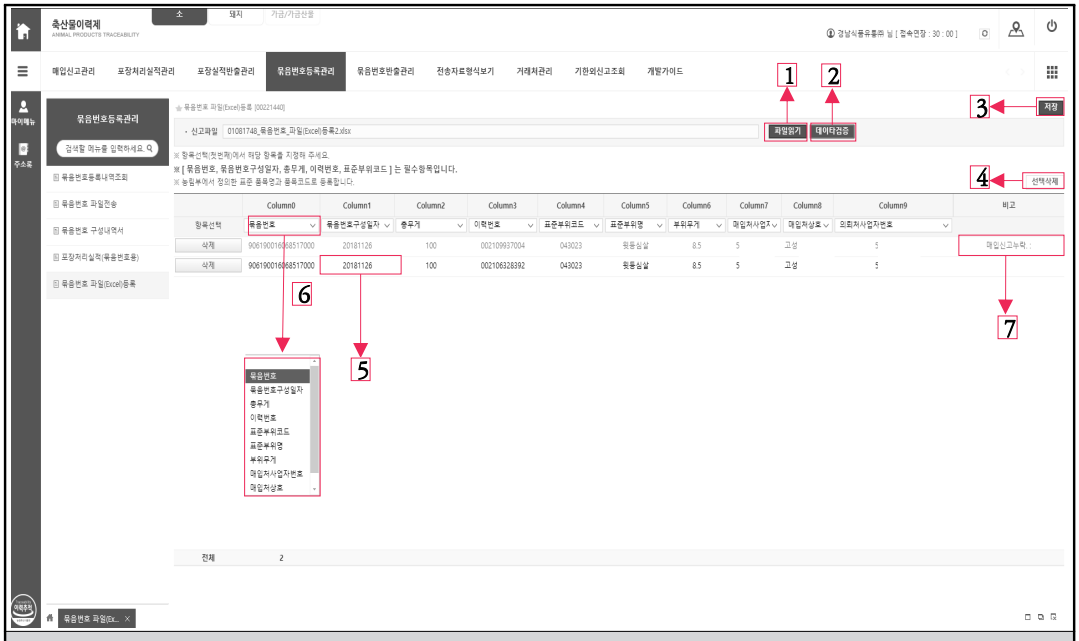


[그림 2.4.5-1] 묶음번호 파일(Excel)등록 화면

① 묶음번호 실적을 신고할 Excel 파일을 찾습니다.

② 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건수가 0건이면 저장버튼이 활성화됩니다.

③ 저장을 눌러 묶음번호실적을 등록합니다.

④ 선택된 ROW를 삭제합니다.

⑤ 각각의 셀을 더블클릭하면 수동입력 할 수 있도록 화면이 변경됩니다.

⑥ 항목선택란을 클릭하면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콤보박스가 나타납니다.

⑦ 데이터검증을 한 후 오류사항이 있을 때 비고란에 표시해 줍니다.

## 2.5 묶음번호 반출관리

### 2.5.1 반출현황조회

- 개요 : 반출 현황을 조회하고 레포트로 출력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 반출관리 〉 반출현황조회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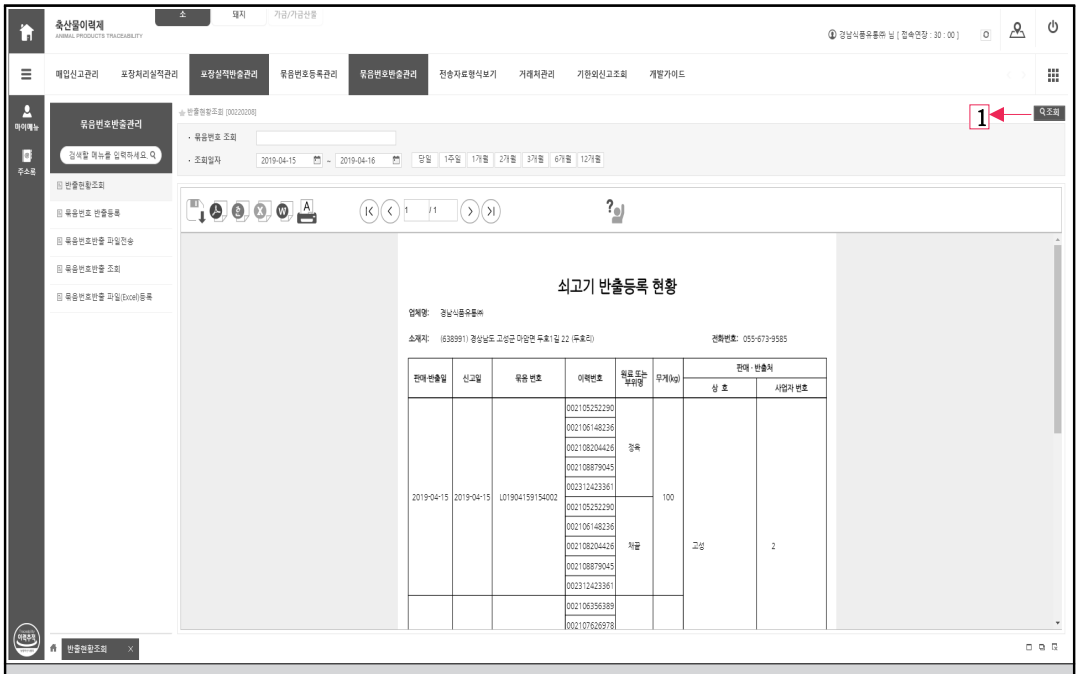


[그림 2.5.1 -1] 반출현황조회 화면

① 조회 조건을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반출현황이 조회되어 레포트로 출력된다.

## 2.5.2 묶음번호 반출등록

### (1) 묶음번호 반출내역 조회

- 개요 : 반출정보 내역을 조회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 반출관리 〉 묶음번호 반출등록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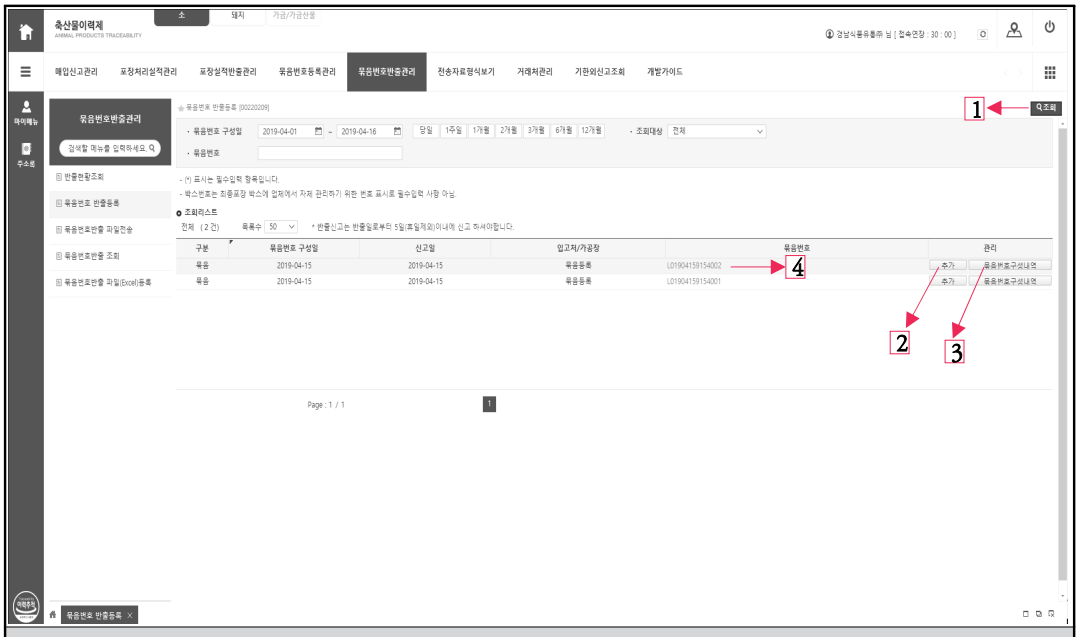


[그림 2.5.2-1] 묶음번호반출조회 화면

① 묶음번호구성일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묶음번호 내역을 조회합니다.

② 반출정보내역을 추가하여 입력합니다. [그림 2.5.2-4]

③ 묶음번호정보를 팝업으로 확인합니다. [그림 2.5.2-2]

④ 묶음번호를 클릭하여 반출정보 내역을 조회합니다. [그림 2.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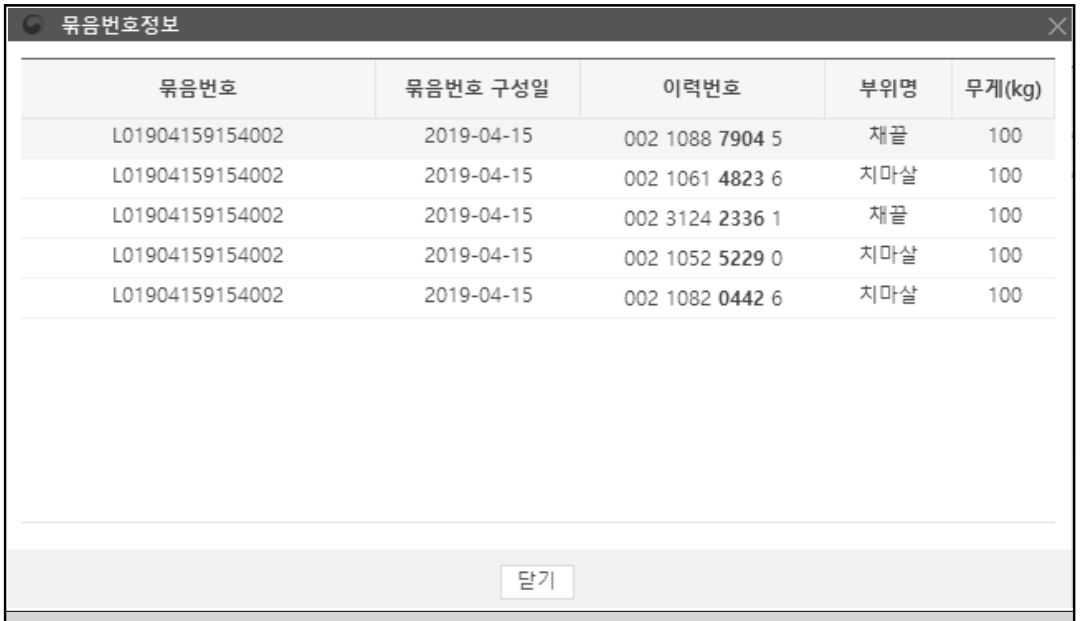


[그림 2.5.2-2] 묶음번호반출조회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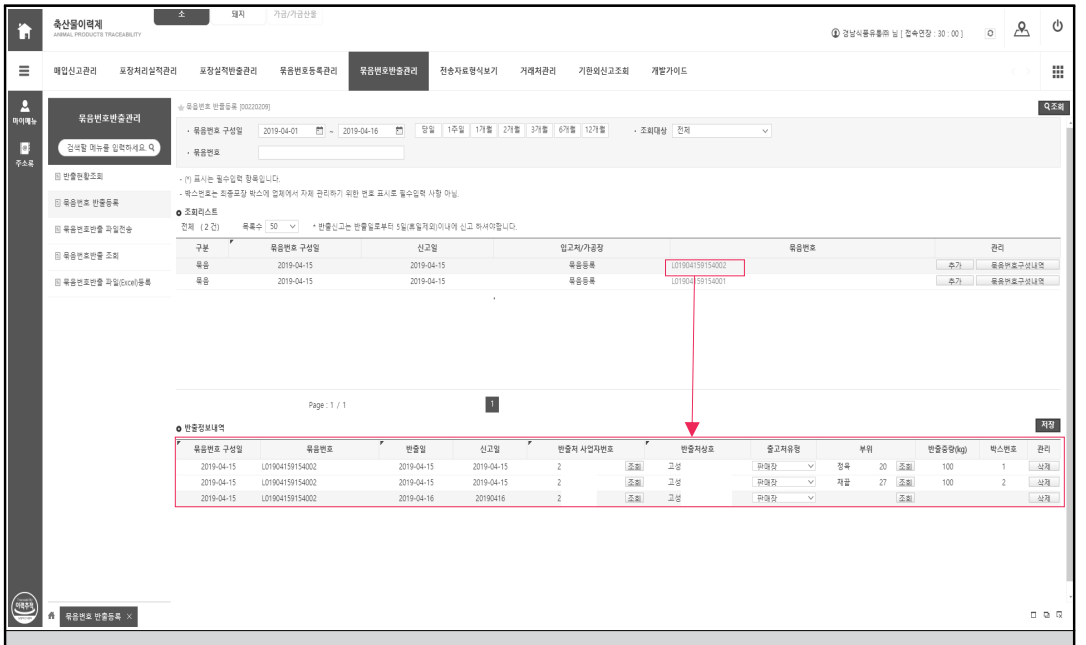


[그림 2.5.2-3] 반출정보 내역조회 화면

## (2) 묶음번호 반출실적 등록

- 개요 : 반출 정보내역을 입력하고 반출정보를 저장합니다.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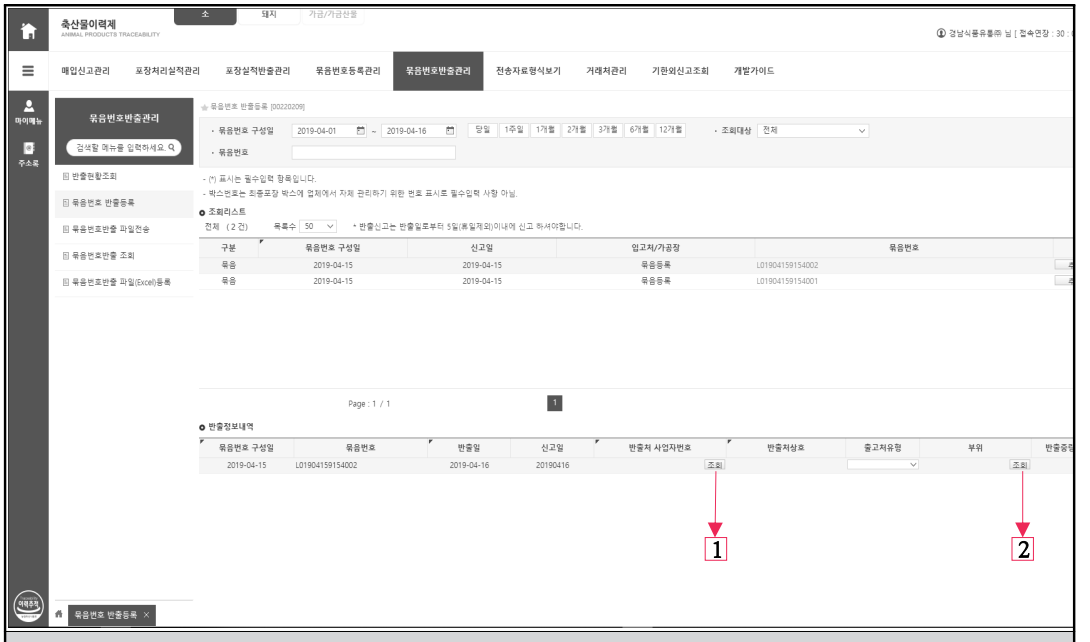


[그림 2.5.2-4] 반출정보 내역조회 화면

① 반출처정보를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그림 2.5.2-5]

② 부위정보를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그림 2.5.2-6]

③ 해당 반출정보내역을 삭제합니다.

④ 반출정보내역을 저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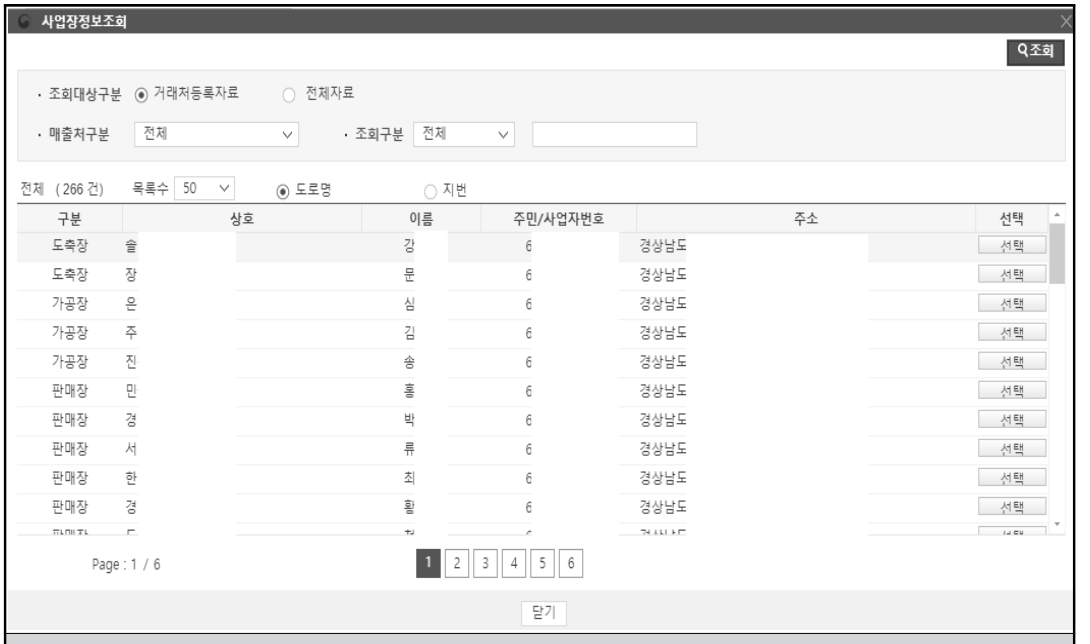


[그림 2.5.2-5] 사업장정보조회 화면

[그림 2.5.2-6] 부위정보조회 화면

### 2.5.3 묶음번호반출 파일전송

- 개요 : 묶음번호 반출정보를 파일로 일괄 전송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 반출관리 〉 묶음번호 반출파일전송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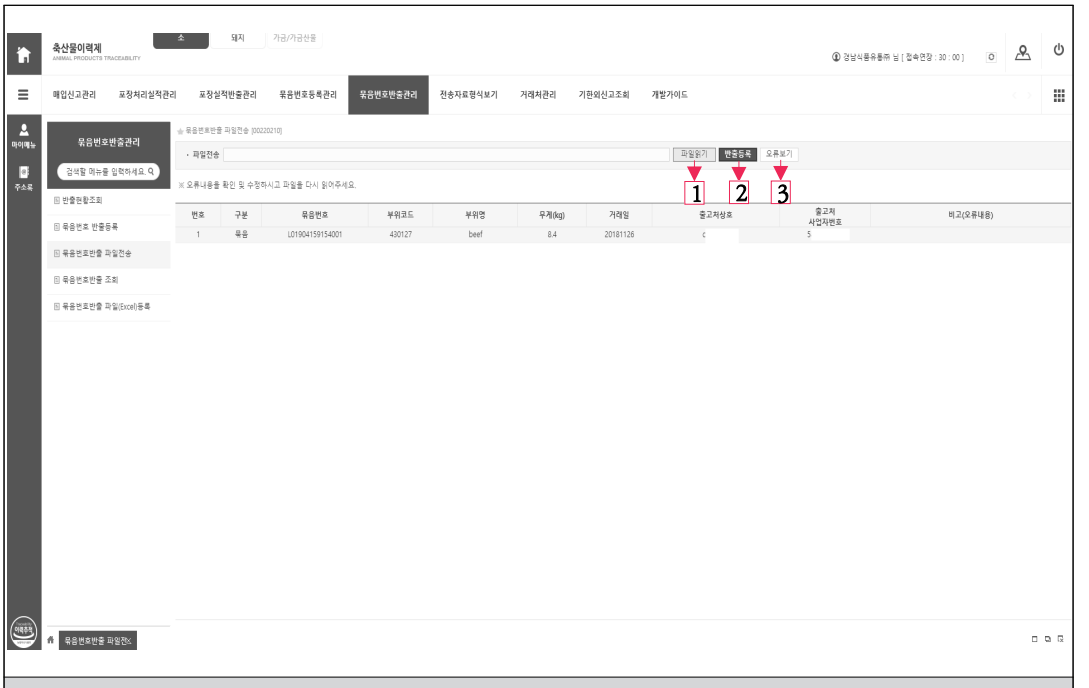


[그림 2.5.3-1] 묶음번호 반출 파일전송 화면

① 파일읽기 버튼을 클릭하여 반출처리할 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건수가 0건이면 반출등록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② 반출등록을 눌러 반출처리를 합니다.

③ 오류목록, 전체목록이 조회됩니다.

## 2.5.4 묶음번호 반출조회

- 개요 : 묶음번호 반출 현황과 거래내역신고서를 조회하고 레포트로 출력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 반출관리 〉 묶음번호 반출조회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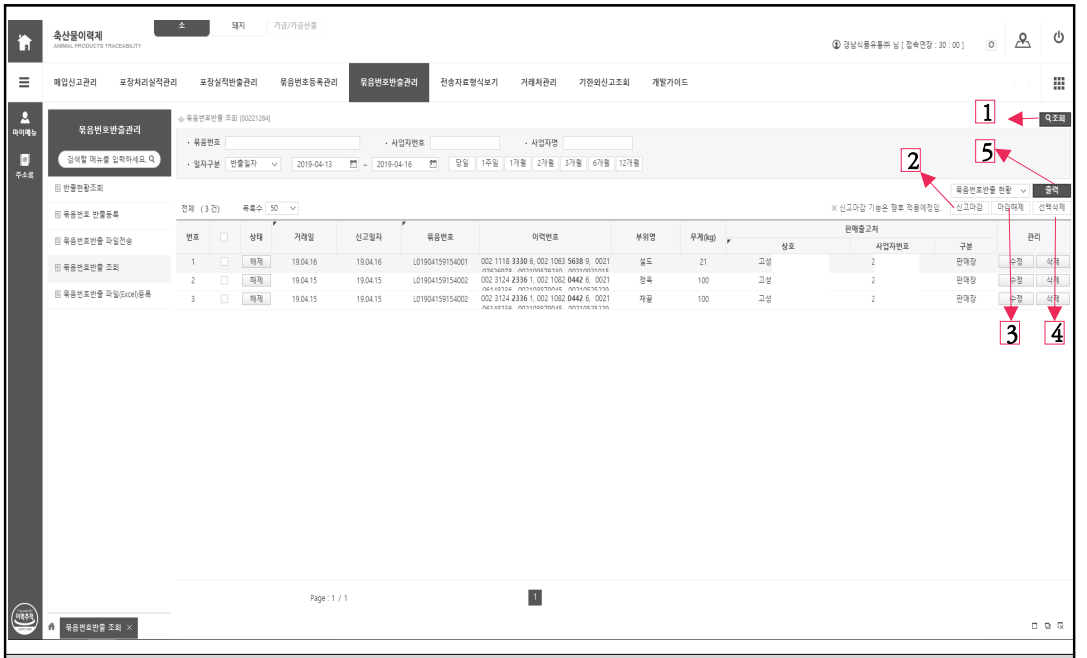


[그림 2.5.4-1] 묶음번호 반출 조회 화면

① 묶음번호 반출내역을 조회합니다.

② 반출현황에서 해당 건을 선택 후 신고마감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선택 건을 모두 신고마감 처리합니다.(마감 필수아님)

※ ②항목 마감을 하지않으면 ③항목 마감해제 하지않아도 되며 ④항목 선택삭제 가능함.

③ 반출현황에서 해당 건을 선택 후 마감해제처리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선택 건을 모두 마감해제 처리합니다.

④ 체크박스에 체크된 항목을 삭제합니다.

⑤ 묶음번호 반출현황과 선택된 내용에 대하여 거래내역 신고서를 출력합니다.
[그림 2.5.4-2] [그림 2.5.4-3]

## 쇠고기 반출등록 현황

| 번호 | 판매일자 | 묶음 번호 | 이력번호 | 원료 또는 부위명 | 무게(kg) | 판매 반출처 | |
|---|---|---|---|---|---|---|---|
| | | | | | | 상 호 | 사업자번호 |
| 1 | 19.04.16 | L01904159154001 | 002111833306, 002106356389, 002107626978, 002109576230, 002109210158 | 설도 | 21 | 고성 | 2 |
| 2 | 19.04.15 | L01904159154002 | 002312423361, 002108204426, 002106148236, 002108879045, 002105252290 | 치마살, 채끝 | 100 | 고성 | 2 |
| 3 | 19.04.15 | L01904159154002 | 002312423361, 002108204426, 002106148236, 002108879045, 002105252290 | 치마살, 채끝 | 100 | 고성 | 2 |

[그림 2.5.4-2] 묶음번호현황 출력화면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내역 신고서

[O]판매·반출 [ ]매입·반입

※ 아래 및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 접수일 19.04.16 | 발급일 19.04.16 | 처리기간 즉시 |
|---|---|---|---|

| | | | | |
|---|---|---|---|---|
| 신고인 | 성 명(법인명) | 권 | 대표자 | 허 |
| | 생년월일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6 | 연락처 | 0 |
| | 주소 | 경상남도 | | |

| | | | | |
|---|---|---|---|---|
| 출고처 | 영업장의 명칭 | 고성· | 영업허가(신고)번호 | |
| | | |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2 |

| | | | | |
|---|---|---|---|---|
| 거래처 | 성 명(법인명) | 고성 | 대표자 | 전 |
| |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2 | 연락처 | 0 |
| | 주소 | 강원도 고성군 | | |
| | | 강원도 고성군 | | |

| | | | | | | |
|---|---|---|---|---|---|---|
| 거래내역 | 거래일 | 19.04.16 | 도축일 | | 가공일 | |
| | 이력번호 | | 도축번호 | | 원료 또는 부위명 | |
| | 수량(BOX, 마리) | | | | 무게(kg, t)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신고합니다.

[그림 2.5.4-3] 거래내역신고서 출력 화면

## 2.5.5 묶음번호반출 파일(Excel)등록

- 개요 : 묶음번호반출 정보를 Excel파일로 일괄 전송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반출 관리 〉 묶음번호반출 파일(Excel)등록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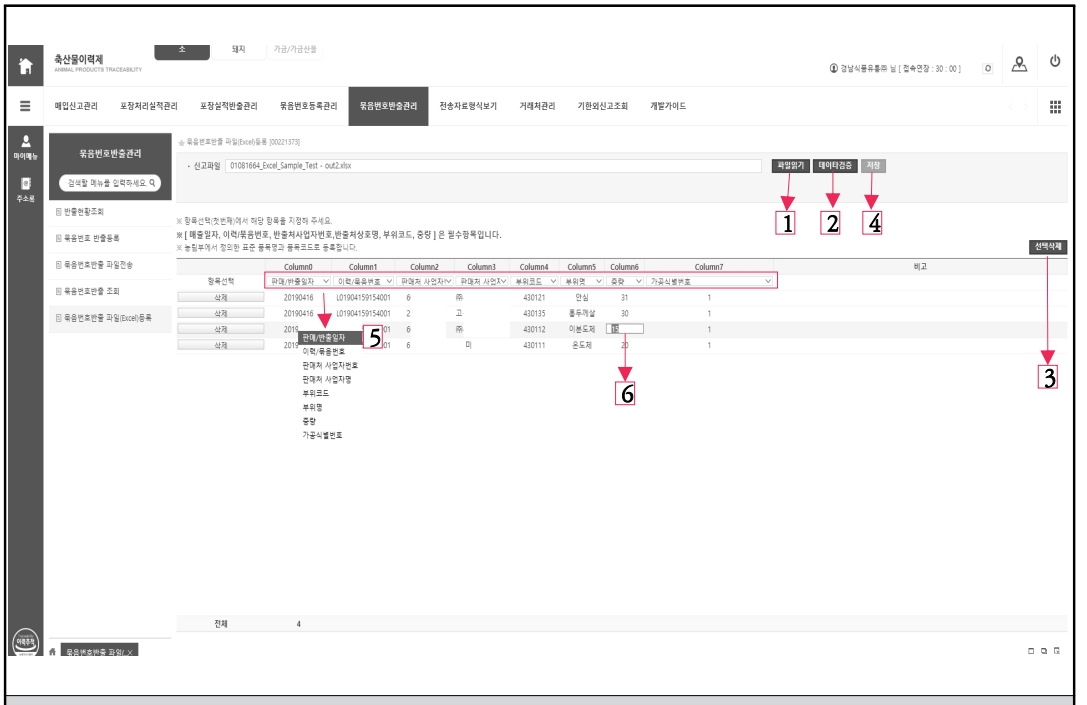


[그림 2.5.5-1] 묶음번호반출 파일(Excel)등록 화면

① 파일읽기 버튼을 클릭하여 반출처리할 Excel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건수가 0건이면 저장버튼이 활성화됩니다.

② 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내용이 비고에 표시됩니다.

③ 선택된 내역을 삭제합니다.

④ 저장을 눌러 반출처리를 합니다.

⑤ 항목선택란을 클릭하면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콤보박스가 나타납니다.

⑥ 각각의 셀을 더블클릭하면 수동입력 할 수 있도록 화면이 변경됩니다.

## 2.6 전송자료형식보기

- 개요 : 파일전송 형식에 대한 안내 매뉴얼입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전송자료형식보기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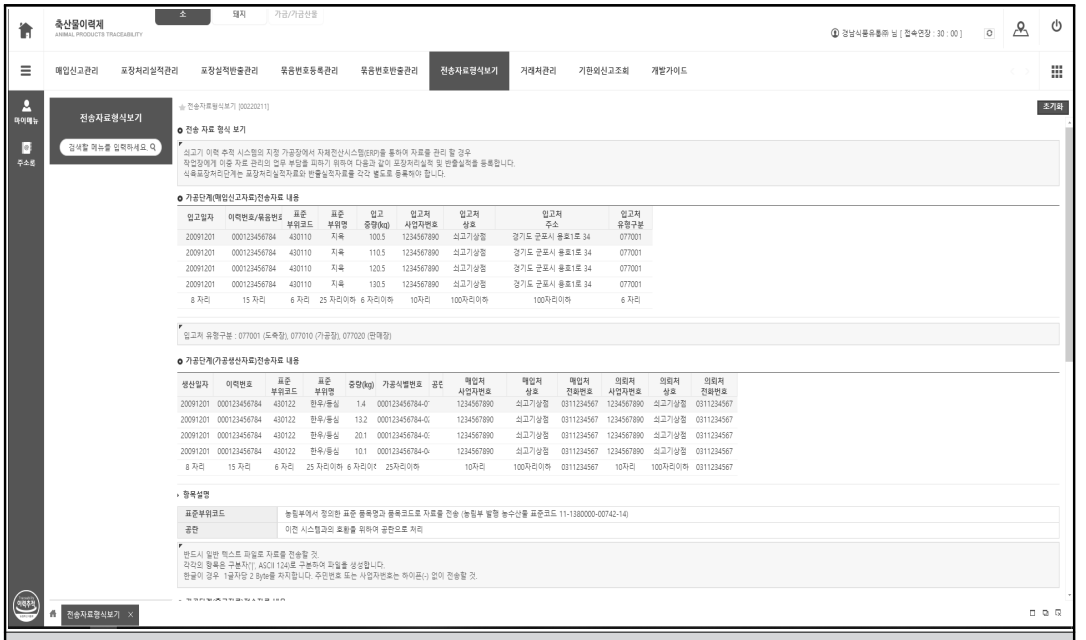


[그림 2.6-1] 전송자료형식보기 화면

## 2.7 거래처관리

### (1) 거래처관리

- 개요 : 거래처 현황을 조회하거나 등록 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거래처관리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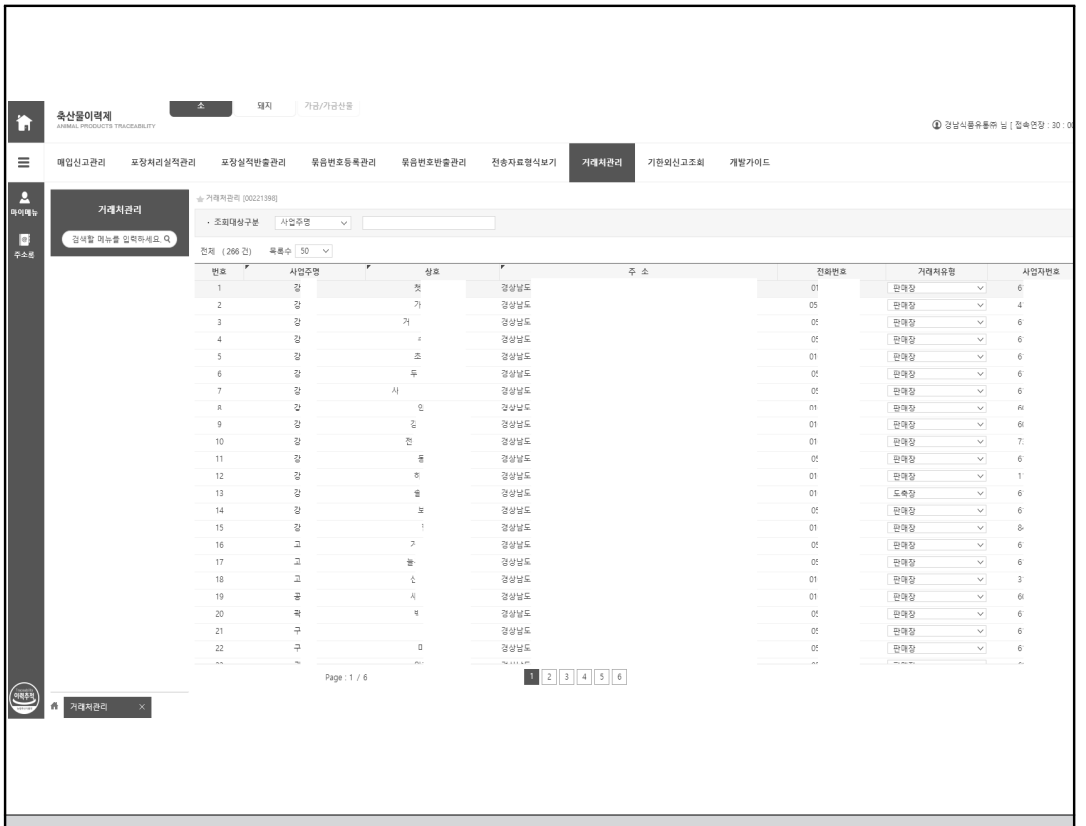


[그림 2.7-1] 거래처관리 조회 화면

① 조회 조건으로 거래처를 조회합니다.

② 엑셀저장 버튼을 눌러 조회된 내역을 Excel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림 2.7-2]

③ 신규 버튼을 누르면 거래처정보 등록 팝업 화면이 뜹니다. [그림 2.7-3]

④ 엑셀등록 버튼을 누르면 거래처정보 파일등록(Excel) 팝업 화면이 뜹니다. [그림 2.7-5]

⑤ 수정 버튼을 누르면 거래처정보 수정 팝업 화면이 뜹니다. [그림 2.7-4]

⑥ 삭제 버튼을 눌러 해당 내역을 삭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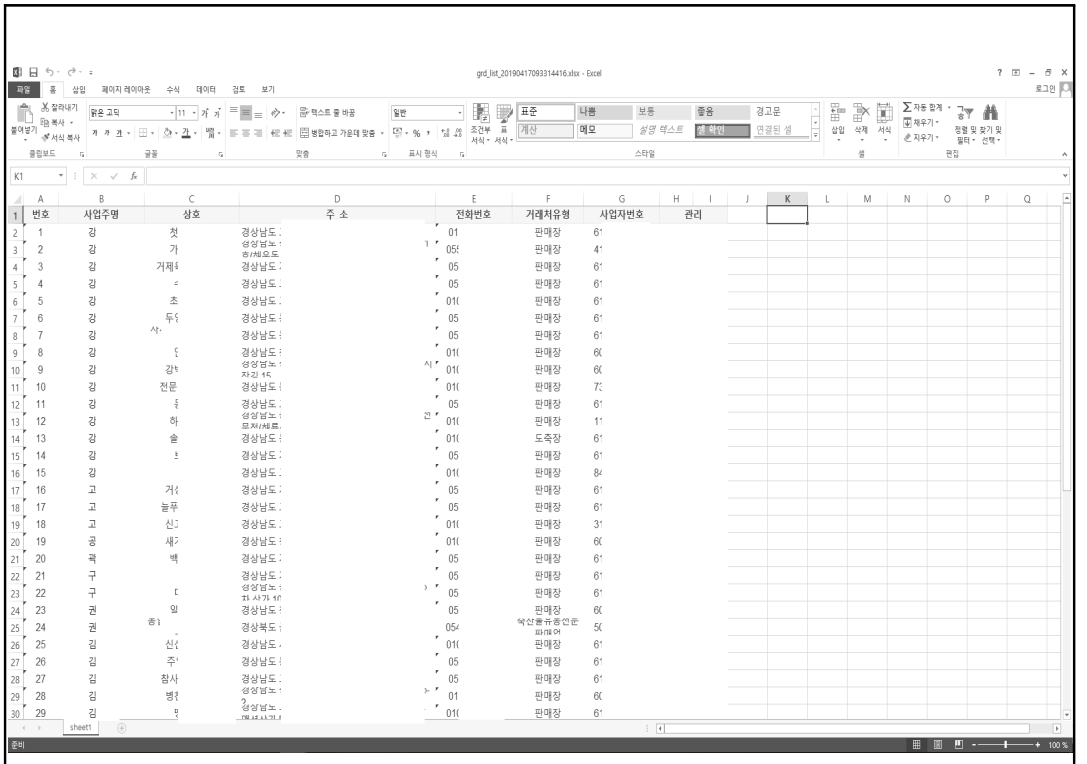

[그림 2.7-2] 거래처 조회내역 엑셀저장 화면

### (2) 거래처 등록

- 개요 : 거래처정보를 등록합니다.
- 화면 설명

[그림 2.7-3] 거래처 등록 화면

① 거래처의 상세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 (3) 거래처 수정

- 개요 : 거래처정보를 수정합니다.
- 화면 설명

[그림 2.7-4] 거래처 수정 화면

① 거래처의 상세정보를 수정한 후 수정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 (4) 거래처 정보 파일등록(Excel)

- 개요 : 거래처정보를 Excel 파일을 업로드 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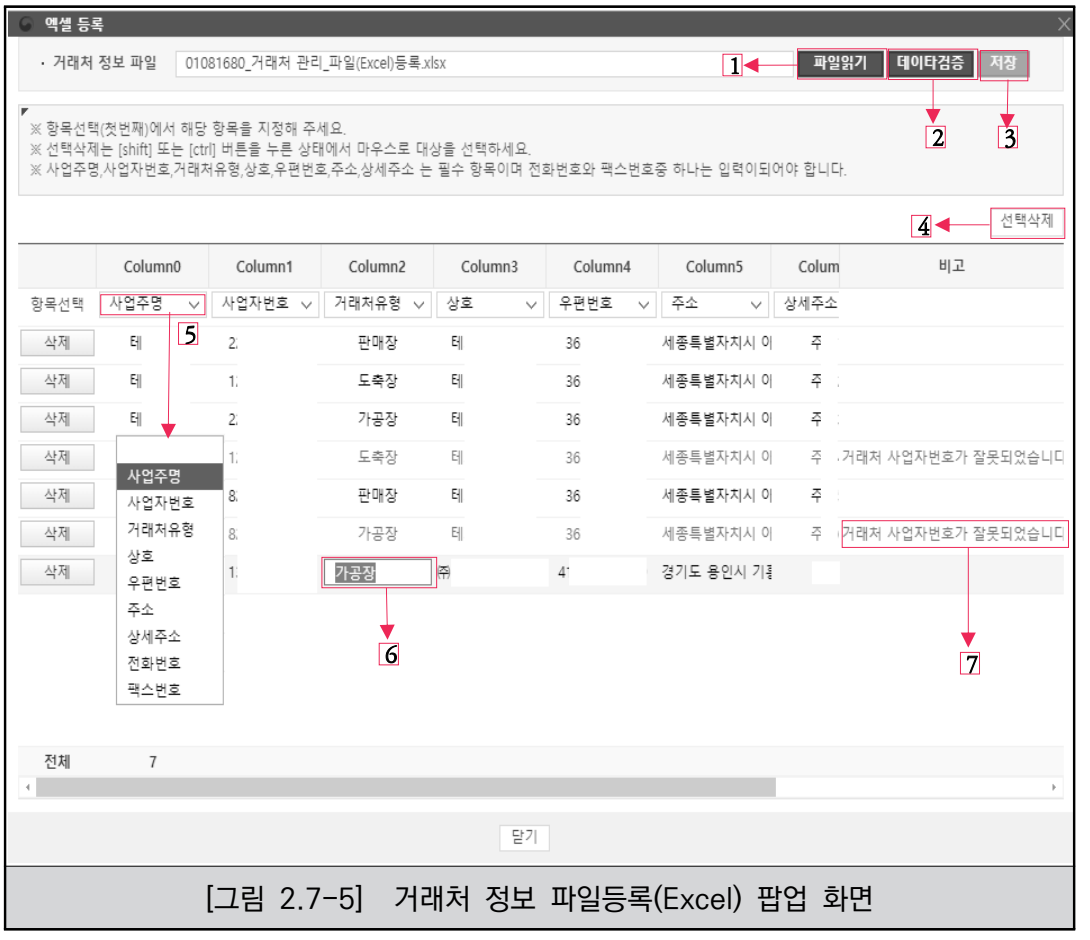


[그림 2.7-5] 거래처 정보 파일등록(Excel) 팝업 화면

① 거래처의 정보를 등록할 Excel 파일을 찾습니다.

② 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건수가 0건이면 저장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③ 저장을 눌러 거래처정보를 등록합니다.

④ 선택된 ROW를 삭제합니다.

⑤ 항목선택란을 클릭하면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콤보박스가 나타납니다.

⑥ 각각의 셀을 더블클릭하면 수동입력 할 수 있도록 화면이 변경됩니다.

⑦ 데이터검증을 한 후 오류사항이 있을 때 비고란에 표시해 줍니다.

## 2.8 기한외신고조회

- 개요 : 기한외신고내역을 조회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기한외신고조회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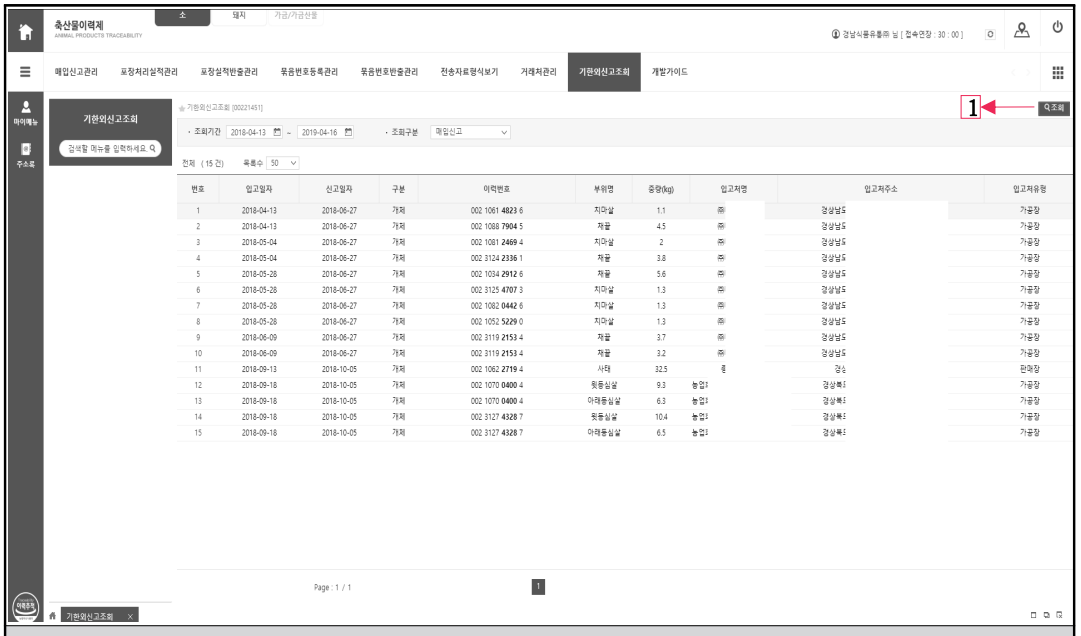


[그림 2.8-1] 기한외신고조회 화면

① 조회 조건을 선택 후 조회 버튼을 눌러 결과 값을 조회합니다.

② 당월 1일 기준 매입, 포장처리, 포장처리반출 기한 내, 기한 외 신고율을 보여줍니다. [그림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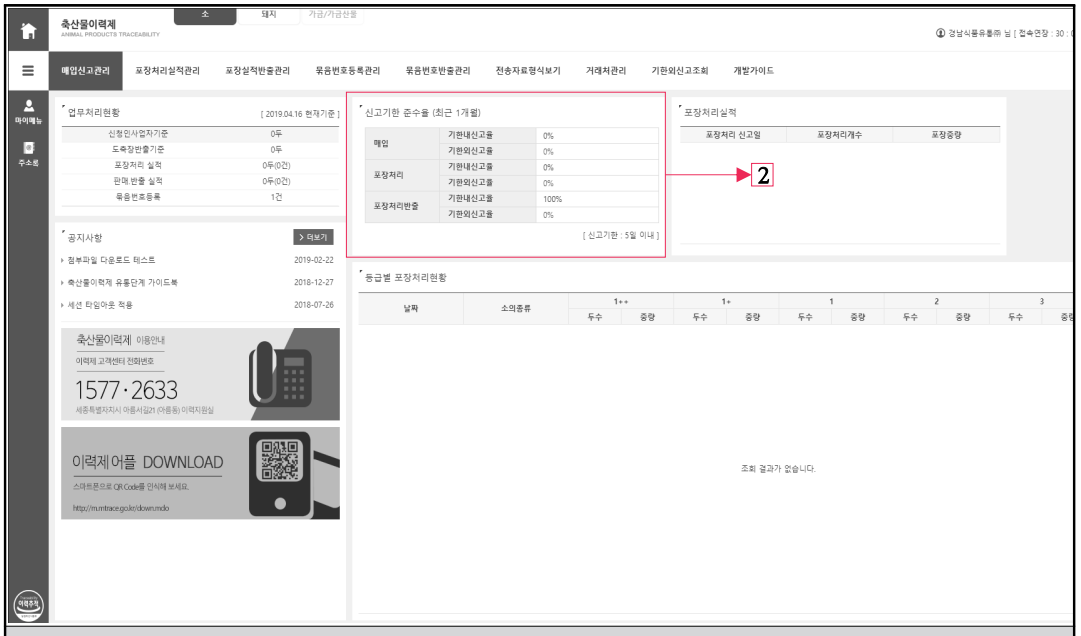


[그림 2.8-2] 포장처리단계 사용자 메인 화면

# 3. 판매단계

## 3.1 입고정보관리

### 3.1.1 입고내역 조회

#### (1) 입고내역 현황 조회 및 입고처리

- 개요 : 판매을 위한 입고내역이 조회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입고정보관리〉 입고내역조회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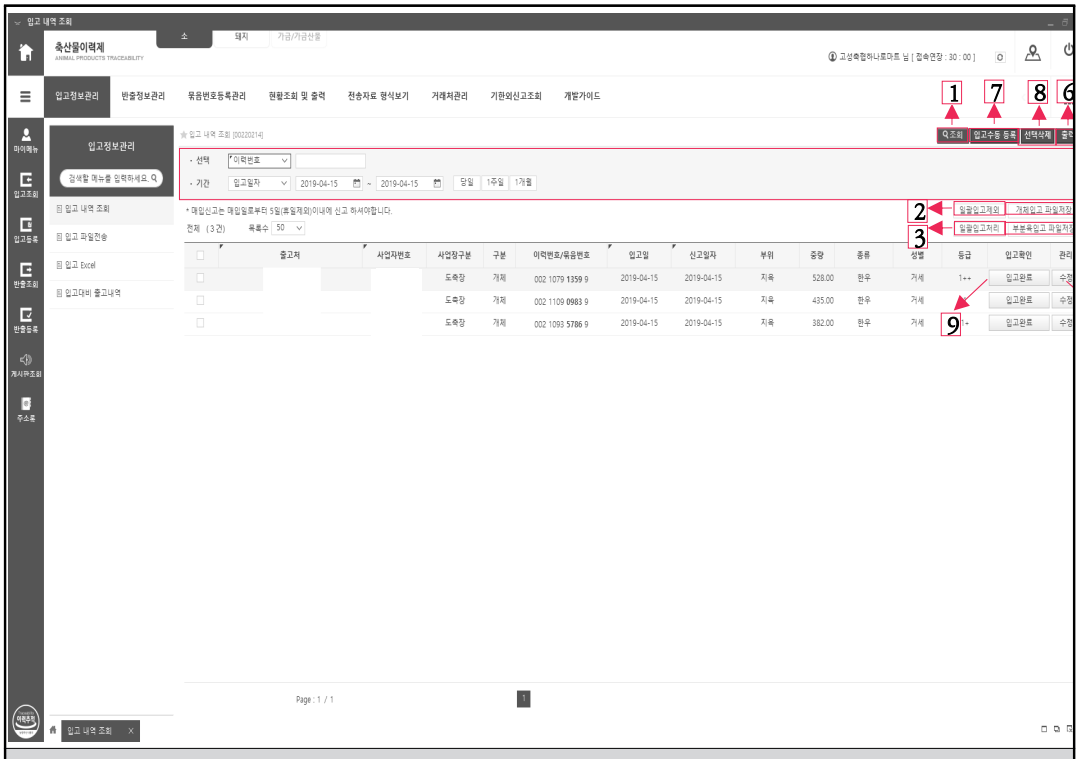


[그림 3.1.1-1] 입고내역 조회 화면

① 입고내역을 조회합니다.

② 입고현황에서 해당 건을 선택 후 일괄입고제외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선택 건이 모두 입고제외 처리합니다.

③ 입고현황에서 해당 건을 선택 후 일괄입고처리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선택 건을 모두 입고처리 합니다.

④ 입고현황에서 해당 건을 선택 후 개체입고 파일저장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선택 건을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림 3.1.1-2]

⑤ 입고현황에서 해당 건을 선택 후 부분육 입고 파일저장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선택건을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림 3.1.1-3]

⑥ 조회조건에 의한 입고 내역이 목록으로 출력됩니다. [그림 3.1.1-4]

⑦ 입고수동 등록을 합니다. [그림 3.1.1-7]

⑧ 체크박스에 체크된 항목을 삭제합니다.

⑨ 해당 입고완료된 내역을 입고취소 처리합니다. [그림 3.1.1-5]

⑩ 해당 입고내역을 수정합니다. [그림 3.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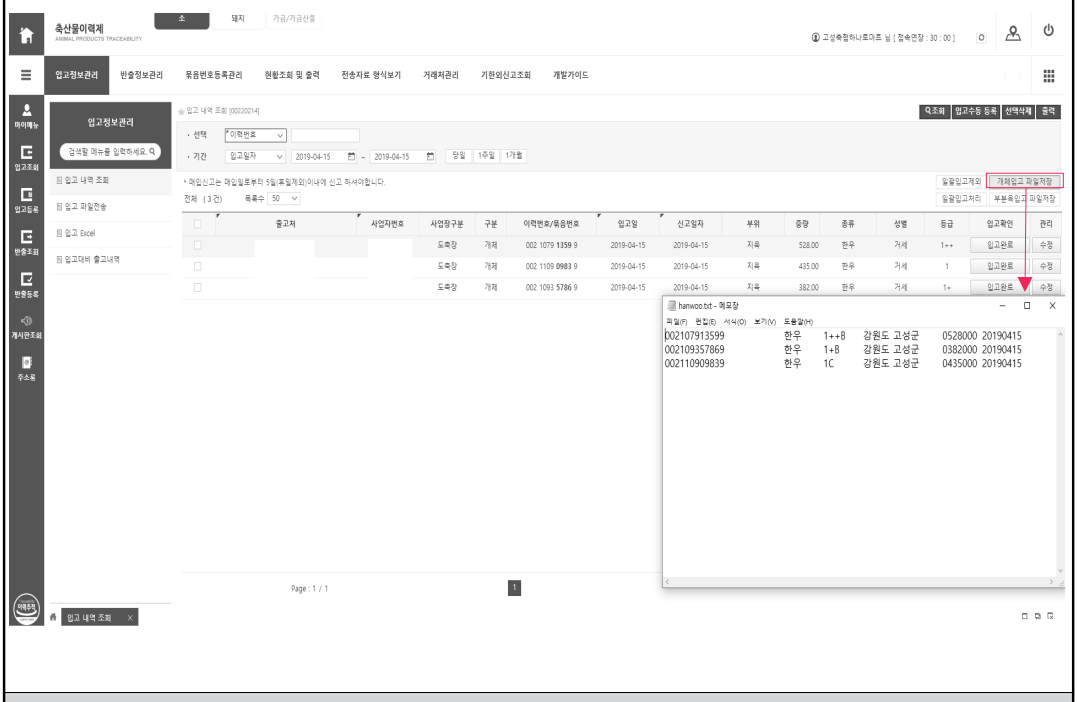


[그림 3.1.1-2] 개체입고 파일저장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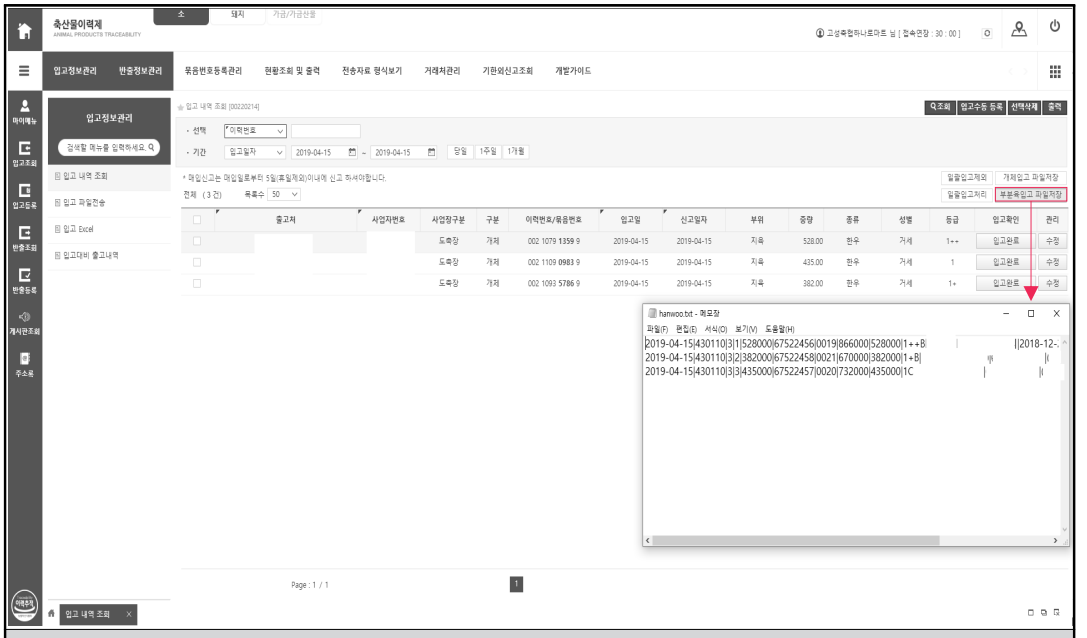


[그림 3.1.1-3] 부분입고 파일저장 화면

# 입고 내역 조회

전체( 867 )

거래기간 : 2019-01-11 ~ 2019-04-11

| 순번 | 출고처 | 사업자번호 | 사업장구분 | 구분 | 이력번호/묶음번호 | 입고일 | 신고일자 | 부위 | 중량 | 종류 | 성별 | 등급 |
|---|---|---|---|---|---|---|---|---|---|---|---|---|
| 1 | 미강식품㈜ | | 판매장 | 개체 | 002 1077 7341 1 | 2019-02-20 | 2019-02-20 | 이분도체 | 15.00 | 한우 | 거세 | 1+ |
| 2 | 미강식품㈜ | | 판매장 | 개체 | 002 1026 1397 5 | 2019-02-20 | 2019-02-20 | 온도체 | 20.00 | 한우 | 거세 | 1 |
| 3 | 미강식품㈜ | | 판매장 | 개체 | 002 1065 0759 5 | 2019-02-20 | 2019-02-20 | 지육 | 10.00 | 한우 | 거세 | 1 |
| 4 | 미강식품㈜ | | 판매장 | 개체 | 002 1077 8947 7 | 2019-02-20 | 2019-02-20 | 이분도체 | 15.00 | 한우 | 거세 | 1 |
| 5 | 농업회사법인(주)해드림푸드 | | 가공장 | 개체 | 002 1106 8874 3 | 2019-01-10 | 2019-01-11 | 도가니살 | 7.20 | 한우 | 거세 | 1+ |
| 6 | 농업회사법인(주)해드림푸드 | | 가공장 | 개체 | 002 1106 8946 3 | 2019-01-10 | 2019-01-11 | 보섭살 | 6.90 | 한우 | 거세 | 1++ |
| 7 | 농업회사법인(주)해드림푸드 | | 가공장 | 개체 | 002 1106 8874 3 | 2019-01-10 | 2019-01-11 | 보섭살 | 6.00 | 한우 | 거세 | 1+ |
| 8 | 농업회사법인(주)해드림푸드 | | 가공장 | 개체 | 002 3133 9699 3 | 2019-01-10 | 2019-01-11 | 도가니살 | 6.00 | 한우 | 수 | 1+ |
| 9 | 농업회사법인(주)해드림푸드 | | 가공장 | 개체 | 002 1106 8874 3 | 2019-01-10 | 2019-01-11 | 도가니살 | 7.10 | 한우 | 거세 | 1+ |
| 10 | 농업회사법인(주)해드림푸드 | | 가공장 | 개체 | 002 1106 8946 3 | 2019-01-10 | 2019-01-11 | 보섭살 | 6.50 | 한우 | 거세 | 1++ |
| 11 | 농업회사법인(주)해드림푸드 | | 가공장 | 개체 | 002 1106 8946 3 | 2019-01-10 | 2019-01-11 | 도가니살 | 7.50 | 한우 | 거세 | 1++ |
| 12 | 농업회사법인(주)해드림푸드 | | 가공장 | 개체 | 002 1106 8946 3 | 2019-01-10 | 2019-01-11 | 도가니살 | 7.90 | 한우 | 거세 | 1++ |
| 13 | 농업회사법인(주)해드림푸드 | | 가공장 | 개체 | 002 1107 6672 3 | 2019-01-10 | 2019-01-11 | 도가니살 | 5.20 | 한우 | 수 | 1++ |

[그림 3.1.1-4] 입고내역출력 화면

[그림 3.1.1-5] 입고관리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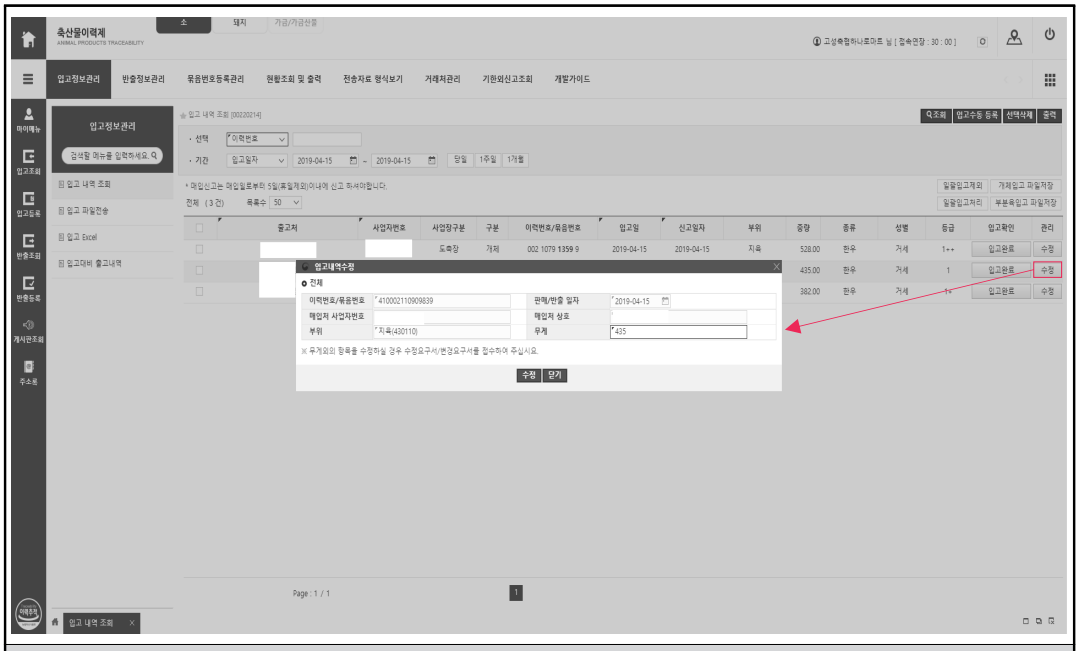


[그림 3.1.1-6] 입고내역 수정 화면

### (2) 입고수동등록

- 개요 : 입고 수동등록을 합니다.
- 화면 설명

[그림 3.1.1-7] 입고수동등록 화면

① 부위코드 팝업으로 부위를 찾아 추가합니다. [그림 3.1.1-8]

② 체크박스에 체크된 항목을 삭제합니다.

③ 개체식별번호, 거래년월일, 매입처 상호, 매입처 사업자번호, 부위, 중량 등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입고 수동등록이 됩니다.

[그림 2.1.1-8] 표준부위 조회 화면

### 3.1.2 입고 파일전송

- 개요 : 판매단계 사용자는 입고등록 처리를 통해 직접 처리를 할 수도 있고, 파일을 업로드 하여 입고등록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입고정보관리〉 입고파일 전송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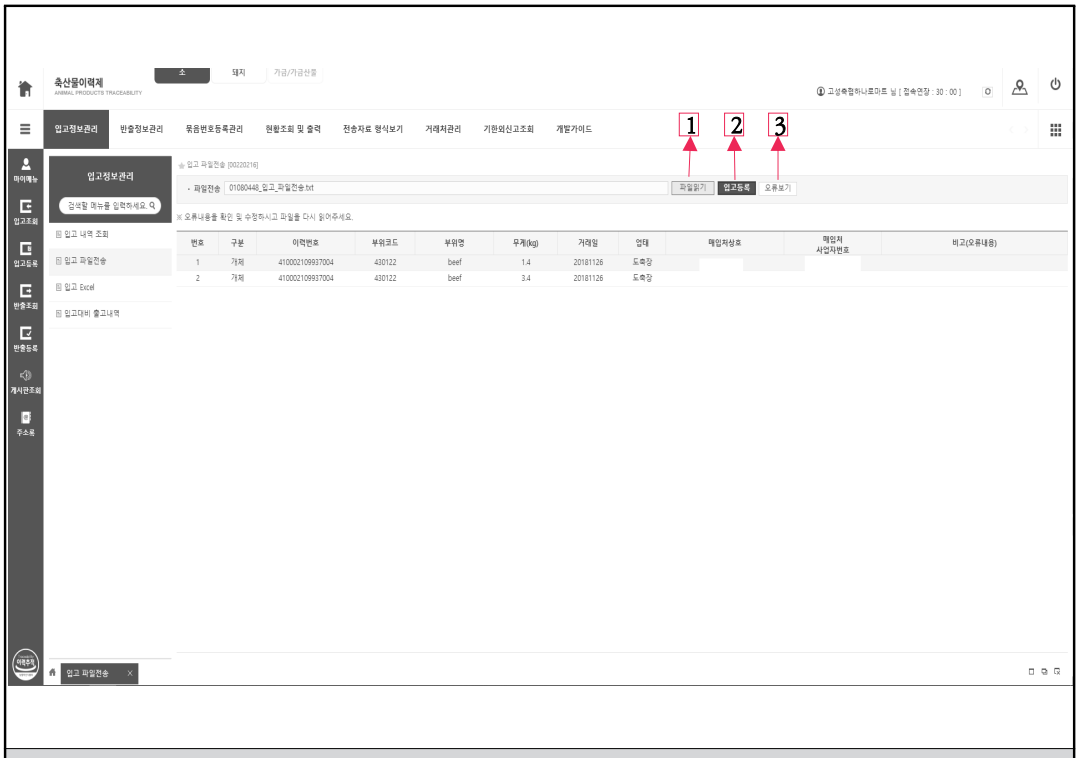


[그림 3.1.2-1] 입고등록 파일처리 화면

① 파일읽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고처리할 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건수가 0건이면 입고등록버튼이 활성화됩니다.

② 입고등록을 눌러 입고처리를 합니다.

③ 등록할 파일의 파일 정보를 분석하여 오류목록, 전체목록이 조회됩니다.

### 3.1.3 입고 Excel

- 개요 : 판매단계 사용자는 입고등록 처리를 통해 직접 처리를 할 수 있고, Excel파일을 업로드 하여 입고등록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입고정보관리〉 입고 Excel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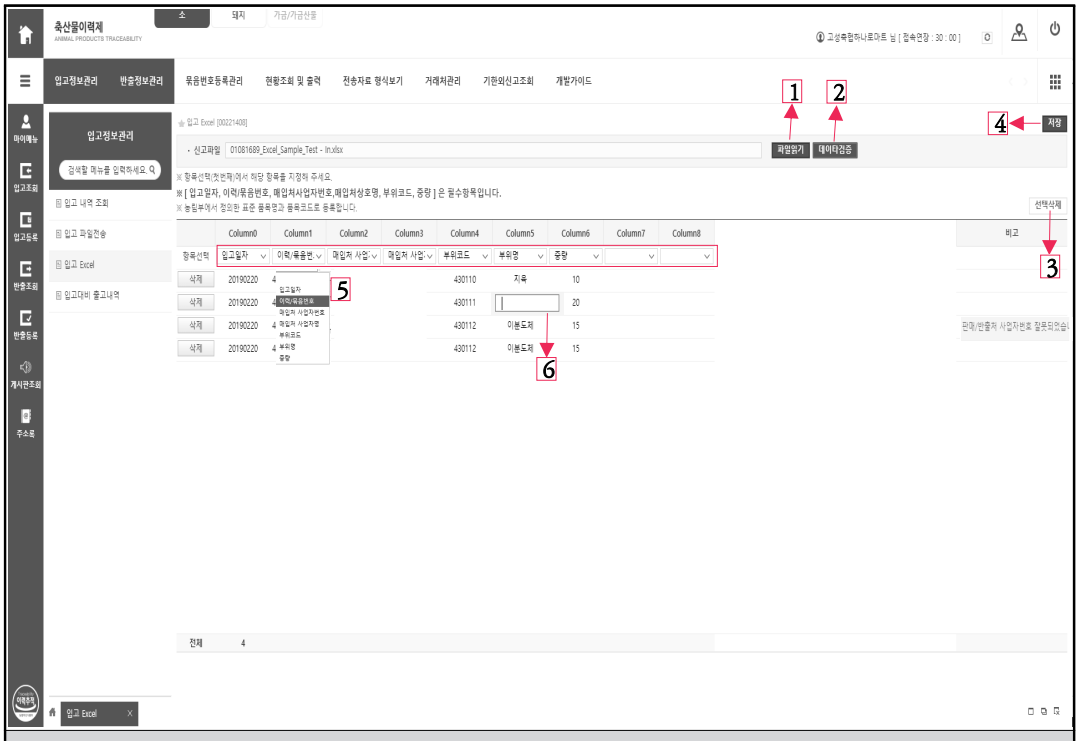


[그림 3.1.3-1] 입고등록 Excel처리 화면

① 파일읽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고처리할 Excel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건수가 0건이면 저장버튼이 활성화됩니다.

② 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내용이 비고에 표시됩니다.

③ 저장을 눌러 입고등록을 처리합니다.

④ 선택된 내역을 삭제합니다.

⑤ 항목선택란을 클릭하면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콤보박스가 나타납니다.

⑥ 각각의 셀을 더블클릭하면 수동입력 할 수 있도록 화면이 변경됩니다.

### 3.1.4 입고대비 출고내역

- 개요 : 입고대비 출고내역을 조회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입고정보관리〉 입고대비 출고내역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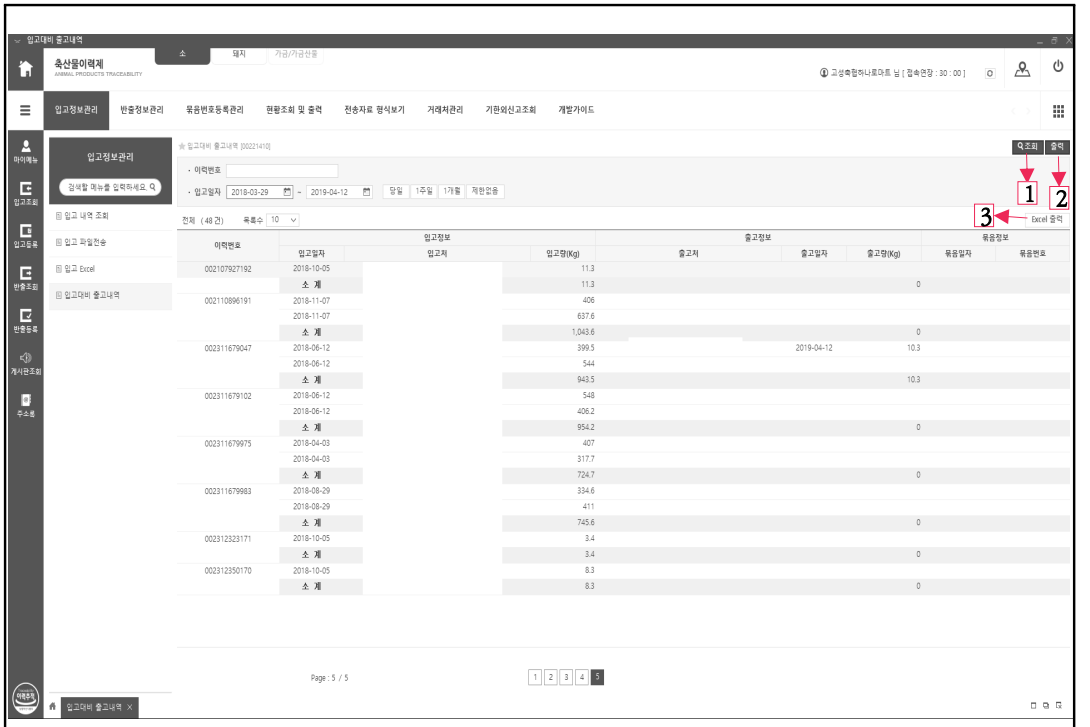


[그림 3.1.4-1] 입고대비 출고내역 화면

① 입고대비 출고내역을 조회합니다.

② 조회조건에 의한 입고대비 출고내역이 출력됩니다. [그림 3.1.4-2]

③ 조회조건에 의한 입고대비 출고내역이 Excel로 출력됩니다. [그림 3.1.4-3]

## 이력번호별 입고대비 출고내역

매입처 : 고성축협하나로마트 조회기간 : 20180329 ~ 20190412

| 이력번호 | 매입일자 | 매입처 | 매입량 | 출고일자 | 출고처 | 출고량 | 묶음일자 | 묶음번호 |
|---|---|---|---|---|---|---|---|---|
| 002110896191 | 2018-11-07 | 우리손에프앤지농업회사법인(주)강원엘 | 637.60 | | | | | |
| | 소 계 | | 1,043.60 | | | 0.00 | | |
| 002311679047 | 2018-06-12 | 우리손에프앤지농업회사법인(주)강원엘 | 399.50 | 2019-04-12 | 부경양돈협동조합육가공사업본부 | 10.30 | | |
| | 2018-06-12 | (주)강원엘피씨 | 544.00 | | | | | |
| | 소 계 | | 943.50 | | | 10.30 | | |
| 002311679102 | 2018-06-12 | (주)강원엘피씨 | 548.00 | | | | | |
| | 2018-06-12 | 우리손에프앤지농업회사법인(주)강원엘 | 406.20 | | | | | |
| | 소 계 | | 954.20 | | | 0.00 | | |
| 002311679975 | 2018-04-03 | (주)강원엘피씨 | 407.00 | | | | | |
| | 2018-04-03 | 우리손에프앤지농업회사법인(주)강원엘 | 317.70 | | | | | |
| | 소 계 | | 724.70 | | | 0.00 | | |
| 002311679983 | 2018-08-29 | 우리손에프앤지농업회사법인(주)강원엘 | 334.60 | | | | | |
| | 2018-08-29 | (주)강원엘피씨 | 411.00 | | | | | |
| | 소 계 | | 745.60 | | | 0.00 | | |
| 002312323171 | 2018-10-05 | 강원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 3.40 | | | | | |
| | 소 계 | | 3.40 | | | 0.00 | | |
| 002312350170 | 2018-10-05 | 강원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 8.30 | | | | | |
| | 소 계 | | 8.30 | | | 0.00 | | |

5/5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인쇄일자 : 2019-04-12 15:41:56

[그림 3.1.4-2] 입고대비 출고내역 출력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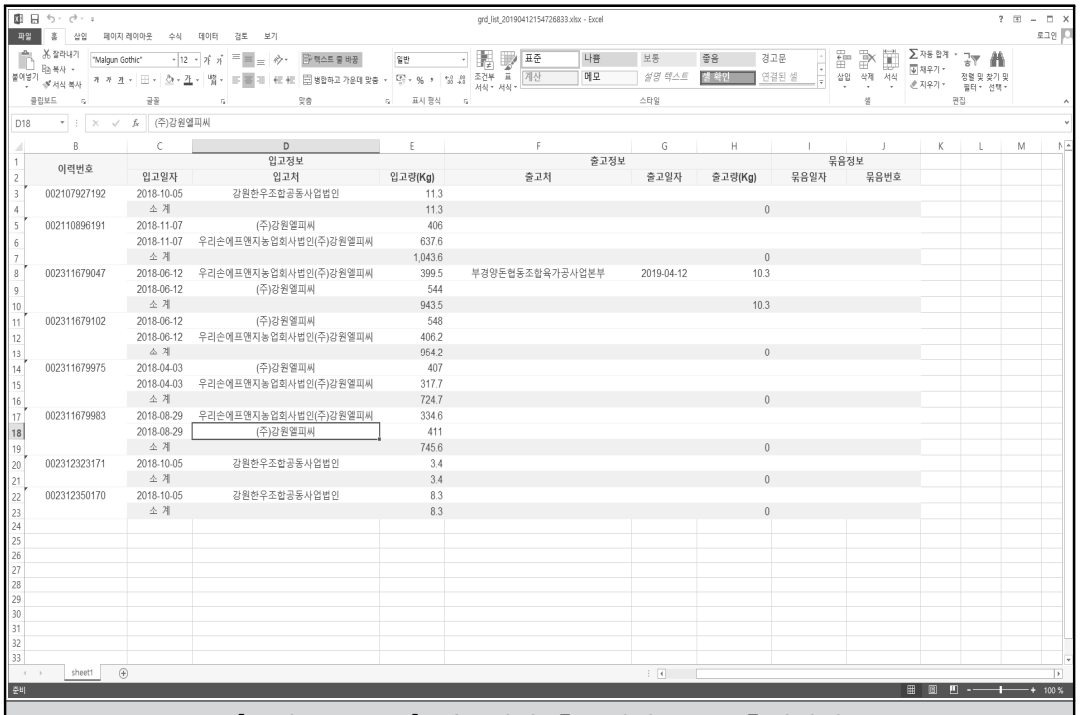

| 이력번호 | 입고정보 | | | 출고정보 | | | 묶음정보 | |
|---|---|---|---|---|---|---|---|---|
| | 입고일자 | 입고처 | 입고량(Kg) | 출고처 | 출고일자 | 출고량(Kg) | 묶음일자 | 묶음번호 |
| 002107927192 | 2018-10-05 | 강원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 11.3 | | | | | |
| | 소 계 | | 11.3 | | | 0 | | |
| 002110896191 | 2018-11-07 | (주)강원엘피씨 | 406 | | | | | |
| | 2018-11-07 | 우리손에프앤지농업회사법인(주)강원엘피씨 | 637.6 | | | | | |
| | 소 계 | | 1,043.6 | | | 0 | | |
| 002311679047 | 2018-06-12 | 우리손에프앤지농업회사법인(주)강원엘피씨 | 399.5 | 부경양돈협동조합육가공사업본부 | 2019-04-12 | 10.3 | | |
| | 2018-06-12 | (주)강원엘피씨 | 544 | | | | | |
| | 소 계 | | 943.5 | | | 10.3 | | |
| 002311679102 | 2018-06-12 | (주)강원엘피씨 | 548 | | | | | |
| | 2018-06-12 | 우리손에프앤지농업회사법인(주)강원엘피씨 | 406.2 | | | | | |
| | 소 계 | | 954.2 | | | 0 | | |
| 002311679975 | 2018-04-03 | (주)강원엘피씨 | 407 | | | | | |
| | 2018-04-03 | 우리손에프앤지농업회사법인(주)강원엘피씨 | 317.7 | | | | | |
| | 소 계 | | 724.7 | | | 0 | | |
| 002311679983 | 2018-08-29 | 우리손에프앤지농업회사법인(주)강원엘피씨 | 334.6 | | | | | |
| | 2018-08-29 | (주)강원엘피씨 | 411 | | | | | |
| | 소 계 | | 745.6 | | | 0 | | |
| 002312323171 | 2018-10-05 | 강원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 3.4 | | | | | |
| | 소 계 | | 3.4 | | | 0 | | |
| 002312350170 | 2018-10-05 | 강원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 8.3 | | | | | |
| | 소 계 | | 8.3 | | | 0 | | |

[그림 3.1.4-3] 입고대비 출고내역 Excel출력화면

## 3.2 반출정보관리

### 3.2.1 반출내역 조회

#### (1) 반출내역 조회 및 신고

- 개요 : 반출내역을 조회한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반출정보관리〉 반출내역 조회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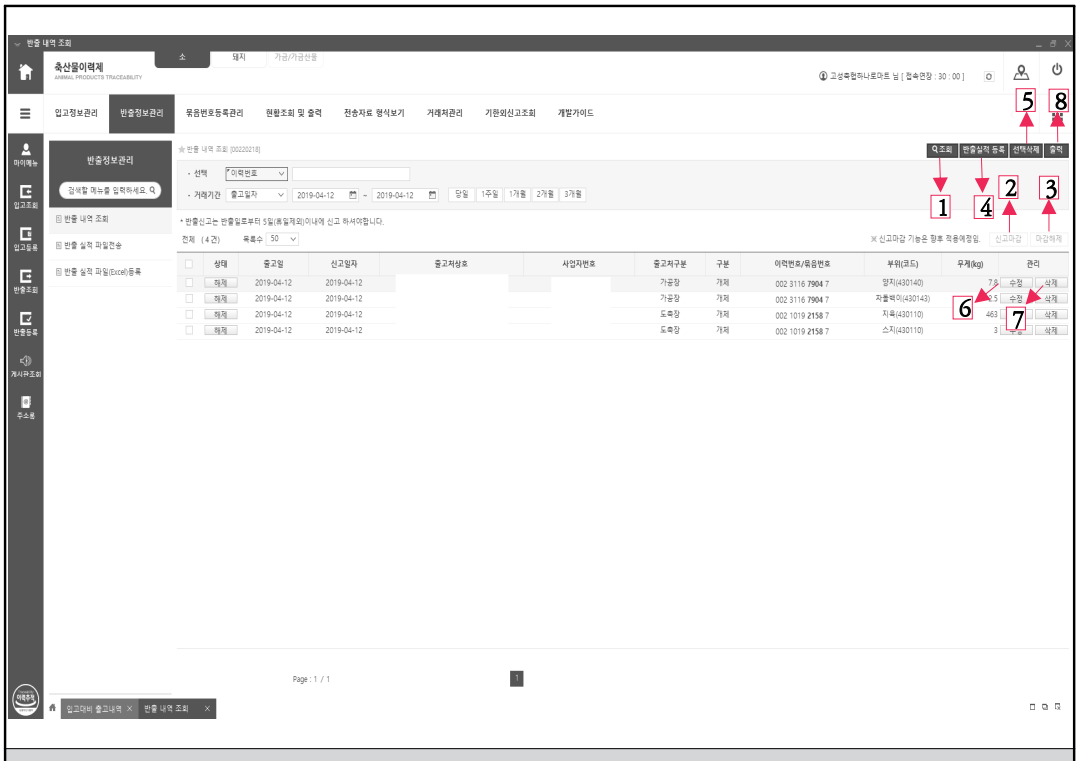


[그림 3.2.1-1] 반출내역 조회 화면

① 반출내역을 조회합니다.

② 반출현황에서 해당 건을 선택 후 신고마감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선택 건을 모두 신고마감 처리합니다.(마감 필수아님)

※ ②항목 마감을 하지않으면 ③항목 마감해제 하지않아도 되며 ④항목 선택삭제 가능함.

③ 반출현황에서 해당 건을 선택 후 마감해제처리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선택 건을 모두 마감해제 처리합니다.

④ 반출실적 등록을 합니다. [그림 3.2.1-4]

⑤ 선택된 내역을 삭제합니다.

⑥ 해당 반출내역을 수정합니다. [그림 3.2.1-2]

⑦ 해당 반출내역을 삭제합니다.

⑧ 조회조건에 의한 반출 내역이 목록으로 출력됩니다. [그림 3.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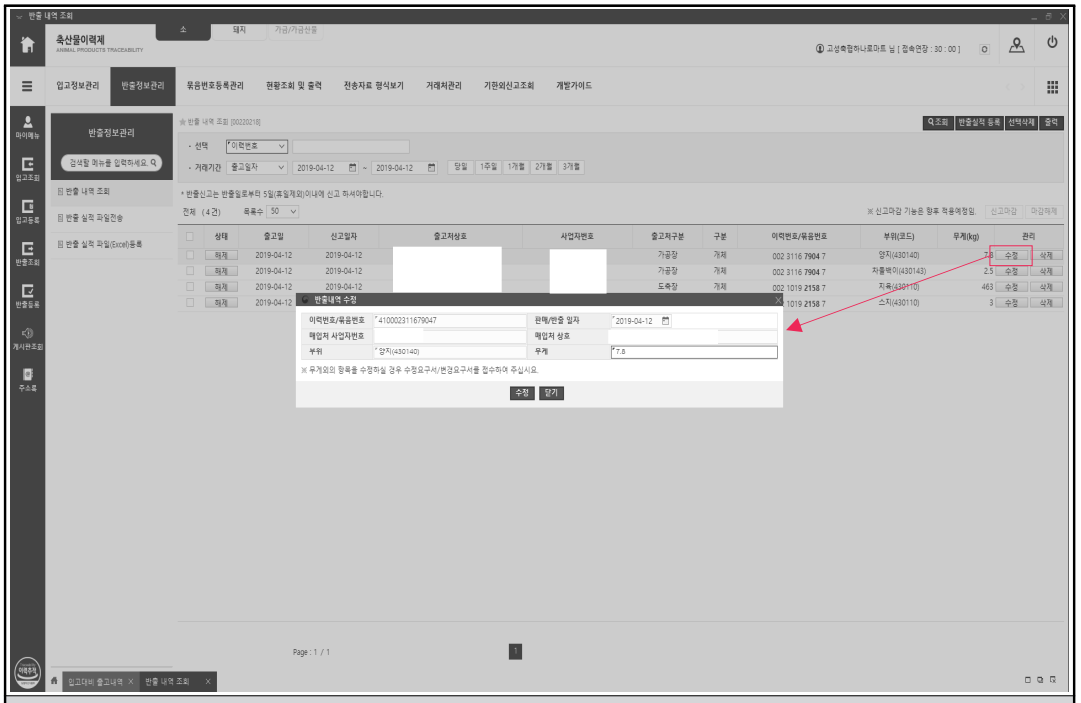


[그림 3.2.1-2] 반출내역 수정 화면

반 출 내 역 조 회

전체( 4 ) 거래기간 : 2019-04-12 ~ 2019-04-12

| 순번 | 반출일 | 신고일자 | 판매처상호 | 사업자번호 | 구분 | 이력번호/묶음번호 | 부위(코드) | 무게(kg) |
|---|---|---|---|---|---|---|---|---|
| 1 | | | | | 개체 | 002 3116 7904 7 | 앞지(430140) | 7.80 |
| 2 | | | | | 개체 | 002 3116 7904 7 | 차돌백이(430143) | 2.50 |
| 3 | | | | | 개체 | 002 1019 2158 7 | 지육(430110) | 463.00 |
| 4 | | | | | 개체 | 002 1019 2158 7 | 스지(430110) | 3.00 |

[그림 3.2.1-3] 반출내역 출력 화면

### (2) 반출실적 등록

- 개요 : 반출실적을 등록합니다.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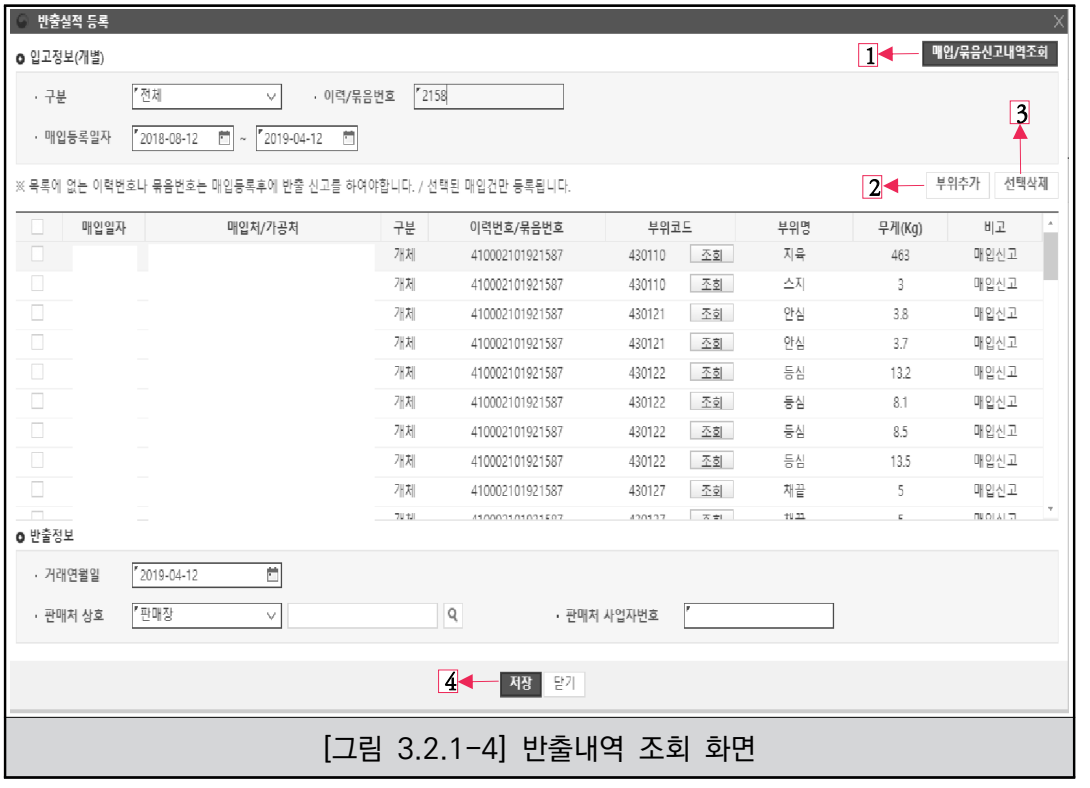


[그림 3.2.1-4] 반출내역 조회 화면

① 매입/묶음신고내역을 조회합니다.

② 부위코드 팝업으로 부위를 찾아 추가합니다. [그림 3.2.1-5]

③ 체크박스에 체크된 항목을 삭제합니다.

④ 반출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그림 3.2.1-5] 표준부위 조회 화면

### 3.2.2 반출실적 파일전송

- 개요 : 판매단계 사용자는 반출등록 처리를 통해 직접 처리를 할 수도 있고, 파일을 업로드 하여 반출등록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반출정보관리〉 반출실적 파일전송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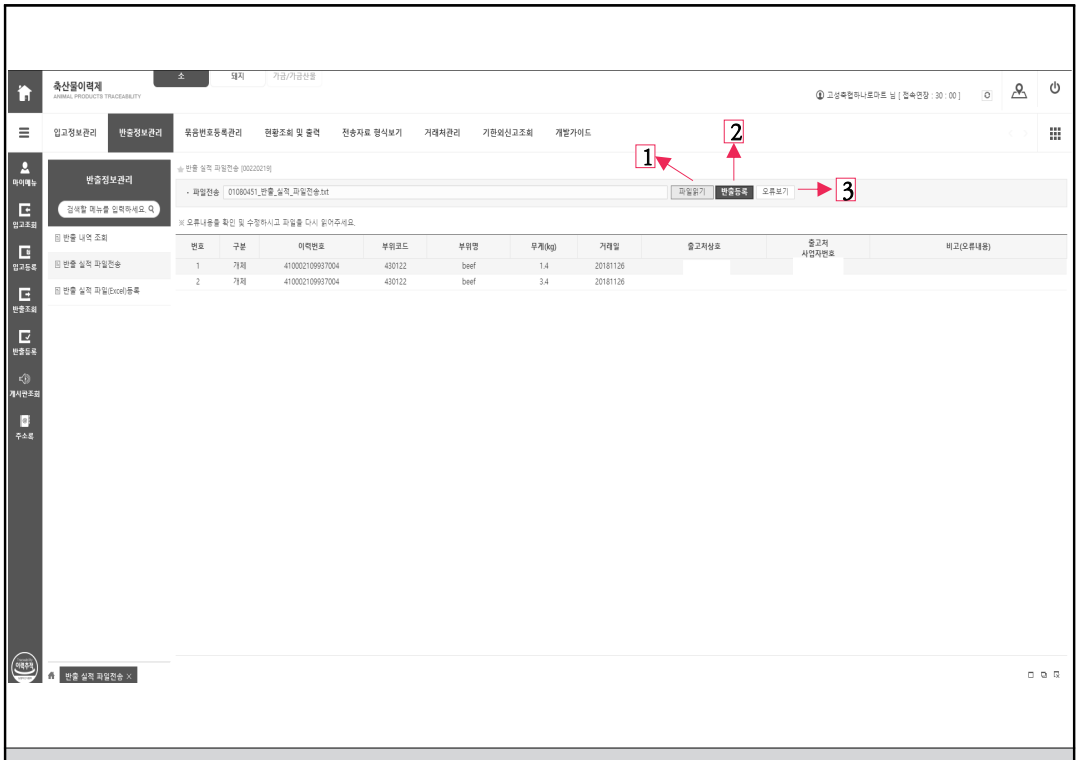


[그림 3.2.2-1] 반출등록 파일처리 화면

① 파일읽기 버튼을 클릭하여 반출처리할 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건수가 0건이면 반출등록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② 반출등록을 눌러 반출처리를 합니다.

③ 오류목록, 전체목록이 조회됩니다.

### 3.2.3 반출실적 파일(Excel) 등록

- 개요 : 판매단계 사용자는 반출등록 처리를 통해 직접 처리를 할 수 있고, Excel파일을 업로드 하여 반출등록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반출정보관리〉 반출실적 파일(Excel)등록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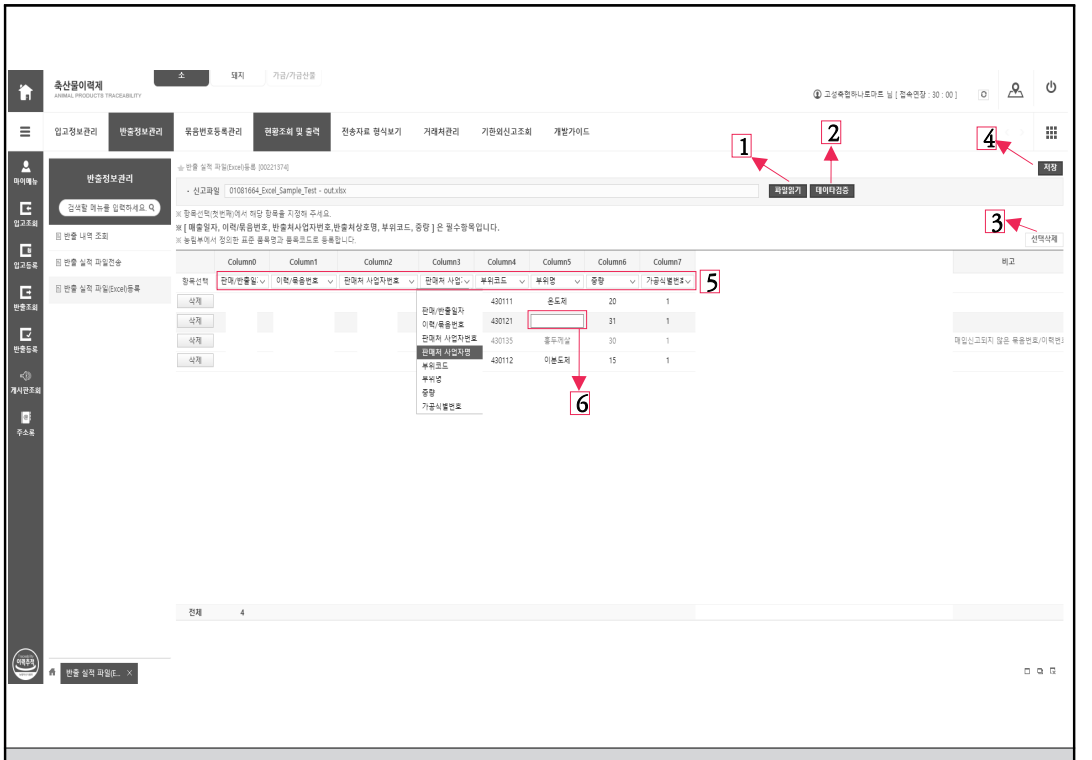


[그림 3.2.3-1] 반출실적 Excel처리 화면

① 파일읽기 버튼을 클릭하여 반출등록 처리할 Excel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건수가 0건이면 저장버튼이 활성화됩니다.

② 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내용이 비고에 표시됩니다.

③ 저장을 눌러 반출등록을 처리합니다.

④ 선택된 내역을 삭제합니다.

⑤ 항목선택란을 클릭하면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콤보박스가 나타납니다.

⑥ 각각의 셀을 더블클릭하면 수동입력 할 수 있도록 화면이 변경됩니다.

## 3.3 묶음번호관리

### 3.3.1 묶음번호 등록내역 조회

#### (1) 묶음번호 등록내역 조회 및 신고

- 개요 : 묶음번호관리 등록을 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등록관리〉 묶음번호 등록내역 조회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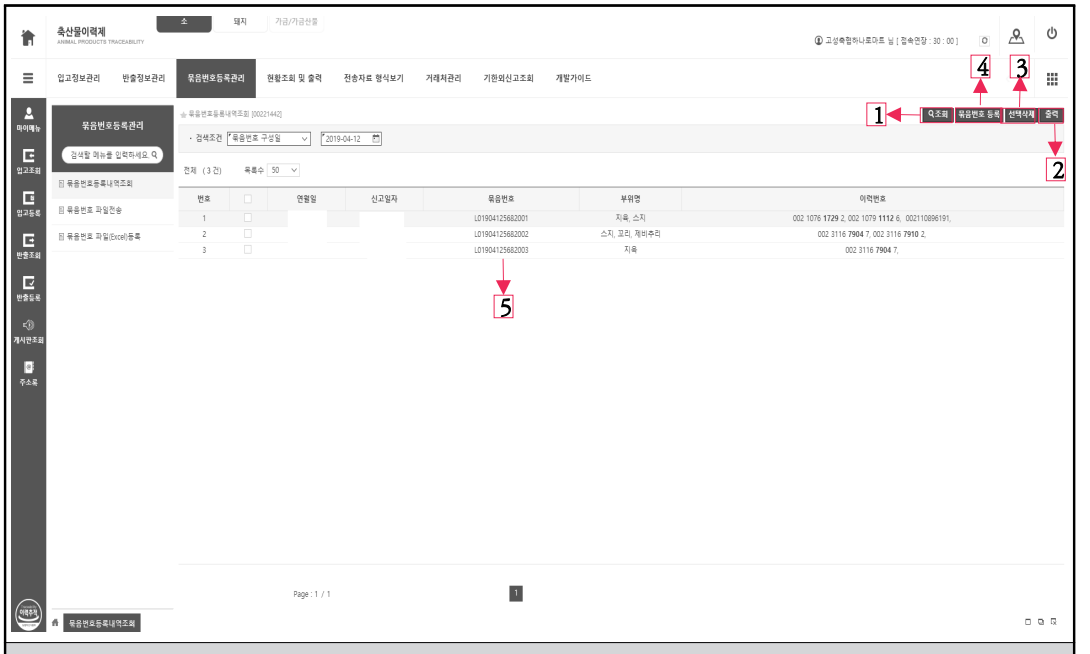


[그림 3.3.1-1] 묶음번호 등록내역 조회 화면

① 해당 조회조건에 따라 묶음번호 등록내역을 조회합니다.

② 묶음번호관리 현황을 레포트로 출력합니다. [그림 3.3.3-2]

③ 삭제할 묶음번호내역을 선택한 후 삭제합니다.

④ 묶음번호 등록 팝업창이 뜹니다. [그림 3.3.3-3]

⑤ 묶음번호 수정 팝업창이 뜹니다. [그림 3.3.3-6]

# 묶음 번호 관리

전체( 3 )

| 순번 | 연월일 | 신고일자 | 묶음번호 | 부위명 | 이력번호 |
|---|---|---|---|---|---|
| 1 | 2019-04-12 | 2019-04-12 | L01904125682001 | 지육, 스지 | 002107617292, 002107911126, |
| 2 | 2019-04-12 | 2019-04-12 | L01904125682002 | 스지, 꼬리, 제비추리 | 002311679047, 002311679102 |
| 3 | 2019-04-12 | 2019-04-12 | L01904125682003 | 지육 | 002311679047 |

[그림 3.3.1-2] 묶음번호관리 레포트 출력 화면

### (2) 묶음번호 등록

- 개요 : 매입신고 실적을 이용하여 묶음번호 내역을 등록합니다.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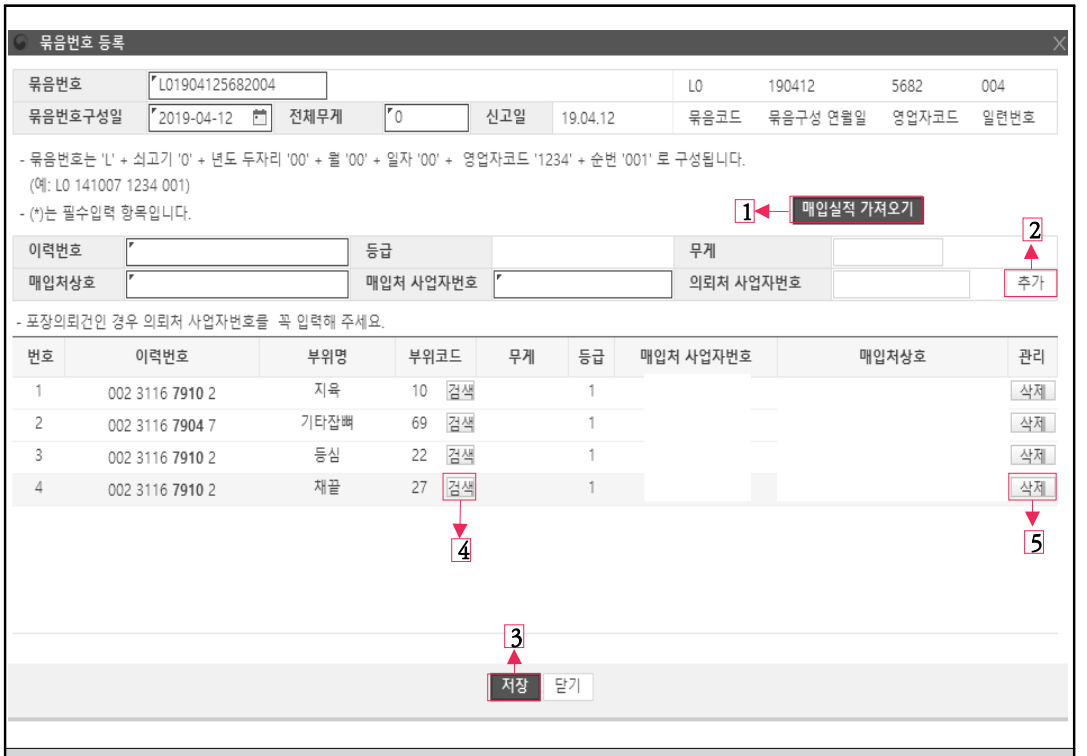


[그림 3.3.1-3] 묶음번호 등록 화면

① 매입신고 실적 조회 팝업창이 뜹니다. [그림 3.3.3-4]

② 이력번호, 매입처 상호, 매입처 사업자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묶음번호 내역을 추가합니다.

③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된 개체들의 내역으로 묶음번호를 구성하여 등록합니다.

④ 부위코드 조회 팝업을 띄웁니다. [그림 3.3.3-5]

⑤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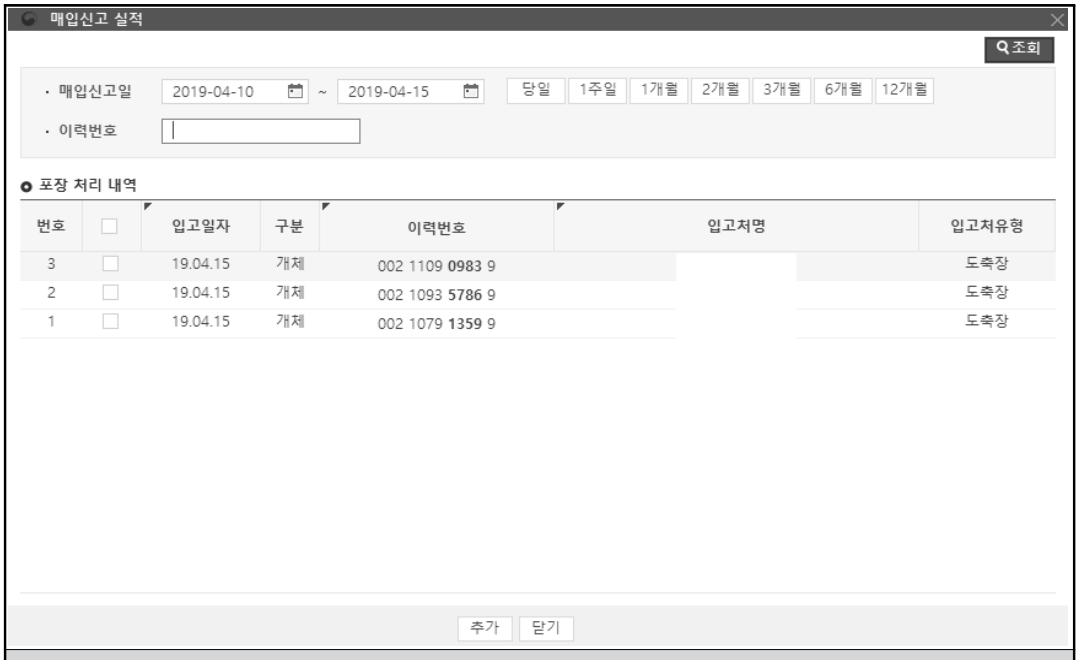


[그림 3.3.1-4] 매입신고 실적 조회 팝업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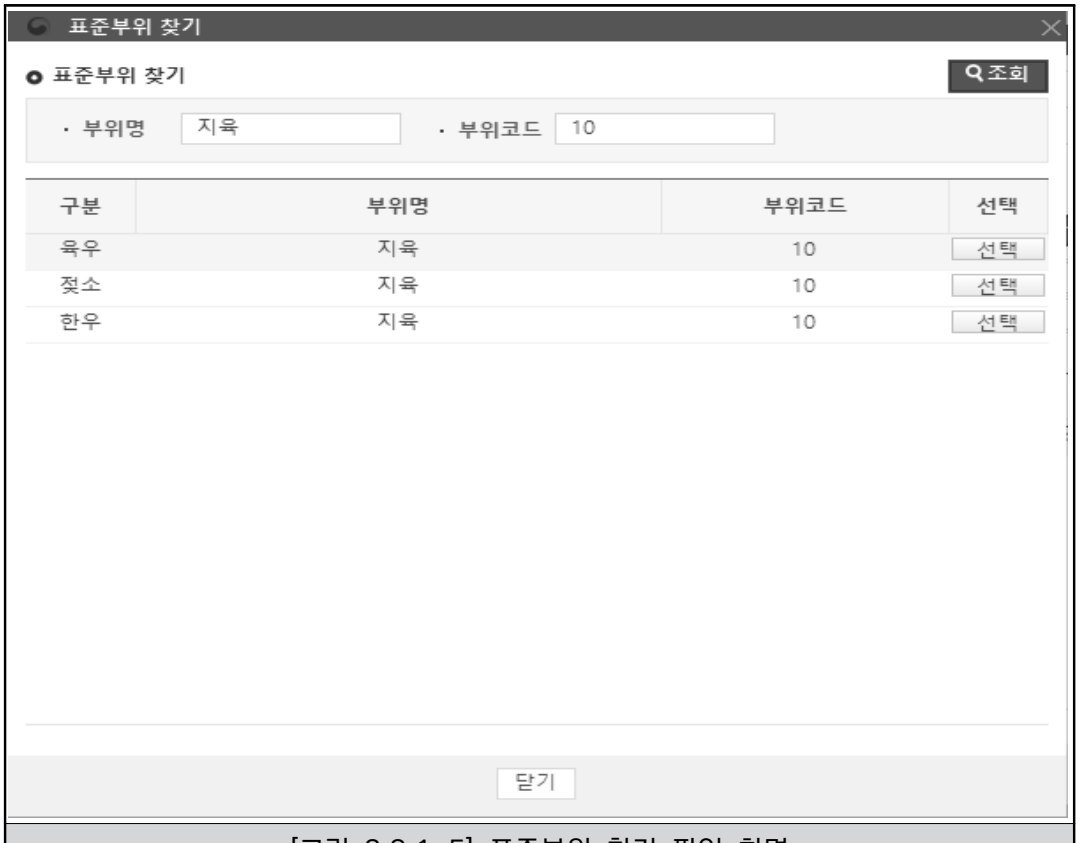


[그림 3.3.1-5] 표준부위 찾기 팝업 화면

### (3) 묶음번호 수정

- 개요 : 매입신고 실적을 이용하여 묶음번호 내역을 수정합니다.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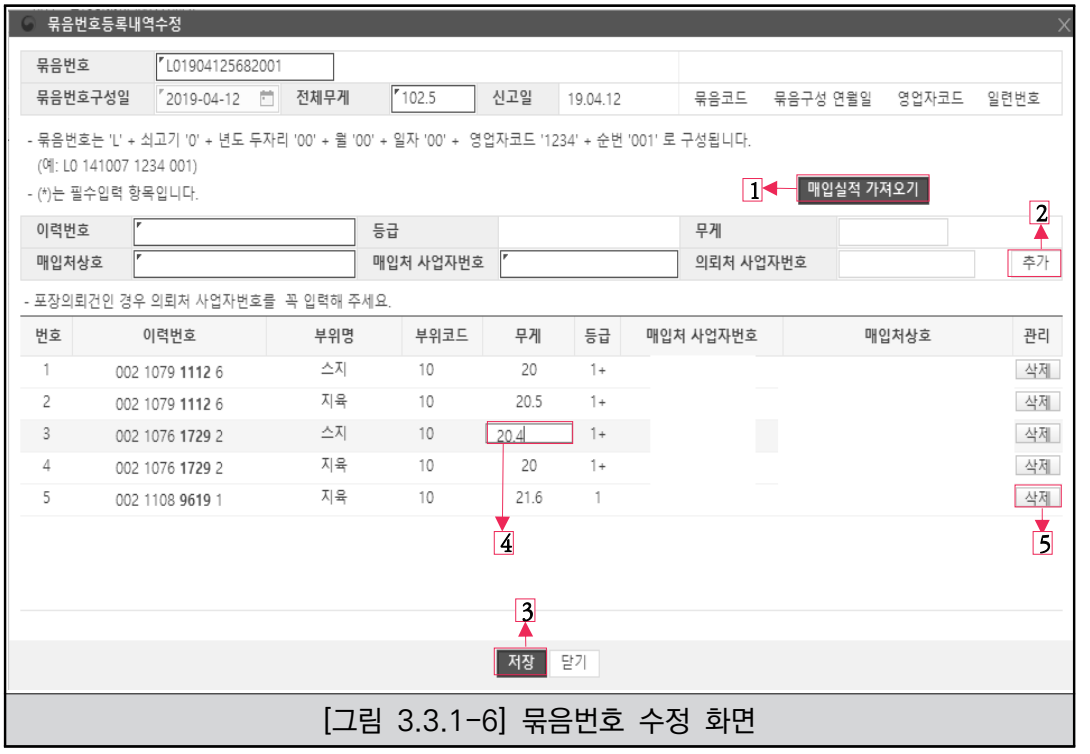


[그림 3.3.1-6] 묶음번호 수정 화면

① 매입신고 실적 조회 팝업창이 뜹니다. [그림 3.3.3-4]

② 이력번호, 매입처 상호, 매입처 사업자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묶음번호 내역을 추가합니다.

③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된 개체들의 내역으로 묶음번호를 구성하여 수정합니다.

④ 무게만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⑤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3.3.2 묶음번호 파일전송

- 개요 : 판매단계 사용자는 묶음번호 등록관리를 통해 직접 처리를 할 수도 있고, 파일을 업로드 하여 묶음번호등록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등록관리 〉 묶음번호 파일전송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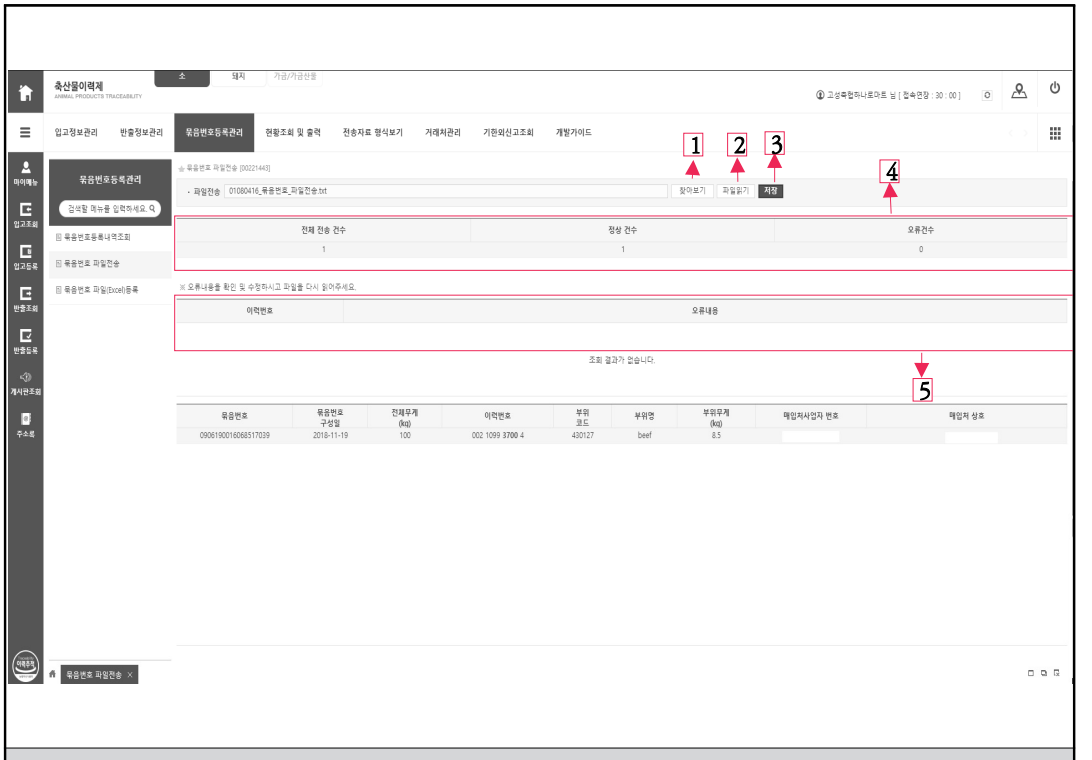


[그림 3.3.2-1] 묶음번호 파일처리 화면

① 묶음번호 신고할 파일을 찾습니다.

② 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건수가 0건이면 저장버튼이 활성화됩니다.

③ 저장 버튼을 눌러 묶음정보를 등록합니다.

④ 파일을 읽어 전체전송건수, 정상건수, 오류건수를 보여줍니다.

⑤ 오류내용이 조회됩니다.

### 3.3.3 묶음번호 파일(Excel) 등록

- 개요 : 판매단계 사용자는 묶음번호 등록관리를 통해 직접 처리를 할 수도 있고, Excel파일을 업로드 하여 묶음번호등록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등록관리〉 묶음번호 파일(Excel)등록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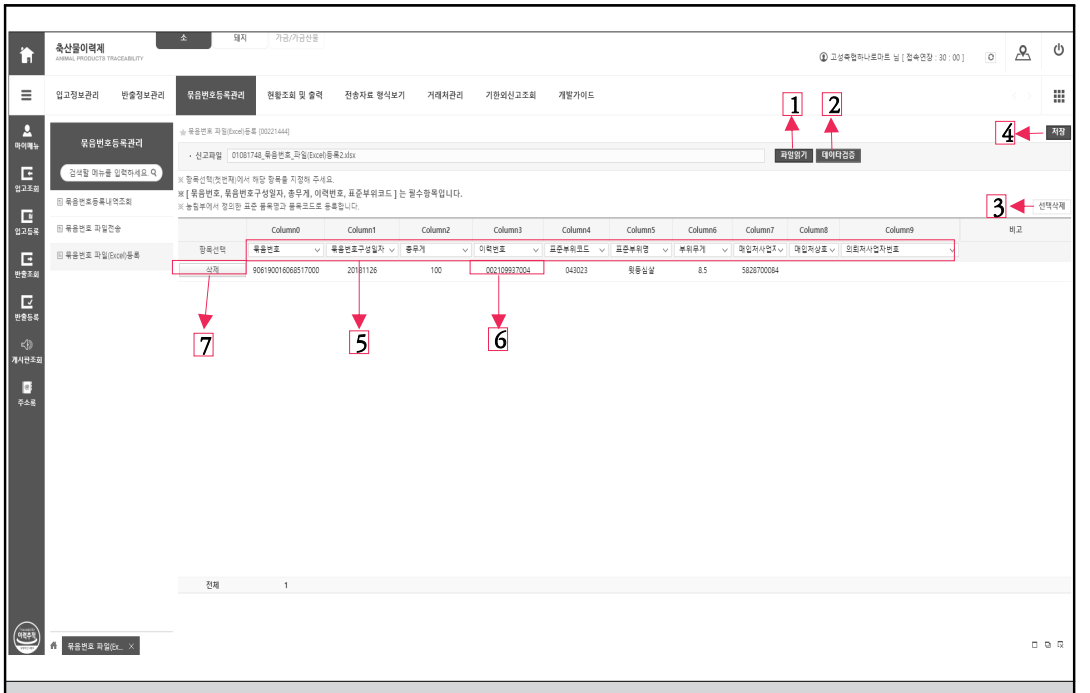


[그림 3.3.3-1] 묶음번호 파일 Excel처리 화면

① 파일읽기 버튼을 클릭하여 묶음번호등록 처리할 Excel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건수가 0건이면 저장버튼이 활성화됩니다.

② 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내용이 비고에 표시됩니다.

③ 선택된 내역을 삭제합니다.

④ 저장을 눌러 반출등록을 처리합니다.

⑤ 항목선택란을 클릭하면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콤보박스가 나타납니다.

⑥ 각각의 셀을 더블클릭하면 수동입력 할 수 있도록 화면이 변경됩니다.

⑦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3.4 현황조회 및 출력

### 3.4.1 판매개체 게시판 출력

- 개요 : 판매개체에 대한 게시판 내역을 출력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현황조회 및 출력〉 판매개체 게시판 출력
- 화면 설명

[그림 3.4.1-1] 판매개체 게시판 출력 화면

① 해당 판매장 및 판매기준 일자를 입력 후 조회합니다.

② 판매개체 게시판 내역이 조회됩니다.

### 3.4.2 식육표지판 출력

- 개요 : 식육표지판에 대한 표지판 내역을 출력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현황조회 및 출력〉 식육표지판 출력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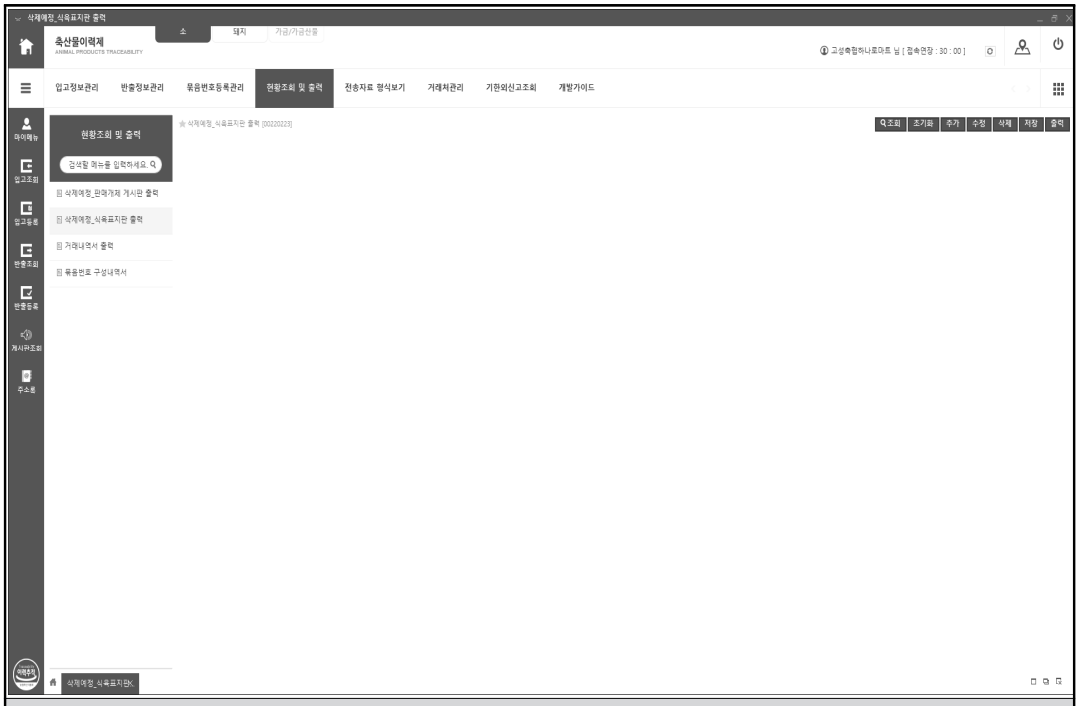


[그림 3.4.2-1] 식육표지판 출력 화면

① 해당 판매장 및 조회기준 일자를 입력 후 조회합니다.

② 식육표지판 내역이 조회됩니다.

### 3.4.3 거래내역서 출력

- 개요 : 거래내역서 내역을 출력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현황조회 및 출력〉 거래내역서 출력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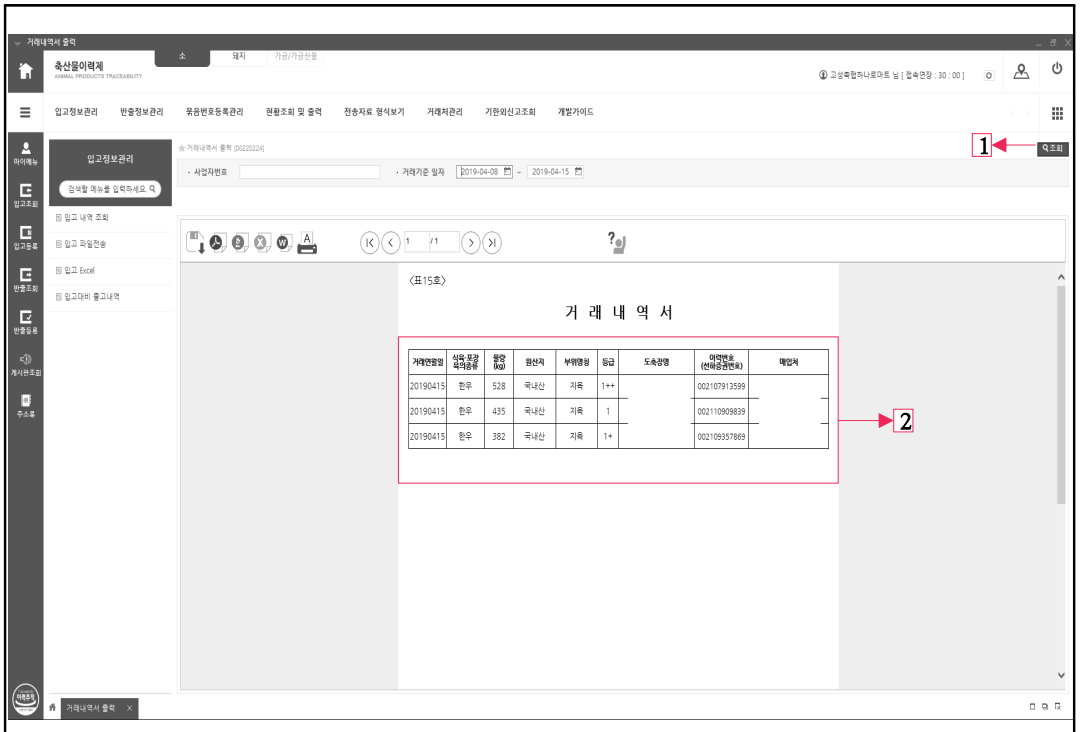


[그림 3.4.3-1] 거래내역서 출력 화면

① 사업자번호 및 거래기준 일자를 입력 후 조회합니다.

② 거래내역서 내역이 조회됩니다.

### 3.4.4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출력

- 개요 :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내역을 출력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현황조회 및 출력〉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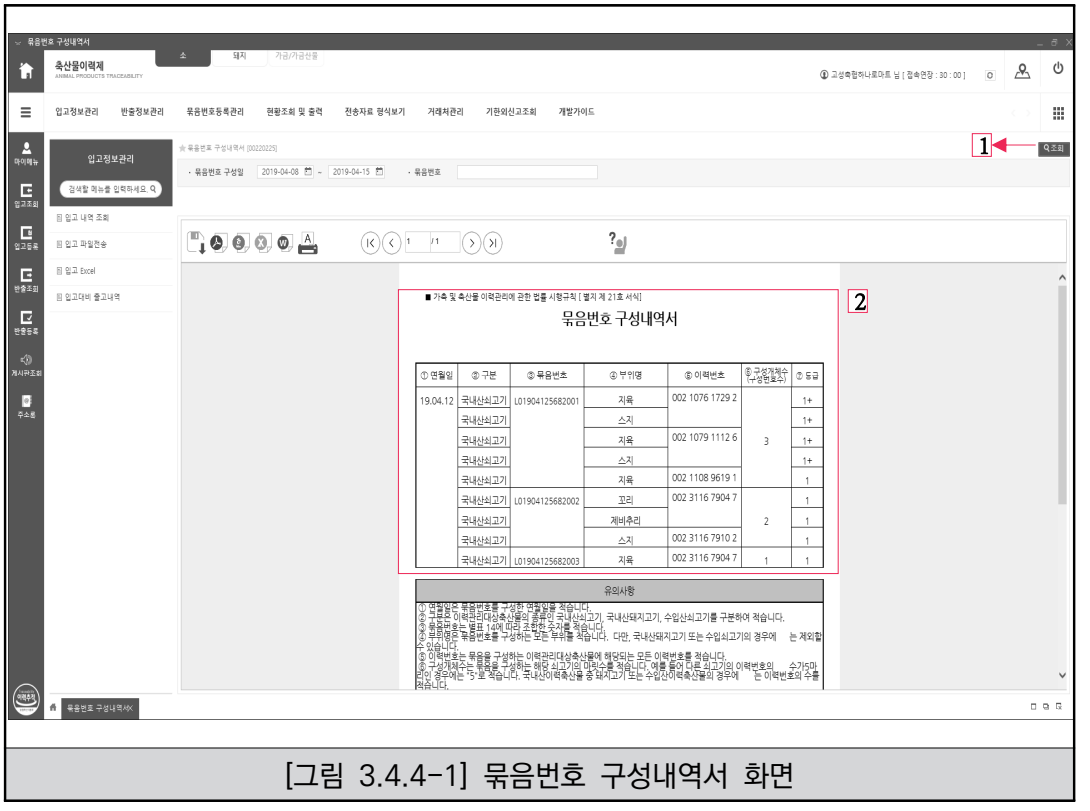


[그림 3.4.4-1]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화면

① 거래기준 일자, 묶음번호를 입력 후 조회합니다.

②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내역이 조회됩니다.

## 3.5 전송자료 형식 보기

- 개요 : 전송자료에 대한 가이드 내역을 조회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전송자료 형식 보기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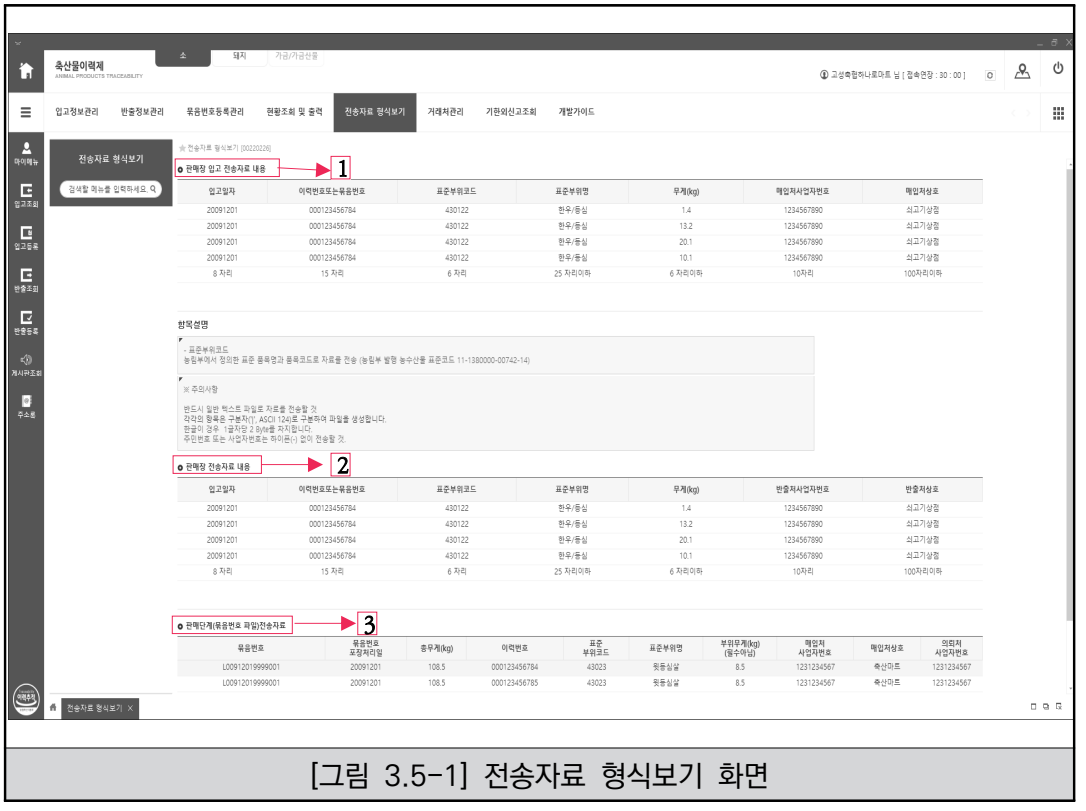


[그림 3.5-1] 전송자료 형식보기 화면

① 판매장 입고 전송자료 형식 내용이 조회됩니다.

② 판매장 전송자료 형식 내용이 조회됩니다.

③ 판매장 묶음번호 전송자료 형식 내용이 조회됩니다.

## 3.6 거래처관리

### (1) 거래처 관리

- 개요 : 거래처 현황을 조회하거나 등록 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거래처관리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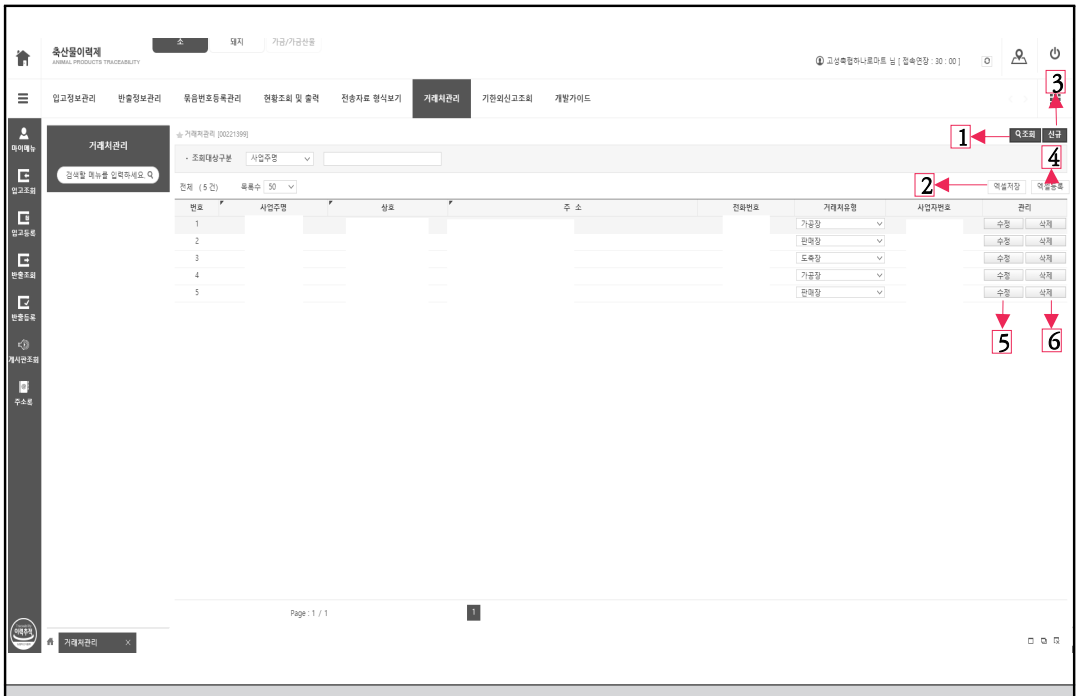


[그림 3.6-1] 거래처관리 화면

① 조회조건으로 거래처를 조회합니다.

② 조회된 결과 값이 Excel로 저장됩니다.

③ 신규 거래처를 등록합니다. [그림 3.6-2]

④ 엑셀파일로 거래처를 등록합니다. [그림 3.6-4]

⑤ 조회된 결과 값을 엑셀로 저장합니다.

⑥ 해당 거래처정보를 수정합니다. [그림 3.6-3]

⑦ 해당 거래처정보를 삭제합니다.

[그림 3.6-2] 거래처 신규등록 화면

[그림 3.6-3] 거래처 수정 화면

### (2) 엑셀등록

- 개요 : Excel파일을 업로드 하여 거래처를 등록 합니다.
- 화면 설명

[그림 3.6-4] 거래처정보 Excel파일등록

① 거래처정보를 등록할 Excel파일을 찾습니다.

② 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내용이 비고에 표시됩니다.

③ 저장을 눌러 거래처정보를 등록합니다.

④ 선택된 내역을 삭제합니다.

⑤ 항목선택란을 클릭하면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콤보박스가 나타납니다.

⑥ 각각의 셀을 더블클릭하면 수동입력 할 수 있도록 화면이 변경됩니다.

## 3.7 기한외신고조회

- 개요 : 기한외신고한 매입, 매출실적을 조회 합니다.
-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기한외신고조회
- 화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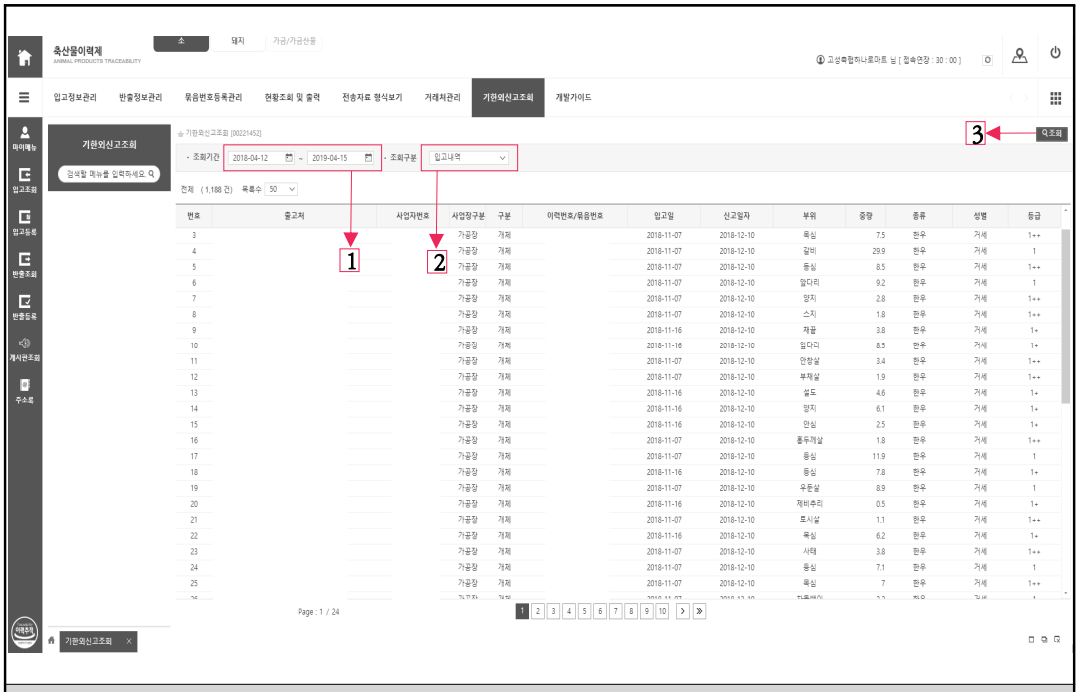


[그림 3.7-1] 기한외신고조회

① 조회기간을 입력합니다.

② 조회구분(입고내역, 반출내역)을 선택합니다.

③ 기한외신고된 내역을 조회합니다.

④ 당월 1일 기준 입고, 반출 기한내, 기한외신고율을 보여줍니다. [그림 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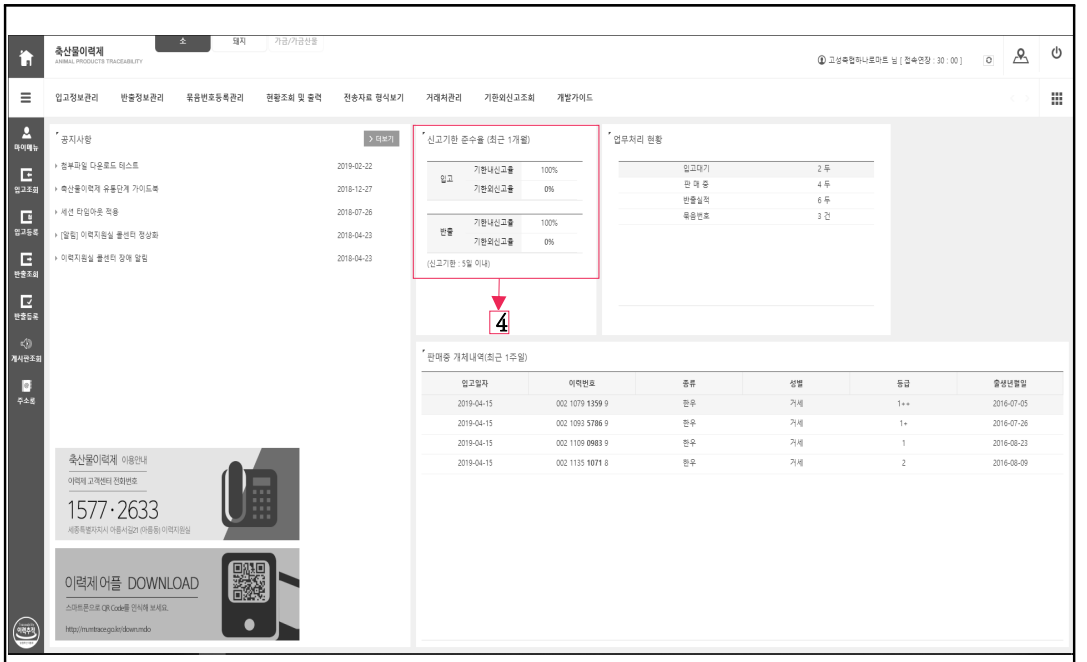


[그림 3.7-2] 판매단계 사용자 메인 화면

Ⅳ

# 단계별 질의응답

1. 사육단계
2. 도축단계
3. 포장처리단계
4. 판매단계
5. DNA동일성검사
6. 위반자 처분
7. 기타 사례

## 1 사육단계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출생신고 |
|---|---|---|---|

**< 출생 신고 >**

**□ [농가]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까운 위탁기관(축협, 한우협회, 낙농조합 등)으로 소가 태어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면 위탁기관에서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가에 방문하여 귀표를 부착하여 드립니다. (단, 육우는 7일 이내)

※ 2010. 12. 22.부터 출생 신고기한 30일 → 5일로 단축시행

**□ [농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도 가능한가요?**

▶ 물론 가능합니다. <출생 등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직접 방문하시면 좋으시겠지만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구술이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고받은 위탁기관(축협)의 접수직원이 <출생 등 신고서>를 대리 작성한 후, 귀표 부착 시나 농가 방문 시 <출생 등 신고서>에 신고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처리해 드립니다. 부득이한 경우 신고를 접수받은 위탁기관 담당자가 대리신고 날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력제 신고 모바일앱을 통한 출생신고도 가능합니다.

**□ [농가] 송아지가 태어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물론입니다. 이력제는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하므로 송아지가 태어나면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축협, 한우협회, 낙농조합 등)으로 반드시 출생신고 후, 귀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 [농가] 젖소를 기르고 있는데 젖소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물론입니다. 이력제는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하므로 한우뿐 아니라 육우나 젖소도 송아지가 태어나면 해당 지역의 관할기관(축협, 낙농조합 등)으로 반드시 출생신고 후, 귀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귀표 부착 및 관리 |
|---|---|---|---|

**< 귀표부착 >**

**□ [농가]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귀표를 부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소가 태어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가까운 위탁기관(축협, 한우협회, 낙농조합 등)으로 신고하시면 위탁기관에서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가에 방문하여 귀표를 부착하여 드립니다. 단, 육우는 7일 이내에 부착해야 합니다.

※ 2011.6.22.부터 육우의 귀표부착기한 30일 → 7일로 단축 시행

**□ 귀표는 어떻게 부착해야 하나요?**

▶ 귀표는 부당사용 방지 및 통일을 기하고 탈락에 대비하여, 소의 양쪽 귀(1두에 2개)에 모두 부착해야 합니다. 귀 앞쪽에 암 귀표, 귀 뒤쪽에 수 귀표를 귀 중앙부의 혈관을 피해 귀표부착기를 이용하여 부착하면 됩니다.

**□ 이력제에서는 귀표를 양쪽에 부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소의 경우 한쪽만 부착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력제 시행 전에는 귀표를 소의 귀 한쪽에만 부착했었으나 이력제에서는 귀표의 부당사용 방지 및 탈락에 대비하여 소의 양쪽 귀(1두에 2개)에 귀표를 모두 부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농장에서 사육중인 소에 귀표가 하나만 달려 있다면 탈락에 대비하여 재부착용 귀표를 나머지 한쪽 귀에도 부착하여 양쪽이 모두 부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 귀표 부착의 의무대상자는 농가인가요? 아니면 위탁기관인가요?**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소의 농장경영자는 귀표를 부착해야 하는 의무 대상자입니다. 다만, 농장경영자가 고령 등으로 귀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귀표 등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도서지역이나, 소를 방목하여 사육하는 방목 사육지는 90일 이내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귀표 부착 및 관리 |
|---|---|---|---|

**□ 탈락된 귀표를 본드 등으로 붙여서 다시 사용해도 되나요?**

▶ 탈락된 귀표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의 귀표가 탈락되면 지체없이 관할 위탁기관(한우협회, 낙농조합 등)으로 반납하고, 탈락여부를 신고해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 소가 태어날 때부터 귀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가 태어날 때부터 귀가 없거나, 소의 귀에 질환이나 외상이 있어 귀표 부착이 곤란한 경우나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줄을 이용하여 귀표를 부착하면 됩니다.

**□ 싸움소인데 귀표를 부착해야 하나요?**

▶ 싸움소는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귀표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당해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미리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소는 귀표부착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싸움소와 같은 농촌관광 목적이 끝나면 일반 소와 같이 귀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 관광목적으로 사육하는 소도 귀표를 부착해야 하나요?**

▶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귀표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면 접수받은 공공기관 담당자가 확인 후 <귀표 부착예외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위탁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통보받은 위탁기관은 해당 소 정보를 별도로 관리해주시고 부착 예외사유가 소멸됐을 경우는 신고를 받아 귀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귀표 부착 및 관리 |
|---|---|---|---|

**< 재부착용 귀표 >**

**☐ [농가] 부착되어있던 귀표가 탈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귀표가 탈락된 경우 농가에서는 소의 귀표가 탈락되면 지체없이 위탁기관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위탁기관은 지체없이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 탈락된 귀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장 방문 시 탈락귀표는 악용되지 않도록 회수해야 하며, 귀표부착 후 [개체관리]의 [재부착용귀표현황]에 [재부착용귀표등록]버튼을 선택하여 해당화면에 부착한 재부착용 귀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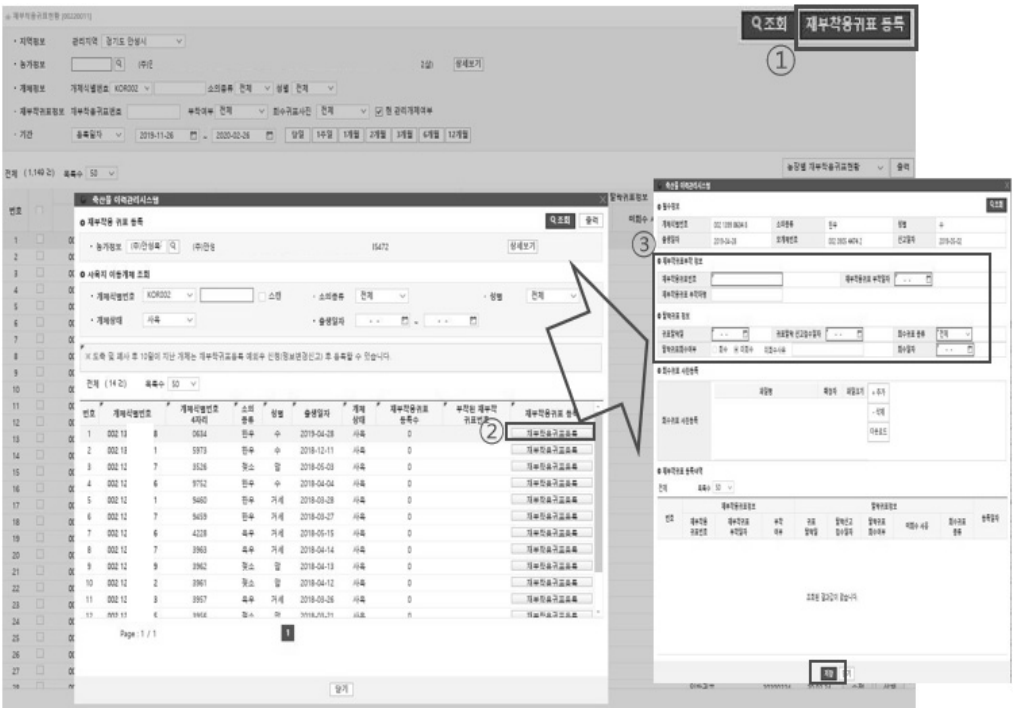


**[위탁기관 메뉴. 개체관리-재부착용귀표현황]**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귀표 부착 및 관리 |
|---|---|---|---|

**< 귀표 자가 부착 >**

**□ 농가에서 직접 귀표를 부착할 수도 있나요?**

▶ 가능합니다. 육우나 초유 떼기 거래 시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위탁기관의 부착에 따른 소의 스트레스, 부상사고 등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가에서 직접 귀표부착을 원할 경우, 귀표자가 부착농가로 지정받아 귀표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농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위탁기관으로 귀표자가 부착농가로 지정 신청을 한 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가부착농가로 지정·등록된 농장에 한하여 귀표를 배부 받아 부착할 수 있습니다.

**□ 귀표 자가부착 농가는 어떻게 지정하나요?**

▶ 통상 한·육우 50두이상의 대규모 농가나 젖소 사육농가 등 규모화 된 농가에 한하여 위탁기관에서 신청을 받아 전산에 접수하면 시·군·구, 시·도에서 승인 등록 시 자가부착농가로 이력시스템에 지정이 완료됩니다.

**[위탁기관 메뉴. 농가관리-귀표자가부착농가]**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귀표 부착 및 관리 |
|---|---|---|---|

□ **자가부착농가의 귀표배부는 어떻게 하나요?**

▶ 위탁기관은 자가부착농가로 지정된 사육농가로부터 소의 출생신고를 받은 후 신고 받은 두수만큼 귀표를 농가에 배부(출고)하여 부착하게 하고, 배부한 귀표를 [귀표관리]의 [자가부착농장귀표관리-귀표농장배부등록]에서 해당 농가로 배부 등록합니다. 이후 농가의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방문하여 귀표부착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전산에 등록해야 합니다. (선배부 후등록)

**※ 귀표신청 및 배부는 [농가관리-귀표자가부착농가]에서 자가부착농가로 등록 후 가능.**

□ **출생신고 전 귀표를 먼저 농장에 배부할 수는 없나요?**

▶ 원칙적으로 귀표는 위탁기관에서만 보관·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귀표 배부는 소의 출생신고를 받은 후 신고 받은 두수만큼 농가에 배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리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가에 최소량의 귀표를 배부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농가배부 및 회수내역을 철저히 관리하여 배부된 귀표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위탁기관이 책임·관리 하여야 합니다.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귀표 부착 및 관리 |
|---|---|---|---|

□ **이력시스템 변경 전 자가부착농가로 등록없이 농장출고로 등록했던 귀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기존에 농장배부한 귀표도 [귀표관리]의 [자가부착농장귀표관리-귀표농장배부조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부착농가로 지정하지 않아도 화면 변경 전 이미 농장 출고된 귀표는 사용이 가능하나, 해당 화면에서 귀표출고 삭제 시 귀표자가부착 농가로 지정되지 않은 농가는 이후 귀표농장 배부등록이 불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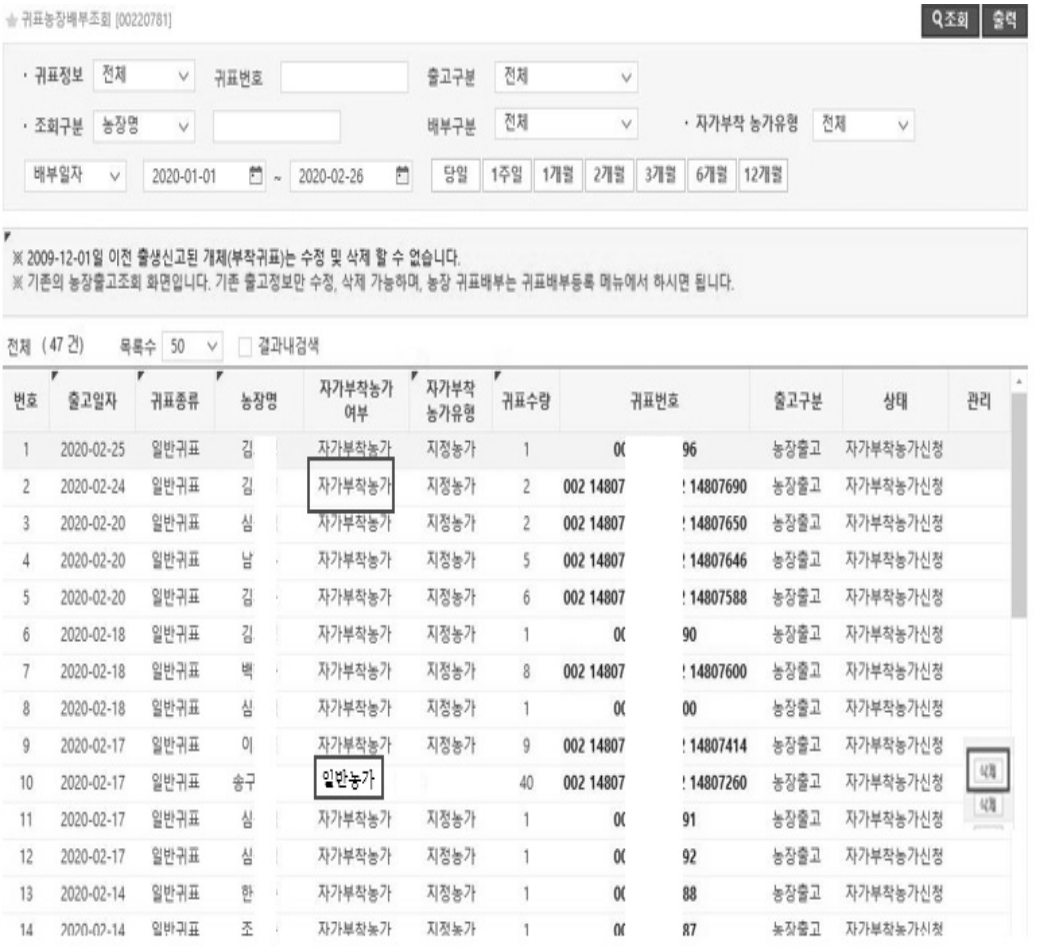


**[위탁기관 메뉴. 귀표관리-자가부착농장귀표관리-귀표농장배부조회]**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귀표 부착 및 관리 |
|---|---|---|---|

☐ **자가부착 농가로 귀표를 배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배부(출고)한 귀표는 [귀표관리]의 [자가부착농장귀표관리-귀표농장배부등록]에서 해당 농가로 배부등록을 합니다. 이후 개체등록은 귀표를 배부등록한 농장으로만 가능하며 개체등록 시 [귀표부착현황]에서 자가부착귀표로 표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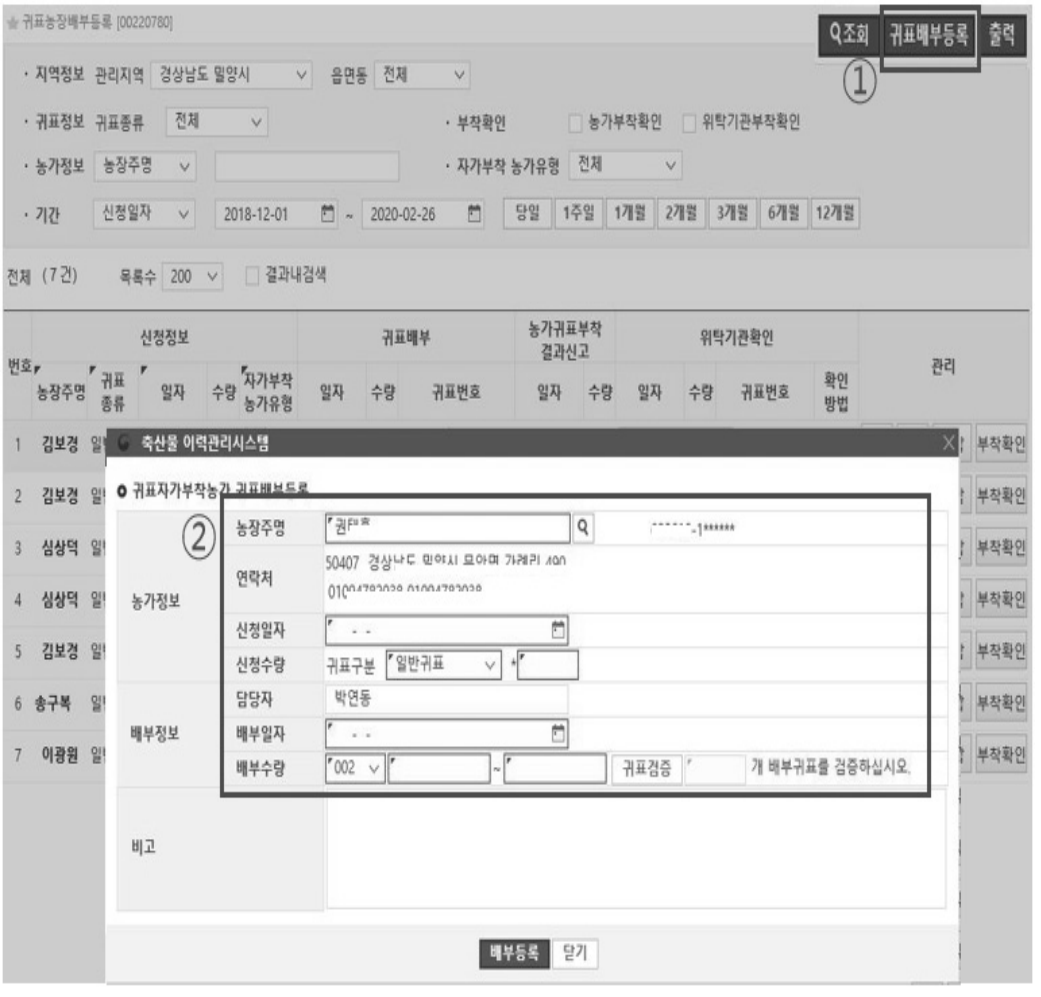


**[위탁기관 메뉴. 귀표관리-자가부착농장귀표관리-귀표농장배부등록]**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귀표 부착 및 관리 |
|---|---|---|---|

□ **농가에서 출생신고가 들어와서 개체등록을 하려는데 다른 농장으로 출고되어 있다고 나오고 등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귀표관리]의 [자가부착농장귀표관리-귀표농장배부등록]에서 귀표배부(출고) 등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개별 등록한 귀표 : 농장으로 배부한 귀표는 위탁기관에서 직접 수정·삭제 가능합니다. 배부 등록한 농장이나 귀표 번호로 조회해서 배부정보를 삭제하면 등록을 원하는 농장으로 바로 개체등록이 가능합니다.

② 묶음으로 등록한 귀표 : 귀표를 묶음으로 배부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귀표 번호대에 하나라도 개체등록된 귀표가 있다면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일부만 취소를 원하는 경우 [반납]에서 해당 귀표번호를 선택하여 반납처리하면 해당 귀표는 위탁기관 소유의 귀표로 변경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탁기관 메뉴. 귀표관리-자가부착농장귀표관리-귀표농장배부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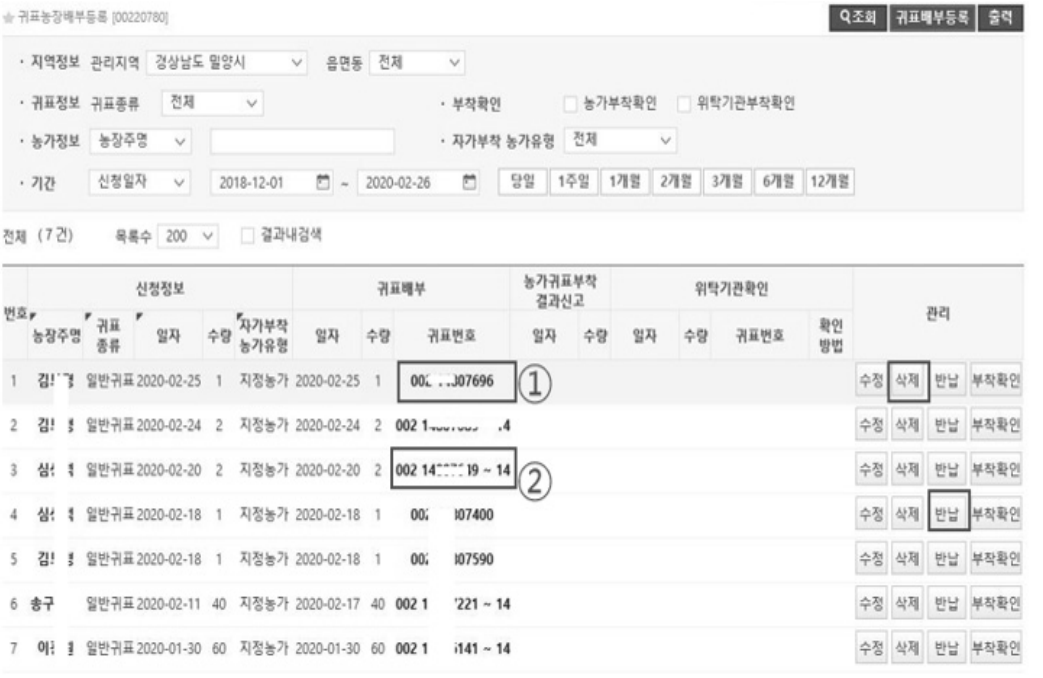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귀표 부착 및 관리 |
|---|---|---|---|

□ **농장출고 등록을 했는데 타 농장으로 잘못 등록했습니다.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농장에 배부(출고)한 귀표번호는 위탁기관에서 직접 수정·삭제 가능합니다.

[귀표관리]의 [자가부착농장귀표관리-귀표농장배부등록]에서 배부 등록한 농장이나 귀표번호로 조회해서 배부정보를 [삭제]하면 되고, 해당 귀표번호는 타 농장으로 배부등록이 가능합니다.

**[위탁기관 메뉴. 귀표관리-자가부착농장귀표관리-귀표농장배부등록]**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귀표 부착 및 관리 |
|---|---|---|---|

□ **농장배부귀표를 다른 농가에 부착해서 농장배부 삭제 후 등록하려고 하는데 삭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 귀표를 농가로 배부한 경우 해당 농장의 개체에만 귀표 부착이 가능합니다.

타 농장의 개체에 귀표를 부착하여 배부를 삭제해야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① 특정 번호대의 귀표를 묶음으로 농장배부 등록했다면, 일부 귀표만 삭제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등록한 묶음 전체를 [삭제]한 후 삭제 귀표를 제외한 나머지 귀표를 재등록해야 합니다. (다음장에 계속)

**[위탁기관 메뉴. 귀표관리-자가부착농장귀표관리-귀표농장배부등록]**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귀표 부착 및 관리 |
|---|---|---|---|

☐ **농장배부귀표를 다른 농가에 부착해서 농장배부 삭제 후 등록하려고 하는데 삭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 (이어서) ② 묶음으로 배부 등록된 귀표번호대에 하나라도 개체 등록된 귀표가 있다면, 해당 번호대의 농장배부 삭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일부만 취소를 원하는 경우 [반납]에서 해당 귀표번호를 선택하여 반납처리하면 해당 귀표는 위탁기관 소유 귀표로 변경되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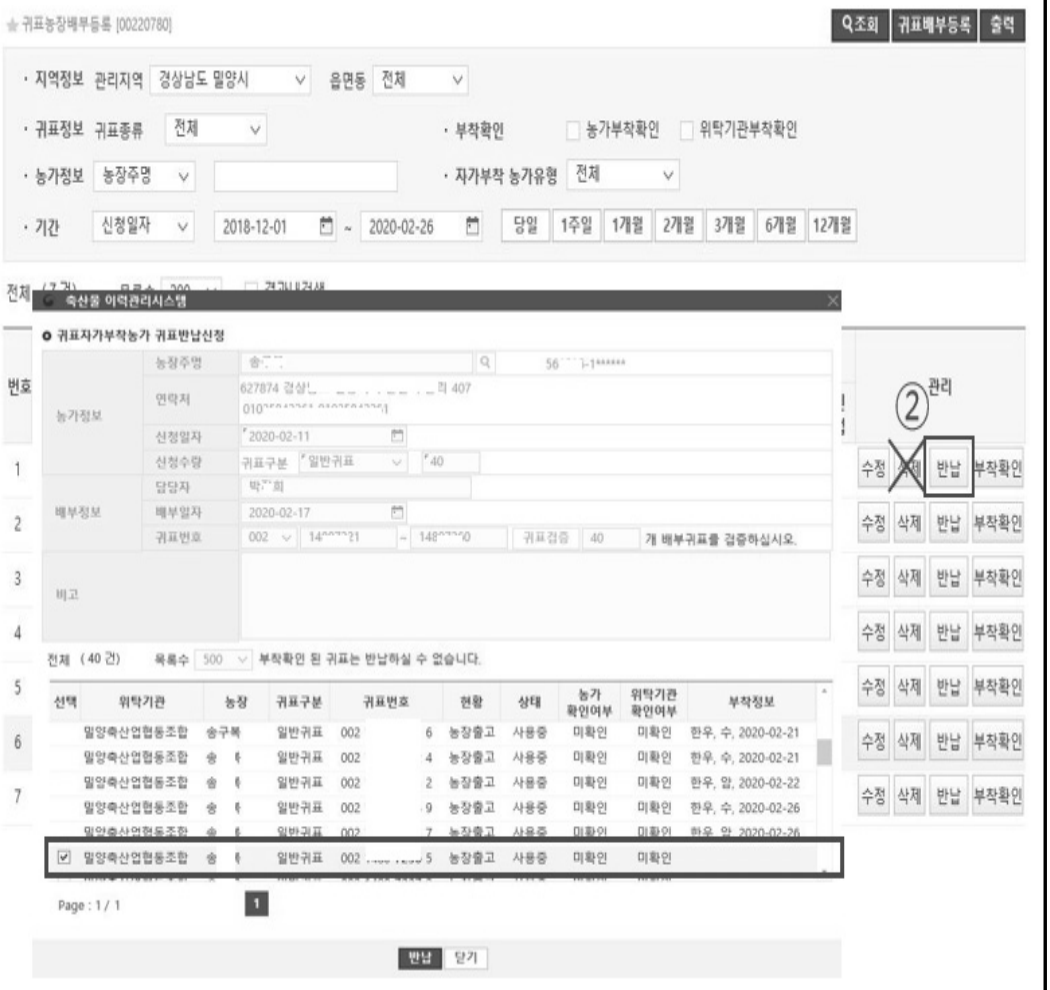


**[위탁기관 메뉴. 귀표관리-자가부착농장귀표관리-귀표농장배부등록]**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귀표 부착 및 관리 |
|---|---|---|---|

**< 귀표 구입 및 부착비>**

☐ **이력제 귀표 부착 시 지급되는 부착비는 얼마입니까?**

▶ 현재 이력제에서 지급하는 귀표 부착비는 1두당 약 9,600원 정도입니다.

☐ **자가부착귀표도 부착비가 동일한가요?**

▶ 자가부착 비용은 '17년 7월 1일부터 위탁기관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귀표는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하나요?**

▶ 귀표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일괄 구입하여 배부하고 있으므로 별도 구매하실 필요가 없으며,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식귀표가 아닌 귀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꼭 농협경제지주에서 배부 받은 농업 엠블럼이 기재된 공식귀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귀표 부착 및 관리 |
|---|---|---|---|

**< 귀표 전배 _ 귀표 >**

**□ 개체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다른 위탁기관으로 배부된 귀표로 확인되네요. 전에는 귀표 전배가 모두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되나요?**

▶ 2010.01.11.부터는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개체등록을 위한 귀표전배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기존 소가 많아 이동된 경우 최초농가 확인이 어려워 전배 시 특별한 제한 없이 승인해드렸으나, 현재는 기존 소 등록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출생 소의 경우 실제 귀표 부착은 귀표를 배부 받은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산등록도 귀표를 부착한 배부기관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정확한 이력관리를 위해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전배 가능하도록 전산 기능을 제한하여 적용하게 되었으니 양해바랍니다.

사유의 예> ① 도축장 이동 중 귀표 탈락, ② 귀표 재고부족, 위탁기관 폐쇄 등

**[관리자 메뉴. 정보변경관리>정보변경신고관리]**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귀표 부착 및 관리 |
|---|---|---|---|

☐ **귀표 재고가 부족해서 타 위탁기관에서 빌려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타 기관에서 귀표를 빌려온 경우, 전산에 전배 등록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① 귀표를 양수받은 기관에서 전배신청 후 해당 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를 이력지원실로 접수하시고 ② 양도한 위탁기관에서도 전배 확인하면 ③ 이력지원실에서 확인 후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최종 승인합니다. 이후 해당 귀표가 양수받은 위탁기관 소유로 변경되어 해당 귀표번호로 개체등록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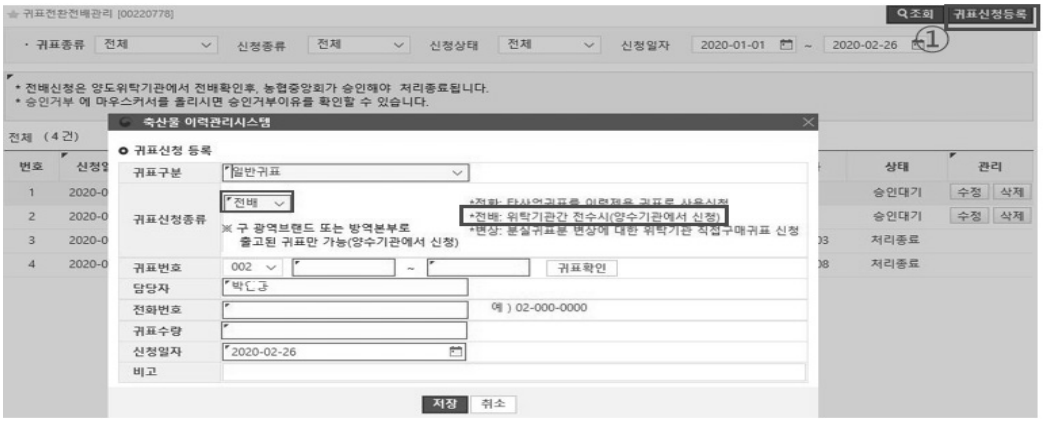


**[위탁기관 메뉴. 귀표관리-귀표전환전배관리]**

**[위탁기관 메뉴. 귀표관리-귀표전배신청승인]**

**[관리자 메뉴. 사육단계-귀표관리-귀표신청 관리]**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귀표 부착 및 관리 |
|---|---|---|---|

**< 귀표 전배 _ 재부착용 귀표 >**

☐ **재부착용 귀표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타 위탁기관으로 배부된 귀표라 등록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개체에 대해 재부착용 귀표를 소유한 위탁기관의 관리이력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재부착용 귀표에 한해서만 전배가 가능합니다. 전배신청 후 이력지원실로 "관리 이력 없는 재부착용 귀표 전배신청"으로 내용 기재하고 <변경신고서>를 넣어주시면 확인 후 승인하고 있습니다. 배부위탁기관에서도 승인처리가 완료되면 소유위탁기관이 변경되어 해당 개체에 재부착용 귀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개체에 대해 재부착용 소유기관의 관리이력이 있는 경우, 이동신고 취소 후 재부착용 귀표 소유위탁기관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 귀에 정상적으로 부착되어있던 귀표가 탈락하였습니다.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관리 위탁기관에서 귀표부착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한 상황이므로 인근지역의 위탁기관에서 재부착용 귀표를 전배 받아 농협경제지주의 승인을 받은 후 개체에 부착하고 전산등록 가능합니다.

**< 귀표 전환 _ 귀표>**

☐ **개체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력제 귀표가 아닌 걸로 확인됩니다. 해당 귀표를 전환신청하면 등록이 가능한가요?**

▶ 농림부 지침에 따라 현재는 원귀표 전환이 불가합니다. 타 사업용 귀표는 기존소에 한하여 2009.6.22. 전까지 등록을 완료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귀표와 개체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이력제에서 배부된 귀표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귀표 부착 및 관리 |
|---|---|---|---|

**< 귀표 전환 _ 재부착용 귀표 >**

**□ 재부착용 귀표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력제용 귀표가 아니라서 등록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재 2009.06.22. 이후 출생 소는 이력제로 배부된 귀표만 개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부착용 귀표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귀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귀표관리]의 [귀표전환전배관리]에서 전환 신청 후 이력지원실로 "재부착용 귀표 전환신청"으로 내용 기재하고 <변경신고서> 접수하면 확인 후 승인됩니다. 처리완료 후 위탁기관에서 해당 개체에 재부착용귀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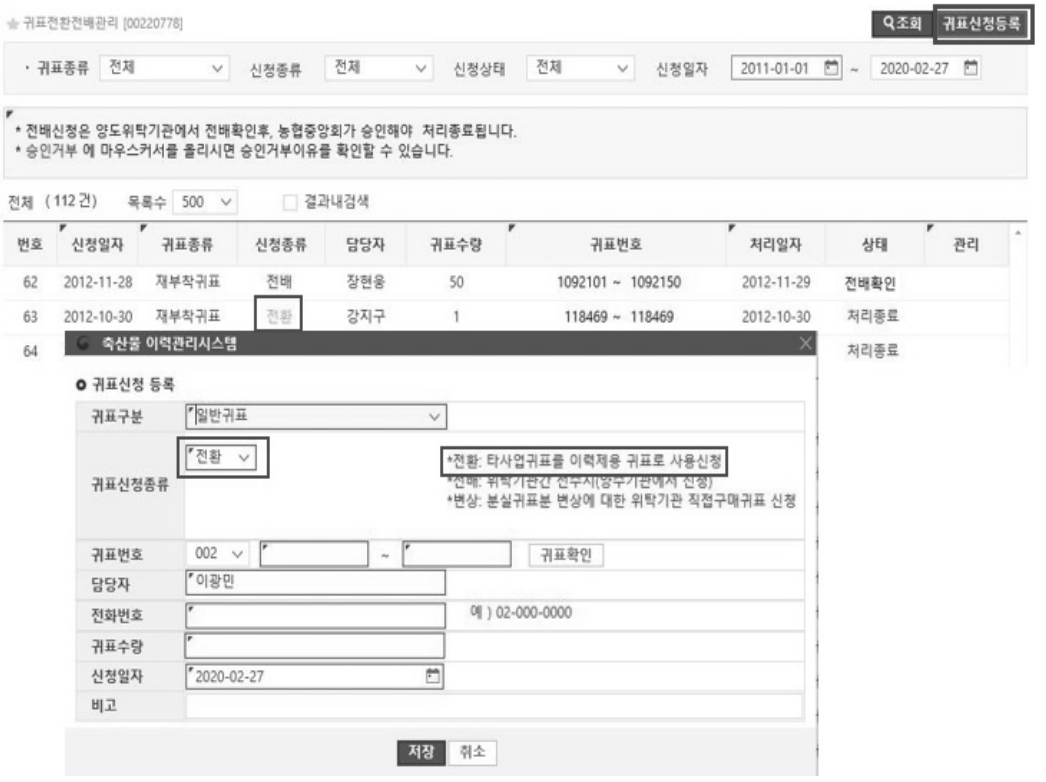


**[위탁기관 메뉴. 귀표관리-귀표전환전배관리]**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귀표 부착 및 관리 |
|---|---|---|---|

□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 후 전산에 등록하지 못한 상태로 개체가 이미 도축이 되었습니다. 도축된지 보름이 지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재부착용 귀표 부착 후 전산등록 이전에 도축된 개체는 도축일자 기준으로 10일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 위탁기관에서 직접 등록, 10일이 지난 개체에 대해서는 이력지원실에서 "재부착용귀표 등록 예외우" 승인 처리 후 위탁기관에서 직접 등록이 가능합니다.

□ **양도위탁기관에서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한 후 미등록하고 양수 위탁기관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귀표는 소유 위탁기관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부착한 양도 위탁기관에서 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재부착용 귀표 부착 후 전산등록 이전에 이동이 등록된 경우, 양수 위탁기관에서는 재부착귀표 전산등록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양수 위탁기관에서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이동내역을 취소하는 <변경신고서>를 이력지원실로 접수하시면, 이동취소 후 양도위탁기관에서 해당 재부착용 귀표를 개체에 등록하고 다시 이동등록을 해야 합니다.

□ **개체번호를 조회해 보니 '올바른 개체식별번호가 아닙니다', '쇠고기 이력제용귀표가 아닙니다'. 라고 나오면서 개체정보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 해당 개체번호는 현재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타 사업용으로 배부된 귀표로 추정됩니다. 현재는 농림부의 지침에 따라 타 사업용 귀표의 전환이 불가하고 2009.06.22. 이후 출생 한 소는 이력제용 귀표인 경우에만 배부기관에서 등록이 가능하므로 해당 귀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력제 귀표로 새로 부착 후, 전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개체등록 및 농가관리 |
|---|---|---|---|

**< 농가·농장 등록 >**

**□ 개체등록을 하려는데 농가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농가관리-농가등록-신규농장등록후 농장정보확인에서 미등록상태 등록후 축산업허가·등록증 첨부되면 농장식별번호 승인처리 됩니다. 이후에 개체등록 가능합니다.

**[위탁기관 메뉴. 농가관리-농가등록]**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개체등록 및 농가관리 |
|---|---|---|---|

□ **이미 등록되어 있는 농가인데 사육지가 추가되어 다른 사육지에 개체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농가가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사육지로 농장을 추가한 후 개체등록하면 됩니다. 이력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농가는 1개만 등록가능하나 농장은 다수등록이 가능합니다.

① [농가관리-농가등록]에서 우측 [신규농장 등록] 버튼을 선택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② 농장주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검색을 누르면 ③ "이미 등록된 농가입니다. 농장만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 확인됩니다. ④ 하단의 닫기 버튼 선택 후 ⑤ 농장 정보란에 추가할 사육지 정보 입력 후 수정하면 해당 주소지로 농장식별번호 추가 신청됩니다. 승인 이후 개체관리에서 농장 조회 후 개체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위탁기관 메뉴. 농가관리-농가등록]**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개체등록 및 농가관리 |
|---|---|---|---|

□ **농가등록릉 잘못했습니다. 수정이나 삭제 가능할까요?**

▶ 일반적으로 농가, 농장삭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당일 등록후 농장정보확인에서 미등록농장에 대해서는 삭제 가능합니다.

**※ 참 고 - 농가 1개, 농장 1개 : 농장 삭제 시 농장과 함께 농가도 삭제됨**

**- 농가 1개, 농장 2개 : 농장 삭제 시 선택한 농장만 삭제됨**

□ **같은 사육지에 이미 남편 명의로 농장이 있으나 배우자 명의로 농장을 하나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같은 사육지에 추가가 가능합니까?**

▶ 농장식별번호는 땅(지번)을 중심으로 1개의 번호만 부여 가능하나, 동일 지번에 다수의 경영자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농장식별번호 부여 가능합니다.

[농가관리]의 [농가등록]에서 오른쪽에 있는 [신규농장등록] 버튼을 선택한 후 해당 화면에서 농장 추가를 원하는 분의 정보를 일반적인 농가등록 방법과 동일하게 등록하면 됩니다.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개체등록 및 농가관리 |
|---|---|---|---|

**< 농가 관리 >**

□ **한우와 젖소를 같이 사육하는 농가입니다. 젖소를 관리하는 위탁기관에서는 농가가 조회되나 한우를 관리하는 위탁기관에서는 개체현황 조회 시 농가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 한 농가에서 젖소와 한우를 같이 키우는 경우에 한우와 젖소가 각각 다른 위탁기관에서 관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체현황 조회에서 농장이 조회가 안 되는 경우 각 위탁기관에서 관리농가로 지정이 필요합니다. [농가관리-관리농장지정관리] 메뉴에서 해당 농가가 관리농가로 지정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리농가로 지정된 농가만 개체현황에서 농가 검색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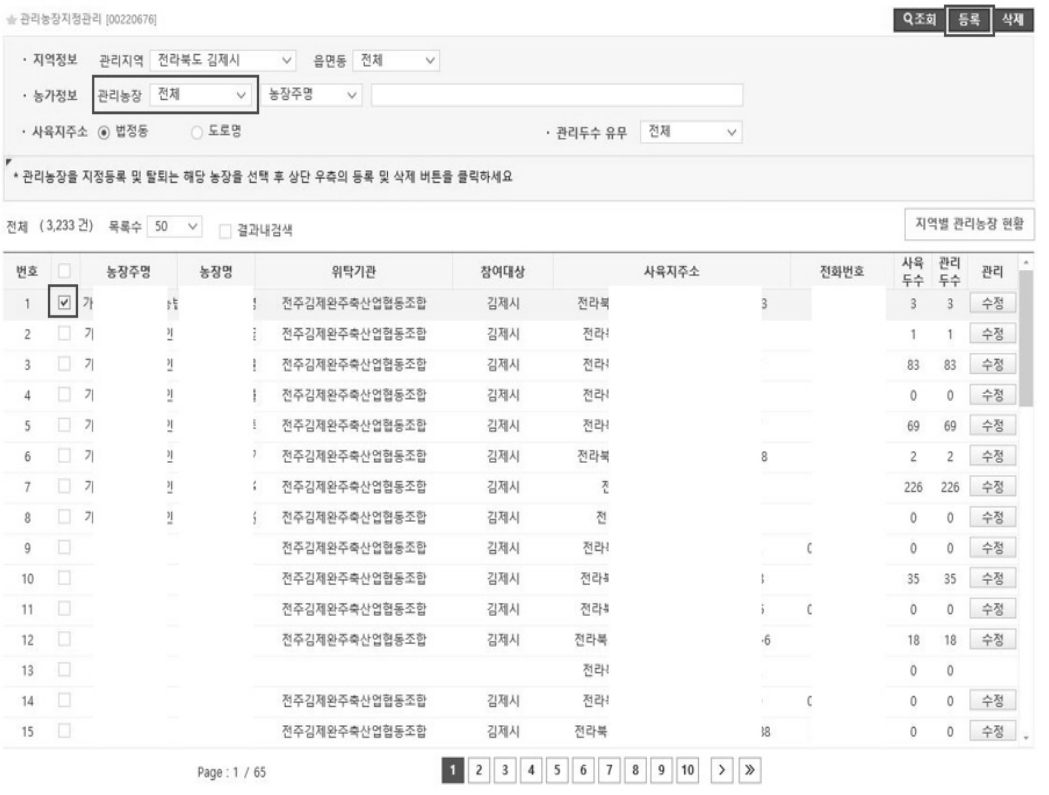


**[위탁기관 메뉴. 농가관리-관리농장지정관리]**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개체등록 및 농가관리 |
|---|---|---|---|

□ **지금 관리 중인 지역의 농장주 연락처, 주소 등의 농장정보와 사육중인 소의 전체적인 현황을 한 번에 보려고 합니다.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있나요?**

▶ [농가관리-농가등록] 메뉴 상에 조회 버튼 하단에 지역별 전체 농가 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농가별 주소 및 전화번호와 사육중인 개체 수 등의 전체적인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소의 구체적인 귀표번호는 표기되지 않으나 전체적인 두수 등은 확인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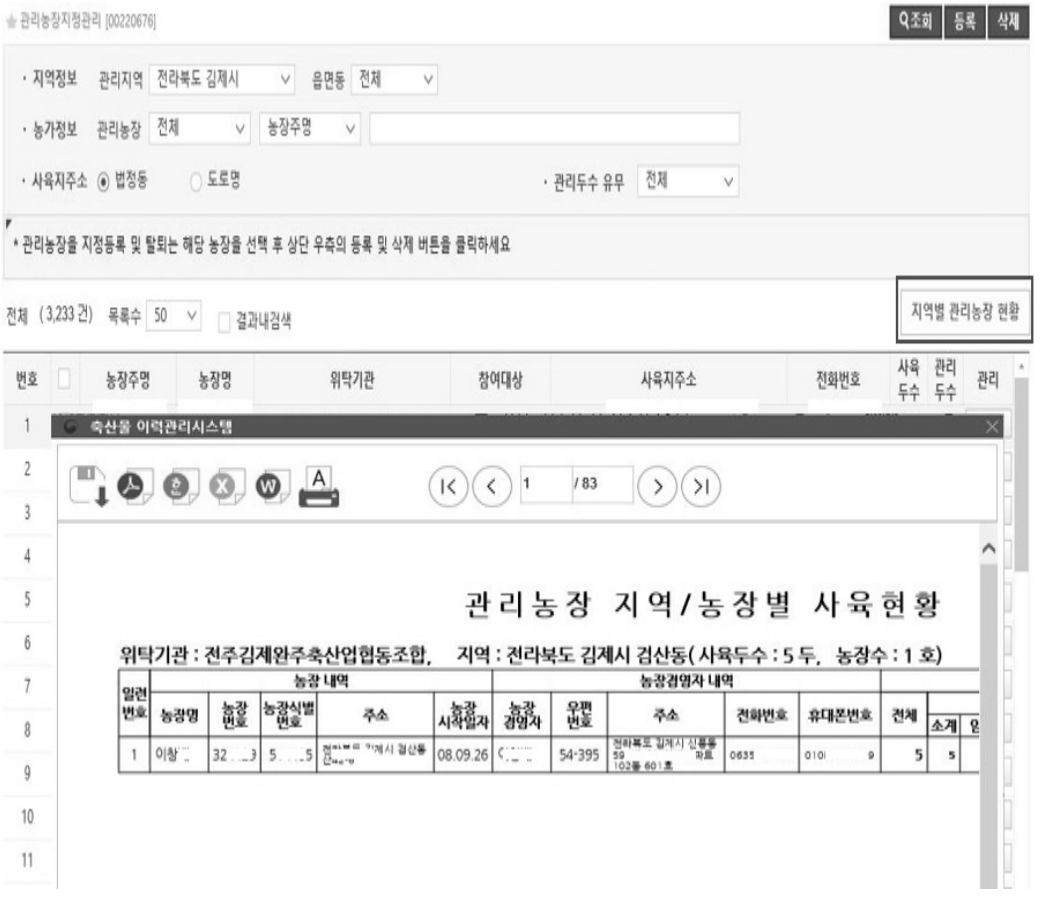


**[위탁기관 메뉴. 농가관리-농가등록]**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개체등록 및 농가관리 |
|---|---|---|---|

☐ **송아지의 출생신고 시 모개체번호를 모르고 이동관계에 대한 신고지연이 잦은 농가에 대하여 위탁기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해당 농가만을 등록할 수 있는 전산상의 메뉴가 있습니까?**

▶ [농가관리-중점관리 농가] 메뉴에서 각종 신고지연누락이나 모개체번호 관리 미비 등으로 중점 관리될 농가를 등록 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중점 농가를 관리할 전담 직원 등록 및 해당 농가에 연락한 일자와 특이사항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관 메뉴. 농가관리-중점관리농가]**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개체등록 및 농가관리 |
|---|---|---|---|

**< 개체 관리 >**

**□ 해당 농가에서 현재 사육하는 개체만이 아닌 이전에 사육했던 개체에 대한 이력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전산 상으로 내역이 확인 가능한 메뉴가 있나요?**

▶ [개체관리-개체현황] 화면에서 농가 조회 후 출력버튼 앞의 선택 란을 개체이력정보로 놓고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농가에서 사육되었던 모든 개체의 이력을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육중인 개체 외에 도축/폐사/이동된 개체의 이력까지 확인 가능하오니 이 메뉴를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탁기관 메뉴. 개체관리-개체현황]**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개체등록 및 농가관리 |
|---|---|---|---|

**< 개체 등록 >**

**☐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전산에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 [개체관리]의 [개체현황] 메뉴에서 농가정보 입력 후 개체등록하시면 됩니다.

[위탁기관 메뉴. 농가관리-농가등록]

**☐ 농가에서 소를 어디서 사왔는지 모른다는데 그냥 출생등록 하면 안되나요?**

▶ 국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는 출생 및 이동 시 위탁기관에 신고하여 이력관리 대장(이력제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등록 없이 이동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므로, 양수농가에서 개체 출생등록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이력제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므로, 농가로 확인하여 최초농가에서 출생등록 후 양수된 것으로 정확한 이력정보가 등록되도록 해야 합니다.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개체등록 및 농가관리 |
|---|---|---|---|

**< 개체 등록 _ 모개체 입력 >**

☐ **농가에서 송아지가 태어났다고 신고를 해서 등록하려고 하니 모개체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나오고 등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10.01.11.부터 농림부 지침에 따라 2009.01.01. 이후 출생한 소는 모개체의 입력 없이는 개체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생신고 접수 시 모개체 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접수 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 **2009.1.1이전 출생소는 모개체없이도 등록 가능한가요?**

▶ 모개체 번호 필수 등록은 2009.01.01 이후 출생한 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2009.01.01. 이전에 태어난 소는 모개체 번호 없이도 개체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모개체예외우 서류 농협중앙회로 접수 처리후 가능

☐ **농가에서 다른 지방에서 소를 사와서 모개체를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를 사온 경우이므로 실제로 소가 출생한 농가를 관할하는 위탁기관에서 개체를 등록한 후에 양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력제에서는 모든 출생 소에 대해 위탁기관에서 신고를 받아 귀표부착 후 개체를 등록하고, 이동해야 하므로 법시행 이후 출생한 소에 대하여 등록 없이 이동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개체등록 및 농가관리 |
|---|---|---|---|

□ **개체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모개체번호를 입력하면 "모개체 8개월 미만으로 등록 불가하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개체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의 임신기간은 약 288일±18일입니다. 모개체의 분만내역 입력 시, 조기 출산을 고려해 기존 분만내역과 8개월 이상 기간차이가 있어야만 등록 가능합니다.

현재 등록하려는 송아지의 모개체번호와 출생일자가 정확하다면 기등록된 개체의 모개체번호나 출생일자가 잘못되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개체관리-개체현황] 메뉴 우측 개체등록에 들어가 모개체번호 입력 후 분만정보검색을 누르면 해당 모개체에 등록된 송아지의 개체번호와 출생일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8개월 이내에 먼저 등록된 송아지의 모개체번호나 출생일자가 잘못 입력되어 있다면 이력지원실로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여 해당 모개체를 수정해주시고, 처리가 완료된 후 송아지를 직접 등록하시면 됩니다.

□ **개체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모개체번호를 입력하면 "모개체 8개월 미만으로 등록 불가하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등록이 안됩니다. 확인해보니 분만이력이 있는데 기간차이가 8개월에서 며칠 부족합니다.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해당 건은 특이 건이므로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쳐 이력지원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의로 8개월 간격 이상의 일자로 출생등록 후 이력지원실로 해당 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출생 등 신고서>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개체의 출생일 정보를 수정해드립니다. 확인 과정에서 별도의 첨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분만간격으로 정해진 8개월도 공태 기간 등을 고려하면 6~7개월 만에 송아지를 분만한 것이 되므로, 8개월에서 5일 이내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요청이 가능합니다. 5일 이상 기간이 차이나는 경우, 새로 출생한 소의 출생일자와 모개체번호가 확실하다면 기존에 등록되어있는 송아지의 출생일자나 모개체가 잘못 등록되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개체등록 및 농가관리 |
|---|---|---|---|

□ **쌍둥이인데 같은 날이 아닌 3일후에 개체가 또 태어났습니다. 등록하려고 하니 모개체번호를 입력하면 "모개체 8개월 미만으로 등록 불가하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등록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출생일자가 동일한 쌍둥이는 위탁기관에서 직접 등록이 가능하나 출생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쌍둥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탁기관에서 직접 등록은 불가합니다.

해당 건은 특이 건이므로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쳐 이력지원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일한 일자로 출생등록 후 이력지원실로 해당 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출생 등 신고서>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개체의 출생일 정보를 수정해드립니다. 확인 과정에서 별도의 첨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세쌍둥이(A, B, C)가 태어났습니다. 개체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력시스템 상에서는 동일한 일자에 쌍태까지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요청 시 이력지원실에서는 기존 A, B의 출생일자를 8개월 전으로 수정해 드리며, 담당자께서는 C에 대해 출생등록을 하고 그 뒤 다시 A, B에 대해서 올바른 출생일자로 재변경해드리고 있습니다.

□ **한우 송아지인데 인공수정으로 태어나서 엄마가 젖소(육우)인 경우, 송아지를 한우로 등록하려면 "모개체가 한우인 경우에만 등록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등록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한우 등록 기준에 따라 부모가 젖소(육우)라면 송아지도 젖소(육우)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개체가 젖소(육우)인 경우 송아지를 한우로 바로 개체등록할 수 없습니다.

우선 송아지를 젖소(육우)로 등록 후, 이력지원실로 <변경신고서>와 한우증빙서류인 <한우기초(혈통)등록증명서>, <한우혈통정보확인서>, <수정란이식증명서> 중 1부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한우로 변경해드립니다.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폐사축 신고 |
|---|---|---|---|

**< 폐사축 신고 >**

**□ 폐사축 전산신고 방법**

**▶ (법정전염병 폐사) 시·도 공무원 현장확인과 동시에 위탁기관은 지자체에서 확인한 자료를 요청하여 등록**

**▶ (일반 폐사) 증빙서류 또는 이미지(귀표포함 폐사사진) 제출(의무)**

- 농장경영자는 증빙서류*(폐사진단서, 검안서, 랜더링 처리확인서, 폐사개체사진(귀표포함) 중 1개 이상)를 위탁기관에 제출하고, 위탁기관 담당자는 확인 후 시스템 등록

*** 증빙서류는 폐사개체의 개체식별번호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함**

**※ 관련:** 축산물이력법 제5조에 따라 농장경영자는 가축(소)이 폐사한 날부터 5일 이내 위탁기관에 신고하고, **위탁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6조 4항에 따라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 후**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시행규칙 제6조 별표3)

1) 위탁기관의 장은 소가 폐사한 경우에는 제2호가목 및 마목의 신고내용,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 및 해당 소가 등록된 농장식별번호와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위탁기관의 장은 제2호가목 및 마목의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농장경영자 등에게 폐사에 필요한 신고내용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폐사에 관한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3) 소가 법정 전염병으로 폐사한 경우에는 농장경영자 등은 폐사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위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위탁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법정전염병에 따른 폐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거자료(전자적 서류 및 자료를 포함한다)를 요청하여 기록·보관해야 한다.
4) 일반 폐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 등이 소 폐사 신고 시에 아래의 서류 또는 증거자료(전자적 서류 및 자료를 포함한다.) 중 1가지 이상을 제출해야 하며, 위탁기관의 장은 제6조4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일반 폐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또는 증거자료(전자적 서류 및 자료를 포함한다.)를 농장경영자 등에게 요청하여 기록·보관해야 한다.

   가) 귀표 포함 폐사 사진, 나) 폐사진단서, 다) 검안서, 라) 렌더링 처리(rendering 처리, 고온·고압 멸균처리) 처리 확인서, 마) 소각(매몰) 증명서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이동관리 |
|---|---|---|---|

**< 양도 신고 >**

**□ 소를 팔아서 현재 농장에는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 소를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탁기관으로 양도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속된 위탁기관(가까운 축협 등)으로 전화 혹은 직접 방문하여 <출생 등 신고서>의 양도·양수신고 항목을 작성하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또한 이력제 신고 모바일앱을 통한 양도신고도 가능합니다.

**※ 2011.6.22.부터 이동신고기한을 30일 → 5일로 단축 시행**

**□ 농가에서 양도신고가 접수되어 처리하려고 하니 이미 양수신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 양도신고 전 양수신고가 미리 되어있는 경우에는 별도 양도신고 없이 [이동관리-양도(요청)승인]에서 해당 개체번호 선택 후 우측 관리 탭에 승인을 누르면, 양도신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체가 양수농장으로 이동이 완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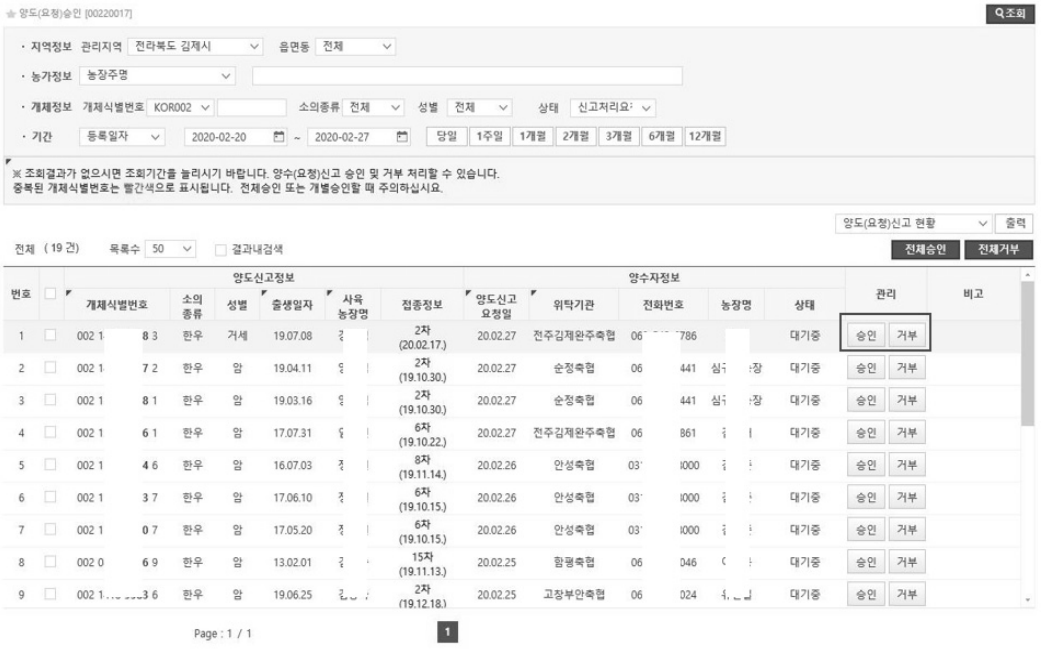


**[위탁기관 메뉴. 이동관리-양도(요청)승인]**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이동관리 |
|---|---|---|---|

☐ **농가에서 소를 팔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전산에 어떻게 등록하나요?**

▶ [이동관리-양도신고]에서 우측 양도신고등록 버튼을 눌러 생성되는 팝업에서 상단에 양도농가를 조회하면 보유개체 리스트가 확인됩니다. 실제 이동된 개체를 체크하여 하단에 양수자 정보를 입력 후 저장하면 양도신고가 등록됩니다.

☐ **양도신고를 잘못해서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양도신고 후 이동이 완료되기 전이라면(양수신고 대기 중 상태), 위탁기관에서 직접 양도신고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동관리-양도신고]에서 해당 개체번호 선택 후 우측 관리 탭에 삭제를 누르면 신고내역이 삭제되어 양도 신고했던 농장으로 개체가 원상 복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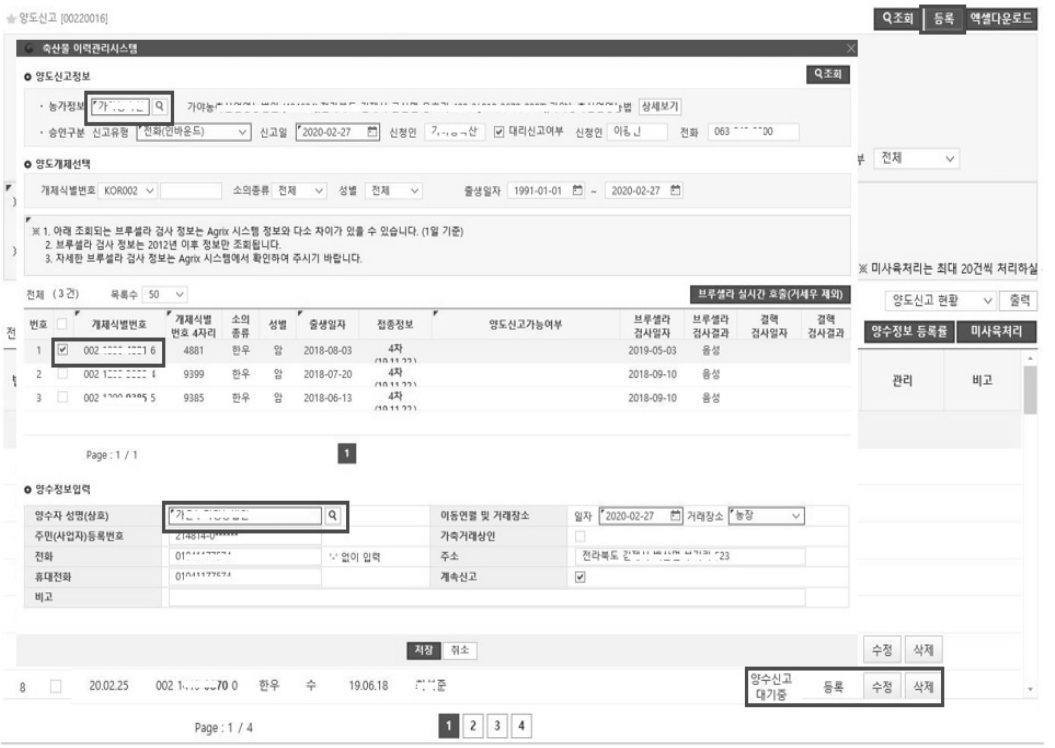


**[위탁기관 메뉴. 이동관리-양도신고]**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이동관리 |
|---|---|---|---|

**< 양수 신고 >**

**☐ 소를 새로 사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 소를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탁기관으로 양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리 받는 위탁기관(가까운 축협 등)으로 전화 혹은 직접 방문하여 <출생 등 신고서>의 양도·양수신고 항목을 작성하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또한 이력제 신고 모바일앱을 통한 양수신고도 가능합니다.

**※ 2011.6.22.부터 이동신고 기한을 30일 → 5일로 단축 시행**

**☐ 농가에서 소를 사왔다고 신고했습니다. 전산에 어떻게 등록하나요?**

▶ [이동관리-양수신고]에서 우측 양수신고등록 버튼을 눌러 생성되는 팝업에서 상단에 양수농가를 검색해 입력합니다. 아래 양도개체조회에서 농가정보 검색을 누르고, 관할지역을 양도농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변경한 후 농장을 검색해 선택하고 우측 조회버튼을 누르면 농장의 보유개체가 확인됩니다. 실제 이동된 개체를 체크하여 하단에 양도자 정보를 입력 후 저장하면 양수신고가 등록됩니다.

**[위탁기관 메뉴. 이동관리-양수신고]**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이동관리 |
|---|---|---|---|

☐ **농가에서 양수신고 들어와서 처리했는데 소가 이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 소의 이동은 양도·양수가 모두 신고 되어야 완료됩니다.(양수신고만으로는 소가 이동되지 않습니다.) 전산에서 양수신고를 하면 현재 전산 상으로 개체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양도(요청)승인 항목에 개체가 확인되고, 여기서 승인하면 양도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되어 개체가 양수 농가로 이동됩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관으로 양도승인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신고를 잘못해서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양수신고 후 이동이 완료되기 전이라면(양도(요청)승인 처리 중 상태), 위탁기관에서 직접 양수신고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동관리-양수신고]에서 해당 개체번호 선택 후 우측 관리 탭에 삭제를 누르면 신고내역이 취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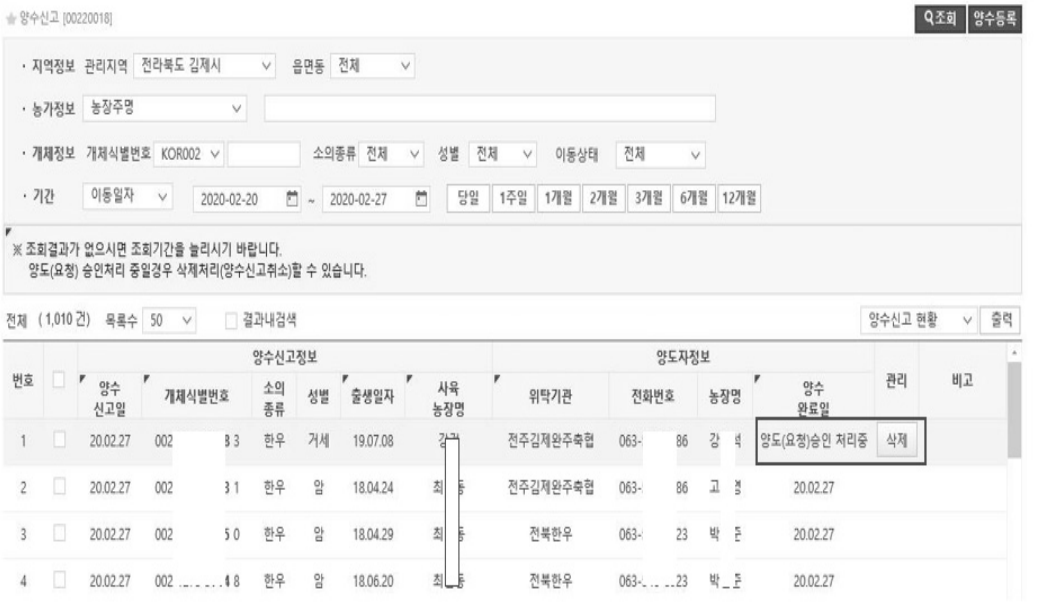


**[위탁기관 메뉴. 이동관리-양수신고]**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이동관리 |
|---|---|---|---|

□ **농장의 전 두수를 이동해야 하므로 처리두수도 너무 많은데 이력지원실에서 처리 가능한가요?**

▶ 아래의 경우라면 변경신고서와 첨부 서류 접수 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① 농장경영자 승계(변경) 신고 (동일한 사육지에서 농장경영자 변경)**

- **사망에 따른 상속 :**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농장경영자'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법률에 따른 소에 대한 신고의 의무를 승계함.
- **증여 :**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농장경영자'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법률에 따른 소에 대한 신고의 의무를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편이 이를 승낙함.
- **농장경영자 변경 :** '농장경영자'가 현재 사육시설의 소재지에 있는 소에 대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를 상대편에게 부여함.
- **기타 :** '농장경영자'에 대한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예> 법인의 대표자 개인 명의의 농장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등. 단, 사업자 명의의 농장을 개인 명의의 농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농장경영자변경처리 불가함)

**② <u>사육지 이동신고 (동일한 농장경영자인 경우)</u>**

- '농장경영자'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의무가 부여된 소를 현재 사육시설의 소재지에서 다른 주소의 사육지로 이동하는 경우. 단, '농장경영자'는 동일함.
  축사 신축, 개체 종류별 분리사육, 농장 이사 등의 이동사유 확인이 필요함.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이동관리 |
|---|---|---|---|

**< 양수 신고 _ 소의 농장경영자등 변경(농장경영자 변경) >**

**□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들한테 승계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력지원실로 가족관계 서류 보내면 승계로 처리가능한가요?**
**(아버지 농장(양도) - A, 아들 농장(양수) - B)**

▶ 변경신고서와 첨부 서류 접수 시 처리 가능하나, 먼저 위탁기관에서 확인을 위한 몇 가지 업무처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농가관리-농가등록-신규농장등록]에서 양수농장(B)을 등록하고, [정보변경신고-농장경영자등 변경신고]의 [농장경영자등 변경신고등록]에서 상단에 양도농장(A)을 조회한 다음, 승계로 처리할 개체를 선택하여 저장하면 변경신고서가 접수됩니다. **(① '현재 농장경영자정보'에서 A농장을 선택 ② '농장경영자 변경 대상개체 조회'에서 이동할 개체를 전체 또는 부분 선택 ③ '변경 후 농장경영자정보'에서 B농장 선택 한 후 저장하면 변경신고서 자동 생성됨)**

여기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소의 농장경영자등 변경증명서>와 <가족관계 확인증명서>를 첨부하시면, 이력지원실에서 확인 후 개체를 이동처리합니다.

**[위탁기관 메뉴. 정보변경신고-농장경영자등 변경신고]**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이동관리 |
|---|---|---|---|

**< 이동 내역 관리 >**

□ **실제로 이동되지 않은 개체가 타 농가로 이동신고가 완료된 경우 이 개체를 원 상태로 돌리려면 다시 양도·양수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이동은 실제 발생한 경우에만 등록되어야 하므로, 이동을 오등록 했다고 하여 본래 소유농가로 다시 이동을 등록하는 것은 정상적인 처리방법이 아닙니다. 쇠고기 이력제의 목적에는 소 및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관리하여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위탁기관에서는 이동내역 또한 철저히 확인해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양수위탁기관에서 양수인 기준의 <변경신고서>와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를 이력지원실로 접수하시면 확인 후 이동내역을 취소해드립니다.

① **양수신고-양도승인** : 양수신고를 먼저 등록하여 양도승인까지 완료된 상태라면, 양수-양도승인 내역이 모두 취소됩니다.

② **양도신고-양수신고 :** 양도신고 후 양수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양수신고내역만 취소되어 개체가 양도중인 상태로 전환됩니다. 개체가 양도중인 상태인 경우, 양도위탁기관에서 양도신고내역을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양도/양수신고 후 이동이 완료되기 전이라면(양수신고 대기 중/양도(요청)승인 처리중 상태), 위탁기관에서 직접 양도/양수신고 취소가 가능합니다.**

□ **양수신고를 하였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다른 농가로 이동 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다른 농가(ex. 동명이인 등)로 개체를 잘못 이동 처리한 경우, 현재 전산 상 이동된 농장으로 실제 이동이 안 된 것이므로 이동내역을 취소하고 실제 양수농장으로 다시 이동내역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력지원실로 취소하시려는 사유를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를 접수하시면 확인 후 이동내역을 취소해드리니, 이후 실제 양수농가로 재이동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이동관리 |
|---|---|---|---|

□ **○○농가에서 사육중인 개체인데 다른 위탁기관의 개체로 확인됩니다. 여러 번 이동신고를 해서 개체를 주고받은 걸로 되어있는데 농가에서는 본인 농장에서 보유 중인 소이고 한 번도 이동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재 전산상의 관리 위탁기관으로 확인하여 해당 농가의 개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취소할 양수인 및 이동일자 기준으로 <변경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이력지원실로 이동내역 취소를 요청하시면 변경신고처리 완료 후 최초등록 농가의 소유개체로 확인됩니다. 추후 이동 처리 시 실제 이동내역을 꼭 확인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 후 도축된 개체인데 원농장경영자가 본인이 계속 소유하여 키우던 개체라며 이동내역 취소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도축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축검사신청이 있을 때에는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및 개체식별대장의 등록 등의 여부, 농장경영자 정보의 일치 등을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도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유통되어 판매단계인 쇠고기라면 이동내역을 포함한 모든 이력제 상의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 **A 위탁기관에 있던 개체가 B 위탁기관으로 이동하던 중 귀표가 탈락됐습니다. 이런 경우 양수나 양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양수나 양도가 발생되면 <별지 제3호서식 - 소의 (출생・수입・수출, 양도・양수・이동, 폐사) 신고서>에 의거 지역의 위탁기관으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수·양도신고를 해야 하며, 귀표가 부착되지 않으면 양도·양수가 불가합니다. 이동 중 귀표가 탈락한 경우, 양도한 위탁기관에서 재부착귀표를 배부하여 부착 및 등록한 후 이동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이동관리 |
|---|---|---|---|

**< 폐사 신고 >**

**□ 소가 폐사하였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사육중인 소가 폐사한 경우에는 관할 위탁기관(축협 등)으로 소가 폐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폐사일자와 사유, 질병의 종류 등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 2010. 12. 22.부터 폐사 신고기한 30일 → 5일로 단축시행**

**□ 농가에서 폐사신고 시 개체식별번호를 오신고 했습니다. 폐사 취소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폐사 신고 후 30일 이내에는 위탁기관에서 직접 폐사신고 취소 가능하므로 [이동관리]의 [폐사신고]에서 해당개체번호 선택 후 삭제하면 해당 개체가 사육 상태로 변경됩니다. 폐사신고 후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력지원실로 <변경신고서>와 사육 전환할 개체의 생존 및 귀표번호가 확인되는 <소 사진>과 <위탁기관장 사실확인증명서>를 첨부하면 폐사신고 취소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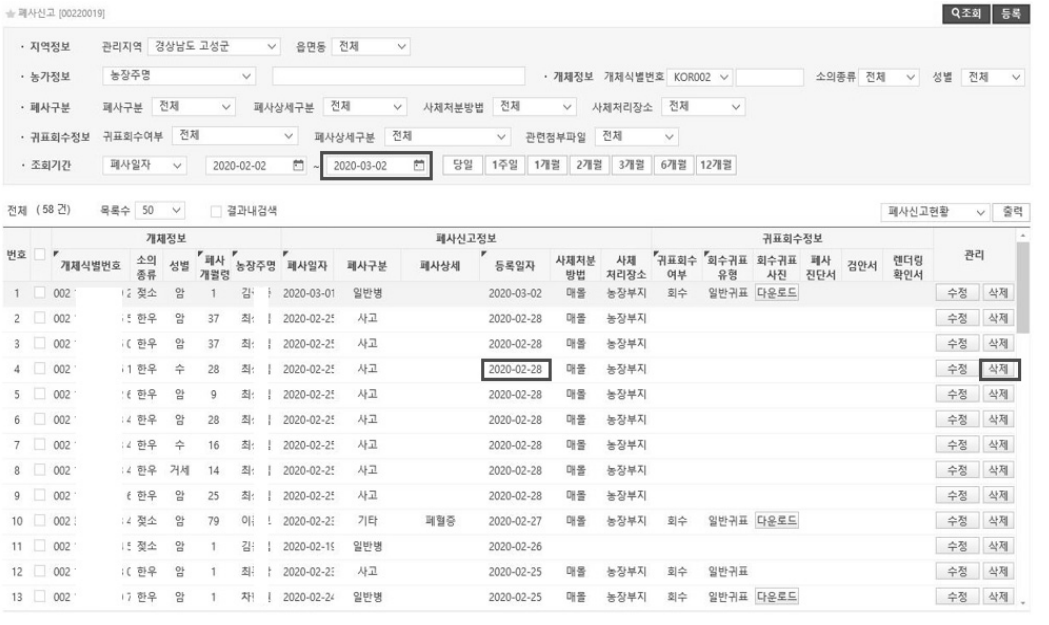


**[위탁기관 메뉴. 이동관리-폐사신고]**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이동관리 |
|---|---|---|---|

☐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여 죽은 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폐사신고 시 폐사구분을 구제역 법정전염병 살처분으로 등록해야합니다. [이동관리]의 [폐사신고]의 [등록]에서 해당 농장 조회하여 개체선택 후 폐사일자, 폐사구분(법정전염병살처분-구제역) 등의 폐사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저장하면 됩니다. 구제역의 경우 해당 농장의 모든 개체가 살처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하게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살처분한 개체의 폐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체가 살처분 대상이 아님을 명시한 시도공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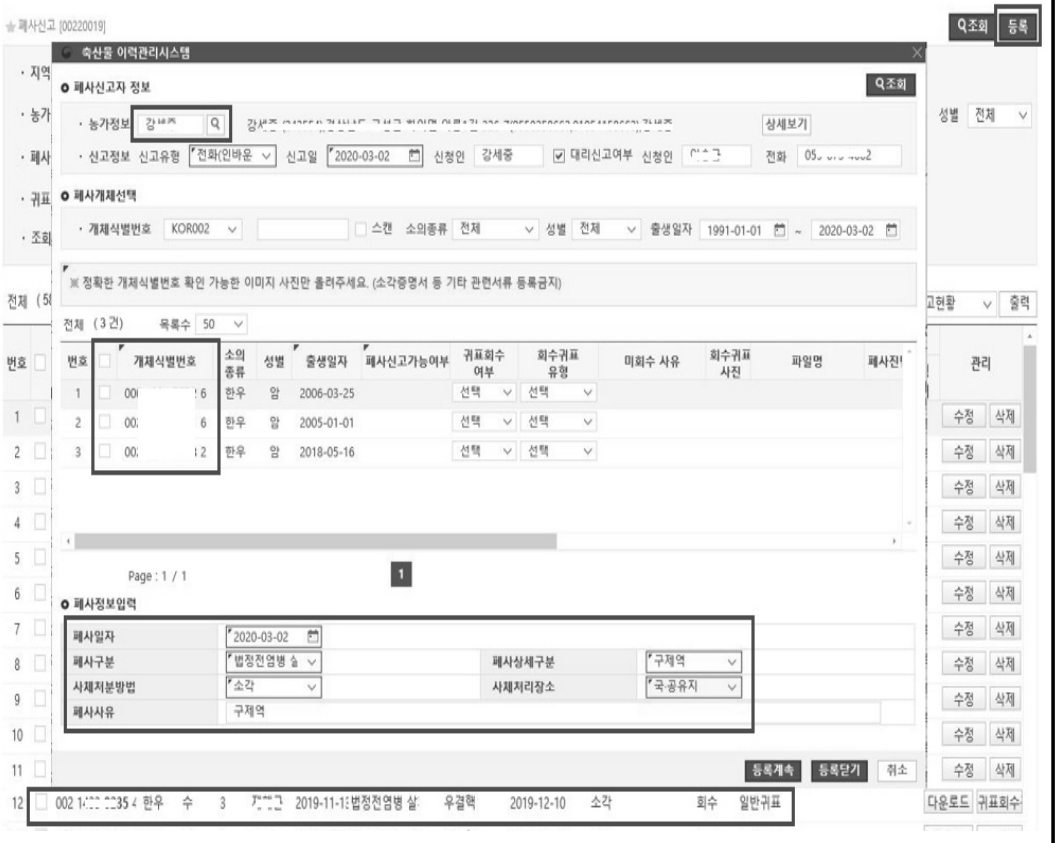


**[위탁기관 메뉴. 이동관리-폐사신고]**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이동관리 |
|---|---|---|---|

**< 출하 신고 >**

☐ **[농가] 소를 도축하려고 출하했습니다. 출하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농가에서 도축을 위해 소를 출하한 경우에는 별도의 출하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력제에서는 도축장으로 제출한 도축신고서로 출하신고가 갈음되므로 별도로 위탁기관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농가에서 소를 도축하려고 출하했다고 합니다. 출하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농가에서 도축을 위해 소를 출하한 경우에는 별도의 출하신고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력제에서는 도축장으로 제출한 도축신고서로 출하신고가 갈음되고, 도축장에서 도축 후 도축정보를 입력하면 소의 상태가 사육에서 도축으로 변경되므로 위탁기관에서 별도로 출하신고를 받아서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이동관리 |
|---|---|---|---|

**< 이동 신고 >**

☐ **[가축거래상인] 소를 양도·양수하였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가축거래상인이란 축산법 제34조 2항의 의한 가축거래상인을 말하며, 소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가축거래상인을 등록한 지자체 관할 위탁기관에 신고를 권고하며, 전국 어느 위탁기관으로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가축거래상인〉** 축산법 제34조 제2항
**(정의)** 소·돼지·닭·오리·염소를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

(1) **가축거래상인이 단순히 운반만 하는 경우** : 가축거래상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됨. 다만, 양도자와 양수자는 실제 소를 구입한 거래당사자간 농장경영자로서 신고

(2) **가축거래상인으로서 소를 구입하는 경우** : 양도자는 양수자 정보를 가축거래상인으로 신고, 가축거래상인은 양수신고(실제 소가 계류되는 곳)

(3) **가축거래상인이 농장경영자로서 소를 구입하는 경우** :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농장경영자로서 양도 및 양수신고

☐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의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 가축거래상인은 소의 양도 시 양수자 정보 등록 시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명, 연락처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가축거래상인 이동신고 메뉴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이동관리 |
|---|---|---|---|

< 이동 신고 >

☐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의 신고 시 양도자와 양수자의 체결이 이루어지나요?**

▶ 가축거래상인의 신고는 농장경영자처럼 양수·양도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음, 다만 위탁기관 담당자가 개체조회를 할 경우 가축거래상인의 신고에 의한 이동신고 내역이 별도로 표시됩니다.

☐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의 신고 내용은 무엇인가요?**

▶ 가축거래상인의 성명, 생년월일, 가축거래신고 연월일, 개체식별번호, 양도·양수 가축거래 신고 구분, 양도자·양수자 인적사항, 계류장 주소

☐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이 가축시장에서 낙찰받은 소를 양수신고 하는지요?**

▶ 가축시장 개설자가 가축 거래내역을 다음날까지 이력시스템에 신고함으로서 가축시장에서의 양수신고를 갈음합니다. 다만, 가축시장 거래 후 소를 양도한 경우 양도신고를, 가축시장에서 농장으로 소를 이동한 농장경영자는 위탁기관에 양수신고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 이동신고 시 정보연계에 계류장 주소도 포함하는지요?**

▶ 가축거래상인의 계류장은 정보 연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로 계류장 주소지를 신고합니다.

☐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의 신고내역을 요청한 경우 제공해야 하는지요?**

▶ 가축거래상인도 농장경영자와 동일하게 개인정보 확인 후 본인의 신고내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변경신고 |
|---|---|---|---|

**< 정보 변경 _ 신상 정보 : 성명 >**

**□ 농장주가 개명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농장주명은 위탁기관에서 직접 변경이 불가하므로 해당 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개명된 성함을 확인할 수 있는 농장주의 <신분증> 사본을 이력지원실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사본) 中 1부**

▶ 개명 이전의 신고내역을 변경하시려면 추가로 정보변경 신청 필요

**□ 농장주명을 오등록 하였는데 변경이 안 되나요?**

▶ 농장주명은 위탁기관에서 직접 변경이 불가하므로 해당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정확한 성함을 확인할 수 있는 농장주의 <신분증> 사본을 이력지원실로 보내주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오등록 되어 끝에 한자리가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번호는 위탁기관에서 직접 변경이 불가합니다. 해당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농장주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이력지원실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변경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사본) 中 1부**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변경신고 |
|---|---|---|---|

**< 정보 변경 _ 신상 정보 : 주민등록번호 >**

□ **현재 농가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개인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변경 가능한가요?**

▶ 사업자에서 개인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으로 농가 및 농장 등록 후 개체를 양도·양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동일주소지 농장이라면 농장식별번호는 동일하게 기록 관리됩니다.

□ **현재 농가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개인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개인이 사업장의 대표자인 경우라면 변경이 가능한가요?**

▶ 변경하려는 개인이 사업장의 대표자이더라도 사업장의 개체가 대표자의 개인 소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자에서 개인으로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경할 농장주로 농가 및 농장을 신규 등록한 후 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개체를 양도·양수 처리하셔야 합니다.

□ **현재 농가가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어 있는데 법인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력지원실로 변경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을 함께 보내주시면 확인 후 변경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 中 1부**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변경신고 |
|---|---|---|---|

**<정보 변경 _ 주소 : 사육소재지, 주거지>**

☐ **사육소재지(농장) 주소를 오등록 했습니다.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력지원실로 변경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첨부해주시면 확인 후 변경 가능합니다.

☐ **농장 경영자의 휴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디서 수정해야 하나요?**

▶ 이력관리시스템의 [농가관리>농장정보확인] 메뉴에서 농장을 검색 후 직접 수정하시면 됩니다.

☐ **농장주의 주거지(자택)가 변경되었는데 변경신고서를 접수해야 하나요?**

▶ 농가의 주거지 정보는 위탁기관에서 직접 변경 가능합니다. [농가관리]의 [농장정보확인]에서 농가조회 후 "수정"을 클릭해 상단에 농가 정보를 수정하면 됩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농장 경영자 정보의 주소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 **농장 경영자가 폐농(휴업)신청을 했습니다. 어디서 수정해야 하나요?**

▶ 이력관리시스템의 [농가관리>농장정보확인] 메뉴에서 농장을 검색 후 직접 운영상태란에서 운영, 휴업, 폐업 중 선택해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변경신고 |
|---|---|---|---|

**< 개체식별번호 수정 및 삭제 >**

**□ 개체식별번호가 오등록 되었는데 수정이 안됩니다. 수정이나 삭제 가능한가요?**

▶ 개체식별번호는 한번 등록되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소의 개체번호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고유번호이므로, 필요 시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삭제 후 올바른 정보로 새롭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개체등록 30일 이내 : [개체현황]에서 농가 조회해 개체 삭제 후 재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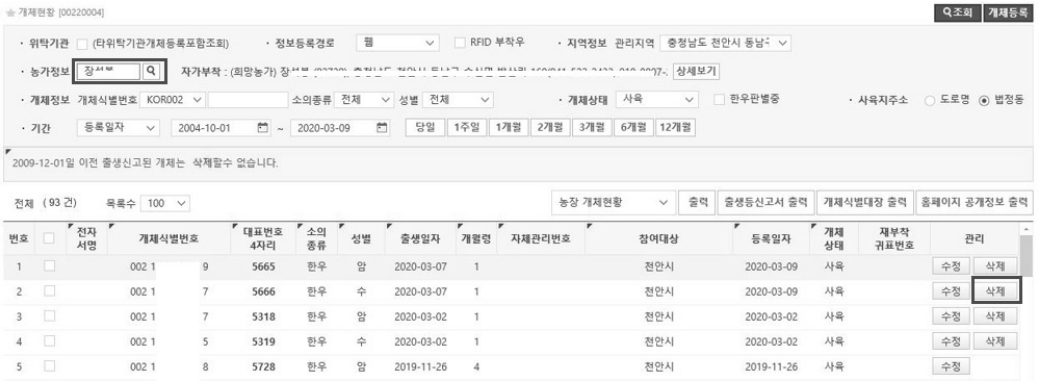


**[위탁기관 메뉴. 개체관리>개체현황]**

- 개체등록 30일 이후 : [등록정보사실관계확인]에서 미사육 확인 처리 후 재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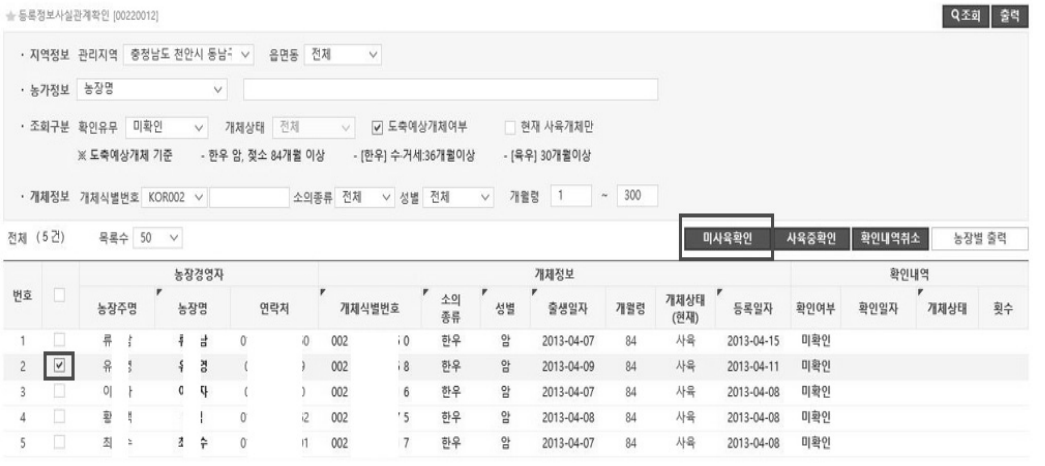


**[위탁기관 메뉴. 개체관리>등록정보사실관계확인]**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변경신고 |
|---|---|---|---|

**< 소의 종류 변경 _ 젖소·육우 >**

**□ 젖소를 육우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육연령 3년 미만)***

▶ 사육연령 3년 미만인 젖소를 육우로 변경하는 경우, 소의 종류 변경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위탁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를 이력지원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변경신고서는 수기작성이나 별도 접수도 가능하나, [개체관리]의 [개체현황]에서 변경하고자하는 개체조회 후 소의 종류를 수정하고 하단의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 직인날인에서 "날인"을 선택한 다음, '개체정보수정'을 하면 자동으로 정보변경신고에 <변경신고서>와 위탁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가 제출됩니다. 요청하시면 확인 후 바로 변경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

**+ 분만이력이 있는 개체의 경우 소의 사진 추가 첨부 필요**

**□ 젖소를 육우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육연령 3년 이상)***

▶ 사육연령 3년 이상인 젖소를 육우로 변경하는 경우, 소의 종류 변경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해당 소가 육우가 맞음을 증명하는 소견이 기재된 <수의사 진단서>를 이력지원실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통 젖소의 경우 24개월 정도면 불임여부가 판명 나고 사육연령이 3년이 넘는 젖소인 경우 분만했을 확률이 높아 육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내용을 정확하게 증명해주셔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건은 결제 후 처리 가능한 건으로 2~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수의사 진단서 + 분만이력이 있는 개체의 경우 소의 사진 추가 첨부 필요**

□ 한우를 젖소나 육우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한우를 다른 품종(젖소, 육우)로 변경하려면 해당소의 사진을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분만내역 중 한우인 송아지가 있는 경우 현재 사육상태인 송아지 모두 한우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 한우증빙서류 : 한우기초(혈통)등록증명서, 한우혈통정보확인서, 수정란이식증명서 中 1부**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변경신고 |
|---|---|---|---|

□ **개체등록 시 처음에는 육우로 등록했다가 송아지를 낳으면 젖소로 변경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산에 육우 암소가 송아지 모개체로 등록되면 자동으로 소의 종류가 젖소로 변경되도록 할 수 없나요?**

▶ 모개체 등록과 소의 종류 변경은 다른 업무이므로 해당 내용으로 소의 종류가 자동 변경되도록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젖소에서 태어난 암소는 젖소·암으로 등록 후 추후 분만 전에 출하하거나 분만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육우로 변경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

**< 소의 종류 변경_ 한우 >**

□ **송아지가 한우인데 인공수정으로 태어나서 엄마는 젖소(육우)인 경우 송아지를 한우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력지원실로 <변경신고서>와 <한우기초(혈통)등록증명서> 등의 한우증빙서류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한우로 변경 가능합니다.
2011.12.31.로 한우판별사업이 종료됨에 한우기초등록규정을 2012.1.1.로 개정하여 종축개량협회에서 한우기준에 적합한 개체에 대하여 <한우기초(혈통)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우에 대해서는 종축개량협회에서 발급하는 공식서류인 <한우기초(혈통)등록증명서>와 <한우혈통정보확인서>, <수정란이식증명서>로만 인정 가능합니다. 수정란이식증명서로 제출 시 반드시 변경신고서의 변경사유란에 모개체번호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건은 결제 후 처리 가능한 건으로 2~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 첨부서류 : 한우기초(혈통)등록증명서, 한우혈통정보확인서,**
**수정란이식증명서, 토종가축(한우)인정서**
**칡한우 관리확인서 中 1부**
**(한우기초등록증명서 2012.7.20일부터, 수정란이식증명서 2012.8.3일부터)**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변경신고 |
|---|---|---|---|

**< 성별 변경 >**

**□ 성별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현재 성별변경은 위탁기관에서 등록 시 선처리 되는 항목입니다.
[개체관리]의 [개체현황]에서 변경하고자하는 개체조회 후 원하는 성별로 수정하고, 하단의 정보변경신고 위탁기관장 직인에서 "날인"을 선택한 다음, 정보변경신고 사유 란에 오신고 주체 등을 포함한 사유를 기재한 후 '수정'을 누르면 자동으로 정보변경신고에 <변경신고서>와 위탁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가 제출됩니다. (여기까지 처리하면 성별이 변경됨)
접수된 변경신고서를 이력지원실에서 최종확인 후 처리완료 합니다.

**※ 첨부서류 :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

**□ 수소를 거세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 → 거세 변경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개체관리]의 [거세현황-거세등록]에서 농장 조회 후 개체를 선택하여 정보입력 후 거세등록을 하면 됩니다.

② 일반 성별변경과 동일하게 개체관리화면에서 변경하셔도 됩니다. (단, 정보변경신고 사유 란에, 실제 거세여부(ex. 거세함) 기재 필요)

**※ 첨부서류 :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

**□ A 축협인데요, B 축협에서 암소를 양수받았습니다. 개체를 조회해보니 거세로 등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거세를 삭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양도 기관(B)에서 [개체관리-거세현황] 메뉴에서 직접 거세내역을 삭제

② 양도 기관(B)에서 이력지원실로 거세 삭제 요청 <변경신고서> 접수

거세내역 삭제 후 양수 기관(A)에서 성별변경(수 → 암)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변경신고 |
|---|---|---|---|

**< 출생일자 변경 >**

**□ 개체의 출생일자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반적인 경우, 출생일자 수정 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과 <출생 등 신고서>를 함께 접수 해주시면 확인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체관리-개체현황]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개체조회 후 출생일을 수정하고, 하단의 정보변경신고 위탁기관장 직인에서 "날인"을 선택한 다음, 개체정보를 '수정' 하면 자동으로 정보변경신고에 <변경신고서>와 위탁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가 제출됩니다. 여기에 <출생 등 신고서>를 첨부하시되, 농가에서 신고한 <출생 등 신고서>의 출생일자 및 신고일자와 변경 후 출생일자 및 신고일자가 동일해야 처리 가능하므로 확인 후 발송바랍니다.

※ 첨부서류 : 최초 농가(신고인)의 출생 등 신고서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변경신고 |
|---|---|---|---|

□ **암소의 출생일자가 오등록 되어있어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기간 1년 이상)**

▶ 암소의 출생일자 기간을 1년 이상 변경하는 경우, 수정 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정확한 개월령을 기재한 <수의사진단서>를 함께 접수해주시면 수의사 진단 확인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최초 농가(신고인)의 출생 등 신고서 + 수의사진단서 (정확한 개월령 기재)

※ 수의사 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 내용 :

농가명, 농가주소, 개체식별번호 12자리, 병원명 및 소재지, 수의사명 및 서명(날인), 수의사 면허번호, 수의사 전화번호, 연령, 소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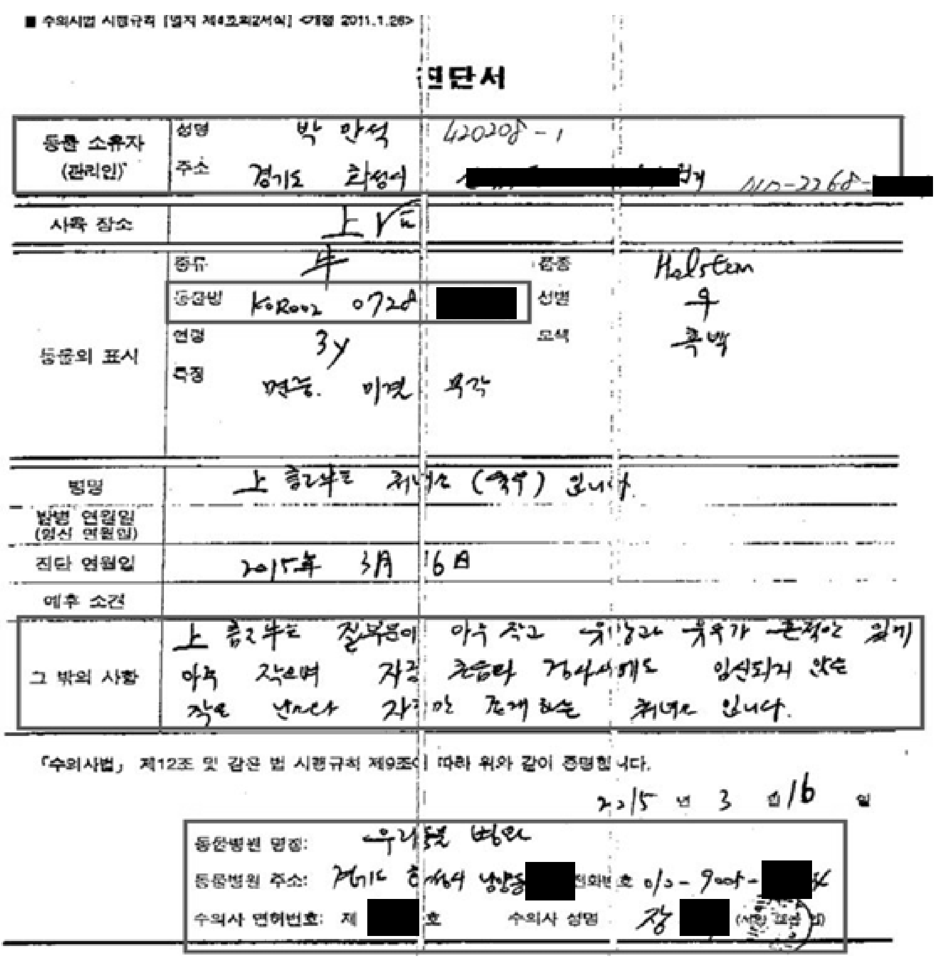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1.1.26>

진단서

| | | |
|---|---|---|
| 동물 소유자(관리인) | 성명 | 박 만석 420208-1 |
|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redacted] 010-2268-[redacted] |
| 사육 장소 | | |
| 동물의 표시 | 종류 | 우 |
| | 품종 | Holstein |
| | 동물번호 | KOR002 0728[redacted] |
| | 성별 | 우 |
| | 연령 | 3y |
| | 모색 | 흑백 |
| | 특징 | |
| 병명 | | |
| 발병 연월일 (임신 연월일) | | |
| 진단 연월일 | | 2015年 3月 16日 |
| 예후 소견 | | |
| 그 밖의 사항 | | |

「수의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15 년 3 월 16 일

동물병원 명칭:

동물병원 주소: 경기도 화성시 [redacted] 전화번호 010-9007-[redacted]

수의사 면허번호: 제 [redacted] 호 수의사 성명 장[redacted] (서명 또는 인)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변경신고 |
|---|---|---|---|

□ **출생일자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타 지역에서 양수해 온 거세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출생일자 수정 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소가 태어난 최초 등록 농가에서 신고한 <출생 등 신고서>를 함께 접수 해주시면 확인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농가에서 신고한 <출생 등 신고서>의 출생일자와 변경 후의 출생일자가 동일해야만 변경 가능하므로 꼭 확인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최초 농가(신고인)의 출생 등 신고서**

□ **타 지역에서 양수해온 개체의 출생일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꼭 출생 신고했던 농가의 출생 등 신고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 소의 출생은 태어난 농가에서 신고하는 부분이며 해당 농가에서만 정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출생일자의 수정을 원할 경우, 소가 태어난 농가에서 접수한 출생 신고 내용과 변경신고서의 내용이 일치해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개체를 등록한 위탁기관으로 요청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최초 농가(신고인)의 출생 등 신고서**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변경신고 |
|---|---|---|---|

**< 부/모개체 번호 _ 수정·삭제 >**

**☐ 모개체를 잘못 등록했는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전산에 등록한 시기에 따라 처리방법이 상이합니다.

- 개체등록 30일 이내 : 위탁기관에서 직접 수정·삭제 가능합니다. [개체관리-개체현황]에서 농장조회 후 해당 개체 우측의 수정버튼을 누르고 모개체식별번호를 변경해 '수정'하면 됩니다.
- 개체등록 30일 이후 : 모개체식별번호 변경 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위탁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를 이력지원실로 접수하시면 확인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출생 등 신고서,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 中 1부**

**☐ 모개체식별번호가 당초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체등록 30일 이후의 변경방법과 동일하게, <변경신고서>와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를 이력지원실로 접수하시면 확인 후 바로 변경해드립니다. ([개체관리-개체현황]에서 농장 및 개체를 조회하여 모개체식별번호를 변경하고 하단 직인 날인 후 개체정보를 '수정'하면 자동으로 정보변경신고에 <변경신고서>와 위탁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가 제출됩니다.)

**☐ 개체를 등록하려는데 모개체식별번호에 8개월 미만의 분만정보가 있다고 나옵니다. 확인해보니 먼저 등록된 송아지의 모개체가 잘못 등록된 경우인데, 먼저 등록된 송아지가 폐사개체라 모개체 변경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체관리]의 [개체현황-개체내역조회]에서는 개체상태가 사육인 개체만 수정이 가능하므로, 폐사개체는 해당 화면을 통한 변경 접수가 불가합니다.
[정보변경신고-정보변경신고등록]에서 해당 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를 접수하고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와 <위탁기관장의 공문>을(직인필) 이력지원실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폐사개체의 모개체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위탁기관장 공문,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변경신고 |
|---|---|---|---|

**< 양도·양수신고 정보 수정·취소 >**

**□ 개체번호를 조회해보니 이동일자가 다릅니다. 수정 가능한가요?**

▶ 이력지원실로 이동일자 변경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이동신고 정보가 기재되어있는 <출생 등 신고서>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변경 가능합니다.
농가에서 신고한 <출생 등 신고서>의 이동일자와 변경 후의 이동일자가 동일해야만 변경 가능하므로 꼭 확인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출생 등 신고서,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 中 1부**
**(필요 시 가축시장 거래명세서 등 추가 서류 첨부)**

**□ 실제 이동신고 거래된 장소와 전산 상에 등록되어있는 이동거래장소가 틀립니다. 수정 가능한가요?**

▶ 이력지원실로 이동거래장소 변경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이동신고 정보가 기재되어있는 <출생 등 신고서>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변경 가능합니다.
농가에서 신고한 <출생 등 신고서>의 이동거래장소와 변경 후의 이동거래장소가 동일해야만 변경 가능하므로 꼭 확인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출생 등 신고서,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 中 1부**
**(필요 시 추가 서류 첨부)**

**□ 이동신고를 잘못해서 취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건)**

▶ 양수신고 취소는 실제 가축이동이 없을 경우, 전산 상에서 개체를 관리하고 있는 위탁기관에서 양수인 기준으로 변경신고를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이력지원실로 이동신고 취소 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위탁기관장의 직인이 날인 되어있는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취소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증명서'**

**□ 이동신고를 잘못해서 취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이건)**

▶ 원칙적으로는 최종 양수인 기준으로 이동내역 취소를 요청하면 확인 후 처리되지만, 정부시책사업 등의 특이건과 관련된 경우 양도/양수 기관에서 모두 이동내역 취소를 접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서류 첨부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변경신고 |
|---|---|---|---|

**< 폐사신고 정보 수정·취소 >**

**□ 폐사일자를 잘못 등록하여 수정하고 싶습니다. 수정가능 한가요?**

▶ 가능합니다. 전산에 등록한 시기에 따라 처리방법이 상이합니다.

• 폐사신고 30일 이내 : 위탁기관에서 직접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동관리-폐사신고]에서농장조회 후 해당 개체 우측의 수정버튼을 누르고 폐사일자를 수정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 폐사신고 30일 이후 : 폐사일자 수정 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폐사증명서>나 <검안서>(수의사 발급)를 이력지원실로 접수하시면 확인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수의사가 발급한 검안서, 폐사증명서 등 中 1부**

**□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폐사인데 기타로 폐사원인을 잘못 등록하여 수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전산에 등록한 시기에 따라 처리방법이 상이합니다. (상단 참고)
단, 법정전염병 살처분 또는 2011년 4월 이전 백신접종 후유증으로 폐사한 개체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군구)공문을 포함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시되,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력지원실)에게 제출해야 수정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시도(시군구)공문 + 수의사가 발급한 검안서, 폐사증명서, 폐사진단서 등 中 1부(필요 시 추가 서류 첨부)**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변경신고 |
|---|---|---|---|

**< 개체 상태 변경 _ 폐사 → 사육>**

☐ **현재 사육 중인 개체인데 전산상에 폐사 개체로 조회됩니다. 해당 개체를 사육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체상태를 변경하려면 폐사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 폐사 신고한 위탁기관에서 이력지원실로 폐사신고 취소 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사육 중임이 확인 가능하고 부착된 귀표번호가 잘 보이도록 찍은 <소 사진>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폐사내역을 취소하여 사육 상태로 변경해드립니다. 폐사신고 취소는 사망신고를 취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건은 결재 후 처리 가능한 건으로 2~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 소의 귀표부착 사진 + 위탁기관장 사실확인증명서**

☐ **이력제에는 개체상태가 출하(행불)로 확인되는데 현재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개체입니다. 사육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체상태가 출하(행불)로 되어있는 개체를 사육으로 변경하시려면 개체상태 변경 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소 사진>을 이력지원실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변경 가능합니다.

☐ **현재 농가에서 사육중인 개체인데 도축상태로 확인됩니다. 사육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력지원실에서는 도축 개체에 대한 모든 변경처리가 불가합니다.
도축신고 시 오등록 건이라면, 해당 도축장으로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이중귀표로 등록 되었거나, 귀표를 재장착할 때 번호를 오등록 한 건인 경우, 해당 소의 도축된 번호로 달려있는 귀표를 떼고 새로운 귀표(번호)를 장착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처음부터 다시 하되, 모개체 예외우로 신청하고 등록)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변경신고 |
|---|---|---|---|

**< 신고일자·등록일자 변경 >**

**☐ 신고일자가 잘못 등록되어있어 수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신고일자는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농가에서 신고한 일자는 이력제 법에 따라 단속이나 과태료의 기준이 되므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개체등록 후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직접 변경이 가능하오니, 정확하게 확인 후 등록바랍니다.

**☐ 등록일자를 수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등록일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등록일자는 위탁기관에서 전산에 정보를 등록한 날짜로, 지정이나 변경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 농장경영자 인적사항 변경 >**

**☐ 개체등록 시 A와 B농가의 개체정보를 바꿔 등록하였습니다. 30일이 경과 되어 수정/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 농장경영자 인적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변경신고서"를 이력지원실로 접수하면 확인 후 수정 가능합니다. 해당 건은 결제 후 처리 가능한 건으로 2~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 위탁기관장 공문, 농장경영자 변경 사유서, 소의 출생 등 신고서**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변경신고 |
|---|---|---|---|

**< 귀표 관리 _ 분실·훼손 삭제 >**

**□ 귀표를 분실·훼손 등록을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 현재 부착되어 있는 귀표입니다. 분실·훼손 등록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위탁기관에서는 등록한 일자와 관계없이 귀표 분실·훼손 삭제가 가능합니다. [귀표관리-귀표분실등록] 메뉴에서 기간을 넉넉히 설정한 후 원귀표번호는 002와 마지막 한자리를 제외한 8자리로 조회하고, 재부착귀표는 7자리 모두 조회한 후 직접 수정/삭제 가능합니다.

**□ 1~10번까지의 귀표를 분실·훼손 등록 했는데 확인해보니 5번 귀표는 부착되어 있습니다. 5번만 분실·훼손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마찬가지로 위탁기관에서 등록일자와 관계없이 귀표 분실·훼손 삭제가 가능합니다.

**[위탁기관 메뉴. 귀표관리>귀표분실등록]**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변경신고 |
|---|---|---|---|

**< 귀표 관리 _ 재부착 귀표 >**

**☐ 재부착귀표를 다른 소에 잘못 등록했습니다.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부착 귀표 등록 후 30일 이내에는 위탁기관 전산의 [개체관리-재부착용귀표현황] 메뉴에서 직접 재부착 귀표의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등록 후 30일이 지난 경우, 이력지원실에서 재부착 귀표에 대한 수정은 처리가 어려우나 삭제가 가능합니다. 재부착 귀표 삭제 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해당 재부착귀표 오등록이 확인되는 <소 사진>을 이력지원실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삭제해드리니, 이후 재부착 귀표를 직접 등록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 : 소의 귀표부착 사진**

**※ 소 사진의 예 〉 오등록 개체(A) / 오등록된 재부착귀표(가)**

① 현재 전산에 오등록된(A) 개체가 해당 재부착귀표(가)를 달지 않은(원귀표 달고있는) 사진

② 실제 다른 개체가 오등록된 재부착귀표(가)를 달고있는 사진

③ 해당 재부착귀표(가)를 아예 미사용하여 개체번호 미기재된 사진

**※ 단추형 탈락 후 재부착 안해서 귀표가 한쪽만 있어도, 양쪽 귀 모두 확인되는 사진 필요**

**☐ 재부착귀표를 등록하려고 하니 이미 다른 개체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 재부착 귀표 등록 후 30일 이내에는 등록한 위탁기관에서 직접 재부착 귀표의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전산 등록 후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재부착 귀표의 삭제 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해당 귀표를 부착하고 있는 <소 사진>을 이력지원실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삭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도축된 개체의 재부착귀표 삭제도 가능하니, <변경신고서> 및 <소 사진>을 첨부해 이력지원실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력지원실에서 삭제 처리가 완료된 후, 올바른 개체에 재부착 귀표를 직접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도축된 개체의 재부착용 귀표를 등록 시 10일 미만 건은 위탁기관에서 직접 처리 가능하며, 10일 경과된 건은 이력지원실로 <변경신고서>를 접수해주시면 예외우 등록을 해드립니다.)

**※ 첨부서류 : 소의 귀표부착 사진**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변경신고 |
|---|---|---|---|

**< 귀표 관리 _ 배부정보 변경 >**

☐ **자가부착 농가이나 자가부착으로 귀표를 배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귀표 부착 및 전산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등록한지 30일이 넘었는데, 실제 농장에서귀표를 부착한 것이 맞기 때문에 귀표부착정보를 위탁기관이 아닌 자가부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 귀표부착정보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서>와 <위탁기관의 공문>, <해당되는 개체 리스트>를 이력지원실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귀표부착정보가 변경됩니다. 다만, 전산팀에 접수되어 처리되는 건으로 처리시일이 다소 소요되는 부분 참고바랍니다.

**※ 첨부서류 : 위탁기관의 공문 + 해당 개체 리스트**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백신접종 |
|---|---|---|---|

**< 구제역 백신 접종 >**

**□ 백신접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2010년 12월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으로 인해 많은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소·돼지에 '축종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백신접종 등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백신 접종 등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접종 : 송아지 출생 후 경과일 2개월(생후60일), 출력(지정)은 50일 이상
- 2차 접종 : 1차 접종 후 4주(생후90일), 출력(지정)은 20일 이상
- 3차 접종 : 2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 출력(지정)은 90일 이상

**□ 일제접종과 수시접종의 차이점은 뭔가요?**

▶ 일제접종은 연 2회로 사육 중인 전 두수에 대해 실시하는 예방백신 접종이고, 수시접종은 일제 접종한 개체 외에 새롭게 생산되는 송아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을 말합니다.

일제접종의 경우, 2011년에 실시된 1·2차 백신 일제접종 후 4~6개월이 도래되는 소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변경 필요) 시·군에서는 농가의 신청 및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종도래시기 1개월 전에 관내 접종대상을 파악하여야 하며, 면역력 유지를 위해 연 2회(6개월에 한번) 전 두수에 접종을 해야 합니다.

수시접종의 경우, 일제 접종한 개체 외에 새로 출생한 송아지나 일제접종 시 누락된 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농가의 신청물량 집계 및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종대상을 파악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주 1회 해당 개체에 접종을 해야 합니다.

**※ 백신지정, 취소 – 시군구담당자만 가능**
**백신접종 등록, 수정 – 시군, 위탁기관담당자 가능(단, 관내개체에 한함)**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접수대장 관리 |
|---|---|---|---|

**< 접수 대장 관리 >**

**□ 접수대장이 무엇인가요?**

▶ 위탁기관에서 농가의 직접 신고 또는 스마트폰 신고를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업무(소의 출생, 폐사, 양도, 양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신규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접수대장관리-접수대장관리] 메뉴에서 '접수대장등록'을 누르면 농가의 신고 정보를 상세/서술해 등록 가능하며, 처리완료 여부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당일 위탁기관에서 접수한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완료한 부분과 미처리한 내용까지 확인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니 참고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그럼 기존처럼 출생신고의 경우 개체현황에서 개체등록을 하면 접수대장이 자동생성 되나요?**

▶ 개체현황에서 개체를 등록하면, [접수대장관리] 메뉴에서 처리 완료된 업무로 접수대장이 자동 생성됩니다.

**□ 양도신고나 양수신고도 자동 생성되던데, 처리중과 처리완료 상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리완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양도/양수신고 후 이동이 완료된 경우에는 상태가 처리완료로 확인됩니다.
만일, 이동이 완료되기 전이라면(양수신고 대기 중/양도(요청)승인 처리 중 상태), 상태가 처리 중으로 확인됩니다.

**□ 농가의 오신고로 접수를 잘못 받아 접수대장을 삭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처리 완료된 상태라면 삭제 불가하고, 처리중과 접수 상태의 경우라면 삭제 가능합니다.

| 단계구분 | 사육 | 문의유형 | 사육농가의 전산이용 |
|---|---|---|---|

**< 사육 농가의 전산 이용 >**

☐ **[농가]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인데요, 이력제에 가입해서 내가 보유한 개체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하거나 축산물이력제 신고 모바일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가입 시 사용자 구분을 '사육농가'로 선택하고 개인 인증서를 통해 회원가입→로그인 후 개체현황 등을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력제 신고)의 경우도 농장현황에서 보유한 개체를 확인 가능합니다.

☐ **[농가] 이력시스템에 가입해서 사용 중인 사육농가입니다. 소가 태어났는데 출생 신고를 이력시스템에 직접 등록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이력시스템에 접속하신 다음 [신고등록관리] 메뉴에서 우측 '신고등록'을 누르고 접수대장을 작성해 저장하시면 가신고 등록이 됩니다. 이후 관할 위탁기관(축협 등)에서 확인해 개체를 등록하면 출생신고가 완료됩니다.

출생신고 외에도 폐사신고, 거세등록 등의 정보를 가신고할 수 있으며, 가신고된 건을 관리 위탁기관에서 내용확인 후 처리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농가]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과거에 사육하였다가 도축한 개체에 대한 개체식별대장을 볼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을 소의 도축일, 가공일, 폐사일 또는 수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동안 보존해야 하므로, 과거 사육하였다 도축한 개체가 5년 미만이면 확인 가능합니다.

[개체관리-개체현황]에서 우측 개체상태를 도축으로 놓고 조회하시면 직접 확인 가능하며, 이동내역 등의 상세 사항은 관할 위탁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도축단계

| 단계구분 | 도축 | 문의유형 | 1. 도축신고 및 의무사항 |
|---|---|---|---|

**< 도축 신청 >**

**□ 소 도축 전에 도축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뭔가요?**

▶ 접수된 도축검사신청서와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의 일치 및 농장경영자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도축이 의뢰된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여 해당 번호가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전산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귀표가 위·변조되었는지 등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귀표가 없는 소인데 도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소속 축산물품질평가사에게 신고하여 개체식별번호 및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로 개체식별번호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력지원실에서 부여받은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부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귀표가 1개만 부착되어 있는데 도축을 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귀표 탈락 등에 대비하여 소의 귀에 동일한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귀표를 좌우에 1개씩 2개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도축장에서는 부착된 귀표를 통해 개체식별번호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브루셀라병검사증명서 등과 일치하며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었으면 해당 소를 도축할 수 있습니다.

**□ 귀표는 부착되어 있으나 확인해보니 이력제에 등록 안 된 개체로 확인됩니다. 도축해도 될까요?**

▶ 안됩니다. 모든 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이력제 등록 여부, 농장경영자정보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 후 도축을 해야 하므로 등록되지 않은 개체는 도축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소의 농장경영자는 관할 위탁기관에 소의 출생등신고서를 제출하고 위탁기관은 전산등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마친 소는 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 등이 없는 한 도축이 가능합니다.

| 단계구분 | 도축 | 문의유형 | 1. 도축신고 및 의무사항 |
|---|---|---|---|

□ **도축의뢰소가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있지 않아 반송했는데 당일 전산등록 후 다시 도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도축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있고 농장경영자정보가 일치할 경우 소의 질병이나 다른 부정한 행위 등이 의심되지 않는다면 도축이 가능합니다.

□ **재부착 귀표가 부착된 소의 도축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도축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체의 양쪽 귀에 각각 일반형과 단추형 귀표가 1개씩 부착 및 관리되어야 하나, 해당 귀표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기관에서는 재부착용귀표에 개체식별번호를 수기로 기재하여 소에 재부착하고 귀표에 표시된 관리번호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부착 관리번호가 정상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도축이 가능합니다.

□ **재부착용귀표를 부착한 소의 도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해당 소의 귀표번호 조회 시 현재 부착된 번호(1234567)가 아닌 다른 재부착용귀표가 조회됩니다. 그래서 재부착 관리번호인 1234567로 다시 조회해보니 도축 신청된 소의 귀표 번호로 확인되는데요, 도축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귀표는 일반형과 단추형을 각 1개씩 소의 양쪽 귀에 부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귀표가 탈락된 경우, 개체번호를 수기로 기재한 재부착용귀표를 부착 후 이력관리시스템에 관리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실제 양쪽 모두 재부착용귀표를 달고 있는 경우 개체식별번호를 조회하면 마지막에 등록된 재부착용귀표의 관리번호 기준으로 조회가 됩니다.
실제 부착된 재부착용귀표의 관리번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조회 시 정상적으로 해당 원귀표번호에 부착됐음이 확인된다면, 도축 시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 단계구분 | 도축 | 문의유형 | 1. 도축신고 및 의무사항 |
|---|---|---|---|

**< 도축장 의무사항 >**

**□ 도축장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 - 도축업자는 소의 귀표 부착상태 확인과 가축 및 축산물 식별대장(이력관리시스템) 등록여부를 확인

- 도축 후 분할한 도체마다 동일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 도축처리결과 등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

**□ 도축단계에서 전산 업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도축장은 도축업자, 위생검사관, 품질평가사가 업무처리를 담당합니다.

- 도축업자 : 도축신고 내용과 도축처리 결과를 도축 검사가 완료된 날에, 또한 도매시장(경매)의 경매내역을 경매가 완료된 당일에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날짜별로 입력 및 관리
- 위생검사관 : 도축검사결과의 합격여부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
- 축산물 품질평가사 : 등급판정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 또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거, 도축업자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도축처리 및 경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하고,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도축 후에는 도체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반드시 표시하고 반출해야 합니다.

**□ 도축 후에 귀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소를 도축한 후 귀표는 전부 수거한 후 파쇄하거나 세절하여 귀표가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도축장에서 도축정보 업로드 시 자주 반출되는 포장처리업소를 지정하여, 전산에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도축장 담당자 전산메뉴 중 [지정반출처관리]메뉴에서 자주 반출되는 포장처리업소 정보를 등록하시면 파일 업로드 시 손쉽게 정보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단계구분 | 도축 | 문의유형 | 1. 도축신고 및 의무사항 |
|---|---|---|---|

**< 도축장 의무사항 _ 이력번호 표시 >**

**□ 생고기로 반출되는 쇠고기에도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나요?**

▶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경우 해당 소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도체에 표시하여 반출해야 하므로,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생고기에는 반드시 이력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앞다리나 우둔의 경우에는 등급판정 제외 부위로 등급판정 전에 반출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나요?**

▶ 물론입니다. 당일 반출되는 앞다리나 우둔의 경우에도 이력제의 대상이므로 반드시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머리나 내장 같은 부산물에도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나요?**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8호가목에 의해 국내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은 이력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소, 돼지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 부산물인 소의 머리나 내장 등은 이력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부산물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단계구분 | 도축 | 문의유형 | 2. 도축정보 관리 |
|---|---|---|---|

**< 도축, 경매 정보 등록 >**

**□ 도축정보를 꼭 입력해야 하나요?**

▶ 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소를 도축한 경우 도축신고 내용과 도축처리 결과를 도축이 완료된 날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 도축정보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도축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ERP)이 있는 경우, 도축검사 신청서 정보를 도축장 자체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파일로 다운받으시고, 해당 파일을 이력관리시스템 [도축신청관리]의 [도축검사신청서파일전송]에 파일을 첨부해 등록하면 됩니다.
-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ERP)이 없는 경우, 도축검사 신청서 정보를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후 파일로 다운받아 이력관리시스템 [도축신청관리]의 [도축검사신청서파일전송]에 파일을 첨부해 등록하면 됩니다.

**□ 도축정보 등록 시 파일을 이용해서만 등록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개체별로 직접 등록을 원할 경우, [도축신청관리]의 [도축신청수동등록] 메뉴에서 해당 개체번호 및 도축신청정보를 입력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 경매 신고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농협 소속 도매시장은 농협축산경제통합시스템(가축시장, 도매시장, 도축장, 판매장, 포장처리업소)을 통해 통합으로 관리하며, 거래내역은 전용망을 통하여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다만 농협축산경제통합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도매 시장의 경매결과는 TXT파일이나 Excel파일로 변경하여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단계구분 | 도축 | 문의유형 | 2. 도축정보 관리 |
|---|---|---|---|

**< 도축정보 수정·삭제 >**

**□ 도축되었는데 등급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 정상 도축이 된 경우라도 품질평가사가 등급마감을 하지 않았을 경우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축한 다음날에 등급정보 입력 후 마감처리 됨으로, 도축 후 시일이 경과된 개체라면 해당 도축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축정보를 오등록해서 수정하려는데 수정버튼이 안보입니다. 왜 그런가요?**

▶ 해당 쇠고기의 등급정보가 마감 되어있는 경우입니다. 품질평가사가 등급판정 후 마감하면 도축개체에 대한 업무가 모두 끝난 것이므로 도축정보 수정이 불가합니다.

**[도축장 메뉴. 도축신청관리>도축신청조회]**

**□ 등급 마감된 개체를 수정이나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원칙적으로 등급이 마감된 개체의 정보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꼭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품질평가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된 상태에서는 정보수정이 불가하지만, 품질평가사가 등급마감을 해제하면 정보수정이 가능합니다.

| 단계구분 | 도축 | 문의유형 | 2. 도축정보 관리 |
|---|---|---|---|

□ **도축 신청 후 입력된 도축 목록에서 신청인 성명이 상이합니다. 도축 목록상에서 해당 신청인을 클릭하여 수정하려고 했지만 수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을 수정할 방법은 없나요?**

▶ 도축장 담당자가 직접 수정 가능합니다. 먼저 [도축신청관리-도축신청조회] 메뉴에서 해당 신청인이 어떤 성명으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하셔서 신청인이 잘못 등록되어있는 경우, 해당 개체번호 우측의 '수정' 버튼을 클릭해 신청인 성명을 맞게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축신청인관리 메뉴에서 상호, 전화번호, 신청인명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급 마감 전에만 가능하며 등급 마감 후에는 도축정보 수정 및 삭제 불가합니다.

□ **도축정보 등록 시 이력번호를 잘못 등록했는데 삭제가 가능한가요?**

▶ 등급 마감 전이라면 도축장 담당자가 직접 삭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도축신청조회]에 해당 개체를 삭제하면 등록한 도축정보가 삭제됩니다.

□ **도축장으로 출하한 개체의 정보가 폐사로 조회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재 사육 상태의 개체만 도축정보등록이 가능하므로 폐사상태로 등록되어있는 개체는 도축정보 등록이 불가합니다. 실제 사육 중인 개체라면, 관할 위탁기관에서 소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귀표번호가 잘 보이는 소 사진과 위탁기관장 사실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력지원실로 개체상태변경에 대한 변경신고서를 접수해 "사육" 상태로 변경한 후, 도축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도축 신청이 들어온 개체에 귀표도 부착되어 있고 이력관리시스템에도 등록되어 있으나 이미 도축된 개체로 확인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이미 도축된 소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한 소가 발견되면 우선 도축을 금지하고 검사관에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검사관은 해당 개체의 귀표 위·변조와 질병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해 문제가 없어 도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개체식별번호 부여 절차를 거쳐 도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요청을 받은 이력지원실은 농협중앙회로부터 부여받은 번호를 등록합니다.

| 단계구분 | 도축 | 문의유형 | 2. 도축정보 관리 |
|---|---|---|---|

☐ **도축 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제 소의 종류, 성별, 개월령(출생일자) 등의 정보와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소의 정보가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등록 정보와 비교하여 정보가 불일치하는 소의 도축이 의뢰되면 해당 개체의 도축을 잠시 보류하고 경영자가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등록정보 수정 등을 위해 관할 위탁기관에 변경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의 등록정보가 변경된 후 도축해야 합니다.
참고로 도축 이후 위생검사관이 도축검사결과를 입력할 때 실제 올바른 종류 및 성별로 입력하면,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정보가 최종 입력한 값으로 변경되니 처리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도축장 측으로 직접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도축 대기 중인 소가 이력관리시스템 상에서 젖소로 조회되나 농장경영자가 육우라고 항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농장경영자가 해당 소의 종류 변경을 원한다면, 농가에서 육우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할 위탁기관에서 이력지원실로 변경신고서, 위탁기관장 사실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소의 개월령이 36개월 이상이라면 수의사진단서를 첨부해야하며, 분만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소 전신사진(귀표번호 포함)까지 추가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력지원실에서는 수의사와 통화하여 진단 확인 후 종류 변경이 가능합니다.

☐ **도축이 의뢰된 개체입니다. 브루셀라검사증명서가 간소화됨에 따라 증명서는 따로 없습니다. 검사여부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을 경우 어디서 확인해야 되나요?**

▶ 「가축전염병예방법」규정에 따른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간소화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이력번호(개체식별번호)를 조회하시면, 하단에 최종 브루셀라 검사 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계구분 | 도축 | 문의유형 | 2. 도축정보 관리 |
|---|---|---|---|

가축시장용 프린트 프린트

축산물이력제
ANIMAL PRODUCTS TRACEABILITY

12자리 이력번호 입력 조회

○ 소 개체정보

English 통합정보조회

| 이력번호 | 002 1548 0195 3 | 출생년월일 | 2020-07-24 (34개월령) |
|---|---|---|---|
| 소의 종류 | 한우 | 성별 | 거세 |

○ 소 출생 등 신고정보

| 농장경영자(농장식별번호) | 신고구분 | 년월일 | 사육지 |
|---|---|---|---|
| [redacted] | 전산등록 | 2020-07-28 |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
| [redacted] | 양수 | 2021-03-03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남부관광로 |
| [redacted] | 도축출하 | 2023-05-01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남부관광로 |

○ 도축 및 포장처리정보

| 도축장 |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청용로) | | | 도축일자 | 2023-05-01 |
|---|---|---|---|---|---|
| 도축검사결과 | 합격 | 도체중 | 461kg | 육질등급 | 1+등급 |
| 포장처리업소 | (주)율촌(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가리길) | | | | |

○ 구제역 백신접종 및 가축질병 검사 정보

| 구제역 예방접종최종일자 | 22.10.18 (6차) 접종 후 195일 경과 | | |
|---|---|---|---|
| 브루셀라 검사최종일자 | 2021-02-09 검사일로부터 811일 | 브루셀라 검사결과 | 음성 |
| 결핵 검사최종일자 | 해당없음 | 결핵 검사결과 | 미검사 |

▶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2개월(60일), 단 도축장 출하 시 브루셀라병은 검사일로부터 3개월(90일), 결핵병은 검사증명서 제외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소는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의무 대상이 아님
▶ 브루셀라 및 결핵 검사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Agrix에서 제공된 정보임.(http://www.agrix.go.kr)

▶ 브루셀라 및 결핵 검사결과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이력(묶음)번호 정보조회]**

| 단계구분 | 도축 | 문의유형 | 2. 도축정보 관리 |
|---|---|---|---|

□ **도축신청 메뉴에서 도축신청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전송 후 전송내역을 확인하니 브루셀라 정보가 이력제에서 조회한 내역과 상이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도축신청정보 파일 전송 시 브루셀라 접종 정보는 전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므로 조회 시점에 따라 정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일 전송 후 조회되는 도축신청정보 현황 메뉴에서 [도축신청정보 엑셀 다운로드]메뉴 하단 [브루셀라 실시간 호출]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불러오게 됩니다.

□ **도축장에서 지육라벨을 출력하려는데 이력번호만 나오고 바코드가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런가요?**

▶ [지육라벨출력] 메뉴에서 바코드가 보이지 않는 것은, 출력에 필요한 일부 파일이 없어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력관리시스템 전산 메인화면 하단 공지사항의 우측 더보기 에서 2012.12.20. 공지사항 게시글 - '화면에 바코드가 보이지 않을 경우'를 참고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공지사항 내용 참고로 기재함)

※ 참고 : 공지사항에 첨부된 TBarCode5.ocx 파일을 다운로드해 C:₩Windows₩에 복사하고, 시작 → 실행에서 regsvr32 "C:₩Windows₩TBarCode5.ocx" 라고 입력하시면 등록이 완료되어 다시 출력화면을 실행하면 바코드가 정상 표기됩니다.

□ **도축장에서 전산에서 지육라벨을 출력하려고 하는데 바코드만 나오고 이력번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화면에 바코드는 확인되나 이력번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이력제 프로그램 설치 시 리포트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제어판의 프로그램 및 기능 메뉴에서 설치된 프로그램 중 Rexpert3.0 Viewer를 찾아 삭제하고 컴퓨터를 재부팅합니다.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하단 중앙의 [프로그램다운로드]를 클릭해 나오는 팝업창에서 4번 리포트에 해당하는 Rexpert3.0 Viewer를 설치하시고 이력제에 재접속하시면 정상적으로 이력번호가 조회됩니다.

## 3 포장처리단계

| 단계구분 | 포장처리 | 문의유형 | 1. 시행 대상 및 의무사항 |
|---|---|---|---|

**< 시행 대상 >**

**□ 이력제 전산신고를 해야 하는 포장처리업소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① 도축업의 작업장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한 시설에서 영업하는 자, ②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균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자, ③ 그 밖에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희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포장처리업소에서는 이력지원실로 사업자 지정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낸 후 아이디를 발급받아 반드시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의 거래내역과 포장처리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날짜 별로 등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전산신고 대상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원하는 경우, 포장처리업소의 관리 감독기관인 해당 시·도 / 시·군·구 축산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포장처리업소에서 이력제 전산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전산신고 의무대상에 부합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요청하는 경우 이력관리시스템의 아이디를 부여받아 전산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고객지원실>자료실] 194번에 게시된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 글을 참고하여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이력지원실(팩스 044-410-7178)로 발송 후 연락주시면, 확인 후 3일 이내에 이력관리시스템 아이디를 부여해 드립니다.

**※ 첨부서류 :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 허가증(포장처리업), 신고필증(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사업자등록증**

**□ 1년에 두 마리 정도 포장처리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인데 이력제를 해야 하나요?**

▶ 국내산 쇠고기를 포장처리하는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소량의 쇠고기를 포장처리 하더라도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의 거래내역과 포장처리실적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력번호도 꼭 표시해야 합니다.

| 단계구분 | 포장처리 | 문의유형 | 1. 시행 대상 및 의무사항 |
|---|---|---|---|

□ **수입육을 포장처리하는 업소인데 이력관리시스템에서 해야 하는 업무가 있나요?**

▶ 수입육은 이력제 대상은 맞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1688-00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제 사용 중인 포장처리업소 입니다. 2013년도에는 종업원이 5인 이상인 포장처리업소였으나, 2014년에 종업원이 3인으로 줄었습니다. 도축장에 연접한 영업장도 아닌데, 2015년부터는 포장처리실적을 전산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

▶ 전산신고 의무 대상으로 지정되는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기준은 도축장연접 및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 평균 종업원 수 5인 이상입니다.
따라서 2015년 전년인 2014년도 연간 평균 종업원수가 5인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 전산신고 의무 대상 지정 취소 후 포장처리실적 및 거래내역을 장부로 관리하면 됩니다.

**※ 전산신고 의무 대상 지정 취소 요청 방법**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고객지원실>자료실] 199번에 게시된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취소 신청서]를 이력지원실(팩스044-410-7178)로 발송**

□ **포장처리업소명은 바뀌지 않았지만 사업장이 주소 이전을 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같은 아이디로 계속 사용 가능하나요?**

▶ 아닙니다.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명, 주소 등의 정보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통해 기존 아이디의 신상정보를 변경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사용하셔야 됩니다.

□ **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아 양념육을 포장처리하는 업소입니다. 이력제에서 해야 하는 업무가 있나요?**

▶ 아닙니다. 축산물이력제의 시행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에 한합니다. 따라서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는 양념육 취급업소는 이력번호 표시나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계구분 | 포장처리 | 문의유형 | 1. 시행 대상 및 의무사항 |
|---|---|---|---|

□ **[소비자] 마트에서 구입한 축산물의 이력을 조회하니 다른 정보는 모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포장처리업소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해 식육포장처리업자 중 ① 도축업의 작업장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한 시설에서 영업하는 자, ② 전년도 연간 평균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자, ③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희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의 경우 쇠고기 포장처리실적을 전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위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포장처리업자는 이력제 전산신고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장부로 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전산 상 포장처리업소 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의무사항 >**

□ **식육포장처리업소를 운영 중입니다. 이력제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 뭔가요?**

▶ 식육포장처리업소는 포장처리한 쇠고기에 이력(묶음)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을 전산신고 대상업소는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신고, 비전산신고 대상자는 자체 장부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거래내역 관리는 축산물이력제로 개정된 2014.12.28. 이후부터 의무화됨**

□ **전산신고 대상이 아닌 포장처리업소가 이력제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

▶ 전산신고 비대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의 경우 거래 및 포장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의무는 없으나, 쇠고기의 포장지에 해당 이력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쇠고기의 매입·반입내역, 포장처리·묶음구성내역 및 판매·반출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여 2년간 보관 및 관리해야 합니다.

□ **부산물은 개체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 맞습니다. 축산물이력제에서 이력번호는,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개체를 도살 처리하여 얻은 쇠고기(지육과 그 지육을 이용해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로서 식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 이외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소의 머리, 내장 등의 부산물은 이력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거래내역과 포장처리실적 등을 기록·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산물 이외에 양념육도 이력제 대상이 아니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계구분 | 포장처리 | 문의유형 | 1. 시행 대상 및 의무사항 |
|---|---|---|---|

☐ **포장처리업소에서 포장처리 후 붙이는 라벨지에 이력번호가 꼭 들어가야만 하나요?**

▶ **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 및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력번호는 필수적으로 표시하셔야 합니다.

☐ **판매(반출)도 전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네. 포장처리업소에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판매(반출)한 경우, 해당 내역을 전자적 처리방식 혹은 자체적으로 장부에 날짜별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전산신고 의무 대상인 식육포장처리업소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서를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날짜별로 구분하여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전산신고 의무 비대상인 포장처리업소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반출실적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장부에 날짜별로 구분하여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쇠고기이력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가 있나요?**

▶ 식육포장처리업소는 이력번호 표시의 편리를 위해 라벨 출력이 가능한 저울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 중 전산신고 의무대상인 포장처리업자는 인터넷이 가능한 PC를 통해 포장처리 실적 및 거래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묶음번호 >**

☐ **묶음번호가 무엇인가요?**

▶ 묶음번호란 다수의 이력번호(개체식별번호)를 이력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해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개의 다른 이력번호를 한 개로 포장처리·판매할 경우 이력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계구분 | 포장처리 | 문의유형 | 2.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 등록 |
|---|---|---|---|

**□ 묶음번호 표시의 정해진 형식이 정해져 있나요?**

▶ 묶음번호는 총 15자리[묶음고정코드(1)+구분코드(1)+묶음날짜코드(6)+영업자코드(4)+일련번호(3)]로 구성됩니다.
묶음고정코드는 묶음을 나타내는 LOT의 약자인 L로 고정된 값입니다. 구분코드는 축종에 따라 소는 0, 돼지는 1로 표시하며, 묶음날짜코드는 묶음을 구성한 날짜를 연월일 6자리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영업자코드 4자리는 전산신고 의무대상이면 전산 상에서 따로 부여해드리며, 비의무대상인 경우 업장의 사업자번호 10자리의 마지막 5자리 중 끝에 한자리를 제외한 4자리의 숫자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일련번호 3자리는 묶음구성일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예) 전산신고 비대상 업체(412-81-12345)에서 `15년1월27일 가공한 쇠고기의 묶음번호 : L 0 150127 1234 001**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4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묶음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참조

**□ 묶음번호는 몇 개까지 묶을 수 있나요?**

▶ 묶음번호 구성은 개체 20마리 이하로 가능하며, 쇠고기를 혼합하여 포장하는 갈비, 분쇄육, 세절육 등은 50마리 이하로 구성 가능합니다.

**□ 묶음번호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전산신고의무 업체의 경우 이력관리시스템으로 묶음번호 구성이 가능하며, 비전산신고업체의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21호서식 – 묶음번호 구성내역서>에 작성하여 기록관리 합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4–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묶음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참조

| 단계구분 | 포장처리 | 문의유형 | 2.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 등록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 제 21호 서식]

##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 ① 연월일 | ② 구분 | ③ 묶음번호 | ④ 부위명 | ⑤ 이력번호 | ⑥ 구성개체수 (구성번호수) | ⑦ 등급 |
|---|---|---|---|---|---|---|
| 2015-11-02 | 국내산쇠고기 | L01511023462006 | 앞다리살, 사태, 목심 | 002 0731 5665 6 | 10 | 1+ |
| | 국내산쇠고기 | | | 002 0806 2459 2 | | 1+ |
| | 국내산쇠고기 | | | 002 0840 9117 2 | | 1+ |
| | 국내산쇠고기 | | | 002 0855 1015 9 | | 1+ |
| | 국내산쇠고기 | | | 002 0863 0165 2 | | 1+ |
| | 국내산쇠고기 | | | 002 0869 9268 4 | | 1+ |
| | 국내산쇠고기 | | | 002 3024 5103 6 | | 1+ |
| | 국내산쇠고기 | | | 002 3047 9315 7 | | 1+ |
| | 국내산쇠고기 | | 앞다리살, 목심, 사태 | 002 3056 6395 1 | | 1+ |
| | 국내산쇠고기 | | | 002 3056 6436 6 | | 1+ |

유의사항

① 연월일은 묶음번호를 구성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② 구분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종류인 국내산쇠고기, 국내산돼지고기, 수입산쇠고기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③ 묶음번호는 별표 14에 따라 조합한 숫자를 적습니다.
④ 부위명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모든 부위를 적습니다. 다만, 국내산돼지고기 또는 수입쇠고기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⑤ 이력번호는 묶음을 구성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해당되는 모든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⑥ 구성개체수는 묶음을 구성하는 해당 쇠고기의 마릿수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쇠고기의 이력번호의 수가5마리인 경우에는 "5"로 적습니다. 국내산이력축산물 중 돼지고기 또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이력번호의 수를 적습니다.
⑦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등급별 구성인 경우에 해당 이력번호별 등급을 적습니다.

**□ 등급이 동일한 경우 육우와 한우를 묶음번호로 묶는 것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묶음번호는 소의 종류가 동일해야만 구성이 가능합니다.

**□ 한우 갈비와 양지를 묶음번호로 묶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갈비와 양지는 등급표시 의무부위이므로 등급이 동일한 경우에만 묶음번호 구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의 종류와 등급이 동일하면 묶음번호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등급표시 의무부위 :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설도, 앞다리**

| 단계구분 | 포장처리 | 문의유형 | 2.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 등록 |
|---|---|---|---|

☐ **안심과 안창살을 묶음구성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 묶음구성하려는 부위 중 등급표시 의무부위가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묶음 내 개체의 등급이 모두 동일해야만 묶음 구성이 가능합니다.
안심의 경우, 등급표시 의무부위이므로 안창살과 동일한 등급인 경우에만 묶음 구성이 가능합니다.

☐ **묶음번호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묶음번호는 다수의 다른 이력번호를 한 개로 포장처리 할 경우 표시하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해야 합니다.

**< 전산신고 _ 매입·반입실적 >**

☐ **도축 의뢰했던 개체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포장처리실적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등록이 안됩니다. 왜 그런가요?**

▶ 포장처리실적신고는 매입이 등록된 개체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입고처에 대한 정보를 넣고 매입·반입신고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 **매입신고 시 필수 입력항목이 무엇입니까?**

▶ 매입신고 시에는 입고일자, 이력(묶음)번호, 입고 부위명 및 부위코드, 입고중량, 입고처 유형/상호/사업자번호/주소를 필수 기재해야 하며, 부위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표준코드 상 소분류명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전산 의무 대상 포장처리업체입니다. 매입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 매입내역 전산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A=내 포장처리업소)
도축장에서 지육이 입고된 경우, [매입신고관리-도축장반출개체현황] 하단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도축장에서 도축신고 시 의뢰인을 A로 넣은 경우 [신청인 사업자번호기준] 메뉴에서 해당 개체가 조회되며, 도축장에서 A로 반출신고를 한 경우 [도축장 반출 기준]에서 조회됩니다.
도축장 외의 사업장에서 입고된 경우, [매입신고관리-매입신고] 하단 메뉴에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매입신고 조회] 메뉴에서는 입고일자 등의 필수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 [매입신고 파일전송], [매입신고 Excel] 메뉴에서는 txt, csv 파일과 엑셀파일로 작성된 매입내역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단, 파일 업로드는 이력제와 해당 프로그램의 형식이 동일할 때 가능하므로, 왼쪽 메뉴 최하단의 [전송자료형식보기]를 참고하여 파일형식을 맞추어 작성 후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단계구분 | 포장처리 | 문의유형 | 2.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 등록 |
|---|---|---|---|

**< 전산신고 _ 포장처리실적 >**

**□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포장처리실적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포장처리 항목은 포장처리일과 이력(묶음)번호, 원료 또는 부위명, 무게, 매입·반입처의 상호와 사업자번호와 연락처, 그리고 의뢰업체의 상호와 사업자번호와 연락처입니다.
여기서 부위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표준코드 상 소분류명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매입처는 실제 쇠고기를 사온 곳, 의뢰업체는 임가공 의뢰인의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포장처리실적에 매입처와 의뢰업체 정보를 모두 기재해야하며, 매입처와 의뢰업체가 동일한 경우에도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 포장처리실적을 전산에 등록했습니다. 등록 결과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포장실적반출관리] 하단 메뉴에서 조건에 따라 조회 가능합니다.

**① [포장처리실적 수동등록] : 개체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

**② [포장처리실적 현황조회] : 일자별로 입력된 결과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

| 단계구분 | 포장처리 | 문의유형 | 2.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 등록 |
|---|---|---|---|

**③ [개체별 포장처리실적] : 포장처리일, 신고일자, 가공차수, 가공중량 확인**

**□ 포장처리실적 파일 업로드 시 포장처리일, 이력(묶음)번호, 원료 또는 부위명, 무게, 매입처(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의뢰업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해당 항목들을 꼭 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이력관리 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의 신고 항목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항목들은 빠짐없이 필수적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 소 한 마리를 포장처리했는데, 소포장된 처리실적을 부위별로 신고하지 않고 1마리로 합하여 신고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포장처리실적은 포장처리일과 이력번호, 무게, 원료 또는 부위, 매입처별로 구분하여 신고 또는 기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 한 마리의 포장처리실적을 합하여 신고 또는 기록해서는 안 되며,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신고 또는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포장처리일과 이력번호, 매입처, 원료 또는 부위가 동일한 경우 중량을 합쳐 신고할 수 있으며, 판매·반출실적도 판매·반출일과 이력번호, 원료 또는 부위, 판매·반출처가 동일하면 총중량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개체 여러 마리를 포장처리 해야 되는데요, 각각 포장처리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해서 한꺼번에 포장처리실적을 올려도 되나요?**

▶ 안됩니다. 그렇게 처리한다면 각 포장된 부위의 이력번호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력제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해당 개체마다 부위별로 작업한 부분에 대해 각각의 포장처리실적을 입력하고, 부득이하게 2마리 이상 개체를 섞어서 포장하여 묶음번호를 구성한 경우에만 묶음번호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단계구분 | 포장처리 | 문의유형 | 2.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 등록 |
|---|---|---|---|

□ **1차 포장처리업소에서 납품받은 부분육을 입고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포장처리실적을 전산신고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식육포장처리업소는 실제 포장처리한 내역만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육과 같이 직접 포장처리 하지 않은 고기는 매입·반입신고만 하면 되고, 다른 사업장으로 판매되는 경우에 판매·반출신고하시면 됩니다.

□ **다른 포장처리업소에서 포장처리실적을 올린 원료육을 매입해서 재가공했습니다. 제가 포장처리실적을 올리면 1차 포장처리업소에서 등록한 포장처리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 1차 포장처리업소에서 등록한 정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포장처리실적은 각각 포장처리업소에서 작업한 내용을 등록하는 부분이므로 이전 포장처리업소에서 등록한 포장처리실적은 그대로 보이고, 현재 작업장에서 작업한 내용을 등록하면 포장처리 정보가 추가되어 함께 보이게 됩니다.

## 4 판매단계

| 단계구분 | 판매 | 문의유형 | 1. 시행 대상 및 의무사항 |
|---|---|---|---|

**< 시행 대상 >**

**□ 이력제 시행을 해야 하는 전산신고 대상 식육판매업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전산신고 의무대상인 식육판매업자란, ①「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300제곱미터 이상의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기타 기타 식품판매업자)로서 종업원이 5인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자입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국내산이력축산물 거래내역신고를 이력관리 시스템에 날짜별로 등록·관리해야 합니다.

②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식당도 이력제 대상인가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의 신고를 한자 중 영업장 면적이 700$^2$m 이상인 곳은 이력번호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육판매와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정육점식당이라면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이므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쇠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매입·반입실적을 장부에 날짜별로 기록해서 1년간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 의무사항 >**

**□ 쇠고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력제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요?**

▶ 판매업소에서는 라벨지나 식육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거래내역을 날짜별로 구분해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 포함)하고 매입·반입은 1년, 판매·반출은 2년간 보관·관리하면 됩니다. 또한, 구매자가 요구할 경우 해당 이력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 단계구분 | 판매 | 문의유형 | 1. 시행 대상 및 의무사항 |
|---|---|---|---|

☐ **판매업소에서 이력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가 있나요?**

▶ 판매업소에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장비는 없으며,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면 됩니다. 다만, 전산신고 의무 대상인 식육판매업소의 경우 인터넷이 가능한 PC를 통해 거래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마트와 같은 대규모 판매장에서는 이력번호가 인쇄되는 저울을 이용하거나 터치스크린을 통해 이력번호 확인이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는 아닙니다.

☐ **이력번호 표시를 위해 전자저울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요. 너무 비쌉니다. 전자저울 구입비용은 지원 안 해주나요?**

▶ 전자저울 사용은 판매업소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력번호의 표시가 의무사항이지만 꼭 전자라벨을 이용할 필요는 없고, 수기로 이력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자저울 구입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소비자에게 판매한 내역까지 일일이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사업자번호가 있는 업체끼리의 거래내역만 신고하면 되고,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건은 신고 또는 기록·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비자가 쇼케이스에 진열 중인 쇠고기를 구매한 경우에 별도로 이력번호를 표시해줘야 하나요?**

▶ 아닙니다. 판매업소에서 진열판매대의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였고,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여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포장하는 비닐봉투 등에 이력번호를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비자] 정육점에서 고기를 샀는데 이력제에 개체 조회 시 구매한 판매업소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 공개 범위에 의해 판매장에 대한 정보는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단계구분 | 판매 | 문의유형 | 1. 시행 대상 및 의무사항 |
|---|---|---|---|

**□ 냉장고에 보관중인 쇠고기도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나요?**

▶ 네. 냉장고에 보관 중인 쇠고기에도 모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부분육을 납품받았을 경우에는 라벨이 이미 부착되었을 것이므로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 후 판매하면 되고, 라벨이 미부착된 지육 등의 경우에는 이력번호/종류/등급 등이 동일한 쇠고기를 포장해 담은 후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지판 등을 이용해 표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수기로 이력번호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식육판매표지판에 기재해야하는 사항이 무엇인가요?**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 및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력번호 이외의 축산물 표시기준(라벨지나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1577-1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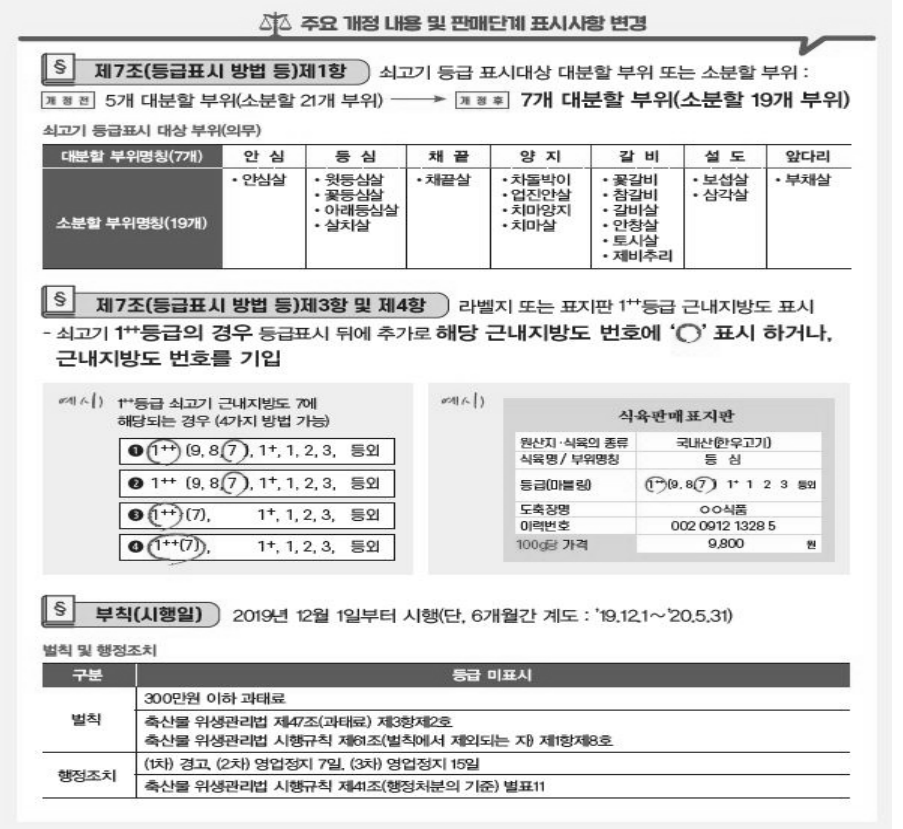

주요 개정 내용 및 판매단계 표시사항 변경

§ 제7조(등급표시 방법 등)제1항 쇠고기 등급 표시대상 대분할 부위 또는 소분할 부위 :
개정 전 5개 대분할 부위(소분할 21개 부위) → 개정 후 7개 대분할 부위(소분할 19개 부위)

쇠고기 등급표시 대상 부위(의무)

| 대분할 부위명칭(7개) | 안 심 | 등 심 | 채 끝 | 양 지 | 갈 비 | 설 도 | 앞다리 |
|---|---|---|---|---|---|---|---|
| 소분할 부위명칭(19개) | • 안심살 | • 윗등심살<br>• 꽃등심살<br>• 아래등심살<br>• 살치살 | • 채끝살 | • 차돌박이<br>• 업진안살<br>• 치마양지<br>• 치마살 | • 꽃갈비<br>• 참갈비<br>• 갈비살<br>• 안창살<br>• 토시살<br>• 제비추리 | • 보섭살<br>• 삼각살 | • 부채살 |

§ 제7조(등급표시 방법 등)제3항 및 제4항 라벨지 또는 표지판 1++등급 근내지방도 표시
-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표시 뒤에 추가로 해당 근내지방도 번호에 '○' 표시 하거나, 근내지방도 번호를 기입

예시) 1++등급 쇠고기 근내지방도 7에 해당되는 경우 (4가지 방법 가능)
❶ 1++ (9, 8, 7), 1+, 1, 2, 3, 등외
❷ 1++ (9, 8, 7), 1+, 1, 2, 3, 등외
❸ 1++ (7), 1+, 1, 2, 3, 등외
❹ 1++(7), 1+, 1, 2, 3, 등외

예시)

식육판매표지판

| 원산지·식육의 종류 | 국내산(한우고기) |
|---|---|
| 식육명 / 부위명칭 | 등 심 |
| 등급(마블링) | 1++ (9, 8, 7) 1+ 1 2 3 등외 |
| 도축장명 | ○○식품 |
| 이력번호 | 002 0912 1328 5 |
| 100g당 가격 | 9,800 원 |

§ 부칙(시행일)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단, 6개월간 계도 : '19.12.1~'20.5.31)

벌칙 및 행정조치

| 구분 | 등급 미표시 |
|---|---|
| 벌칙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과태료) 제3항제2호<br>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제1항제8호 |
| 행정조치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11 |

| 단계구분 | 판매 | 문의유형 | 2. 이력관리시스템의 이용 |
|---|---|---|---|

**< 전산시스템 이용 신청 >**

**□ 판매업소인데, 이력제 전산을 꼭 이용해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판매업소 전산신고 의무 대상은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 중 기타식품판매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로 종업원이 5인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입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판매업소라면 거래내역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날짜별로 기록·관리하면 됩니다.

**□ 판매업소인데 이력제 전산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판매업소에서 이력관리시스템 이용을 원하는 경우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고객지원실>자료실] 194번**에 게시된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 글을 참고하여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이력지원실(팩스044-410-7178)로 발송 후 연락주시면, 확인 후 3일 이내에 이력관리시스템 아이디를 부여해드립니다.

**※ 첨부서류 :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 신고필증(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사업자등록증**

**□ 전산신고 대상 판매업소입니다 매입, 매출신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국내산이력축산물을 거래하는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서>에 따라 거래(매입·반입, 판매·반출)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날짜별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 전산신고 비대상 판매업소입니다 매입, 매출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 전산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거래내역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국내산이력축산물을 거래하는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서>에 따라 매입·반입실적을, <별지 제22호서식 -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반출 실적>에 따라 판매·반출실적을 장부에 날짜별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 단계구분 | 판매 | 문의유형 | 2. 이력관리시스템의 이용 |
|---|---|---|---|

☐ **포장처리업소에서 반출신고 했는데, 입고내역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 포장처리업소에서 전산 상 판매·반출을 신고했다면 반출처로 등록한 판매장의 [입고정보관리-입고내역조회] 메뉴에서 해당 내역이 조회되어야 합니다. 판매처 전산에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선 포장처리업소의 [포장실적반출관리-판매/반출실적조회] 메뉴에서 해당 판매업소의 사업자번호로 올바르게 출고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매입처에서 반출신고가 누락되어 입고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고정보관리-입고내역조회] 메뉴에서 수동으로 등록하거나 [입고정보관리-입고파일전송]에서 파일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장 메뉴. 입고정보관리-입고 내역 조회]**

**[판매장 메뉴. 입고정보관리-입고 내역 조회-입고 수동 등록]**

**[포판매장 메뉴. 입고정보관리-입고파일전송]**

| 단계구분 | 판매 | 문의유형 | 2. 이력관리시스템의 이용 |
|---|---|---|---|

☐ **A라는 포장처리업소에서 반출 받은 부분육을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니, A 포장처리업소 뿐만 아니라 B라는 포장처리업소도 조회가 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 지육의 경우, 구입처의 요구에 따라 이분도체, 사분도체, 또는 부위별로 나눠질 수 있으며, 해당 부위들이 여러 포장처리업소로 반출될 수 있습니다. 매입한 두 포장처리업소에서 정상적으로 포장처리실적을 신고해서 정보가 조회되는 것이므로, 판매장에서는 내가 매입한 포장처리업소의 정보가 정확히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가축시장용 프린트 프린트

축 산 물 이 력 제
ANIMAL PRODUCTS TRACEABILITY

12자리 이력번호 입력 조회

○ 소 개체정보 English 통합정보조회

| 이력번호 | 002 1548 0195 3 | 출생년월일 | 2020-07-24 (34개월령) |
|---|---|---|---|
| 소의 종류 | 한우 | 성별 | 거세 |

○ 소 출생 등 신고정보

| 농장경영자(농장식별번호) | 신고구분 | 년월일 | 사육지 |
|---|---|---|---|
| [illegible] | 전산등록 | 2020-07-28 |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
| [illegible] | 양수 | 2021-03-03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남부관광로 |
| [illegible] | 도축출하 | 2023-05-01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남부관광로 |

○ 도축 및 포장처리정보

| 도축장 |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청용로) | 도축일자 | 2023-05-01 |
|---|---|---|---|
| 도축검사결과 | 합격 | 도체중 | 461kg |
| 육질등급 | 1+등급 | | |
| 포장처리업소 | (주)율촌(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가리길) | | |

○ 구제역 백신접종 및 가축질병 검사 정보

| 구제역 예방접종최종일자 | 22.10.18 (6차) 접종 후 195일 경과 | | |
|---|---|---|---|
| 브루셀라 검사최종일자 | 2021-02-09 검사일로부터 811일 | 브루셀라 검사결과 | 음성 |
| 결핵 검사최종일자 | 해당없음 | 결핵 검사결과 | 미검사 |

▶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2개월(60일), 단 도축장 출하 시 브루셀라병은 검사일로부터 3개월(90일), 결핵병은 검사증명서 제외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소는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의무 대상이 아님
▶ 브루셀라 및 결핵 검사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Agrix에서 제공된 정보임.(http://www.agrix.go.kr)

▶ 브루셀라 및 결핵 검사결과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이력(묶음)번호 정보조회]**

## 5 DNA동일성검사

| 단계구분 | DNA동일성검사 | 문의유형 | 1. DNA검사 개념 및 검사기관 |
|---|---|---|---|

□ **유통과정에서 판매업자들이 수입육을 섞거나 이력번호를 가짜로 받아서 판매할 때 단속방법은 무엇인가요?**

▶ 쇠고기의 둔갑판매를 막기 위해 도축과정에서 채취한 DNA시료와 해당 쇠고기의 DNA동일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축장에서 전 두수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관중임. 시·도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식육포장처리업소와 식육판매업소 등 지도단속 과정에서 샘플로 시료를 채취하여 이미 보관중인 시료와 함께 DNA동일성 여부를 판별하기 때문에 수입산과의 둔갑 판매 등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DNA는 무엇이며, 쇠고기이력제 DNA동일성검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DNA(Deoxyribo Nucleic Acid)는 사람 또는 동물 등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 속에 존재하면서 생명체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는 물질로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 사람 또는 동물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DNA동일성검사는 모든 개체마다 유전자(DNA)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력번호가 부여된 소 또는 쇠고기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해 유전자 감식기법을 활용하여 각각의 시료에서 추출된 DNA의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동일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DNA동일성검사 기관은 어디인가요?**

▶ 소와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각 시·도별로 가축위생시험소와 민간 검사기관 등 16개소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육지 시료에 대한 검사는 시·도에서 실시하고,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판매업자 지도단속과정에서 채취한 시료는 시·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검사합니다.

| 단계구분 | DNA동일성검사 | 문의유형 | 1. DNA검사 개념 및 검사기관 |
|---|---|---|---|

**□ DNA시료 채취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느 기관에서 담당을 하는지요?**

▶ DNA시료 채취는 쇠고기의 이력정보가 사육, 도축, 포장처리, 판매단계를 거쳐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DNA동일성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쇠고기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기관은 시·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며, 농장경영자 등이 사육하는 소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기관은 시·도입니다. 다만, 사육지에서 채취하는 시료는 시·도지사가 위임·위탁한 기관에서 채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된 모든 고기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며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식육포장처리업소·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 DNA동일성검사의 결과 판정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며, 판정결과는 얼마동안의 기간 내에 통보받을 수 있는지요?**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DNA동일성검사를 하고, 보관용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대립유전자가 일치할 경우에는 '일치', 대립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일치'로 판정합니다.

판정결과 통보는 DNA동일성검사 신청에 따른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사신청기관에 DNA동일성검사 결과 통보서에 의해 통보하여야 하며,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시료채취 대상자에게 7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에 DNA동일성 검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요?**

▶ DNA동일성검사 신청 및 통보방법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mtrace.go.kr)에 접속한 후, DNA동일성검사 신청 및 통보 메뉴로 들어가 할 수 있음.

다만, 전자적방법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 검사기관의 아이디/패스워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인증절차를 거쳐 부여하고 있습니다.

| 단계구분 | DNA동일성검사 | 문의유형 | 2. DNA동일성검사 방법 |
|---|---|---|---|

□ **판매장 등에서 쇠고기의 이력번호 표시 진위여부는 어떻게 조사하는지요?**

▶ 판매 또는 진열된 쇠고기의 이력번호 표시 여부와 영수증 또는 구입처 추적조사를 통해 거짓표시 여부를 확인하며, 거짓표시가 의심되거나 이력제 모니터링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DNA동일성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확인함. 이를 위해 도축되는 모든 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DNA동일성검사를 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대상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 농장경영자 등이 사육지에서 사육하고 있거나 도축 전(前) 단계의 소 또는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의 영업장에서 도축 · 포장처리·진열·보관·판매되고 있는 쇠고기가 시료 채취의 대상이 됩니다.
농장경영자 등의 사육지에서 사육되고 있거나 도축 전(前) 단계의 귀표가 부착된 소의 경우에는 모근·혈액·조직 등에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도축장에서 도축된 소의 경우에는 도체의 조직 등에서 시료를 채취함.

또한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식육포장처리·진열·보관·판매하고 있는 이력번호 표시 쇠고기는 피채취자(당해업주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입회하에 살코기 부분을 약 20g을 채취하여 10g정도로 2등분해서 각각의 시료채취봉투에 넣어 채취자와 피채취자가 모두 봉인한 후에 1점은 피채취자에게 인계하여 검사가 끝날 때까지 변질되지 않게 보관하도록 조치하고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 채취된 시료와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을 해당 검사기관으로 송부합니다.

□ **DNA동일성검사를 하면 한우인지 여부를 판별 할 수 있는가요?**

▶ DNA동일성검사는 한우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한우판별 검사방법과 달리, 질병 등 문제 발생 시 이동 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쇠고기이력제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검증하는 방법입니다.
한우 여부 판정은 위탁기관에서 사육농가로부터 소 출생 등 신고를 받아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한우기준'에 의해 판별하여 등록하고 있으며, 소가 도축 의뢰될 때에는 도축장에서 근무 중인 검사관이 외모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의 종류를 다시 확인 후에 도축하고 있습니다.

| 단계구분 | DNA동일성검사 | 문의유형 | 2. DNA동일성검사 방법 |
|---|---|---|---|

□ **판매 중인 쇠고기의 한우, 비한우, 젖소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 지역축협 등 위탁기관에서 농가로부터 소의 출생신고를 받아 귀표를 부착할 때에 인공수정증명서, 외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우여부를 판별한 후에 소의 종류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에서 소의 종류에 대해 판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시·도별로 운영중인 자문단을 통해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도 판별이 어려운 때에는 DNA 친자감별법 등을 통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 **시·도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으나 여건상 DNA동일성검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DNA동일성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또는 장비 등이 미비하여 채취 시료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채취한 시료와 함께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NA동일성검사와 한우확인시험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한우확인시험법은 한우판별 마커(marker)를 사용하여 한우형과 비한우형(육우, 젖소, 수입산 포함)으로 판별하는 방법으로 소의 염색체 내에서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의 빈도 및 초위성체(Microsatellite, MS)의 대립유전자가 발생하는 빈도를 한우와 비한우에서 각각 측정하여 차이를 보이는 경우, 이를 후보 마커로 이용하여 최적의 마커 조합을 구성한 다음에 '한우형'과 '비한우형'으로 판별하는 것입니다.

DNA동일성검사는 초위성체 마커 이용법으로 국제동물유전학회에서 추천하는 9개의 마커와 소에서 특이적인 마커 2개 등을 사용하여 개체를 식별하는 방법으로 소의 염색체 내에서 2개 내지 7개 내외의 염기가 연쇄적으로 반복되는 초위성체(Microsatellite, MS)를 이용하여 이력번호가 부여된 소 또는 쇠고기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해 유전자 감식기법을 활용하여 각각의 시료에서 추출된 DNA의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일치'와 '불일치'로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 **대형마트에 비해 소형 정육점의 경우 DNA동일성검사로 확인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 소형 정육점도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단속과정에서 허위 표시 또는 둔갑판매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서와 영수증 등과 일치 하는지를 우선 확인합니다. 이와 더불어 진열 중인 쇠고기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관중인 시료와 함께 DNA동일성검사를 통해 판매 쇠고기가 동일한지 여부가 확인 가능합니다.

| 단계구분 | DNA동일성검사 | 문의유형 | 2. DNA동일성검사 방법 |
|---|---|---|---|

□ **외국에서도 DNA동일성검사를 실시하는지요?**

▶ 쇠고기이력제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들 중 DNA 시료를 채취하여 동일성 검사를 하는 나라는 일본과 호주가 있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DNA동일성 검사방법은 일본과 같은 방법이며, 호주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개인회사(Genetic solution社)에서 어떤 특정 브랜드와 계약을 하여 브랜드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보관 중인 시료는 몇 년간 보관하고 보존기간이 만료 된 시료는 어떻게 하는지요?**

▶ 도축장에서 채취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보관중인 시료는 접수일로부터 2년간 보존되며 기한이 경과되면 DNA동일성검사 보관용 시료 관리대장에 폐기일자 등을 기록하고 폐기하며, 폐기 결정된 시료를 축산발전 등의 목적으로 축산관련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인계를 요청할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고 해당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학교급식소 등에서 부정육으로 의심되는 쇠고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학교급식 또는 소비자 등이 부정육으로 의심되는 쇠고기가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없이 1399번)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하면 됩니다.

## 6 위반자 처분

| 단계구분 | 위반자 처분 | 문의유형 | 1. 벌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 법 시행으로 소 사육 농가, 식육유통업체 등이 쇠고기이력제 이행사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소의 귀에 부착된 귀표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요?**

▶ 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소의 귀에 부착된 귀표를 위·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이력번호 거짓 표시가 식육판매업소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누가 처벌되는지요?**

▶ 이력번호를 도축장·포장처리업소에서 잘못 표시하여 식육판매업소에 공급되었다면 공급자를 조사하여 처벌합니다. 그러나 이력번호가 정상적으로 표시된 쇠고기를 공급받아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판매업소에 책임이 있습니다.

□ **소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 이력제 법에서 처벌 가능한지요?**

▶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원산지 허위 표시로 단속되며, 사육 농가가 소의 출생 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이력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는 업소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전화가 있는지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부정 불량식품 신고 전화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거나, 시군구청에서 운영하는 부정 불량식품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와 별도로 이력제와 관련하여 사육 농가, 식육유통업체, 소비자 등의 실시간 민원상담을 위해 '이력지원실'(1577-2633)을 운영 중입니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www.mtrace.go.kr)에 질의응답 코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7 기타 사례

| 단계구분 | 기타 사례 | 문의유형 | 1. 기 타 |
|---|---|---|---|

□ **소비자 등이 쇠고기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방문 또는 스마트폰 앱(축산물 이력정보)를 활용하여 12자리 이력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시면 소의 사육자·종류,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력번호를 이용하여 사육 농가와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요?**

▶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농장식별번호, 소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이력번호, 소의 출생일, 가축의 종류, 소의 성별 구분,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농장경영자의 이름, 도축장의 명칭 및 소재지, 도축연월일 및 도축검사 결과, 등급판정 결과, 식육포장처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도체중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 사육농가가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사육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 사육농가에서 이력관리시스템(인터넷) 또는 축산물이력제 앱(가입 필수)을 통하여 등록현황을 조회하거나 소의 출생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사육농가 사용 신청 이후에 조회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력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관리 위탁기관으로 승인요청 한 다음 이용이 가능합니다.

V

# 참고자료

- 축산물이력제 관련 기관·단체 연락처
- 모바일앱 매뉴얼
- 축산물이력제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매뉴얼

## 1 축산물이력제 관련 기관·단체 연락처

| 기 관 명 | 부 서 명 | 전화 번호 (FAX) |
|---|---|---|
| 농림축산식품부 | 이력지원실 | 1577-2633 (044-410-7178) |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경영과 | 044-201-2347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원산지관리과 | 054-429-4000 (054-429-4033) |
| 농림축산검역본부 | 방역감시과 | 054-912-1000 |
|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 가축개량평가과 | 041-580-3358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관측본부 축산실 | 061-820-2050 |
| 농협중앙회 | 축산경영부 | 02-2080-6569 (02-2080-6560) |
| 축산물품질평가원 | 이력사업본부 | 044-410-7094 (044-410-7175)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유통관리부 | 044-550-5500 (044-865-8901) |
| 전국한우협회 | - | 02-525-1053 (02-525-1054) |
| 축산기업중앙회 | - | 02-466-2573 (02-466-2574) |
| 한국종축개량협회 | - | 02-588-9301 (02-582-3475) |
| 한국낙농육우협회 | - | 02-588-7055 (02-584-5144) |
| 한국축산물처리협회 | - | 031-391-9766 (031-395-6661) |
|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 - | 031-394-8147 (031-394-8150) |

| 시·도 기관명 | 부 서 명 | 전화 번호 |
|---|---|---|
| 서울특별시 | 식품안전과 축산물안전팀 | 02-2133-4723 |
| 부산광역시 | 농축산유통과 | 051-888-4992 |
| 인천광역시 | 농축산유통과 | 032-440-4396 |
| 대구광역시 | 농산유통과 | 053-803-3422 |
| 광주광역시 | 생명농업과 | 062-613-3983 |
| 대전광역시 | 농생명산업과 | 042-270-3823 |
| 울산광역시 | 농축산과 | 052-229-2936 |
| 세종특별자치시 | 농업축산과 | 044-300-4446 |
| 경기도 | 동물방역위생과 | 031-8030-3483 |
| 강원도 | 축산과 | 033-249-2656 |
| 경상북도 | 축산경영과 | 054-880-3433 |
| 경상남도 | 축산과 | 055-211-6564 |
| 충청북도 | 축산과 | 043-220-3732 |
| 충청남도 | 축산과 | 041-635-2543 |
| 전라북도 | 축산과 | 063-280-4640 |
| 전라남도 | 축산과 | 061-286-6532 |
| 제주도 | 축산과 | 064-728-3413 |

| 연번 | 시도별 | 위탁기관명 | 전화번호 | 주 소 |
|---|---|---|---|---|
| 1 | 서울 | 서울축산업협동조합 | 02-2657-7114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74 |
| 2 | 인천 | 인천강화옹진<br>축산업협동조합 | 032-933-3301~5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76 |
| 3 | 인천 | 인천축산업협동조합 | 032-433-9550~7 |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499 |
| 4 | 경기 | (사)이천한우회 | 031-638-6565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천대로 662-46 |
| 5 | 경기 | 가평축산업협동조합 | 031-582-4111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55-12 |
| 6 | 경기 | 경기한우협동조합 | 031-534-3341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영일로 15 |
| 7 | 경기 | 고양축산업협동조합 | 031-962-6488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4 |
| 8 | 경기 |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 | 031-762-9341~7 |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87 |
| 9 | 경기 | 김포축산업협동조합 | 031-982-1421~3 | 경기도 김포시 중봉1로 93 |
| 10 | 경기 |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 | 031-566-1011~4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476번길 24 |
| 11 | 경기 |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 | 032-667-4111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50 |
| 12 | 경기 | 수원화성오산<br>축산업협동조합 | 031-230-4000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로 121 |
| 13 | 경기 | 안성마춤한우회 | 031-674-5955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458 |
| 14 | 경기 | 안성축산업협동조합 | 031-8046-8000 |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833 |
| 15 | 경기 |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 031-443-3841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74 |
| 16 | 경기 | 양주축산업협동조합 | 031-877-9451~6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5 |
| 17 | 경기 | 양평축산업협동조합 | 031-772-2292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73 |
| 18 | 경기 | 여주축산업협동조합 | 031-883-2330~3 | 경기도 여주시 우암로 6 |
| 19 | 경기 | 용인축산업협동조합 | 031-332-2331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5번길 6 |
| 20 | 경기 | 이천축산업협동조합 | 031-634-6611 | 경기도 이천시 남천로 76 |
| 21 | 경기 | 파주연천<br>축산업협동조합 | 031-944-2425 | 경기도 파주시 문화로 90 |
| 22 | 경기 | 평택축산업협동조합 | 031-657-9700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725 |
| 23 | 경기 | 포천축산업협동조합 | 031-534-0042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369 마홀촌지점 |
| 24 | 경기 | 서울경기한우협동조합 | 031-633-8220 | 경기도 이천시 덕이로 39번길 41 |
| 25 | 강원 | 강릉축산업협동조합 | 033-646-0001 | 강원도 강릉시 용지로 20 |

| 연번 | 시도별 | 위탁기관명 | 전화번호 | 주 소 |
|---|---|---|---|---|
| 26 | 강원 | 고성축산업협동조합 | 033-681-3567 | 강원도 고성군 간성로 47 |
| 27 | 강원 | 동해삼척태백 축산업협동조합 | 033-573-5031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17 |
| 28 | 강원 | 속초양양 축산업협동조합 | 033-671-8868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49 |
| 29 | 강원 | 원주축산업협동조합 | 033-744-6801 |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233 |
| 30 | 강원 | 인제축산업협동조합 | 033-461-5801~3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4 |
| 31 | 강원 | 춘천철원 축산업협동조합 | 033-252-3211 |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10 |
| 32 | 강원 | 평창영월정선 축산업협동조합 | 033-339-7146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9 |
| | | | 033-339-7239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5 |
| | | | 033-339-7278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5길 23 |
| 33 | 강원 | 홍천축산업협동조합 | 033-439-3400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5길 25 |
| 34 | 강원 | 횡성축산업협동조합 | 033-343-0004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37 |
| 35 | 강원 | 횡성한우협동조합 | 033-344-3007 | 강원도 횡성군 한우로 681 |
| 36 | 충북 | 괴산증평 축산업협동조합 | 043-833-8870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2길 39 |
| | | | 043-838-2511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169 |
| 37 | 충북 | 보은옥천영동 축산업협동조합 | 043-542-2200 | 충북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 57 |
| | | | 043-733-0511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장로 25 |
| | | | 043-742-3871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62 |
| 38 | 충북 | 음성축산업협동조합 | 043-873-2586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99 |
| 39 | 충북 | 제천단양 축산업협동조합 | 043-640-3215 | 충북 제천시 청전대로 157 |
| 40 | 충북 | 진천축산농업협동조합 | 043-533-8100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로 53 |
| 41 | 충북 | 청주축산업협동조합 | 043-256-5569 |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92 |
| 42 | 충북 | 충북낙농업협동조합 | 043-215-9334 | 충북 청주시 청원군 북이면 장재2길 66-10 |
| 43 | 충북 | 충주축산업협동조합 | 043-850-7500 | 충북 충주시 예성로 256 |
| 44 | 대전 | 대전축산업협동조합 | 042-485-7541 | 대전시 서구 둔산로 50 |

| 연번 | 시도별 | 위탁기관명 | 전화번호 | 주 소 |
|---|---|---|---|---|
| 45 | 충남 | 세종공주<br>축산업협동조합 | 041-852-4664 | 충남 공주시 번영1로 42 |
| | | | 044-865-3555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장안로 47 |
| 46 | 충남 | 금산축산업협동조합 | 041-753-4051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오리정1길 48 |
| 47 | 충남 | 논산계룡<br>축산업협동조합 | 041-730-2239 | 충남 논산시 시민로 194번길 1 |
| 48 | 충남 | 당진낙농<br>축산업협동조합 | 041-350-8610 | 충남 당진시 원당로 183 |
| 49 | 충남 | 당진축산업협동조합 | 041-350-5555 | 충남 당진시 무수동7길 42 |
| 50 | 충남 | 대전세종충남<br>한우협동조합 | 041-633-0771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56번길 36 |
| 51 | 충남 | 대전충남우유농협<br>백제중앙간이지점 | 041-837-1010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69 |
| 52 | 충남 | 보령축산업협동조합 | 041-934-1554 | 충남 보령시 주공로 52-1 |
| 53 | 충남 | 부여축산업협동조합 | 041-832-2910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195 |
| 54 | 충남 | 서산축산업협동조합 | 041-665-7501 | 충남 서산시 음암면 운암로 141-13 |
| 55 | 충남 | 서천축산업협동조합 | 041-953-0057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160 |
| 56 | 충남 | 아산축산업협동조합 | 041-543-7551 | 충남 아산시 번영로 216번길 46 |
| 57 | 충남 | 예산축산업협동조합 | 041-332-3211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88 |
| 58 | 충남 | 천안공주낙농<br>축산업협동조합 | 041-856-2581 | 충남 공주시 신덕마을길 5 |
| 59 | 충남 | 천안축산업협동조합 | 041-520-6004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4로 8 |
| 60 | 충남 | 청양축산업협동조합 | 041-942-3111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224 |
| 61 | 충남 | 홍성낙농협동조합 | 041-633-0765 | 충남 홍성군 홍북면 홍학로 93 |
| 62 | 충남 | 홍성축산업협동조합 | 041-630-8500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131-1 |
| 63 | 전북 | (사)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 | 063-533-0841 | 전북 정읍시 명륜길 15-1 |
| 64 | 전북 | 고창부안<br>축산업협동조합 | 063-560-3000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14 |
| | | | 063-580-2490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65 |
| 65 | 전북 | 남원축산업협동조합 | 063-630-1100 | 전북 남원시 붕맛길 99 |
| 66 | 전북 | 동진강낙농축산업협동조합 | 063-547-8608~9 | 전북 김제시 도작로 26 |

| 연번 | 시도별 | 위탁기관명 | 전화번호 | 주 소 |
|---|---|---|---|---|
| 67 | 전북 |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 | 063-433-6002 |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73 |
| 68 | 전북 | 순정축산업협동조합 | 063-653-0441~3 | 전북 순창군 순창읍 신촌길 39 |
| 69 | 전북 | 익산군산<br>축산업협동조합 | 063-843-4103 | 전북 익산시 함라면 용산로 499 |
| 70 | 전북 | 임실축산업협동조합 | 063-640-3601 | 전북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6 |
| 71 | 전북 | 전북지리산<br>낙농농업협동조합 | 063-631-4541 | 전북 남원시 의총로 28 |
| 72 | 전북 | 전북한우협동조합 | 063-546-0500 | 전북 김제시 백산면 옥석길 2-11 |
| 73 | 전북 | 전주김제완주<br>축산업협동조합 | 063-240-2800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69 |
| | | | 063-240-4327 | 전북 김제시 남북로 218 |
| 74 | 광주 | 광주광역시<br>축산업협동조합 | 062-228-1081~7 | 광주시 광산구 상무대로 313 |
| 75 | 전남 | 강진완도<br>축산업협동조합 | 061-433-1521 | 전남 강진군 군동면 청자로 75-17 |
| | | | 061-553-7114 | 전남 완도군 고금면 고금동로 27 |
| 76 | 전남 | 고흥축산업협동조합 | 061-835-8600 | 전남 고흥군 고흥읍 봉동주공길 44 |
| 77 | 전남 | 곡성축산업협동조합 | 061-362-8001 |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3 |
| 78 | 전남 | 구례축산업협동조합 | 061-782-2603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48 |
| 79 | 전남 | 나주축산업협동조합 | 061-339-8000 | 전남 나주시 대호길 19 |
| 80 | 전남 | 담양축산업협동조합 | 061-380-5500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1길 4 |
| 81 | 전남 | 목포무안신안<br>축산업협동조합 | 061-452-8003 | 전남 무안군 무안읍 면성1길 38-1 |
| 82 | 전남 | 보성축산업협동조합 | 061-852-3451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신일길 1 |
| 83 | 전남 | 순천광양<br>축산업협동조합 | 061-722-3700 | 전남 순천시 용당삼산로 14 |
| 84 | 전남 | 여수축산업협동조합 | 061-686-3900 | 전남 여수시 소호로 638 |
| 85 | 전남 | 영광축산업협동조합 | 061-353-8011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4길 18 |
| 86 | 전남 | 영암축산업협동조합 | 061-473-0880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월출로 6 |
| 87 | 전남 | 장성축산업협동조합 | 061-393-6771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9 |
| 88 | 전남 | 장흥축산업협동조합 | 061-863-8631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대로 3244 |

| 연번 | 시도별 | 위탁기관명 | 전화번호 | 주 소 |
|---|---|---|---|---|
| 89 | 전남 | 전남광주한우협동조합 | 061-383-4548 |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680-4 |
| 90 | 전남 | 전남낙농업협동조합 | 061-742-6330~1 | 전남 순천시 우석로 108 |
| 91 | 전남 | 함평축산업협동조합 | 061-322-0061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서부길 42 |
| 92 | 전남 | 해남진도 축산업협동조합 | 061-534-9605 | 전남 해남군 해남읍 홍교로 64 |
| 93 | 전남 | 화순축산업협동조합 | 061-374-1470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145 |
| 94 | 대구 |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 053-384-0110 | 대구시 북구 유통단지로 130 |
| 95 | 대구 | 달성축산업협동조합 | 053-611-6205 | 대구시 달성군 현풍중앙로 61 |
| 96 | 대구 | 대구축산업협동조합 | 053-957-9901 | 대구시 동구 동북로 296 |
| 97 | 경북 | 경산축산업협동조합 | 053-811-0131 | 경북 경산시 남매로 251 |
| 98 | 경북 | 경주축산업협동조합 | 054-742-1981 | 경북 경주시 원화로 487 |
| 99 | 경북 | 고령성주 축산업협동조합 | 054-954-0722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벽화길 41-8 |
| | | | 054-931-0723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주천로 193-11 |
| 100 | 경북 | 구미칠곡 축산업협동조합 | 054-482-1376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선산대로 1560-5 |
| | | | 054-973-7891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68 |
| 101 | 경북 | 군위축산업협동조합 | 054-383-3341 | 경북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119 |
| 102 | 경북 | 김천축산업협동조합 | 054-433-2111 | 경북 김천시 자산로 192 |
| 103 | 경북 | 문경축산업협동조합 | 054-550-7400 | 경북 문경시 중앙로 166 |
| 104 | 경북 | 상주축산업협동조합 | 054-530-5100 | 경북 상주시 상산로 313 |
| 105 | 경북 | 안동봉화 축산업협동조합 | 054-840-7242 |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152 |
| | | | 054-673-6000 |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1길 62 |
| 106 | 경북 | 영덕울진 축산업협동조합 | 054-733-7130 |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영덕로 366 |
| | | | 054-783-1995 | 경북 울진군 내화면 내화로 672 |
| 107 | 경북 | 영주축산업협동조합 | 054-630-6700 | 경북 영주시 한정로 10 |
| 108 | 경북 | 영천축산업협동조합 | 054-333-1801 | 경북 영천시 호국로 17 |
| 109 | 경북 | 예천축산업협동조합 | 054-654-2327 | 경북 예천군 호명면 행복7길 10 |
| 110 | 경북 | 울릉농업협동조합 | 054-791-1005 | 경북 울릉군 도동3길 36 |

| 연번 | 시도별 | 위탁기관명 | 전화번호 | 주 소 |
|---|---|---|---|---|
| 111 | 경북 | 의성축산업협동조합 | 054-834-5600 |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7 |
| 112 | 경북 | 청도축산업협동조합 | 054-373-5001 |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서4길 1 |
| 113 | 경북 | 청송영양 축산업협동조합 | 054-873-1191 | 경북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266 |
| | | | 054-870-2632 |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43 |
| 114 | 경북 | 포항축산업협동조합 | 054-274-6111 |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241 |
| 115 | 부산 | 부산축산업협동조합 | 051-338-0505 | 부산시 북구 만덕3로 4 |
| 116 | 경남 | 울산축산업협동조합 | 052-274-1181 |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22 |
| 117 | 경남 | 거제축산업협동조합 | 055-639-1261 |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726 |
| 118 | 경남 | 거창축산업협동조합 | 055-943-9581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8길 32-25 |
| 119 | 경남 | 고성축산업협동조합 | 055-673-4661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3번길 65 |
| 120 | 경남 | 김해축산업협동조합 | 055-337-5711~20 | 경남 김해시 분성로 308번길 18 |
| 121 | 경남 | 남해축산업협동조합 | 055-862-2115 |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60-4 |
| 122 | 경남 | 밀양축산업협동조합 | 055-351-2711 | 경남 밀양시 중앙로 264 |
| 123 | 경남 | 사천축산업협동조합 | 055-851-5800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817 |
| 124 | 경남 | 양산축산업협동조합 | 055-383-7511 | 경남 양산시 북안남5길 11 |
| 125 | 경남 | 의령축산업협동조합 | 055-573-2624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20길 32 |
| 126 | 경남 | 진주축산업협동조합 | 055-758-9111 | 경남 진주시 동진로 213 |
| 127 | 경남 | 창녕축산업협동조합 | 055-533-8292 | 경남 창녕군 창녕읍 명덕로 68 |
| 128 | 경남 | 창원시축산업협동조합 | 055-294-3872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 12번길 46 |
| 129 | 경남 | 통영축산업협동조합 | 055-641-0511 | 경남 통영시 안개로 6 |
| 130 | 경남 | 하동축산업협동조합 | 055-882-8802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시장2길 17 |
| 131 | 경남 | 함안축산업협동조합 | 055-582-0082 |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48 |
| 132 | 경남 | 함양산청 축산업협동조합 | 055-964-0603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중앙길 7-9 |
| | | | 055-973-4500 | 경남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21 |
| 133 | 경남 | 합천축산업협동조합 | 055-933-0050 | 경남 합천읍 동서로 96 |
| 134 | 제주 |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 | 064-730-4446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
| 135 | 제주 |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064-750-185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 41 |

## 2 모바일앱 매뉴얼(농장경영자, 식육판매장)

〈 앱 설치 방법 〉

〈 회원가입 공통사항 〉

① 회원가입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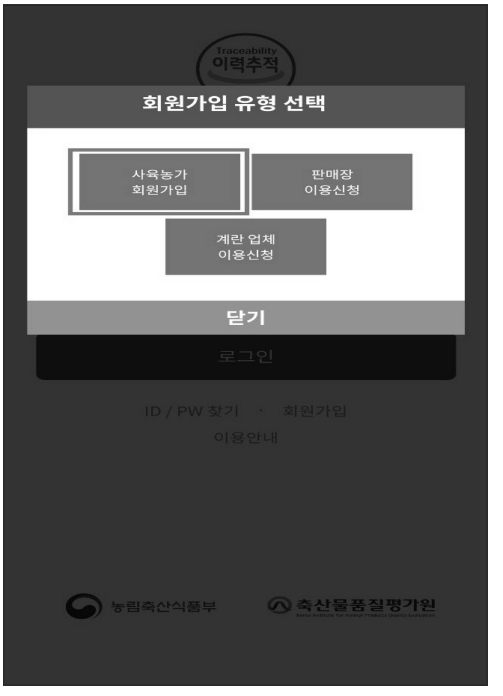


② 소 사육농가 / 판매장 선택

## 1. 소 농장경영자용

### 주요기능

- 소의 출생, 양도·양수, 폐사신고(증빙사진 첨부) 기능
- 사육 개체현황 조회
- 등급판정 결과 조회 및 전국현황 비교
- 신고정보 조회 및 사육월령 경과개체 확인 등

### 설치 및 이용방법

〈영상자료〉

①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아이폰 앱 스토어 "**축산물이력제 신고**"로 검색하여 설치
② 회원가입
③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
④ 메인화면 우측상단 메뉴 활용

※ 메뉴 구성 : 농장정보, 사육현황, 신고현황, 출생 등 신고, 나의정보, 구제역백신접종현황, 도축현황, 기한외신고현황, 인공수정정보, 소가족이력, 오류추정개체, 기관안내, 알림메시지

〈 회원가입 〉

① 약관동의

② 정보입력 후 SMS본인 인증

③ 아이디, 비번입력 후 확인

## 〈 로그인 〉

## 〈 사육현황 〉

## 〈 도축현황 〉

## 〈 출생신고 〉

① 출생두수 선택 후 "모개체검색" 버튼 클릭

② 모개체 선택

③ "출생신고" 버튼 클릭하면 신고 완료

## 〈 양도신고 〉

① "양도개체검색" 버튼 클릭하여 양도개체 선택

② 양도정보 입력 후 "양도신고"버튼 클릭하면 신고완료

## 〈 양수신고 〉

① "양수개체검색"버튼 클릭하여 선택 후 "양수신고"버튼 클릭하여 신고완료

〈 폐사신고 〉

① “폐사개체검색” 버튼 클릭하여 해당개체선택

② 폐사정보 입력

③ “파일추가” 버튼 클릭하여 증빙사진 첨부 후 “폐사신고” 클릭하면 신고 완료

## 신고 확인 방법(위탁기관)

①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의 “접수대장관리” 메뉴 클릭하면 접수내역 조회되며, 우측 “수정”버튼을 클릭하면 세부내역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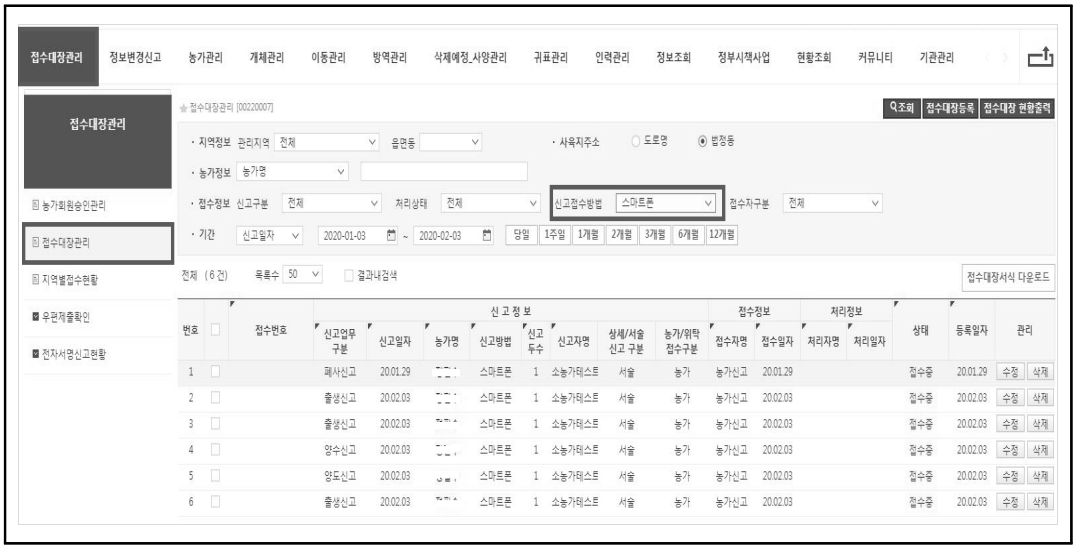


② 세부내역 화면에서 신고내역 및 증빙사진 등 첨부파일 확인

## 2. 식육판매업소용

### ▢ 주요기능

- ○ 국내산 축산물의 거래내역서 전산관리

### ▢ 설치 및 이용방법

①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아이폰 앱 스토어 “이력제 신고” 검색하여 설치

② 회원가입

③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

④ 매입신고(일괄등록, QR코드 입력, 수동등록)

〈 회원가입 〉

① 사업장 정보 입력

② 사용자 정보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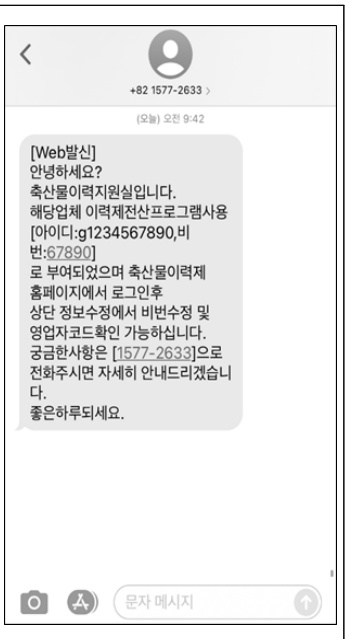


③ 모바일 문자 아이디 확인 및 비밀번호 설정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수정)

## 〈 매입신고_일괄매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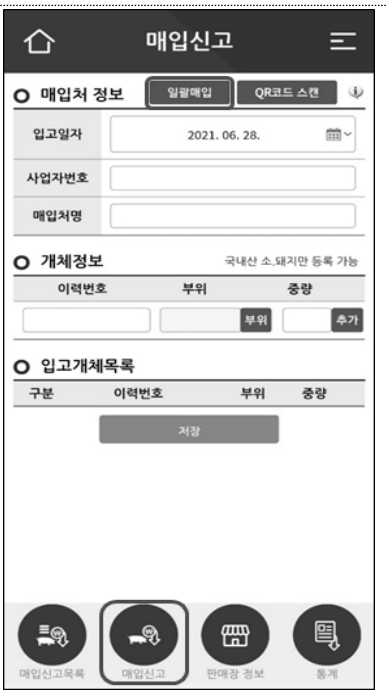


① 일괄매입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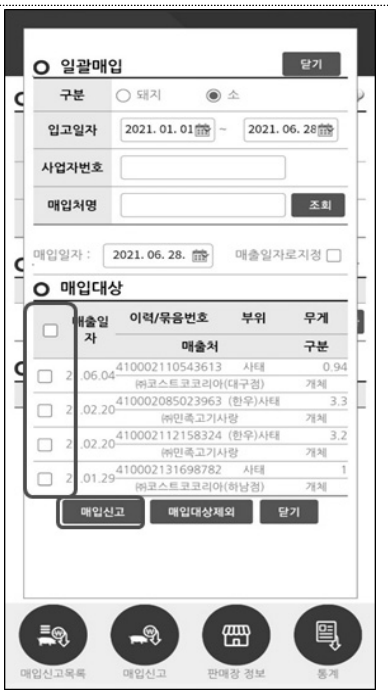


② 일괄매입 대기 건 체크 후 매입신고 선택

## 〈 매입신고_QR코드스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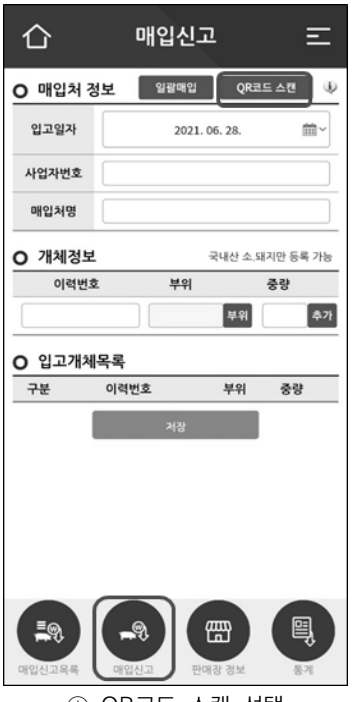


① QR코드 스캔 선택

② “거래명세표” 또는 “등급판정확인서(지육매입)” QR코드 스캔

〈 매입신고_수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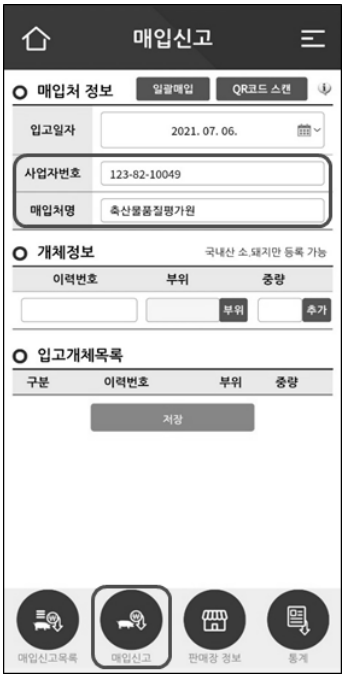


① “사업자번호” 및 “매입처명” 입력

② “이력번호”, “부위”, “중량” 입력

③ 정보 확인 후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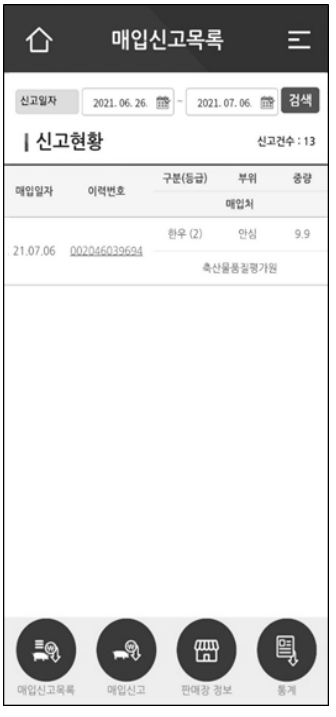


④ 매입신고내역 확인

## 3 축산물이력제 데이터랩 이용방법

### ▢ 주요기능

- 소 이력정보를 파일로 다운로드
- 간편조회 서비스(출생, 사육, 폐사, 도축)

### ▢ 개방범위

- 기 준 일 : '15년 1월 ~ 전월
- 개방항목 : 6개 영역(사육, 출생, 폐사, 이동, 도축, 통합)

| 구분(데이터셋) | | 개방항목 |
|---|---|---|
| 시도 / 시군별 | 사육두수 | 시도, 시군, 소의종류, 성별(암/수), 사육개월령(20이하 40이상), 사육두수 |
| | 출생두수 | 시도, 시군, 소의종류, 성별(암/수), 출생년월, 두수 |
| | 폐사두수 | 시도, 시군, 소의종류, 성별(암/수/거세), 폐사개월령, 폐사년월, 폐사사유, 폐사두수 |
| | 이동두수 | 시도, 시군, 소의종류, 성별(암/수/거세), 이동년월, 양도두수, 양수두수 |
| | 도축두수 | 시도, 시군, 소의종류, 성별(암/수/거세), 도축개월령(20이하 40이상), 육질등급, 평균도체중량, 도축두수 |
| 농장별 | 통합 | 시도, 농장구분(비식별화), 소의종류, 성별(암/수), 사육/출생/폐사/이동/도축두수<br>※ 시도별 사육두수 상위2% 농장 사육두수 평균으로 표시 |

※ 성별(암, 수) : 수는 거세포함

※ 개월령(20이하 40이상) : 20개월령 이하, 21~39개월령, 40개월령 이상으로 표시

※ 개방 항목은 향후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화면 구성은 편의성 제공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음

## 분석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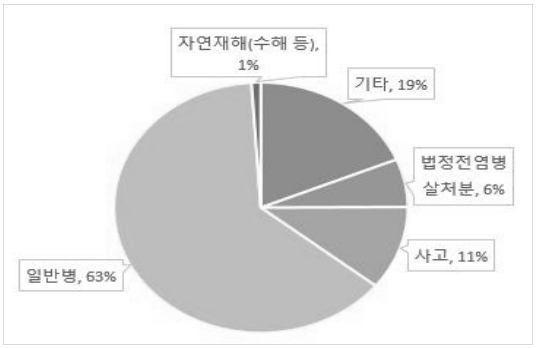


〈폐사원인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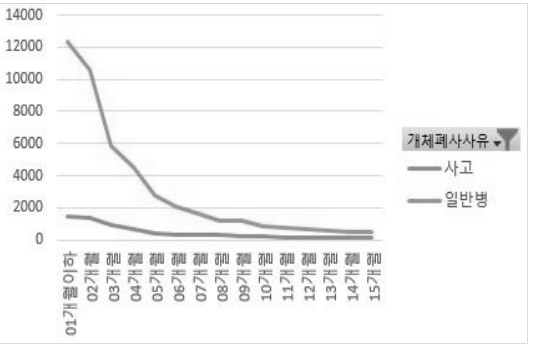


〈사육 개월령별 폐사원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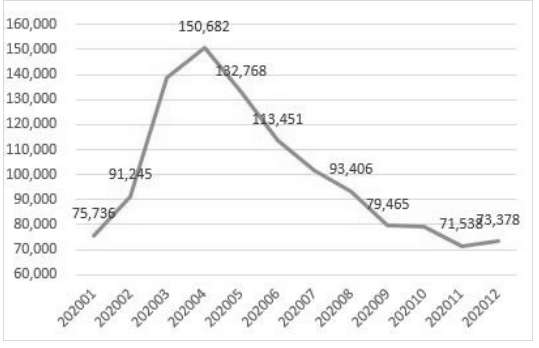


〈월별 출생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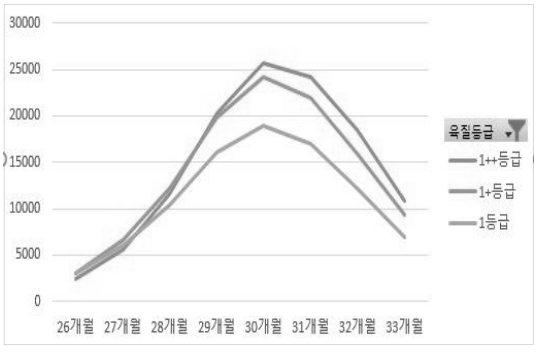


〈도축 개월령별 등급출현 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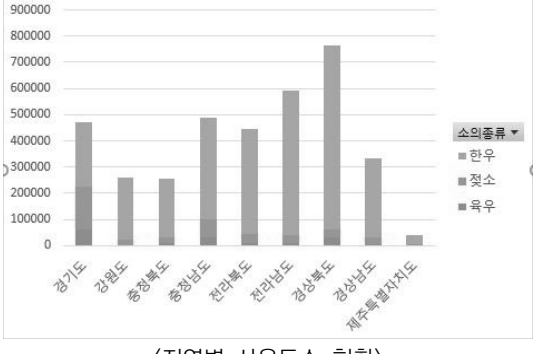


〈지역별 사육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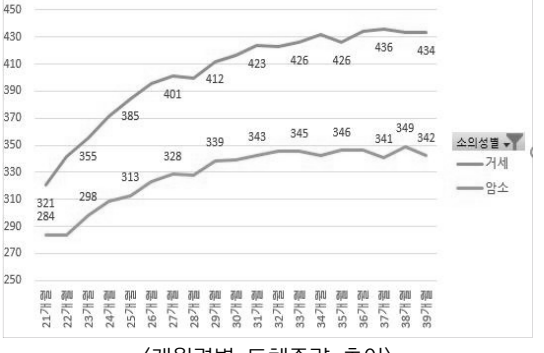


〈개월령별 도체중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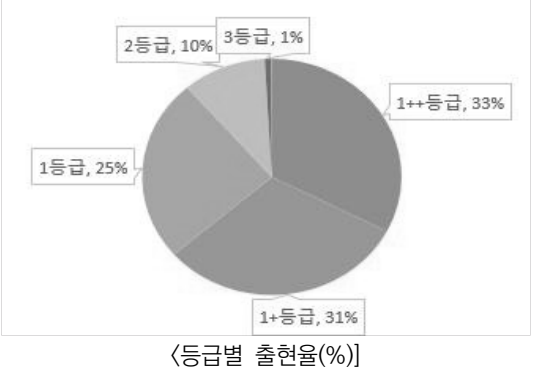


〈등급별 출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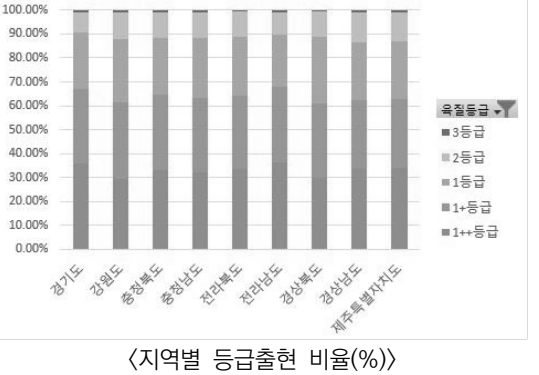


〈지역별 등급출현 비율(%)〉

# 축산물이력제 데이터랩 이용 방법

〈영상자료〉

축산물이력제 데이터랩은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여 엑셀파일(CSV)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소 출생, 사육, 폐사, 이동, 도축등 45종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엑셀의 피벗 테이블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화면은 예시로, 실제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개방시스템 이용방법

① 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접속 후 상단 “데이터랩” 클릭

② 축산물이력제 데이터랩 화면에서 필요한 데이터 검색 후 선택(엑셀파일 저장)

## 엑셀 피벗 테이블 이용방법

① 시트에서 데이터 선택 후 “삽입/피벗테이블” 버튼 클릭

② “피벗 테이블 만들기” 창에서 “확인” 버튼 클릭

| | A | B | C | D | E | F |
|---|---|---|---|---|---|---|
| 1 | 시도명 | 시군명 | 소의종류 | 소의성별 | 출생일자 | 출생두수 |
| 2 | 강원도 | 강릉시 | 육우 | 수소 | 20200110 | 2 |
| 3 | 강원도 | 강릉시 | 육우 | 수소 | 20200112 | 1 |
| 4 | 강원도 | 강릉시 | 육우 | 수소 | 20200113 | 2 |
| 5 | 강원도 | 강릉시 | 육우 | 수소 | 20200116 | 1 |
| 6 | 강원도 | 강릉시 | 육우 | 수소 | 20200120 | 1 |
| 7 | 강원도 | 강릉시 | 육우 | 수소 | 20200126 | 1 |
| 8 | 강원도 | 강릉시 | 육우 | 수소 | 20200130 | 1 |
| 9 | 강원도 | 강릉시 | 육우 | 수소 | 20200201 | 1 |
| 10 | 강원도 | 강릉시 | 육우 | 수소 | 20200202 | 2 |
| 11 | 강원도 | 강릉시 | 육우 | 수소 | 20200213 | 1 |
| 12 | 강원도 | 강릉시 | 육우 | 수소 | 20200214 | 1 |
| 13 | 강원도 | 강릉시 | 육우 | 수소 | 20200215 | 1 |
| 14 | 강원도 | 강릉시 | 육우 | 수소 | 20200229 | 1 |
| 15 | 강원도 | 강릉시 | 육우 | 수소 | 20200301 |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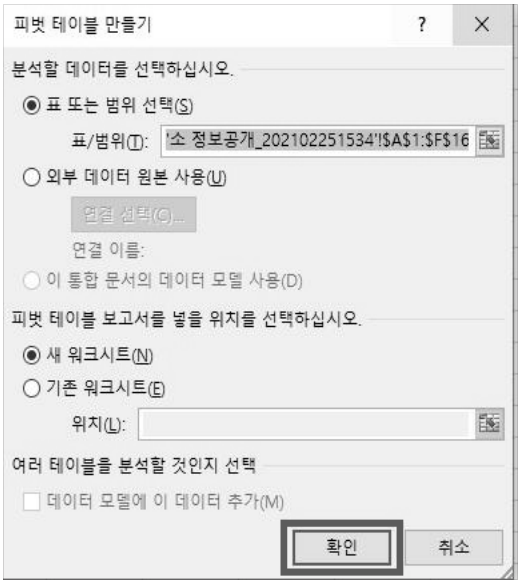


③ 해당 항목(필드)을 행, 열, 값에 이동하여 통계분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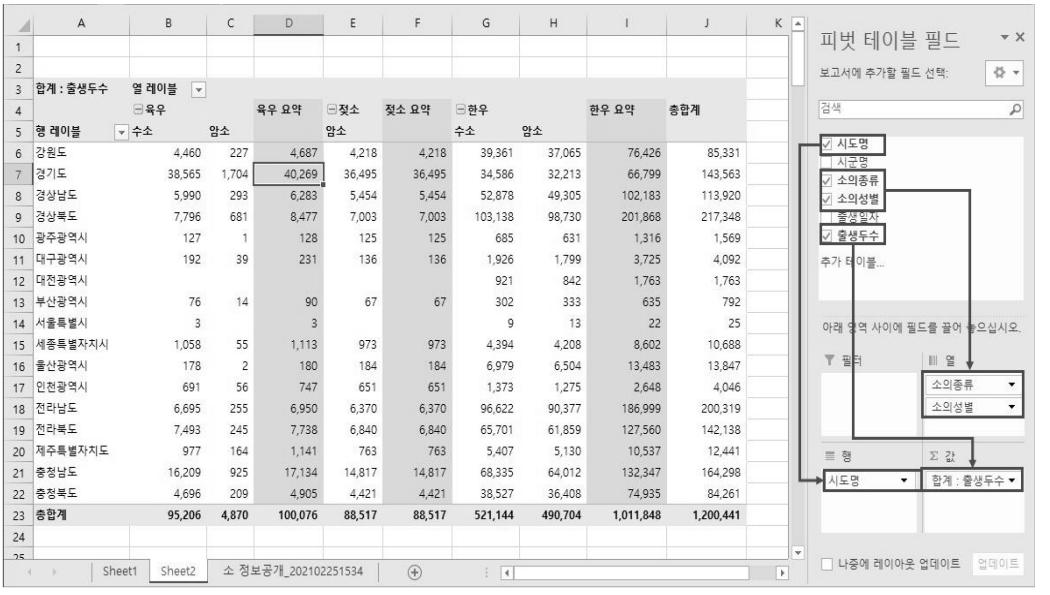


|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
| 3 | 합계 : 출생두수 | 열 레이블 | | | | | | | | |
| 4 | | 육우 | | 육우 요약 | 젖소 | 젖소 요약 | 한우 | | 한우 요약 | 총합계 |
| 5 | 행 레이블 | 수소 | 암소 | | 암소 | | 수소 | 암소 | | |
| 6 | 강원도 | 4,460 | 227 | 4,687 | 4,218 | 4,218 | 39,361 | 37,065 | 76,426 | 85,331 |
| 7 | 경기도 | 38,565 | 1,704 | 40,269 | 36,495 | 36,495 | 34,586 | 32,213 | 66,799 | 143,563 |
| 8 | 경상남도 | 5,990 | 293 | 6,283 | 5,454 | 5,454 | 52,878 | 49,305 | 102,183 | 113,920 |
| 9 | 경상북도 | 7,796 | 681 | 8,477 | 7,003 | 7,003 | 103,138 | 98,730 | 201,868 | 217,348 |
| 10 | 광주광역시 | 127 | 1 | 128 | 125 | 125 | 685 | 631 | 1,316 | 1,569 |
| 11 | 대구광역시 | 192 | 39 | 231 | 136 | 136 | 1,926 | 1,799 | 3,725 | 4,092 |
| 12 | 대전광역시 | | | | | | 921 | 842 | 1,763 | 1,763 |
| 13 | 부산광역시 | 76 | 14 | 90 | 67 | 67 | 302 | 333 | 635 | 792 |
| 14 | 서울특별시 | 3 | | 3 | | | 9 | 13 | 22 | 25 |
| 15 | 세종특별자치시 | 1,058 | 55 | 1,113 | 973 | 973 | 4,394 | 4,208 | 8,602 | 10,688 |
| 16 | 울산광역시 | 178 | 2 | 180 | 184 | 184 | 6,979 | 6,504 | 13,483 | 13,847 |
| 17 | 인천광역시 | 691 | 56 | 747 | 651 | 651 | 1,373 | 1,275 | 2,648 | 4,046 |
| 18 | 전라남도 | 6,695 | 255 | 6,950 | 6,370 | 6,370 | 96,622 | 90,377 | 186,999 | 200,319 |
| 19 | 전라북도 | 7,493 | 245 | 7,738 | 6,840 | 6,840 | 65,701 | 61,859 | 127,560 | 142,138 |
| 20 | 제주특별자치도 | 977 | 164 | 1,141 | 763 | 763 | 5,407 | 5,130 | 10,537 | 12,441 |
| 21 | 충청남도 | 16,209 | 925 | 17,134 | 14,817 | 14,817 | 68,335 | 64,012 | 132,347 | 164,298 |
| 22 | 충청북도 | 4,696 | 209 | 4,905 | 4,421 | 4,421 | 38,527 | 36,408 | 74,935 | 84,261 |
| 23 | 총합계 | 95,206 | 4,870 | 100,076 | 88,517 | 88,517 | 521,144 | 490,704 | 1,011,848 | 1,200,441 |

〈 매입신고_수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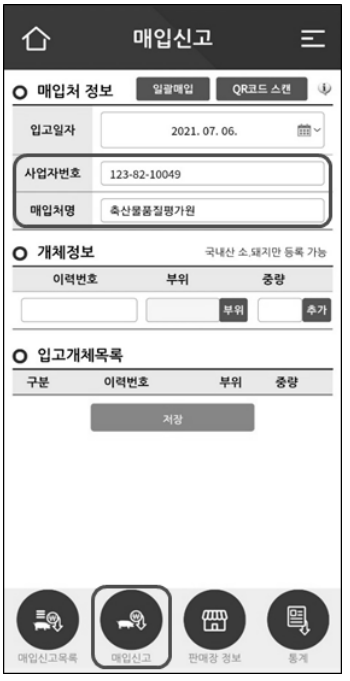


① “사업자번호” 및 “매입처명” 입력

② “이력번호”, “부위”, “중량” 입력

③ 정보 확인 후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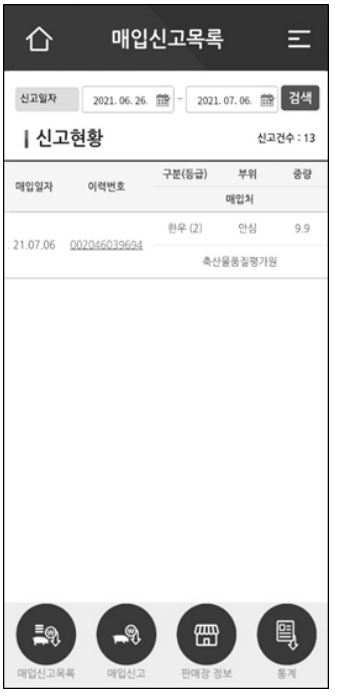


④ 매입신고내역 확인

VI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시행령 별표
-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 검사방법
-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한우판별 요령(한국종축개량협회)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제정 2007. 12. 21. 법률 제 8755호 | 제정 2008. 12. 9. 대통령령 제21157호 | 제정 2008. 12. 19.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43호 |
| 타법개정 2010. 1. 25. 법률 제 9952호 | 제정 2008. 12. 9. 대통령령 제21157호 | 타법개정 2009. 4. 3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68호 |
| 타법개정 2010. 5. 25. 법률 제10310호 | 타법개정 2010. 11. 19. 대통령령 제22497호 | 타법개정 2010. 10. 12.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1호 |
| 전부개정 2010. 5. 25. 법률 제10311호 | 전부개정 2010. 12. 20. 대통령령 제22533호 | 전부개정 2010. 12. 22.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9호 |
| 전부개정 2010. 5. 25. 법률 제10311호 | 타법개정 2011. 6. 7. 대통령령 제22962호 | 타법개정 2011. 6. 1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4호 |
|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 | 전부개정 2010. 12. 22.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9호 |
| 일부개정 2012. 5. 23. 법률 제11431호 | 타법개정 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2011. 6. 1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4호 |
| 전부개정 2013. 12. 27. 법률 제12119호 | 타법개정 2014. 1. 28. 대통령령 제25133호 | 타법개정 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1호 |
| 일부개정 2014. 10. 15. 법률 제12813호 | 전부개정 2014. 12. 26. 대통령령 제25891호 | 타법개정 2014. 8. 2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4호 |
| 일부개정 2016. 12. 27. 법률 제14478호 | 타법개정 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6호 | 전부개정 2014. 12. 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0호 |
| 일부개정 2016. 12. 27. 법률 제14478호 | 타법개정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2015. 2.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6호 |
| 일부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14호 | 일부개정 2017. 6. 27. 대통령령 제28153호 | 일부개정 2016. 1. 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9호 |
| 일부개정 2020. 2. 11. 법률 제16960호 | 타법개정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 타법개정 2016. 1. 1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2호 |
| 일부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14호 | 일부개정 2019. 12. 17. 대통령령 제30247호 | 타법개정 2017. 1.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
| 일부개정 2019. 8. 27. 법률 제16536호 | | 일부개정 2017. 6. 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3호 |
| 타법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4호 | | 일부개정 2018. 11.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1호 |
| 타법개정 2021. 8. 17. 법률 제18445호 | | 일부개정 2018. 11.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1호 |
| 타법개정 2022. 4. 26. 법률 제18853호 | | 타법개정 2018. 12.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6호 |
| | | 타법개정 2019. 8. 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
| | | 일부개정 2019. 12. 3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4호 |
| | | 일부개정 2022. 1. 2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7호 |
| | | 타법개정 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 |
| **제1장 총 칙**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 2020. 2. 11., 2020. 5. 19.〉<br>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br>2.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br>3.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br>4. "이력관리대상가축"이란 소, 돼지, 닭, 오리를 말한다.<br>5. "종돈"이란 「축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를 말한다.<br>5의2. "씨알"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자의 사육시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닭 또는 | | 제2조(종돈의 범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란 「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종축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돼지를 말한다.<br>1.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종축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등록되거나 고등(高等)등록된 돼지<br>2.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이 확인된 번식용 씨돼지<br><br>제2조의2(씨알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5호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닭 또는 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화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로서 다음 각 호의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을 말한다.<br>6. “농장식별번호”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이하 “가축사육시설”이라 한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br>7. “개체식별번호”란 소, 돼지(종돈에 한정한다)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br>8.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말한다.<br>가. 국내산이력축산물<br>1)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枝肉: 도살하여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정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br>1. 종계·종오리의 알<br>2. 「축산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 중 종오리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종오리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숫오리와 산란용 씨암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br>3.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 중 양계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br>[본조신설 2019. 12. 31.]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2)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계란 중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br>나.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br>9. “이력번호”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br>10. “귀표등”이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 등으로 기재하여 귀나 그 밖의 곳에 붙이거나 표시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 등을 말한다.<br>11. “수입유통식별표”란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번호 및 수입산이력축산물 관련 정보를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 | 제3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부산물) 법 제2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별표 1과 같다.<br><br>제4조 삭제 〈2017. 6. 28.〉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포함한다]로 기재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포장박스 등 포장에 붙일 수 있도록 제작한 표를 말한다.<br>12. 삭제 〈2016. 12. 27.〉<br>13. "수입"이란 외국 가축이나 축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말한다.<br>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축산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다. | |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 |
| **제2장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 | | |
| **제1절 사육단계의 이력관리** | | |
| 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 ①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 | 제5조(농장식별번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이력관리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을 신청하여야 한다.<br>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식별할 수 있는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농장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는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의 방법, 절차 및 기한, 부여 방법, 부여대상 범위,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 | 대상가축의 사육을 시작하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소, 돼지는 별지 제1호서식, 닭, 오리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에 축산업 허가신청서 사본(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축산업 등록신청서 사본(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의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1., 2019. 12. 31., 2022. 1. 25.〉<br>1. 삭제 〈2022. 1. 25.〉<br>2. 삭제 〈2022. 1. 25.〉<br>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산업 허가증(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축산업 등록증(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 |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 11. 21., 2022. 1. 25.〉<br>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원장은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이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이라 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1.〉<br>④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1.〉<br>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농장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11. 21.〉 |
| 제5조(출생 등의 신고) ① 농장경영자[닭, 오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 | | 제6조(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농장경영자[닭, 오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른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5. 26.〉<br>1. 소, 종돈이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하는 경우<br>2. 소, 종돈이 폐사한 경우<br>3.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양도(도축을 위한 출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양수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시킨 경우<br>4.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는 경우<br>5.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출하는 경우<br>6.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가축시장에서 거래 | |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른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폐사, 양도·양수·이동 또는 수입·수출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이 있는 경우에는 소는 위탁기관의 장에게, 종돈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종돈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닭, 오리 및 씨알(「축산법」 제29조에 따라 수출입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영 제12조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 씨알(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에 신고하는 종축 등은 제외한다)은 품질평가원장의 장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br>1. 소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하는 경우<br>7.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가축거래상인에게 거래하는 경우<br>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절차·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2. 종돈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br>3.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br>4. 닭, 오리, 씨알의 경우<br>가. 수입, 수출의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br>나. 양도, 양수, 이동 및 입란의 경우: 별지 제5호의3서식<br>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여야 한다.<br>1. 출생·폐사 신고: 출생·폐사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종돈의 폐사는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br>2. 양도·양수·이동 신고: 양도·양수·이동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br>3. 수입·수출 신고: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br>③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가축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거래가 완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 | 료된 다음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품질평가원장이 정하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br>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및 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br>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및 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br>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제6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제7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br><br>제8조(귀표등의 부착기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소 또는 종돈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로서 그 기한 전에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이동 전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br>1. 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 출생 신고 후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br>2. 등록된 종돈의 경우: 종돈 등록 후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br>3. 수입 신고된 소 또는 종돈의 경우: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br>② 출생 신고된 소의 농장경영자가 고령(高齡) 등으로 귀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귀표등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 | 다음 각 호의 사육지역에서는 90일) 이내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br>1.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제외한다)<br>2. 소를 방목하여 사육하는 소 방목 사육지<br>③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표등의 규격·부착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
| 제7조(귀표등의 부착 등) ① 제6조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되는 소 또는 종돈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br>② 농장경영자, 소 또는 종돈을 수입하는 자 등은 소, 종돈의 귀표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을 새로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br>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표등의 규격과 부착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
| 제8조(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돼지를 기 | | 제9조(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관리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돼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br>1.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돼지<br>2.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돼지<br>② 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③ 제1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br>1.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br>2. 출생 후 3개월 이내의 돼지인 경우. 다만, 페인트를 이용하는 등 임시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br>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br>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br><br>제10조(돼지의 사육현황 신고) ①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서를 해당 월의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돈을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 | 종돈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
| 제8조의2(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닭, 오리의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이하 "가금이동신고서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br>1.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닭, 오리<br>2.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닭, 오리, 씨알<br>3. 가축거래상인에게 판매하는 닭, 오리<br>② 농장경영자는 매월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③ 제1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 | | 제10조의2(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 25.〉<br>1.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br>2. 닭, 오리의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이하 "가금이동신고서등"이라 한다)이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훼손되어 농장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br>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br>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가금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6의2와 같다.<br>③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닭, 오리를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8. 12. 31.] | |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육현황 신고서를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br>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6의3과 같다.<br>[본조신설 2019. 12. 31.] |
| 제9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소, 종돈에 붙여진 귀표등 또는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11.〉<br>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1.〉<br>1.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이 붙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 제2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의 예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br>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br>2.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곤란한 소나 종돈<br>2.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 | |
| 제9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8조의2에 따라 닭, 오리, 씨알에 대한 가금이동신고서등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변조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아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닭, 오리, 씨알을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농장식별번호 부여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1. 가금이동신고서등이 없는 닭, 오리, 씨알<br>2.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닭, 오리, 씨알<br>[본조신설 2018. 12. 31.] | 제2조의2(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의 예외)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농장식별번호 부여 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br>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br>2.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br>3.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닭 또는 오리 사육업인 경우<br>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br>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 제10조의3(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금지 등) 영 제2조의2제4호에서 “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나목(2)(가)12)에 따라 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br>[본조신설 2019. 12. 31.]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 에 따라 닭 또는 오리를 자가소비하기 위하여 양도·양수 또는 이동하는 경우<br>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닭 또는 오리를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br>[본조신설 2019. 12. 17.] | |
| **제2절 도축단계의 이력관리** | | |
| 제10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2020. 2. 11.〉<br>1. 귀표등이 붙어 있지 아니한 소 또는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돼지<br>2. 귀표등 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소, 돼지<br>3.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 종돈 또는 | | 제11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6. 28.〉<br>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등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br>2. 잉크 번짐 등으로 돼지에 표시한 농장식별번호 표시의 확인이 곤란하나, 제6조에 따른 신고서를 통하여 해당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br>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같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 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 닭, 오리<br>② 도축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이 도축 의뢰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검사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br>③ 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신고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11조(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① 도축업자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거나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돼지, 닭, 오리를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br>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력번호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 | 제12조(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 ①「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도축 또는 경매가 완료된 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br>② 도축업자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축산물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③「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그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이력번호를 기재한 도축검사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br>④「축산법」 제40조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력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축산물의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br>⑤ 도축업자는 도축한 이력관리대상가축에게서 얻은 국내산이력축산물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br>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신고방법 및 기한 등과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축검사신청서를 작성할 때 귀표등의 부착,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br>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br><br>제13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① 도축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br>1. 돼지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br>2. 닭, 오리의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br>②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 | 제14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와 같다. |
| 제11조의2(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관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란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br>1.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는 계란<br>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계란<br>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라 한다)가 제1항의 계란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br>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br>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농장 및 「동 | 제2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종류의 영업"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 수집판매업(이하 "식용란수집판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br>[본조신설 2019. 12. 17.] | 제14조의2(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계란을 거래하려는 법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및 거래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계란의 선별포장 및 거래가 완료된 날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신고방법 등은 별표 9의2와 같다.<br>[본조신설 2019. 12. 31.]<br><br>제14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①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법 제11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계란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물보호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으로서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고를 한 자<br>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br>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력번호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④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계란 포장지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br>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력번호 발급 및 표시 등을 위하여 계란을 운송하는 경우 농장식별번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난좌(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판매 | | 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계란 이력번호 발급 신청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br>②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발급신청 시 이력번호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농장식별번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br>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9의3과 같다.<br>[본조신설 2019. 12. 31.]<br><br>제14조의4(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범위) 법 11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용란수집판매업자”라 한다)로서 가축사육시설에서 생산한 계란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계란의 이력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거나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2020. 5. 19.〉<br>⑥ 「축산법」 제40조에 따라 계란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력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계란의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br>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신고방법 및 기한 등과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br>[본조신설 2018. 12. 31.] | | 번호 발급을 신청한 자(사육하는 닭의 수가 1만 마리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br>[본조신설 2019. 12. 31.] |
| | | 제14조의5(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의4와 같다.<br>②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라 해당 영업자가 발급해야 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말한다.<br>③ 법 제11조의2제5항에서 "농장식별번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장식별번호를 말한다.<br>[본조신설 2019. 12. 31.] |
| **제3절 수입단계의 이력관리** | | |
| 제12조(이력번호의 신청)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 | 제15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 신청)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라 한다)가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수입신고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br>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절차,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수입신고 전까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8., 2018. 11. 21.〉<br>②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
| 제13조(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력번호가 신청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br>② 제1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통보받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 | | 제16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11과 같다.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업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수입산이력 축산물에 그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2. 11.〉<br>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
| 제14조(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 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13조에 따라 부여받은 이력번호를 표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br>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교부할 때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 | |
| 제15조(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변조 및 훼손 | 제3조(수입유통식별표 부착 등의 예외) 법 제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붙여진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2. 11.〉<br>② 누구든지 수입유통식별표가 붙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2. 27., 2020. 2. 11.〉<br>③ 판매 또는 영업 등의 목적으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소유·관리하는 자(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는 제외한다)는 수입유통식별표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 15조제2항 단서에서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br>1.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수입된 경우<br>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br>3. 자사(自社)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된 경우. 다만, 포장육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는 제외한다.<br>4. 그 밖에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상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
| 제16조(거래신고 등) ① 수입식품등 수입·판 | | 제17조(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의 거래신고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매업자는 수입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br>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절차·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br><br>**제4절 유통·판매단계의 이력관리** | | 등) 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수출의 거래 신고를 하려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8.〉<br>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 또는 수출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br>③ 제1항에 따라 거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④ 제1항에 따른 거래 신고의 내용과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br>[제목개정 2017. 6. 28.]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제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에 한정한다)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br>②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br>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4조(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7. 6. 27., 2019. 12. 17.〉<br>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br>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나목에 따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br>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br>4. 식용란수집판매업<br>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1에 따른 신고 의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9. 12. 17.〉<br>[시행일:2015. 6. 28.] 제4조제1호(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자에 관한 사항과 쇠고기를 취급하는 자의 거래신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조제2호라목, 제4조제2호마목<br><br>제5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 대상자)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수입산이력축산물(부산물은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 | 제18조(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 · 절차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 한다)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라 한다)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2019. 12. 31.〉<br>1.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br>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별지 제10호서식<br>나. 계란: 별지 제10호의2서식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br>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영업장 면적이 700제곱미터 이상인 자<br>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자<br>3.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의 신고를 한 자 중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br>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br>[시행일:2015. 6. 28.] 제5조 | 2.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br>②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를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품질평가원장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br>③ 식육포장처리업자 · 식육판매업자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한(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하여야 한다.<br>1. 거래 신고: 거래한 날부터 5일 이내<br>2. 포장처리 신고: 포장처리한 날부터 5일 이내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 | 3. 판매 신고: 판매한 날부터 5일 이내<br>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되,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br>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신고서의 기록·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
| 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br>② 제1항의 경우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하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하나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 제6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의무자 등) ①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br>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범위는 부산물을 제외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로 한다. 〈개정 2019. 12. 17.〉<br>[제목개정 2019. 12. 17.] | 제19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br>②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은 별표 14와 같다.<br><br>제20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6. 28., 2019. 12. 31.〉<br>1. 식육포장처리업자<br>2. 식육판매업자<br>3.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다수의 이력번호이거나 이력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br>③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br>④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이하 "식품접객업자"라 한다)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이하 "집단급식소운영자"라 한다)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영업장이나 제품, 인터넷 등에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범위는 대 | | 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br>5.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br>5의2.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br>5의3. 식용란수집판매업자<br>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이하 "식품접객업자"라 한다)<br>7.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이하 "집단급식소운영자"라 한다)<br>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br>9. 이력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br>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8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라 해당 영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7. 6. 28.〉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br>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제21조(식품접객업자 등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
| **제3장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 관리** | | |
| 제19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였거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 이력축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2. 11.〉<br>1. 농장식별번호<br>2. 개체식별번호<br>3. 이력번호<br>4. 출생 또는 수입 연월일<br>5. 암수 구분<br>6. 수입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은 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수입한 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 | 제22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등) ① 법 제19조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6. 28., 2019. 8. 26., 2019. 12. 31.〉<br>1. 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및 수입소로 구분한다)<br>2. 종돈의 종류<br>3. 소, 종돈의 부모(父母) 개체식별번호<br>4. 소, 종돈의 폐사 및 미사육(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사육기록을 삭제한 경우를 말한다) 내역<br>5.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양도 · 양수 · 이동 내역<br>6. 돼지의 종류(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 비육돈으로 구분한다)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br>7.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br>8. 농장경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br>9. 도축업자의 경매에 따른 거래내역<br>10.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 및 변경내역<br>11.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내역<br>12. 돼지, 닭, 오리 사육시설의 사육두수(돼지의 경우 암수 구분)<br>12의2. 닭, 오리 사육시설의 씨알 개수<br>13. 삭제 〈2016. 12. 27.〉<br>14. 그 밖에 축산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br><br>**제20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유통식별대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2. 11., 2021. 8. 17.〉 | | 6의2. 닭의 종류(육계, 산란계, 토종닭으로 구분한다)<br>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 합격 여부<br>8.「축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도체 등급판정 결과<br>9.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br>9의2.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명칭(상호) 및 주소<br>9의3.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명칭(상호) 및 주소<br>10. 소의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중량<br>11. 소·종돈의 구제역 백신 접종여부<br>12. 소의 브루셀라병·결핵병 검사결과<br>1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br>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의 종류 중 한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축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른다.<br><br>**제23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법 제20조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1. 이력번호<br>2. 수입연월일 및 소비기한(수입 이전 도축일 및 식육포장처리일과 소비기한의 만료일)<br>3. 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br>4. 거래품명<br>5. 상대국 도축장명(가공장명)<br>6.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br>7. 제16조에 따른 거래 및 변경 내역<br>8.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내역<br>9. 삭제 〈2016. 12. 27.〉<br>10. 그 밖에 축산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6. 28., 2019. 8. 26.〉<br>1. 선하증권번호(bill of lading No.)<br>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번호<br>3. 검사장소 및 입고일<br>4. 총 수량 및 무게(부위별 수량 및 무게를 포함한다)<br>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및 검사일<br>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 제21조(식별대장의 관리 및 수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가축및 축산물식별대장 및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식별대장"이라 한다)을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처리방식(이에 준하 | 제7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보존기간)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 제24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 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이라 한다)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는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하여 둘 수 있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br>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에 기초하여 식별대장의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br>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별대장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br>④ 농장경영자, 도축업자 등 관계자는 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br>1.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 씨알(제3호와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한다)의 경우]: 품질평가원장<br>2. 수입유통식별대장: 검역본부장<br>3.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의 수입신고의 경우): 종축등의수출입신고기관의 장<br>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식별대장”이라 한다)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요구서에 기록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의 경우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br>1.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돼지(종돈 제외)의 경우]: 품질평가원장<br>2.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종돈의 경우): 종돈등록기관의 장<br>3. 수입유통식별대장: 검역본부장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제22조(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의 조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별대장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된 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br>③ 농장경영자, 도축업자 등 관계자는 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br>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록에 대한 수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br><br>**제4장 지도 · 감독**<br><br>제23조(시정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 개설자,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 2019. 8. 27.〉 | | |
| 제24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해당 가축사육시설,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 | 제25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8. 27.〉<br>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 2019. 8. 27.〉<br>③ 농장경영자, 가축의 소유자,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도축업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 그 밖의 |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br>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br>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
| **제5장 보칙** | | |
| 제25조(이력정보의 공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관리대상가축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br>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력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br>③ 이 법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방역의 | 제8조(이력관리대상가축·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가축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7., 2019. 7. 2., 2019. 12. 17.〉<br>1. 농장식별번호<br>2. 소·종돈의 개체식별번호<br>3. 이력번호<br>4. 소의 출생연월일 및 종돈의 등록연월일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효율성이나 축산산업 발전 등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br>④ 이력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제30조에 따라 이력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br>⑤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는 소·종돈의 수입연월일<br>5. 가축의 종류<br>6. 소·종돈의 암수 구분<br>7.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이하 "가축사육시설"이라 한다)의 소재지<br>8.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의 이름 또는 명칭<br>9. 도축장의 명칭 및 소재지<br>10. 도축연월일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도축 검사 결과<br>10의2. 계란의 산란일자<br>11. 「축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돼지고기는 개체별 및 등급별로,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br>1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br>12의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 자의 명칭 및 소재지<br>12의3. 법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칭 및 소재지<br>13. 소의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 중량<br>14. 소·종돈의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br>15. 소의 브루셀라병·결핵병 검사 결과<br>1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이력관리대상가축이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재된 날부터 도축·폐사 또는 수출된 후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br><br>제9조(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7.〉<br>1. 이력번호<br>2. 선하증권번호(船荷證券番號)<br>3. 원산지(국가명)<br>4. 품명(부위명)<br>5. 수출업체명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 6. 수입업체명 및 수입연월일<br>7. 수출국 도축장명(가공장명) 및 수출국에서의 도축연월일(가공연월일)<br>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이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이라 한다)에 등재된 날부터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
| 제26조(장부의 비치 등) ① 도축업자, 가축시장개설자, 가축거래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도축처리 및 경매,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또는 거래·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br>②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 | 제26조(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종류, 기록방법 및 보관기간 등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9. 12. 31.〉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그 기록사항을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br>③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 등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br>④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거래일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br>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종류, 기록방법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31.〉 | | |
| 제27조(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을 위한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7조(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2. 31.〉<br>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신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정보의 신고,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br>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 통지 등의 업무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 청접수 및 부여·통보, 변경신고<br>2. 법 제5조에 따른 출생 등의 신고<br>3. 법 제6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br>4. 법 제11조에 따른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통보<br>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신고<br>5의2. 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통보 및 거래신고<br>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발급신청<br>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 및 통보<br>8.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br>9.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또는 거래신고<br>10.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신고<br>11. 법 제21조에 따른 식별대장의 기록·관리<br>12. 법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 | 13. 법 제26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br>14. 삭제 〈2017. 6. 28.〉<br>15. 그 밖에 원활한 이력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br><br>**제28조** 삭제 〈2017. 6. 28.〉<br><br>**제29조(규제의 재검토)**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1. 2.〉<br>1. 제8조에 따른 귀표등의 부착기한: 2017년 1월 1일<br>2. 제18조제4항에 따른 거래·포장처리 및 판매 신고의 기한: 2017년 1월 1일<br>3. 제19조제2항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br>② 삭제 〈2018. 12. 24.〉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제28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br>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8. 27.〉<br>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br>1. 협조가 필요한 사유<br>2. 협조 기간<br>3. 협조 사항<br>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제29조 삭제 〈2016. 12. 27.〉 | | |
|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제1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자, 법 제17조에 따른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br>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축산 관련 법인 또는 검정전문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br>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및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 운영자·통신판매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국내산이력축산물에 관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6. 27., 2019. 12. 17.〉<br>1.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br>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 다만, 제2항제10호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br>3. 법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br>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6. 27., 2019. 12. 17.〉<br>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통보(수입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br>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통보<br>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 산이력축산물의 양도·수출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접수<br>4.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 산이력축산물의 거래·포장처리·판매 신고의 접수<br>5.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수입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br>6.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 관리, 기록 수정·삭제 등의 조치, 보존 및 변경신고의 접수<br>7. 법 제22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에 관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수입유통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br>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br>가. 소 수입자·수출자<br>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라 한다)<br>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 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라.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br>가. 소 수입자·수출자<br>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br>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라.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10. 질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치 등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 을 위한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검사<br>1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br>12. 삭제 〈2017. 6. 27.〉<br>13. 법 제3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br>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br>가. 소 수입자·수출자<br>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br>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br>라.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 15. 제10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 보급 대상자(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br>16. 별표 1 제2호가목2), 같은 호 나목4) 및 같은 호 다목2)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신청의 접수<br>③ 삭제 〈2019. 12. 17.〉<br>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 6. 27., 2019. 12. 17.〉<br>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경영자의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농장식별번호의 부여·통보 및 변경신고의 접수.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br>2.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 씨알의 양도·양수·이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br>3.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br>4의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br>5.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 닭, 오리 도축 전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이력번호의 부여·통보<br>5의2. 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란 이력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이력번호의 부여·통보<br>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중 국내산이력축산물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의 접수<br>7. 법 제19조에 따른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에 대한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br>8. 법 제21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관리, 기록 수정·삭제 등의 조치 및 보존<br>9. 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다만, 제6항제5호에 따라 축산 관련 법인에 위탁한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 사항은 제외한다.<br>10.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br>1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br>12. 삭제 〈2017. 6. 27.〉<br>13. 별표 1 제1호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신청의 접수<br>14. 제10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한 교육(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br>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제5호 또는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7.〉<br>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br>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생·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 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br>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통보(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br>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br>5. 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br>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종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중 「축산법」 제6조에 따라 종돈의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7.〉<br>1.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폐사·양도·양수·이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br>2. 법 제6조제1항에 개체식별번호의 부여·통보<br>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br>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 장의 기록<br>5. 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가축및 축산물식별대장의 수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br>6.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br>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를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7.〉<br>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br>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7.〉<br>[제목개정 2019. 12. 17.]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제31조(비용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비용의 지원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1조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17.〉<br>1. 법 제7조에 따른 귀표등의 부착에 드는 비용<br>2. 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관리에 드는 비용<br>3. 법 제11조·제11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이력번호의 표시·관리에 드는 비용<br>4. 법 제13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표의 부착에 드는 비용<br>5. 법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등에 관한 시스템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축 및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br>6.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관리 등에 드는 비용<br>7. 법 제26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보관 등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에 드는 비용<br>8. 법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드는 비용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2019. 12. 17.〉<br>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부여·통보, 변경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br>2. 법 제5조에 따른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거래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br>3. 법 제6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에 관한 사무<br>4. 법 제11조에 따른 돼지, 닭, 오리 및 법 제11조의2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무<br>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 및 통보에 관한 사무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 6.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관리 및 변경신고 접수 등에 관한 사무<br>7. 법 제22조에 따른 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 및 오류 수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br>8. 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정보 조사를 위한 보고 및 출입·검사 등에 관한 사무<br>9. 법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br>10. 법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무<br>11. 삭제 〈2017. 6. 27.〉<br>12. 법 제31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br>13. 법 제35조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무<br><br>제15조 삭제 〈2016. 12. 30.〉 | |
| **제6장 벌칙**<br><br>제32조(벌칙) ①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br>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2. 11.〉<br>1. 제4조제1항의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br>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br>3. 제8조제1항에 따른 돼지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br>3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닭, 오리, 씨알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br>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위조·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농장식별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br>4의2.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변조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아 농장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br>5.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br>6.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br>6의2.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br>6의3.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br>6의4.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거짓으로 표시한 자<br>7.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br>8.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br>9.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기하여 신고한 자<br>10.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br>11.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12.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 |
|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 2020. 2. 11.〉<br>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br>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br>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12. 17.〉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4.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등을 붙이지 아니한 자<br>5.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br>6.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br>6의2.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br>6의3.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br>7.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소, 돼지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자<br>7의2.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이 곤란한 닭, 오리, 씨알을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자<br>8.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하거나 가축및축산물 |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 또는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한 자<br>9.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br>9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br>9의3.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br>9의4.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br>10.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br>1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한 자<br>1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한 자<br>1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이력번 |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이지 아니한 자<br>1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 또는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br>15.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br>16.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br>17.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br>18.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br>19.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br>20.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 시료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br>21. 제26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정하여진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br>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 |
| 제35조(위반사실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2조제2항제5호·제6호·제6호의2·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또는 제34조제1항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br>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br>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공사업자를 말한다.<br>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5조제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 1항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합하여 연 2회 이상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 제1항에 따른 기관의 홈페이지와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br>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br>2. 영업의 종류<br>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br>4. 위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등의 명칭<br>5. 위반 내용<br>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br>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부 칙** 〈제12119호, 2013. 12. 27.〉 | **부 칙** 〈제25891호, 2014. 12. 26.〉 | **부 칙** 〈제120호, 2014. 12. 30.〉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2호,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같은 조 제21호의 개정규정 중 돼지고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br><br>**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기에 관한 사항과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표시, 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br>**제2조(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력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한 국내산 돼지고기부터 적용한다.<br><br>**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축산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br>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축산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에 행정기관이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br>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축산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의 소 | 시행한다.<br>1.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자에 관한 사항과 쇠고기를 취급하는 자의 거래신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br>2. 제4조제2호라목·마목의 개정규정<br>3. 제5조의 개정규정<br>4. 별표 제2호너목부터 러목까지 및 같은 호 서목의 개정규정(돼지고기에 관한 사항과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표시, 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br><br>**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 및 축산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 및 축산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br><br>**부 칙** 〈제26936호, 2016. 1. 22.〉<br>(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중 "⑬고유번호"를 "⑬농장식별번호"로, "〈16〉개체식별번호"를 "〈16〉이력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4호 중"축산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여한 고요번호"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장식별번호"로 하며, 같은 란 제6호 중 "〈16〉·〈18〉"을 〈18〉로 한다.<br>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개체식별번호"를 각각 "이력번호"로 한다.<br>별지 제44호서식 중 "도체번호"를 각각 "이력번호 및 도체번호"로 한다.<br><br>**부 칙** 〈제136호, 2015. 2. 27.〉<br>(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br><br>**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br>**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유자등이 한 귀표의 부착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br><br>**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농장경영자에게 농장식별번호를 정하여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br><br>**제5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축산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체식별번호 및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한 것은 이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따라 이력번호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br><br>**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br><br>**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br><br>**제2조** 생략<br><br>**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4조제2호라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등록을"로 한다.<br>②부터 ⑤까지 생략<br><br>**제4조** 생략<br><br>**부 칙** 〈제27751호, 2016. 12. 30.〉<br>(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br><br>**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 음과 같이 개정한다.<br>별표 4 제1호의 귀표등의 관리 등란 다목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br>②부터 ④까지 생략<br><br>**부 칙** 〈제189호, 2016. 1. 6.〉<br><br>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br>**부 칙** 〈제192호, 2016. 1. 19.〉<br>(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br><br>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br>**부 칙** 〈제237호, 2017. 1. 2.〉<br>(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제48조제3항제4호 중 "「소 및 축산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br>②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8조 중 "「소 및 축산물추적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br><br>**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 및 축산물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 및 축산물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br><br>**제9조(법률 제11431호 소 및 축산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개정)** 법률 제11431호 소 및 축산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2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 시행한다. 〈단서 생략〉<br><br>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br><br>**부 칙** 〈제28153호, 2017. 6. 27.〉<br><br>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br><br>**부 칙** 〈제29950호, 2019. 7. 2.〉<br>(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br><br>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br><br>**부 칙** 〈제30247호, 2019. 12. 17.〉<br><br>**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어목부터 처목까지 및 퍼목의 개정규정 중 닭, 오리, 계란에 관한 사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br>제2조 생략<br><br>**부 칙** 〈제273호, 2017. 6. 28.〉<br><br>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br><br>**부 칙** 〈제341호, 2018. 11. 21.〉<br><br>**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br>**제2조(농장식별번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br>제32조제1항 중 "제23조제5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한다.<br><br>**부 칙** 〈제12813호, 2014. 10. 15.〉<br><br>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br>**부 칙** 〈제14478호, 2016. 12. 27.〉<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나목,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2항 및 제34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수입 돼지고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과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br>제2조(수입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한 적용례) 수입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 **부 칙** 〈제346호, 2018. 12. 24.〉<br>(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br><br>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br><br>**부 칙** 〈제391호, 2019. 8. 26.〉<br>(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br>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br>**부 칙** 〈제404호, 2019. 12. 31.〉<br>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br><br>**부 칙** 〈제517호, 2022. 1. 25.〉<br><br>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br>제2조(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br><br>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23조제1항 본문 중 "수입 쇠고기는"을 "수입 쇠고기 및 수입 돼지고기는"으로 한다.<br><br>**부 칙** 〈제16114호, 2018. 12. 31.〉<br><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2호,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같은 조 제21호의 개정규정 중 닭, 오리, 계란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br>제2조(국내산 닭고기·오리고기·계란에 관한 적용례) 국내산 닭고기·오리고기·계란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력번호를 부여한 국내산 닭고기·오리고기·계란부터 적용한다. | | 제3조(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계란의 이력번호가 부여된 경우 그 표시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별표 9의4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br><br>**부 칙** 〈제584호, 2023. 4. 27.〉<br>(동물보호법 시행규칙)<br><br>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br><br>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br><br>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6호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를 말한다) 별표 6"으로 한다.<br>② 및 ③ 생략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제3조(농장식별번호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농장경영자에게 농장식별번호를 정하여 이 법 시행일 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br><br>**부 칙** 〈제16536호, 2019. 8. 27.〉<br><br>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br>**부 칙** 〈제16960호, 2020. 2. 11.〉<br><br>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br>**부 칙** 〈제17268호, 2020. 5. 19.〉<br><br>이 법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br><br>**부 칙** 〈제17324호, 2020. 5. 26.〉<br>(축산법)<br><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 | 제17조 생략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한 날부터 시행한다.<br><br>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5조제1항 중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br><br>**부 칙** 〈제18445호, 2021. 8. 17.〉<br>(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br><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br><br>제2조 및 제3조 생략<br><br>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20조제2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 |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br>( 약칭: 축산물이력법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령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
|---|---|---|
| 기한"으로 한다.<br>②부터 ⑦까지 생략<br><br>**부 칙** 〈제18853호, 2022. 4. 26.〉<br>(동물보호법)<br><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br><br>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br><br>제2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11조의2제2항제2호 중 "「동물보호법」 제29조"를 "「동물보호법」 제59조"로 한다.<br>②부터 ⑥까지 생략<br><br>제27조 생략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별표

[별표 1] 〈신설 2019. 12. 17.〉

##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제4조제2항 관련)

### 1. 국내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자

| 취급하는 축산물의 종류 | 신고 의무자 |
|---|---|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 | 가. 식육포장처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br>1) 도축업의 작업장 시설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連接)한 시설에서 영업하는 자<br>2)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평균(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상 평균으로 산정한다)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자<br>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
| |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br>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종업원이 5명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자<br>2)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
| |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br>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종업원이 5명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자<br>2)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
| 쇠고기·돼지고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

| | |
|---|---|
| 계란 | 가. 법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나.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br>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 받은 자<br>2)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

**2.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자**

| 구분 | 신고 의무자 |
|---|---|
| 쇠고기·돼지고기 | 가. 식육포장처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br>1)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평균(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 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상 평균으로 산정한다)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자<br>2)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
| | 나.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br>1)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평균(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 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상 평균으로 산정한다)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자<br>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br>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br>4) 1)부터 3)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
| | 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br>1) 가목1)에 해당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포장처리를 의뢰한 자<br>2)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

[별표 2] 〈개정 2019. 12. 17.〉 [시행일:2020. 7. 1.] 제2호어목, 저목, 처목, 퍼목의 개정규정 중 닭, 오리, 계란에 관한 사항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사육장 또는 영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 횟수별 과태료 |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100 | 200 | 400 | 500 |
| 나.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 100 | 200 | 400 | 500 |
| 다.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3호 | 50 | 100 | 200 | 400 |
| 라.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등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4호 | 50 | 100 | 200 | 400 |
| 마.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5호 | 50 | 100 | 200 | 400 |
| 바.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6호 | 50 | 100 | 200 | 400 |
| 사. 법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6호의2 | 50 | 100 | 200 | 400 |
| 아. 법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6호의3 | 50 | 100 | 200 | 400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 횟수별 과태료 |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자.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소, 돼지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50 | 100 | 200 | 400 |
| 차. 법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이 곤란한 닭, 오리, 씨알을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2 | 50 | 100 | 200 | 400 |
| 카.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하거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축 또는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8호 | 100 | 200 | 400 | 500 |
| 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9호 | 50 | 100 | 200 | 400 |
| 파. 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9호의2 | 50 | 100 | 200 | 400 |
| 하. 법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9호의3 | 50 | 100 | 200 | 400 |
| 거.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난좌 또는 운송상자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9호의4 | 50 | 100 | 200 | 400 |
| 너.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0호 | 50 | 100 | 200 | 400 |
| 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 50 | 100 | 200 | 400 |
| 러.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 100 | 200 | 400 | 500 |
| 머.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 50 | 100 | 200 | 400 |
| 버.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 또는 수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4호 | 50 | 100 | 200 | 400 |
| 서.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5호 | 50 | 100 | 200 | 400 |
| 어.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6호 | 70 | 140 | 280 | 500 |
| 저. 법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7호 | 70 | 140 | 280 | 500 |
| 처.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8호 | 70 | 140 | 280 | 500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 횟수별 과태료 |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커.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19호 | 100 | 200 | 400 | 500 |
| 터.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 시료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 100 | 200 | 400 | 500 |
| 퍼.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 제21호 | 50 | 100 | 200 | 400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별표·별지서식

[별표 1] 〈개정 2018. 11. 21.〉

## 수입산이력축산물의 부산물 범위(제3조 관련)

| 순번 | 품명 | 영문명 | 비고 |
|---|---|---|---|
| 1 | 쇠고기 기타<br>(고기가 붙어 있는 뼈) | Other Beef | |
| 2 | 쇠고기 기타 | Other Beef |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
| 3 | 소 식도 | Beef Esophagus | |
| 4 | 소 간 | Beef Liver | |
| 5 | 소 갑상샘 | Beef Thyroid Gland | |
| 6 | 소 건 | Beef Tendon | |
| 7 | 소 골수 | Beef Bone Marrow | |
| 8 | 소 꼬리 | Beef Tail | |
| 9 | 소 뇌 | Beef Brain | |
| 10 | 소 뇌하수체 | Beef Pituitary Body | |
| 11 | 소 대망막 | Beef Omentum | |
| 12 | 소 머리고기 | Beef Head Meat | |
| 13 | 소 목 | Beef Neck | |
| 14 | 소 방광 | Beef Bladder | |
| 15 | 소 비장 | Beef Spleen | |
| 16 | 소 생식기 | Beef Reproductive Organ | |
| 17 | 소 식용 가죽 | Beef Edible Skin | |
| 18 | 소 신장 | Beef Kidney | |
| 19 | 소 심장 | Beef Heart | |
| 20 | 소 위 | Beef Tripe | |
| 21 | 소 유방 | Beef Breast | |
| 22 | 소 입술 | Beef Lips | |
| 23 | 소 자궁 | Beef Uterus | |
| 24 | 염장 소장/ 염수장 소장(케이싱) | Salted/Brined Beef Gut(Casing) | |
| 25 | 소 장간막 | Beef Mesentery | |
| 26 | 소 족 | Beef Feet | |
| 27 | 소 지방 | Beef Fat | |
| 28 | 소 창자 | Beef Gut | |
| 29 | 소 척수 | Beef Spinal Cord | |
| 30 | 소 췌장 | Beef Pancreas | |
| 31 | 소 편도 | Beef Tonsil | |
| 32 | 소 허파 | Beef Lung | |
| 33 | 소 혀 | Beef Tongue | |
| 34 | 소 횡격막 | Beef Diaphragm | |
| 35 | 소 가슴샘 | Beef Thymus | |
| 36 | 돼지고기 기타<br>(고기가 붙어 있는 뼈) | Other Pork | |
| 37 | 돼지고기 기타 | Other Pork | 제3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
| 38 | 돼지 식도 | Pork Esophagus | |
| 39 | 돼지 간 | Pork Liver | |
| 40 | 돼지 갑상선 | Pork Thyroid Gland | |
| 41 | 돼지 건 | Pork Tendon | |
| 42 | 돼지 골수 | Pork Bone Marrow | |
| 43 | 돼지 꼬리 | Pork Tail | |
| 44 | 돼지 뇌 | Pork Brain | |
| 45 | 돼지 뇌하수체 | Pork Pituitary Body | |
| 46 | 돼지 대망막 | Pork Omentum | |
| 47 | 돼지 머리고기 | Pork Head Meat | |
| 48 | 돼지 목 | Pork Neck | |
| 49 | 돼지 방광 | Pork Bladder | |

| 순번 | 품명 | 영문명 | 비고 |
|---|---|---|---|
| 50 | 돼지 비장 | Pork Spleen | |
| 51 | 돼지 생식기 | Pork Reproductive Organ | |
| 52 | 돼지 식용 가죽 | Pork Edible Skin | |
| 53 | 돼지 신장 | Pork Kidney | |
| 54 | 돼지 심장 | Pork Heart | |
| 55 | 돼지 위 | Pork Tripe | |
| 56 | 돼지 유방 | Pork Breast | |
| 57 | 돼지 입술 | Pork Lips | |
| 58 | 돼지 자궁 | Pork Uterus | |
| 59 | 염장 돼지장/ 염수장 돼지장(케이싱) | Salted/Brined Pork Gut(Casing) | |
| 60 | 돼지 장간막 | Pork Mesentery | |
| 61 | 돼지 족 | Pork Feet | |
| 62 | 돼지 지방 | Pork Fat | |
| 63 | 돼지 장 | Pork Intestine | |
| 64 | 돼지 척수 | Pork Spinal Cord | |
| 65 | 돼지 췌장 | Pork Pancreas | |
| 66 | 돼지 편도 | Pork Tonsil | |
| 67 | 돼지 허파 | Pork Lung | |
| 68 | 돼지 혀 | Pork Tongue | |
| 69 | 돼지 횡격막 | Pork Diaphragm | |
| 70 | 돼지 가슴샘 | Pork Thymus | |
| 71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부위 | | |

[별표 2] 〈개정 2019. 12. 31.〉

## 농장식별번호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제5조제5항 관련)

### 1. 농장식별번호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가.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신청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서면, 팩스(Fax),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품질평가원장(소는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품질평가원장(소는 위탁기관의 장)은 서면,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신고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2. 신청 내용

| 항목 | 내용 |
|---|---|
| 신청인<br>(농장경영자) | 가. 성명<br>나. 주민등록번호(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br>다. 주소(거주지)<br>라. 전화번호 |
| 가축사육시설 정보 | 가. 사육가축의 종류(소, 돼지, 닭, 오리)<br>나. 농장명칭<br>다. 사육시설 주소<br>라. 관리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br>마. GPS좌표<br>바. 사육개시일 연월일 |
| 사육규모 | 가축의 종류별 사육 마릿수 |

**3. 농장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방법**

가. 품질평가원장은 농장식별번호가 신청된 시설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신청자에게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장식별번호 발급증을 발급(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닭, 오리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대상 가축사육시설만 해당한다.

나. 농장식별번호는 권역코드(1자리)와 일련번호(5자리)로 구성된 6자리로 부여한다.

* 권역코드: 서울·인천·경기(1), 강원(2), 충북(3), 세종·대전·충남(4), 전북(5), 광주·전남(6), 대구·경북(7), 부산·울산·경남(8), 제주(9)

다. 농장식별번호는 축종에 관계없이 땅(지번)을 중심으로 1개의 번호를 부여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번의 가축사육시설을 다수의 농장경영자가 물리적으로 분할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을 받아 다른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4. 농장식별번호의 기록·관리**

가. 품질평가원장은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농장식별번호 발급 및 등록대장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품질평가원장으로 하여금 농장식별번호가 가축사육시설에 정확히 부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 품질평가원장은 제1호 단서에 따라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5. 그 밖에 농장식별번호의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록·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3] 〈개정 2019. 12. 31.〉

##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제6조제6항 관련)

**1.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가. 소의 경우

| 구분 | 신고방법 및 절차 등 |
|---|---|
| 공통사항 | 1) 제6조제1항에 따른 소 출생 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서면, 팩스(Fax) 또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서면, 팩스,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br>2) 신고서를 제출받은 위탁기관의 장은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 여부와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받은 위탁기관의 장은 관할 구역 내 농장경영자(신고 대리인을 포함한다), 가축거래상인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신고 접수자로 하여금 대리 날인하게 할 수 있고, 위탁기관의 장은 신고자, 신고 일시, 신고 내용 등을 기록·보관(전자적 자료를 포함한다)해야 한다.<br>3) 품질평가원장은 농장경영자와 가축거래상인 등이 신고한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거래·수입·수출 내역 및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등을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의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br>4) 위탁기관의 장은 소 출생·폐사 등의 신고내용의 보완을 위한 서류를 농장경영자, 가축거래상인 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농장경영자 등이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증빙자료를 미제출 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 구분 | 신고방법 및 절차 등 |
|---|---|
| 출생 신고 | 1) 위탁기관의 장은 소가 출생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 및 나목의 내용과 가축사육시설의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br>2) 위탁기관의 장은 제2호가목과 나목의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장경영자 등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출생에 관한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br>3) 소 출생 신고를 하는 농장경영자 등은 소 귀표를 부착하기 전에는 농장 내에서 소 개체를 구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br>4) 소 농장경영자는 소 출생 신고 후에 소 귀표를 관할 위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수령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에 소 귀표 부착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귀표가 부착된 소 사진을 관할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br>5) 위탁기관의 장은 제6조4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소 귀표 부착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거자료(전자적 자료를 포함한다.)를 농장경영자 등에 요청하여 기록·보관 해야 한다. 다만, 소 귀표를 스스로 부착하지 않는 농장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내에 소 귀표 부착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귀표가 부착된 소 사진(전자적 자료를 포함한다)을 위탁기관의 장이 직접 기록·보관 할 수 있다. |
| 폐사 신고 | 1) 위탁기관의 장은 소가 폐사한 경우에는 제2호가목 및 마목의 신고내용,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 및 해당 소가 등록된 농장식별번호와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br>2) 위탁기관의 장은 제2호가목 및 마목의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농장경영자 등에게 폐사에 필요한 신고내용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폐사에 관한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br>3) 소가 법정 전염병으로 폐사한 경우에는 농장경영자 등은 폐사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위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위탁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법정전염병에 따른 폐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거자료(전자적 서류 및 자료를 포함한다)를 요청하여 기록·보관해야 한다.<br>4) 일반 폐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 등이 소 폐사 신고 시에 아래의 서류 또는 증거자료(전자적 서류 및 자료를 포함한다.) 중 1가지 이상을 제출해야 하며, 위탁기관의 장은 제6조4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일반 폐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또는 증거자료(전자적 서류 및 자료를 포함한다.)를 농장경영자 등에게 요청하여 기록·보관해야 한다.<br>가) 귀표 포함 폐사 사진<br>나) 폐사진단서<br>다) 검안서<br>라) 렌더링 처리(rendering 처리, 고온·고압 멸균처리) 처리 확인서<br>마) 소각(매몰) 증명서 |
| 양도·양수·이동 신고 및 가축거래 신고 | 1) 위탁기관의 장은 소 개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과 라목의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축사육시설에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와 해당 소가 등록된 농장식별번호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가축거래상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br>2) 위탁기관의 장은 해당 소의 양도자나 양수자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양수·이동·가축거래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토록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양도·양수·이동·가축거래에 관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br>3) 농장경영자와 가축거래상인 등이 소 개체를 양도·양수하거나 가축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라목의 신고내용을 명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신고서, 양수자는 양수신고서를 해당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br>가) 농장 경영자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소를 양도하는 농장경영자는 양도 신고를 해야 하며, 소를 양수하는 경영자는 양수 신고를 해야 한다.<br>나) 가축거래상인과 농장경영자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소를 양도하는 농장경영자는 양도 신고를 해야 하고, 가축거래상인은 양도시에는 양도신고, 양수시에는 양수신고를 모두 해야 하며, 소를 양수하는 농장경영자는 양수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농장식별번호가 있는 가축상인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서 양수·양도 신고를 해야 한다.<br>다) 가축거래상인과 가축거래상인 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소를 양도하는 가축거래상인은 양도 신고를 해야 하며 소를 양수하는 가축거래상인은 양수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농장식별번호가 있는 가축상인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서 양수·양도 신고를 해야 한다.<br>4) 농장식별번호가 다른 가축사육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농장경영자가 소 개체를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 구분 | 신고방법 및 절차 등 |
|---|---|
| 수입·수출 신고 | 1) 검역본부장 및 위탁기관의 장은 소 개체가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과 다목의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와 가축거래상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br>2) 검역본부장 및 위탁기관의 장은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입자에게 수입·수출에 필요한 신고 내용을 보완토록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수입·수출에 관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br>3) 농장경영자 등은 소 개체를 수입·수출 하는에는 경우 제2호가목과 다목의 신고 내용을 명확하게 제출해야 한다. |
|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 | 1) 가축시장개설자는 소 개체가 거래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바목의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와 해당 소가 등록된 농장식별번호와 일치 여부, 가축거래상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 여부, 소 소유자 정보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br>2) 위탁기관의 장은 가축거래 당사자(양도자 및 양수자)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가축거래에 관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br>3) 가축시장을 통해 가축을 거래코자 하는 농장경영자 또는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시장개설자에게 해당 소 개체의 양도 또는 양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농장식별번호가 있는 가축상인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br>4) 가축시장개설자는 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품질평가원장에게 바목에 따른 거래내역 신고(전자적인 방법의 신고를 포함한다)를 해야 한다. 다만, 농장식별번호가 있는 가축상인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서 양수·양도 신고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이때 가축시장개설자가 신고한 거래내역으로 농장경영자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양도·양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

나. 종돈의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 등 신고

| 구분 | 신고방법 및 절차 등 |
|---|---|
| 공통사항 | 1) 제6조제1항에 따른 종돈의 출생 등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서면으로 종돈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서면, 팩스(Fax),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br>가) 「축산법」에 다른 종돈의 등록을 위하여 종축등록기관에 제출하는 종돈의 혈통·등록·고등등록 신청서 및 번식용씨돼지 혈통증명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내용이 포함된 경우<br>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돼지의 이동을 위하여 시·군·구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임상예찰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내용이 포함되어 해당내용이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경우<br>2) 품질평가원장은 농장경영자 등이 신고한 종돈의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거래·수입·수출 내역 등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의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br>3)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종돈 출생·폐사 등의 신고내용의 보완을 위한 서류 또는 증빙자료를 농장경영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농장경영자 등이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증빙자료를 미제출 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 출생신고 | 1)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종돈의 개체가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나목의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가축사육시설의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br>2)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제2호 가목과 나목의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장경영자 등에게 출생에 필요한 신고 내용을 보완토록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출생에 관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br>3) 종돈의 출생신고를 하는 종축업 또는 정액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돈의 출생 후 귀표 등을 부착하기 전까지는 종돈 개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br>4) 종돈의 농장경영자는 종돈 출생 신고 후에 종돈 귀표를 종돈등록기관의 장으로부터 수령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에 종돈 귀표 부착 사실을 증빙 |

| 구분 | 신고방법 및 절차 등 |
|---|---|
| | 할 수 있는 귀표가 부착된 종돈 사진을 관할 종돈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제6조4항에 따라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종돈 귀표 부착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거자료(전자적 서류 및 자료를 포함한다.)를 농장경영자 등에 요청하여 기록·보관해야 한다.<br>5) 다만, 종돈 귀표를 자가 부착하지 않는 농장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내에 종돈 귀표 부착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귀표가 부착된 종돈 사진(전자적 자료를 포함한다)을 종돈등록기관의 장이 직접 기록·보관 할 수 있다. |
| 폐사 신고 | 1)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종돈 개체가 폐사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마목의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가축사육시설에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와 종돈이 등록된 농장식별번호와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br>2)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제2호 가목과 마목의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장경영자 등에게 폐사에 필요한 신고 내용을 보완토록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출생에 관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br>3) 종돈이 법정전염병으로 폐사하는 경우에는 종축업 또는 정액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폐사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종돈등록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법정전염병에 따른 폐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거자료(전자적 서류 및 자료를 포함한다.)를 요청하여 기록·보관해야 한다.<br>4) 일반 폐사의 경우에는 종축업 또는 정액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종돈 폐사 신고 시에는 아래의 서류 또는 증거자료(전자적 서류 및 자료를 포함한다.)중 1가지 이상을 제출해야 하며,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제6조4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일반 폐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또는 증거자료(전자적 서류 및 자료를 포함한다.)를 요청하여 기록·보관해야 한다.<br>가) 귀표 등이 포함된 폐사 사진<br>나) 폐사진단서<br>다) 검안서<br>라) 렌더링 처리 확인서<br>마) 소각(매몰) 증명서 |

| 구분 | 신고방법 및 절차 등 |
|---|---|
| 양도·양수·이동 신고 | 1)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종돈 개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라목의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축사육시설에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와 해당 종돈이 등록된 농장식별번호와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br>2)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종돈의 양도자나 양수자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양수·이동에 필요한 신고 내용을 보완토록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양도·양수·이동에 관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br>3) 종축업 또는 정액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돈 개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라목의 신고 내용을 명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신고서를, 양수자는 양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br>4) 농장식별번호가 다른 가축사육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농장경영자가 해당 종돈 개체를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 수입·수출 신고 | 1) 검역본부장 및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종돈 개체가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다목의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br>2) 검역본부장 및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수입·수출에 필요한 신고 내용을 보완토록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수입·수출에 관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
| 사육현황·변경신고·이동금지 등 | 1)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또는 수입유통식별대장의 내용 중에 기록이 누락되었거나 오류사항을 수정하려는 종축업 또는 정액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나 수정요구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 또는 종돈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기록사항 누락 또는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br>2) 종축업 또는 정액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종돈을 양도·양수, 수출 또는 이동하여서는 안 된다. |

다. 돼지(종돈은 제외하다)의 양도·양수·이동 등 신고

| 구분 | 신고방법 및 절차 등 |
|---|---|
| 공통사항 | 1) 제6조제1항에 따른 돼지의 양도 등 신고를 하려는 농장경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서면, 팩스(Fax),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서면, 팩스,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br>2) 품질평가원장은 서면,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된 해당 서류에 신고인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신고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받은 품질평가원장은 관할 구역 내 농장경영자(신고 대리인을 포함한다), 가축거래상인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일시, 신고자, 신고 내용 등을 기록·보관(전자적 자료를 포함한다)해야 한다.<br>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돼지의 이동을 위하여 시·군·구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임상예찰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내용이 포함되어 해당내용이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br>4) 품질평가원장은 농장경영자 등이 신고한 돼지 양도·양수·이동 내역 등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
| 양도·양수·이동 신고 | 1) 품질평가원장은 돼지 양도·양수·이동 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라목의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축사육시설에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와 해당 돼지가 등록된 농장식별번호와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br>2) 품질평가원장은 돼지의 양도자나 양수자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양수·이동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토록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양도·양수·이동에 관한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br>3) 농장경영자 등이 돼지의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라목의 신고내용을 명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신고서를, 양수자는 양수신고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br>4) 농장식별번호가 다른 가축사육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농장경영자가 돼지를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 신고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라. 닭, 오리, 씨알의 양도·양수·이동·입란(入卵: 암탉에게 알을 안기거나 부화기에 알을 넣는 것)·수입·수출 등 신고

| 구분 | 신고방법 및 절차 등 |
|---|---|
| 공통사항 | 1) 제6조제1항에 따른 닭, 오리의 종축 및 씨알을 수입·수출 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서면, 팩스(Fax),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서면, 팩스,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br>2) 제6조제1항에 따른 종축이 아닌 닭, 오리를 양도·양수 등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신고서를 서면, 팩스,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서면, 팩스,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br>3)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의 장과 품질평가원장은 서면,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된 해당 서류에 신고인으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신고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받은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의 장과 품질평가원장은 관할 구역 내 농장경영자(신고 대리인을 포함한다), 가축거래상인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자가 대리 날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일시, 신고자, 신고 내용 등을 기록·보관(전자적 자료를 포함한다)해야 한다.<br>4) 품질평가원장은 농장경영자와 가축거래상인 등의 닭, 오리, 씨알의 양도·양수·이동·거래·수입·수출 신고내역 등이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
| 양도·양수·이동 신고 | 1) 품질평가원장은 닭, 오리 또는 씨알을 양수·양도·이동(부화장으로 이동도 포함한다.) 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라목의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축사육시설에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와 해당 닭·오리 또는 씨알이 등록된 농장식별번호와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br>2) 품질평가원장은 닭, 오리 또는 씨알의 양도자나 양수자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양수·이동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토록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양도·양수·이동에 관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br>3) 농장경영자 등이 닭·오리 또는 씨알의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라목의 신고내용을 명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양도자는 양도신고서를, |

| 구분 | 신고방법 및 절차 등 |
|---|---|
| | 양수자는 양수신고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씨알이 부화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입란신고로 양도·양수를 갈음할 수 있다.<br>4) 농장식별번호가 다른 가축사육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농장경영자가 닭·오리 또는 씨알을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 신고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입란 신고 | 1) 씨알을 부화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br>2) 품질평가원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 수입·수출 신고 | 1)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의 장은 닭, 오리 또는 씨알이 수입 또는 수출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다목의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br>2) 닭, 오리의 종축 또는 씨알을 수출입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br>3)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의 장은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수입·수출에 필요한 신고 내용을 보완토록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수입·수출에 관한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br>4)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가 닭, 오리 또는 씨알을 수입·수출 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과 다목의 신고내용을 명확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 신고의 종류 및 내용

### 가. 공통 신고사항

1) 농장경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2) 농장경영자의 주민등록번호(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3) 농장경영자의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
4)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5) 농장식별번호
6) 사육시설의 주소
7) 사육개시 연월일

### 나. 출생 신고(소, 종돈만 해당한다)

| 구분 | 소 | 종돈 |
|---|---|---|
| 신고 내용 | 1) 출생 연월일<br>2) 암수 구분[암, 수, 거세우, 프리마틴(Freedmartin, 이성쌍태의 암컷에서 생식기 기형이 나타나는 소의 종류)]<br>3) 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수입소, 기타)<br>4) 부의 개체식별번호<br>5) 모의 개체식별번호 | 1) 출생 연월일<br>2) 혈통등록 또는 고등등록, 번식용씨돼지 혈통확인 연월일<br>3) 혈통 또는 고등등록, 번식용씨돼지 혈통확인 증명서 번호<br>4) 암수 구분(암, 수)<br>5) 종돈의 종류: 순종, 수입종돈, 번식용씨돼지, 기타<br>- 대요크셔(Large Yorkshire), 랜드레이스(Landrace), 두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Welsh), 피어트레인(Pietrain), 스포티드(Spotted), 버크셔(Berkshire), 재래종<br>6) 부의 개체식별번호<br>7) 모의 개체식별번호 |

### 다. 수입·수출 신고

1) 수입·수출 연월일
2)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수입 농장 또는 검역시행지정 농장)
3) 암수 구분(암, 수, 거세, 기타) 및 마리 수
4) 소, 종돈, 닭·오리의 종류
5) 원산지(국가명)
6) 종축회사명
7) 검역시행장 지정 여부
8) 선하증권번호

### 라. 양도·양수·이동(반입·반출)·가축거래 신고

1) 농장식별번호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고유번호
2) 개체식별번호
3) 양도·양수·이동(반입·반출)·가축거래 신고 구분
4) 양도자·양수자, 가축거래상인 성명(사업체인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5)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6) 양도·양수 또는 가축거래 연월일
7) 돼지, 닭·오리의 경우 종류별 마리 수, 씨알의 갯수
8) 도축을 위한 출하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축업자가 도축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마. 폐사 신고(소, 종돈만 해당한다)
1) 개체식별번호
2) 폐사일
3) 가축의 종류(소, 종돈)
4) 폐사 원인
5) 폐사처리방법

바.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
1) 가축시장정보(가축시장명, 주소,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2) 거래 연월일
3) 개체식별번호(소의 종류, 성별, 출생연월일)
4) 농장식별번호(사육시설 주소), 가축거래상인의 고유번호
5) 양도·양수 신고 구분
6) 양도자·양수자, 거축거래상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대표자 성명), 연락처
7) 양도자·양수자, 가축거래상인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8) 양도자·양수자, 가축거래상인의 주소, 전화번호

사. 입란신고
1) 농장식별번호
2) 씨알의 품종
3) 알의 종류
4) 씨알의 개수

**3. 그 밖에 출생 등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 〈개정 2017. 6. 28.〉

##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귀표등 부착 방법 등

(제7조 및 제8조제3항 관련)

### 1. 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귀표등의 부착·관리 방법

<table>
<tr><td>개체식별<br>번호<br>부여방법</td><td>가. 위탁기관의 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출생 또는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br>나. 출생 신고된 소에는 국가코드(KOR), 바코드 및 고유의 숫자 12자리를 포함한 15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다.<br>다. 수입 신고된 소는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개체식별번호를 사용하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체식별번호와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td></tr>
<tr><td>귀표등의<br>규격</td><td>가. 규격<br>1) 귀표의 크기<br>가) 일반형: (가로) 55㎜~70㎜, (세로) 65㎜~85㎜<br>나) 단추형: 원형으로 지름 25㎜~35㎜<br>2) 글자 색상: 검은색<br>3) 바탕 색상: 밝은 노란색<br>나. 재부착용 귀표의 규격<br>1) 크기: (가로) 55㎜~70㎜, (세로) 65㎜~85㎜<br>2) KOR, 관리번호 인쇄<br>다. 귀표의 모양
<table>
<tr><th>일반형</th><th>단추형</th><th>재부착용</th></tr>
<tr><td> </td><td> </td><td> </td></tr>
</table>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귀표등의 규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td></tr>
<tr><td>귀표등의<br>부착·<br>표시<br>방법</td><td>가. 소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는 귀표를 소의 귀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한다.<br>나. 귀표는 소의 오른쪽 귀에 일반형을, 왼쪽 귀에 단추형을 각각 부착한다.<br>다. 귀 없는 기형이거나 농촌관광 또는 학술연구 등으로 사육되어 귀표의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목줄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td></tr>
</table>

| | |
|---|---|
| 귀표등의 관리 등 | 가. 검역본부장 또는 위탁기관의 장은 귀표를 수령하여 배부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귀표 수령·배부 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br>나. 검역본부장 또는 위탁기관의 장은 귀표 훼손·탈락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귀표 훼손·탈락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br>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귀표의 구매·공급, 부착방법 교육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 그 밖에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및 귀표등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2.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귀표등의 부착·관리 방법

| | |
|---|---|
| 개체식별번호의 구성 | 가.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출생 또는 수입 신고된 종돈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br>나. 출생 신고 또는 수입 신고된 종돈에는 국가코드(KOR), 바코드 및 농장식별번호(6자리), 개체관리번호(6자리)로 구성된 15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다.<br>다. 수입 신고된 종돈은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개체식별번호를 사용하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체식별번호와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 귀표등의 규격 | 가. 귀표의 규격<br>1) 귀표등의 크기<br>가) 일반형: (가로) 25㎜~55㎜, (세로) 45㎜~70㎜<br>나) 단추형: 원형으로 지름 25㎜~35㎜<br>다) 재부착용: 일반형으로 (가로) 25㎜~55㎜, (세로) 45㎜~70㎜<br>2) 귀표등의 글자 색상: 검은색<br>3) 귀표등의 바탕 색상: 밝은 노란색을 기본으로 하되, 종돈의 종류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br>4) 귀표등의 표시사항: KOR, 바코드, 개체식별번호, 기타 종돈장의 로고 등<br>나. 귀표는 일반형, 단추형을 각각 양쪽 귀에 부착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한 쪽 귀에 사용하여 부착할 수 있다.<br>다. 이각(耳殼, 돼지의 귀를 절개하여 절개된 모양 등 에 따라 숫자로 표현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은 종돈등록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 | 라. 입묵(入墨, 돼지 귀에 문신을 찍어 표시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되는 숫자 하나의 크기 규격은 (가로)5㎜ (세로)7㎜ 이내로 한다.<br>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귀표등의 규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귀표등의 부착·표시 방법 | 가.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는 귀표등을 종돈의 귀에 부착 또는 표시하는 방식으로 한다.<br>나.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위한 귀표등에는 귀표, 이각, 입묵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각 또는 입묵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KOR, 기타 종돈장의 로고 등을 생략할 수 있다.<br>다. 귀에 이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종돈등록기관이 정하는 규격에 따라 표시하되, 이각번호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를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에 기록하여야 한다.<br>라. 귀에 입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장식별번호(6자리), 개체관리번호(6자리)를 귀에 표시할 수 있다.<br>마. 귀에 입묵과 이각을 병행하여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br>바. 귀 없는 기형이거나 농촌관광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육되어 귀표 등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목줄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 그 밖에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및 귀표등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별표 5]

## 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

(제9조제2항 관련)

| | |
|---|---|
| 1. 농장식별번호 표시방법 |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 등은 별표 2에 따라 부여된 농장식별번호(6자리)를 돼지를 출하하거나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기 전에 돼지의 오른쪽 엉덩이에 표시하여야 한다.<br>나. 농장식별번호를 돼지에 표시할 수 있는 기구(이하 "농장식별표시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돼지가 입는 상해 또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표시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br>다.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등을 돼지에 부착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br>라. 이동하는 모든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각각 표시하여야 하되, 하나의 차량에 농장식별번호가 같은 농장의 돼지만을 실어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하돼지의 일부(60두 이하의 경우 10두 이상 표시, 61두 이상인 경우 전체 출하돼지의 20퍼센트 이상 표시)만 표시할 수 있다. |
| 2. 농장식별표시기 의 규격 등 | 가. 농장식별표시기 규격<br>1) 숫자판 크기: (가로) 20㎜~25㎜이내, (세로) 80㎜~102㎜이내<br>2) 사용 잉크: 식용색소 적색 3호<br>3) 표시기 모양(예)<br> <br> |
| | 나. 농장식별번호 표시 귀표등의 규격<br>1) 크기: 별표 4에 따른 종돈의 귀표등 규격을 따른다.<br>2) 표시: 농장식별번호 6자리를 크게 표시하고, 그 밖에 돼지의 순번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br>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농장식별표시기 또는 귀표등의 규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3. 농장식별표시기 등의 관리 등 | 가.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 등은 농장식별번호가 적절하게 돼지에 표시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br>나. 농장식별표시기는 질병 등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4. 그 밖에 돼지의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별표 6] 〈개정 2019. 12. 31.〉

##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의 방법 등(제10조제2항 관련)

### 1.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돼지 사육현황 신고서로 품질평가원장(종돈의 경우 종돈등록기관의 장을 말한다)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증명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증명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 2. 신고 내용

| 항목 | 내용 |
|---|---|
| 공통 신고 사항 | 가. 농장경영자의 성명(사업체인 경우 사업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br>나.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br>다. 농장식별번호<br>라. 농장경영자의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br>마.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br>바. 사육시설의 주소<br>사. 사육개시 연월일 |
| 사육현황 | 가. 돼지의 종류(일반종, 재래종, 멧돼지)<br>나. 돼지(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사육단계별 세부 내역(마릿수)<br>다. 사육 총 마릿수 |

### 3. 사육현황 변경 시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인 등은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4항 및 이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기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기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되,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 4. 기록·관리

제1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품질평가원장 또는 종돈등록기관의 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 5. 그 밖에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의 방법과 절차,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6의2] 〈개정 2022. 1. 25.〉

## 닭, 오리 및 씨알의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제10조의2제2항 관련)

| | |
|---|---|
| 1. 닭, 오리 | 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 등이 닭·오리를 출하하거나, 닭, 오리를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부여된 농장식별번호(6자리)를 가금이동신고서등에 표시해야 한다.<br>나. 닭·오리를 이동할 경우에는 케이지(cage, 닭을 가두어 사육하는 철망으로 된 우리), 상자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닭, 오리의 날개인식표, 발목링, 발목밴드 등의 방법으로 농장 구분을 하는 경우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br>다. 서로 다른 농장의 닭, 오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농장별로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농장별로 구분하여 케이지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
| 2. 씨알 | 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씨알에 별표 2에 따라 부여된 농장식별번호(6자리)를 가금이동신고서등에 표시해야 한다.<br>나. 씨알을 이동할 경우에는 난좌(卵座: 가축의 알을 운반·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 상자 등에 해당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br>다. 서로 다른 농장의 씨알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농장별로 가금이동신고서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농장별로 구분하여 난좌, 상자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
| 3. 그 밖에 닭, 오리, 씨알의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별표 6의3] 〈개정 2022. 1. 25.〉

## 닭, 오리의 사육현황 신고내용 및 방법 등

(제10조의2제4항 관련)

### 1.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농장경영자는 매월 닭, 오리의 사육현황 등을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닭, 오리 사육현황 신고서로 품질평가원장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 2. 신고내용

| 항목 | 내용 |
|---|---|
| 공통 신고사항 | 가. 농장경영자의 성명(사업체인 경우 사업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br>나.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br>다. 농장식별번호<br>라. 농장경영자의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br>마.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br>바. 사육시설의 주소<br>사. 사육개시 연월일 |
| 사육현황 | 가. 가금의 종류(육계, 산란계, 토종닭, 오리)<br>나. 가금(실용계, 삼계, 종계, 원종계, 순계, 육용오리, 종오리, 원종오리) 주령[주(週) 수로 헤아리는 나이]별 세부내용(마릿수)<br>다. 사육 총 마릿수 |

### 3. 사육현황 변경 시

닭, 오리의 사육현황 신고인 등은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4항 및 이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기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4. 기록·관리**

제1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품질평가원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5. 그 밖에 닭, 오리의 사육현황 신고의 방법과 절차,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7] 〈개정 2019. 12. 31.〉

## 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제12조제3항 관련)

| 신고의 종류 | 신고 내용 |
|---|---|
| 도축 처리 결과 | 1. 검사신청인<br>가. 성명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br>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br>2. 도축의뢰인<br>가. 성명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br>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 마. 인허가(등록)번호<br>3. 도축 목적<br>4. 출하 농장<br>가. 성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장경영자 성명 등을 말한다)<br>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br>다. 주소 라. 농장식별번호<br>5. 접수번호<br>6. 가축의 종류(소, 돼지, 닭, 오리)<br>7. 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수입소)<br>8. 닭의 종류(육계, 삼계, 토종닭, 산란노계, 산란종계, 육용종계, 겸용종)<br>9. 성별(소, 종돈만 해당)<br>10. 연령(소만 해당)<br>11. 생체량<br>12. 총수량<br>13. 도체중량<br>14. 개체식별번호(소, 종돈만 해당)<br>15. 이력번호<br>16. 수입가축의 경우<br>가. 수출국가명 나. 검역계류장 도착일<br>17. 신청 연월일 |

| | |
|---|---|
| 경매 결과 | 1. 개체식별번호(소만 해당)<br>2. 이력번호(돼지만 해당)<br>3. 접수번호(도체순번)<br>4. 지육·부분육 중량<br>5. 자체 도축이 아닌 지육·부분육의 경우<br>가. 지육·부분육 구분<br>나. 반입처 정보(업소·도축장명,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등)<br>6. 중도매인<br>가. 성명 나.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br>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br>7. 경매 거래·반출처<br>가. 성명 나.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br>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 |
| 그 밖에 도축처리 결과 및 경매 결과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별표 8] 〈개정 2019. 12. 31.〉

##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

(제13조제2항 관련)

### 1. 신청내용

| | |
|---|---|
| 신청인 | 가.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또는 명칭)<br>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br>다. 주소(연락처) |
| 도축의뢰인 | 가.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또는 명칭)<br>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br>다. 주소(연락처) |
| 출하 농장정보 (공통) | 가. 농장명<br>나. 성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장경영자 성명 또는 명칭)<br>다.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br>라. 농장식별번호<br>마. 주소(GPS좌표, 연락처) |
| 출하 돼지정보 | 가. 출하 마릿수 |
| 출하 닭, 오리정보 | 가. 출하 마릿수<br>나. 닭, 오리의 종류<br>다. 품종<br>라. 성별<br>마. 일령<br>바. 평균체중 |

### 2.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기록·관리

품질평가원장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3. 이력번호 부여 방법**

가. 돼지

이력번호는 축종코드 1자리, 농장식별번호 6자리, 일련(출하순번)번호 5자리 등 총 12자리 숫자로 구성하여 부여한다.

나. 닭, 오리

이력번호는 축종코드 1자리, 도축일자 6자리, 도축장코드 3자리, 일련번호 2자리 총 12자리 숫자로 구성하여 부여한다.

다.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이력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품질평가원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이력번호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4. 이력번호 축종코드**

| 구분 | 소 | 돼지 | 닭 | 계란 | 오리 |
|---|---|---|---|---|---|
| 축종코드 | 0 | 1 | 2 | 3 | 5 |

**5. 그 밖에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이력번호 부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9] 〈개정 2019. 12. 31.〉

##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14조 관련)

| | |
|---|---|
| 1. 소, 돼지 이력번호의 표시 방법 | 가.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경우에는 그 소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해당 도체에 동일하게 이력번호로 표시해야 한다.<br>나. 도축업자는 돼지를 도축한 경우에는 해당 돼지의 농장식별번호가 포함된 이력번호를 해당 도체에 표시해야 한다.<br>다. 도체에 표시하는 이력번호는 이동 또는 환경의 변화로 훼손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용되는 표시라벨 등은 위생상 위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br>라. 돼지의 경우 이력번호 표시라벨을 대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잉크 등은 식품위생상 위해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인쇄용 색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따른다.<br>마. 라목에 따른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도축장은 이력번호가 정확히 표시되는지를 정기적(가급적 매일)으로 확인·관리해야 한다.<br>바. 도체를 2분체 또는 4분체로 분할하여 이동하는 경우 분할된 도체마다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br>사. 도축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등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가축의 도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도 소속 검사관에 신고하고, 검사관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20호서식의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및 농장식별번호 발급 확인대장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가 포함된 이력번호를 도체에 표시해야 한다. |
| 2. 닭, 오리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 가. 도축업자는 닭 또는 오리를 도축한 경우에는 해당 가금의 농장식별번호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 신청된 이력번호를 최소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br>나. 최소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는 이동 또는 환경의 변화로 훼손·탈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용되는 표시라벨 등은 위생상 위 |

| | |
|---|---|
| | 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br>다. 이력번호 표시라벨을 대신하여 최소포장지에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잉크 등은 식품위생상 위해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인쇄용 색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따른다.<br>라. 다목에 따른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도축장은 이력번호가 정확히 표시되는지를 정기적(가급적 매일)으로 확인·관리해야 한다.<br>마. 도축업자는 농장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가금의 도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도 소속 검사관에 신고하고, 검사관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20호서식의 도축장 농장식별번호 발급 확인대장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장식별번호 정보가 포함된 이력번호를 최소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
| 3. 이력번호 관리 등 | 가. 소와 돼지의 경우에는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소의 시설이 직접 연결되어 도축 후 곧바로 식육포장처리업소로 도체가 이동되는 경우에는 그 이동 시 이력번호 대신 임의의 도축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포장처리를 마치고 시설 밖으로 도체를 반출할 때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br>나. 소 또는 돼지 도축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다시 표시해야 한다.<br>다. 소 도축업자는 지체 없이 귀표를 수거하여 소각, 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해야 하며, 귀표가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br>라. 가금 도축업자는 최소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다시 표시해야 한다. |
| 4. 그 밖에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별표 9의2] 〈신설 2019. 12. 31.〉

##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의 신고방법(제14조의2제2항 관련)

| 신고의 종류 | 신고 내용 |
|---|---|
| 계란이력번호 표시의무자의 거래 등의 결과 | 1. 신고인<br>가. 성명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br>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br>2. 선별포장 의뢰인<br>가. 성명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br>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 마. 허가(등록)번호<br>3. 출하 농장<br>가. 성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장경영자 성명 등을 말한다)<br>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br>다. 주소<br>라. 농장식별번호<br>4. 접수번호<br>5. 계란 용도<br>6. 산란일자<br>7. 산란주령[계란을 낳을 수 있는 닭을 주(週) 수로 헤아리는 나이]<br>8. 보관방법<br>9. 유통기한<br>10. 선별포장 중량별 수량<br>11. 총수량<br>12. 이력번호<br>13. 신청 연월일 |
| 그 밖에 계란 포장처리 결과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별표 9의3] 〈개정 2022. 1. 25.〉

##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부여 방법 등(제14조의3제3항 관련)

### 1.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내용

| | |
|---|---|
| 신청인 | 가.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또는 명칭)<br>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br>다. 주소(연락처) |
| 선별포장 의뢰인 | 가.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또는 명칭)<br>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br>다. 주소(연락처) |
| 출하 농장정보 (공통) | 가. 농장명<br>나. 성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장경영자 성명 등을 말한다)<br>다.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br>라. 농장식별번호<br>마. 주소(GPS좌표, 연락처) |
| 출하 계란 정보 | 가. 출하 수량(개수)<br>나. 계란의 용도<br>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계란 껍데기에 표시해야 하는 산란일, 고유번호(「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발급받은 축산업 허가증 또는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육환경번호<br>라. 산란주령<br>마. 보관방법<br>바. 식용란의 중량별 수량(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

### 2. 이력번호 발급신청서의 기록·관리

품질평가원장은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 3. 이력번호 부여 방법

가. 이력번호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계란 껍데기에 표시해야 하는 산란일(월일 4자리), 고유번호(5자리) 및 사육환경번호(1자리)로 구성하여 부여한다.

나. 품질평가원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이력번호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다.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이력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그 밖에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이력번호 부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9의4] 〈개정 2022. 1. 25.〉

##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14조의5제1항 관련)

| | |
|---|---|
| 1. 표시방법 | 가.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는 계란을 선별 포장한 경우에는 해당 계란의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에 표시해야 한다.<br>나.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이력번호는 이동 또는 환경의 변화로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br>다. 계란 껍데기에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잉크 등은 식품위생상 위해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인쇄용 색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따른다.<br>라. 다목에 따른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력번호가 정확히 표시되는지를 새로운 이력번호가 표시될 때마다 확인·관리해야 한다. |
| 2. 이력번호 관리 등 |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다시 표시해야 한다. |
| 3. 그 밖에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별표 10] 〈개정 2022. 1. 25.〉

##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방법 · 절차 등(제15조제2항 관련)

### 1.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내용

| | |
|---|---|
| 신청인 | 가.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br>나. 생년월일(사업체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br>다. 소재지 라. 전화번호<br>마. 영업신고(허가)번호 바. 팩스번호<br>사. 업종 |
| 검사(반입)장소 | 가. 검사(반입) 장소명 |
| 수입품목 | 가. 한글명 나. 영문명<br>다. 포장수량 라. 순무게(kg, t) |
| 부위 | 가. 부위명 나. 부위별 수량<br>다. 부위별 무게(kg, t) |
| 수입내역 | 가. 화물관리번호 나. 선하증권번호(bill of lading №)<br>다. 생산국 라. 상대국의 도축장명 및 가공장명 |

### 2. 신청서의 기록·관리

검역본부장은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전화, 구술, 팩스 등으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 3. 그 밖에 이력번호 발급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1] 〈개정 2022. 1. 25.〉

##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제16조 관련)

| | |
|---|---|
| 1. 이력번호의 부여·통보 방법 | 가. 이력번호는 가축종류코드 1자리, 원산지코드 2자리, 수입업자코드 4자리, 수입유통식별일련번호 5자리 등 총 12자리 코드로 구성하여 부여한다.<br>나. 검역본부장은 이력번호를 부여한 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 2.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 수입유통식별표에는 이력번호가 표시되어야 하고, 이력번호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활자의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
| 3. 수입유통식별표의 부착방법 | 가. 수입유통식별표는 수출지 라벨이 부착된 면에 부착할 수 있으나,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날짜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 사항을 가려서는 안 된다.<br>나.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였으나, 전산장애 또는 사용자의 실수 등으로 수입유통식별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그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br>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한글표시 스티커(붙임딱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포함하여 부착해야 한다. |
| 4. 수입유통식별표의 관리 | 검역본부장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수입유통식별표를 적합하게 표시하여 부착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 5. 그 밖에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및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별표 12] 〈개정 2019. 12. 31.〉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 포장처리 또는 판매 신고의 내용 등(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6항 관련)

### 1. 거래 신고 내용

| 항목 | 내용 |
|---|---|
| 신고인 | 가. 성명(법인명)<br>나. 대표자<br>다.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br>라. 영업허가(신고)번호<br>마. 주소<br>바. 연락처 |
| 출고(입고)처 | 가. 영업장 명칭(상호)<br>나. 영업허가(신고)번호<br>다.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거래처<br>(입고·출고) | 가. 상호(법인명)<br>나. 대표자<br>다.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br>라. 영업허가(신고)번호<br>마. 주소<br>바. 연락처 |
| 거래내역<br>(입고·출고) | 가. 거래일<br>나.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종류(소, 돼지, 닭, 오리, 계란)<br>다. 이력(묶음)번호<br>라. 제품명(부위명)<br>마. 수량<br>바. 무게<br>사. 소, 돼지의 도체순번(도체번호) |

**2. 포장처리 신고 내용**(식육포장처리업자만 해당한다)

가. 업체명(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나. 전화번호
다. 주소
라. 포장처리일
마. 이력(묶음)번호
바. 원료 또는 부위명
사. 무게(kg, t)
아. 입고·출고(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바. 의뢰업체명(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3. 판매 신고 내용**(수입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경우)

| 항목 | 내용 |
|---|---|
| 신고인 | 가. 성명(법인명)<br>나. 대표자<br>다.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br>라. 주소<br>마. 연락처 |
| 출고처 | 가. 영업장 명칭(상호)<br>나.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판매처(양도) | 가. 성명(법인명)<br>나. 대표자<br>다.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br>라. 주소<br>마. 연락처 |
| 판매내역(양도) | 가. 판매일<br>나. 이력(묶음)번호<br>다. 제품명(부위명)<br>라. 수량<br>마. 무게 |

**4. 신고서의 기록·관리**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를 받은 경우 검역본부장 또는 품질평가원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5. 그 밖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 포장처리 또는 판매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3] 〈개정 2022. 1. 25.〉

# 식육포장처리업자 · 식육판매업자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

## 1. 국내산이력축산물

| 구분 |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식용란선별포장업자·식용란수집판매업자 |
|---|---|---|
|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 가. 도체, 포장처리된 부분육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축산물을 재포장하거나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로 판매 등 이동을 할 경우 동일한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br>나.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할 경우 농장 간 혼입이 없도록 이력번호 단위로 구분·가공해야 하며, 등외등급은 별도로 구분하여 포장처리해야 한다.<br>다. 닭고기, 오리고기를 포장처리할 경우 이력번호 단위로 구분·가공해야 한다.<br>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포장육의 이력번호 표시는 최소 단위의 용기·포장에 대하여 동일한 이력번호로 표시해야 한다.<br>마.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국내산이력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포장육 등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식육판매 표시판 등에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br>바. 이력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국내산이력축산물을 하나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br>사. 닭고기, 오리고기의 경우 도축일자가 동일한 이력번호를 하나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부분육 생산을 위해서는 전일 도축일자(1일 이내)까지 포장 원료육을 묶음번호로 구성할 수 있다.<br>아. 이력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로 표시한다. | 계란 껍데기에 이력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이력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해당 계란의 이력번호를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다시 표시해야 한다. |
| 이력번호의 관리 | 가. 표시된 이력번호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며,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시 표시해야 한다.<br>나. 거래·판매 후 남은 국내산이력축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해야 한다. | |
| 그 밖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방법과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육판매 표지판 또는 라벨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 2. 수입산이력축산물

| 구분 | 식육포장처리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
|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 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포장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장에 입고된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와 같은 이력번호를 포장육 등에 표시해야 한다. | 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진열대에 진열하거나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장에 입고된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와 같은 이력번호를 식육판매 표지판 또는 비닐 포장 등에 표시해야 한다. |
| | 나. 이력번호의 표시는 판매하는 포장육의 최소 단위의 용기·포장에 해야 한다. | 나. 이력번호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하나의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다. |
| | 다. 이력번호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한 개의 최소 단위의 용기·포장에 표시하려는 경우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 다.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별하기 쉽도록 식육 판매표시판을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전면에 설치해야 한다. |
| | 라. 용기·포장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원래의 이력번호를 다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별하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 라. 수입산이력축산물을 보관하는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해야 한다. |
| | 마.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해야 한다. | |
| 이력번호의 관리 | 표시된 이력번호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 그 밖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방법과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라벨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별표 14] 〈개정 2022. 1. 25.〉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묶음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

(제19조제2항 관련)

## 1. 국내산이력축산물

| | |
|---|---|
|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 가. (공통)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계란은 제외한다)을 한 개로 포장 처리·판매할 경우 이력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br>나. (공통) 여러 개의 다른 이력번호를 하나의 포장지로 묶은 경우 소포장지마다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br>다. (공통) 묶음번호를 구성한 이력번호는 다시 묶음번호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묶음번호 구성내역에 대하여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전산신고를 하는 돼지고기의 경우 한 번 더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다.<br>라. (쇠고기) 국내산 쇠고기 등급표시 의무 부위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가목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다.<br>마. (쇠고기)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소의 종류가 같을 때에만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다.<br>바. (돼지고기) 돼지고기의 묶음번호 가공 시 성별, 등급별로 묶음번호를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br>사. (닭고기, 오리고기) 도축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부분육 생산을 위해서는 전일 도축일자(1일 이내)까지 포장 원료육을 묶음번호로 구성할 수 있다. |
| 묶음번호의 관리 | 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쇠고기의 개체는 20마리 이하로 한다. 다만, 여러 마리의 쇠고기를 혼합하여 포장하는 갈비, 세절육(잘게 자른 고기), 분쇄육 등은 50마리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br>나.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는 30개 이하로 해야 한다.<br>다.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닭고기·오리고기의 이력번호는 10개 이하로 해야 한다.<br>라.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구매자 등이 요청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지체 |

없이 제공해야 한다.

마.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산신고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소비자가 인터넷 등으로 묶음번호를 조회하여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전산신고 해야 한다.

**묶음번호의 구성체계**

가. 묶음번호는 아래 구성체계와 같이 L을 포함한 15자리 문자·숫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부여받은 영업장의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영업자코드를 사업자등록번호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묶음번호 구성체계

| 구분 | 묶음고정코드 | 구분코드 | 묶음날짜코드 | 영업자코드 | 일련번호 |
|---|---|---|---|---|---|
| 길이 | 1 | 1 | 6 | 4 | 3 |
| 타입 | 영문자(L) |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1) 묶음고정코드는 영문자 'L'을 표기한다.

2) 구분코드는 쇠고기는 '0'으로, 돼지고기는 '1'로, 닭고기는 '2'로, 오리고기는 '5'로 표기한다.

3) 묶음날짜는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로 표기한다.

4) 영업자코드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가)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산신고 대상 영업자의 경우: 이력관리시스템으로 부여 받은 영업장의 고유번호를 사용한다.

나)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전산신고 대상 영업자가 아닌 경우: 세무서에 부여 받은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숫자 중 끝에서 마지막 한 자리 숫자를 제외한 4자리 숫자를 사용한다.

5) 일련번호는 묶음상품의 날짜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한다.

그 밖에 묶음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수입산이력축산물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가.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 처리·판매할 경우 이력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이력번호가 다른 여러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하나의 포장지로 묶은 경우 소포장지마다 해당 이력번호 전부 또는 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다. 원산지가 같은 수입산이력축산물만 묶음번호로 구성할 수 있다.

**묶음번호의 관리**

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는 5개 이하로 한다.

나. 묶음번호로 구성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이용하여 다시 묶음번호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

다.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구매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묶음번호의 구성체계**

가. 묶음번호는 아래 구성체계와 같이 24자리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수기로 식육판매 표지판 등에 표기할 경우에는 묶음번호 표시는 ILot를 포함한 묶음날짜와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I는 수입을 의미한다).

나. 묶음번호 구성체계

| 구분 | 기관코드 | 구분코드 | 영업자코드 | 영업장코드 | 묶음날짜 | 일련번호 |
|---|---|---|---|---|---|---|
| 길이 | 1 | 2 | 10 | 3 | 6 | 2 |
| 타입 | 영문자 |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숫자 |
| 코드 | A | 고정 | 사업자등록번호 | 변동 | 변동 | 변동 |

1) 구분코드는 각각 수입 쇠고기를 '41'로 하고, 수입 돼지고기를 '42'로 한다.

2) 영업자코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의 숫자만 표기한다.

3) 영업장코드는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하여 활용하며, 단일 영업장인 경우 "000"으로 표기한다.

4) 묶음날짜는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로 표기한다.

5) 일련번호는 묶음상품의 날짜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한다.

그 밖에 묶음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5] 〈개정 2022. 1. 25.〉

##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 · 집단급식소운영자 · 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방법(제21조 관련)

### 1. 영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

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부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조리·판매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게시해야 한다.

1) 메뉴판 또는 메뉴게시판
2) 거래명세서 또는 거래영수증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른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4)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출력물
5) 별도 게시판 또는 푯말
6) 인터넷 홈페이지(해당 영업장 정보가 포함된 홈페이지)
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품 표시사항을 포함한 스티커 또는 라벨

나. 제1호가목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이력번호 표시를 메뉴판, 메뉴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외의 방법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 중 한 곳 이상에 비치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계산대
2) 출입문 주변
3)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다. 이력번호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공급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모두 게시하고,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소진한 시점까지 게시하도록 한다. 다만, 영업자가 공급받은 이력관리대상축산물 모두를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음식으로 판매·제공할 때 게시할 수 있다.

라.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 2. 영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탁급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급식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제1호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급식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표시하고 게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학교 홈페이지 등 학교명이 포함된 곳만 해당한다)을 통하여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력번호 게시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 3. 영 제5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가.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통하여 이력번호 표시제품임을 표시·고지하고 배송 상품에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나. 인터넷, TV, 잡지 등 통신판매 수단의 특성상 문자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정보 주위에 자막, 별도의 칸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 표시 제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1) 표시 시기: 전자매체의 경우 상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
2) 표시 문구(예시): 이력번호 표시제품임. 이력번호는 배송된 상품에 표시됨.

다. 전화 등 통신판매 수단의 특성상 문자로 정보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력번호 표시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반복적으로 말로 설명해야 한다.

1) 설명 방법: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상품 설명과 동일하게 하고, 반복적(1회당 2번 이상)으로 설명
2) 설명 문구(예시): 본 상품은 이력번호가 표시된 제품이며, 이력번호는 배송되는 상품에 표시됩니다.

### 4. 그 밖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게시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6] 〈개정 2022. 1. 25.〉

##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제26조 관련)

###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

가.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이 있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부(「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2호에 따른 관리대장을 의미한다) 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관리해야 하고, 기록일로부터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나. 가축시장개설자

가축시장개설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가축의 거래내역을 장부 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관리해야 하고,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 도축업자

도축업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축처리 및 경매 결과를 장부 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관리해야 하고,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라. 식육포장처리업자

1) 영 제4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 처리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포장처리일별로 기록·관리해야한다.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이력축산물은 별지 제10호서식, 수입산이력축산물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일별로 기록·관리해야 하고,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2) 영 제4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자 외의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 처리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실적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반출 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날짜별로 기록·관리하거나 이력관리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다만, 포장처리 및 판매·반출 실적의 기록·관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라 원료수불, 생산·작업 및 거래내역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재사항 모두를 기록·관리한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3)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에게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판매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판매일별로 기록·관리해야 하고,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마.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1) 영 제4조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법 제11조의2제2항 및 영 제2조의3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농장 및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농장으로서 직접판매를 하기 위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란을 선별·포장 처리한 경우 별표 9의2에 따른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선별포장처리일별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력관리대상축산물(계란)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이력축산물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일별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선별·포장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식용란의 수집·포장 및 판매내역 중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로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록·관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를 거래일별로 구분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해야 하고, 기록사항을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기록·관리

가. 영 제4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매입한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이력번호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날짜별로 기록·관리하고,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반출한 경우에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은 별지 제8호서식, 국내산이력축산물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판매·반출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해야 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로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나. 영 제4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외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매입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를 자체적으로 기록·관리하거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하고,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반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판매·반출 실적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거래일별로 기록·관리하거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해야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로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판매·반출 실적의 기록·관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거래내역서의 작성(별지 제22호서식의 기재사항 모두 기록·관리한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판매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판매일별로 기록·관리해야 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로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 25.>

#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소 · 돼지)

※ 뒷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 | |
|---|---|---|
| 신청인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③ 주소(거주지) | ④ 전화번호 |

| | | |
|---|---|---|
| ⑤ 사육가축의 종류 및 사육방식 | [ ] 소 | [ ] 자가사육 [ ] 위탁사육 [ ] 자가사육+위탁사육 [ ] 방목지 [ ] 종축장 |
| | [ ] 돼지 | [ ] 자가사육 [ ] 위탁사육 [ ] 자가사육+위탁사육 [ ] 종돈장 [ ] 기타 |

| | |
|---|---|
| ⑥ 가축 사육시설 | 농장 명칭: |
| | 사육시설 주소: |
| | 관리자 성명: 관리자 주민등록번호: |
| |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GPS좌표: |
| | 사육개시 연월일: . . . |

| | | | |
|---|---|---|---|
| ⑦ 허가등록사항 | [ ] 허가 [ ] 등록 [ ] 기타 | ⑧ 고유번호 | |

| ⑨ 사육규모 | 소 | | 돼지 | | | | | | | |
|---|---|---|---|---|---|---|---|---|---|---|
| | 종류 | 마릿수 | 종류 | 세부 명세(마릿수) | | | | | | |
| | 소계 | | | 소계 | 모돈 | 후보돈 | 웅돈 | 자돈 | 육성돈 | 비육돈 |
| | 한우 | | 일반종 | | | | | | | |
| | 육우 | | 재래종 | | | | | | | |
| | 젖소 | | 멧돼지 | | | | |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전화번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축산업 허가신청서 사본(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는 축산업 등록신청서 사본(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축산업 허가증(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축산업 등록증(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육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이력관리, 축산물수급관리, 축산물안전관리, 가축방역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가축이력관리, 축산물안전관리, 방역 효율성 등 축산업 및 관련 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위탁된 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장식별번호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등록 말소 후에도 가축이력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사육·이동, 도축 등 가축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가축질병 및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유 의 사 항

1. ①~④란은 신청인에 대한 기초정보를 기재하되, 위탁사육인 경우 위탁자의 기초정보도 기재해야 합니다.
2. ⑤란에는 사육가축의 종류 및 신청인이 자가·위탁사육을 분명히 하고, 종축장 또는 종돈장일 경우에 [ ]에 √표를 합니다.
3. ⑥란에는 신청인이 소유 및 관리하는 가축사육시설에 기초정보를 기재하고 관리자는 농장경영자와 계약 또는 가족관계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농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4. ⑧란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 5자리를 적습니다.
5. 사육규모는 ⑨란에 소 또는 돼지의 사육마릿수를 기재합니다. 돼지의 경우 항목별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일반종: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종을 제외한 서양종 및 모든 교잡종
  * 서양종: 대요크셔(Large Yorkshire), 랜드레이스(Landrace), 두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Welsh), 피어트레인(Pietrain), 스포티드(Spotted), 버크셔(Berkshire)

나. 재래종(Korean native pig):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래종 고유의 외모기준을 유지하는 돼지이어야 하고, 실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다. 멧돼지: 가축화되어 집에서 사육하는 멧돼지

라. 모돈: 자돈을 생산하고 있는 번식용씨돼지 마릿수

마. 후보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후보돈 마릿수

바. 웅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종모돈 마릿수

사. 자돈(2개월 미만), 육성돈(2~4개월 미만), 비육돈(4~6개월 이상)

## 처 리 절 차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 | 농장식별번호 및 발급증 교부 |
|---|---|---|---|---|---|---|
| 신청인 | |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소 위탁기관) | |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 발 급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3. 4. 27.>

#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닭·오리)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
|---|---|---|

| | | | |
|---|---|---|---|
| 신청인 | ① 성 명(경영자) | | ② 전화번호 |
| | ③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 | ④ 주소(거주지) | | |

| | | | | | |
|---|---|---|---|---|---|
| ⑤ 축산업 분류 및 사육가축의 종류 | 축산업 분류 | [ ] 가축사육업 [ ] 종축업 [ ] 부화업 | | | |
| | 가금의 종류 | [ ] 육계 [ ] 산란계 [ ] 토종닭 [ ] 오리 | | | |
| | 세부종류 | 육계 | [ ] 실용계 | [ ] 삼계 | [ ] 종계 [ ] 원종계 |
| | | 산란계 | [ ] 실용계 | [ ] 종계 | [ ] 원종계 |
| | | 토종닭 | [ ] 실용계 | [ ] 종계 | [ ] 원종계 [ ] 순계 |
| | | 오리 | [ ] 육용오리 | [ ] 종오리 | [ ] 원종오리 |
| ⑥ 가축 사육시설 | 농장명칭: | | | | |
| | 사육시설 소재지: | | | | |
| | 관리자 성명: 관리자 주소: | 관리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
| | GPS좌표: | | | | |
| | 사육개시 연월일: . . . | | | | |
| ⑦ 사육규모(평균) | | | | | |

**사육현황**

| | | | |
|---|---|---|---|
| ⑧허가등록사항 | [ ] 허가 [ ] 등록 [ ] 기타 | ⑨고유번호 | |
| ⑩사육환경 | [ ] 방사사육 [ ] 축사 내 평사<br>[ ] 개선된 케이지 [ ] 기존 케이지 | ⑪인증여부 (선택사항) | [ ] HACCP [ ] 친환경 [ ] 동물복지<br>[ ] 무항생제 [ ] 유기축산 |

⑫ 사육규모(상세)

| 육계 | 실용계 | | 삼계 | | 종계 | | 원종계 | |
|---|---|---|---|---|---|---|---|---|
| | 주령 | 마릿수 | 주령 | 마릿수 | 주령 | 마릿수 | 주령 | 마릿수 |
| | | | | | | | | |

| 산란계 | 실용계 | | 종계 | | 원종계 | |
|---|---|---|---|---|---|---|
| | 주령 | 마릿수 | 주령 | 마릿수 | 주령 | 마릿수 |
| | | | | | | |

| 토종닭 | 실용계 | | 종계 | | 원종계 | | 순계 | |
|---|---|---|---|---|---|---|---|---|
| | 주령 | 마릿수 | 주령 | 마릿수 | 주령 | 마릿수 | 주령 | 마릿수 |
| | | | | | | | | |

| 오리 | 육용오리 | | 종오리 | | 원종오리 | |
|---|---|---|---|---|---|---|
| | 주령 | 마릿수 | 주령 | 마릿수 | 주령 | 마릿수 |
| | | | |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전화번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축산업 허가신청서 사본(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는 축산업 등록신청서 사본(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축산업 허가증(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축산업 등록증(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육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이력관리, 축산물수급관리, 축산물안전관리, 가축방역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가축이력관리, 축산물안전관리, 방역 효율성 등 축산업 및 관련 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위탁된 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장식별번호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등록 말소 후에도 가축이력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사육·이동, 도축 등 가축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가축질병 및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 의 사 항

1. ①~④란은 신청인(위탁농장은 위탁자, 자가+위탁농장은 경영주 및 위탁자)에 대한 기초정보를 적습니다.
2. ⑤란에는 축산업 분류 및 사육가축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 ⑥란에는 신청인이 소유 및 관리하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기초정보를 적습니다(관리자는 농장경영자와 계약 또는 가족관계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 농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4. ⑦란에는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 가능한 평균 마릿수를 적습니다.
5. ⑨란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 5자리를 적습니다.
6. ⑩(방사사육)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를 말한다) 별표 6의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축사 내 평사)축사내 개방형 케이지를 포함, (개선된 케이지)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인 경우, (기존 케이지)사육밀도가 마리당 0.05㎡ 이상인 경우
7. ⑪인증여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해당 가축사육시설에 해당하는 인증사항을 선택합니다(선택사항).
8. ⑫사육규모(상세): 농장경영주(관리자) 등이 신고하는 현재 사육하고 있는 마릿수

| | |
|---|---|
| 육계, 토종닭 | ○ 고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닭 및 그 닭의 종계·원종계·순계 |
| 산란계 | ○ 식용계란(판매를 위한 식용 유정란도 포함)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닭 및 그 닭의 종계·원종계 |
| 오리 | ○ 고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오리 및 그 오리의 종오리·원종오리 |

## 처 리 절 차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 | 농장식별번호 및 발급증 교부 |
|---|---|---|---|---|---|---|
| 신청인 | |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 발 급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 25.>

# [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 [ ]소, 종돈의 출생
# [ ]소, 종돈의 폐사
# [ ]양도 · 양수 · 이동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수입 · 수출
# [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 [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 | |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 농장식별번호 | 전화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 |
|---|---|---|
|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 | | |
|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 | | |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변경사항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 | | |

변경 사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3항,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제6조제5항에 따라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종축등수출입 신고기관의 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및 담당직원 확인사항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육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 이력관리, 축산물수급관리, 축산물안전관리, 가축방역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가축이력관리, 축산물안전관리, 방역 효율성 등 축산업 및 관련 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위탁된 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장식별번호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등록 말소 후에도 가축이력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사육·이동, 도축 등 가축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가축질병 및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 의 사 항

1. 공통사항
   가. 축산농장의 경우 농장식별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
   나. 변경되는 변경 전 등록내용을 왼쪽에 기록하고 변경 후 등록내용을 오른쪽에 기록합니다.
2. 농장식별번호 변경신고 시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처 리 절 차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 | 결과 반영 및 발급증 교부 |
|---|---|---|---|---|---|---|
| 신청인 | |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위탁기관, 종축등록기관,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 | |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위탁기관, 종축등록기관,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 | |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위탁기관, 종축등록기관,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2. 31.>

# 소의 [ ]출생·수입·수출 / [ ]양도·양수·이동 / [ ]폐사 신고서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 | | |
|---|---|---|---|
| 공통 신고 사항 | 농장 경영자 등 정보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 ③ 법인 명칭 |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
| | | ④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가축 사육시설 정보 | ⑤ 농장식별번호 | ⑥ 위탁기관명 |
| | | ⑦ 사육시설 주소 | |
| | | ⑧ 사육 개시 연월일 | |
| | | ⑨ 관리자 성명 | ⑩ 관리자 생년월일 |
| | | ⑪ 관리자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출생 수입 수출 신고 | | ⑫ 출생·수입·수출 연월일 | ⑬ 소의 종류 1. 한우 2. 젖소 3. 육우 4. 수입소 5. 기타 |
| | | ⑭ 암수 구분 1. 암 2. 수 3. 거세 4. 프리마틴 | ⑮ 부 개체식별번호 |
| | | | ⑯ 모 개체식별번호 자가 생산 / 대리모 생산 |
| | |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 | ※ 원산지 |
| 양도·양수 이동(입고·출고) 신고 | | ⑰ 양도(출고)·양수(입고) 구분 1. 양도(출고) 2. 양수(입고) | ⑱ 개체식별번호 |
| | | ⑲ 양도(출고)·양수(입고) 연월일 및 장소 | ⑳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
| | | ㉑ 양도자(출고자)·양수자(입고자) 성명(상호) | ㉒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 ㉓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폐사 신고 | | ㉔ 개체식별번호 | ㉕ 폐사일 |
| | | ㉖ 폐사 원인 1.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2. 일반질병 3. 사고 4. 기타 | |
| | | ㉗ 폐사처리방법 1. 매몰(장소: ) 2. 폐기처리(업체명: , 전화번호: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전화번호

**○○축산업협동조합장**
**○○농업협동조합장**
**○○협동조합**
**○○법인(축산 관련 법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유의사항

1. 출생·수입·수출신고는 ①~⑯란을 적습니다. ①~④란에는 농장경영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⑤~⑪란은 가축사육시설의 정보인 농장식별번호, 관리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⑬란의 소의 종류 및 ⑭란의 암수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⑮란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적고,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원산지란은 수입소만 해당합니다. ⑯ 모 개체식별번호는 "자가 생산란"에는 송아지의 모(母)의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자가 생산이 아닌 대리모를 통해 생산한 경우, 자가생산란에는 난소를 제공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적고, "대리모 생산"란에는 실제 출산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2. 양도·양수 및 이동(반입·반출) 신고는 ①~⑪란과 ⑰~㉓란을 적습니다. 또한, ⑰란의 양도(반입)·양수(반출)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⑳란의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는 양도·양수·이동되는 상대 가축사육시설의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3. 폐사신고는 ①~⑪란과 ㉔란을 적고, ㉖란의 폐사 원인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하며, ㉗란의 폐사처리방법은 매몰인 경우 장소를 적고, 폐기(소각, 재활용)인 경우 업체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4. 이 신고서는 경영자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5.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
6. 여러 마리의 출생 등 신고(기존 소의 신고를 포함합니다)를 할 경우 해당 신고 항목을 표시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작성 참고사항
   가. 개체식별번호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KOR 002 123 456 785 ⇒ 002 123 456 785
   나. 소의 종류: 해당하는 숫자에 ○표 표시(1.한우, 2.젖소, 3.육우, 4.수입소)
      - 한우: 종축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한우기준에 부합하는 소
      - 젖소: 착유하고 있거나 착유를 위하여 사육중인 소, 젖소 암소 중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소
      - 육우: 젖소 중 착유한 경험이 없는 암소, 젖소 암소 중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소, 젖소수소, 그 밖의 식용 소
      - 수입소(수입국명): 동물검역관이 수입소로 인정하는 소
   다. 부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의 아비 소의 개체식별번호(정액번호를 포함한다)
   라. 모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를 분만한 어미 소의 개체식별번호(수정란 이식의 경우 난소를 제공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12. 31.>

# [ ]출생 · 수입 · 수출
# 종돈 [ ]양도 · 양수 · 이동 신고서
# [ ]폐사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
| 공통 신고 사항 | 농장 경영자 등 정보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 ③ 법인 명칭 |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
| | | ④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가축 사육시설 정보 | ⑤ 농장식별번호 | |
| | | ⑥ 사육 주소 | |
| | | ⑦ 사육 개시 연월일 | |
| | | ⑧ 관리자 성명 | ⑨ 관리자 생년월일 |
| | | ⑩ 관리자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 | |
|---|---|---|---|
| 출생 수입 수출 신고 | ⑪ 개체식별번호 | | ⑮ 종돈의 종류(1.순종, 2.수입종돈, 3.번식용씨돼지, 4.기타) ☐ 대요크셔(Large Yorkshire), ☐ 랜드레이스(Landrace), ☐ 두 록(Duroc), ☐ 햄프셔(Hampshire), ☐ 웰시(Welsh), ☐ 피어트레인(Pietrain), ☐ 스포티이드(Spotted), ☐ 버크셔(Berkshire) ☐ 재래종 |
| | ⑫ 1. 혈통·고등 등록일(등록번호): 2. 번식용씨돼지 혈통 확인일(확인번호): | | |
| | ⑬ 출생(수입·수출) 연월일 ※ 수입 또는 수출 원산지(국가명) | | |
| | ⑭ 암수 구분 | 1. 암 ( 두) 2. 수 ( 두) | ⑯ 부 개체식별번호 |
| | | | ⑰ 모 개체식별번호 |

| | | |
|---|---|---|
| 양도양수 이동(출고입고) 신고 | ⑱ 양도(출고)·양수(입고) 구분 1. 양도( 두) 2. 양수( 두) | ⑲ 개체식별번호 |
| | ⑳ 양도(출고)·양수(입고) 연월일 및 장소 | ㉑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
| | ㉒ 양도자(출고자)·양수자(입고자) 성명(상호) | ㉓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㉔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 |
|---|---|---|
| 폐사 신고 | ㉕ 개체식별번호 | ㉖ 폐사일 |
| | ㉗ 폐사 원인 1.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2. 일반질병 3. 사고 4. 기타 | |
| | ㉘ 폐사처리방법 1. 매몰(장소: ) 2. 폐기처리(업체명: ,전화번호: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전화번호

**종돈등록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유의사항

1. 출생·수입·수출신고는 ①~⑰란을 적습니다. ①~④란에는 농장경영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⑤~⑩란은 가축사육시설의 정보인 농장식별번호, 관리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⑫란의 혈통·고등 등록일(등록번호) 또는 번식용씨돼지 혈통확인일(확인번호) 적으며, ⑭란의 암수구분 및 ⑮란의 종돈 종류는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종돈의 품종을 아는 경우 √ 를 표시합니다. ⑯~⑰란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양도·양수·이동(반입·반출) 신고는 ①~⑩란과 ⑱~㉔란을 적습니다. 또한, ⑱란의 양도(반입)·양수(반출)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㉑란의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는 양도·양수·이동되는 상대 가축사육시설의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3. 폐사신고는 ①~⑩란과 ㉕란을 적고, ㉗란의 폐사 원인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하며, ㉘란의 폐사처리방법은 매몰인 경우 장소를 적고, 폐기처리(소각, 재활용)인 경우 업체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4. 이 신고서는 경영자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5.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
6. 여러 마리의 출생 등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신고 항목을 표시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작성 참고사항
   가. 개체식별번호
      - 12자리(농장식별번호 6자리 + 농장별 개체관리번호 6자리)
      - 기입 예) 100001000001
   나. 종돈의 종류 구분
      - 대요크셔(Large Yorkshire), 랜드레이스(Landrace), 두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Welsh), 피어트레인(Pietrain), 스포티이드(Spotted), 버크셔(Berkshire), 재래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31.>

# 돼지(종돈 제외) [ ]양도 · 양수 · 이동
# [ ]수입 · 수출 신고서
# 돼지(종돈 포함) [ ]사육 현황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
| 공통 신고 사항 | 농장 경영자 등 정보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 ③ 법인 명칭 |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
| | | ④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 가축 사육시설 정보 | ⑤ 농장식별번호 | |
| | | ⑥ 사육 주소 | |
| | | ⑦ 사육 개시 연월일 | |
| | | ⑧ 관리자 성명 | ⑨ 관리자 생년월일 |
| | | ⑩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 | ⑪ 농장유형 | □ 종돈장 □ AI센터 □검정소 □ 번식전문농장 □ 비육전문농장 □ 일괄사육농장 □ 기 타 |

| | | | ⑭ 세부내역(두) | | | | | | |
|---|---|---|---|---|---|---|---|---|---|
| 사육현황 신고 | ⑫계(두) | ⑬ 종류 | 소계 | 모돈 | 후보돈 | 웅돈 | 자돈 | 육성돈 | 비육돈 |
| | | 일반종 | | | | | | | |
| | | 재래종 | | | | | | | |
| | | 멧돼지 | | | | | | | |

| | | |
|---|---|---|
| 양도·양수 이동(반입·반출) 신고 | ⑮ 구분: □ 양도·반출 □ 양수·반입 | ⑯ 이동 일자: |
| | | ⑰ 이동 두수: 총 두 □모돈( ) □후보돈( ) □웅돈( ) □자돈( ) □육성돈( ) □비육돈( ) ※ 자돈의 임시표시(페인트 색상, 표시모양 등: ) |
| | ⑱ 경영자명: | ⑲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
| | ⑳ 사육지 주소: (전화번호: ) | |

| | | |
|---|---|---|
| 수입·수출 신고 | ㉑ 구분 : □ 수입 □ 수출 | ㉔ 수입·수출 두수: 총 두 □모돈( ) □후보돈( ) □웅돈( ) □자돈( ) □육성돈( ) □비육돈( ) |
| | ㉒ 수입·수출 연월일 : | |
| | ㉓ 수입·수출 원산지(국가명)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연락처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유의사항

1. ①~⑪란은 공통신고사항으로 모든 신고 시에 작성하며, 돼지의 경영자, 관리자에 대한 기초정보를 기재합니다.
2. 사육현황 신고는 ⑫~⑭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항목별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일반종: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종을 제외한 서양종 및 모든 교잡종
      *서양종: 대요크셔(Large Yorkshire), 랜드레이스(Landrace), 두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Welsh), 피어트레인(Pietrain), 스포티드(Spotted), 버크셔(Berkshire)
   나. 재래종(Korean native pig):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래종 고유의 외모기준을 유지하는 돼지이어야 하고, 실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다. 멧돼지: 가축화되어 집에서 사육하는 멧돼지
   라. 모돈: 자돈을 생산하고 있는 번식용씨돼지 마릿수
   마. 후보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후보돈 마릿수
   바. 웅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숫돼지 마릿수
   사. 자 돈: 2개월령 미만
   아. 육성돈: 2~4개월령 미만
   자. 비육돈: 4~6개월령 이상
3. 이동신고는 ⑮란에 양도(반입)·양수(반출) 구분의 □에 √ 를 표시하고, ⑯~⑳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가. 이동일자: 돼지의 양도(반입)·양수(반출)일자
   나. 이동 두수: 양도(반입)·양수(반출) 두수(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구분의 □에 √ 를 표시하고 두수기록)
   다. 경영자명: 신고인 입장에서 이동 전·후 경영자 성명
   라.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양도·양수·이동되는 상대 가축사육시설의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를 기재
   마. 사육지 주소: 이동 전·후 사육지 주소
4. 수입·수출신고는 ①~⑪란과 ㉑~㉔란을 적습니다.
5. 이 신고서는 경영자 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6.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은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19. 12. 31.>

# [ ]닭, [ ]오리 [ ]씨알 [ ] 수입 [ ] 수출 신고서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 | | |
|---|---|---|---|
| 공통 신고 사항 | 농장 경영자 등 정보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 ③ 법인 명칭 |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
| | | ④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 가축 사육시설 정보 | ⑤ 농장식별번호 | |
| | | ⑥ 사육 주소 | |
| | | ⑦ 사육 개시 연월일 | |
| | | ⑧ 관리자 성명 | ⑨ 관리자 생년월일 |
| | | ⑩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 | | |
|---|---|---|---|
| 수입 수출 신고 | ⑪ 수입·수출 연월일:<br>※ 수입·수출 원산지(국가명):<br>※ 수입·수출 회사명: | | ⑭ 닭·오리·씨알의 종류(1.순계, 2.원종계, 3. 종계, 4.원종오리, 5.종오리, 6.기타)<br>산란계: [ ]하이라인 백색, [ ]하이라인 갈색, [ ]이사브라운, [ ]바브콕, [ ]닉칙 백색, [ ]데칼브와렌, [ ]하이섹스갈색, [ ]로만백색, [ ]로만갈색, [ ]데칼브브라운, [ ]보반스브라운, [ ]브라운닉<br>육용계: [ ]하이브로, [ ]인디안리버, [ ]하바드, [ ]아바에이카, [ ]로스, [ ]코브, [ ]로만, [ ]에이비안<br>오리(페킨종): [ ] 스타 53, [ ]SM 3, ST 5 |
| | ⑫ 마릿수(씨알 개수) : | | |
| | ⑬ 암수 구분 | 1. 암 ( 마리)<br>2. 수 ( 마리) | ⑮ 검역시행장 지정 여부: |
| | | | ⑯ 선하증권번호(B/L):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연락처

**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의 장** 귀하

(뒤쪽)

## 유의사항

1. ①~⑩란은 공통신고사항으로 모든 신고 시에 작성하며, 닭·오리 또는 씨알의 농장경영자, 관리자에 대한 기초 정보를 기재합니다.
2. 수입·수출 신고는 ⑪~⑯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항목별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수입·수출: 수입·수출 연월일, 수입·수출 원산지(국가명)와 수입·수출 회사명
   나. 마릿수(씨알 개수): 수입·수출신고 대상이 되는 닭·오리의 마릿수 또는 씨알의 개수
   다. 암수 구분: 가금의 암수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하고,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암'에 총 마릿수 기재
   라. 닭·오리·씨알의 종류: 순계, 원종계, 종계, 원종오리, 종오리 중 해당되는 닭·오리·씨알의 종류에 ○ 표시합니다.
   해당되는 닭·오리·씨알의 종류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에 ○ 표시합니다.
   *산란계: 하이라인 백색, 하이라인 갈색, 이사브라운, 바브콕, 닉칙 백색, 데칼브와렌, 하이섹스 갈색, 로만백색, 데칼브브라운,보반스브라운, 브라운닉
   *육용계: 하이브로, 인디안리버, 하바드, 아바에이카, 로스, 코브, 로만, 에이비안
   *오 리(페킨종): 스타 53, SM 3, ST 5
   마. 검역시행장 지정 여부: ⑤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은 가축사육시설이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된 경우에 '여'로 표시합니다.
   바. 선하증권번호(B/L): 수입 가금에 대한 선하증권번호를 기입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2. 1. 25.>

# [ ]닭, [ ]오리 [ ]사육현황
# [ ]씨알 [ ]양도 · 양수 · 이동 신고서
# [ ]입란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
| | | | 즉시 |

**공통 신고 사항**

| | | | | |
|---|---|---|---|---|
| 농장 경영자 등 정보 | ① 성명 | | ②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 ③ 법인 명칭 | | ④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 |
| | ⑤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
| 가축 사육 시설 정보 | ⑥ 농장식별번호 | | ⑦ 사육 개시 연월일 | |
| | ⑧ 사육 주소 | | | |
| | ⑨ 관리자 성명 | | ⑩ 관리자 생년월일 | |
| | ⑪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
| | ⑫ 축산업 분류 및 사육가축의 종류 | 축산업 분류 | [ ] 가축사육업 [ ] 종축업 [ ] 부화업 | |
| | | 가금의종류 | [ ] 육계 [ ] 산란계 [ ] 토종닭 [ ] 오리 | |
| | | 세부종류 | 육계 | [ ] 실용계 [ ] 삼계 [ ] 종계 [ ] 원종계 |
| | | | 산란계 | [ ] 실용계 [ ] 종계 [ ] 원종계 |
| | | | 토종닭 | [ ] 실용계 [ ] 종계 [ ] 원종계 [ ] 순계 |
| | | | 오리 | [ ] 육용오리 [ ] 종오리 [ ] 원종오리 |

**사육현황 신고**

| | | | | | | | | |
|---|---|---|---|---|---|---|---|---|
| 육계 | 실용계 | | 삼계 | | 종계 | | 원종계 | |
| | 주령 | 마릿수 | 주령 | 마릿수 | 주령 | 마릿수 | 주령 | 마릿수 |
| | | | | | | | | |

| | | | | | | |
|---|---|---|---|---|---|---|
| 산란계 | 실용계 | | 종계 | | 원종계 | |
| | 주령 | 마릿수 | 1일 계란 생산량 (월말 기준) | 주령 | 마릿수 | 주령 | 마릿수 |
| | | | | | | | |

| | | | | | | | | |
|---|---|---|---|---|---|---|---|---|
| 토종닭 | 실용계 | | 종계 | | 원종계 | | 순계 | |
| | 주령 | 마릿수 | 주령 | 마릿수 | 주령 | 마릿수 | 주령 | 마릿수 |
| | | | | | | | | |

| | | | | | | |
|---|---|---|---|---|---|---|
| 오리 | 육용오리 | | 종오리 | | 원종오리 | |
| | 주령 | 마릿수 | 주령 | 마릿수 | 주령 | 마릿수 |
| | | | | | | |

**[ ] 양도·이동(반출) [ ] 양수·이동(반입) [ ] 입란 신고**

⑬ 닭·오리 마릿수 또는 씨알의 개수(암·수 구분, 씨알은 알의 종류)
1. 총 마릿수/개수: 마리/개, (암 : 마리, 수 : 마리)
2. 알의 종류 : 씨알, 백세미용 알

⑭ 닭·오리·씨알의 종류

| | | | | |
|---|---|---|---|---|
| 산란계 | [ ]하이라인백색 | [ ]하이라인갈색 | [ ]이사브라운 | [ ]바브콕 [ ]닉칙백색 |
| | [ ]데칼브와렌 | [ ]하이셱스갈색 | [ ]로만백색 | [ ]로만갈색 |
| | [ ]데칼브라운 | [ ]보반스브라운 | [ ]브라운닉, | [ ]기타 |
| 육계 | [ ]하이브로 | [ ]인디안리버 | [ ]하바드 | [ ]아바에이카 [ ]로스 |
| | [ ]코브 | [ ]로만 | [ ]에이비안 | [ ]기타 |
| 토종닭 | [ ] 한협 | [ ] 소래 | [ ] 우리맛닭 | [ ] 기타 |
| 오리 | [ ] 스타 53 | [ ]SM 3 ST 5 | [ ]기타 | |

| | |
|---|---|
| ⑮ 양도(반입)·양수(반출)·입란 연월일 | ⑯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
| ⑰ 양도자(반입자)·양수자(반출자) 성명(상호) | ⑱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⑲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연락처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유 의 사 항

1. ①~⑫란은 공통신고사항으로 모든 신고 시에 작성하며, 가금의 농장경영자, 관리자에 대한 기초정보를 적습니다.
2. 사육현황신고는 가금의 종류를 육계, 산란계, 토종닭, 오리로 구분하여 기준일(매월 말일)의 주령별 사육 마릿수를 적습니다.

| | |
|---|---|
| 육계, 토종닭 | ○ 고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닭 및 그 닭의 종계·원종계·순계 |
| 산란계 | ○ 식용계란(판매를 위한 식용 유정란도 포함)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닭 및 그 닭의 종계·원종계 |
| 오리 | ○ 고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오리 및 그 오리의 종오리·원종오리 |

3. 양도·양수·이동·입란 신고는 ⑬~⑲란에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항목별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양도(반출)·양수(반입)·입란 구분: 해당되는 신고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나. 양도·양수하는 닭·오리의 마릿수 또는 입란하는 씨알의 개수를 적습니다(도축출하 신고는 도축신청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씨알의 이동신고는 부화장 입란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암·수 구분: 양도·양수하는 닭·오리의 암·수를 알 수 있을 경우에 적습니다.
   라. 씨알의 경우 해당되는 알의 종류에 ○ 표시합니다.
   마. 닭·오리·씨알의 종류: 해당하는 품종에 √를 표시하고, 해당하는 품종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에 √를 표시합니다.
   바. 연월일: 양도·양수·입란한 연월일자를 적습니다.
   사.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닭·오리를 양도하거나 양수받은 가축사육시설의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를 적고 씨알은 씨알을 생산한 농장식별번호를 적습니다.
   아. 양도자·양수자: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은 가축사육시설의 농장경영자 및 농장명, 가축거래상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자. 생년월일: 거래 농장경영자의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 적습니다.
   차. 사육지 주소: 거래 농장식별번호의 가축사육시설의 주소, 가축거래상인의 주소를 적습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돼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 아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 | | |

| | |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또는 명칭)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주소 | 연락처 |

| | | |
|---|---|---|
| 도축 의뢰인 | 성명(대표자 또는 상호)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주소 | 연락처 |

| | | |
|---|---|---|
| 출하 농장정보 | 농장명 | 성명(주민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농장식별번호 |
| | 주소 GPS좌표 | 연락처 |

| | |
|---|---|
| 출하 돼지정보 | 출하 두수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 유의사항 |
|---|
| 신청서는 도축 출하시 농장식별번호 또는 도축 의뢰인별 단위로 작성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19. 12. 31.>

## 닭, 오리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 아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 | | |

| | |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또는 명칭)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주소 | 연락처 |

| | | |
|---|---|---|
| 도축 의뢰인 | 성명(대표자 또는 상호)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주소 | 연락처 |

| | | |
|---|---|---|
| 출하 농장 정보 | 농장명 | 농장경영자 |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농장식별번호 |
| | 주소 (GPS좌표: ) | 연락처 |

| 신청 내용 | 가금의 종류 | 품종 | 성별 | 일령 | 평균체중 | 마릿수 |
|---|---|---|---|---|---|---|
| | | | |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 유의사항 |
|---|
| 신청서는 도축 출하시 농장식별번호 또는 도축 의뢰인별 단위로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2. 1. 25.>

# 계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 아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 | | |

| | |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또는 명칭)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주소 | 연락처 |

| | | |
|---|---|---|
| 선별·포장 의뢰인 | 성명(대표자 또는 상호)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주소 | 인허가번호 |
| | 인증 | 연락처(휴대전화) |

| | | |
|---|---|---|
| 출하 농장정보 | 농장명 | 농장경영자 성명 |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농장식별번호 |
| | 사육방식 | 사육과정 중 동물용의약품 등 사용 여부 |
| | 주소<br>(GPS좌표: ) | |
| | 인증 | 연락처 |

| 계란 정보 | 용도 |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 | 산란 주령 | 보관 방법 | 유통 기한 | 왕란 | 특란 | 대란 | 중란 | 소란 | 계 |
|---|---|---|---|---|---|---|---|---|---|---|---|
| | | | | | | | | |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 유의사항 |
|---|
| 신청서는 선별포장의뢰 농장 식별번호 또는 선별포장 의뢰인별 단위로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 25.>

#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 아래 및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 |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주소 | 연락처 |

검역 시행장

| | | |
|---|---|---|
| 수입 품목 | 한글명 | 영문명 |
| | 포장수량 (단위: ) | 순무게(kg, t) |

| | | |
|---|---|---|
| 부위 | 부위명 | |
| | 수량 (단위: ) | 순무게(kg, t) |

| | |
|---|---|
| 수입 내역 | 화물관리번호 |
| | 선하증권번호(bill of lading №) |
| | 생산국 |
| | 상대국의 도축장명 및 가공장명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1. 신청서는 수입 당시 선하증권번호(bill of lading №)당 상대국의 가공장별 품목 단위로 작성합니다.
2. 다수의 부위가 있는 경우 부위명에는 '뒤쪽 참조'라고 적고, 뒤쪽에 부위별 목록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번호 | 부위명 | 수량(단위: ) | 무게(kg,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1. 수입품목에 다수의 부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각 부위별 수량 및 무게[단위는 kg 또는 t(톤)으로 표시가능]를 적습니다.
2. 부위명은 대분할 부위명을 적으나, 소분할 부위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소분할 부위 명칭을 적을 수 있습니다. 국내기준에 맞지 않는 부위의 경우 수출국에서 표시된 대로의 부위 명칭을 적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국내기준에 해당되는 부위명칭이 많이 포함된 부위부터 먼저 적습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1. 21.>

# 수입산이력축산물의 [ ]거래 [ ]판매 신고서

※ 아래 및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 |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대표자 |
|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연락처 |
| | 주소 | 업종 |

| | | |
|---|---|---|
| 출고처<br>입고처 | 영업장의 명칭(상호) | 영업허가(신고)번호 |
| | |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 |
|---|---|---|
| 거래(판매)처 | 성명(법인명) | 대표자 |
|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연락처 |
| | 주소 | |

| | | |
|---|---|---|
| 거래(판매)내역 | 거래(판매)일 | |
| | 이력번호 | 제품명(부위명) |
| | 수량(BOX) | 무게(kg, t)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유의사항**

1. (출고·입고)처란은 양도(매출)신고의 경우에는 "출고"에, 양수(매입)신고의 경우에는 "입고"에 "O"표를 하고, 수입산이력축산물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의 영업장 명칭(상호) 및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수입산이력축산물 거래(판매) 신고서는 거래처별로 작성합니다.
3. 거래(판매)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뒤쪽의 거래(판매) 목록을 작성합니다.
4. 이력번호는 거래 당시 수입산이력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첨부합니다.
5. 제품명은 수입 축산물의 신고필증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부위별(예: 갈비, 목살, 제4위, 목뼈 등)로 최대한 세부적으로 적습니다.
6. 수량 및 무게는 양도한 물량을 박스 갯수와 무게 단위[kg 또는 t(톤)]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거래(판매)일(연월일) | 이력번호 | 원료 또는 부위명 | 수량(BOX) | 무게(kg, 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거래(판매)내역이 다수인 경우에 작성하며, 거래일별로 각 이력번호, 원료 또는 부위명, 거래 수량 및 무게 단위[kg 또는 t(톤)으로 표시]를 적습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6.>

# 수입산이력축산물 [ ]거래 신고사항 [ ]판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 | | |

| | |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농장식별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
|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 | |
| 이력번호 | |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변경사항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변경 사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 |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2. 31.>

#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 신고서(소 · 돼지 · 닭 · 오리 고기)

※ 아래 및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 | | |

| | |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대표자 |
|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연락처 |
| | 영업허가(신고)번호 | |
| | 주소 | |

| | | |
|---|---|---|
| (출고·입고)처 | 영업장의 명칭(상호) | 영업허가(신고)번호 |
| | |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 |
|---|---|---|
| 거래처 | 성명(법인명) | 대표자 |
|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연락처 |
| | 영업허가(신고)번호 | |
| | 주소 | |

| | | | |
|---|---|---|---|
| 거래내역 | 거래일 | 도축일 | 가공일 |
| | 이력번호 | 도축번호 | 원료 또는 부위명 |
| | 수량(BOX, 마리) | | 무게(kg, t)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유의사항

1. (출고·입고)처란은 판매·반출신고의 경우에는 "출고"에, 매입·반입신고의 경우에는 "입고"에 "O"표를 하고, 국내산이력축산물이 포장처리 또는 보관되어 있는 창고의 영업장 명칭(상호) 및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국내산이력축산물 거래내역 신고서는 거래처별로 작성합니다.
3. 거래내역이 다수인 경우에는 뒤쪽의 거래내역 목록을 작성합니다.
4. 이력번호는 거래 당시 국내산이력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첨부합니다.
5. 원료 또는 부위명은 거래한 국내산이력축산물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부위별(예: 갈비, 목살, 제4위, 목뼈 등)로 최대한 세부적으로 적습니다.
6. 수량 및 무게는 거래한 물량을 박스 수량과 무게[㎏ 또는 t(톤)] 단위로 적습니다. 다만, 도체 지육으로 거래하는 경우 도축일, 가공일, 도축번호를 적고, 수량에 두수(마리)와 무게(Kg)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9. 12. 31.>

#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 신고서(계란)

※ 아래 및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 | | |
|---|---|---|---|
| 공통 신고 사항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대표자 |
| |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연락처 |
| | | 영업허가(신고)번호 | |
| | | 주소 | |
| | 가축 사육시설 정보 | 농장식별번호 | |
| | | 사육 소재지 | |
| | | 사육 개시 연월일 | |
| | | 관리자 성명 | ⑪ 관리자 생년월일 |
| | |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 | |
|---|---|---|
| (출고·입고) 거래처 | 성명(법인명) | 대표자 |
|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연락처 |
| | 영업허가(신고)번호 | 농장식별번호(거래상인 고유번호) |
| | 주소 | |

| | | | | | | |
|---|---|---|---|---|---|---|
| 거래내역 | 거래일 | | | 농장식별번호 | | |
| | 계란의 용도 | | | 이력번호 | | |
| | 냉장출하 여부<br>폐기방법 | | | 유통기한 | | |
| | 왕란 | 특란 | 대란 | 중란 | 소란 | 계 |
| | | | |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란의 거래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 유의사항 |
|---|
| 1. (출고·입고)처란은 판매·반출신고의 경우에는 "출고"에, 매입·반입신고의 경우에는 "입고"에 "O"표를 하고, 국내산이력축산물이 선별·포장 또는 보관되어 있는 창고의 영업장 명칭(상호) 및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2. 국내산이력축산물 거래내역 신고서는 거래처별로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거래일 (연월일) | 계란의 용도 | 이력번호 | 냉장출하 여부 | 유통기한 | 왕란 (개수) | 특란 (개수) | 대란 (개수) | 중란 (개수) | 소란 (개수) | 계 (개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
|---|
| 거래내역이 다수인 경우에 작성하며, 거래일별로 계란의 용도, 이력번호, 냉장출하 여부, 유통기한 및 계란의 거래 중량별 개수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12. 31.>

#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

※ 작성 시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① 포장처리일 | ② 이력(묶음)번호 | ③ 원료 또는 부위명 | ④ 무게(kg, t) | ⑤ 매입·반입처 | | | ⑥ 의뢰업체명 | | |
|---|---|---|---|---|---|---|---|---|---|
| | | | | 상호 |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 | 상호 |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유의사항**

① 포장 처리일은 매입 또는 반입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 처리한 날짜를 적습니다.

② 이력번호는 매입 당시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 12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은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이력관리시스템 전산신고 포함)해야 합니다.

③ 원료 또는 부위명은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매입한 도체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

④ 무게는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무게(kg 또는 t)를 적습니다.

⑤ 매입·반입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구입한 업체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도축장에서 직접 매입·반입한 경우에는 도축장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⑥ 의뢰업체명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등에 의하여 의뢰되어 포장처리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의뢰업체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전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6. 28.>

#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 ]수입유통식별대장 기록사항 [ ]변경신고서 [ ]수정요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
| | | | |

| | |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br>* 수입유통식별대장은 생년월일로 기재 |
| | 농장식별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 | | |
|---|---|---|
|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 | | |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변경(수정)사항

| 구 분 | 변경(수정) 전 | 변경(수정) 후 |
|---|---|---|
| | | |
| | | |
| | | |
| | | |

변경(수정) 사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 따라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귀하

**유의사항**

1.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사항 중 돼지의 사육현황에 관한 기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 서식을 사용하여도 됩니다.

| 구비서류 | 1. 변경신고: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2. 수정요구: 기록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br>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제 호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공무원(조사원)증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란색)

(뒤쪽)

### 조사공무원(조사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제 조사공무원 또는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17. 6. 28.>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7. 6. 28.>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농장식별번호:
가축사육시설 명칭:
가축사육시설 소재지:
가축의 종류:
농장경영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직인

**※ 농장식별번호를 통보받은 농장경영자는 사육 가축의 출생, 양수·양도·이동, 폐사, 변경신고,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농장식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1종 120g/㎡]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12. 31.>

## 농장식별번호 발급 및 등록대장

| 발급(등록) 연월일 | 발급(등록) 번호 | 농장 식별 번호 | 사육 가축의 종류 | 신청자 성명 | 농장 명칭 | 사육 개시 연월일 | 사육 두수 | | | | 비고 |
|---|---|---|---|---|---|---|---|---|---|---|---|
| | | | |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사육시설 주소 (GPS좌표) | | 소 | 돼지 | 닭 | 오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귀표 수령 · 배부 관리대장

(단위: 조)

| 연월일 | 수령 | | | 배부 | | | | 재고량 |
|---|---|---|---|---|---|---|---|---|
| | 귀표번호(개체식별번호) | | 수량 | 귀표번호 (개체식별번호) | | 수량 | 수령자 (경영자명) | |
| | 시작 | 끝 | | 시작 | 끝 | | | |
| 전면 이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누계(월계) | | | | | | | | |

**유의사항**

1. 연월일: 귀표를 수령(인수) 또는 배부(출고)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2. 귀표번호(개체식별번호)
   가. 소: 인수받은 귀표번호의 처음과 끝 번호를 적습니다.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KOR 002 123456785 ⇒ 002 123456785
   나. 종돈: 농장식별번호 6자리 + 농장별 개체관리번호 6자리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100001000001
3. 수령자(경영자명): 위탁기관 또는 사육농가에서 귀표를 부착한 가축의 농장경영자 등을 적습니다.
4. 재고량: 현 재고량(직전 재고량 + 인수량 - 출고수량)을 적습니다.
5. 월계, 누계를 산출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귀표 훼손·탈락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 신고 접수 | | | | 처리 결과 | | | |
|---|---|---|---|---|---|---|---|
| ① 접수일 | ② 경영자명 | ③ 개체식별번호 | ④ 접수자 | ⑤ 재부착일 | ⑥ 재부착용 귀표 관리번호 | ⑦ 부착자 | ⑧ 탈락귀표 회수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① 접수일: 농장경영자 등으로부터 귀표 훼손·탈락 신고를 접수한 날짜를 적습니다.
② 경영자명: 소를 기르는 농장경영자 등의 성명을 적습니다.
③ 개체식별번호: 훼손·탈락된 귀표에 인쇄된 귀표번호를 적습니다.
- 12자리 기재[국가코드(KOR)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④ 접수자: 농장경영자 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직원명을 적습니다.
⑤ 재부착일: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한 날짜를 적습니다.
- 자가부착 농장경영자 등의 경우 재부착용 귀표를 경영자 등에게 내준 날짜를 적습니다.
⑥ 재부착용 귀표 관리번호: 재부착용 귀표의 뒷면에 인쇄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⑦ 부착자: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한 직원명을 적습니다.
- 자가부착 농장경영자 등에게 재부착용 귀표를 내준 경우는 "자가부착"이라고 적습니다.
⑧ 탈락 귀표 회수 여부: 훼손·탈락 귀표의 회수 여부를 ○, ×로 표시합니다.
- 미회수 시에는 그 사유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12. 31.>

##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및 농장식별번호 발급 확인대장

( ) 도축장

| 연월일 | 가축의 종류 (소, 돼지, 닭, 오리) | 암수 구분 (돼지, 닭, 오리는 마릿수) | 신청인 | | |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 | | 재발급 사유 | 검사관 성명 |
|---|---|---|---|---|---|---|---|---|---|
| | | | 농장 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성명 | 기존 | 재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12. 31.>

##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 ① 연월일 | ② 구분 | ③ 묶음번호 | ④ 부위명 | ⑤ 이력번호 | ⑥ 구성개체수 (구성이력번호수) | ⑦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① 연월일은 묶음번호를 구성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② 구분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종류인 국내산쇠고기, 국내산돼지고기, 국내산닭고기, 국내산오리고기, 수입산쇠고기, 수입산돼지고기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③ 묶음번호는 별표 14에 따라 조합한 숫자를 적습니다.
④ 부위명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모든 부위를 적습니다. 다만, 국내산돼지고기 또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⑤ 이력번호는 묶음을 구성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해당되는 모든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⑥ 구성개체수는 묶음을 구성하는 해당 쇠고기의 마릿수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쇠고기의 이력번호의 수가 5마리인 경우에는 "5"로 적습니다. 국내산이력축산물 중 돼지고기 또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이력번호의 수를 적습니다.
⑦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등급별 구성인 경우에 해당 이력번호별 등급을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12. 31.>

##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 · 출고 실적

※ 작성 시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명 | 전화번호 |
|---|---|
| 주소 | 허가(등록)번호 |

| ①판매일·반출일 | ② 이력(묶음)번호 | ③ 원료 또는 부위명 | ④ 판매량 (kg, t, 두) | ⑤ 판매처·출고처 | | |
|---|---|---|---|---|---|---|
| | | | | 상호 | 허가(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① 판매일·반출일은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판매하거나 반출한 날짜를 적습니다.
② 이력번호는 판매·반출 당시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은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③ 원료 또는 부위명은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서 판매하거나 반출한 원료(도체)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
④ 판매량은 판매한 물량의 수량(박스)과 무게(kg 또는 t) 단위로 적습니다.
⑤ 판매처·반출처는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한 업체의 상호, 허가(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 식별을 위한 DNA 동일성검사방법

#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시행 2018. 5. 8.]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34호, 2018. 5. 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044-201-234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료채취"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국내산이력축산물 일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제6조의 시료채취 방법에 의거하여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2. "유전자감식"이라 함은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조직·혈액 및 모근 등의 일부로부터 유전자(DNA)를 분리하여 특정부위를 증폭·분석한 후 유전적 특이성을 판단하는 기법을 말한다.
3. "사육지 시료"라 함은 사육되고 있는 이력관리대상가축 또는 도축 전(前)단계에 있는 이력관리대상가축으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4. "보관용 시료"라 함은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되는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5. "검사용 시료"라 함은 보관용 시료와 대조하여 동일성 여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등의 영업장에서 진열·보관·포장처리·판매중인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일부에서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6. "DNA동일성검사"라 함은 개체마다 유전자(DNA)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해 유전자 감식기법을 활용한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7. "마커(Marker)"라 함은 유전자내 염기가 연쇄적으로 반복되는 구간이 포함된 부위로서 유전자 감식에 이용되는 특정부위를 말한다.
8. "중합효소 연쇄반응(PCR)"이라 함은 유전자의 특정 부분만을 백만 배 이상 증폭하는 방법을 말한다.
9. "DNA 판독"이라 함은 DNA동일성검사 결과를 판정하기 위해 개체마다 고유한 마커들의 특성을 판별하는 것을 말한다.
10. "표준 사이즈 자"라 함은 DNA의 크기를 알고 있는 절편들의 조합으로 증폭된 마커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료채취 기관)** ① 시료채취는 법 제9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개체식별번호 및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기관이 담당한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의 영업장에서 포장 처리된 국내산이력축산물과「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 및 식육즉석판매가공

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라 한다)의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 및 돼지의 경영자 등이 사육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영업장에서 포장 처리된 국내산이력축산물과 식육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사육지 시료는 시·도지사가 위임·위탁한 기관에서 채취할 수 있다.

3.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된 국내산이력축산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법을 시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사육지·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영업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에 따른 세부적인 출입·검사방법 및 절차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DNA동일성검사 기관)** ① DNA동일성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다음의 각 기관이 담당한다.

1. 사육지 시료는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가 위임·위탁한 기관에서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한다.

2. 보관용 시료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한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제의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사육지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영업장에서 채취한 시료도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할 수 있다.

3. 검사용 시료는 시·도지사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또는 장비 등이 미비하여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하여금 해당 검사기관으로부터 시료를 직접 받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료채취 대상)**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국내산이력축산물을 말한다.

② 시료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경영자 등의 사육지에서 사육되고 있거나 도축 전(前) 단계의 이력관리대상가축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영업장에서 도축·식육포장처리·진열·보관·판매되고 있는 국내산이력축산물에서 채취한다.

**제6조(시료채취 방법 등)** ① 시료는 사육지·보관용·검사용 시료 등으로 구분하여 채취한다.

② 사육지 시료의 검사물량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검사계획에 따르며, 이력관리대상가축의 모근·혈액·조직 등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③ 보관용 시료는 도축업자가 도축한 이력관리대상가축에서 얻은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조직 등에서 해당 시료를 이력번호별로 채취

한다.

④ 검사용 시료의 검사물량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검사계획에 따른다. 다만, 사육지 또는 검사용 시료의 채취기관에서 원활한 채취를 위하여 검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취대상 시료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계획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검사용 시료 채취자는 피채취자(해당업주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입회하에 살코기 부분을 약 20g 채취하고, 이를 약 10g정도로 2등분하여 각각의 시료 채취봉투에 넣어 채취자와 피채취자가 모두 봉인한 후에 1점은 피채취자에게 인계하여 검사가 끝날 때까지 변질되지 않게 보관하도록 조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해당 시료를 피채취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검사용 시료 채취 시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입회요구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1명 이상의 입회 아래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한다.

**제7조(시료관리 및 검사신청)** ① 사육지 및 보관용 시료 채취자는 시료봉투에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 등을 기재하고 시료가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한다.

1. 사육지 시료 채취자는 그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검사기관에 시료를 송부한다.
2. 보관용 시료는「축산법」제37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 또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조사공무원(조사원)이 도축장에서 해당 국내산이력축산물이 반출되기 전에 채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을 기록한 후에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에 주간단위로 시료를 송부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송부하는 주기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제6조제5항에 따라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을 기록하고, 채취된 시료와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을 해당 검사기관으로 송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료를 송부 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채취하여 보관중인 동일한 시료에 대해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개체별 유전자형 검사를 지체 없이 신청한다. 이 경우 신청방법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자적방법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제6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자는 시료가 운반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파손·손상·변형 등이 되지 않도록 냉장·냉동 상태 유지, 견고한 포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지체 없이 해당 검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DNA동일성검사 신청기관에게 시료를 다시 채취·송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시료의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가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2. 시료가 훼손 또는 부패되어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3. 제6조에서 정한 시료채취 방법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시료를 채취한 경우
4. 검사기관의 장이 기타의 사유로 해당 시료가 검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DNA동일성 여부의 판정을 위해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용 시료의 검사가 완료되는 즉시 해당 시료의 검사결과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방법은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자적방법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시료접수 및 폐기 등)** 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보관용 시료가 접수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보관용 시료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접수일로부터 시료 등을 2년 동안 보관·관리한다. 이후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보관용 시료 관리대장에 폐기일자 등을 기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따라 시료를 폐기한다. 다만, 폐기 결정된 시료를 축산발전 등의 목적으로 축산관련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인계를 요청할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고 해당 시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의 장이 사육지 시료 또는 검사용 시료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검사용 시료 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사육지 시료 관리대장을 각각 기록하여 보존·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육지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보존기간 및 폐기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관리한다.

④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검사신청 내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신청 접수 및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존·관리한다.

**제9조(DNA동일성검사 방법 등)** ①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증폭하고 마커별 대립유전자의 크기를 분석하는 유전자감식기법인 DNA검사 방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시료에서 추출된 DNA의 분석결과를 비교하는 동일성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의 DNA동일성검사의 세부적인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DNA동일성검사 결과 판정)** 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 등에 의해 검사하고, 보관용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검사결과를 비교하여 대립유전자가 일치할 경우에는 "일치", 대립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일치"로 판정한다. 다만 시료의 오염 및 부패 등으로 검사결과를 판정하기 어려울 경우 "판정불능"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육지 시료에 대한 검사는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이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 판정한다.

**제11조(검사 및 판정결과 통보)** 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DNA동일성 판정결과를 제8조제4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사신청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방법은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적방법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시료채취 대상자에게 7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통보예정일을 따로 정하여 지연사유 및 완료 예정일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검사계획 및 결과 보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사육지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DNA동일성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본방향, 검사기관별 연간 검사물량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검사기관에 통보한다. 이때 연간 검사물량은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별로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전년도 불일치 비율, 분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② 각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DNA동일성검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DNA동일성검사를 실시한다. 이때 세부추진계획에는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별로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지역별 검사물량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년도 불일치 비율, 분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의 장은 DNA동일성검사 추진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별지 제9호서식의 DNA동일성검사 실적 보고서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DNA동일성검사 운영협의회 구성 등)** ① DNA동일성검사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내에 DNA동일성검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DNA동일성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3. 시·도 소속 공무원
4.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
5.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속 임직원
6. 유전자감식 관련 산·학·연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관련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축 및 축산물의 DNA동일성 검사방법의 세부적인 방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가축 및 축산물의 DNA동일성검사 방법의 제도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DNA동일성검사 방법 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

**제15조(위원장 직무 등)**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16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8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009-26호, 2009. 4. 2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57호, 2009. 8.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31호, 2011. 3.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3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53호, 2013. 5. 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4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34호, 2015. 6. 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6월 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34호, 2018. 5.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의 세부적인 방법(제9조제2항 관련)

### 1. 시료(혈액, 조직, 모근 등)에서 DNA 추출

| | |
|---|---|
| 가. 시료 채취 도구 및 채취량 | (1) 시료는 소독된 가위와 핀셋, 펀칭기 등을 이용하여 채취한다.<br>(2) 보관용 시료의 조직은 살코기 약 0.5~1g 내외로 시료채취 봉투에 채취한다.<br>(3) 검사용 시료의 조직은 살코기 약 10g 내외로 시료채취 봉투에 채취한다.<br>(4) 혈액은 시료채취 용기에 500㎕를 채취한다.<br>(5) 모근은 약 20가닥 내외로 시료채취봉투에 채취한다. |
| 나. 조직 용해 | (1) 소독된 가위와 핀셋, 펀칭기, 멸균된 1.5㎖ 튜브와 랙, 70% 알코올, 티슈 등을 준비한다.<br>(2) 보관용 시료는 펀칭기를 이용하여 3회 펀칭 후 1.5㎖ 튜브에 담는다.<br>(3) 검사용 시료는 가위와 핀셋 등을 이용하여 미량 세절 후 1.5㎖ 튜브에 담는다.<br>(4) DNA추출기구(Toyobo kit 등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의 용해·흡착액을 800㎕씩 각 시료가 담긴 튜브에 분주한다.<br>(5) 단백질분해효소 *K*(20㎎/㎖ 농도) 20㎕를 각 시료마다 첨가한다.<br>(6) 교반(Vortexing)을 하여 시료와 용액을 섞어준다.<br>(7) 잘 혼합한 후 시료가 완전히 용해될 때 까지 70℃ 교반기 또는 56℃ 항온수조에 약 12시간 정도 넣는다. |
| 다. 조직 파쇄 | (1) 조직파쇄기(Precelly 등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에 시료를 꽂는다.<br>(2) 조직파쇄를 위한 기기의 회전속도는 6,500R.P.M, 파쇄시간은 120초로 한다.<br>(3) 조직파쇄기가 종료되면 시료를 원심분리기로 옮기고 상온에서 기기의 회전속도 13,200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한다.<br>(4) 원심분리가 종료되면 뚜껑 없는 새로운 1.5㎖ 튜브로 상층액을 옮긴다. 이때 피펫에 하층의 응축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
| 라. DNA 추출 | (1) DNA추출장비(MFX-6100 등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의 추출관(Tip), 추출판(Plate), 보관용기(tube) 등을 확인한다.<br>(2) DNA추출장비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자외선장비(U.V)를 작동시킨다.<br>(3) 상층액을 옮긴 1.5㎖ 튜브를 DNA추출장비에 꽂는다.<br>(4) DNA추출장비 프로그램에 맞게 자석 가루와 증류수, 알코올, 세정액 등을 넣고 프로그램을 작동시킨다. |
| 마. DNA 농도 측정 | (1) 추출된 DNA를 교반(Vortexing)한다.<br>(2) 농도측정기(Nanodrop Spectrometer 등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br>(3) 증류수를 이용해 영점기준(Blank)을 보정한다.<br>(4) 1㎕의 DNA 용액(Solution)을 이용해 농도를 측정한다. |

## 2. 검사 마커의 유전자형분석

| | |
|---|---|
| 가. PCR 반응 | **[PCR 반응 순서]**<br>(1) 증폭할 DNA(Template DNA), 시발체(Primer), 완충액(Buffer), 중합재료(dNTPs), 중합효소(Taq polymerase), 증류수(D.W) 등을 준비한다.<br>(2) PCR 튜브를 준비하고 시료가 섞이지 않게 튜브에 표시(Labelling)를 한다.<br>(3) 얼음을 준비하고 -20℃에 보관되어 있는 Primer mix(set), Buffer, dNTPs를 얼음위에서 약 20분 이상 녹여서 사용하며 중합효소는 상온에 있을 경우 활성을 잃게 되므로 시약제조 시 -20℃ 냉동고에서 관리하여야 한다.<br>(4) 증폭할 DNA를 PCR 튜브에 1㎕(10~50ng)씩 분주한다.<br>(5) DNA 샘플수에 맞게 Primer mix(set), Buffer, dNTPs, D.W의 제조시약을 만든다. 이때 실험할 샘플수보다 2개 정도 많은 양을 계산하여 제조시약을 만드는데 이는 제조시약을 PCR 튜브에 분주할 때 피펫팅으로 유실되는 양을 보완하기 위함이다.<br>(6) 제조시약(Mixture)을 다 준비했으면 PCR 튜브에 각 13~14㎕씩 분주한 다음 뚜껑을 잘 덮어준다. 잘 덮이지 않으면 PCR 반응 시 높은 온도에 증발될 수도 있다.<br>(7) 시약 분주가 끝나면 PCR 기계(ABI 9700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를 작동시키고 프로그램을 입력한다.<br>(8) 유전자 증폭 장비의 PCR 반응은 쇠고기는[그림 1], 돼지고기는[그림 2]와 같이 수행한다.<br>(9) 입력이 끝난 후 프로그램을 실행 시키고 샘플 고정 블럭이 95℃로 온도가 올라가면 준비된 시료를 블럭에 넣고 뚜껑을 닫는다. |

| | |
|---|---|
| 가. PCR 반응 | (10) PCR 기기 프로그램 작동이 잘 되는지 첫 중합반응(Cycle)이 실행될 때까지 확인한다.<br>(11-1) 쇠고기 시료의 중합효소 연쇄반응은 Normal PCR 방법 또는 Touchdown PCR 방법을 이용하고 온도, 시간 및 증폭횟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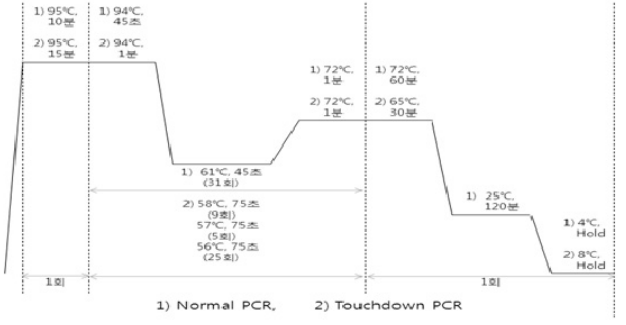 <br><br>[그림 1] 쇠고기 중합효소 연쇄반응의 온도, 시간 및 증폭횟수<br>(11-2) 돼지고기 시료의 중합효소 연쇄반응은 Touchdown 방법을 이용하고 온도, 시간 및 증폭횟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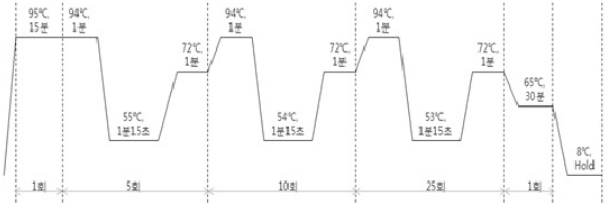 <br><br>[그림 2] 돼지고기 중합효소 연쇄반응의 온도, 시간 및 증폭횟수 |

가. PCR 반응

**[쇠고기 PCR 반응시약의 제조]**

(1) Primer mix(set), dNTPs, Buffer, Taq Polymerase, D.W 를해당 샘플개수에 맞추어 용량을 결정한다.

(2) 시약 조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분 | 1) Normal PCR | 2) Touchdown PCR |
|---|---|---|
| Buffer | 3㎕ × X | 1.8㎕ × X |
| dNTPs | 4㎕ × X | 1.2㎕ × X |
| Primer mix(set) | 5.5㎕ × X | 8.25㎕ × X |
| Taq Polymerase | 0.5㎕(2.5U) × X | 0.6㎕(2.5U) × X |
| DW | 1㎕ × X | 2.15㎕ × X |
| Total | 14㎕ × X | 14㎕ × X |

**[돼지고기PCR 반응시약의 제조]**

(1) Primer mix(set), dNTPs, Buffer, Taq Polymerase, $MgCl_2$, D.W를 해당 샘플개수에 맞추어 용량을 결정한다.

(2) 돼지고기 시약 조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분 | Touchdown PCR |
|---|---|
| Buffer | 2.0㎕ × X |
| dNTPs | 1.2㎕ × X |
| Primer mix(set) | 8.25㎕ × X |
| Taq Polymerase | 0.4㎕(2.0U) × X |
| DW | 1.15㎕ × X |
| Total | 13㎕ × X |

가. PCR 반응

**[ 쇠고기 DNA동일성검사에 사용되는 마커의 종류 ]**

| 마커명 (MARKER) | 방향 (Direction) | 염기서열 (Primer Sequences) | 크기 (Size(bp)) |
|---|---|---|---|
| TGLA227 | Forward | CgAATTCCAAATCTgTTAATTTgCT | 76~104(bp) |
| | Reverse | ACAgACAgAAACTCAATgAAAgCA | |
| BM2113 | Forward | gCTgCCTTCTACCAAATACCC | 123~143(bp) |
| | Reverse | CTTCCTgAgAgAAgCAACACC | |
| TGLA53 | Forward | gCTTTCAgAAATAgTTTgCATTCA | 154~188(bp) |
| | Reverse | ATCTTCACATgATATTACAgCAgA | |
| ETH10 | Forward | gTTCAggACTggCCCTgCTAACA | 212~224(bp) |
| | Reverse | CCTCCAgCCCACTTTCTCTTCTC | |
| SPS115 | Forward | AAAgTgACACAACAgCTTCTCCAg | 246~260(bp) |
| | Reverse | AACgCgTgTCCTAgTTTggCTgTg | |
| TGLA126 | Forward | CTAATTTAgAATgAgAgAggCTTCT | 116~122(bp) |
| | Reverse | TTggTCTCTATTCTCTgAATATTCC | |
| TGLA122 | Forward | CCCTCCTCCAggTAAATCAgC | 137~181(bp) |
| | Reverse | AATCACATggCAAATAAgTACATAC | |
| INRA23 | Forward | gAgTAgAgCTACAAgATAAAC | 196~222(bp) |
| | Reverse | TAACTACAgggTgTTAgATgAACTCA | |
| ETH3 | Forward | gAACCTgCCTCTCCTgCATTgg | 105~125(bp) |
| | Reverse | ACTCTgCCTgTggCCAAgTAgg | |
| ETH225 | Forward | gATCACCTTgCCACTATTTCCT | 141~159(bp) |
| | Reverse | ACATgACAgCCAgCTgCTACT | |
| BM1824 | Forward | gAgCAAggTgTTTTTCCAATC | 178~192(bp) |
| | Reverse | CATTCTCCAACTgCTTCCTTg | |

가. PCR 반응

[ 돼지고기 DNA동일성검사에 사용되는 마커의 종류 ]

| 마커명 (MARKER) | 방향 (Direction) | 염기서열 (Primer Sequences) | 크기 (Size(bp)) |
|---|---|---|---|
| SW936 | Forward | TCTggAgCTAgCATAAgTgCC | 80~117(bp) |
| | Reverse | gTgCAAgTACACATgCAggg | |
| SW951 | Forward | TTTCACAACTCTggCACCAg | 125~133(bp) |
| | Reverse | gATCgTgCCCAAATggAC | |
| SW787 | Forward | CTggAgCAggAgAAAgTAAgTTC | 150~165(bp) |
| | Reverse | ggACAgTTACAgACAgAAgAAgg | |
| S0026 | Forward | AACCTTCCCTTCCCAATCAC | 92~106(bp) |
| | Reverse | CACAgACTgCTTTTTACTCC | |
| SW122 | Forward | TTgTCTTTTTATTTTgCTTTTgg | 110~122(bp) |
| | Reverse | CAAAAAAggCAAAAgATTgACA | |
| SW857 | Forward | TgAgAggTCAgTTACAgAAgACC | 144~160(bp) |
| | Reverse | gATCCTCCTCCAAATCCCAT | |
| SW72 | Forward | ATCAgAACAgTgCgCCgT | 101~115(bp) |
| | Reverse | TTTgAAAATggggTgTTTCC | |
| S0155 | Forward | TgTTCTCTgTTTCTCCTCTgTTTg | 150~166(bp) |
| | Reverse | AAAgTggAAAgAgTCAATggCTAT | |
| S0225 | Forward | gCTAATgCCAgAgAAATgCAgA | 170~196(bp) |
| | Reverse | CAggTggAAAgAATggAATgAA | |
| SW24 | Forward | CTTTgggTggAgTgTgTgC | 96~121(bp) |
| | Reverse | ATCCAAATgCTgCAAgCg | |
| SW632 | Forward | TgggTTgAAAgATTTCCCAA | 159~180(bp) |
| | Reverse | ggAgTCAgTACTTTggCTTgA | |

나. 전기 영동

**[전기영동 순서]**

(1) 삼각플라스크에 Agarose 3.0g과 0.5X T.B.E(Tris-Boric acid-E.D.T.A) Buffer 150ml을 넣어 2% Gel을 제조한다.

(2) 먼저 삼각플라스크의 무게를 확인한 후, 전자레인지(micro oven)에 약 3분간 돌려 Agarose Gel을 용해시킨다.

(3) 3분 후에 무게를 측정하여 소실된 양만큼의 0.5X T.B.E Buffer를 채워준 후 다시 30초간 돌려준다.

(4) 실온에서 천천히 식힌 후, EtBr 7㎕을 넣은 후 다시 천천히 식힌다.

(5) 온도가 적당히 떨어지면 Gel 응고용 tank에 붓고 굳힌다.

(6) PCR product 3㎕ + D.W 6㎕ + Dye 1㎕을 섞는다.

(7) 각 샘플을 Gel 홈에 조심히 넣는다. 맨 처음 홈에는 100bp 표준자(Ladder)를 넣는다.

(8) 전기를 (-)에서 (+)로 약 40분정도 흘려준다.

(9) 전기영동이 끝나면 Gel을 꺼내어 이미지 장비에서 증폭유무를 확인하고 렌즈의 초점을 정확히 맞추고 촬영 후 저장한다.

(10) 전기영동이 완료되면 PCR 산물의 증폭정도를 보고, 희석배율을 결정하여 DNA 분석에 적합하게 희석한다.

**[전기영동용 T.B.E Buffer 제조]**

(1) PCR 증폭유무를 확인하는 전기영동 Agaraose Gel을 만들기 위해 T.B.E Buffer를 제조한다.

<table>
<tr>
<td>나. 전기 영동</td>
<td>(2) 보통 10배 농축액으로 제조하여 두고 사용 시 0.5배로 희석하여 사용한다.<br>가) 1,000㎖비커를 준비하며 Buffer 500㎖을 제조 시 그 이상의 비커를 준비하여 넘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br>나) 비커에 마그네틱 바를 넣는다.<br>다) 비커에 다음의 시약들을 넣는다.
<table>
<tr><th>제조시약명</th><th>시약명</th><th>용량</th></tr>
<tr><td rowspan="3">10X T.B.E</td><td>Tris</td><td>54g</td></tr>
<tr><td>Boric acid</td><td>27.5g</td></tr>
<tr><td>E.D.T.A</td><td>4.7g</td></tr>
</table>
라) 3차 증류수 500ml를 비커에 조심히 붓는다. 이때 가루의 시약들은 서로 엉켜 붙어있기 때문에 이들을 잘 혼합해준다.<br>마) Hot Plate를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고 교반 해주며 비커 안으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호일 등으로 윗부분을 덮어준다.<br>바) 증류수(D.W)에 모든 시약이 용해될 때까지 약 3시간이 소요된다.<br>사) 용해가 완료 되면 500㎖시약병에 T.B.E Buffer를 담는다.
<table>
<tr><th>제조시약명</th><th>시약명</th><th>용량</th></tr>
<tr><td rowspan="2">0.5X T.B.E</td><td>10X T.B.E</td><td>50ml</td></tr>
<tr><td>3차 D.W</td><td>950ml</td></tr>
</table>
아) 10X T.B.E Buffer는 Gel 제조 시 0.5X로 희석하여 사용한다.</td>
</tr>
</table>

<table>
<tr>
<td>다. DNA 판독을 위한 DNA 분석기 작동요령</td>
<td>(1) PCR반응이 끝난 시료를 표준 사이즈 자와 Formamide를 혼합하여 희석한다.<br>(2) 혼합된 시료를 95℃에 2분 가열하여 DNA를 변성시킨 후, 변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얼음에 보관한다.<br>(3) DNA 분석기 프로그램 준비를 위하여 파일명을 입력하고 분석일자, 분석자명, 시료명, 분석방법 등을 입력한다.<br>(4) 분석기의 뚜껑을 열어 남아 있는 Polymer의 양을 확인하고 Polymer가 누출된 흔적이 없는지 확인한다.<br>(5) 프로그램 입력이 끝나면 분석기 내에 사용했던 Buffer 교체, Polymer 량 및 사용기간 확인, Capillary의 부착 상태를 확인하고 시료를 분석기에 정확히 위치하게 하여 작동한다.</td>
</tr>
<tr>
<td>라. 분석된 DNA 데이터 판독 및 재분석</td>
<td>(1) 분석이 끝나면 원본 파일을 DNA판독 프로그램(Gene Mapper 등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 불러와 아날로그신호를 시료마다 확인한다.<br>(2) 표준 사이즈 마커의 위치와 마커내의 프레임 쉬프트가 없는지 확인한 후 시료의 마커 사이즈를 확인한다.<br>(3) 아날로그신호로 확인된 유전자 위치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수치화된 값으로 컴퓨터 파일로 기록하여 판독한다.</td>
</tr>
</table>

| | |
|---|---|
| 라. 분석된 DNA 데이터 판독 및 재분석 | (4) 디지털로 변환된 자료에 의하여 보관용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대립유전자 값이 일치할 경우에는 “일치”, 대립유전자의 값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일치”로 판정 한다.<br>(5) 분석결과 나타난 대립유전자의 피크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 즉 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좌우로 길게 늘어진 경우, 신호가 너무 낮아 백그라운드와 혼동될 경우, 여러 개의 피크가 보일 경우, 피크가 너무 높아 분석이 불가할 경우 등의 시료는 처음부터 재분석 한다.<br>(6) 재분석하는 시료의 DNA는 U.V 260nm, 280nm에서 DNA의 양과 질을 측정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PCR 단계부터 다시 검사하고 분석을 위한 DNA의 양과 질이 검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DNA추출 단계부터 다시 시작한다. |
| 마. 분석결과의 관리 | (1) 분석결과는 이미지 파일과 엑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필요할 때 수시로 해당시료의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관련 자료 등을 2년간 별도 보관·관리하여야한다.<br>(2) DNA분석결과의 자료보관은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하고 그 부본은 품질이 보증되는 외장형기록매체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접수번호 : | | | | | |
|---|---|---|---|---|---|

## 시료채취 확인서

| | | | | | |
|---|---|---|---|---|---|
| 사 업 장 | 상 호 | | |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 사 업 장 대 표 자 | 성 명 | | | 전화번호 | |
| | 주 소 | | | | |
| 채취현황 | 이력(묶음) 번호 | | 채취장소 | ①식육포장처리업소<br>②식육판매업소<br>③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br>④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 |
| | 채취일시 | | 고기의 종류 | ①쇠고기 ②돼지고기 | |
| 채취사유 | | |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이력관리축산물의 이력번호 표시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내산이력축산물 시료를 채취하였음을 확인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 | | |
|---|---|---|---|
| 채취자 | 소속 : | | |
| | 직 : | 성명 : | (서명) |
| 입회자 | 소속 : | | |
| (사업장담당자) | 직 : | 성명 : | (서명) |

첨부 : 묶음번호 구성 내역서 사본 1부(묶음번호의 경우에만 해당)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및 송부대장

| 일련번호 | 이력(묶음)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 | 사업장 | 채취일 | 송부일 | 채취자 | |
|---|---|---|---|---|---|---|
| | | | | | 소 속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계 | | | | | | |
| 누계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 DNA동일성검사 신청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 방법」제7조에 의거 DNA동일성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신청번호 | 신청일 | 이력(묶음)번호 | 채취일 | 고기의 종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
※ 고기의 종류는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 중 택일

**기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DNA동일성검사 보관용 시료 관리대장

| 접수일 | 도축장 | 일련번호 | 이력(묶음)번호 | 도축일 | 송부일 | 경과일 | 채취자 | 폐기일 | 폐기자 | 확인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DNA동일성검사 검사용 시료 관리대장

| 접수 번호 | 접수일 | 이력(묶음)번호 | 사업장 | 채취일 | 채취자 | 입회자 | 폐기일 | 폐기자 | 확인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DNA동일성검사 사육지 시료 관리대장

| 일련번호 | 접수일 | 개체식별번호 | 사업장 | 채취일 | 채취자 | 폐기일 | 폐기자 | 확인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 DNA동일성검사 신청 접수 및 관리대장

| 접수번호 | 접수일 | 이력(묶음)번호 | 신청일 | 신청기관 | 폐기일 | 폐기자 | 확인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 축산물품질평가원

수신자 :
(경 유)
제 목 : DNA동일성검사 결과 알림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 방법」제10조에 의거 DNA동일성검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접수번호<br>(신청번호) | 접수일 | 이력(묶음)번호 | 신청일 | 신청기관 | 판정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 기 관 명

수신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경 유)
제 목 : DNA동일성검사 실적 보고(　　년도　　분기)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 방법」제12조에 의거 DNA동일성검사 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월별 | 검사구분 | DNA동일성 검사 | | 검사 결과 | | | 비고 |
|---|---|---|---|---|---|---|---|
| | | 계획 건수 | 실적 건수 | 계 | 일치 | 불일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12. 3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88호, 2019. 12. 3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044-201-234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 및 종돈에 대한 출생 등 신고와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 및 종돈, 종계 및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기관의 지정)**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의 지정 현황과 관할구역 및 범위·대상은 [별표1]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한국종축개량협회와 (사)대한한돈협회로 하며 업무범위는 위탁기관별 관리 농장으로 한다.

③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계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대한양계협회,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한국오리협회로 한다.

**제4조(소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인력·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3. 당해 법인의 정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과 지역여건 및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관할 지역 내의 소의 농장경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탁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위탁기관의 업무)**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및 확인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귀표의 부착 지원 및 관리)·통보

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중 소에 대한 기록
5. 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한 수정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확인을 통한 수정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종돈의 출생(종돈등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돈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통보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종돈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중 종돈에 대한 기록
5. 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른 종돈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한 수정
6.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종돈의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중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한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종계 및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중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에 대한 기록
3. 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른 종계 및 종오리의 수출입신고에 대한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한 수정

**제6조(위탁기관 지정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종돈, 종계 및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기관이 부도·소송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위탁기관의 업무를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다시 위탁한 경우
3. 위탁기관의 업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4. 지정 목적 외의 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위탁업무의 중지)** ① 위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당해 기관을 대체하거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할 기관을 지정하여 통지받기 전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중지할 수 없다.

② 위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중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기관의 지도·감독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위탁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기관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2008-121호, 2008. 1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축산법에 따른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통보한 별표 1의 기관은 이 규정 제2조에 따른 쇠고기 이력추적제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09-30호, 2009. 5. 2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161호, 2009. 8.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1-30호, 2011. 3.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3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103호, 2013. 5. 28.〉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5월 2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33호, 2015. 6. 3.〉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8년 6월 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35호, 2018. 5.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88호, 2019. 12. 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위탁기관의 지정현황과 관할구역 및 범위 · 대상

(제3조제1항 관련)

| 위탁기관 | |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
|---|---|---|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권역 | 서울축산업협동조합 | 서울특별시 |
| | 인천축산업협동조합 |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다) |
| |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 |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옹진군 |
| |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 경기도 중 수원시·화성시·오산시 |
| |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 | 경기도 중 광주시·성남시·하남시 |
| |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 | 경기도 중 부천시, 시흥시 대야동·계수동·신천동·미산동·방산동·은행동·안현동·도창동·매화동·금이동·무지내동·포동·과림동 |
| |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 경기도 중 안양시·안산시·광명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시흥시(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
| | 용인축산업협동조합 | 경기도 중 용인시 |
| | 평택축산업협동조합 | 경기도 중 평택시 |
| | 이천축산업협동조합 | 경기도 중 이천시(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 소는 제외한다) |
| | (사) 이천한우회 | 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 소 |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권역 | 김포축산업협동조합 | 경기도 중 김포시 |
| | 안성축산업협동조합 | 경기도 중 안성시(안성마춤한우 브랜드 소는 제외한다) |
| | 여주축산업협동조합 | 경기도 중 여주군 |
| | 양평축산업협동조합 | 경기도 중 양평군 |
| | 고양축산업협동조합 | 경기도 중 고양시 |
| | 양주축산업협동조합 | 경기도 중 양주시·의정부시·동두천시 |
| |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 | 경기도 중 남양주시·구리시 |
| |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 경기도 중 파주시·연천군 |
| | 포천축산업협동조합 | 경기도 중 포천시 |
| | 가평축산업협동조합 | 경기도 중 가평군 |
| | 안성마춤한우회 | 안성마춤한우 브랜드 소 |
| | 경기한우협동조합 | 한우백년 브랜드 소 |
| | 서울경기한우협동조합 | 경기도 중 여주, 용인, 광주, 평택, 양평, 남양주, 하남, 안산지역에서 사육중인 소 중 서울경기한우협동조합 회원 소 |
| 강원도 권역 | 춘천철원축산업협동조합 | 강원도 중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
| | 원주축산업협동조합 | 강원도 중 원주시 |
| | 강릉축산농업협동조합 | 강원도 중 강릉시 |
| | 동해삼척태백축산업협동조합 | 강원도 중 동해시·삼척시·태백시 |
| | 속초양양축산업협동조합 | 강원도 중 양양군·속초시 |
| | 홍천축산업협동조합 | 강원도 중 홍천군 |
| | 횡성축산업협동조합 | 강원도 중 횡성군 |
| | 횡성한우협동조합 | 강원도 중 횡성군 횡성한우협동조합 회원의 소 |
| |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 강원도 중 평창군·영월군·정선군 |
| | 인제축산업협동조합 | 강원도 중 인제군 |
| | 고성축산업협동조합 | 강원도 중 고성군 |

| 위탁기관 | |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
|---|---|---|
| 충청북도 권역 | 청주축산업협동조합 | 충청북도 중 청주시·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충북낙농업협동조합 | 충청북도 중 청주시·청원군·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에서에서 사육중인 육우·젖소 |
| | 충주축산업협동조합 | 충청북도 중 충주시 |
| | 제천단양축산업협동조합 | 충청북도 중 제천시·단양군 |
| | 보은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 | 충청북도 중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 | 괴산증평축산업협동조합 | 충청북도 중 괴산군·증평군 |
| | 진천축산농업협동조합 | 충청북도 중 진천군 |
| | 음성축산업협동조합 | 충청북도 중 음성군 |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권역 | 대전축산업협동조합 | 대전광역시 |
| | 세종공주축산업협동조합 |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중 공주시에서 사육중인 한우(육우·젖소는 제외한다) |
| | 천안축산업협동조합 | 충청남도 중 천안시 |
| |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 | 충청남도 중 공주시에서 사육중인 젖소·육우('18.6.1.부터 육우 포함) |
| | 보령축산업협동조합 | 충청남도 중 보령시 |
| | 아산축산업협동조합 | 충청남도 중 아산시 |
| | 서산축산업협동조합 | 충청남도 중 서산시·태안군 |
| |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 충청남도 중 논산시·계룡시 |
| | 금산축산업협동조합 | 충청남도 중 금산군 |
| | 부여축산업협동조합 | 충청남도 중 부여군에 사육중인 한우 |
| | 대전충남우유농업협동조합 | 충청남도 중 부여군에 사육중인 육우·젖소 |
| | 서천축산업협동조합 | 충청남도 중 서천군 |
| | 청양축산업협동조합 | 충청남도 중 청양군 |
| | 홍성축산업협동조합 | 충청남도 중 홍성군에 사육중인 한우 |
| | 홍성낙농협동조합 | 충청남도 중 홍성군에 사육중인 육우·젖소 |

| 위탁기관 | |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
|---|---|---|
| | 예산축산업협동조합 | 충청남도 중 예산군 |
| | 당진축산업협동조합 | 충청남도 중 당진군에서 사육중인 한우·육우(젖소는 제외한다) |
| | 당진낙농축산업협동조합 | 충청남도 중 당진군에서 사육중인 젖소 |
| | 대전세종충남한우협동조합 | 하눌소 브랜드 소 |
| 전라북도 권역 |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 | 전라북도 전주시·김제시·완주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 전라북도 익산시·군산시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순정축산업협동조합 | 전라북도 순창군·정읍시에서 사육중인 한우(단풍 미인 한우 브랜드 소는 제외한다) |
| | (사) 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 |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 소 |
| | 남원축산업협동조합 | 전라북도 중 남원시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 | 전라북도 중 무주군·진안군·장수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임실축산업협동조합 | 전라북도 중 임실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고창부안축산업협동조합 | 전라북도 중 고창군·부안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전북한우협동조합 | 총체보리한우 브랜드 소 |
| | 전북지리산낙농농업협동조합 | 전라북도 중 전주시·임실군·남원시·무주군·진안군·장수군·순창군·완주군에서 사육중인 젖소·육우 |
| | 동진강낙농축산업협동조합 | 전라북도 중 익산시·군산시·김제시·정읍시·고창군·부안군에서 사육중인 젖소·육우 |

| 위탁기관 | |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
|---|---|---|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권역 | 광주광역시축산업협동조합 | 광주광역시 |
| | 목포무안신안축산업협동조합 | 전라남도 중 목포시·무안군·신안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여수축산업협동조합 | 전라남도 중 여수시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 | 전라남도 중 순천시·광양시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나주축산업협동조합 | 전라남도 중 나주시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담양축산업협동조합 | 전라남도 중 담양군(한우협동조합원이 사육중인 한우는 제외한다)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전남광주한우협동조합 | 전라남도 중 담양군에서 한우협동조합원이 사육중인 한우 |
| | 곡성축산업협동조합 | 전라남도 중 곡성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구례축산업협동조합 | 전라남도 중 구례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고흥축산업협동조합 | 전라남도 중 고흥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보성축산업협동조합 | 전라남도 중 보성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화순축산업협동조합 | 전라남도 중 화순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

| 위탁기관 | |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
|---|---|---|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권역 | 장흥축산업협동조합 | 전라남도 중 장흥군 관산읍·대덕읍·회진면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강진완도축산업협동조합 | 전라남도 중 강진군·완도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해남진도축산업협동조합 | 전라남도 중 해남군·진도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영암축산업협동조합 | 전라남도 중 영암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함평축산업협동조합 | 전라남도 중 함평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영광축산업협동조합 | 전라남도 중 영광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장성축산업협동조합 | 전라남도 중 장성군에서 사육중인 한우 |
| | 전남낙농업협동조합 | 전라남도 전역에 사육중인 젖소·육우 |

| 위탁기관 | |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
|---|---|---|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권역 | 대구축산업협동조합 | 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한다), 팔공상강한우 브랜드 소 |
| |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 한우왕 브랜드 소 |
| | 달성축산업협동조합 | 대구광역시 중 달성군 |
| | 포항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북도 중 포항시 |
| | 경주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북도 중 경주시 |
| | 김천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북도 중 김천시 |
| |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북도 중 안동시·봉화군 |
| |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북도 중 구미시·칠곡군 |
| | 영주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북도 중 영주시 |
| | 영천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북도 중 영천시 |
| | 상주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북도 중 상주시 |
| | 문경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북도 중 문경시 |
| | 경산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북도 중 경산시 |
| | 군위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북도 중 군위군 |
| | 의성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북도 중 의성군 |
| | 청송영양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북도 중 청송군·영양군 |
| |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북도 중 영덕군·울진군 |
| | 청도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북도 중 청도군 |
| | 고령성주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북도 중 고령군·성주군 |
| | 예천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북도 중 예천군 |
| | 울릉농업협동조합 | 경상북도 중 울릉군 |

| 위탁기관 | |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 |
|---|---|---|
|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권역 | 부산축산업협동조합 |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 |
| | 양산기장축산업협동조합 | 부산광역시 중 기장군, 경상남도 중 양산시 |
| | 울산축산업협동조합 | 울산광역시 |
| | 창원시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남도 중 창원시 |
| | 진주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남도 중 진주시 |
| | 통영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남도 중 통영시 |
| | 사천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남도 중 사천시 |
| | 김해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남도 중 김해시 |
| | 밀양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남도 중 밀양시 |
| | 거제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남도 중 거제시 |
| | 의령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남도 중 의령군 |
| | 함안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남도 중 함안군 |
| | 창녕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남도 중 창녕군 |
| | 고성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남도 중 고성군 |
| | 남해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남도 중 남해군 |
| | 하동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남도 중 하동군 |
| |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남도 중 함양군·산청군 |
| | 거창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남도 중 거창군 |
| | 합천축산업협동조합 | 경상남도 중 합천군 |
| 제주특별자치도 권역 |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제주특별자치도 중 제주시 |
| |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 제주특별자치도 중 서귀포시 |
| 기타권역 | 상기 위탁기관과 관할 구역 및 범위·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나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인접한 위탁기관에서 수행하거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 |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
|---|
| 30일 |

| 신청인 | | | | |
|---|---|---|---|---|
| | ① 법인(단체)명 | | | |
| | ② 대표자 성명 | | ③ 생년월일 | |
| | ④ 소재지 | (전화) | | |
| ⑤ 위탁업무명 | | | | |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의 이력관리제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1. 사업계획서<br>2. 인력·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br>3. 법인정관 | 없음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 농림축산식품부 |
| 신청서 작성 → 제 출 | 접 수 |
| | (문서접수 담당부서) |
| | 검토·확인 |
| | (축산물 위생·안전업무 담당부서) |
| | 결 재 |
| | (과장) |
| 지정통보 | 시 행 |
| | (문서발송 담당부서)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 위탁기관 지정서

| | | | | |
|---|---|---|---|---|
| 신청인 | ① 법인(단체)명 | | | |
| | ② 대표자 성명 | | ③ 생년월일 | |
| | ④ 소재지 | (전화) | | |
| ⑤ 위탁업무명 | | | | |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이력관리제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 위탁기관 명칭 등 통지서

성 명(소의 농장경영자) :

주 소 :

| 위탁기관 명칭 | 위탁기관 주 소 | 위탁기관 연락처 (전화번호, FAX 등) | 통지사항 |
|---|---|---|---|
| |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의 출생·양도·양수·폐사 등 신고의 접수 및 같은 법 제6조 귀표의 부착지원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소의 출생, 폐사 또는 양도·양수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위탁기관에 5일 이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축산업협동조합장**
**○○농업협동조합장**
**○○협동조합**
**○○법인(축산 관련 법인)** 직인

# 한우판별 요령(한국종축개량협회)

## 한우판별 요령(한국종축개량협회)

# 1. 한 우

### ❑ 종축등록 한우

○ **기초등록우** : 선대의 혈통을 알 수 없는 소로서 생후 6개월 이상에서 외모를 심사하여 기초등록이 된 소

기초등록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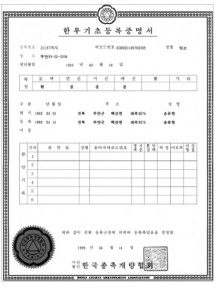


○ **혈통등록우** : 등록우 간(부·모 확인)에서 생산된 후대축에 대하여 외모심사 표준에 의하여 혈통등록을 실시한 소

혈통등록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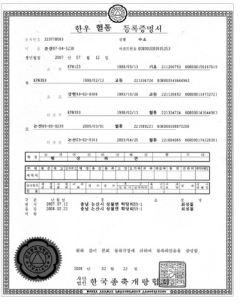

○ **고등등록우** : 혈통등록우에 대하여 생후 24개월~36개월령 사이에 외모 심사를 실시하여 고등등록으로 상위등록이 된 소

고등등록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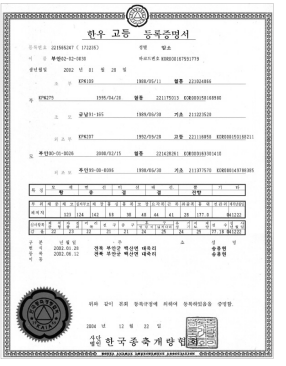


○ **예비등록우** : 외모로 보아 한우라고 인정되는 국내에서 생산된 한우

예비등록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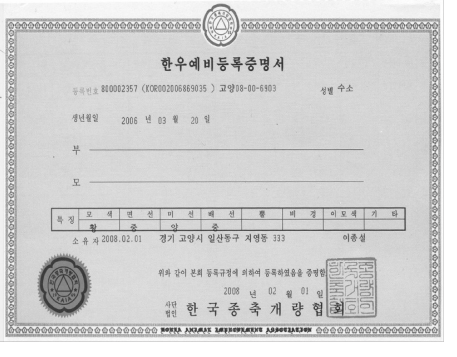

○ **제주흑우** : 제주흑우 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개체 또는 태어난 소

- 피모색은 거의 흑색을 띠며 제주도에 약 500여두가 보전

## 제주흑우수소

## 제주흑우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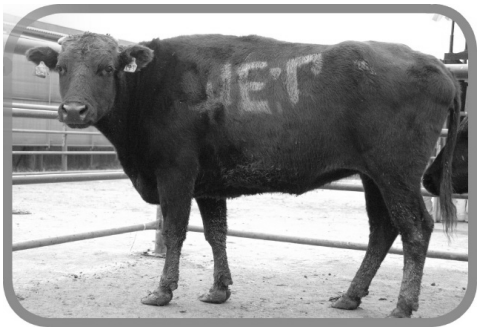

## 제주흑우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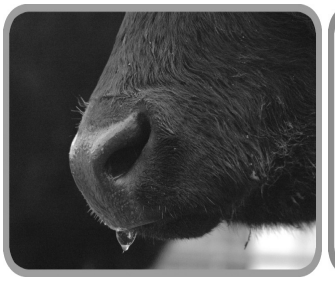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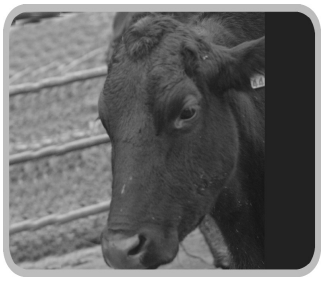

## ❑ 외모기준에 따른 한우의 구분

○ **일반한우** : 황갈색의 모색에 비경·눈주위·뿔·발굽·항문 등이 흑색이나 체형상 한우라고 인정되는 한국재래우

**한우수소**

**한우암소**

**한우거세우**

**한우송아지**

❍ **칡한우**

- 황갈색의 바탕에 검정 또는 흑갈색 세로줄 무늬가 몸 전체에 있는 소
- 검정색의 바탕에 흑갈색 또는 갈색 세로줄 무늬가 몸 전체에 있는 소

• 송아지 외모기준 : 세로줄 무늬가 몸전체의 10%이상을 차지하여야 하며 부·모 모두 칡소 예비등록 후 교배하여 생산된 송아지

칡한우송아지

- 성우 외모기준 : 부·모 모두 칡소 예비등록 후 교배하여 생산된 소

칡한우수소

칡한우암소

## ❑ 종축등록은 불가능하지만 한우로는 인정할 수 있는 개체

### ○ 백반점 및 백모가 한우기준에 적합하게 발현한 개체

- 백반이 있으나 10cm 이내의 작은 백반이고 백모가 있으나 발현정도가 경미하며 황갈색의 모색, 체형이 한우라고 인정되는 소
- 개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공수정 기록의 확인 또는 DNA검사를 통하여 부·모·자식간의 3샘플에 의거 친자가 확인된 경우는 한우인정

• 이마속모 : 개체의 이마 또는 면상에 백모가 몇 가닥씩 산재하여 발현한 경우

**이마속모**

• 면백 : 개체의 이마 또는 면상에 백모 또는 백반이 발현한 경우

**면백**

• 백반·속모 : 개체의 특정부위에 백반(모)가 발현한 경우

**백반·속모**

• 백반점 또는 백모가 발현하였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고 황갈색의 모색, 체형이 한우라고 인정되는 소

**모색·체형**

○ **흑반점 및 흑모가 한우기준에 적합하게 발현한 개체**

- 흑반 또는 흑모가 있으나 귀속, 귀주위, 입주위, 목부분 등의 발현정도가 경미한 경우 또는 황갈색의 모색, 체형이 한우라고 인정되는 소
- 개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공수정 기록의 확인 또는 DNA검사를 통하여 부·모·자식간의 3샘플에 의거하여 친자가 확인된 경우는 한우인정

**귓속흑모**

• 귓속흑모 : 개체의 귓속에 흑모가 밀집하여 발현한 경우

**입주위흑모**

• 입주위(구순)흑모 : 개체의 입주위(구순)에 흑모가 발현한 경우

**흑반·속모**

• 흑반·속모 : 개체의 특정부위에 흑반(모)가 발현한 경우

**모색·체형**

• 흑반점 또는 흑모가 발현하였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고 황갈색의 모색, 체형이 한우라고 인정되는 소

○ **흑비경우**

- 비경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단계적으로 다양하게 검은색을 띔
- 흑비경우는 한우로만 인정하고 종축등록은 불가능하며 흑비경의 4단계 이상에서는 개체의 특정부위에 이모색이 발현할 가능성이 있음.

**흑비경한우**

- 흑비경 6단계

**흑비경 6단계**

비경에 흑반점이 몇 개 보임

비경의 주위에 흑반점이 넓게 퍼짐

비경에 전체적으로 흑반점이 엷게 퍼짐

비경에 흑반점이 전체적으로 퍼짐

흑반점이 비경주위 부분까지 퍼짐

비경이 전체가 진한검은색임

- 주요특징

| 부 위 | 부위별 특징 |
|---|---|
| 비 경(코) | - 비경(코)에 단계적으로 다양한 회색 또는 흑색이 나타나며 정도에 따라 흑비경과 동반하여 눈주위에 검은모색이 발현됨 |
| 모 색<br>발굽·뿔 | - 비경이 흑색일 경우에는 뿔, 발굽, 꼬리, 항문 등이 검을 경우도 있음 |

## 2. 한우가 아닌 개체

### ❑ 외국의 대표적인 육우품종

#### ○ 한우와 모색이 동일한 외국품종

- 일본의 갈모화우

일본의 갈모화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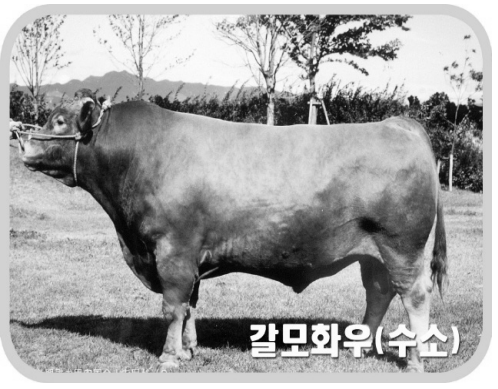

- 일본의 단각종

일본단각종

- 사우스 데본(South Devon, 원산지 : 영국)

사우스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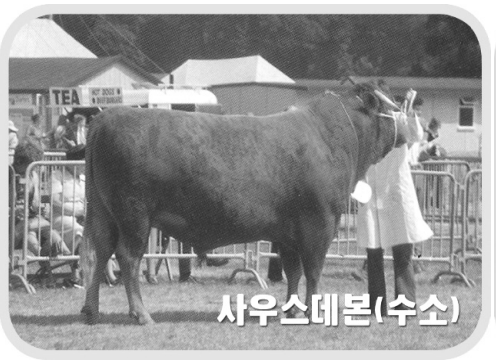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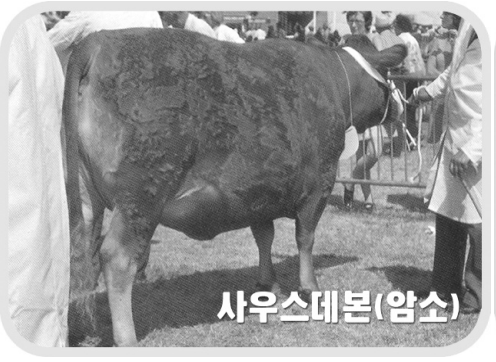

- 겔비에(Gelbvieh, 원산지 : 독일)

겔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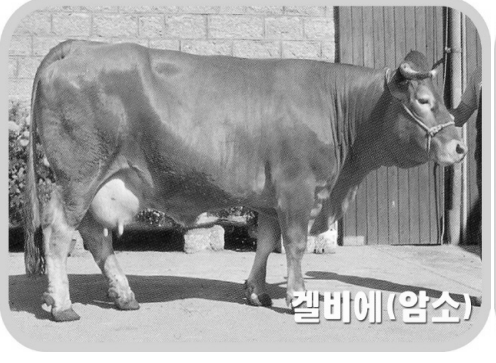

- 리무진(Limousin, 원산지 : 유럽)

리무진

- 산타 거트루디스(Santa Gertrudis, 원산지 : 미국)

산타 거트루디스

- 레드 앵거스(Red Angus, 원산지 : 유럽)

## 레드앵거스

- 중국 연변우(황우)

## 중국 황우(연변우)

○ 외국육우품종과 국내에 현존하는 교잡우 외모비교

| 구분 | 육우품종(외국) | 교잡우(국내) |
|---|---|---|
| 헤어포드 | 헤어포드(암소) | 헤어포드 교잡우 |
| 심멘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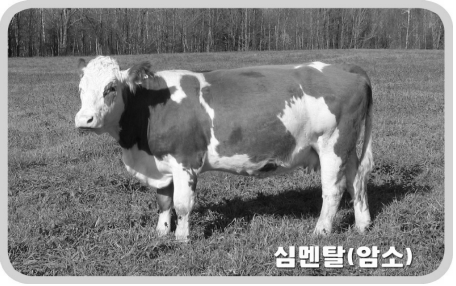 심멘탈(암소) | 심멘탈 교잡우 |
| 앵거스 | 앵거스(암소) | 앵거스 교잡우 |
| 샤로레 | 샤로레(암소) | 샤로레 교잡우 |
| 브라만 | 브라만(암소) | 브라만 교잡우 |

## ❑ 이모색 발현우(한우로 인정이 불가한 개체)

### ○ 백반점 및 백모가 한우기준에 부적합하게 발현한 개체

- 백반점의 크기가 10cm이상 발현하는 개체로서 교잡우 또는 육우로 판정
- 전신에 백모가 발생하는 개체로서 교잡우 또는 육우로 판정

• 이마백반

**이마백반**

• 몸통부위 백반

**몸통백반**

• 발목·꼬리채 및 유기부위 백반(모)

**백반·백모**

• 부분백모 및 전신백모

**모색**

○ **흑반점 및 흑모가 한우기준에 부적합하게 발현한 개체**

- 흑반점의 크기가 비대하게 발현하는 개체로서 교잡우 또는 육우로 판정
- 전신에 흑모가 발생하는 개체로서 교잡우 또는 육우로 판정(홀스타인 교잡우)

• 머리·목부위 흑반점

**머리·목**

얼굴부위에 흑반점 발현

얼굴부위에 흑반점 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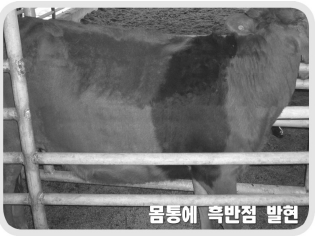
몸통에 흑반점 발현

• 몸통부위 흑반점

**몸통 흑반**

몸통에 흑반점 발현

몸통에 흑반점 발현

몸통에 흑반점 발현

• 꼬리채 및 유기부위 흑반(모) : 이모색 반점과 동반하여 발현할 경우 인정불가

**백반·백모**

꼬리채에 극심한 흑모 발현

흑갈색 모색에 꼬리채에 흑모 발현

흑모색에 꼬리채에 흑모와 백모 발현

• 전신 검은색 피모

**모색**

전신에 흑모발현(제주흑우 제외)

전신에 흑갈색 피모발현(제주흑우 제외)

전신 피모색이 흑색발현우(젖소, 교잡우)

## 3. 교잡우 및 육우의 구별요령

○ 한가지 특징으로는 구별이 불가능함으로 해당개체의 외모에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한우인지 교잡우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 ❑ 교잡우의 대표적 특징

○ 피모색(전신피모)

**피모색**

○ 두상(머리)

**두상**

○ 뿔의 형태

**뿔**

○ 귀의 형태

**귀**

○ 흉수(가슴느러미, 목느러미 부위)

흉수

흉수가 한우보다 지나치게 처짐

흉수가 한우보다 지나치게 처짐

목·가슴느러미가 크고 매우 처짐

○ 넓적다리 및 둔부(엉덩이)

엉덩이

한우보다 엉덩이와 둔부가 지나치게 큼

고장이 길고 넓적다리의 두께가 큼

엉덩이가 매우 크고 넓음

○ 정강이 및 다리굵기

정강이

아주 굵은 정강이와 발굽위 백모

육우와 교잡되어 정강이 두께가 두꺼움

정강이의 두께가 지나치게 두꺼움

○ 유방 및 유두

유방·유두

유방 및 유두가 비대함

건유기에도 한우보다 지나치게 유두가 크고 전체적으로 비대함

유방 및 유두가 비대함

## ❑ 교잡우의 발생 사례 및 혈연관계

### ○ 대표적인 교잡형태

- 홀스타인×한우 교잡우의 외모적 특징

홀스타인 교잡우

- 주요특징

| | |
|---|---|
| | • 대부분 개체의 얼굴 또는 이마에 큰 백반점이 발현<br>• 개체의 전체적인 피모색은 흑색 또는 흑갈색 |
| | • 발목 및 꼬리채에 백반점 및 백모가 발현<br>• 개체의 몸통에 백반점 또는 백모가 발현 |
| | • 가슴 밑부위 및 배 밑부위에 뚜렷한 백반점이 발현 |
| | • 유방 주위 및 전체에 뚜렷한 백반점 또는 백모가 발현<br>• 유두의 색깔이 흑색 또는 반문 |
| | • 비경 및 비경주위 전체가 흑색<br>• 입주위 전체가 흑색으로 발현 |

- 샤로레 × 한우 교잡우의 외모적 특징

샤로레 교잡우

• 주요특징

| | |
|---|---|
| | • 피모색이 한우의 황갈색과 샤로레 흰색의 중간색<br>• 대부분 연황색 또는 연한 은황색·은갈색을 보임. |
| | • 한우보다 귀와 주둥이 그리고 콧잔등이 크고 입주위와 눈주위가 지나치게 희다.<br>• 얼굴의 품위에서 한우보다 사나워 보임. |
| | • 한우 수소(♂)에 의해 생산된 교잡된 송아지도 피모색은 연황색 또는 은황색이며 한우와 피모색이 구별됨. |
| | • 배 밑부위 및 다리 안쪽부위의 모색이 한우보다 유난히 희고 밝은 연황색임.<br>• 한우보다 발목과 정강이 부위가 두껍다. |
| | • 샤로레의 특징인 경봉(목)과 엉덩이 부위가 유전되어 전체적으로 후구가 한우보다 발달 |

- 심멘탈·헤어포드×한우 교잡우

**심멘탈 · 헤어포드**

• 주요특징

| | |
|---|---|
| | • 심멘탈·헤어포드의 특징에 의하여 전신 또는 특정부위에 백반점 또는 백모가 뚜렷하게 나타남<br>• 황갈색 또는 적갈색 바탕에 백반점(백모)가 발현 |
| | • 모색유전력이 강하여 후대축에게도 부모의 피모색 및 형태를 물려주므로 한우로 종부를 시켜도 특징적인 외모형태는 계속적으로 남음 |
| | • 무각종(Polled) 형질에 의하여 뿔이 나지 않는 개체가 발현 |
| | • 머리에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며 가슴·배·유방 밑부위 및 정강이 그리고 꼬리부위에도 백반점 또는 백모가 다수 발현<br>• 한우보다 발목과 정강이 부위가 두껍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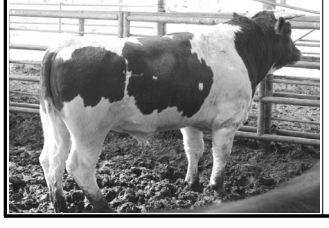 | • 육우품종의 체형이 유전되어 전체적으로 한우보다 체형이 크고 발달하였음 |

### ○ 혈연관계로 본 교잡형태 및 외모적 특징

- 교잡우 형태 A형

**【혈연정보】**

레드브라만(♀) × **한우(♂)**

↓

F1(♀) × 레드브라만(♂)

↓

F2(♀) × 산타(♂)

↓

**해당개체(♀)**

- 주요특징

- 브라만(Brahman)의 가장 큰 특징으로 큰귀가 하향으로 처진 것을 볼 수 있음
- 산타 거트루디스(Santa Gertrudis)와 레드브라만(Red Brahman)의 모색을 이어 받아 피모색이 적갈색이며 귓속과 입주위에 흑모가 발현됨
- 적갈색의 피모와 동시에 눈과 입주위의 피부색 또한 선홍색을 보임

- 교잡우 형태 B형

【혈연정보】

브라만(♀) × **한우(♂)**

↓

F1(♀) × 홀스타인(♂)

↓

F2(♀) × 샤로레(♂)

↓

**해당개체(♀)**

- 주요특징

- 브라만(Brahman)계통과 샤로레이(Charolais)계통의 교잡우로서 피모색이 연회색을 띠고 발목이 한우보다 두꺼운 것이 특징
- 대표적인 육우품종인 샤로레이(Charolais)의 영향으로 엉덩이(둔부)부분이 매우 발달하였고 살 붙임 또한 한우보다 많음

- 교잡우 형태 C형

【혈연정보】

한우(우) × 브라만(♂)

↓

F1(♀)×샤로레(♂)

↓

해당개체

- 주요특징

- 브라만(Brahman)계통과 샤로레이(Charolais)계통의 교잡우로서 피모색이 연회색을 띠고 발목이 한우보다 두꺼운 것이 특징
- 샤로레이(Charolais)의 영향으로 후구가 발달하였고 엉덩이(둔부)부분이 한우보다 발달하였음
- 브라만(Brahman)의 영향으로 뿔이 가늘고 길며 특히 흉수(목·가슴느러미)가 매우 크고 밑으로 처져 있음

- 교잡우 형태 D형

【혈연정보】

한우(우) × 레드브라만(♂)

↓

해당개체(우)

- 주요특징

- 레드 브라만(Brahman)의 계통으로 피모색이 적갈색이며 귓속과 입주위에 흑모가 발현됨
- 브라만(Brahman)의 영향으로 뿔이 가늘고 길며 특히 흉수(목·가슴느러미)가 매우 크고 밑으로 처져 있음

- 교잡우 형태 E형

【혈연정보】

한우(우) × 브라만(♂)

↓

F1(우) × 심멘탈(♂)

↓

해당개체(우)

- 주요특징

- 브라만(Brahman)의 영향으로 흉수(목·가슴느러미)가 매우 크고 밑으로 처져 있음
- 심멘탈(Simmental)의 영향으로 머리 및 배 밑에 흰색 반문이 있으며 피모색도 적갈색을 보임

- 교잡우 형태 F형

【혈연정보】

한우(우) × 브라만(♂)

↓

F1(우) × 샤로레(♂)

↓

F2(우) × 한우(♂)

↓

해당개체(우)

- 주요특징

F3(♂)의 아비소(한우)

F3(♂)로서 해당개체의 아들소

- 브라만(Brahman)의 영향으로 뿔이 가늘고 길며 흉수(목·가슴느러미)가 매우 크고 밑으로 처져 있음
- 샤로레이(Charolais)의 모색을 유전받아 피모색이 연황색 또는 은갈색
- 브라만(Brahman)의 특징으로 한우보다 귀가 크고 하향으로 처짐

- 교잡우 형태 G형

【혈연정보】

레드브라만(♂) × 한우(우)

↓

F1(우) × 산타(♂)

↓

해당개체(우)

- 주요특징

- 레드 브라만(Red Brahman)과 산타 거트루디스(Santa Gertrudis)의 교잡우로 피모색이 적갈색이며 귓속과 입주위에 흑모가 발현됨.
- 사진과 같이 음부가 한우에 비해 크고 후구가 발달
- 레드 브라만(Red Brahman)의 영향으로 뿔이 가늘고 길며 흉수(목·가슴느러미)가 매우 크고 밑으로 처져 있음.

## ○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교잡우

- 교잡우 현황 및 특징

한우×홀스타인 교잡우

한우×샤로레 교잡우

한우×브라만×샤로레 교잡우

한우×샤로레×홀스타인 교잡우

한우×브라만×헤어포드교잡 교잡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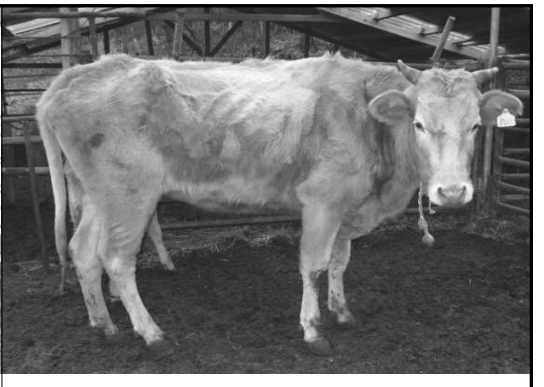

한우×샤로레 교잡우

- 교잡우 현황 및 특징

한우×브라만×산타 교잡우

한우×회색브라만 교잡우

한우×헤어포드 교잡우

한우×심멘탈 교잡우

한우×산타×브라만 교잡우

한우×브라만×샤로레 교잡우

- 교잡우 현황 및 특징

한우×샤로레 교잡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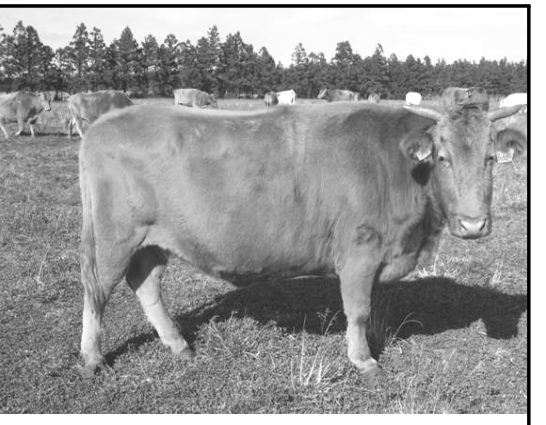

한우×산타 교잡우

한우×헤어포드 교잡우

한우×심멘탈 교잡우

한우×산타 교잡우

한우×브라만 교잡우

○ 외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교잡우 사례(일본의 교잡우)

일본단각우×저지 교잡우

일본단각우×저지 교잡우

일본화우×앵거스 교잡우

일본화우×앵거스 교잡우

브라운스위스×홀스타인 교잡우

일본화우×앵거스 교잡우

# 한 우 기 준 설 정

| 구분 | 구 분 기 준 | 표 시 |
|---|---|---|
| 종축 | • 한우외모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등록된 한우 | 한우(종축등록) |
| | • 제주 흑우 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제주 흑우」<br>- 제주 흑우 등록우에서 태어난 소 | 제주 흑우(종축)<br>제주 흑우 |
| 한우 | • 일반한우<br>- 황갈색의 모색에 비경·눈주위·뿔·발굽·항문 등이 흑색이나 체형상 한우라고 인정되는 소<br>- 백반이 있으나 10cm 이내의 작은 백반 (이마백반, 가슴백반 등)<br>- 흑모가 있으나 귀속, 귀주위, 입주위, 목부분 등의 경미한 흑모와 흑반우<br>- 백반 또는 흑반이 있으나 황갈색의 모색, 체형이 한우라고 인정되는 소(분쟁발생 시 인공수정 기록 확인 또는 DNA검사시 부·모·자식 3샘플에 의거 친자가 확인된 소 | 한우(비경흑)<br>한우(면백)<br>한우(흑반)<br>한우(귀속흑모)<br>한우(가슴백반)<br>등으로 특징을 구분 |
| | * 백모가 있으나 황갈색의 모색 체형이 한우라고 인정되는 소 (속모 : 몸 또는 이마에 몇 가닥씩 산재) | 한우(이마속모)<br>〃 (전신속모) |
| | • 칡한우(칡소)<br>- 황갈색의 바탕에 검정 또는 흑갈색 세로줄 무늬가 몸 전체에 있는 소<br>- 검정색 바탕에 흑갈색 또는 갈색 세로줄 무늬가 몸 전체에 있는 소<br>- 부·모 모두 칡소 예비등록 후 교배하여 생산된 송아지<br>- 부·모 모두 칡소에 의하여 교배하여 생산된 송아지 중 분쟁발생 시(부·모·자식 3샘플의 DNA검사 친자확인)<br>- 생산된 송아지 중 세로줄 무늬가 10%이상인 소 | |

# 한우의 외모 및 체형 세부기준

## ❍ 일반한우

| 부 위 | 부위별 특징 |
|---|---|
| 모 색 | - 몸 전체가 황갈색(누런빛을 내는 갈색), 담갈색(연한 갈색), 적갈색(붉은 갈색)이며 암소의 유방부위, 암·수소의 다리 안쪽, 배 주위는 약간 엷은 색을 나타냄<br>- 귀·눈주위·비경(코)근처에 흑색을 나타내기도 하며 흑모(반) 및 백모(반)을 나타내기도 함 |
| 체 형 | - 유용종(쐐기골)과 육용종의 중간정도임<br>- 소형종이며 만숙종으로 과거 역용경험에 의하여 전구(앞)부분이 발달하였음<br>- 수소의 경우에는 견봉(어깨봉우리)가 있으나 암소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음<br>- 후구(요각-좌골)쪽으로는 사구(斜尻:경사진 엉덩이)진 것이 많으며 엉덩이의 기울기만큼 뒷다리가 안쪽으로 배치됨 |
| 뿔 | - 유각종이며 암소는 가늘고 수소는 굵으나 길이는 짧은 편에 속함<br>- 뿔의 방향은 어린 소의 경우 대부분 상향각 또는 전향각임<br>- 나이가 먹을수록 구부러지거나 영양상태에 따라 각도가 다를 수가 있음 |
| 비경(코) | - 대부분 살(肉)색이나 흑색, 회색도 나타남<br>- 비경이 흑색일 경우에는 눈주위, 뿔, 발굽, 꼬리, 항문 등이 검을 경우도 있음 |
| 머리·목 | - 머리는 수소는 짧으며 암소는 갸름한 편임<br>- 목느러미는 잘 발달하지 않는 편이며 암소는 목이 얇고 수소는 두터움<br>- 암소의 견봉은 나타나지 않으나 수소의 경우 비육시 견봉 확인 |
| 전 구 | - 성우암소의 흉폭은 25~50cm사이이며 수소는 30~60cm정도임<br>- 역용종에서 육용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 어깨가 발달한 것이 특징임 |
| 중 구 | - 갈비가 가늘고 등선과 허리사이가 약간 겹쳐지며 허구리가 약간 큼<br>- 하겸부(배와 넓적다리사이)가 올라 붙어있음. 등, 허리의 폭은 얇은 편임 |
| 엉덩이 | - 요각과 좌골사이는 꼬리방향으로 하향 경사진 것이 특징(斜尻)<br>- 암소의 경우에는 요각이 돌출되며 엉덩이폭도 꼬리쪽으로 가면서 약간 얇아짐 |
| 넓적다리 | - 윗 넓적다리에서 아랫 넓적다리로 갈수록 폭이 좁아짐<br>- 넓적다리의 폭(좌·우)도 얇은 것이 특징<br>- 꼬리에서 다리쪽으로 가면서 안쪽으로 기울어짐 |
| 유 기 | - 유방의 용적이 작으며 유두의 길이도 짧음<br>- 유정맥은 발달하지 않았음 |
| 지제·발굽 | - 발굽은 곧바로 뻗은 다리(직비)보다는 엉덩이 경사만큼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외국소는 거의 직비)<br>- 발굽의 색은 대부분 살(肉)색이지만 흑색의 발굽도 있음<br>- 발굽의 크기가 작고 발굽의 각도는 15~40°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음 |

### ○ 제주흑우

| 부 위 | 부위별 특징 |
|---|---|
| 모 색 | - 주로 전신이 흑색이며 비경이 약간 연한 흑색을 띰<br>모색은 50%가 검은색, 40% 흑갈색, 10%가 황색으로 발현됨<br>- 눈, 비경, 꼬리와 발굽은 검다가 생후 5개월령에 흑우의 모색으로 발현됨<br>- 복부 및 유방주위에 백반이 나타나는 개체가 있음 |
| 체 형 | - 유용종(쐐기골)과 육용종의 중간정도임<br>- 소형종이며 만숙종으로 과거 역용경험에 의하여 전구(앞)부분이 발달하였음<br>- 수소의 경우에는 견봉(어깨봉우리)가 있으나 암소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음<br>- 후구(요각-좌골)쪽으로는 사구(斜尻:경사진 엉덩이)진 것이 많으며 엉덩이의 기울기만큼 뒷다리가 안쪽으로 배치됨 |
| 뿔 | - 유각종이며 암소는 가늘고 수소는 굵으나 길이는 짧은 편에 속함<br>- 뿔의 방향은 어린 소의 경우 대부분 상향각 또는 전향각이나 후향 및 하향각등 골고루 나타남<br>- 나이가 먹을수록 구부러지거나 영양상태에 따라 각도가 다를 수가 있음 |
| 비경(코) | - 대부분 흑색이나 살(肉)색이나 회색도 나타남<br>- 제주 흑우의 경우 내륙흑우와 달리 비경주위에 흰테두리가 없음 |
| 머리·목 | - 머리는 수소는 짧으며 암소는 갸름한 편임<br>- 목느러미는 잘 발달하지 않는 편이며 암소는 목이 얇고 수소는 두터움<br>- 암소의 견봉은 나타나지 않으나 수소의 경우 비육시 견봉 확인 |
| 전 구 | - 성우암소의 흉폭은 25~50cm사이이며 수소는 30~60cm정도임<br>- 역용종에서 육용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 어깨가 발달한 것이 특징임 |
| 중 구 | - 갈비가 가늘고 등선과 허리사이가 약간 겹쳐지며 허구리가 약간 큼<br>- 하겸부(배와 넓적다리사이)가 올라 붙어있음. 등, 허리의 폭은 얇은 편임 |
| 엉덩이 | - 요각과 좌골사이는 꼬리방향으로 하향 경사진 것이 특징(斜尻)<br>- 암소의 경우에는 요각이 돌출되며 엉덩이폭도 꼬리쪽으로 가면서 약간 얇아짐 |
| 넓적다리 | - 윗 넓적다리에서 아랫 넓적다리로 갈수록 폭이 좁아짐<br>- 넓적다리의 폭(좌·우)도 얇은 것이 특징<br>- 꼬리에서 다리쪽으로 가면서 안쪽으로 기울어짐 |
| 유 기 | - 유방의 용적이 작으며 유두의 길이도 짧음<br>- 유정맥은 발달하지 않았음 |
| 지제·발굽 | - 발굽은 곧바로 뻗은 다리(직비)보다는 엉덩이 경사만큼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외국소는 거의 직비)<br>- 발굽의 색은 대부분 흑색임<br>- 발굽의 크기가 작고 발굽의 각도는 15~40°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음 |

## ○ 칡한우(칡소)

| 부 위 | 부위별 특징 |
|---|---|
| 모 색 | - 모색은 황갈색바탕에 검정 또는 흑갈색과 검정색 바탕에 흑갈색 또는 갈색 세로 줄무늬가 몸 전체에 있음<br>- 모색은 주로 호반무늬:흑색:황색비율이 3:3:4의 비율로 나타나며 황만선도 보임<br>- 모색이 검더라도 귓속과 뿔과 뿔 사이의 모색이 황색으로 발현됨 |
| 체 형 | - 유용종(쐐기골)과 육용종의 중간정도임<br>- 소형종이며 만숙종으로 과거 역용경험에 의하여 전구(앞)부분이 발달하였음<br>- 수소의 경우에는 견봉(어깨봉우리)가 있으나 암소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음<br>- 후구(요각-좌골)쪽으로는 사구(斜尻:경사진 엉덩이)진 것이 많으며 엉덩이의 기울기만큼 뒷다리가 안쪽으로 배치됨 |
| 뿔 | - 유각종이며 암소는 가늘고 수소는 굵으나 길이는 짧은 편에 속함<br>- 뿔의 방향은 어린 소의 경우 대부분 상향각 또는 전향각임<br>- 나이가 먹을수록 구부러지거나 영양상태에 따라 각도가 다를 수가 있음 |
| 비경(코) | - 대부분 흑색이나 회색, 살(肉)색도 나타남<br>- 비경이 흑색일 경우에는 눈주위, 뿔, 발굽, 꼬리, 항문 등이 검을 경우가 있으며, 비경주위는 힌 테두리를 보임 |
| 머리·목 | - 머리는 수소는 짧으며 암소는 갸름한 편임<br>- 목느러미는 잘 발달하지 않는 편이며 암소는 목이 얇고 수소는 두터움<br>- 암소의 견봉은 나타나지 않으나 수소의 경우 비육시 견봉 확인 |
| 전 구 | - 성우암소의 흉폭은 25~50cm사이이며 수소는 30~60cm정도임<br>- 역용종에서 육용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 어깨가 발달한 것이 특징임 |
| 중 구 | - 갈비가 가늘고 등선과 허리사이가 약간 겹쳐지며 허구리가 약간 큼<br>- 하겸부(배와 넓적다리사이)가 올라 붙어있음. 등, 허리의 폭은 얇은 편임 |
| 엉덩이 | - 요각과 좌골사이는 꼬리방향으로 하향 경사진 것이 특징(斜尻)<br>- 암소의 경우에는 요각이 돌출되며 엉덩이폭도 꼬리쪽으로 가면서 약간 얇아짐 |
| 넓적다리 | - 윗 넓적다리에서 아랫 넓적다리로 갈수록 폭이 좁아짐<br>- 넓적다리의 폭(좌·우)도 얇은 것이 특징<br>- 꼬리에서 다리쪽으로 가면서 안쪽으로 기울어짐 |
| 유 기 | - 유방의 용적이 작으며 유두의 길이도 짧음<br>- 유정맥은 발달하지 않았음 |
| 지제·발굽 | - 발굽은 곧바로 뻗은 다리(직비)보다는 엉덩이 경사만큼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외국소는 거의 직비)<br>- 발굽의 색은 대부분 살(肉)색이지만 흑색의 발굽도 있음<br>- 발굽의 크기가 작고 발굽의 각도는 15~40°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음 |

# 축산물이력제 업무편람

- 발 행 인 : 박 병 홍 원장
- 편　　집 : 소비정보본부 이력관리처
- 발 행 일 : 2023년 7월
- 발 행 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아름동)
  Tel : 044-410-7000
  Fax : 044-410-7176
- 인 쇄 처 : ㈜화신문화



* 이 책에 실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소비정보본부 이력관리처(044) 410-71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